2012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Ⅱ)

2012. 9

금융위원회

총 목 차

(가, 나, 다, 순)

(Ⅰ권)
강 기 정 의원 ····· 1
강 석 훈 의원 ····· 389
김 기 식 의원 ····· 565
김 기 준 의원 ····· 749

(Ⅱ권)
김 영 주 의원 ····· 1
김 영 환 의원 ····· 111
김 용 태 의원 ····· 493
김 재 경 의원 ····· 501

(Ⅲ권)
김 종 훈 의원 ····· 1
노 회 찬 의원 ····· 447
민 병 두 의원 ····· 695
박 대 동 의원 ····· 963

(Ⅳ권)
박 민 식 의원 ····· 1
성 완 종 의원 ····· 195
송 광 호 의원 ····· 351
송 호 창 의원 ····· 489
신 동 우 의원 ····· 547
안 덕 수 의원 ····· 629
유 일 호 의원 ····· 827

(Ⅴ권)
이 상 직 의원 ····· 1
이 종 걸 의원 ····· 219
정 호 준 의원 ····· 707
조 원 진 의원 ····· 1001

요 구 자 료 목 차

(가, 나, 다, 순)

김영주 의원

1. 최근 4년간(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퇴직 임직원들의 산하 단체·직할기관·유관기관으로의 이동(재취업) 여부 및 그 내용 (성명, 기관명, 직급, 일자 등) ····· 3

2. 최근 2년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및 그 처리결과 ····· 5

3.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졸채용계획' ····· 8

4.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융회사별 휴면예금, 휴면 보험금 발생 현황 및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내역 ····· 9

5. 2008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 14

6. 은행연합회가 금융위원회로 제출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 세부현황(지출부 형식의 집행건별, 시간대별 집행세부현황) 및 관련 예산 집행 규정 ····· 15

7. 은행연합회가 금융위원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예산집행 세부현황과 관련, 승인(심사)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 등 관련 조치내역 ····· 20

8.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21

김영환 의원

1. 공적자금 투입 기업 및 금융기관 현황 ····· 113
   - 일반현황, 정부 보유지분 현황, 매각계획

2. 최근 3년간 미소금융, 햇살론 관련 지원현황(대출기준 포함), 신용등급별 지원 현황(건수, 금액), 연체율 현황, 대출자 중 폐업현황 ····· 115

3. 200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재취업 현황 ····· 118
- 성명, 퇴임당시 직책 등 경력, 재취업 직장명 및 직책

4. 최근 3년간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은행과의 수발신 목록 (해당 협회 포함) ····· 120

5-1. 불법 광고 근절 대책 ····· 140

5-2. 대부업체 광고 규제 관련 규정 ····· 141

6-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146

6-2. 최근 3년간 감사원,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 ····· 147

7.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원 개최 현황 및 의사록 ····· 242

8.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 ····· 243

9.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256

10.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상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 257

11.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현황 ····· 258
- 중복업체수 및 총액현황
- 금액별 중복 상위 10개업체 내역

12. 2008년부터 현재까지 LTV·DTI 규제 변동현황 ····· 260

13. 금융위 산하 각종 위원회 및 T/F현황, 회의현황 및 회의록 ····· 261

13-1. 금융위 TF 현황 ····· 265

13-2. 금융위 산하 TF 현황 ····· 266

13-3. 산하 각종 위원회 및 TF현황 (회의현황 및 회의록) ····· 267

13-4. 금융위 산하 각종 위원회 및 T/F 현황, 회의현황 및 회의록 ··· 294

13-5. 금융위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 회의현황 및 회의록 ····· 296

13-6. 금융위, 증선위 회의현황 및 회의록 ····· 298

14. 최근 3년간 임직원 급여 현황 및 성과급 지급 현황 ····· 299
15. 최근 3년간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소관 협회 감사현황 및 결과 ····· 301
16.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현황 ····· 345
17. 최근 3년간 금융위 임직원 해외 출장 관련 ····· 350
18.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현황 ····· 364
19. 신용회복위원회내 '재창업지원위원회' 일반 현황, 활동 사항 및 회의록 ····· 365
20. '복합금융프로그램' 구체 설명자료 및 실적 ····· 374
21.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KONEX)' 신설방안 설명자료 ····· 375
22.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및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자료 ····· 403
23-1.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각 1부씩 ····· 434
23-2. 카드사 외형확대 억제대책('11.6)' 1부 ····· 476
24. 보이스피싱 사전방지 및 사후 피해구제 대책 ····· 490
- 최근 3년간 피해 건수, 금액 포함

김용태 의원

1.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5개 협회에서 약속한 계획 대비 고졸자 채용 실적 ····· 495
(회사명, '11~'12년 계획 및 실적)

김재경 의원

1.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2008.1~현재) ··· 503

2-1.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 506
(2008. 1 ~ 현재)

2-2. 처분요구사항 관련(2008. 1 ~ 현재) ····· 507
(1) 변상책임 판정 현황
(2) 징계요구 현황
(3) 연도별/건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4) 연도별/건별 법·제도 등 개선요구 사항 현황
(5) 연도별/건별 권고사항 현황
(6) 연도별/건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 받은 사건 내역

2-3.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관련 (2008.1~현재) ····· 511
(1) 처분요구유형별 이행 현황
(2) 연도별 감사원의 중요처분에 대한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
(3) 연도별 변상판정/징계요구/개선요구/권고에 대한 재심의 청구 현황 및 결과
(4) 징계처분 관련 현황

3-1. 자체 감사 관련(2008.1~현재) ····· 512
-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상세 내역

3-2. 자체 감사 관련(2008.1~현재) ····· 570
- 연도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 현황

3-3. 자체 감사 관련(2008.1~현재) ····· 571
- 감사결과 처리 현황

4. 기관장, 상임·비상임이사, 감사 사무실 운영 관련(2008.1~현재) ··· 572

5. 정책·사업 홍보(광고) 관련 (2008.1~현재) ····· 574

6. 연구용역 관련(2008. 1월~현재) ····· 630
1)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 운용 현황

7. 인사 관리 관련(2008.1 ~ 현재) ····· 631
1) 현 기관장 이력서 사본
2) 연도별 정원 대비 현원
3)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운용 조정 계획
4) 자격증 소지자 성명, 자격사항, 現 보직 부서명
5)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6) 소속 직원 등의 범죄기록
7) 비정규직 고용관련
8) 정규직 신규 인력 채용 및 임금 관련
9) 장애인 고용 관련
8. 기관장, 이사, 감사 인사추천위원회 관련 (2008. 1 ~ 현재) ····· 640
9.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관련 ····· 641
10. 직원 및 협력 기관 직원 해외파견 관련 (2008. 1 ~ 현재) ····· 642
1) 연도별 국가별 직원 해외 파견 및 현지시설물 현황 ····· 642
2) 연도별 파견 직원 및 현지 시설물 관련 각종 사건·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 642
3) 직원 해외 파견 및 관리 등 관련 내부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규정, 지침 ····· 642
4) 파견 직원 및 현지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한 대응 매뉴얼 ····· 642
5) 유사시 대응 체계 구축 여부 및 내용 ····· 643
6) 산하기관 직원의 해외파견 현황 또는 실태 등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643
11-1. 연도별 벌금 부과 및 납부실적 ····· 646
11-2. 연도별 과태료 부과 및 납부실적 ····· 646
11-3. 연도별 과징금 부과 및 납부실적 ····· 648
11-4.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 관련('08.1월~현재) 연도별 과태료, 과징금 관련 진정, 비위사항 청원 등 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내역 ····· 649

12. 정보통신 보안 관련 ····· 650
1) 정보통신 보안 담당 조직 및 인력 구성 현황
2) 정보통신보안업무지침 또는 규정 제정 및 개정 현황
3) 정보통신 보안감사 관련
4) 보안사고 관련
5) 연도별 허가되지 아니한 자의 무단 침입시도 현황
6) 연도별 정보통신 보안교육 시행 실적

13. 금융위, 증선위 관련(2008.1~현재) ····· 675
1) 위원 현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직책, 선임일자, 임기)
2) 연도별 회의 개최 실적
(상정안건, 논의·의결내역, 참석위원 명단, 회의록 사본)
3) 위원회 수당 산정 기준 및 지급 내역

14. 업무용 차량 관련(2008.1~현재) ····· 697
14-1. 현재 보유·운영중인 관용 및 업무용 차량현황 및 보험가입 현황
14-2. 현재 보유·운용중인 관용 및 업무용 차량의 차량별 구입 시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교통법규 위반 내역 및 범칙금 납부·미납부 내역
14-3. 각 기관별 보유차량 중 경차 보유 현황

15. 기관별 에너지절감대책 관련(2008.1~현재) ····· 698
15-1.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혹은 상위기관으로부터 하달받은 에너지 절감대책
15-2 자체 수립한 에너지절감대책

16. 중소기업지원사업 관련(2008.1~현재) ····· 751

17. 투자 및 출자회사 관련(2008.1~현재) ····· 752
1) 가장 최근에 수립-운영한 회사 설립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2) 회사 설립-운영 현황
3) 연도별/회사별 감사 실적
4) 회사별 청 소속 임직원 파견 및 겸직 현황

5) 파견 및 겸직 대상 임직원의 파견 및 겸직 전후 직책 현황
6)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서

18. 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의 주식투자현황 ····· 753

19. 햇살론 실적 (2012년 8월 1일 기준) ····· 754
1) 대출기준 및 징구서류
2) 대출기준 변경 연혁
3) 신용등급별 실적 (신용등급은 외부 CB(10등급))
4) 최근 5년간 분기말 실적 (2012년은 월말 실적)
5) 자산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 3), 4)항목에 대해 저축은행별 실적 제출

20. 미소금융 실적 (2012년 8월 1일 기준) ····· 767
1) 대출기준 및 징구서류
2) 대출기준 변경 연혁
3) 신용등급별 실적 (신용등급은 외부 CB(10등급))
4) 최근 5년간 분기말 실적 (2012년은 월말 실적)

21.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졸채용계획' ····· 771

22.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 확대 스케줄" 및 실적 ····· 772

23.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의 외형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발송한 공문사본 ····· 773

24. 최근5년간(2012년 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신용카드 불법 모집인에 대해 부과한 벌금· 과태료 현황 ····· 774

25. 저축은행이 발급하는 대출카드(마이너스 카드)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 775

26.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 ····· 776

27. 최근 5년간 개최한 대부업정책협의회 의사록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 782

28. 최근 5년간 대부광고 규제 강화 연혁 ····· 785
29. 최근 5년간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교육 관련 예산/결산 현황 및 금융교육 실적 ····· 786
30.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부실금융기관 리스트 ····· 789
31.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당시 의사록 ····· 795
32. 대부업 관리 ····· 838
1) 불법 광고 근절 대책 ····· 838
2) 대부업체 광고 규제 관련 규정 ····· 839
33. 최근 5년간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정책 ····· 844
34. 미소금융 목표대비 실적, 지점별 실적 ····· 845
(지역지점, 기업계지점, 은행계지점 구분)
35. 금융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실적 ····· 846
36. 미소금융 실무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및 실적 ····· 847
37. 미소금융 지역지점 예산 / 결산 현황 ····· 849
38. 최근 5년간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단체와 복지사업 지원 계약을 작성한 현황 및 계약서 사본 ····· 850
39. 최근5년간 TF구성 내역 ····· 885
(TF별/목적/위원 구성/위원별 프로필/회의개최 현황/회의자료/회의록/실적)
40. 2012년 비상금융상황대응회의 개최실적 ····· 892
(참석자 현황/개최일시/안건/회의자료/회의록)

김 영 주 의원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1. 최근 4년간(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퇴직 임직원들의 산하단체·직할기관·유관기관으로의 이동(재취업) 여부 및 그 내용(성명, 기관명, 직급, 일자 등)

□ 퇴직자 재취업 현황

연도	퇴직일	이름	직위/직급	재취업처 및 직위
2008	'08.03.28	이○○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08.04.30	전○○	과장	은행연합회 감사
	'08.05.15	김○○	과장	법무법인 변호사
	'08.06.07	윤○○	일반계약직5호	-
	'08.08.01	하○○	일반계약직5호	검찰청 검사
	'08.08.20	장○○	일반계약직5호	-
	'08.10.07	김○○	일반계약직6호	금융감독원
	'08.11.19	강○○	일반계약직5호	법무법인 회계사
	'08.12.09	김○○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2009	'09.01.05	정○○	서기관	금융투자협회 부장
	'09.01.09	이○○	행정사무관	법무법인 변호사
	'09.01.20	전○○	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09.01.20	홍○○	서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09.03.26	양○○	실장	한국자금중개 전무
	'09.04.30	김○○	행정주사	금융투자협회
	'09.05.13	나○○	서기관	한국산업은행
	'09.05.15	한○○	서기관	신영증권 상무이사
	'09.09.11	박○○	부이사관	SK C&C 상무
	'09.10.12	김○○	행정사무관	-
	'09.11.17	김○○	원장	한국증권금융 사장
	'09.11.19	이○○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연도	퇴직일	이름	직위/직급	재취업처 및 직위
2010	'10.02.17	김○○	전산서기보	한국거래소
	'10.03.02	나○○	행정사무관	정책금융공사 팀장
	'10.04.15	임○○	상임위원	금융통화위원
	'10.04.15	서○○	일반계약직5호	정책금융공사 팀장
	'10.06.17	김○○	일반계약직5호	-
	'10.08.23	김○○	일반계약직5호	-
	'10.10.14	남○○	행정사무관	정책금융공사 팀장
	'10.12.06	임○○	서기관	파인트리 파트너스 (자산운용사)
2011	'11.01.03	진○○	위원장	숭실대 객원교수
	'11.02.16	최○○	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11.03.27	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11.03.28	이○○	상임위원	법무법인 변호사
	'11.05.02	김○○	고위공무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11.06.02	안○○	행정사무관	-
	'11.09.23	공○○	행정사무관	금융감독원
	'11.09.28	남○○	팀장	KT 상무
2012	'12.01.01	이○○	외신대변인	-
	'12.02.27	박○○	일반계약직5호	-
	'12.03.14	원○○	과장	금융결제원 감사
	'12.03.21	이○○	국제협력관	두산그룹
	'12.05.18	김○○	행정사무관	예금보험공사
	'12.05.21	이○○	과장	신용보증기금 이사
	'12.05.26	김○○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12.07.02	진○○	고위공무원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12.08.02	김○○	일반계약직5호	법무법인 변호사
	'12.08.13	전○○	서기관	Ibk 캐피탈 부사장
	'12.08.17	김○○	일반계약직5호	한국증권금융
	'12.08.31	김○○	일반계약직5호	-
	'12.09.04	오○○	전산사무관	-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2. 최근 2년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및 그 처리결과

은 행 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일	제도개선 권고 내용	처리결과
'10.03.10	**우체국 예금 건전성에 관한 감독기구 협조**	-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기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우리위원회는 기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전달 - 우정사업본부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정
'10.03.10	**예금의 구속행위에 대한 관련자 제재수준 강화**	- 개정 은행법('10.4월 국회 통과, 11.18일 시행)에서 은행의 예금 구속행위(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반드시 과태료(5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제재규정 신설

보 험 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일	제도개선 권고 내용	처리결과
'10.10.19	**【보험피해방지 제도개선 권고】** ○ 보험계약시 계약자에 대한 보험모집자의 설명의무 구체화, 보험설계사 관리감독 강화 및 선지급수수료제도 개선 등	-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안 중 수용가능한 의견의 경우 보험업법 및 시행령등 개정시('11.1.24시행) 반영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일	제도개선 권고 내용	처리결과
'10.7.28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및 대출심사 기준 차별금지】**	- 보험가입 및 대출심사 기준을 조사하여 장애인 차별 조항이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조치
'10.10.4 '10.11.4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등】** ○ 보험상품 이용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규정검토 및 감독강화	-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장애인차별 금지조항 신설(보험업법§97①, '11.1.24시행) - 보험가입심사시 비장애인과 동일기준으로 심사하도록 모집인에 대한 교육강화 및 설계사 자격시험시 관련 문항 출제하도록 조치

제 도 팀

기관명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국민권익 위원회	임의적 절차(진행) 규정의 강행규정화	- 제재규정 강행규정화 대상 선정 · 규정변경예고(~2010.11.12일)
	제재기준의 세분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2010.1.5) -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제재기준을 시행세칙에 반영
	임직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방안 검토	- 주요 선진국 등 해외사례 조사·연구 진행 중
	감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신뢰성 제고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 시행(2010.1.28) - 재판상 공개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3.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졸 채용계획'

□ 은행, 금투회사, 보험사, 여전사 등의 고졸채용계획은 다음과 같이 파악됨

< 2012년 금융권 고졸채용 계획 (단위 : 명) **>**

구분	'12년 계획
은행(18개)	1,130
금투(160개)	362
보험(21개)	1,054
여전(62개)	501
합계	3,047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4.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융회사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및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내역

□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융회사별 휴면예금 · 휴면보험금 연도별 발생현황

○ 은행권 휴면예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은행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산업은행	8	3	9	2	5	3	4	7
농협중앙회	1,254	268	950	166	870	168	736	149
신한은행	691	109	309	58	221	49	217	54
우리은행	1,124	87	803	97	728	81	493	73
SC제일은행	557	76	218	40	200	41	242	52
하나은행	682	95	392	53	407	76	364	66
기업은행	705	68	626	77	609	83	571	88
국민은행	1,772	65	2,003	672	931	192	706	190
외환은행	528	72	1,258	59	702	152	304	83
한국씨티은행	365	23	306	41	258	35	201	58
수협중앙회	39	6	30	6	26	6	210	16
대구은행	95	12	144	32	630	55	190	37
부산은행	326	37	406	43	482	41	199	39
광주은행	114	5	184	13	530	22	0.2	1
제주은행	3	0	3	0	3	0	2	0
전북은행	73	11	67	10	93	12	64	7
경남은행	113	10	74	7	66	6	48	5
HSBC	2	5	3	4	5	2	7	20
총 계	**8,451**	**952**	**7,785**	**1,380**	**6,766**	**1,024**	**4,558**	**945**

○ 생명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은행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한	59	433	54	888	49	717	46	702
알리안츠	23	131	17	184	15	132	9	103
삼성	148	1,788	139	9,612	139	4,272	139	689
흥국	40	89	34	78	34	100	33	106
교보	111	482	84	735	86	1,213	96	1,008
우리아비바	5	13	4	14	4	20	15	27
미래에셋	68	81	62	97	88	146	79	171
KDB	43	53	40	78	34	94	39	110
동부	11	20	11	25	10	33	13	43
동양	48	72	34	84	38	108	53	224
메트라이프	15	35	16	51	25	62	25	70
푸르덴셜	15	51	11	56	11	58	10	75
신한	51	82	59	82	55	97	60	124
PCA	10	7	14	12	12	14	110	27
뉴욕	1	1	1	2	1	2	2	6
ING	32	74	38	95	50	129	56	154
카디프	1	14	4	16	4	12	3	16
녹십자	3	9	3	10	4	12	4	17
라이나	84	35	45	32	41	42	42	52
AIA	80	56	85	82	61	106	55	140
하나HSBC	1	3	1	6	1	8	2	13
KB	1	8	1	9	1	11	1	17
농협	63	178	58	172	59	159	64	250
총 계	**912**	**3,715**	**815**	**12,420**	**822**	**7,547**	**956**	**4,144**

○ 손해보험사 휴면보험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은행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메리츠	47.2	47.3	50.6	62.7	25.2	21.1	16.6	9.3
한화주)	38.2	41.8	20.8	35.2	28.3	50.5	34.4	70.0
롯데	2.1	6.2	2.8	8.4	4.0	11.7	11.8	18.7
그린	2.0	6.3	6.2	9.2	25.1	10.2	33.0	18.0
흥국쌍용	16.8	13.2	45.1	21.6	83.3	35.0	112.5	44.7
삼성	74.2	201.1	81.3	187.1	90.1	199.2	132.1	221.3
현대	41.1	59.1	62.1	65.1	68.1	73.5	118.9	102.4
LIG	29.2	82.5	37.0	83.9	61.7	98.4	137.6	114.7
동부	46.4	58.1	57.2	62.7	49.8	71.1	42.2	79.1
에이스	8.0	1.4	14.0	2.7	18.0	4.6	23.0	7.5
총 계	**305.2**	**517.0**	**377.1**	**538.6**	**453.6**	**575.3**	**662.1**	**685.7**

□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융회사별 휴면예금 · 휴면보험금 연도별 출연현황

○ 휴면예금 출연내역

('12.7.31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기관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휴면예금	은행	한국산업은행	7	2	2	3	1	15
		기업은행	115	48	56	61	57	337
		국민은행	358	264	158	89	81	950
		한국외환은행	129	53	54	109	62	407
		수협중앙회	22	4	5	5	12	48
		농협중앙회	272	201	121	100	91	785
		우리은행	166	65	61	60	51	402
		SC제일은행	96	74	37	37	45	289
		한국씨티은행	40	23	39	31	49	182
		대구은행	46	10	16	45	28	146
		부산은행	30	20	22	21	19	113
		광주은행	5	5	8	20	0	39
		제주은행	1	0	0	0	0	2
		전북은행	20	5	4	4	7	40
		경남은행	12	6	3	3	2	26
		HSBC	1	1	1	1	1	4
		하나은행	202	39	28	19	27	316
		신한은행	242	74	42	35	35	428
		소계	1,766	894	657	641	571	4,529
	저축은행		19	3	2	1	1	26
	중계		1,785	897	659	642	572	4,555
휴면보험금	생보사	우체국보험	0	11	6	6	7	31
		대한생명	106	26	26	36	32	227
		알리안츠생명	64	19	17	19	0	118
		삼성생명	165	40	42	60	62	370
		흥국생명	39	9	15	23	0	86
		교보생명	105	32	63	71	89	359
		신한생명	51	17	20	19	0	108
		녹십자생명	6	1	1	1	0	10
		KB생명	0	1	1	1	2	6
		우리아비바생명	7	1	6	7	8	29
		금호생명	31	13	23	28	0	94
		미래에셋생명	52	31	28	38	58	207

		라이나생명	13	6	18	12	14	63
		AIA생명	7	5	9	13	16	50
		푸르덴셜생명	1	1	2	2	3	9
		ING생명	15	12	14	26	20	87
		하나HSBC생명	0	1	1	2	2	6
		동부생명	12	4	12	15	0	43
		메트라이프생명	6	4	7	8	11	36
		동양생명	22	7	15	20	0	64
		PCA생명	1	1	0	1	3	5
		뉴욕생명	0	0	1	1	0	2
		SH&C생명	0	4	3	3	4	14
		소계	705	247	329	412	332	2,025
	손보사	메리츠화재	33	5	7	14	16	74
		한화손해보험	30	6	13	9	8	66
		롯데손해보험	13	1	2	5	0	21
		그린손해보험	11	3	2	2	0	18
		흥국쌍용화재	10	6	6	10	0	32
		삼성화재	49	35	10	13	17	124
		현대해상	20	13	12	15	15	74
		LIG손해보험	28	13	26	28	17	111
		동부화재	20	14	11	13	18	77
		소계	214	96	87	107	92	596
	중계		919	343	416	519	424	2,621
총계			**2,704**	**1,240**	**1,075**	**1,161**	**996**	**7,176**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5. 2008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 경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2008	S등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A등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B등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C등급	예탁결제원
2009	S등급	
	A등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B등급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2010	S등급	수출입은행
	A등급	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B등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2011	S등급	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A등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B등급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6. 은행연합회가 금융위원회로 제출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 세부현황(지출부 형식의 집행건별, 시간대별 집행세부현황) 및 관련 예산 집행 규정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르면

○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결산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집행 자료를 첨부함

수 지 결 산 서

당기(제36기)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전기(제35기) 200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제 36 (당) 기		제 35 (전) 기	
	예 산 액	결 산 액	예 산 액	결 산 액
[수 입]				
사 원 분 담 금	9,434,638,000	9,437,638,000	8,827,412,000	8,827,412,000
전 기 이 월 금	70,000,000	70,000,000	-	-
이 자 수 익	353,500,000	-	292,000,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220,000,000	493,541,889	314,000,000	377,846,850
잡 수 익	-	63,179,451	-	29,942,038
[합 계]	10,078,138,000	10,064,359,340	9,433,412,000	9,235,200,888
[지 출]				
고 정 자 산 취 득 비	58,597,000	54,675,415	59,753,000	52,026,027
인 건 비	5,022,112,000	4,896,606,535	4,768,072,000	4,531,545,086
경 비	4,610,398,000	3,845,776,329	4,362,043,000	3,640,692,275
전 산 업 무 비	152,031,000	140,817,106	140,544,000	125,297,933
예 비 비	235,000,000	-	103,000,000	-
[소 계]	10,078,138,000	8,937,875,385	9,433,412,000	8,349,561,321
당 기 잉 여 금		1,126,483,955		885,639,567
[합 계]	10,078,138,000	10,064,359,340	9,433,412,000	9,235,200,888

수 지 결 산 서

당기(제37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전기(제36기) 2008년 1월 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제 37 (당) 기		제 36 (전) 기	
	예 산 액	결 산 액	예 산 액	결 산 액
[수 입]				
사 원 분 담 금	9,171,604,000	9,171,999,820	9,434,638,000	9,437,638,000
전 기 이 월 금	100,000,000	100,000,000	70,000,000	70,000,000
이 자 수 익	417,900,000	-	353,500,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70,100,000	460,808,557	220,000,000	493,541,889
잡 수 익	-	40,970,864	-	63,179,451
[합 계]	9,759,604,000	9,773,779,241	10,078,138,000	10,064,359,340
[지 출]				
고 정 자 산 취 득 비	52,555,000	51,141,887	58,597,000	54,675,415
인 건 비	4,807,418,000	4,468,834,633	5,022,112,000	4,896,606,535
경 비	4,508,218,000	3,714,489,742	4,610,398,000	3,845,776,329
전 산 업 무 비	156,413,000	129,111,086	152,031,000	140,817,106
예 비 비	235,000,000	-	235,000,000	-
[소 계]	9,759,604,000	8,363,577,348	10,078,138,000	8,937,875,385
당 기 잉 여 금		1,410,201,893		1,126,483,955
[합 계]	9,759,604,000	9,773,779,241	10,078,138,000	10,064,359,340

수 지 결 산 서

당기(제38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전기(제37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38 (당) 기		제 37 (전) 기	
	예 산 액	결 산 액	예 산 액	결 산 액
[수 입]				
사 원 분 담 금	9,215,804,000	9,215,654,000	9,171,604,000	9,171,999,820
전 기 이 월 금	185,201,000	185,201,000	100,000,000	100,000,000
이 자 수 익	288,500,000	- 주1)	417,900,000	- 주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60,300,000	660,507,916	70,100,000	460,808,557
잡 수 익	-	31,332,084	-	40,970,864
[합 계]	9,749,805,000	10,092,695,000	9,759,604,000	9,773,779,241
[지 출]				
고 정 자 산 취 득 비	56,252,000	46,302,572	52,555,000	51,141,887
인 건 비	4,699,788,000	4,694,313,918	4,807,418,000	4,468,834,633
경 비	4,595,740,000	4,018,459,698	4,508,218,000	3,714,489,742
전 산 업 무 비	163,025,000	145,126,746	156,413,000	129,111,086
예 비 비 주2)	235,000,000	98,300,000	235,000,000	-
[소 계]	9,749,805,000	9,002,502,934	9,759,604,000	8,363,577,348
당 기 잉 여 금		1,090,192,066		1,410,201,893
[합 계]	9,749,805,000	10,092,695,000	9,759,604,000	9,773,779,241

주1)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을 수익사업에서 환급받기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환입시키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계정으로 결산한 것임

주2) 예비비 사용내역(경비 중 세금공과로 전용)

: ₩136,700,000 (SEOUL G20 Business Summit 지원금)

수 지 결 산 서

당기(제39기) 2011년 1월 1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전기(제38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39 (당) 기		제 38 (전) 기	
	예 산 액	결 산 액	예 산 액	결 산 액
[수 입]				
사 원 분 담 금	9,521,376,000	9,521,976,000	9,215,804,000	9,215,654,000
전 기 이 월 금	200,000,000	200,000,000	185,201,000	185,201,000
이 자 수 익	281,000,000	- 주1)	288,500,000	- 주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44,600,000	673,332,986	60,300,000	660,507,916
잡 수 익	-	33,617,108	-	31,332,084
[합 계]	10,046,976,000	10,428,926,094	9,749,805,000	10,092,695,000
[지 출]				
고정자산취득비	52,370,000	32,406,915	56,252,000	46,302,572
인 건 비	4,840,168,000	4,833,700,550	4,699,788,000	4,694,313,918
경 비	4,756,413,000	4,160,682,056	4,732,440,000	4,116,759,698
전 산 업 무 비	163,025,000	146,127,759	163,025,000	145,126,746
예 비 비 주2)	235,000,000	30,000,000	98,300,000	-
[소 계]	10,046,976,000	9,202,917,280	9,749,805,000	9,002,502,934
당 기 잉 여 금		1,226,008,814		1,090,192,066
[합 계]	10,046,976,000	10,428,926,094	9,749,805,000	10,092,695,000

주1)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을 수익사업에서 환급받기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환입시키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계정으로 결산한 것임

주2) 예비비 사용내역(경비중 일반관리용역비로 전용)
: 30,000,000원 (공익 TV프로그램 공동 제작 참여 협찬금)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7. 은행연합회가 금융위원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예산집행 세부현황과 관련, 승인(심사)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 등 관련 조치내역

□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은 2010년 정기감사시에 은행연합회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임

① 기본재산(출자금, 가입금, 적립금등)의 경우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방향 등을 규정화하여 안정적이고도 투명하게 관리·운용할 것

② 물품(비품·소모품)에 대한 구분을 **일관성 있게 명확히 규정**하고 동 규정에 부합하게 회계처리

③ 사원기관에 비하여 **과도한 개인연금 지원 및 사내 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것

④ 사망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시 **순직 등 사망원인을 구분하여 엄격히 지원**토록 하고, 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시 **중복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8.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별첨 : 위원장, 부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2건	11,583	
소 계		16건	6,19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월 2일	공정위와의 업무간담회	143	
	1월 5일	증권시장 동향점검 간담회	364	
	1월 7일	금융시장안전 정책설명 기자 간담회	439	
	1월 8일	금융시장안전 정책설명 기자 간담회	390	
	1월 9일	금융시장 동향전검 간담회	234	
	1월12일	금융시장안전 정책설명 기자 간담회	356	
	1월13일	거시금융상황점검 간담회	679	
	1월13일	금융시장 동향전검 간담회	120	
	1월14일	금융시장안전 정책설명 기자 간담회	508	
	1월15일	금융시장안전 정책설명 기자 간담회	315	
	1월16일	금융시장안전 정책설명 기자 간담회	572	
	1월20일	기업구조개선 간담회	524	
	1월21일	금융시장 동향전검 간담회	262	
	1월22일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 간담회	493	
	1월24일	국내 금융시장동향 점검 간담회	375	
	1월30일	기업재무개선 점검 간담회	423	
소계		4건	2,486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1월 3일	기업구조개선 간담회	420	
	1월19일	09년 금융정책 의견수렴 간담회	1,593	
	1월28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관련 간담회	341	
	1월28일	중소기업금융지원 관련 간담회	132	
소 계		1건	1,1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2월 2일	경조사 화환비	1,100	1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1월 2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부위원장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4건	5,226	
소 계		13건	4,226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월 2일	금융정책 각계 의견 청취	275	
	1월 2일	금융정책 의견 청취 간담회	363	
	1월 5일	금융정책 각계 의견 청취	438	
	1월 8일	금융정책 설명 간담회	315	
	1월 8일	금융정책 각계 의견 청취	185	
	1월 9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	419	
	1월 9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476	
	1월 12일	금융정책 설명 간담회	352	
	1월14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	282	
	1월18일	금융정책 학계 의견 청취	343	
	1월21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182	
	1월21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254	
	1월21일	금융정책 설명 간담회	342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1월 3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위원장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4건	6,746	
소 계		9건	2,82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2월 5일	청년취업을 위한 금융기관 간담회	276	
	2월 9일	기업구조개선관련 업무간담회	490	
	2월11일	증권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236	
	2월13일	금융시장 동향점검 간담회	264	
	2월17일	중소기업대출 점검을 위한 업무감담회	407	
	2월18일	UBS필그램 부회장과의 간담회	273	
	2월19일	거시금융상황점검 간담회	297	
	2월23일	은행법 등 법률 개정을 위한 업무간담회	241	
	2월25일	산업은행법 개정관련 간담회	340	
소계		3건	1,022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2월 6일	기업구조개선 간담회	300	
	2월12일	비상대책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	413	
	2월12일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업무간담회	309	
소 계		1건	1,1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3월 3일	경조사 화환비	1,100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2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부위원장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4건	5,275	
소 계		13건	4,275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2월 3일	주요 금융정책 설명 기자 간담회	410	
	2월 5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194	
	2월 9일	금융정책 설명 간담회	480	
	2월13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490	
	2월13일	금융정책 설명 간담회	571	
	2월15일	주요 금융정책 각계 의견 청취	127	
	2월16일	금융정책 설명 기자 간담회	105	
	2월17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299	
	2월17일	금융정책 학계 의견 청취	244	
	2월18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401	
	2월19일	금융정책 관련 정무위 공청회 참석	855	
	2월19일	금융위 주요 현안 업무 설명	70	
	2월23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29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2월 1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위원장 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3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2건	10,226	
소 계		19건	6,923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3월 1일	국회대비 금융위 현안안건 간담회	132	
	3월 2일	은행건전성 관련 간담회	414	
	3월 3일	저축은행관련 업무간담회	110	
	3월 4일	증권시장동향 점검 관련 간담회	429	
	3월 5일	신용회복지원 설명을 위한 간담회	602	
	3월 6일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업무간담회	264	
	3월 6일	금융시장 동향점검 간담회	191	
	3월 9일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 간담회	385	
	3월 9일	예금자보호법 관련 업무간담회	320	
	3월10일	G20 현안점검 업무 간담회	66	
	3월11일	금융정책현안 업무간담회	932	
	3월11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운영개선 간담회	298	
	3월12일	산업은행법 개정관련 간담회	200	
	3월12일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 간담회	413	
	3월13일	금융정책 현안 설명을 위한 간담회	668	
	3월19일	금융정책설명 업무 간담회	194	
	3월20일	금융정책설명 업무 간담회	475	
	3월24일	금융정책 총리보고를 위한 간담회	680	
	3월31일	금융시장 점검 간담회	150	
소계		1건	303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3월 2일	기업구조조정 관련 간담회	303	
소 계		1건	1,1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4월 7일	경조사 화환비	1,100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3월 2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부위원장 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3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4건	3,820	
소 계		13건	2,820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3월 2일	금융정책 각계 의견 청취	84	
	3월 2일	주요 금융정책 설명 기자 간담회	290	
	3월 3일	금융정책 현안 논의	430	
	3월 5일	금융정책 설명 기자 간담회	93	
	3월 7일	IR 설명 기자 간담회	41	
	3월 7일	IR 설명 기자 간담회	182	
	3월16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164	
	3월17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155	
	3월19일	금융시장 동향 청취	342	
	3월20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150	
	3월23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492	
	3월30일	서민금융정책 의견 청취	397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3월 2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위원장 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4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9건	9,169	
소 계		14건	5,389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4월 1일	금융기관 인턴직원 애로사항 간담회	87	
	4월 3일	증권시장 동향 업무 간담회	485	
	4월 8일	금융정책설명을 위한 간담회	503	
	4월10일	금융정책 입법 관련 업무간담회	253	
	4월10일	기업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385	
	4월14일	거시금융상황점검 간담회	80	
	4월15일	보험산업 관련 업무간담회	139	
	4월16일	한국은행법 등 개정을 위한 업무 간담회	499	
	4월17일	산업은행 법 개정을 위한 업무 간담회	435	
	4월20일	예금자보호법관련 업무관련 간담회	65	
	4월24일	금산법 등 금융관련 법률 간담회	1,343	
	4월28일	금융관련 법률통과를 위한 간담회	508	
	4월29일	금융위 주요 업무 각계 의견 청취	344	
	4월30일	금융위 주요 업무 각계 의견 청취	263	
소계		3건	880	
주요정책수립등을 위한 간부회의, 간담회 등	4월 2일	기업구조개선 간담회	399	
	4월23일	대부업법 관련 정책간담회	260	
	4월27일	금융현안 관련 정책 간담회	221	
소 계		1건	1,1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4월 7일	경조사 화환비	1,100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4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부위원장 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4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2건	5,988	
소 계		21건	4,98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4월 3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222	
	4월 7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470	
	4월 8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46	
	4월 8일	금융정책 학계 의견 청취	39	
	4월 9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149	
	4월14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26	
	4월14일	금융정책 각계 의견 청취	400	
	4월15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709	
	4월16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140	
	4월16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27	
	4월17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35	
	4월20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70	
	4월21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77	
	4월22일	금융정책 재계 의견 청취	360	
	4월24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370	
	4월26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24	
	4월27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540	
	4월27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357	
	4월28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364	
	4월29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540	
	4월30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23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4월 1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위원장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5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4건	11,692	
소 계		22건	8,792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5월 1일	금융기정책 입법관련 간담회	175	
	5월 1일	출입기자 간담회	460	
	5월 1일	증권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230	
	5월 4일	국회 법안관련 담당자 간담회	412	
	5월 6일	금융정책 공조를 위한 간담회	393	
	5월 6일	금융현안 점검을 위한 간담회	310	
	5월 7일	금융정책 설명을 위한 간담회	310	
	5월 7일	금융정책 홍보강화를 위한 간담회	645	
	5월 8일	금융정책 현안점검 간담회	500	
	5월11일	금융시장 동향점검 간담회	199	
	5월12일	금융정책 입법 관련 간담회	325	
	5월12일	기업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458	
	5월13일	채권시장 동향 점검 간담회	445	
	5월13일	금융통화위원 정책간담회	506	
	5월14일	금융정책 국회의원 및 보좌관 설명회	617	
	5월20일	증권업무 간담회	111	
	5월20일	유관기관 업무 간담회	464	
	5월21일	금융정책설명을 위한 언론인 업무 간담회	525	
	5월22일	금융정책설명을 위한 언론인 업무 간담회	382	
	5월27일	금융정책 설명 관련 간담회	235	
	5월27일	금융관련 입법 간담회	920	
	5월28일	금융정책 홍보관련 간담회	170	
소 계		1건	1,1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5월 1일	경조사 화환비	1,100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5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부위원장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5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3건	6,833	
소 계		22건	5,833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5월 1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143	
	5월 1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645	
	5월 4일	금융정책 학계 의견 청취	434	
	5월 6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865	
	5월 7일	금융정책 재계 의견 청취	47	
	5월 8일	금융정책 각계 의견 청취	196	
	5월12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381	
	5월13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228	
	5월13일	금융정책 학계 의견 청취	84	
	5월14일	주요 금융법안 설명	346	
	5월15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	74	
	5월15일	금융정책 업무 논의	440	
	5월18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	880	
	5월22일	금융정책 의견 청취	181	
	5월22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23	
	5월24일	금융감독정책 운용 방향 설명	24	
	5월25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	20	
	5월25일	금융정책 관련 설명	512	
	5월27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	21	
	5월27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	3	
	5월27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간담회	57	
	5월30일	금융법률 관련 설명회	229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5월 1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위원장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6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3건	10,697	
소 계		21건	7,99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6월 1일	금융정책 설명 의원 간담회	154	
	6월 1일	금융정책 설명 언론 간담회	611	
	6월 3일	금융정책 설명 간담회	361	
	6월 3일	금융정책 공조를 위한 업무 간담회	875	
	6월 4일	금융정책 홍보강화를 위한 간담회	413	
	6월 4일	기자단 업무 간담회	572	
	6월 5일	주요 경제연구소장 간담회	476	
	6월 5일	금융정책 홍보 관련 간담회	511	
	6월10일	금융정책 국회의원 등 설명회	379	
	6월10일	채권시장 점검 간담회	190	
	6월11일	금융정책 설명 홍보 간담회	581	
	6월17일	수출입 금융관련 업무 간담회	145	
	6월18일	하반기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간담회	636	
	6월19일	증권시장 동향 관련 간담회	342	
	6월21일	금융정책 점검을 위한 업무간담회	300	
	6월23일	자본시장법 발전을 위한 간담회	450	
	6월24일	금융정책 기자 간담회	130	
	6월25일	금융정책 관련 간담회	334	
	6월27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243	
	6월28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187	
	6월30일	금융정책수립 관련 간담회	107	
소 계		1건	9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6월 2일	경조사 화환비	900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6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부위원장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6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5건	7,549	
소 계		24건	6,549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6월 1일	세계금융시장 동향 논의	237	
	6월 1일	한국 경제금융 상황 논의	980	
	6월 3일	금융시장 동향 설명	111	
	6월 3일	금융시장 동향 설명	610	
	6월 4일	국내외 금융시장 관련 기자간담회	566	
	6월 9일	금융시장 동향 설명 기자 간담회	536	
	6월10일	금융법률 관련 업무 협의	63	
	6월11일	금융시장 동향 청취	25	
	6월11일	금융시장 동향 청취	86	
	6월15일	금융선진화 방향 논의	260	
	6월15일	감독정책 운용 협의	204	
	6월17일	감사업무 협의	490	
	6월19일	해외금융시장 동향 자문	357	
	6월19일	금융위 안건 협의	329	
	6월22일	금융위 예산안 협의	59	
	6월23일	금융법률안 협의	180	
	6월24일	한국 금융시장 현안 설명	42	
	6월24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설명	240	
	6월24일	한국 금융시장 현안 설명	353	
	6월25일	감독정책 운용 협의	183	
	6월26일	세계금융시장 동향 논의	106	
	6월28일	금융정책 각계의견 청취	30	
	6월29일	금융정책 각계의견 청취	9	
	6월30일	한국 금융시장 동향 설명	493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6월 1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위원장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7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5건	8,743	
소 계		13건	4,893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7월 1일	자본시장법 관련 업무간담회	225	
	7월 2일	증권시장 점검 간담회	240	
	7월 5일	금융정책 주요현안검토 간담회	307	
	7월 7일	부동산시장 점검 업무간담회	169	
	7월14일	금융정책 관련 간담회	307	
	7월15일	금융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사 간담회	380	
	7월21일	하반기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간담회	127	
	7월22일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업무 간담회	1,609	
	7월23일	증권시장동향 관련 간담회	191	
	7월23일	금융지주회사법 국회설명 간담회	305	
	7월24일	금융공공기관 발전을 위한 간담회	312	
	7월27일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207	
	7월28일	FSB 대응을 위한 업무 간담회	514	
소 계		1건	2,05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7월 1일	경조사 화환비	2,050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7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부위원장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7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4건	6,956	
소 계		23건	5,956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7월 3일	정보공유활성화 회의	726	
	7월 4일	금융관련 법률안 협의	59	
	7월 6일	금융관련 법률안 및 예산안 협의	593	
	7월 7일	금융감독정책 운용방향 설명 간담회	110	
	7월 8일	금융감독정책 운용방향 설명 간담회	350	
	7월 9일	예산안 협의	353	
	7월10일	세계금융시장 동향 설명	72	
	7월12일	금융관련 법률안 협의	139	
	7월13일	감사현안 설명	293	
	7월13일	금융관련 법률안 설명	284	
	7월14일	금융감독정책 운용방향 설명 간담회	300	
	7월15일	금융감독정책 운용방향 설명 간담회	28	
	7월15일	금융현안 설명	289	
	7월16일	기업구조조정 업무협의	494	
	7월16일	금융시장 동향 청취	232	
	7월17일	금융감독정책 운용방향 설명 간담회	121	
	7월17일	금융감독정책 운용방향 설명 간담회	326	
	7월18일	금융현안 설명	104	
	7월21일	금융현안 설명	285	
	7월23일	금융현안 설명	353	
	7월24일	기업구조조정 업무협의	147	
	7월27일	감사현안 설명	233	
	7월31일	중앙은행 제도개선 협의	65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7월 1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위원장 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8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5건	10,097	
소 계		23건	6,44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8월 4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에 따른 업무간담회	256	
	8월 4일	최근 금융시장 동향 간담회	59	
	8월 6일	금융정책 설명 간담회	360	
	8월10일	금융정책 주요현안검토 업무간담회	135	
	8월11일	금융정책 설명 언론 간담회	70	
	8월11일	금융정책 홍보 관련 간담회	407	
	8월12일	금융정책 설명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443	
	8월13일	금융정책 언론설명 간담회	270	
	8월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간담회	296	
	8월17일	금융감독제도 개선 간담회	255	
	8월1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간담회	106	
	8월19일	금융정책 각계 의견 청취	36	
	8월20일	회계업무 개선관련 간담회	140	
	8월21일	외신기자 간담회	350	
	8월24일	상호저축은행 관련 업무 간담회	330	
	8월24일	국정과제 추진관련 간담회	440	
	8월25일	최근 금융시장 동향 간담회	266	
	8월25일	금융통계자료 개선관련 간담회	370	
	8월26일	금융위원회 주요현안 간담회	556	
	8월27일	금융정책 설명을 위한 언론간담회	218	
	8월28일	시자경제포럼 관계자 간담회	42	
	8월28일	국회 입법관련 간담회	490	
	8월31일	금융관련 법률통과를 위한 간담회	552	
소 계		1건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8월 1일	경조사 화환비	1,850	
소 계		1건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8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부위원장 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8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3건	7,807	
소 계		22건	6,80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8월 1일	국내 금융시장 동향설명 외신기자 간담회	334	
	8월 2일	금융시장 동향 논의	29	
	8월 4일	금융시장 동향 설명 간담회	539	
	8월 4일	감독정책 운용 방향 설명 간담회	34	
	8월11일	금융현안 설명 간담회	224	
	8월12일	감독정책 운용 방향 설명 간담회	576	
	8월12일	금융현안 설명 간담회	240	
	8월13일	국내 증시동향 의견 청취	148	
	8월14일	중앙은행 제도개선 업무협의	330	
	8월14일	금융현안 및 법안 설명 간담회	627	
	8월18일	금융시장 동향 설명 간담회	203	
	8월19일	금융현안 설명 간담회	26	
	8월20일	금융현안 설명 간담회	780	
	8월20일	금융현안 설명 간담회	187	
	8월21일	금융현안 설명 간담회	82	
	8월24일	금융시장 동향 청취	66	
	8월24일	법령개정 관련 업무협의	313	
	8월25일	금융시장 동향 청취	452	
	8월26일	금융현안 설명 간담회	460	
	8월28일	금융정책설명 의원 간담회	427	
	8월31일	중앙은행 제도개선 업무협의	66	
	8월31일	금융현안 설명 간담회	664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8월 1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위원장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9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7건	9,229	
소 계		15건	5,779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9월 3일	금융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 간담회	792	
	9월 3일	금융정책 설명을 위한 언론 간담회	418	
	9월 4일	금융정책 설명을 위한 언론 간담회	547	
	9월 4일	금융정책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786	
	9월 8일	금융위 조직혁신 간담회	104	
	9월 9일	금융정책 홍보를 위한 간담회	640	
	9월 9일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간담회	75	
	9월10일	금융정책 설명 간담회	19	
	9월10일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601	
	9월11일	공자위 사무국 직원 간담회	260	
	9월15일	FSB총회 실무자 간담회	134	
	9월24일	국회 관련 업무 간담회	280	
	9월28일	주요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	320	
	9월29일	보험산업 관계자 간담회	353	
	9월29일	예결위 관련 담당자 간담회	450	
소 계		1건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9월 1일	경조사 화환비	1,650	
소 계		1건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9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부위원장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9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0건	5,470	
소 계		19건	4,470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9월 1일	기업구조조정 업무 협의	21	
	9월 1일	금융현안 설명 간담회	58	
	9월 2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228	
	9월 3일	금융위 안건 협의	66	
	9월 4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148	
	9월11일	금융정책 설명 기자간담회	500	
	9월14일	금융법률안 업무 협의	48	
	9월16일	금융정책 설명 기자간담회	207	
	9월17일	금융시장 동향 청취	192	
	9월18일	금융법률안 업무 협의	30	
	9월22일	금융정책 설명 기자간담회	167	
	9월22일	금융정책 업무 협의	490	
	9월25일	금융법률안 설명 간담회	429	
	9월28일	세계 금융시장 동향 청취	156	
	9월28일	금융정책 설명 의원 간담회	400	
	9월29일	금융정책 설명 기자간담회	450	
	9월29일	금융선진화 방향 논의	187	
	9월30일	금융시장 동향 업무협의	330	
	9월30일	금융시장 동향 청취	363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9월 1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위원장 10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10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4건	10,577	
소 계		22건	7,57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10월5일	하반기 금융정책 추진 간담회	308	
	10월5일	신용정보보호법 관련 간담회	127	
	10월6일	보험업법 개정 관련 간담회	138	
	10월8일	정책금융공사 출범 관련 간담회	435	
	10월8일	자본시장법 관련 간담회	748	
	10월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간담회	1,100	
	10월13일	미소금융 관련 간담회	105	
	10월13일	수출입은행 금융업무 간담회	243	
	10월14일	국제금융시장동향 간담회	105	
	10월14일	공적자금 회수업무 관련 간담회	193	
	10월15일	금융중심지 관련 간담회	178	
	10월15일	G-20 회의 관련 간담회	1,229	
	10월16일	공자위 운영 관련 간담회	129	
	10월16일	금융정책 홍보 간담회	505	
	10월20일	금융산업 선진화 관련 간담회	25	
	10월20일	하반기 금융정책방향 간담회	90	
	10월22일	외신기자 간담회	402	
	10월22일	자본시장 발전방향 간담회	170	
	10월22일	외국인투자 동향 관련 간담회	154	
	10월26일	외부기관파견 국,과장 간담회	480	
	10월28일	산은지주 출범 관련 간담회	323	
	10월28일	유럽금융 협력을 위한 간담회	390	
소 계		1건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10월 1일	경조사 화환비 등	1,200	
소 계		1건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10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부위원장 10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10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3건	5,657	
소 계		22건	4,65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0월1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설명회	312	
	10월5일	중앙은행 제도개선 업무협의	149	
	10월6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간담회	394	
	10월6일	금융현안 업무협의	15	
	10월7일	법안 관련 업무협의	87	
	10월7일	중앙은행 제도개선 업무협의	182	
	10월8일	상정법률안 기자설명	27	
	10월9일	금융감독정책 업무협의	120	
	10월13일	금융정책 관련 업무협의	288	
	10월13일	금융정책 관련 업무협의	140	
	10월16일	금융현안 업무협의	88	
	10월17일	금융정책 업무협의	40	
	10월18일	법률안 업무협의	38	
	10월19일	금융감독정책 기자설명회	391	
	10월20일	금융감독정책 방안 설명	52	
	10월20일	금융 정책 관련 업무 협의	495	
	10월21일	금융정책 관련 업무 협의	15	
	10월22일	금융감독정책 업무협의	116	
	10월26일	G-20 관련 업무협의	459	
	10월27일	G-20 관련 업무협의	1,155	
	10월27일	금융정책관련 업무 협의	85	
	10월31일	금융정책 관련 기자 설명회	9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10월1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위원장 1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1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8건	8,164	
소 계		16건	5,16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11월2일	미소금융 추진 관련 간담회	140	
	11월3일	녹색금융추진 관련 간담회	117	
	11월5일	신용정보공유 관련 업무 간담회	70	
	11월6일	행정인사과 직원간담회	360	
	11월9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간담회	270	
	11월11일	기업재무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145	
	11월11일	금융정책 관련 언론 홍보 간담회	430	
	11월12일	미소금융 관련 간담회	297	
	11월13일	금융지주회사 건전성 추진 간담회	220	
	11월18일	금융정책 입법관련 간담회	143	
	11월19일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200	
	11월19일	2010년 업무보고 관련 간담회	1,070	
	11월19일	금융입법 관련 간담회	490	
	11월20일	금융정보분석원 업무 간담회	292	
	11월23일	금융정책 홍보관련 업무간담회	320	
	11월24일	경제금융대책회의	600	
소 계		1건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11월 1일	경조사 화환비 등	1,200	
소 계		1건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11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부위원장 1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1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0건	5,617	
소 계		19건	4,61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1월1일	법률안 설명회	171	
	11월2일	금융감독정책 업무협의	340	
	11월3일	법률안 업무협의	392	
	11월3일	금융정책 업무협의	433	
	11월6일	기업구조조정 업무협의	415	
	11월7일	상정법률안 기자 설명	24	
	11월7일	상정법률안 기자설명	17	
	11월9일	금융업무 현안 자문회의	24	
	11월9일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협의	644	
	11월10일	금융 현안 설명	300	
	11월10일	금융정책 개선 업무협의	60	
	11월13일	금융정책 기자설명	97	
	11월15일	금융정책 기자설명	39	
	11월18일	증선위 관련 업무협의	330	
	11월18일	금융정책 개선 업무협의	275	
	11월19일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40	
	11월20일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21	
	11월23일	외신기자 간담회	619	
	11월24일	증권시장 발전 방안 논의	176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11월1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위원장 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1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4건	11,408	
소 계		22건	8,40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12월1일	공인회계사 제도개선 간담회	452	
	12월2일	미소금융 추진관련 간담회	248	
	12월3일	녹색금융 추진 점검 간담회	339	
	12월7일	자체평가위원회 간담회	708	
	12월11일	공적자금 관련 업무간담회	117	
	12월11일	예결위 관련 업무간담회	327	
	12월14일	농협 보험관련 간담회	147	
	12월14일	2010년 금융정책 관련 간담회	158	
	12월15일	2010년 업무보고 관련 간담회	215	
	12월17일	금융기관 사외이사제도 관련 간담회	170	
	12월18일	현대차 미소금융 관련 간담회	132	
	12월18일	예보 저축은행계정 관련 간담회	310	
	12월21일	금융입법 관련 간담회	185	
	12월22일	2010년 금융위 업무보고간담회	239	
	12월22일	국회 정무위 의원 간담회	1,026	
	12월23일	미소금융 관련 간담회	184	
	12월23일	2010년 금융위 정책방향 간담회	600	
	12월28일	금융감독체계 관련 간담회	775	
	12월29일	미소금융 활성화 관련 업무간담회	341	
	12월30일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간담회	565	
	12월30일	2009-10년 금융정책 입법 관련 간담회	670	
	12월30일	2009년 금융위 출입 기자 간담회	500	
소 계		1건	1,2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12월 1일	경조사 화환비 등	1,200	
소 계		1건	1,8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12월 1일	위원장실 운영비	1,800	

부위원장 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09년 1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4건	4,604	
소 계		13건	3,60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2월1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간담회	272	
	12월2일	금융정책 설명 기자간담회	399	
	12월3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간담회	180	
	12월4일	금융정책 설명 기자간담회	350	
	12월4일	주요 현안 설명 기자간담회	286	
	12월7일	주요 현안 설명 기자간담회	61	
	12월9일	금융정책 설명 기자간담회	110	
	12월11일	주요 현안 설명 기자간담회	576	
	12월14일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기자간담회	220	
	12월21일	주요 현안 설명 기자 간담회	165	
	12월22일	금융위 경제 정책 논의	465	
	12월23일	증선위 주요현안 논의	191	
	12월24일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기자간담회	329	
소 계		1건	1,000	
위원장실 운영 등 기타경비	12월1일	부위원장실 운영비	1,000	

위원장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6건	9,009	
소 계		24건	7,009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10.1.4	네덜란드 금융청 관계자 간담회	411	
	10.1.4	금융위 간부 간담회	64	
	10.1.5	금융 유관기관 간부 간담회	22	
	10.1.6	미소금융 재단 관련 간담회	39	
	10.1.6	금감원 고위간부 간담회	243	
	10.1.7	기획재정부 금융협력 간담회	500	
	10.1.7	비상경제대책회의 경과 관련 간담회	48	
	10.1.10	FSB 총회 관련 실무 간담회	200	
	10.1.11	금융정책 비전 관련 간담회	401	
	10.1.12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	226	
	10.1.13	미소금융 관련 간담회	229	
	10.1.15	공적자금 관련 간담회	126	
	10.1.15	금융정책 홍보 간담회	761	
	10.1.15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간담회	299	
	10.1.18	금융선진화 방안 관련 간담회	270	
	10.1.21	주요언론사 논설위원 등 간담회	291	
	10.1.22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간담회	302	
	10.1.25	금융선진화 방안 관련 간담회	381	
	10.1.25	보험시장 관련 간담회	82	
	10.1.26	정책금융공사 관련 간담회	172	
	10.1.28	외신기자간담회	1,056	
	10.1.29	금융정책 홍보 관련 간담회	381	
	10.1.29	G20 준비 위원회 업무간담회	21	
	10.1.29	금융정책 홍보 관련 간담회	484	
소 계		1건	2,0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1월 7일	경조사 화환비 등	2,000	

부위원장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7 건	5,906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0.1.4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291	
	10.1.5	금융정책 운용방향 설명	360	
	10.1.5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558	
	10.1.6	금융 법률안 관련 업무 협의	308	
	10.1.6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519	
	10.1.8	비상경제 정부 일주년 성과 및 전망	1,188	
	10.1.8	금융정책 운용방향 설명	122	
	10.1.11	금융 법률안 업무협의	120	
	10.1.12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37	
	10.1.13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60	
	10.1.14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59	
	10.1.20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23	
	10.1.21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334	
	10.1.26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73	
	10.1.27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321	
	10.1.28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363	
	10.1.28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470	

위원장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4,227	
소 계		27건	10,72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2.1	증권시장 동향 관련 간담회	180	
	2.1	공적자금특별법 관련 간담회	470	
	2.2	금융선진화 비전 간담회	334	
	2.2	채권시장 개선 관련 간담회	406	
	2.3	보험시장 관련 실무 간담회	440	
	2.3	금융정책 홍보 간담회	625	
	2.3	주택건설업 동향 관련 간담회	500	
	2.4	금융시장 동향 간담회	75	
	2.5	금융정책 홍보 간담회	312	
	2.8	기업구조조정 간담회	242	
	2.9	대정부 질의 관련 간담회	220	
	2.9	금융정책 비전 간담회	660	
	2.10	금융감독 현안 관련 간담회	250	
	2.11	금융정책 수립 관련 간담회	430	
	2.12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간담회	414	
	2.12	공적자금 관리 관련 간담회	535	
	2.12	미소금융 관련 간담회	291	
	2.15	금융정책 홍보 간담회	413	
	2.16	경제 금융 대책회의	570	
	2.16	아시아개발은행 관련 간담회	545	
	2.17	금융정책 홍보 간담회	605	
	2.17	G-20 회의 관련 금융과제 간담회	342	
	2.19	공적자금 관련 간담회	116	
	2.19	공적자금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644	
	2.24	법사위 대비 간담회	271	
	2.24	미소금융 관련 간담회	219	
	2.26	10년 금융정책 추진전략 간담회	618	
소 계		1건	3,5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경조사 화환비 등	3,500	

부위원장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78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2.2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259	
	2.3	금융위 법안 설명	304	
	2.4	기자 간담회	207	
	2.5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390	
	2.8	금융위 법안 설명	276	
	2.10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110	
	2.16	기자 간담회	450	
	2.17	금융위 법안 설명	201	
	2.17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261	
	2.18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104	
	2.18	기자 간담회	159	
	2.25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63	

위원장 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3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0건	12,058	
소 계		19건	10,80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3.3	미소금융 활성화 관련 간담회	540	
	3.4	주요정책 현안토론 오찬 간담회	447	
	3.5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간담회	420	
	3.8	금융정책 현안토론 간담회	82	
	3.9	경제 금융 대책 회의	700	
	3.10	금융정책 홍보 관련 회의	783	
	3.11	외환시장 건전성 강화 정책 토론회	567	
	3.12	공적자금 관련 조찬 간담회	124	
	3.12	자본시장 동향 점검 오찬 간담회	196	
	3.12	은행법 관련 간담회	390	
	3.16	경제금융 대책회의	390	
	3.17	금융정책 홍보 토론회	579	
	3.19	금융선진화 방안 토론회	320	
	3.22	금융시장 주요 현안 간담회	426	
	3.23	경제금융 대책회의	800	
	3.23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간담회	380	
	3.24	금융시장 현안 점검 간담회	585	
	3.24	금융산업 비전 토론회	866	
	3.25	G-20 준비위원회 회의 후속조치 간담회	531	
	3.26	금융시장 동향 간담회	420	
	3.28	서민금융 종합대책 방안 간담회	214	
	3.29	금융정책 홍보 관련 간담회	308	
	3.31	역대 금융(감독)위원장 간담회	650	
	3.31	서민금융 관련 간담회	90	
소 계		1건	1,25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경조사 화환비 등	1,250	

부위원장 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3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4,020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3.2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42	
	3.8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19	
	3.8	G-20 관련 회의	300	
	3.10	증선위 간담회	330	
	3.12	기자 간담회	303	
	3.16	주택금융 주요현안 논의	60	
	3.16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23	
	3.17	금융위 안건 협의	76	
	3.18	금융위 주요정책 회의	613	
	3.23	금융위 주요정책 설명	198	
	3.23	G-20 관련 회의	528	
	3.25	금융위 주요정책 논의	376	
	3.26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20	
	3.29	금융 현안 기자 설명	104	
	3.31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조찬회의	143	
	3.31	금융위 주요정책 현안 설명	285	

위원장 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4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3건	8,872	
소 계		22 건	7,072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4.1	외화자금 시장 및 수출입 금융동향 간담회	130	
	4.2	금융정책 주요현안 간담회	470	
	4.2	정책홍보 간담회	491	
	4.3	은행법 관련 간담회	66	
	4.8	한은법 등 관련법 논의	211	
	4.8	공자위 현안 토론회	514	
	4.13	국회 준비 내부 회의	45	
	4.14	정무위 소속 의원 간담회	363	
	4.14	서민금융 활성화 관련 간담회	279	
	4.15	정책홍보 관련 간담회	385	
	4.16	G20 재무장관회의 의제 관련 간담회	341	
	4.16	공적자금 관련 조찬 간담회	124	
	4.19	자본시장 국제컨퍼런스 개최 간담회	220	
	4.21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관련 간담회	213	
	4.2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관련 간담회	385	
	4.23	금융현안 기자 간담회	129	
	4.23	거시건전성 규제 간담회	470	
	4.26	외환 금융안전망 방안 간담회	180	
	4.26	금융현안 기자 간사단 간담회	431	
	4.27	금융시장 현안 간담회	760	
	4.29	금융시장 현안 기자 간담회	375	
	4.30	정무위소속 국회의원 간담회	490	
소 계		1건	1,8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경조사 화환비 등	1,800	

부위원장 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4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4건		3,236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4.1	금융위 주요현안 기자 설명회	140	
	4.5	금융위 주요현안 기자 설명회	332	
	4.7	금융위 주요현안 기자 설명회	243	
	4.12	금융위 기자 간담회	492	
	4.13	금융위 주요 정책 기자 설명회	153	
	4.14	금융 현안 기자 설명	119	
	4.15	금융위 주요현안 기자 설명회	107	
	4.20	금융시장 동향 점검 회의	279	
	4.20	정무위 법안소위 설명	394	
	4.21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14	
	4.21	증선위 안건 업무 협의	154	
	4.22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22	
	4.27	금융위 안건 업무 협의	104	
	4.28	금융 현안 기자 설명	283	

위원장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5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6건	7,311	
소 계		15건	3,961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5.1	서민금융관련 현안 간담회	78	
	5.3	정책홍보 간담회	379	
	5.4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간담회	175	
	5.6	남유럽 경제상황 점검 간담회	34	
	5.12	금융선진화를 위한 간담회	301	
	5.13	정책홍보 간담회	275	
	5.14	공적자금관리 관련 간담회	124	
	5.14	G20 금융규제 개혁 관련 간담회	349	
	5.17	FSB 관련 국제금융동향 논의 간담회	124	
	5.19	독일재무부컨퍼런스 관련 업무 간담회	55	
	5.24	주택금융동향 관련 간담회	360	
	5.25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간담회	247	
	5.27	외신기자 홍보 간담회	454	
	5.27	정책홍보 간담회	139	
	5.28	G20 재무장관회의 대비 금융현안 간담회	867	
소 계		1건	3,35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경조사 화환비	3,350	

부위원장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5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5건		3,30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5.7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71	
	5.10	국내 금융시장 동향 설명	137	
	5.10	국내 금융시장 홍보 관련 업무협의	105	
	5.11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 IR	98	
	5.13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194	
	5.14	해외 IR 관련 기자 설명	265	
	5.18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418	
	5.18	기자 간담회	406	
	5.19	국회 상정 법안 설명	109	
	5.19	국회 상정 법안 업무 협의	270	
	5.24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57	
	5.25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62	
	5.26	국내 금융시장 현황 설명	75	
	5.27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400	
	5.31	금융정책 관련 회의	240	

위원장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6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4건	6,863	
소 계		13건	5,523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6.3	금융시장 잠재리스크 평가 간담회	490	
	6.8	보험업법 개정 간담회	490	
	6.9	정책홍보 간담회	454	
	6.10	남유럽 경제상황 점검 간담회	169	
	6.10	G20 회의 대비 금융현안 간담회	759	
	6.11	금융현안 관련 간담회	122	
	6.11	FSB 총회 참석 관련 간담회	450	
	6.18	FRB MOU 체결 간담회	245	
	6.21	중소서민금융 현안 관련 간담회	458	
	6.22	국회 정무위 간담회	296	
	6.23	국제금융규제 개혁 관련 간담회	484	
	6.23	외국환 선물규제 관련 간담회	374	
	6.24	FSB 주요 국제동향 관련 간담회	732	
소 계		1건	1,34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경조사 화환비	1,340	

부위원장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6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8건		3,45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6.1	금융위 안건 업무협의	175	
	6.3	증선위 안건 업무협의	112	
	6.3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54	
	6.7	국내 금융시장 점검 회의	139	
	6.7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463	
	6.8	개정법률안 업무협의	224	
	6.9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72	
	6.10	임시국회 현안 설명	318	
	6.11	증선위 안건 협의	133	
	6.11	금융시장 동향 회의	361	
	6.14	국내 금융시장 점검 회의	155	
	6.15	마이크로 파이낸스 국제컨퍼런스 좌담회	125	
	6.21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297	
	6.22	정무위 업무보고	168	
	6.28	법사위 전체 회의	108	
	6.25	금융위 안건 협의	55	
	6.29	개정법령 기자 설명회	111	
	6.30	개정법령 기자 설명회	188	

위원장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7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2 건	6,538	
소 계		11 건	4,03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7.6	정책홍보 간담회	470	
	7.8	논설위원 정책홍보 간담회	451	
	7.13	캄보디아 재무장관 오찬 간담회	120	
	7.13	국제금융규제 논의동향 관련 간담회	491	
	7.19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책간담회	206	
	7.20	은행세부과 등 국제 논의동향간담회	412	
	7.21	청년취업 활성화관련 간담회	360	
	7.21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간담회	470	
	7.23	미소금융관련 간담회	396	
	7.23	금융회사 경영구조 관련 간담회	340	
	7.26	G20 정상회의 의제관련 간담회	322	
소 계		1건	2,5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경조사 화환비	2,500	

부위원장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7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6건	4,129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7.5	서민금융 현안 기자 설명회	185	
	7.6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336	
	7.8	증선위 안건 협의	233	
	7.12	서민금융 현안 업무 설명	80	
	7.13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50	
	7.14	개정법령 기자 설명회	100	
	7.15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38	
	7.16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90	
	7.16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449	
	7.19	서민금융 업무 설명	105	
	7.19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467	
	7.26	금융위 정제정책 회의	114	
	7.28	개정법령 설명회	489	
	7.29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 협의	298	
	7.29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413	
	7.30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 협의	382	

위원장 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8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2 건	11,787	
소 계		21 건	9,28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8.2	자본시장 관련 현안 간담회	292	
	8.3	미소금융관련 현안 간담회	408	
	8.4	보험관련 현안 간담회	288	
	8.6	G20 관련 금융규제 간담회	390	
	8.9	햇살론 관련 정책간담회	154	
	8.10	G20 정상회의 관련 정책간담회	637	
	8.12	정책홍보 기자간담회	623	
	8.12	정책홍보 기자간담회	387	
	8.13	부동산 정책 관련 간담회	399	
	8.16	공적자금 관리 정책간담회	193	
	8.17	금융감독 관련 현안 간담회	390	
	8.17	금융정책관련 현안 간담회	690	
	8.18	정책홍보 기자간담회	416	
	8.19	금융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간담회	255	
	8.19	금융현안 관련 정책간담회	350	
	8.20	정책홍보 기자간담회	410	
	8.20	금융현안 관련 정책간담회	1,257	
	8.24	은행관련 정책 간담회	294	
	8.26	서민금융정책협의 간담회	611	
	8.27	정책홍보 기자간담회	393	
	8.27	FSB, G20 관련 정책 간담회	450	
소 계		1건	2,5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경조사 화환비	2,500	

부위원장 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8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1건	6,22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8.6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78	
	8.9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48	
	8.9	개정법령 설명회	154	
	8.11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84	
	8.11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424	
	8.12	홍보전략회의	177	
	8.12	국내 금융시장 현안 점검회의	825	
	8.1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 협의	117	
	8.16	금융위 정책동향 회의	214	
	8.17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52	
	8.18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12	
	8.18	금융위 안건 협의	165	
	8.20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86	
	8.24	개정법률안 설명	161	
	8.24	Vice meeting	425	
	8.25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300	
	8.27	금융현안 외신기자 설명	704	
	8.27	금융위 외신 오찬회	704	
	8.29	정기국회 대비 현안 설명	227	
	8.30	개정법률안 기자설명	46	
	8.31	금융위 현안 설명	625	

위원장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9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9 건	8,464	
소 계		18 건	6,93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9.2	금융정책 관련 현안 간담회	185	
	9.3	은행관련 정책간담회	455	
	9.3	금융선진화 합동회의	870	
	9.3	자본시장 관련 정책간담회	112	
	9.6	채무불이행자 취업활성화 간담회	469	
	9.6	보험관련 정책간담회	300	
	9.7	미소금융관련 정책간담회	400	
	9.10	G20 정상회의 금융분야 간담회	390	
	9.10	외환규제관련 정책간담회	490	
	9.13	예결위국회의원 정책간담회	442	
	9.14	햇살론 추진현황 관련 정책 간담회	350	
	9.16	정책홍보 기자간담회	660	
	9.20	FSB 총회참석 관련 현안간담회	322	
	9.24	공적자금 관련 정책 간담회	124	
	9.24	FSB, G20 관련 정책 간담회	593	
	9.24	자산운용관련 정책 간담회	410	
	9.30	국제금융규제동향 간담회	227	
	9.30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관련 정책간담회	135	
소 계		1건	1,53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경조사 화환비	1,530	

부위원장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9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8 건	4,51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9.1	정무위원 금융위 주요정책 및 현안 설명	96	
	9.2	정무위원 금융위 주요정책 및 현안 설명	100	
	9.3	금융정책 홍보 관련 설명	139	
	9.6	정무위원 금융위 주요정책 및 현안 설명	279	
	9.7	증권 분야 조찬 간담회	297	
	9.7	금융현안 업무협의	87	
	9.7	정무위원 금융위 주요정책 및 현안 설명	605	
	9.8	정무위원 금융위 주요정책 및 현안 설명	97	
	9.13	예결위 전체회의	100	
	9.14	정무위원 금융위 주요정책 및 현안 설명	114	
	9.14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526	
	9.16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70	
	9.16	정무위원 금융위 주요정책 및 현안 설명	205	
	9.20	금융위 출입기자 간담회	286	
	9.27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310	
	9.28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450	
	9.28	햇살론 관련 부단체장 오찬회의	560	
	9.30	정무위원 금융위 주요정책 및 현안 설명	96	

위원장 10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10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1건	9,053	
소 계		20건	7,253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10.1	국회 예결산위원회의원 간담회	308	
	10.1	보험심포지엄개최 관련 간담회	491	
	10.4	몽골금융규제위원회 관계자 간담회	492	
	10.5	정책금융공사관련 간담회	329	
	10.6	저축의날 관련 간담회	403	
	10.7	보험업관련 간담회	270	
	10.8	자산유동화법 관련 정책간담회	152	
	10.12	S&P대표 간담회	414	
	10.13	국제금융규제 관련 간담회	405	
	10.14	정책홍보간담회	291	
	10.15	FSB서울총회 관련 간담회	497	
	10.18	BCBS 은행규제관련 정책간담회	226	
	10.19	독일금융감독청장 정책간담회	477	
	10.19	FSB총회개최 관련 간담회	111	
	10.2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SIFI) 후속대책 정책간담회	480	
	10.25	공적자금 관련 정책간담회	125	
	10.25	부동산규제 관련 정책간담회	261	
	10.27	G20정상회의 관련 정책간담회	762	
	10.28	정책홍보 간담회	282	
	10.29	중소기업지원관련 정책간담회	477	
소 계		1건	1,8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경조사 화환비	1,800	

부위원장 10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10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5건	3,035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0.4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58	
	10.5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99	
	10.6	차관회의 안건 협의	25	
	10.7	금융위 출입기자 간담회	309	
	10.8	금융업무협의회	560	
	10.8	금융위 출입기자 간담회	379	
	10.8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62	
	10.12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60	
	10.13	정무위원 금융위 주요정책 및 현안 설명	130	
	10.14	자동차경제 실무 T/F팀 회의	275	
	10.18	서민금융정책 현안 관련 협의	134	
	10.19	금융위 경제정책 논의	153	
	10.20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211	
	10.25	최근 금융 현안 관련 간담회	181	
	10.27	금융위 주요 현안 설명	99	

위원장 1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1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6 건	12,957	
소 계		25건	10,20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11.1	공적자금관련 정책간담회	405	
	11.2	은행관련 정책간담회	250	
	11.4	금융정책관련 정책간담회	191	
	11.5	미소금융관련 정책간담회	351	
	11.5	정책홍보간담회	1,015	
	11.8	G20 정상회의 준비관련 정책간담회	545	
	11.8	정책홍보 기자 간담회	366	
	11.9	JP모건 부회장 정책간담회	205	
	11.11	러시아 금융청 MOU체결 간담회	172	
	11.11	서민금융관련 정책간담회	870	
	11.12	증권시장관련 정책간담회	300	
	11.15	외신기자 정책홍보간담회	423	
	11.17	예금보호 관련 정책 간담회	98	
	11.19	공적자금 관련 정책간담회	460	
	11.19	남유럽재정위기관련 정책간담회	84	
	11.22	자본시장 관련 정책간담회	495	
	11.22	G20 정상회의 후속조치 간담회	959	
	11.23	저축은행관련 정책간담회	298	
	11.24	금융산업 관련 정책간담회	345	
	11.25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간담회	120	
	11.26	금융회사 지배구조관련 정책간담회	530	
	11.26	예산관련 정책간담회	450	
	11.29	금발심 정책분과 간담회	492	
	11.30	IFRS 적용관련 정책간담회	92	
	11.30	금융발전심의회 자본관련 정책간담회	691	
소 계		1건	2,75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11.11	경조사 화환비	2,750	

부위원장 1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1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6 건	2,969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1.1	금융위 증시 동향 파악	145	
	11.2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00	
	11.3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32	
	11.4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29	
	11.8	금융위 현안 설명	134	
	11.9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95	
	11.10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407	
	11.11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24	
	11.22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보고 관련	180	
	11.22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70	
	11.22	예결위 회의	150	
	11.23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41	
	11.24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03	
	11.24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35	
	11.26	금융위 업무현안 기자설명	35	
	11.29	금융위 출입기자 간담회	489	

위원장 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1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4건	10,580	
소 계		23	8,280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12.1	은행관련 정책간담회	250	
	12.1	보험업관련 정책간담회	422	
	12.3	공적자금관련 정책간담회	100	
	12.6	민영화 관련 정책간담회	374	
	12.6	신협관련 정책간담회	427	
	12.7	G20 후속조치 관련 정책간담회	800	
	12.8	금융산업발전 정책간담회	250	
	12.9	정책홍보간담회	250	
	12.10	녹색금융관련 정책간담회	295	
	12.13	파생상품관련 정책간담회	341	
	12.15	공적자금관련 정책간담회	128	
	12.16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간담회	820	
	12.17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책간담회	270	
	12.17	서민금융관련 정책간담회	198	
	12.20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간담회	333	
	12.20	은행발전관련 정책간담회	207	
	12.20	자산운용관련 정책간담회	300	
	12.22	정책홍보간담회	385	
	12.23	저축은행관련 정책간담회	190	
	12.24	공적자금 관련 정책간담회	580	
	12.24	금융회사 지배구조관련 정책간담회	355	
	12.27	금융공기업관련 정책간담회	415	
	12.29	금융위원회발전방안 정책담회	590	
소 계		1건	2,3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경조사 화환비	2,300	

부위원장 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0년 1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2건	2,46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2.2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48	
	12.7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88	
	12.10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30	
	12.13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55	
	12.14	2011 업무계획 회의	148	
	12.15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304	
	12.20	금융위 주요현안 기자설명	89	
	12.21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40	
	12.22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32	
	12.23	출입기자단 간담회	313	
	12.28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64	
	12.29	금융위 사랑봉사단	257	

위원장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2건	7,858	
소 계		21 건	6,55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1.3	자본시장관련 정책간담회	450	
	1.4	은행관련 정책간담회	480	
	1.5	생명보험관련 정책간담회	350	
	1.6	자본시장관련 정책간담회	450	
	1.11	금융규제관련 정책간담회	74	
	1.11	국제금융관련 정책간담회	66	
	1.12	G20 관련 정책간담회	441	
	1.14	정책홍보간담회	282	
	1.15	금융회사 지배구조관련 실무간담회	135	
	1.16	저축은행관련 실무정책간담회	292	
	1.17	정책홍보간담회	480	
	1.18	정책홍보 관련 정책간담회	450	
	1.19	예금자보호관련 정책간담회	72	
	1.19	은행관련 정책간담회	311	
	1.24	미소금융관련 정책간담회	112	
	1.25	금융위원회 발전방안 정책간담회	570	
	1.26	금융관련 정책간담회	213	
	1.27	공적자금 관련 정책간담회	376	
	1.27	정책홍보간담회	385	
	1.28	정책홍보간담회	480	
	1.31	정책홍보간담회	89	
소 계		1건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1.24	경조사 화환비	1,300	

부위원장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5 건	3,02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4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34	
	1.5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50	
	1.5	증권선물위원회 간담회	640	
	1.7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92	
	1.10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65	
	1.11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68	
	1.17	자동차보험 회의	63	
	1.17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17	
	1.18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92	
	1.19	정무위원 금융위 주요정책 및 현안설명	158	
	1.24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45	
	1.25	금융 경제정책 논의	199	
	1.26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93	
	1.28	금융위 및 FIU 정책논의	233	
	1.31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75	

위원장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2 건	11,712	
소 계		21 건	10,062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2.1	가계부채 관련 정책간담회	217	
	2.1	정책홍보간담회	1,317	
	2.7	자산운용관련 정책간담회	491	
	2.7	정책홍보간담회	579	
	2.8	정책홍보간담회	432	
	2.9	공적자금관련 정책간담회	491	
	2.10	정책홍보 간담회	252	
	2.10	금융규제 관련 정책간담회	480	
	2.11	정책홍보 관련 정책간담회	320	
	2.11	예금자보호관련 정책간담회	498	
	2.15	주택담보대출규제 관련 정책간담회	451	
	2.16	저축은행관련 정책간담회	435	
	2.16	미소금융관련 정책간담회	254	
	2.17	정책홍보 간담회	300	
	2.17	금융관련 정책간담회	191	
	2.18	정책홍보 간담회	460	
	2.18	금융제도개선관련 정책간담회	397	
	2.23	정책홍보 간담회	721	
	2.24	외신기자 정책홍보간담회	871	
	2.24	정책홍보 간담회	420	
	2.25	금융시장 동향점검 정책간담회	485	
소 계		1건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2.15	경조사 화환비	1,650	

부위원장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5건	3,649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2.8	전임 위원장 초청 간담회	459	
	2.9	국회의원 금융위 주요정책 및 현안 설명	251	
	2.10	국회의원 금융위 주요정책 및 현안 설명	148	
	2.10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65	
	2.11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32	
	2.14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32	
	2.15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10	
	2.22	국회의원 금융위 주요정책 및 현안 설명	116	
	2.22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54	
	2.23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360	
	2.24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15	
	2.25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50	
	2.25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393	
	2.25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364	
	2.28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300	

위원장 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3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7 건	11,986	
소 계		26 건	10,33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3.1	키코상품관련 정책간담회	120	
	3.2	정책홍보간담회	179	
	3.3	자산운용관련 정책간담회	265	
	3.3	가계부채관련 정책간담회	258	
	3.4	저축은행관련 정책간담회	480	
	3.5	정책홍보간담회	293	
	3.7	금융현안 정책간담회	358	
	3.8	금융관련 현안간담회	313	
	3.10	정책홍보간담회	1,195	
	3.14	자본시장법 관련 정책간담회	369	
	3.14	정책홍보간담회	450	
	3.15	서민금융관련 정책간담회	281	
	3.16	정책홍보간담회	439	
	3.16	외신기자 정책홍보간담회	613	
	3.17	저축은행 관련 정책간담회	679	
	3.17	정책홍보간담회	320	
	3.21	공적자금관련 정책간담회	126	
	3.21	정책홍보간담회	434	
	3.22	정책홍보간담회	860	
	3.24	금융교육 관련 정책간담회	171	
	3.25	자산관리공사관련 정책간담회	210	
	3.28	영등포경찰서 격려 간담회	480	
	3.28	저축은행관련 정책간담회	338	
	3.29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책간담회	154	
	3.30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정책간담회	473	
	3.31	자본시장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480	
소 계		1건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3.8	경조사 화환비	2,400	

부위원장 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3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0 건	4,992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3.3	국회(정무위 전체회의)	85	
	3.4	국회(법사위 전체회의)	52	
	3.8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97	
	3.10	국회(정무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140	
	3.11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64	
	3.14	금융시장 동향 파악(간담회)	425	
	3.15	최근 금융현안 관련 기자 설명	145	
	3.16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61	
	3.17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10	
	3.17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128	
	3.18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35	
	3.22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31	
	3.23	금융위 현안 회의(과장급)	490	
	3.24	외신 오찬간담회	435	
	3.25	금융위 현안 회의(과장급)	490	
	3.24	외신 오찬간담회	435	
	3.25	금융위 현안 회의(국장급)	300	
	3.28	최근 금융현안 협의	163	
	3.29	최근 금융현안 협의	245	
	3.30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261	

위원장 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4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2 건	9,975	
소 계		21 건	7,425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4.1	보험관련 정책간담회	36	
	4.4	정책홍보간담회	225	
	4.7	은행관련 정책간담회	310	
	4.11	저축은행관련 정책간담회	400	
	4.11	한국금융 국제화 관련 정책간담회	485	
	4.12	신용회복관련 정책간담회	178	
	4.12	FSB회의 관련 정책간담회	449	
	4.13	정책홍보 간담회	364	
	4.14	금융법안관련 정책간담회	480	
	4.18	정책홍보간담회	483	
	4.19	자금중개관련 정책간담회	109	
	4.20	금융현안 정책간담회	632	
	4.21	정책홍보간담회	480	
	4.25	정책홍보 간담회	448	
	4.25	가계부채 관련 정책간담회	463	
	4.26	금융공기업 관련 정책간담회	417	
	4.27	퇴직연금관련 정책간담회	135	
	4.27	정책홍보간담회	480	
	4.28	정책홍보간담회	208	
	4.28	정책홍보간담회	480	
	4.29	보증보험관련 정책간담회	163	
소 계		1건	2,55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4.6	경조사 화환비	2,550	

부위원장 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4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1 건	3,481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4.7	최근 금융현안 협의	126	
	4.8	최근 금융현안 설명	169	
	4.15	금융시장 관련 기자 간담회	693	
	4.17	금융시장 합동 간담회	37	
	4.17	금융시장 관련 업무협의	148	
	4.17	금융시장 합동 간담회	134	
	4.19	G20 관련 간담회	208	
	4.20	저축은행 청문회 참석자 간담회	675	
	4.25	최근 금융시장 동향 설명	544	
	4.26	금융시장 현황 설명	394	
	4.27	최근금융시장 현황 설명	353	

위원장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5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6 건	10,554	
소 계		25 건	7,70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5.3	보험관련 정책간담회	148	
	5.4	자본시장관련 정책간담회	280	
	5.4	예금보호관련 정책간담회	66	
	5.6	정책홍보간담회	235	
	5.6	자본시장관련 제도개선간담회	495	
	5.9	공적자금 관련 정책간담회	105	
	5.9	정책홍보간담회	216	
	5.9	국정현안관련 정책간담회	480	
	5.12	신용보증관련 정책간담회	54	
	5.13	가계부채 관련 정책간담회	58	
	5.16	정책홍보간담회	304	
	5.18	정책홍보간담회	658	
	5.18	정책홍보간담회	898	
	5.19	정책홍보간담회	250	
	5.19	은행관련 정책간담회	203	
	5.20	정책홍보간담회	400	
	5.23	저축은행관련 정책간담회	338	
	5.24	금융정책관련 간담회	279	
	5.25	공적자금관련 정책간담회	480	
	5.26	IFRS관련 정책간담회	286	
	5.27	국정현안관련 정책간담회	140	
	5.30	보험관련 정책간담회	59	
	5.30	보이스피싱관련 정책간담회	331	
	5.30	녹색금융관련 정책간담회	451	
	5.31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간담회	490	
소 계		1건	2,85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5.9	경조사 화환비	2,850	

부위원장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5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6 건	3,623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5.1	저축은행 관련 간담회	99	
	5.2	금융시장 업무협의	80	
	5.3	업무협의	29	
	5.11	FSB 관련 업무설명	234	
	5.11	저축은행 관련 업무설명	450	
	5.15	FSC관련 업무협의	115	
	5.18	금융시장 관련 기자 간담회	420	
	5.19	G20 관련 업무 설명	218	
	5.20	금융시장 동향 설명	336	
	5.24	금융시장 동향 설명	505	
	5.26	금융위 주요현안 설명	86	
	5.27	최근 금융시장 동향 설명	164	
	5.27	최근 금융시장 동향 설명	77	
	5.30	금융시장 관련 기자 간담회	632	
	5.30	금융시장 업무협의	70	
	5.31	금융시장 업무협의	108	

위원장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6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0 건	11,067	
소 계		19 건	8,11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6.1	자본시장 제도개선 관련 민관합동 위원회 조찬회의	450	
	6.1	정책홍보간담회	53	
	6.2	정책홍보간담회	526	
	6.6	정책홍보간담회	436	
	6.9	정책홍보간담회	140	
	6.9	정책홍보간담회	480	
	6.13	금융정책 현안 간담회	632	
	6.15	금융발전 정책 간담회	401	
	6.20	공적자금관리 조찬 간담회	105	
	6.20	정책홍보간담회	480	
	6.21	정책홍보간담회	451	
	6.21	정책홍보간담회	900	
	6.22	정책홍보간담회	299	
	6.23	정책홍보간담회	480	
	6.27	정책홍보간담회	900	
	6.28	국제금융시장통합 관련 간담회	62	
	6.28	황해경제개발관련 정책 간담회	300	
	6.29	은행관련 정책 간담회	354	
	6.30	금융현안 법안 관련 정책 간담회	668	
소 계		1건	2,95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6.20	경조사 화환비	2,950	

부위원장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6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0 건	6,265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6.2	저축은행 관련 간담회	100	
	6.2	금융시장 현황 설명	395	
	6.3	금융시장 현황 설명	279	
	6.8	자본시장 간담회	594	
	6.10	금융시장 현황 협의	378	
	6.13	국회 일정 설명	30	
	6.15	금융시장 현황 설명	260	
	6.16	금융시장 현황 협의	213	
	6.16	금융시장 현황 설명	400	
	6.17	금융시장 관련 설명	182	
	6.20	금융시장 현황 설명	150	
	6.21	자본시장 관련 합동간담회	100	
	6.21	외신기자 간담회	558	
	6.22	저축은행 관련 간담회	727	
	6.23	가계부채 관련 협의	190	
	6.27	여직원 간담회	489	
	6.27	최근 금융시장 현황설명	220	
	6.29	저축은행 간담회	530	
	6.30	금융시장 현황 설명	110	
	6.30	금융시장 현황 설명	360	

위원장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7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6 건	14,790	
소 계		25 건	11,290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7.1	금융중심지 추진 오찬 간담회	281	
	7.1	외신지국장 정책홍보 간담회	480	
	7.4	국회 한은법 등 현안 조찬 설명회	200	
	7.4	정책홍보간담회	480	
	7.6	정책홍보간담회	495	
	7.6	정책홍보간담회	555	
	7.7	정책홍보간담회	299	
	7.8	보험 관련 오찬 간담회	64	
	7.8	저축은행 관련 만찬 간담회	442	
	7.11	정책홍보간담회	480	
	7.11	정책홍보간담회	883	
	7.12	금융산업발전 현안 오찬 간담회	245	
	7.12	정책홍보간담회	480	
	7.13	자본시장법 개정관련 오찬 간담회	325	
	7.14	저축은행, 한은법 관련 오찬 간담회	370	
	7.14	정책홍보간담회	723	
	7.15	금융현안법안 오찬 간담회	102	
	7.18	정책홍보간담회	950	
	7.20	공적자금관련 조찬 간담회	114	
	7.22	정책홍보간담회	923	
	7.25	정책홍보간담회	754	
	7.26	정책홍보간담회	480	
	7.27	저축은행 관련 정책간담회	242	
	7.27	정책홍보간담회	480	
	7.28	예금보험 관련 오찬 간담회	443	
소 계		1건	3,5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7.13	경조사 화환비	3,500	

부위원장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7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9 건	2,016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7.1	금융시장 현황 설명	74	
	7.4	금융시장 현황 설명	208	
	7.5	최근 금융시장 현황 설명	217	
	7.7	금융 현황 설명	258	
	7.14	금융시장 동향 설명	233	
	7.22	FSB 관련 설명	246	
	7.27	기자단 간담회	511	
	7.27	저축은행 간담회	100	
	7.29	금융 현황 협의	169	

위원장 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8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7 건	10,859	
소 계		26 건	7,509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8.2	금융시장동향점검 오찬 간담회	62	
	8.3	저축은행 관련 오찬 간담회	125	
	8.4	정책홍보간담회	179	
	8.4	은행관련 정책간담회	400	
	8.5	가계부채 관련 오찬 간담회	428	
	8.8	저축은행 피해 구제 관련 조찬 간담회	328	
	8.8	신용회복 관련 오찬 간담회	90	
	8.9	정책홍보간담회	368	
	8.11	자본시장법 관련 만찬 간담회	177	
	8.15	공적자금관리 관련 오찬 간담회	148	
	8.16	저축은행 피해구제 관련 만찬 간담회	466	
	8.17	정책홍보간담회	400	
	8.17	보험관련 만찬 간담회	207	
	8.19	을지훈련 관련 오찬 간담회	80	
	8.19	농어민 금융지원 관련 만찬 간담회	484	
	8.22	국회 예결위 관련 오찬 간담회	100	
	8.22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관련 만찬 간담회	235	
	8.24	금융위 현안 법안 관련 오찬 간담회	350	
	8.26	금융정책 현안 오찬 간담회	96	
	8.26	정책홍보간담회	870	
	8.29	금융위 현안 법안 관련 오찬 간담회	293	
	8.29	민영화 등 공적자금관리 관련 만찬 간담회	420	
	8.30	금융위 현안 법안 관련 오찬 간담회	271	
	8.30	예금보험 관련 만찬 간담회	136	
	8.31	금융위 현안 법안 관련 오찬 간담회	300	
	8.31	구조조정 관련 만찬 간담회	496	
소 계		1건	3,35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8.8	경조사 화환비	3,350	

부위원장 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8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3 건	4,72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8.1	금융시장 현황 설명	182	
	8.3	국정조사 업무보고	55	
	8.4	금융시장 현황 설명	138	
	8.7	저축은행 업무협의	27	
	8.8	국회 업무보고	62	
	8.8	최근 금융시장 동향 설명	200	
	8.9	저축은행 간담회	100	
	8.9	저축은행 관련 업무협의	125	
	8.9	국정조사 업무보고	37	
	8.9	저축은행 조찬 회의	120	
	8.10	국정조사 업무보고	63	
	8.11	국정조사 업무보고	216	
	8.16	금융시장 현황 설명	490	
	8.17	금융시장 업무협의	264	
	8.21	저축은행 업무협의	220	
	8.24	출입기자 간담회	498	
	8.24	예결위 업무보고	63	
	8.25	금융시장 현안 설명	466	
	8.25	예결위 업무보고	54	
	8.26	외신기자 간담회	583	
	8.29	금융 현안 설명	210	
	8.30	최근 금융시장 동향 설명	270	
	8.31	금융시장 동향 설명	284	

위원장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9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0 건	8,894	
소 계		19 건	6,59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9.1	저축은행 관련 오찬 간담회	378	
	9.6	금융위 쟁점 법안 관련 오찬 간담회	357	
	9.8	정책홍보간담회	900	
	9.9	금융산업 관련 정책간담회	480	
	9.14	정책홍보간담회	338	
	9.17	저축은행 관련 만찬 간담회	165	
	9.18	금융위저축은행안건 관련 오찬 간담회	77	
	9.20	국정감사 관련 만찬 간담회	480	
	9.21	정책홍보간담회	431	
	9.21	정책홍보간담회	967	
	9.22	공적자금관리 관련 오찬 간담회	68	
	9.23	저축은행대책 관련 오찬 간담회	242	
	9.26	보험이슈 관련 조찬 간담회	50	
	9.27	신용불량자 신용회복관련 오찬 간담회	185	
	9.28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오찬 간담회	197	
	9.29	은행장 조찬 간담회	320	
	9.29	금융 현안 관련 만찬 간담회	397	
	9.30	저축은행 대책 관련 오찬 간담회	112	
	9.30	국내.외 금융시장 현황 및 국내 주식시장 대책 관련 만찬 간담회	450	
소 계		1건	2,3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9.16	경조사 화환비	2,300	

부위원장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9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7 건	5,89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9.6	금융시장 현안 설명	163	
	9.6	금융시장 현안 설명	97	
	9.7	금융시장 현안 설명	127	
	9.8	금융정책국 업무보고	410	
	9.8	저축은행 간담회	447	
	9.9	저축은행 업무보고	24	
	9.9	국 업무보고	171	
	9.13	국 업무보고	162	
	9.14	국감 업무보고	99	
	9.15	주무 사무관 업무보고	166	
	9.16	금융시장 현황 설명	308	
	9.17	국정감사 업무보고	47	
	9.17	국정감사 업무보고	21	
	9.18	국감 업무보고	71	
	9.19	최근 금융시장 현안 설명	412	
	9.19	국감 업무보고	113	
	9.21	금융시장 현안 설명	397	
	9.22	금융시장 현안 설명	87	
	9.22	기자 간사단 간담회	480	
	9.22	직원 격려(기획재정, 중소과)	354	
	9.23	국회 일정 업무보고	44	
	9.25	저축은행 간담회	85	
	9.26	금융시장동향 간담회	160	
	9.27	금융시장 동향 설명	180	
	9.27	금융시장 동향 설명	216	
	9.29	각 국 업무보고	495	
	9.30	주요외신 오찬간담회	558	

위원장 10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10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6 건	12,477	
소 계		25 건	9,67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10.3	저축은행 관련 오찬 간담회	75	
	10.5	정책홍보간담회	640	
	10.6	가계대출 저신용자 구제 관련 만찬 간담회	282	
	10.7	금융위 국정감사 관련 오찬간담회	330	
	10.7	금융위 국정감사 관련 만찬간담회	450	
	10.10	공적자금 관리 관련 오찬 간담회	460	
	10.10	생명보험업 관련 만찬 간담회	172	
	10.11	정책홍보간담회	480	
	10.12	자금세탁방지 관련 오찬 간담회	293	
	10.12	우체국금융업 관련 만찬 간담회	480	
	10.13	자본시장관련 만찬 간담회	238	
	10.17	자본시장법 관련 만찬 간담회	480	
	10.18	중소기업지원 관련 오찬 간담회	340	
	10.19	캠코 기금 관련 만찬 간담회	176	
	10.20	국회 대정부질의 관련 만찬 간담회	122	
	10.21	금융위 관련 법률 자문 만찬 간담회	480	
	10.24	은행업 관련 오찬 간담회	480	
	10.24	정책홍보간담회	480	
	10.25	정책홍보간담회	950	
	10.26	정책홍보간담회	480	
	10.26	자본시장 관련 만찬 간담회	408	
	10.27	정책홍보간담회	490	
	10.28	국내증시 상황 관련 오찬 간담회	262	
	10.28	정책금융 관련 만찬 간담회	139	
	10.31	정책홍보간담회	490	
소 계		1건	2,8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10.24	경조사 화환비	2,800	

부위원장 10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10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1 건	5,500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0.6	금융정책알리미단 간담회	426	
	10.9	국회 업무보고	59	
	10.10	금융시장 현황 설명	132	
	10.11	금융 현황 설명	181	
	10.12	금융시장 동향 설명	402	
	10.13	금융시장 현안 설명	174	
	10.14	출입기자 간담회	480	
	10.17	출입기자 간담회	316	
	10.18	저축은행 관련 간담회	415	
	10.18	출입기자 간담회	209	
	10.19	시장 동향 설명	194	
	10.21	금융시장 현황 설명	174	
	10.23	정무위 업무보고	216	
	10.24	저축은행 관련 설명	211	
	10.25	정무위 업무보고	85	
	10.26	증선위 위원 간담회	452	
	10.27	금융시장 동향 설명	371	
	10.28	금융시장 현황 설명	187	
	10.28	출입기자단 간담회	307	
	10.30	저축은행 관련 설명	162	
	10.31	금융시장 현황 설명	347	

위원장 1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1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1 건	8,760	
소 계		20 건	5,960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11.1	정책홍보간담회	352	
	11.1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관련 만찬 간담회	480	
	11.2	금융정책 관련 만찬 간담회	135	
	11.3	정책홍보간담회	255	
	11.3	유럽 신용강등 등 금융위기 국내여파관련 만찬 간담회	365	
	11.4	자산관리공사 관련 오찬 간담회	88	
	11.4	국내증시 관련 만찬 간담회	397	
	11.7	금융위 예결위 관련 만찬 간담회	130	
	11.7	금융위 예결위 관련 만찬 간담회	119	
	11.8	금융위 예결위 관련 만찬 간담회	115	
	11.9	저축은행관련 만찬 간담회	95	
	11.10	정책홍보간담회	450	
	11.11	금융위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249	
	11.14	금융위 예결위 관련 만찬 간담회	139	
	11.15	정책홍보간담회	550	
	11.17	금융위 정무위 관련 오찬 간담회	39	
	11.17	정책홍보간담회	840	
	11.18	보험관련 오찬 간담회	52	
	11.18	정책홍보간담회	760	
	11.30	생명 보험 관련 오찬 간담회	350	
소 계		1건	2,8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11.23	경조사 화환비	2,800	

부위원장 1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1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4 건	7,03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1.1	출입기자 간담회	259	
	11.3	출입기자 간담회	264	
	11.3	금융시장 현황 설명	469	
	11.4	금융시장 현황 설명	195	
	11.7	출입기자단 간담회	457	
	11.7	예결위 업무보고	59	
	'11.8	수습사무관 간담회	265	
	11.9	정무위 업무보고	220	
	11.10	저축은행 관련 설명	213	
	11.11	카드수수료 관련 업무협의	280	
	11.15	출입기자 간담회	185	
	11.16	출입기자 간담회	665	
	11.18	금융시장 동향 설명	180	
	11.20	예결위 업무보고	100	
	11.21	시장 동향 설명	79	
	11.21	예결위 업무보고	67	
	11.22	금융시장 현황 설명	227	
	11.23	출입기자 간담회	405	
	11.24	출입기자 간담회	700	
	11.25	출입기자 간담회	344	
	11.25	국회 업무보고	459	
	11.28	출입기자 간담회	441	
	11.29	출입기자 간담회	290	
	11.30	금융시장 현황 설명	215	

위원장 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1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9 건	13,679	
소 계		28 건	9,479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2.1	가계대출 관련 오찬 간담회	107	
	12.1	예금자 보호 관련 만찬 간담회	490	
	12.2	금융 정책 홍보 관련 오찬 간담회	264	
	12.5	정책 홍보 간담회	338	
	12.5	정책 홍보 간담회	381	
	12.6	정책 홍보 간담회	768	
	12.7	금융위 관련 법률자문 오찬 간담회	735	
	12.7	국내증시동향 관련 만찬 간담회	65	
	12.8	국회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57	
	12.12	정책 홍보 간담회	493	
	12.13	2012년도 금융정책방향 관련 오찬 간담회	461	
	12.14	국제금융관련 만찬 간담회	349	
	12.15	정책 홍보 간담회	289	
	12.15	금융위 현안 관련 만찬 간담회	295	
	12.16	서민 지원 금융 정책 관련 오찬 간담회	234	
	12.19	정책 홍보 간담회	313	
	12.19	김정일 사후 보안대책관련 만찬간담회	84	
	12.20	북한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국내 경제 관련 만찬 간담회	341	
	12.21	정책 홍보 간담회	640	
	12.21	국제정세에 따른 국내 증시 현안 관련 만찬 간담회	383	
	12.22	생명 보험 관련 오찬 간담회	223	
	12.22	정책 홍보 간담회	490	
	12.23	청사 보안 관련 오찬 간담회	455	
	12.23	정책 홍보 간담회	671	
	12.26	2011년 공적자금 관련 만찬 간담회	257	
	12.27	2012년 업무계획 관련 오찬 간담회	138	
	12.29	국회 정무위 관련 오찬 간담회	120	
	12.30	2012년 업무계획 관련 조찬 간담회	38	
소 계		1건	4,2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12.19	경조사 화환비	4,200	

부위원장 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1년 1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9 건	6,203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2/1	금융시장 현황 설명	147	
	12/2	금융시장 현황 설명	138	
	12/5	금융시장 동향 설명	213	
	12/5	금융시장 동향 설명	250	
	12/6	금융 현안 설명	458	
	12/7	출입기자 간담회	759	
	12/8	출입기자 간담회	364	
	12/12	금융시장 현황 설명	379	
	12/13	금융시장 현황 설명	261	
	12/20	금융위 현안 설명	484	
	12/21	금융시장 현황 설명	480	
	12/21	금융위 업무보고	16	
	12/22	금융위 현황 설명	248	
	12/22	출입기자 간담회	704	
	12/23	금융시장 동향 설명	336	
	12/23	출입기자 간담회	219	
	12/26	VIP 업무보고	391	
	12/27	금융시장 현황 설명	216	
	12/28	VIP 업무보고	140	

위원장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3 건	12,526	
소 계		22 건	8,026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3	1.3	금융현안 자문 관련 만찬 간담회	132	
	1.4	정책홍보 간담회	494	
	1.5	금융 전산 안전 및 신용정보 관리 관련 오찬 간담회	250	
	1.6	정책홍보 조찬 간담회	388	
	1.6	정책홍보 간담회	378	
	1.6	소비자 보호 관련 만찬 간담회	490	
	1.9	정책홍보 간담회	981	
	1.10	가계부채 관련 오찬 간담회	410	
	1.10	금융 현안 관련 만찬 간담회	68	
	1.12	정책홍보 간담회	345	
	1.13	은행법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353	
	1.16	공적자금운용 계획 관련 오찬 간담회	413	
	1.17	정책홍보 간담회	495	
	1.17	금융위 정책 협조 요청 관련 만찬 간담회	480	
	1.18	금융 정책 자문 오찬 간담회	235	
	1.18	정책홍보 간담회	950	
	1.19	자본시장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180	
	1.19	저신용자 신용회복 관련 만찬 간담회	146	
	1.20	금융위 사랑봉사단 활동 관련 오찬 간담회	62	
	1.27	국내 자본시장 관련 오찬 간담회	270	
	1.30	금융권역별 감사 현안 관련 조찬 간담회	66	
	1.31	금융 투자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440	
소 계		1건	4,5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1.16	경조사 화환비	4,500	

부위원장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1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8 건	8,819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1.3	2012 업무설명 간담회	239	
	1.4	출입기자 간담회	438	
	1.4	금융시장 현황 설명	210	
	1.5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	450	
	1.5	금융시장 현황 설명	260	
	1.6	금융시장 현황 설명	144	
	1.6	금융시장 동향 설명	80	
	1.6	자본시장국 업무보고	650	
	1.7	업무협의	66	
	1.9	금융시장 현황설명	407	
	1.10	금융시장 간담회	468	
	1.10	경제금융점검회의 보고	165	
	1.12	VIP 업무보고	350	
	1.12	금융정책국.서비스국 업무보고	490	
	1.13	금융시장 현황 설명	80	
	1.16	금융시장 현황 설명	404	
	1.17	론스타 관련 설명	150	
	1.18	금융위 사랑봉사단 격려	360	
	1.19	출입기자 간담회	534	
	1.19	금융시장 동향 설명	317	
	1.20	금융시장 동향 설명	191	
	1.25	녹색위 업무보고	141	
	1.25	금융시장 현안 설명	490	
	1.26	론스타 관련 설명	309	
	1.27	자본시장법 설명	151	
	1.27	출입기자 간담회	560	
	1.30	금융시장 현안 설명	363	
	1.31	금융시장 동향 설명	352	

위원장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4 건	7,094	
소 계		13 건	4,14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2.1	정책 홍보 간담회	245	
	2.1	정책 홍보 간담회	490	
	2.2	정책 홍보 간담회	388	
	2.9	미국 경제상황 관련 오찬 간담회	187	
	2.10	보험료 인하 관련 간담회	145	
	2.10	예금자 보호 관련 만찬 간담회	480	
	2.14	정책 홍보 간담회	417	
	2.16	몽골 금융현안 관련 만찬 간담회	470	
	2.20	국내 투자 환경 관련 오찬 간담회	104	
	2.22	정책 홍보 간담회	470	
	2.23	정책 홍보 간담회	152	
	2.24	신용카드 관련 오찬 간담회	344	
	2.27	서민금융 정책 관련 만찬 간담회	252	
소 계		1건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2.20	경조사 화환비	2,950	

부위원장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2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2 건	8,53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2.1	금융시장 현황 설명	391	
	2.1	금융시장 업무보고	629	
	2.3	금융시장 현황 설명	275	
	2.3	금융현황 관련 설명	737	
	2.6	금융시장 동향 설명	394	
	2.6	저축은행 관련 협의	198	
	2.8	금융시장 설명	444	
	2.9	금융시장 현황 설명	378	
	2.13	금융시장 동향 설명	205	
	2.15	금융현안 설명	292	
	2.15	출입기자 간담회	722	
	2.16	금융시장 현안 설명	716	
	2.17	출입기자간담회	61	
	2.20	금융시장 동향 설명	286	
	2.20	금융시장 동향 설명	312	
	2.22	출입기자 간담회	1,200	
	2.23	금융시장 현황 설명	242	
	2.24	주무과장 간담회	332	
	2.26	여전법 관련 회의	190	
	2.28	금융시장 동향 설명	75	
	2.28	금융시장 현안 업무협의	380	
	2.29	신입직원 간담회	75	

위원장 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3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0건	6,358	
소 계		20건	6,35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3.5	국제 금융 협력 업무 간담회	450	
	3.9	정책홍보 간담회	185	
	3.12	공적자금 관련 정책간담회	149	
	3.12	은행 산업 관련 정책간담회	217	
	3.13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정책간담회	236	
	3.14	정책홍보 간담회	420	
	3.15	가계 대출 관련 정책간담회	205	
	3.15	정책홍보 간담회	911	
	3.16	정책홍보 간담회	94	
	3.21	서민 금융 관련 오찬 간담회	250	
	3.21	금융조세 관련 정책 간담회	141	
	3.23	정책홍보 간담회	622	
	3.26	카드수수료 관련 정책 간담회	140	
	3.26	중소기업 금융 지원 관련 정책간담회	209	
	3.27	정책홍보 간담회	288	
	3.27	글로벌 경제 동향 점검 간담회	490	
	3.28	금융 현안 업무 협의	495	
	3.28	가계대출 관련 정책간담회	480	
	3.29	자본시장 현안 점검 오찬 간담회	79	
	3.29	정책홍보 간담회	297	

부위원장 3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3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8 건	5,471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3/2	금융시장 현안 설명	364	
	3/5	금융시장 동향 설명	237	
	3/6	금융시장 동향 설명	122	
	3/6	금융시장 현안 설명 간담회	494	
	3/7	금융시장 현안 설명 간담회	400	
	3/8	금융시장 동향 설명	132	
	3/9	금융시장 동향 설명	489	
	3/12	금융시장 현안 설명	347	
	3/14	자본시장 조찬 간담회	113	
	3/15	금융시장 동향 설명	174	
	3/16	출입기자 간담회	330	
	3/19	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	418	
	3/20	금융시장 업무보고	350	
	3/23	금융시장 동향 설명	264	
	3/26	금융시장 현황 설명	78	
	3/28	금융시장 현황 설명	271	
	3/29	금융시장 동향 설명	158	
	3/29	기자 간담회	730	

위원장 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4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5 건	13,748	
소 계		24 건	10,298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4.3	정책홍보 간담회	495	
	4.4	예금자보호관련 오찬 간담회	495	
	4.4	정책홍보 간담회	790	
	4.5	정책홍보 간담회	362	
	4.6	금융 정책 관련 간담회	272	
	4.9	정책홍보 간담회	468	
	4.9	몽골 금융감독위원장 방한 환영 만찬	954	
	4.10	몽골 금융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56	
	4.10	정책홍보 간담회	457	
	4.12	정책홍보 간담회	376	
	4.12	자본시장법 관련 만찬 간담회	480	
	4.13	금융위 법안관련 오찬 간담회	181	
	4.16	정책홍보 간담회	408	
	4.16	정책홍보 간담회	498	
	4.17	가계대출 관련 간담회	62	
	4.17	정책홍보 간담회	352	
	4.18	불법사금융 관련 오찬 간담회	490	
	4.18	금융산업 관련 만찬 간담회	450	
	4.19	서민 금융정책 오찬 간담회	165	
	4.20	금융산업 발전방안 오찬 토론	1,290	
	4.23	금융 선진화 관련 오찬 간담회	52	
	4.25	정책홍보 간담회	275	
	4.25	생명보험업 관련 만찬 간담회	400	
	4.26	공적자금 회수 관련 오찬 간담회	470	
소 계		1건	3,45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4.5	경조사 화환비	3,450	

부위원장 4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4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9 건	6,211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4.2	금융시장 현황 설명	286	
	4.4	금융시장 현황 설명	249	
	4.4	금융시장 동향 설명	176	
	4.5	금융시장 동향 설명	429	
	4.6	출입기자 간담회	703	
	4.12	저축은행 업무협의	392	
	4.15	금융위 현안 업무협의	33	
	4.16	금융위 조직 활성화 방안 간담회	593	
	4.17	금융시장 현황 설명	96	
	4.18	금융시장 현황 설명	443	
	4.19	최근 금융시장 동향	292	
	4.20	외신기자 간담회	283	
	4.23	금융시장 현황 설명	282	
	4.23	금융시장 동향 설명	563	
	4.24	금융시장 현황 설명	224	
	4.26	금융시장 동향 설명	268	
	4.27	금융위 업무보고	222	
	4.27	금융위 업무보고	167	
	4.30	금융시장 현황 설명	510	

위원장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5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30 건	13,917	
소 계		29 건	10,417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5.1	경제금융대책 오찬회의	460	
	5.2	정책 홍보 간담회	331	
	5.3	국회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147	
	5.3	코넥스 신설 관련 만찬 간담회	850	
	5.4	예금자보호 정책 관련 간담회	413	
	5.6	저축은행 관련 오찬 간담회	74	
	5.7	정책 홍보 간담회	212	
	5.8	저축은행 예금보호 관련 오찬 간담회	288	
	5.9	정책 홍보 간담회	490	
	5.11	대학생 금융정책알리미 오찬 간담회	490	
	5.11	신설 자본시장 관련 만찬 간담회	256	
	5.14	정책 홍보 간담회	430	
	5.14	정책 홍보 간담회	470	
	5.15	정책 홍보 간담회	490	
	5.16	국회 정무위 관련 만찬 간담회	490	
	5.17	회계기준 관련 오찬 간담회	225	
	5.17	금융보안 관련 만찬 간담회	325	
	5.18	정책 홍보 간담회	489	
	5.18	금융산업 발전방안 만찬 간담회	320	
	5.21	정책 홍보 간담회	162	
	5.21	은행업 관련 정책 간담회	450	
	5.23	산은금융지주 선진화 관련 만찬 간담회	265	
	5.24	정책 홍보 간담회	496	
	5.25	가계부채 관련 오찬 간담회	89	
	5.25	보험업 발전방안 만찬 간담회	178	
	5.29	생명보험 발전방안 만찬 간담회	450	
	5.30	공적자금 관리 방안 만찬 간담회	337	
	5.31	정책 홍보 간담회	250	
	5.31	정책 홍보 간담회	490	
소 계		1건	3,5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5.2	경조사 화환비	3,500	

부위원장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5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2 건	6,68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5.1	금융시장 현황 설명	206	
	5.1	금융시장 현황 설명	581	
	5.2	기자 간담회	576	
	5.3	경남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138	
	5.4	금융시장 현황 설명	413	
	5.5	저축은행 업무협의	86	
	5.7	금융시장 현황 설명	88	
	5.8	금융시장 현황 설명	232	
	5.8	최근 금융시장 현황 설명	536	
	5.9	금융위 과장 업무협의	249	
	5.9	금융시장 현황 설명	310	
	5.10	금융시장 현황 설명	319	
	5.11	금융시장 현황 설명	127	
	5.11	출입기자 간담회	289	
	5.17	금융시장 동향 설명	470	
	5.21	금융시장 현안 설명	288	
	5.24	금융시장 현안 설명	198	
	5.24	금융시장 현안 설명	610	
	5.25	금융시장 현안 설명	30	
	5.25	금융시장 동향 설명	360	
	5.25	금융위 법안 설명	334	
	5.31	금융시장 동향 설명	244	

위원장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6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18 건	9,659	
소 계		17 건	6,199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6.1	국회 현안 관련 만찬 간담회	391	
	6.5	정책 홍보 간담회	450	
	6.7	정책 홍보 간담회	470	
	6.8	정책 홍보 간담회	433	
	6.8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 포럼(만찬)	106	
	6.14	정책홍보 간담회	344	
	6.18	저축은행피해 대책 관련 만찬 간담회	420	
	6.20	정책 홍보 간담회	459	
	6.21	금융정책 관련 조찬 간담회	109	
	6.21	정책 홍보 간담회	385	
	6.21	금융 현안 법률 관련 오찬 간담회	272	
	6.25	금융선진화 관련 오찬 간담회	79	
	6.25	정책 홍보 간담회	450	
	6.26	국회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65	
	6.27	유럽발 국내증시영향 관련 오찬 간담회	365	
	6.27	SNS 현장소통 워크샵 개최	930	
	6.28	정책 홍보 간담회	471	
소 계		1건	3,46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6.5	경조사 화환비	3,460	

부위원장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6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4 건	7,179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6.1	금융시장 현안 설명	260	
	6.1	금융시장 동향 설명	523	
	6.4	금융시장 현안 설명	206	
	6.4	금융시장 현안 설명	187	
	6.5	금융시장 현안 설명	200	
	6.5	금융시장 동향 설명	290	
	6.10	저축은행 업무보고	156	
	6.11	금융시장 현안 설명	126	
	6.11	금융시장 현안 설명	494	
	6.12	금융시장 동향 설명	198	
	6.13	조찬 간담회	330	
	6.13	홍보팀 업무보고	468	
	6.14	금융 현안 설명	359	
	6.15	방송3사 출입기자 간담회	440	
	6.18	강원 서민금융 지원센터 개소식 방문	39	
	6.20	금융위 출입기자 간담회	448	
	6.21	금융시장 동향 설명	510	
	6.22	금융시장 현안 설명	235	
	6.25	금융시장 업무협의	175	
	6.26	금융시장 현안 설명	291	
	6.27	금융시장 동향 설명	278	
	6.28	금융시장 현황 설명	207	
	6.28	금융위 출입기자 만찬 간담회	409	
	6.29	금융위 동아리 대표 오찬	350	

위원장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7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31 건	13,814	
소 계		30 건	9,874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7.1	금융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66	
	7.3	국내증시 활성화 관련 오찬 간담회	142	
	7.3	정책 홍보 간담회	490	
	7.4	정책 홍보 간담회	465	
	7.5	정책 홍보 간담회	114	
	7.5	정책 홍보 간담회	495	
	7.6	정책 홍보 간담회(여수엑스포)	55	
	7.9	공적자금 관리 관련 오찬 간담회	198	
	7.10	경제정책 관련 오찬 회의	490	
	7.10	정책 홍보 간담회	490	
	7.11	정책 홍보 간담회	245	
	7.11	정책 홍보 간담회	490	
	7.12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	45	
	7.12	정책 홍보 간담회	382	
	7.13	정책 홍보 간담회	215	
	7.16	저축은행피해 대책 관련 만찬 간담회	396	
	7.17	국회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340	
	7.17	금융산업 발전 관련 만찬 간담회	342	
	7.19	녹색금융정책 관련 오찬 간담회	417	
	7.19	금융 현안 관련 만찬 간담회	86	
	7.23	서민금융 지원 관련 만찬 간담회	420	
	7.24	국회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128	
	7.24	정책 홍보 간담회	480	
	7.25	국회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120	
	7.25	예금자보호 관련 만찬 간담회	360	
	7.26	국회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450	
	7.27	정책 홍보 간담회	276	
	7.30	정책 홍보 간담회	782	
	7.30	불법사금융 관련 만찬 간담회	400	
	7.31	국회 현안 관련 만찬 간담회	495	
소 계		1건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7.17	경조사 화환비	3,940	

부위원장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7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1 건	6,083	
소 계		20 건	5,483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7.2	금융시장 현안 설명	229	
	7.5	금융시장 동향 설명	202	
	7.6	출입기자 간담회	272	
	7.9	출입기자 간담회	560	
	7.10	금융시장 현안 설명	176	
	7.11	증선위 비상임위원 간담회	103	
	7.12	금융시장 동향 설명	146	
	7.13	금융시장 현황 설명	97	
	7.19	직원과의 대화 오찬 간담회	462	
	7.19	금융시장 현안 설명	448	
	7.23	금융시장 현안 설명	429	
	7.24	금융시장 현안 설명	337	
	7.25	금융시장 현안 설명	349	
	7.25	정무위 업무보고	294	
	7.26	정무위 업무보고	116	
	7.27	금융시장 업무보고	330	
	7.27	금융시장 현안 설명	290	
	7.30	금융시장 현안 설명	339	
	7.30	금융시장 현안 업무보고	44	
	7.31	금융시장 현안 설명	260	
소 계		1건	6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7.3	경조사 화환 구입비	600	

위원장 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8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8 건	12,661	
소 계		27건	8,751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8.6	정책 홍보 간담회	311	
	8.6	금융 현안 관련 만찬 간담회	342	
	8.8	금융 감독 정책 관련 오찬 간담회	312	
	8.9	정책 홍보 간담회	480	
	8.10	정책 홍보 간담회	495	
	8.13	정책 홍보 간담회	448	
	8.13	보험업 현안 관련 만찬 간담회	460	
	8.14	국회 현안 관련 오찬 간담회	195	
	8.14	정책 홍보 간담회	450	
	8.16	수출.투자 애로 기업 현장점검(8.16~17)	306	
	8.16	수출.투자 애로 기업 현장점검(8.16~17)	343	
	8.17	수출.투자 애로 기업 현장점검(8.16~17)	240	
	8.17	수출.투자 애로 기업 현장점검(8.16~17)	372	
	8.17	수출.투자 애로 기업 현장점검(8.16~17)	341	
	8.20	을지훈련 관련 오찬 간담회	185	
	8.20	국회 현안 관련 만찬 간담회	220	
	8.21	정책 홍보 간담회	355	
	8.22	금융지주회사 회의 후속대책 관련 간담회	363	
	8.23	국회 현안(예결위 등) 관련 간담회	249	
	8.24	국회 현안(예결위 등) 관련 간담회	265	
	8.26	국회 현안(예결위 등) 관련 간담회	135	
	8.26	국회 현안(예결위 등) 관련 간담회	113	
	8.29	정책 홍보 간담회	96	
	8.30	수출 금융 지원 현안 관련 직원 오찬 간담회	403	
	8.30	예금자보호 관련 만찬 간담회	400	
	8.31	정책 홍보 간담회	378	
	8.31	CD금리 현안 관련 만찬 간담회	494	
소 계		1건	3,91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8.9	경조사 화환비	3,910	

부위원장 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2012년 8월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일자	내 역	금 액	비고
계		22 건	6,345	
소 계		21 건	6,145	
주요정책협의 등을 위한 외부회의, 간담회 등	8.1	금융시장 현안 설명	498	
	8.1	금융시장 현안 설명	348	
	8.2	최근 금융시장 동향 설명	255	
	8.3	금융시장 현안 설명	598	
	8.3	출입기자 간담회	372	
	8.9	금융위 업무보고	62	
	8.13	금융 현안 설명	286	
	8.17	금융 현안 설명	86	
	8.20	금융시장 동향 설명	124	
	8.20	승진 서기관 간담회	332	
	8.21	금융시장 현안 설명	154	
	8.22	금융위 신입 출입기자 간담회	117	
	8.22	금융시장 현안 논의	259	
	8.22	을지훈련 물품 지원	175	
	8.23	금융시장 현안 설명	97	
	8.24	금융시장 현안 설명	245	
	8.24	정무위 결산소위 업무보고	137	
	8.27	금융시장 현안 설명	246	
	8.27	출입기자 간담회	725	
	8.31	금융시장 현황 설명	544	
	8.31	직원과의 대화 오찬 간담회	485	
소 계		1건	200	
직원사기진작, 단체, 행사 등에 대한 성금 등	8.20	경조사 화환 구입비	200	

김 영 환 의원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 공적자금 투입 기업 및 금융기관 현황
- 일반현황, 정부 보유지분 현황, 매각계획

□ 공적자금이 투입된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 현황과 매각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 보유 주요주식 현황

('12.7월말 기준, 단위 : 천주, 억원)

기관	기업명	보유 주식수	지분율	상장 여부	매각계획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459,199	56.97%	상장	'12.4.27일 매각방안을 발표하고 매각을 추진했으나,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없어 8.2일 매각절차 중단 - 매각 재추진 시기와 방법 등은 공자위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
	대한생명	214,962	24.75%	상장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각방안 마련 예정
	제주은행	4,076	18.42%	상장	일부 지분에 대한 장중매각 지속 추진중 - 잔여지분은 상장유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경쟁입찰 등을 통해 매각 추진
	수협	115,810 (우선출자증권)	-	-	이월결손금이 해소되는 '18년 이후부터 우선출자증권 상환 추진 전망
	서울보증보험	32,764	93.85%	비상장	보증보험 시장개방 추이 등 매각여건을 고려하여 매각방안 마련 예정
㈜케이알앤씨	한국전력	32,211	5.02%	상장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 추진 중
	하이닉스	4,382	0.63%	상장	채권단(외환은행 등) 공동매각 진행 중
	포항터미널	10	100%	비상장	공개경쟁입찰 등 추진
	한국자금중개	485	24.25%	비상장	국내 외환시스템의 성숙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각 추진 예정
자산관리공사	대우조선해양	36,567	19.11%	상장	주가 등 매각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 매각방안 마련 예정
	쌍용건설	11,537	38.75%	상장	매각 계속 추진 중 - '12.8월 우선협상대상자 이랜드는 협상 중단
	대우일렉	61,127	57.42%	비상장	주채권은행 주관으로 매각절차 진행중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2. 최근 3년간 미소금융, 햇살론 관련 지원현황(대출기준 포함), 신용등급별 지원 현황(건수, 금액), 연체율 현황, 대출자 중 폐업현황

1 미소금융

□ 미소금융 대출기준 (지원대상)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계층

- 다만,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 되더라도 재평가하여 7등급 이하면 지원대상에 포함

○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자

□ 미소금융 신용등급별 대출현황

('12.7.31.기준, 단위: 건, 억원)

구분	대출건수	대출금액
0	182	17.0
7	12,754	1,569.5
8	10,028	1,200.1
9	1,659	183.0
10	781	79.7
차상위*	8,634	1,598.0
계	**34,038**	**4,647.3**

* 신용등급 1~6등급의 저소득계층

□ 미소금융 연체율 현황 : 4.7%* ('12.7.31. 기준)

* 납입대상자 중 원금 또는 이자를 30일 이상 연체한 자의 연체금액 기준

□ 미소금융 대출자 중 휴·폐업현황 ('11년 7월말 현재)

(단위 : 건, %)

휴·폐업 사업장	총 대출자	비율
425	17,753	2.4%

※ 휴·폐업사업장 현황은 조사인력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연 1회 조사하며, 현재 '12.8월말 기준으로 현황 조사를 추진 중에 있음

2 햇살론

□ 햇살론 대출기준 (지원대상)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 40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연소득 26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일용직·임시직포함)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자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미신고자 포함)
- 신청일 현재 창업 준비 중이거나 영업 중인 자(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으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무등록·무점포자 포함)

□ 햇살론 신용등급별 대출현황

('12.7.31.기준, 단위: 건, 억원)

구분	건수	금액
0	86	4
1~5등급*	61,800	6,061
6	63,220	6,194
7	71,489	5,993
8	30,779	2,187
9	6,726	391
10	1,290	78
계	**235,390**	**20,908**

* 연소득 2,600만원 저소득자

□ 햇살론 대위변제율 현황 ('12.7.31. 기준)

○ 연체율 : 8.9%

□ 햇살론 대출자 중 휴·폐업현황

※ 현재 햇살론 대출자의 휴·폐업현황은 집계 관리하고 있지 않음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3. 200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재취업 현황
- 성명, 퇴임당시 직책 등 경력, 재취업 직장명 및 직책

□ 퇴직자 재취업 현황

연도	퇴직일	이름	직위/직급	퇴직전부서	재취업처 및 직책
2008	'08.03.28	이○○	원장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08.04.30	전○○	과장	제도운영과	은행연합회 감사
	'08.05.15	김○○	과장	혁신행정과	법무법인 변호사
	'08.06.07	윤○○	일반계약직5호	정책홍보팀	-
	'08.08.01	하○○	일반계약직5호	공정시장과	검찰청 검사
	'08.08.20	장○○	일반계약직5호	글로벌금융과	-
	'08.10.07	김○○	일반계약직6호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08.11.19	강○○	일반계약직5호	공정시장과	법무법인 회계사
	'08.12.09	김○○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부원장
2009	'09.01.05	정○○	서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협회 부장
	'09.01.09	이○○	행정사무관	은행과	법무법인 변호사
	'09.01.20	전○○	위원장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09.01.20	홍○○	서기관	공정시장과	법무법인 변호사
	'09.03.26	양○○	실장	기획행정실	한국자금중개 전무
	'09.04.30	김○○	행정주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협회
	'09.05.13	나○○	서기관	감사담당관실	한국산업은행
	'09.05.15	한○○	서기관	금융위원회(고용휴직)	신영증권 상무이사
	'09.09.11	박○○	부이사관	금융위원회(타기관파견)	SK C&C 상무
	'09.10.12	김○○	행정사무관	금융위원회(타기관파견)	-
	'09.11.17	김○○	원장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증권금융 사장
	'09.11.19	이○○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2010	'10.02.17	김○○	전산서기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한국거래소

연도	퇴직일	이름	직위/직급	퇴직전부서	재취업처 및 직책
	'10.03.02	나○○	행정사무관	행정인사과	정책금융공사 팀장
	'10.04.15	임○○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통화위원
	'10.04.15	서○○	일반계약직5호	자산운용과	정책금융공사 팀장
	'10.06.17	김○○	일반계약직5호	보험과	-
	'10.08.23	김○○	일반계약직5호	기획행정실	-
	'10.10.14	남○○	행정사무관	산업금융과	정책금융공사 팀장
	'10.12.06	임○○	서기관	금융위원회	파인트리 파트너스 (자산운용사)
2011	'11.01.03	진○○	위원장	금융위원회	숭실대 객원교수
	'11.02.16	최○○	원장	금융정보 분석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11.03.27	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11.03.28	이○○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법무법인 변호사
	'11.05.02	김○○	고위공무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11.06.02	안○○	행정사무관	서민금융팀	-
	'11.09.23	공○○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실	금융감독원
	'11.09.28	남○○	팀장	국제협력팀	KT 상무
2012	'12.01.01	이○○	외신대변인	정책홍보팀	-
	'12.02.27	박○○	일반계약직5호	회수관리팀	-
	'12.03.14	원○○	과장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금융결제원 감사
	'12.03.21	이○○	국제협력관	금융정책국	두산그룹
	'12.05.18	김○○	행정사무관	금융소비자과	예금보험공사
	'12.05.21	이○○	과장	감사담당관실	신용보증기금 이사
	'12.05.26	김○○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사장
	'12.07.02	진○○	고위공무원	자본시장국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12.08.02	김○○	일반계약직5호	금융정책과	법무법인 변호사
	'12.08.13	전○○	서기관	금융위원회	Ibk 캐피탈 부사장
	'12.08.17	김○○	일반계약직5호	자산운용과	한국증권금융
	'12.08.31	김○○	일반계약직5호	기획행정실	-
	'12.09.04	오○○	전산사무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4. 최근 3년간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은행과의 수발신 목록(해당 협회 포함)

중소금융과

□ 요청하신 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09.8.~12.9.11현재) 문서등록대장 목록

순번	문서번호	보고일자	문서구분	제목	수(발)신자
915	1890	2009.09.02	접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제공 심사(신청)	신한카드
845	1969	2009.09.14	생산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신한카드(주)대표이사
607	2217	2009.10.20	접수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변경(안) 신고	여신금융협회
542	2296	2009.11.02	접수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신청서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VAN영업협회
284	2571	2009.11.27	접수	[여신금융사 표준약관] 제정(안) 신고	여신금융협회
60	2819	2009.12.23	접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사 신청	삼성카드주식회사
61	2818	2009.12.23	접수	금융위원회 업무 유공자 표창 대상자 추천의 건	삼성카드주식회사
2555	72	2010.01.11	접수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변경(안) 신고	여신금융협회
2244	433	2010.02.26	접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여신금융협회
2180	501	2010.03.08	생산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주)신한카드 대표이사
1895	817	2010.04.12	접수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변경(안) 신고	여신금융협회
1716	1018	2010.04.30	접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업계 의견 송부	여신금융협회
1424	1348	2010.06.11	접수	HIN 주식취득승인 신청서 접회 요청의 건	현대커머셜, 현대카드주식회사
1319	1460	2010.06.24	접수	주식취득승인신청서	(주)롯데카드
1251	1532	2010.07.01	접수	유권해석 요청	(주)삼성카드
1174	1618	2010.07.12	접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사 신청	삼성카드주식회사
1090	56	2010.07.22	생산	롯데카드(주)의 (주)이비카드에 대한 출자 승인 통보	롯데카드 대표이사
1091	58	2010.07.22	생산	참의 회신(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삼성카드대표이사
1076	91	2010.07.23	생산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삼성카드 대표이사
906	259	2010.08.23	접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제공 심사(신청)	신한카드
812	367	2010.09.07	생산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신한카드 대표이사
789	397	2010.09.09	생산	업무협조(UN안보리결의 이행 관련)	여신금융협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776	398	2010.09.10	접수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도 운영 관련 보고	여신금융협회
392	813	2010.11.10	접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심사 신청	삼성카드 주식회사
340	873	2010.11.18	접수	TM을 통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의 위법성 여부 질의	삼성카드 주식회사
214	1022	2010.12.02	생산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삼성카드 대표이사
201	1012	2010.12.03	접수	(가칭) 주식회사 케이비카드 「신용카드업 영위 예비허가 신청서」 제출	(주)KB금융지주
48	1187	2010.12.27	접수	대부업법 개정안(김부겸 의원)에 대한 의견 제출	여신금융협회
2563	64	2010.01.08	생산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주)삼성카드 대표이사
1844	225	2011.01.27	접수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신청서」 제출	(주)KB금융지주
1724	388	2011.02.14	생산	신용카드가맹점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청	여신금융협회
1623	459	2011.02.22	접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제공 심사(신청)	신한카드
1570	515	2011.03.03	접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여신금융협회
1571	514	2011.03.03	접수	타 부처 소관법령 개정 안 의견조회	금융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68	533	2011.03.04	생산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신한카드 대표이사
1376	740	2011.04.20	접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집중관리·활용대상정보 추가 및 변경 신청	여신금융협회
1278	848	2011.05.04	생산	여신금융협회의 집중관리·활용대상정보 범위변경 공민통보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1164	969	2011.06.02	접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심사 신청	삼성카드주식회사
1094	1034	2011.06.16	접수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이용을 위한 심의 신청	여신금융협회
1079	1072	2011.06.21	접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제공 심사(신청)	신한카드
1056	1120	2011.06.28	생산	여전협회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이용신청 심사결과	(사)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
1053	1121	2011.06.29	생산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신한카드 대표이사
1054	1122	2011.06.29	생산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삼성카드 대표이사
992	1186	2011.07.12	생산	감사원 결사자료 제출 협조	여신금융협회장
577	1674	2011.09.30	생산	전통시장 내 중소가맹점 현황 추가반영 요청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
416	1774	2011.10.27	접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안) 신고	여신금융협회
1224	84	2012.01.20	생산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공시 운영 관련 개선요청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
1114	190	2012.02.13	접수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공시 운영 관련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	여신금융협회
1013	293	2012.02.29	접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여신금융협회
940	368	2012.03.13	생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여신금융협회장, 금융감독원장
886	420	2012.03.29	접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여신금융협회
817	498	2012.04.13	생산	공익신고 사건 이첩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
750	556	2012.04.27	생산	삼성카드(주)에 대한 삼성에버랜드(주) 주식 처분명령 사전통지	삼성카드(주) 대표이사
663	639	2012.05.07	접수	삼성에버랜드 주식 처분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삼성카드(주) 대표이사
600	705	2012.05.16	생산	삼성카드(주)의 소유한도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통지	삼성카드(주) 대표이사
336	971	2012.07.16	접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안) 재신고	여신금융협회
138	1166	2012.08.22	생산	하나SK카드(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	하나SK카드(주) 대표이사
139	1167	2012.08.22	생산	삼성카드(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	삼성카드(주) 대표이사
19	1297	2012.09.06	접수	요구자료 회신	여신금융협회

보 험 과

o 붙임 : 최근 3년간 수발신 목록(보험)

최근3년간 수발신 목록(보험)

순번	문서번호	보고일자	문서구분	제목	수발(신)자
1	927	2012.09.05	접수	사건장_특수건물 범위_질의_참고	한국화재보험협회
2	917	2012.09.03	생산	보험업 영위 허가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3	916	2012.08.31	생산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확인서 발급	서울보증보험(주) 대표이사
4	902	2012.08.29	접수	보험업 영위확인서 발급요청(한화손보)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5	897	2012.08.27	접수	LTC위험률_시사실적 및 예정위험률 제출	현대리이프생명보험(주)
6	890	2012.08.24	생산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금융감독원장 (주)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7	879	2012.08.22	생산	보험업 영위 허가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	롯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8	878	2012.08.22	접수	롯데손보_보험업 영위확인서 발급요청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9	866	2012.08.20	생산	보험업법_위반자에 대한 지문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10	851	2012.08.14	접수	선임계리사_선임보고_관련 서류보완의 건(디스법률비용보험)	디스법률비용보험(주)
11	850	2012.08.14	생산	선임계리사 선임 보고의 건(디스법률비용보험)	디스법률비용보험(주)
12	852	2012.08.14	생산	보험업 영위 허가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13	848	2012.08.13	접수	동부화재_보험업 영업허가 등 확인서 신청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4	847	2012.08.13	접수	LTC상품_위험률서 관련 실적 및 예정 위험률 제출(흥국생명)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15	825	2012.08.01	생산	보험업 영위 허가 등 확인서 발급	LIG손해보험 대표이사
16	822	2012.08.01	접수	LIG손보_보험업영위확인서 발행요청의 건	LIG손해보험
17	815	2012.07.26	생산	보험산업 정기 전망 관련 자료협조 요청	대림생명보험 대표이사, 알리안츠생명보험 대표이사, 삼성생명보험 대표이사
18	806	2012.07.24	접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반영예고(12.6.21)에 관련 손보업계 의견제출	손해보험협회
19	802	2012.07.24	생산	질의 회신	손해보험협회
20	801	2012.07.24	생산	질의 회신	손해보험협회
21	794	2012.07.23	접수	삼성생명_기초서류관리기준 보고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22	792	2012.07.20	접수	보험업법 제3조 관련 유권해석 요청	손해보험협회장
23	791	2012.07.20	생산	보험업 영업허가 등 확인서 발급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24	787	2012.07.20	접수	하나HSBC생명_기초서류관리기준 개정보고	하나HSBC생명보험주식회사
25	783	2012.07.19	접수	KDB생명_기초서류관리기준 운영규정 개정보고	KDB생명보험주식회사
26	782	2012.07.19	접수	PCA생명_기초서류관리기준 개정보고	PCA생명보험주식회사
27	781	2012.07.19	접수	보험업영위허가 확인서 등 관련 참고 자료 제출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28	774	2012.07.18	생산	그린손해보험(주)에 대한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행정처분 통지	금융위원회(보험과), 금융감독원(보험검사1국, 금융소비자보호처), 그린손해보험(주) 이사회 의장 겸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위원장 김태기, 감사위원 이윤호, 이종남, 김홍식, 김홍석, 김홍태, 김홍국(주)
29	766	2012.07.18	접수	현대리이프생명_기초서류 관리기준 개정보고	현대리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30	765	2012.07.18	접수	AIA생명_기초서류 관리기준 개정보고	이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컴파니
31	764	2012.07.18	접수	농협생명_기초서류 관리규정 일부 개정보고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32	763	2012.07.18	접수	신한생명_기초서류 관리규정 개정보고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33	760	2012.07.17	접수	기초서류관리기준 시행세칙의 개정 및 보고-메트라이프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34	759	2012.07.17	접수	KB생명 기초서류관리기준 개정보고	KB생명보험주식회사
35	758	2012.07.17	접수	기초서류 관리기준 개정보고 흥국생명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36	757	2012.07.17	접수	기초서류 관리기준 개정보고_동부생명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37	756	2012.07.17	접수	미래에셋생명_기초서류관리기준 개정보고	미래에셋생명2012
38	755	2012.07.17	접수	푸르덴셜_기초서류 관리기준 개정보고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39	754	2012.07.17	접수	에이스생명_기초서류 관리기준 변경 보고	에이스생명보험주식회사
40	753	2012.07.17	접수	동양생명_기초서류기준 변경보고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41	752	2012.07.17	접수	ING생명_기초서류기준 개정	ING생명보험주식회사
42	751	2012.07.17	접수	우리아비생명_기초서류기준 개정보고	우리아비생명보험주식회사
43	750	2012.07.17	접수	리아니생명_기초서류기준 개정보고	리아니생명보험주식회사

순번	문서번호	보고일자	문서구분	제목	수(발)신자
44	749	2012.07.17	접수	대한생명_기초서류 관리기준 개정보고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45	748	2012.07.17	접수	알리안츠생명_기초서류 관리 RGP 보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46	747	2012.07.17	접수	교보생명_기초서류 관리규정 개정보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47	746	2012.07.17	접수	IBK연금보험_IBK연금보험주식회사 기초서류 관리규정 변경보고	IBK연금보험 주식회사
48	745	2012.07.17	접수	카디프생명_기초서류 관리기준 개정보고	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49	739	2012.07.16	접수	보험업영위허가 확인서 등 발급 요청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50	738	2012.07.16	접수	장기간병(치매)보험 관련 자료 제출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51	729	2012.07.11	접수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변경인가 신청	생명보험협회
52	724	2012.07.10	생산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등 통지	(주)사랑모이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53	722	2012.07.05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54	711	2012.07.05	접수	FY'11 무배당 대한장기간병보험(보장형) 의 4종 위험률차손익 및 위험률 관련자료 제출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55	710	2012.07.05	접수	무배당교보다사랑장기간병보험(보장형) 의 2종 위험률차손익 및 위험률 관련자료 제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56	709	2012.07.05	접수	장기간병보험 사차현황 및 위험률 관련 보고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57	708	2012.07.05	접수	기초서류 관리기준 변경 보고(ibk 연금보험)	ibk 연금보험
58	706	2012.07.04	생산	그린손해보험(주)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통보 및 임원 업무집행정지 등 사전통지(의견제출요청)	그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그린손해보험(주)의 각 임원(라응규, 김태재, 김수년, 최용훈, 이종선, 김중태)
59	680	2012.06.28	생산	보험업 영위 허가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	코리안리 재보험 대표이사
60	655	2012.06.21	생산	과징금부과 조치내용 통보	롯데손해보험(주)
61	654	2012.06.21	생산	과징금부과 조치내용 통보	한화손해보험(주)
62	653	2012.06.21	생산	과징금부과 조치내용 통보	삼성화재해상보험(주)
63	642	2012.06.18	접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 현황 송부	한국화재보험협회
64	612	2012.06.11	접수	보험사업 영위 및 지급여력기준 확인서(영문) 발급 요청의 건	코리안리 재보험주식회사
65	619	2012.06.11	생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그린손해보험(주), 그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이열두, 그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라응규...
66	618	2012.06.11	생산	과징금부과 조치내용 통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67	617	2012.06.11	생산	과징금부과 조치내용 통보	동부화재해상보험(주)
68	599	2012.06.05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69	586	2012.06.04	접수	FY'11 사업실적 및 FY'12 사업계획 등의 보고	손해보험협회
70	559	2012.05.29	접수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정부대표단 협회참석자 추천	생명보험협회
71	545	2012.05.21	접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이용 심사(신청)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72	535	2012.05.16	생산	보험업 영위 허가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	삼성화재 대표이사
73	532	2012.05.16	생산	차티스손해보험(주)에 대한 보험업 허가 등 통보	차티스손해보험(주) 대표이사,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대표
74	533	2012.05.16	생산	그린손해보험(주)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통보	그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75	528	2012.05.15	접수	선임계리사 선임관련 (RGA)	RGA
76	527	2012.05.15	접수	선임계리사 사임관련 (RGA)	RGA
77	516	2012.05.14	접수	자회사 소유 승인신청 철회의 건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78	513	2012.05.11	생산	차티스손해보험(주)의 보험업 허가 관련 요청	손해보험협회장(모집관리팀장)
79	504	2012.05.09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80	489	2012.05.07	생산	청문조서 열람통지	보험대리점 인스위즈 대표이사
81	485	2012.05.07	접수	선임계리사 선임 보고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82	480	2012.05.04	생산	외국인 고용 추천서 발급(교보생명)	교보생명 대표이사
83	475	2012.05.03	생산	과징금 부과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 대표이사
84	470	2012.05.02	생산	그린손해보험(주)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통보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를 위한 사전통지(의견제출요청)	그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85	441	2012.04.27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86	423	2012.04.20	생산	과징금부과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현대해상 대표이사
87	422	2012.04.19	접수	선임계리사 해임 신고(흥국생명)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88	421	2012.04.19	생산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기간 연장통보	금융감독원장, 보험개발원장, 생명보험협회장
89	395	2012.04.13	생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 관련 협조요청	현대해상 대표이사, 흥국생명 대표이사

순번	문서번호	보고일자	문서구분	제목	수(발)신자
90	392	2012.04.13	접수	외국인 고용추천 의뢰(교보생명)	교보생명
91	388	2012.04.12	접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해당 증빙(국·영문) 발급 요청 (삼성화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92	383	2012.04.09	접수	선임계리사 선임신고 (SCOR)	스코르인슈어런스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한국지점
93	382	2012.04.09	접수	선임계리사 해임신고 (SCOR)	스코르인슈어런스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한국지점
94	376	2012.04.06	접수	선임계리사 선임보고(대한생명)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95	373	2012.04.05	접수	2011년도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업실적 및 결산 등 보고	생명보험협회
96	362	2012.04.03	생산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계획 일정변경 통보	보험개발원장, 손해보험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금융감독원장(보험조사실장)
97	352	2012.04.02	생산	경영개선계획서 재제출 촉구	그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98	350	2012.03.30	접수	농협손해보험(주) 협회 정회원 가입 보고	손해보험협회
99	349	2012.03.30	접수	기초서류관리기준 변경 보고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100	344	2012.03.30	접수	기초서류 검증지침 개정 (LIG손해보험)	LIG손해보험주식회사
101	343	2012.03.30	접수	기초서류검증지침 개정 보고 (삼성화재)	삼성화재
102	342	2012.03.30	접수	기초서류관리기준 개정 보고 (현대해상)	현대해상화재보험
103	341	2012.03.30	접수	기초서류검증지침 개정 보고 (흥국화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04	340	2012.03.30	접수	기초서류검증지침 변경 보고 (시티스)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컴파니
105	339	2012.03.30	접수	기초서류관리기준 보고 (The-K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106	338	2012.03.30	접수	기초서류 관리기준 보고 (에이스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07	337	2012.03.30	접수	기초서류 검증지침 개정 (동부화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08	336	2012.03.30	접수	기초서류관리기준 개정 보고 (AXA다이렉트)	AXA다이렉트
109	335	2012.03.30	접수	농협생명·손해보험의 보험업허가 확인 요청	NH농협생명
110	334	2012.03.30	접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준수계약」 제정 보고	손해보험협회
111	331	2012.03.29	생산	IBK연금보험(주)에 대한 허가조건 해석 회신	IBK연금보험(주) 대표이사
112	316	2012.03.28	생산	한국화재보험협회 정관 변경허가 통보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113	308	2012.03.27	생산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계획 통보	보험개발원장, 손해보험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금융감독원장(보험조사실장)
114	302	2012.03.27	접수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적립금 비율 관련 중소기업 범위 질의	IBK연금보험
115	303	2012.03.27	생산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에 따른 사업비 집행시 유의사항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보험대리점협회장
116	297	2012.03.26	접수	FY2012 업무계획 제출	한국화재보험협회
117	296	2012.03.26	접수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한국화재보험협회
118	295	2012.03.26	접수	보험조사협의회 위원 변경 추천	손해보험협회장
119	276	2012.03.23	생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
120	313	2012.03.21	생산	2012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illegible]
121	261	2012.03.19	접수	선임계리사 해임보고 (대한생명)	대한생명
122	258	2012.03.16	접수	기초서류 관리기준 개정 (그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
123	257	2012.03.16	접수	기초서류관리기준 개정 보고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124	256	2012.03.16	접수	기초서류관리기준 개정 보고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125	251	2012.03.16	접수	한국보험중개사협회 개정 정관 보고	한국보험중개사협회
126	250	2012.03.16	접수	자회사 소유 승인신청(삼성생명)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127	218	2012.03.12	접수	PCA생명보험 신임계리사 선임 신고	PCA생명보험(주)
128	209	2012.03.08	접수	선임계리사 선임 보고(농협생명)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129	203	2012.03.07	생산	(가칭)지티스손해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 통지	(가칭) 자티스손해보험(주) 대표이사
130	204	2012.03.07	생산	그린손해보험(주)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승인 통지	그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금융감독원장(손해보험검사국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131	200	2012.03.06	접수	선임계리사 선임 보고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132	191	2012.03.05	접수	2011년도 생명보험협회 사업실적 및 결산서 등 보고	생명보험협회
133	188	2012.03.02	접수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의 기초서류관리기준 제정 보고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134	187	2012.03.02	접수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의 기초서류관리기준 제정 보고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135	174	2012.02.28	접수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순번	문서번호	보고일자	문서구분	제목	수(발)신자
136	190	2012.02.28	생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송부	손해보험협회장
137	189	2012.02.28	생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송부	생명보험협회장
138	157	2012.02.22	접수	PCA생명보험 선임계리사 해임 신고	PCA생명보험(주)
139	146	2012.02.20	접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을 위한 제공심사 신청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140	145	2012.02.20	접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심사 신청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141	138	2012.02.16	접수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
142	140	2012.02.16	생산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정관 변경허가 통보	한국보험중개사협회장
143	126	2012.02.13	접수	선임계리사 선임 보고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144	125	2012.02.13	접수	선임계리사 사임 보고(삼성생명)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145	103	2012.02.06	접수	선임계리사 선임 보고(흥국생명)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146	102	2012.02.06	접수	선임계리사 해임 신고(흥국생명)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147	88	2012.01.31	생산	과징금부과 조치내용 통보	삼성생명보험(주) 대표이사
148	85	2012.01.30	접수	기초서류관리기준 보고 (삼성생명)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149	82	2012.01.27	접수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에고(안) 관련 손해보험업계 건의사항	손해보험협회
150	77	2012.01.27	생산	외국인 고용 추천서 발급(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주) 대표이사
151	76	2012.01.26	접수	녹십자생명(주)의 대주주변경 승인 신청의 변경 건	현대커머셜주식회사
152	66	2012.01.25	접수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생명보험협회
153	60	2012.01.19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154	40	2012.01.12	접수	외국인 고용을 위한 고용추천의뢰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
155	42	2012.01.12	생산	과징금부과 조치내용 통보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156	41	2012.01.12	생산	과징금부과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LIG손해보험 대표이사
157	21	2012.01.09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158	1529	2011.12.22	생산	그린손해보험(주)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 통보	그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159	1525	2011.12.22	생산	제2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알림	금융감독원장, 보건복지부장관(보험정책과장), 생명보험협회장...
160	1524	2011.12.22	접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내용 보고	금융감독원생명보험팀
161	1522	2011.12.22	접수	선임계리사 신임 보고 (삼성화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62	1520	2011.12.22	생산	(이송) 시실조회신청서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163	1510	2011.12.16	접수	경영개선요구 처분에 관한 의견 제출 (그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
164	1491	2011.12.13	접수	선임계리사 퇴임 신고 (삼성화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65	1476	2011.12.09	생산	보험업 영위허가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	코리안리 대표이사
166	1472	2011.12.09	접수	선임계리사 선임 보고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
167	1452	2011.12.05	접수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정관 개정의 건	한국보험중개사협회
168	1428	2011.11.30	생산	그린손해보험(주)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그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금융감독원장
169	1374	2011.11.16	접수	「2011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 수상자 추천	생명보험협회
170	1373	2011.11.16	접수	「2011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 개최안내 및 후원 요청	생명보험협회
171	1368	2011.11.15	접수	선임계리사 해임(사임)의 건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
172	1371	2011.11.15	생산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정부대표단 추천 요청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과장), 금융감독원장, 생명보험협회장...
173	1357	2011.11.11	접수	외국인 고용 추천서 발급요청 (삼성생명)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174	1353	2011.11.10	생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대표이사
175	1331	2011.11.03	접수	기초서류 관리기준 개정 (동부화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76	1319	2011.10.28	접수	기초서류 관리기준 보고 (The-K 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177	1306	2011.10.25	생산	외국인 고용 추천서 발급(삼성화재)	삼성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178	1287	2011.10.19	생산	삼성생명 자회사 소유 승인 통지	삼성생명보험(주) 대표이사(부동산사업부장)
179	1275	2011.10.17	생산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확인서 발급	서울보증보험(주) 대표이사
180	1274	2011.10.17	접수	외국인 인력 고용 추천서 의뢰 (삼성화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81	1271	2011.10.14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순번	문서번호	보고일자	문서구분	제목	수(발)신자
182	1251	2011.10.11	접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이용 심사(신청)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183	1221	2011.09.30	접수	자회사 소유 승인 신청 (삼성생명)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184	1210	2011.09.22	생산	농협은행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 요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185	1203	2011.09.21	접수	자회사 소유 승인신청 철회 (삼성생명)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186	1145	2011.08.30	생산	임원 직무정지와 과징금부과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187	1144	2011.08.30	생산	과징금부과 조치내용 통지	흥국생명보험(주) 대표이사
188	1119	2011.08.22	생산	질의 회신	IBK연금보험(주)
189	1112	2011.08.19	접수	인사시스템 사용이 업무위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190	1095	2011.08.12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내용 통보	손해보험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191	1088	2011.08.09	접수	외국인 인력 고용 추천서 의뢰 (삼성화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92	1086	2011.08.09	접수	자회사 소유 승인 신청의 건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193	1084	2011.08.08	접수	`2010년도 안전점검 결과분석` 송부	한국화재보험협회
194	1056	2011.07.22	생산	보험업 영위허가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	코리안리 대표이사
195	1055	2011.07.22	생산	외국인 고용 추천서 발급(삼성화재)	삼성화재 대표이사
196	1059	2011.07.22	생산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197	1040	2011.07.15	생산	화재보험협회 정관 변경 허가 통보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198	994	2011.07.06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199	971	2011.07.01	생산	주민등록 전산자료이용 심사결과 회신(AIA생명)	미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컴파니 한국지점 지점장
200	964	2011.06.30	생산	보험산업장기전망 관련 자료협조요청	대한생명보험㈜ 대표이사, 알리안츠생명보험㈜ 대표이사, 삼성생명보험㈜ 대표이사...
201	938	2011.06.23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제11자 금융위)	손해보험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202	925	2011.06.20	생산	외국인 고용 추천서 발급(삼성화재)	삼성화재대표이사
203	862	2011.05.30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204	838	2011.05.23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205	823	2011.05.17	생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현황 조사의뢰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206	802	2011.05.12	생산	자동차 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변경인가 통보	손해보험협회장
207	787	2011.05.04	생산	삼성생명(주)의 DGB금융지주(가칭)주식소유 승인 통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208	769	2011.05.02	생산	외국인 고용 추천서 발급(삼성화재)	삼성화재 대표이사
209	765	2011.04.29	생산	민원이첩(생보협회)	생명보험협회장(민원질서부 부장)
210	742	2011.04.28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211	733	2011.04.27	생산	외국인 고용 추천서 발급(삼성생명)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212	681	2011.04.12	생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롯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213	680	2011.04.12	생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나HSBC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14	679	2011.04.12	생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신한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15	678	2011.04.12	생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동양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16	677	2011.04.12	생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17	676	2011.04.12	생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KDB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18	675	2011.04.12	생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19	674	2011.04.12	생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녹십자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20	673	2011.04.12	생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21	672	2011.04.12	생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알리안츠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22	671	2011.04.12	생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에이스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23	670	2011.04.12	생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ING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24	650	2011.04.07	생산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정부대표단 추천 요청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과장), 금융감독원장, 생명보험협회장...
225	617	2011.03.31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26	616	2011.03.31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227	524	2011.03.17	생산	자본감소 승인 통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순번	문서번호	보고일자	문서구분	제목	수(발)신자
228	523	2011.03.17	생산	대주주 변경 승인 통지	(주)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229	513	2011.03.11	생산	질의 회신	손해보험협회장
230	512	2011.03.11	생산	질의 회신	손해보험협회장
231	483	2011.03.03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A.H.A.) 한국지점 지점장
232	482	2011.03.03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233	368	2011.02.14	생산	외국인 고용 추천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234	293	2011.01.31	생산	정관 변경 허가 통보	손해보험협회장
235	166	2011.01.17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236	158	2011.01.17	생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서울보증보험(주) 대표이사
237	55	2011.01.05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238	54	2011.01.05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239	53	2011.01.05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240	44	2011.01.05	생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우리라이프(주) 대표이사
241	41	2011.01.05	생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케이디비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42	2251	2010.12.15	생산	장애인 지별 관련 협조 요청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243	2132	2010.11.25	생산	외국인 고용추천서	삼성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44	2076	2010.11.22	생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245	2065	2010.11.18	생산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정부대표단 추천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임금복지과장), 금융감독원장, 생명보험협회...
246	1976	2010.11.08	생산	외국인 고용추천서	삼성화재보험(주) 대표이사
247	1904	2010.10.29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흥국화재보험(주) 대표이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대표이사, 대한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48	1903	2010.10.29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ING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49	1902	2010.10.29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삼성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50	1901	2010.10.29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251	1895	2010.10.27	생산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에 대한 질의회신	kdb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52	1875	2010.10.25	생산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 심사 결과 회신	생명보험협회장
253	1823	2010.10.14	생산	과징금부과 조치내용 통지	카디프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54	1824	2010.10.14	생산	이란과의 보험거래에 대한 지도방안 제정 및 시행 요청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255	1602	2010.09.09	생산	이란과의 금융 · 보험 거래 시 주의 통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256	1562	2010.09.03	생산	보험조사협의회 위원추천 요청	금융감독원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257	1552	2010.09.01	생산	정관 변경 허가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258	1533	2010.09.01	생산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의 보험업 허가 통지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대표이사
259	1433	2010.08.12	생산	외국인 고용추천서	삼성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60	1406	2010.08.09	생산	케이디비생명보험(주)에 대한 자본감소인가 통지	케이디비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61	1409	2010.08.09	생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현황 조사의뢰	화재보험협회이사장(고객서비스팀장)
262	1323	2010.07.23	생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교보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63	1322	2010.07.23	생산	대주주 변경 승인 통지	메트라이프글로벌매니먼트(주) 대표이사
264	1313	2010.07.22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대한생명보험(주) 대표이사, 금호생명보험(주) 대표이사, 흥국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65	1312	2010.07.22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뉴욕생명보험 대표이사
266	1311	2010.07.22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267	1303	2010.07.21	생산	보험업 영위허가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	코리안리재보험(주) 대표이사
268	1139	2010.06.28	생산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제공 관련	손해보험협회장(자율관리본부장)
269	1087	2010.06.21	생산	보험산업 장기전망관련 자료협조 요청	대한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삼성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70	1129	2010.06.21	생산	외국인 고용추천서	대한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71	1070	2010.06.18	생산	과징금부과 조치내용 통지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대표이사
272	923	2010.05.25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273	921	2010.05.25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 결과 통보	ING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순번	문서번호	보고일자	문서구분	제목	수(발)신자
274	920	2010.05.25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 결과 통보	메트리이프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75	919	2010.05.25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 결과 통보	알리안츠생명보험㈜ 대표이사
276	918	2010.05.25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 결과 통보	미래에셋생명보험㈜ 대표이사
277	917	2010.05.25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 결과 통보	AIA생명보험 대표
278	916	2010.05.25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 처분 결과 통보	한화손해보험(주) 대표이사, 롯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279	859	2010.05.14	생산	과징금부과 조치내용 통지	금호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80	858	2010.05.14	생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삼성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81	830	2010.05.11	생산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정부대표단 추천 요청	노동부장관(임금복지과장), 생보협회, 손보협회...
282	829	2010.05.11	생산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정부대표단 추천 요청	노동부장관(임금복지과장), 손보협회, 생보협회...
283	771	2010.04.29	생산	외국인 고용추천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284	694	2010.04.09	생산	유권해석 회신	삼성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85	620	2010.04.09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교보생명보험(주) 대표이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대표이사, 흥국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86	619	2010.04.09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교보생명보험(주) 대표이사, 동부생명보험(주) 대표이사, 금호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87	618	2010.04.09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교보생명보험(주) 대표이사, 동부화재보험(주) 대표이사, 동양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88	617	2010.04.09	생산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교보생명보험(주) 대표이사, 동부생명보험(주) 대표이사, 동부화재보험(주) 대표이사...
289	463	2010.03.16	생산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 통보	동부화재보험(주) 대표이사
290	462	2010.03.16	생산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 통보	LIG손해보험(주) 대표이사
291	461	2010.03.16	생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통보	동양생명보험(주) 대표이사
292	460	2010.03.16	생산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 통보	금융감독원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293	245	2010.02.03	생산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 심사 결과 회신	손해보험협회장
294	191	2010.01.28	생산	보험입 허가 통지	더케이손해보험(주) 대표이사
295	122	2010.01.14	생산	보상체계 기준 및 원칙 관련 업계 의견 청취	생보협회, 손보협회
296	92	2010.01.13	생산	선임계리사 해임신고 및 선임보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	AXA손해보험(주) 대표이사
297	52	2010.01.08	생산	영업정지기간 변경 통보	메리츠화재보험(주)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주) 대표이사, 롯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298	41	2010.01.06	생산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내용 통보	메리츠화재보험(주)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주) 대표이사, 그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299	40	2010.01.06	생산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내용 통보	메리츠화재보험(주)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주) 대표이사, 롯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300	39	2010.01.06	생산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내용 통보	메리츠화재보험(주)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주) 대표이사, 롯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301	42	2010.01.06	생산	대한생명 보험업 영위 허가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	대한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은 행 과

□ 은행과 수발신 목록 별도 첨부

보고일자	제목	수(발)신처	보고자	접수자	상태
2012.09.06	경영업무신고 접수 회신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장	염춘승	고영호	발송
2012.09.06	금융실명제 위반사항 보고	신협중앙회	박형기	고영호	담당확인
2012.09.06	증권대치거래 경영업무 신고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서울지점	염춘승	고영호	담당확인
2012.09.03	결의 회신	전국은행연합회장	곽태선	고영호	담당확인
2012.09.03	경영업무신고 접수 회신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장, 금융감독원장	염춘승	고영호	발송
2012.08.31	경영업무신고	중국농업은행	최치연	고영호	담당확인
2012.08.24	제49회 납 표상추천 후보자 제2차 공적사실 확인 증명 협조 요청	전국은행연합회(수신제도부장)	조미남	고영호	발송
2012.08.23	은행연합회 운영개선 방안 제출	전국은행연합회	박상진	고영호	담당확인
2012.08.21	고액으로 부과 사전통지(신한은행)	신한은행장	배수찬	고영호	발송
2012.08.09	결의 회신	제주은행장(고객지원부장)	김대중	고영호	발송
2012.08.09	제49회 지속적 납 표상추천 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증명 협조 요청	전국은행연합회장(수신제도부장)	조미남	고영호	발송
2012.08.08	결의 회신	국민은행장	염춘승	고영호	발송
2012.08.03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업무처리(안) 관련 결의	국민은행	고영호	담당확인	
2012.08.03	외국인 고용추천 이행보증금 예치 이전 관련 구속행위 해당여부 질의	전국은행연합회	고영호	담당확인	
2012.08.02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협중앙회	박형기	배준수	담당확인
2012.07.25	논여기묵돈마란제축청러기금 지산운용지침 개정	한국은행 총재(총괄업장)	김대중	배준수	담당확인
2012.07.19	한국씨티은행의 구속성금융상품 수취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통보	한국은행 운영국장	배수찬	정지원	발송
2012.07.19	한국씨티은행의 구속성금융상품 수취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통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배수찬	고영호	발송
2012.07.19	부산은행의 구속성금융상품 수취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통보	한국씨티은행장	배수찬	고영호	담당확인
2012.07.19	신한은행의 구속성금융상품 수취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통보	부산은행장	배수찬	고영호	발송
2012.07.18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한은행장	배수찬	고영호	발송
2012.07.16	외국인 고용추천(Lee Stephen Jung, Min)	우리은행 은행장	염춘승	백형기	담당확인
2012.07.16	외국인 고용추천(Lee Stephen Jung, Min)	크레디아그리콜 서울지점 대표	배수찬	고영호	발송
2012.07.13	은행 부수업무에 관한 질의	우리은행장	고영호	배준수	담당확인
2012.07.12	외국인 고용 추천 의뢰	우리은행	배수찬	배준수	담당확인
2012.07.09	외국인 고용추천 의뢰	크레디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벡스트먼트 뱅크	배수찬	배준수	담당확인
2012.07.06	제49회 지속적인 납 기념 지속유공 표상대상자 추천	전국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조미남	백형기	담당확인
2012.07.06	제49회 지속적인 납 기념 지속유공 표상대상자 추천	전국은행연합회장	조미남	배준수	발송
2012.07.02	결의 회신	우리은행장	염춘승	배준수	발송
2012.06.29	제49회 지속적 납 기념 지속유공 표상대상자 추천	신협중앙회	조미남	백형기	담당확인
2012.06.28	우리 원스웨여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질의	우리은행	이재인	배준수	담당확인
2012.06.27	제49회 지속적인 납 기념 정부표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추천	농협은행	조미남	백형기	담당확인
2012.06.27	제49회 지속적 납 기념 정부표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추천	국민은행	조미남	백형기	담당확인
2012.06.25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한 은행권 건의서 제출	전국은행연합회	고영호	배준수	담당확인
2012.06.25	제49회 지속적 납 기념 정부표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추천	신협중앙회	조미남	백형기	담당확인
2012.06.22	회의 회신	씨티은행장 귀하	김대중	배준수	발송
2012.06.22	한국외환은행 야탑e마이트 아루디비지점 신설계획 신고 수리	한국외환은행장	조미남	배준수	담당확인
2012.06.20	금융실명법 관련 질의	한국씨티은행	박형기	배준수	담당확인
2012.06.19	제49회 지속적 납 기념 정부표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추천	전국은행연합회장	조미남	백형기	담당확인
2012.06.18	외국인통합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부여체계 개선 시행 안내	전국은행연합회장	박상진	배준수	발송
2012.06.13	제49회 지속적 납 기념 정부표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추천 의뢰	전국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조미남	배준수	발송
2012.06.11	경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소시에떼제네랄은행 서울지점장, 금융감독원장	배수찬	배준수	발송
2012.06.08	경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CBS은행 서울지점대표, 금융감독원장	배수찬	배준수	발송
2012.06.05	경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지점장, 금융감독원장	배수찬	배준수	발송
2012.06.04	은행의 경영업무 신고	한국산업은행 서울지점	이재인	배준수	담당확인
2012.05.31	경영업무 신고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이재인	배준수	담당확인
2012.05.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 수요조사	한국은행 총재(총괄업)	배수찬	배준수	발송
2012.05.21	행정참모 공동이용 관련 의견 조회	우리은행	이재인	배준수	담당확인
2012.05.17	은행의 경영업무 신고	도쿄공상은행 서울지점	이재인	배준수	담당확인
2012.05.17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한국씨티은행장	배수찬	배준수	발송
2012.05.17	부산은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부산은행장	배수찬	배준수	발송
2012.05.17	신한은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신한은행장	배수찬	배준수	발송
2012.05.1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배수찬	배준수	발송
2012.05.17	농협은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농협은행장	배수찬	배준수	발송
2012.05.15	경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조미남	배준수	발송
2012.05.15	중국내거래 경영업무 신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재인	배준수	담당확인
2012.05.15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HMC투자증권 귀하)	HMC투자증권 귀하	김대중	배준수	발송
2012.05.15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외환은행)	외환은행 귀하	김대중	배준수	발송
2012.05.14	제49회 지속적 납 행사 준비 협조 요청	전국은행연합회장(수신제도부장)	조미남	배준수	발송

2012.05.09	'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및 협조요청	한국은행 총재(증권협장)		배수찬	배준수	발송
2012.05.07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지점 신설 신고	한국외환은행		이재인	배준수	담당확인
2012.04.30	회계직 임면	한국은행 총재(증권협장)		배수찬	배준수	발송
2012.04.24	금융실명제 위반사항 보고	신협중앙회		채보정	배준수	담당확인
2012.04.24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 보고	신협중앙회		채보정	배준수	담당확인
2012.04.24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협중앙회		채보정	배준수	담당확인
2012.04.23	개인정보이용실태 종합점검 관련 전수조사 요청	전국은행연합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채보정	배준수	발송안함
2012.04.17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우리은행)	우리은행		김대중	배준수	발송
2012.04.09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신한은행)	신한은행 귀하		김대중	배준수	발송
2012.04.09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외환은행)	외환은행 귀하		김대중	배준수	발송
2012.04.04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장		배수찬	배준수	발송
2012.04.04	겸영업무 종행신고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이재인	배준수	담당확인
2012.04.03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지침(안)에 대한 의견 송부	전국은행연합회		고영호	배준수	담당확인
2012.03.26	광주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광주은행장		배수찬	배준수	발송
2012.03.23	외국인 고용추천(Fujisawa Keiko)	한국외환은행장		배수찬	배준수	발송
2012.03.19	감사원 통보사항(금융관련 협회등의 방만운영에 따른 금융소비자 부담전가) 관련 협조 요청	전국은행연합회장		박성진	배준수	발송
2012.03.13	외국인 고용에 따른 추천의뢰	한국외환은행		배수찬	배준수	담당확인
2012.03.07	겸영업무 신고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이재인	배준수	담당확인
2012.03.07	겸영업무 신고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이재인	배준수	담당확인
2012.03.07	전국은행연합회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첨부자료 추가)	전국은행연합회		박성진		담당확인
2012.03.05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우리은행)	우리은행 귀하		김대중	배준수	발송
2012.03.02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중국은행 서울지점장		배수찬	배준수	발송
2012.03.02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농협은행장		배수찬	배준수	발송
2012.03.02	겸영업무 신고	농협은행		이재인	배준수	담당확인
2012.03.02	겸영업무 신고	중국은행 서울지점		이재인	배준수	담당확인
2012.03.02	은행법 제47조에 따른 보고사항 송부	경남은행		서나윤	배준수	담당확인
2012.02.29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추 농협은행의 신토골이항구 운영에 관한 협의	농협중앙회		이재인	배준수	담당확인
2012.02.29	전국은행연합회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전국은행연합회		박성진	배준수	담당확인
2012.02.15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2.02.14	겸영업무 신고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		이재인	성대규	담당확인
2012.02.09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비엔피 파리바 은행 서울지점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2.02.03	증권대차업무관련 겸영업무 신고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2.02.02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우리은행)	우리은행 귀하(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203))		김대중	성대규	발송
2012.01.30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2.01.27	겸영업무 신고서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2.01.2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정가입 방지 및 위규가입자 점검 요청	한국은행 총재(증권협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2.01.0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2년도 기금운용계획 송부	한국은행 총재(증권협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2.01.04	2011년 금융실명제 위반사항 조사결과 알림	농협중앙회		조충행	성대규	담당확인
2012.01.04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우리은행)	우리은행 귀하(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김대중	성대규	발송
2012.01.04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신한은행)	신한은행 귀하(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		김대중	성대규	발송
2012.01.04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신한은행)	신한은행 귀하(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		김대중	성대규	발송
2011.12.27	부산은행 국외현지법인 신설 계획 신고 수리	부산은행 은행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12.20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협중앙회		이종협	성대규	담당확인
2011.12.09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협조	은행연합회장, 서울보증보험 사장		서나윤	성대규	발송
2011.12.08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협중앙회		이종협	성대규	담당확인
2011.12.05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협중앙회		이종협	성대규	담당확인
2011.11.30	중국농업은행주식유한회사 서울지점 신설 인가	중국농업은행주식유한회사 서울지점 지점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11.30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대화은행 서울지점 지점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11.29	은행법상의 겸영업무 신고	대화은행 서울지점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11.25	금융기관 국외지점 설치 사전신고	부산은행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11.14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장		서나윤	성대규	발송
2011.11.14	국민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국민은행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11.14	과징금 부과고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11.11	증권대차거래 겸영업무 신고서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11.11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한국씨티은행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11.10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협중앙회		이종협	성대규	담당확인
2011.11.10	겸영업무 신고서	한국씨티은행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11.09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 지점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11.09	겸영업무 신고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11.09	겸영업무 신고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10.28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크레디 아그리콜 코오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뱅크 서울지점 대표자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10.28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서울지점 지점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10.28	겸영업무 신고	크레디 아그리콜코 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뱅크 서울지점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10.28	겸영업무의 사전신고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서울지점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10.24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대표이사		서나윤	성대규	발송
2011.10.24	국채등권 등의 인수 매출업 겸영업무 신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10.19	2011 한·중 은행산업 발전방향 포럼 관련 협조요청	전국은행연합회		이종렴	성대규	담당확인
2011.10.17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대표이사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10.17	투자자문업 겸영업무 신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10.14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우리은행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10.14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맥쿼리은행 서울지점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10.14	겸영업무 적절 운영을 위한 신고서 제출	우리은행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10.14	겸영업무운영 신고(파생상품의 매매, 중개업무)	맥쿼리은행 서울지점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10.14	겸영업무운영 신고(증권의 투자 및 대차거래 업무)	맥쿼리은행 서울지점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10.14	겸영업무운영 신고(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관련 상담 조력업무)	맥쿼리은행 서울지점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10.13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한국외환은행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10.05	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전국은행연합회		고영호	성대규	담당확인
2011.09.2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무취급절차」 개정 승인 통보	한국은행 총재(통권팀장)		배수찬	고승범	발송
2011.09.09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승인	전북은행장		서나윤	성대규	발송
2011.09.09	중국농업은행주식유한회사 서울지점 신설 예비인가	중국농업은행주식유한회사 사장		서나윤	성대규	발송
2011.09.09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빌바오비스까야아르헨따리아은행 서울지점장		서나윤	성대규	발송
2011.09.09	겸영업무 신고 접수 회신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장		서나윤	성대규	발송
2011.09.09	겸영업무 신고 보고서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09.08	겸영업무 신고서	빌바오비스까야아르헨따리아은행 서울지점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08.23	금융실명거래에 대한 업무절의 요청	제주은행		이종렴	성대규	담당확인
2011.08.22	2012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운용계획 관련 협조 요청	한국은행 총재(총권팀장)		박학동	성대규	발송
2011.08.18	제48회 저축의 날 포상추천 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출장 협조 요청	전국은행연합회장(수신제도무장)		박학동	성대규	발송
2011.08.10	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 신청	전북은행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08.04	금융실명제 위반 보고	신협중앙회		이종렴	성대규	담당확인
2011.08.04	제48회 저축의 날 기념 저축유공 포상대상자 추천	전국은행연합회		박학동	조충행	담당확인
2011.08.01	제48회 저축의 날 포상대상자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 참석 통지	전국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박학동	성대규	발송
2011.07.26	제48회 저축의 날 기념 저축유공 포상대상자 추천	신협중앙회		박학동	조충행	담당확인
2011.07.22	제48회 저축의 날 기념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추천	신협중앙회		박학동	조충행	담당확인
2011.07.20	(주)우리은행 일부 영업양도 인가 통보	(주)우리은행장		서나윤	성대규	발송
2011.07.20	빌바오비스까야아르헨따리아은행주식회사 서울지점 신설인가 통보	빌바오비스까야아르헨따리아은행주식회사 회장		서나윤	성대규	발송
2011.07.18	제48회 저축의 날 기념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추천	농협중앙회		박학동	조충행	담당확인
2011.07.18	요청자료 송부	전국은행연합회		이병수	성대규	담당확인
2011.07.18	제48회 저축의 날 기념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추천	경남은행		박학동	조충행	담당확인
2011.07.15	제48회 저축의 날 기념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추천	전국은행연합회		조충행	성대규	담당확인
2011.07.14	우리은행 일반사무관리부문 영업양도 인가 신청	우리은행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07.0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07.07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 요청 통지	은행연합회장, 금융연구원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07.05	겸영업무 보고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07.05	겸영업무 신고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06.27	업무 질의	중소기업은행		이종렴	성대규	담당확인
2011.06.27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	신협중앙회		이종렴	성대규	담당확인
2011.06.27	제48회 저축의 날 기념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추천 의뢰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박학동	성대규	발송
2011.06.27	제48회 저축의 날 행사 준비 협조 요청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수신제도무장)		박학동	성대규	발송
2011.06.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관련 관리 강화 요청	한국은행 총재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05.24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장		박학동	성대규	발송
2011.05.24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견 조회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박학동		담당확인
2011.05.1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	한국은행 총재(총권팀장)		배수찬	고승범	발송
2011.05.04	'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및 협조요청	한국은행 총재(총권팀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05.02	영업추진단의 실명확인 가능여부 질의	농협중앙회		이종렴	성대규	담당확인
2011.04.29	전국은행연합회 정관변경 허가 통보	전국은행연합회장		배수찬	고승범	발송
2011.04.28	정관변경 허가 신청	전국은행연합회		조충행	성대규	담당확인
2011.04.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조사 강화 요청	한국은행 총재(총권팀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
2011.04.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조사 강화 요청	한국은행 총재(총권팀장)		배수찬	성대규	발송안함
2011.04.05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신한은행		최대현	성대규	담당확인
2011.04.04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청취	신한은행 은행장		최대현	성대규	발송
2011.04.04	민원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신한은행		최대현	성대규	담당확인
2011.03.16	금융위원회 의결 통보(BBVA 서울지점 예비인가)	빌바오비스까야아르헨따리아은행 주식회사(BBVA)		정지혜	성대규	발송
2011.03.14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신한은행)	신한은행 귀중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신한은행 본점)		조형섭	성대규	발송
2011.03.1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결정내용 송부	한국은행		정지혜	성대규	담당확인

2011.03.14	울산중앙신협의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협중앙회		이종렴	성대규	담당확인
2011.03.02	전국은행연합회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전국은행연합회		이재성	성대규	담당확인
2011.02.22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협중앙회		이종렴	성대규	담당확인
2011.02.21	점영업무 운영 신고	국민은행		서나윤	성대규	담당확인
2011.02.16	국민은행의 신용카드무문 분할인가 통보	(주)국민은행장		정지혜	성대규	발송
2011.02.16	국민은행 신용카드무문 분할인가 통보	(주)국민은행장		정지혜	성대규	발송안함
2011.01.27	국민은행의 신용카드 사업부문 분할을 위한 분할인가 신청서 제출	국민은행		서나윤	김근익	담당확인
2011.01.27	국민은행 신용카드부문 분할 예비인가 통보	국민은행장		정지혜	김근익	발송
2011.01.21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재심 결과 보고(계양신협)	신협중앙회		이종렴	김근익	담당확인
2011.01.21	과징금 부과고지	OCBC은행 서울지점		정지혜	김근익	발송
2011.01.2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무	한국은행 총재(증권협장)		이재성	김근익	발송
2011.01.20	지적전산자로 이용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	신한은행장		정지혜	김근익	발송
2011.01.14	지적전산자로 제공심사 신청서 제출	신한은행		정지혜	김근익	담당확인
2011.01.13	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서	빌바오비스카아르헨따리아은행(BBVA)		이종렴	김근익	담당확인
2010.12.30	외국인투자신고 내용 통보	한국씨티은행		신종순	김근익	담당확인
2010.12.27	금융실명제 위반사항 조사결과 통보	농협중앙회		이종렴	김근익	담당확인
2010.12.27	금융실명제 위반 보고	신협중앙회		이종렴	김근익	담당확인
2010.12.23	제주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제주은행장		이승렴	김근익	발송
2010.12.17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협중앙회		이종렴	김근익	담당확인
2010.12.03	국민은행의 신용카드 사업부문 분할을 위한 분할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	국민은행		서나윤	김근익	담당확인
2010.11.22	금융위원회 의결 통보	OCBC은행 서울지점장		정지혜	김근익	발송
2010.11.17	의견서 제출	신한금융지주회사		서나윤	김근익	담당확인
2010.11.11	처분의 사전통지	신한은행 은행장, 신한금융지주 회장 라응찬		서나윤	김근익	발송
2010.10.07	업무 업무정지 통보	델라트은행 서울지점장		최대한	김근익	발송
2010.09.30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협중앙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9.30	자회사 출자현황 변경보고서	한국씨티은행		서나윤	김근익	담당확인
2010.09.29	자회사 출자현황 변경보고서	우리은행		서나윤	김근익	담당확인
2010.09.09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협중앙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9.09	대이란 유엔안보리결의(1929호) 이행을 위한 정부발표 관련 협조요청	전국은행연합회장		마순	김근익	발송
2010.09.31	회계적 임원	한국은행 총재(증권협장)		이재성	김근익	발송
2010.09.3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무위금절차 개정 승인허가	한국은행 총재(증권협장)		이재성	김근익	발송
2010.09.25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협중앙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9.23	09년 사업결산 및 10년 사업계획 보고	한국신용분석사연합회		이재성		담당확인
2010.09.20	외국인 고용추천(Michelle Farnsworth)	신한은행		이재성	김근익	발송
2010.09.18	외국인 고용추천(Fredrick Yoon)	전북은행		이재성	김근익	발송
2010.09.18	외국인 고용에 따른 추천 의뢰	신한은행		이재성	김근익	담당확인
2010.09.18	채용예정자 추천의뢰 협조 요청	전북은행		이재성	김근익	담당확인
2010.09.18	제47회 저축의 날 포상추천 후보자 제 2차 공적사실 확인 출장 협조 요청	전국은행연합회(수신제도부장)		이재성	김근익	발송
2010.09.09	제47회 저축의 날 포상추천 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출장 협조 요청	전국은행연합회(수신제도부장)		이재성	김근익	발송
2010.09.09	제47회 저축의 날 포상추천 추보자 공적사실 확인 출장 협조 요청	전국은행연합회장(수신제도부장)		이재성	김근익	발송
2010.09.02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협중앙회		조충행	손형채	담당확인
2010.07.22	금융실명제 위반 관련 조사결과 알림	농협중앙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7.21	제47회 저축의 날 기념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 빈경	전국은행연합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7.15	저축의 날 기념 저축유공 포상대상자 추천	전국은행연합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7.03	제47회 저축의 날 포상대상자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 참석 통지	전국은행연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조충행	김근익	발송
2010.07.05	제47회 저축의 날 기념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추천	농협중앙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7.02	중국공상은행 추가지점 신설 인가	중국공상은행 회장		서나윤	김근익	발송
2010.06.30	제47회 저축의 날 기념 저축유공 포상대상자 추천	신협중앙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6.29	제47회 저축의 날 기념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추천	전북은행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6.25	제47회 저축의 날 기념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추천	신협중앙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6.24	2010년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안내	한국은행		서나윤	김근익	담당확인
2010.06.24	자회사 출자현황 변경보고서	중소기업은행		서나윤	김근익	담당확인
2010.06.24	자회사 출자현황 변경보고서	국민은행		서나윤	김근익	담당확인
2010.06.24	자회사 출자현황 변경보고서	신한은행		서나윤	김근익	담당확인
2010.06.23	제47회 저축의 날 기념 정부포상 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추천	우리은행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6.23	'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및 협조요청	한국은행 총재(증권협장)		이재성	김근익	발송
2010.06.18	'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및 협조요청	한국은행 총재(증권협장)		이재성	김근익	발송안함
2010.06.17	제47회 저축의 날 기념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추천	전국은행연합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6.17	전국은행연합회 기획조사전문위원회 워크샵 관련 강의 요청	전국은행연합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6.16	외국인 고용추천(Julien Eric Boulay)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이재성	김근익	발송
2010.06.16	외국인고용추천(Lee, Joo Young)	신한은행		이재성	김근익	발송
2010.06.16	외국인 고용에 따른 추천 의뢰	신한은행		이재성	김근익	담당확인

2010.06.14	외국인 고용에 따른 추천 의뢰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이재성	김근익	담당확인
2010.06.14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 주거취약계층의 임금압류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전파	전국은행연합회장		정지혜	김근익	발송
2010.06.11	부산진신협 및 신마산신협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협중앙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6.10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승인 통보	부산은행장		정지혜	김근익	발송
2010.06.09	제47회 저축의 날 기념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추천 의뢰	전국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조충행	김근익	발송
2010.06.09	외국인투자신고 내용 통보	한국씨티은행		서나윤	김근익	담당확인
2010.06.09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승인 통보	부산은행장 귀하		정지혜	김근익	발송
2010.06.03	자회사 출자현황 변경보고서	중소기업은행		서나윤	김근익	담당확인
2010.06.03	자회사 출자현황 변경보고서	국민은행		서나윤	김근익	담당확인
2010.06.03	자회사 출자현황 변경보고서	신한은행		서나윤	김근익	담당확인
2010.05.31	정관변경 신고서	국민은행		손영채	김근익	담당확인
2010.05.19	제47회 저축의 날 행사 준비 협조 요청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수신제도부장)		조충행	김근익	발송
2010.05.10	금융실명제 위반사항 조사결과 통보	농협중앙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4.29	금융실명제 위반사항 조치결과 통보	농협중앙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4.28	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 신청	부산은행		마순	김근익	담당확인
2010.04.23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관련 자료요청	한국씨티은행장		최대현	김근익	발송
2010.04.23	국외점포 신설 사전협의 및 자회사 업종 인정 통보	우리은행장		최대현	김근익	발송
2010.04.21	외국인 고용추천(Btihaje Chrifi)	비엔피파리바은행서울지점		이재성	김근익	발송
2010.04.19	외국인 고용에 따른 추천 의뢰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이재성	김근익	담당확인
2010.04.19	외국인 고용 추천 (Hugh Yoonjong, Chung)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은행 한국지점		이재성	김근익	발송
2010.04.12	체권추심 위임 사실 확인서	한국씨티은행		정지혜	김근익	담당확인
2010.04.07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협중앙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4.06	인도 첸나이지점과 브라질 현지법인 신설관련 사전협의 및 등 현지법인 자회사 업종인정 신청	우리은행		신종순	김근익	담당확인
2010.04.01	동일인 등 주식취득 사실 보고서	한국씨티은행		마순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26	외국인 고용 추천 (Nakamura Yuko)	미쓰이스미트모은행 서울지점 지점장		이재성	김근익	발송
2010.03.26	금융분야의 "해외인력" 고용추천 요청	미쓰이스미트모은행 서울지점		이재성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25	자회사 출자현황 변경보고서	중소기업은행		오승준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25	자회사 출자현황 변경보고서	신한은행		오승준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25	자회사 출자현황 변경보고서	국민은행		오승준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23	정관변경(안) 신고	SC제일은행		신종순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22	정관변경 신고	국민은행		신종순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16	금융실명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신협중앙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1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위규가입자 점검결과 송부	한국은행		정지혜	조충행	담당확인
2010.03.11	한국씨티은행 정관변경 사전 신고	한국씨티은행		신상훈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10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전국은행연합회		오승준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09	정관변경(안) 사전 신고	광주은행		신상훈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09	정관 변경의 신고	신한은행		신상훈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08	정관변경 사전 신고	우리은행		신상훈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08	2010년 3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지급내역 송부 및 지출한도 배정 신청	한국은행		정지혜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05	정관변경(안) 사전 신고	경남은행		신상훈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05	정관 변경 신고	부산은행		신상훈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02	정관 변경(안) 사전 신고	제주은행		신상훈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02	정관 일부변경(안) 보고	전북은행		신상훈	김근익	담당확인
2010.03.02	금융실명법 위반사항 통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농협중앙회		조충행	김근익	담당확인
2010.02.26	추가지점 신설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	중국공상은행		신종순	김근익	담당확인
2010.02.10	2010년 2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지급내역 송부 및 지출한도 배정 신청	한국은행		이재성	최훈	담당확인
2010.02.05	상호변경 보고	칼리온은행 서울지점		신종순	최훈	담당확인
2010.01.26	해외점포(뉴욕사무소) 신설에 관한 사전협의 신청	농협중앙회		신종순	최훈	담당확인
2010.01.22	10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요청	한국은행		정지혜	최훈	담당확인
2010.01.1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정가입 방지 및 위규가입자 점검 요청	한국은행(증권팀장)		정지혜	최훈	발송
2010.01.14	결산일 변경 승인	맥쿼리은행 서울지점장		윤형준	최훈	발송
2010.01.13	2010년 1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지급내역 송부 및 지출한도 배정 신청	한국은행		정지혜	최훈	담당확인
2010.01.06	금융실명제 위반사항 조사결과 통보	농협중앙회		조충행	최훈	담당확인
2010.01.06	(가칭)우리블랙스톤 코리아오퍼튜니티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주식소유 승인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경남은행...		윤형준	최훈	발송

자본시장과

□ 별첨 엑셀 파일 참조

문서등록대장 목록

연번	문서번호	등록일시	문서구분	제목	수발신자	공개구분
1	19	2010.01.05	접수	KTB신성장동력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 승인신청의 건	케이티비투자증권㈜	비공개
2	39	2010.01.07	접수	전문투자자 등록 현황 보고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3	44	2010.01.08	생산	외국인 고유속성 변경 (크레티트 스위스증권 서울지점)	크레디트 스위스증권 서울지점장	비공개
4	46	2010.01.08	생산	외국인 고유속성 보고 (결제목적)	과천투자 대표이사	비공개
5	47	2010.01.08	생산	외국인 고유속성 통보 (결제목적)	과천투자 대표이사	비공개
6	80	2010.01.12	접수	신고, 보고된 임원의 겸직 현황변경에 관한 보고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7	81	2010.01.12	접수	자본출자 승인 신청의 건	대신증권㈜	비공개
8	93	2010.01.13	생산	대주증권㈜에 대한 투융증사 결과 조치안 송부	대주증권㈜ 대표이사	비공개
9	94	2010.01.13	생산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투융증사 결과 조치안 송부	한맥투자증권㈜ 대표이사	비공개
10	95	2010.01.13	생산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투융증사 결과 조치안 송부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비공개
11	96	2010.01.13	생산	푸르덴셜투자증권㈜에 대한 투융증사 결과 조치안 송부	푸르덴셜투자증권㈜ 대표이사	비공개
12	115	2010.01.14	접수	정내파생상품투자회사 • 투자증개업 변경인가 신청의 건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비공개
13	127	2010.01.16	접수	외국인 채무증권 고유속성 신청의 건	현대증권㈜	비공개
14	142	2010.01.19	접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15	156	2010.01.21	생산	외국인 고유속성 통보 (결제목적)	현대증권㈜ 대표이사	비공개
16	166	2010.01.27	생산	금융투자업 인가 통보	대신투자증권㈜ 외 4개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투자	대국민공개
17	206	2010.01.29	접수	금융투자업자의 위탁 수수료 부과 기준에 관한 질의	대신투자증권㈜	비공개
18	228	2010.01.29	생산	계열회사	대신 투자증권 대표이사	비공개
19	220	2010.02.01	접수	외국인고유속성 파트너속성 의뢰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비공개
20	235	2010.02.02	생산	외국인 고유속성 부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대표이사	비공개
21	253	2010.02.04	접수	주식매매거래계좌 개설신청서	유진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22	254	2010.02.04	접수	메리츠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	메리츠증권㈜	비공개
23	255	2010.02.04	생산	메리츠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 신청	메리츠증권㈜	비공개
24	259	2010.02.05	접수	규정개정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25	260	2010.02.05	접수	도이치 증권㈜ 장내파생상품거래 추가업무 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도이치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26	261	2010.02.05	접수	투자매매업(인수업무 등) 변경 인가 신청의 건	한맥투자증권㈜ 대표이사	비공개
27	278	2010.02.10	생산	KTB투자증권㈜ (구 KTB신성장동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승인	KTB투자증권㈜ 대표이사	비공개
28	293	2010.02.10	접수	전문인력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29	304	2010.02.11	접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의 건	키움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30	309	2010.02.12	접수	금융투자업협회의 회원 관련자료 송부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31	314	2010.02.17	생산	전문인력위원회 위원 추천 회신	금융투자협회장	비공개

32	333	2010.02.19	접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신청	HMC투자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33	345	2010.02.22	접수	신고, 보고된 약관의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비공개
34	346	2010.02.22	접수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초과소유 사후승인 신청의 건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35	366	2010.02.25	접수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신청 철회 및 신청서류 보완의 건	키움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36	382	2010.02.26	접수	「선물업 본인가 신청서」 제출의 건	교보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37	386	2010.02.26	접수	영업양수 · 도 승인신청서	노무라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비공개
38	394	2010.03.02	접수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한화증권	비공개
39	395	2010.03.02	접수	타 법인 출자승인 신청	한화증권	비공개
40	412	2010.03.03	접수	SK 증권(주) 출자승인 신청의 건	SK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41	413	2010.03.03	접수	외국인고문에 따른 추천 의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서울지점	비공개
42	415	2010.03.03	생산	대주주변경 승인 통보	홍국증권(주) 대표이사	대국민공개
43	416	2010.03.03	생산	금융투자업 인가 및 합병승인 통보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대표이사, 동양선물(주) 대표이사	대국민공개
44	417	2010.03.03	생산	금융투자업 인가 통보	도이치증권(주) 대표이사,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대	대국민공개
45	418	2010.03.03	생산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송부	토러스투자증권(주) 대표이사	부분공개
46	419	2010.03.03	생산	메리츠증권(주)과 메리츠종합금융(주)의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 통보	메리츠증권(주) 대표이사, 메리츠종합금융(주) 대표이사	부분공개
47	420	2010.03.03	생산	교보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송부	교보증권(주) 대표이사	부분공개
48	421	2010.03.03	생산	대신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대신증권(주) 대표이사	부분공개
49	422	2010.03.03	생산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송부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대표이사	부분공개
50	423	2010.03.03	생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송부	한국금융투자협회장	부분공개
51	435	2010.03.04	접수	단기금융업무 인가 관련 대표이사 변경 신고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52	436	2010.03.05	생산	민원이첩	금융투자협회장	비공개
53	444	2010.03.05	접수	비자 취득 추천 사유서 신청의 건	대주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237	2721	2010.12.30	생산,	외국인 고문추천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서울지점장	비공개

문서등록대장 목록

순번	문서번호	보고일자	문서구분	제목	수(납)신자	공개구분
1	1	2011.01.03	접수	KOFC KTB Frontier Champ 2010-3 PEF 출자 승인신청에 대한 보완	케이티비투자증권(주)	부분공개
3	39	2011.01.05	접수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시행세칙」 개정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4	53	2011.01.07	접수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승인 신청	솔로몬투자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5	54	2011.01.07	접수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승인 신청	대신증권	비공개
6	75	2011.01.11	접수	전문투자자 등록 현황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7	78	2011.01.11	생산	KTB투자증권㈜의 (가칭)코에프씨케이티비프런티어챔프 2010의3호	KTB투자증권(주) 대표이사	비공개
8	86	2011.01.12	접수	외국인 고용추천 의뢰서	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9	87	2011.01.12	접수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지분출자 승인 신청	키움증권주식회사	비공개
10	97	2011.01.13	접수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승인 신청	교보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11	117	2011.01.14	접수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승인 신청	삼성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12	130	2011.01.17	접수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의뢰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13	150	2011.01.19	접수	외국인 직원 채용 추천 의뢰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비공개
14	151	2011.01.19	접수	초청 사유서 및 활용계획서	유비에스증권 서울지점	비공개
15	166	2011.01.20	생산	외국인 고용추천	리딩투자증권(주) 대표이사	비공개
16	175	2011.01.20	생산	IBK투자증권(주)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 통보	IBK투자증권(주) 대표이사	비공개
17	193	2011.01.24	생산	외국인 고용추천	신한금융투자(주) 대표이사	비공개
18	195	2011.01.24	생산	외국인 고용추천	하나대투증권(주) 대표이사	비공개
19	197	2011.01.24	생산	외국인 고용추천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장	비공개
20	217	2011.01.26	생산	금융투자업 인가 통보	한맥투자증권(주) 대표이사,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장	대국민공개
21	228	2011.01.27	접수	신고,보고된 약관의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23	264	2011.01.31	접수	규정개정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24	306	2011.02.10	접수	규정개정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28	397	2011.02.18	생산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송부	대우증권(주) 대표이사	비공개
30	413	2011.02.21	접수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승인 신청서 제출의 건	솔로몬투자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32	467	2011.03.02	생산	합병 승인 및 금융투자업 인가 통보	KB투자증권(주) 대표이사	대국민공개
33	473	2011.03.02	접수	신고, 보고된 약관의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34	484	2011.03.04	접수	금융투자업 본점(에비)인가 신청 철회	한화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35	487	2011.03.04	생산	민간전문가 공직파견 요청	한국금융투자협회장	비공개
36	495	2011.03.07	접수	규정개정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37	497	2011.03.07	생산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투자회사 개별약관 심사결과 통보	한국금융투자협회장	비공개
39	504	2011.03.09	접수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국내한정영업조건취소 승인신청서	제이피모간증권회사 서울지점	비공개
40	505	2011.03.09	접수	직원 파견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비공개
42	565	2011.03.23	접수	신고,보고된 약관의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43	570	2011.03.24	접수	전문인력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44	575	2011.03.25	생산	전문인력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에 대한 회신	한국금융투자협회장	비공개
45	614	2011.04.05	접수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승인 신청 철회의 건	솔로몬투자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48	623	2011.04.06	생산	출자승인 통보	교보증권㈜ 대표이사,대신증권㈜ 대표이사,대신증권㈜ 대표이사,솔로몬	비공개
49	636	2011.04.08	접수	합병인가 신청 철회	한화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52	661	2011.04.14	접수	출자승인 신청서 제출의 건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비공개
53	664	2011.04.15	접수	신고, 보고된 약관의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56	702	2011.04.27	생산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통보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장	대국민공개
57	712	2011.04.28	생산	과징금 부과고지	부국증권(주) 대표이사	비공개
59	735	2011.05.04	생산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통보	씨엔피파리바증권(주) 대표이사	대국민공개
61	742	2011.05.04	접수	규정개정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62	795	2011.05.23	접수	신고,보고된 약관의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63	839	2011.06.06	접수	외국인 고용에 따른 추천 의뢰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주식회사	비공개
64	841	2011.06.09	접수	리딩챌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펀드규모 변경 사유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비공개
65	844	2011.06.09	생산	외국인 고용 추천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대표이사	부분공개
66	849	2011.06.13	접수	신고,보고된 약관의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대국민공개

문서등록대장 목록

순번	문서번호	등록일자	문서구분	제목	수발신(처)	종류	공개구분
1	16	2012.01.06	접수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 폐지 보고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2	23	2012.01.09	접수	외국인 채용을 위한 고용추천 의뢰	대우증권주식회사	비전자	비공개
3	28	2012.01.10	접수	전문인력위원회 소집 안내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4	36	2012.01.11	생산	외국인 고용 추천	대우증권(주)	전자	부분공개
5	37	2012.01.11	생산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송부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전자	비공개
6	46	2012.01.13	생산	민원이첩	금융투자협회 회장	전자	비공개
7	79	2012.01.18	접수	2011년도 하반기 전문투자자 지정현황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8	84	2012.01.19	접수	이첩민원 회신결과 통보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비공개
9	94	2012.01.26	접수	규정개정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10	95	2012.01.26	접수	투자매매업 변경인가(본인가) 신청서 제출	주식회사 BS투자증권	비전자	비공개
11	106	2012.01.27	생산	출자승인 통보	에스케이증권㈜ 대표이사	전자	비공개
12	107	2012.01.27	생산	전현계선관고 조치 통보	금융감독원장, 한해투자증권㈜ 대표이사	전자	비공개
13	118	2012.02.01	접수	신고, 보고된 약관의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14	132	2012.02.07	접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15	133	2012.02.07	접수	외국인 고용추천 의뢰	부국증권 주식회사	비전자	비공개
16	138	2012.02.08	생산	검사 결과 조치안 송부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동부증권㈜ 대표이사	전자	비공개
17	141	2012.02.08	생산	적기시정조치 관여 통보	동양증권㈜ 대표이사, 금융감독원장	전자	비공개
18	144	2012.02.09	생산	외국인 고용 추천	부국증권(주) 대표이사	전자	부분공개
19	156	2012.02.13	접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신청서	다이막증권캐피탈마켓주식회사 서울지점	비전자	비공개
20	164	2012.02.15	접수	신고, 보고된 약관의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21	184	2012.02.20	접수	외국인 고용 추천 자료 송부의 건	키움증권주식회사	비전자	비공개
22	200	2012.02.22	생산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통보	프러스투자증권㈜ 대표이사, 소시에떼제네랄은행 서울지점장	전자	대국민공개
23	202	2012.02.22	생산	외국인 고용 추천	키움증권(주)	전자	부분공개
24	206	2012.02.22	접수	외국인 인력 고용추천 의뢰의 件	삼성증권주식회사	비전자	비공개
25	213	2012.02.24	생산	외국인 고용 추천	삼성증권(주)	전자	부분공개
26	233	2012.02.28	접수	전문인력위원회 소집 안내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27	261	2012.03.07	접수	규정개정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28	262	2012.03.07	접수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승인 신청 철회 요청	동양증권주식회사	비전자	비공개
29	266	2012.03.07	생산	금융투자업 인가 통보	㈜비에스투자증권 대표이사	전자	대국민공개
30	267	2012.03.07	생산	검사 결과 조치안 송부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KB선물㈜ 대표이사, LIG투자증권㈜대표이사,	전자	비공개
31	291	2012.03.13	접수	외국인 인력 고용추천 의뢰의 件	삼성증권주식회사	비전자	비공개
32	301	2012.03.15	생산	외국인 고용 추천	삼성증권(주)	전자	부분공개
33	317	2012.03.20	접수	신고, 보고된 약관의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34	318	2012.03.20	접수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승인 신청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비전자	비공개
35	329	2012.03.21	생산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통보	다이막증권캐피탈마켓㈜ 서울지점장	전자	대국민공개
36	350	2012.03.27	접수	투자매매업(1-111-2) 본인가 신청	프러스투자증권주식회사	비전자	비공개

37	395	2012.04.04	생산	금융투자업 인가 통보	스시에대제네랄은행 서울지점장,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전자	대국민공개
38	403	2012.04.06	접수	합병승인 신청	한화증권 주식회사	비전자	비공개
39	419	2012.04.10	접수	전문인력위원회 소집 안내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40	420	2012.04.10	접수	신고, 보고된 약관의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41	421	2012.04.12	접수	(주)삼신상호저축은행 주식 소유승인 신청의 건	키움증권주식회사	비전자	비공개
42	423	2012.04.12	접수	외국인 채용을 위한 고용추천 의뢰의 건	대우증권	비전자	비공개
43	436	2012.04.16	생산	외국인 고용 추천	대우증권(주)	전자	비공개
44	468	2012.04.18	생산	검사 결과 조치안 송부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HMC투자증권㈜ 대표이사,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전자	비공개
45	469	2012.04.18	생산	한맥투자증권㈜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통보	한맥투자증권(주) 대표이사	전자	비공개
46	472	2012.04.19	접수	규정 개정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47	474	2012.04.19	접수	업무단위(1-3-1) 추가에 따른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신청	하이투자증권주식회사	비전자	비공개
48	476	2012.04.19	접수	규정 개정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49	486	2012.04.24	접수	사장발급을 위한 외국인 고용 추천 의뢰서	솔로몬투자증권	비전자	비공개
50	491	2012.04.24	생산	홍콩정 약관 홈페이지 공시방안 마련 요청	금융투자협회 회장 (자율규제운영부장)	전자	비공개
51	512	2012.04.27	생산	외국인 고용 추천	솔로몬투자증권(주)	전자	비공개
52	516	2012.04.27	접수	SK증권(주)의출자승인신청의 건	SK증권주식회사	비전자	비공개
53	542	2012.05.02	생산	검사 결과 조치안 송부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리딩투자증권(주) 대표이사	전자	비공개
54	570	2012.05.10	접수	규정 개정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55	596	2012.05.16	접수	철회의 건(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승인신청)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비전자	비공개
56	679	2012.06.11	접수	신고, 보고된 약관의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57	691	2012.06.13	접수	전문인력위원회 소집 안내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58	709	2012.06.18	접수	신고, 보고된 약관의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59	718	2012.06.19	접수	크레디쓰위스증권 서울지점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2-3-2) 예비인가신청서 제출	법무법인(유)태평양 / 크레디쓰위스증권 서울지점	비전자	비공개
60	729	2012.06.20	접수	LIG투자자문 주식 소유승인 신청서	LIG투자증권	비전자	비공개
61	731	2012.06.20	생산	합병 승인 통보	한화증권㈜ 대표이사	전자	대국민공개
62	732	2012.06.20	생산	금융투자업 인가 통보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전자	대국민공개
63	733	2012.06.20	생산	검사 결과 조치안 송부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유리투자증권(주) 대표이사	전자	비공개
64	739	2012.06.21	생산	에스케이증권㈜의 (가칭) 리더스제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승인 통보	SK증권(주) 대표이사	전자	비공개
65	794	2012.07.05	접수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승인 신청	NH농협증권주식회사	비전자	비공개
66	800	2012.07.06	접수	장외주식의 호가등재에 관한 규정 개정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67	822	2012.07.13	생산	민원이첩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전자	비공개
68	827	2012.07.16	접수	신고, 보고된 약관의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의 건	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69	841	2012.07.17	접수	민원처리 결과 통보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비공개
70	850	2012.07.18	생산	부존검사 결과 조치안 송부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전자	비공개
71	851	2012.07.18	생산	금융투자업 인가 통보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장,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장	전자	대국민공개
72	914	2012.08.09	접수	규정 개정 보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73	915	2012.08.09	접수	신고, 보고된 약관의 접수 및 검토결과 보고의 건	한국금융투자협회	비전자	대국민공개
74	916	2012.08.09	접수	씨아이엠비증권(CIMB Securities Limited) 지점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투자중개업(2-12-	씨아이엠비증권(CIMB) / 법무법인(유)태평양	비전자	비공개
75	923	2012.08.16	생산	민원이첩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전자	비공개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5-1. 불법 광고 근절 대책

□ 금융위원회는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12. 3. 1부터 시행중

① 대부광고시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시행령 §6)

② 대부광고시 이용자가 해당 대부업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최상단에 배치토록 함 (시행령 §6의2)

③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 금지 (시행령 §6의3)

④ 대부업협회내 "대부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대부광고 자제 유도 (시행령 §11의2) 등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5-2. 대부업체 광고 규제 관련 규정

□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광고 규제는 ①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금지, ② 대부광고 표시규제, ③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음 (상세 : 붙임)

(붙임) 현행 대부업법 광고관련 규제

【法律】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施行令】

제3조의2(상호 등)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부업 등록번호
2. <삭 제>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

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이 설치된 시·도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이 설치된 시·도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4.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제4호의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3.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별표 1]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제6조의2제3호 관련)

1. 광고 표시 등의 방법

가. 상호 및 등록번호는 광고 왼쪽상단에 표시한다.

나. 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등의 경우에는 본점의 등록번호만 기재할 수 있다.

다.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

로 한다.

라.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에 관한 내용이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자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마. 고객모집 또는 대부상품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표기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2호에 따른 경고문구 등 필수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간판 등 단순히 영업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 또는 음악, 체육행사 등의 후원 목적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호 또는 상표만 표시할 수 있다.

2. 경고문구 표기기준

가.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1)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2)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나. 경고문구는 광고에 사용된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 경고문구는 지면 및 방송 광고의 경우에 표기한다. 다만, 광고면적이 150 제곱센티미터 미만인 지면광고에 대해서는 경고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6-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2009~2011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 별도제출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6-2. 최근 3년간 감사원,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

□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는 총 10건임.

감 사 명	감사 기간	비 고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10.03.15 ~ 03.19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10.01.28 ~ 04.02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10.09.06 ~ 10.13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10.12.09 ~ 12.29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11.03.17 ~ 03.25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11.03.21 ~ 05.26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11.07.04 ~ 07.29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11.09.19 ~ 10.31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12.01.09 ~ 02.28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12.03.05 ~ 03.16	

○ 감사원 지적사항(별첨1) 및 조치결과(별첨2)

□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는 총 2건임

감 사 명	감사 기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0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0.12.16 ~ 12.22	별첨3	별첨5
2011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1.12.26 ~ 12.30	별첨4	별첨6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종류	지 적 사 항	감사조치일	감 사 제 목	조치결과
1	주의	모기지론 이차보전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	2010.05.03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2	주의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	2010.05.03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3	주의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2010.05.03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4	주의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	2010.05.03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5	통보	대부업 동일 상호 중복 등록에 대한 제한 제도 미비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완결
6	통보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범위 설정 불합리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완결
7	통보	대부업자 관리·감독권 분담 불합리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중
8	통보	대부업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분석 방법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중
9	통보	대부업 등록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추진 미흡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완결
10	통보	대부업 감독 업무 조정 및 기관 간 협조 미흡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중
11	통보	상호금융회사의 휴면 예·적금 등 활용방안 미수립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중
12	통보	비과세 예탁금 한도 상향 등에 따른 수신 증가분 활용 방안 미흡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완결
13	통보	상호저축은행 계정 적자 해소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대책 미흡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중
14	통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감독규정 운영 및 지도·감독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중
15	통보	상호저축은행의 대형화·계열화에 따른 차등 감독기준 미정비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완결
16	통보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운용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중
17	통보	부실한 상호저축은행의 제3자 인수 추진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중
18	통보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성에 대한 검사·감독 불철저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중
19	통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확대 제도 운영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중
20	통보	대출재원 부족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지원사업 차질 우려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완결
21	통보	금융기관 휴면예금의 출연 관리 및 자금 운용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중
22	권고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불합리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완결
23	통보	ㅇㅇ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처리 태만	2011.03.14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완결
24	주의	재래시장 소재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정책 추진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25	주의	미소금융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연번	종류	지 적 사 항	감사조치일	감 사 제 목	조치결과
26	주의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성에 대한 검사·감독 불철저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27	주의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자 검사업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28	주의	사금융 피해 관련 민원·신고사항 처리 및 지도·감독 부적정	2010.12.2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29	통보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정체성 관련 대책 마련 미흡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 중
30	통보	한국산업은행 등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한 배당정책 수립 미흡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완결
31	통보	정부 미보증 단기 외화채무의 관리대책 미흡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 중
32	통보	한국산업은행 주요 재무지표 개선노력 미흡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 중
33	통보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세부 추진방안 미비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 중
34	통보	정책금융 영역인 기금대출 업무 미취급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 중
35	통보	해외자원 개발사업 검토절차 부적정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완결
36	통보	한국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On-lending) 설계 부적정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 중
37	통보	금호생명 인수 업무 부당 처리	2011.10.10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조치완결
38	주의	정책성 자산인 벤처·중소기업 주식 미이관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
39	주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2011.06.08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
40	주의	매각심사소위 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 공자위에 전달하고, 공자위 위원 해촉 등 출석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	2011.07.15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
41	주의	녹색금융특화 MBA 예산 집행 부적정	2011.04.29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42	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과다 출연	2011.04.29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43	주의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	2011.04.29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44	통보	B2B대출 등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에 대한 국내은행 간 통합 관리·공유 시스템 부재	2011.12.02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대출 등 운영실태	조치 중
45	통보	금융상품 관련 약관 심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조치 중
46	통보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부당하게 위탁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조치 중
47	통보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 수단인 재재권 분담체계 등 불합리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조치 중
48	통보	전자금융거래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조치완결
49	통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조치 중
50	통보	투자자 예탁금 관리 및 이용료 지급 불합리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조치 중
51	통보	증권투자자 부담 위탁수수료 인하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조치 중
52	통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미흡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조치 중
53	통보	소액공모제도 편법 운용 방치로 투자자 피해 발생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조치완결
54	통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조치 중
55	통보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조치 중
56	통보	외감법 재위반에 따른 공인회계사 제재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조치완결
57	통보	금융기관들의 협회비 분담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담 전가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조치 중
58	주의	금융상품 관련 약관 심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59	주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운영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연번	종류	지 적 사 항	감사조치일	감 사 제 목	조치결과
60	주의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부당하게 위탁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61	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62	주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지연 등 업무 불철저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63	주의	펀드 예탁금 관리 지도.감독 불철저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64	주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상품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2.13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	-
65	통보	주식워런트증권(ELW) 제도 운영 부적정	2012.02.24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완결
66	통보	금융투자업자의 예탁증권 관리 부적정	2012.02.24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중
67	통보	조건부매도증권 의무예탁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2.24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조치 중
68	주의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수수료 인하 지도.감독 부적정	2012.02.24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
69	주의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2012.04.17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
70	주의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보고 부적정	2012.04.18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
71	통보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장기 보유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72	통보	상호저축은행의 다른 회사의 경영권 확보 등에 대한 금지 규정 마련 미흡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73	통보	상호저축은행과 다른 금융회사 대주주 간 교차대출 금지에 대한 감독 미흡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74	통보	출자한 상호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을 위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마련 미흡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75	모범	공영(건강).유사보험 관련 보험사기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76	통보	금융감독기관 간 정보공유 등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77	통보	연체정보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78	통보	연체상환 등 신용정보 변동사항 보고지연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79	통보	대출성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80	통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81	통보	협병인가 심사기준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82	통보	변액보험 특별계정 보수 관련 공시기준 미비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83	통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보상 등 관리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84	통보	자동차보험금 부당지급 통제를 위한 시스템구축 등 미비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85	통보	유상증자 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규정 불합리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86	통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실효성 확보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87	통보	금융기관 사외이사 결격요건 규정 불합리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 중
88	주의	㈜**상호저축은행의 솔로몬 PEF에 대한 출자승인 업무 불철저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
89	주의	**저축은행의 대전저축은행 인수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
99	주의	재무상태개선조치 미이행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4	2010.12.21	통보	□ 제목 :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확대 제도 운영 부적정 - 조치할 사항 ① 개별차주 신용공여 확대 관련 자격 요건 강화 ②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편중 방지	1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추진 ('11.3/4분기내 시행령 개정 예정) 2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 규제 근거 마련 및 한도 규제 강화*('10.9월 관련 규정 시행) * i) PF대출비중 한도 : 30%('11.6말까지) → 20%('13.7월 이후) ii) 부동산PF대출 + 건설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관련 대출 비중 한도 : 50%	추진중 완료

작성자 : 중소금융과 신장수 사무관(2156-985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2. 8. 14.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7	2010.12.21	통보	○ 제목: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범위 설정 불합리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 수 또는 대부잔액 등이 많거나 불법적인 고금리 수취 또는 채권추심행위 등이 빈번하여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대부업자를 금융감독원에서 검사하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범위 확대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11.11월) ○ 직권검사 대상에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이상이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신설	완료

확인자(대결) : 서민금융과 김태훈 사무관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2. 2. 14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6	2012. 02. 13	통보	○ 제목 :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 수단이 제재권 분담체계 등 불합리 - 조치할 사항 :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주도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통보)	□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11. 12. 28) 완료 ○ 현행 3인의 내부위원을 1인으로 축소하고, 4인의 외부 민간위원을 6인으로 확대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추진완료

작성자 : 금융제도팀 박정원 사무관 (2156-9683)

확인자 : 금융제도팀 손주형 팀장 (2156-968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2. 2. 14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6	2012. 02. 13	통보	○ 제목 :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 수단이 제재권 분담체계 등 불합리 - 조치할 사항 : 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재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통보)	□ 제재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재양정기준의 보완방안에 대한 금감원 외부 연구용역 추진 ('12년 중) ○ 외부용역 결과 등을 감안, 제재양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검사및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 추진 ('13년 중)	추진중

작성자 : 금융제도팀 박정원 사무관(2156-9683)

확인자 : 금융제도팀 손주형 팀장(2156-968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3. 31.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2	2010.12.17.	통보	○ 제목: 금융기관 휴면예금의 출연 관리 및 자금운용 부적정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기관 휴면예금 출연 규모의 적정성과 적기 출연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인명의 계좌와 공동명의 계좌 등의 휴면예금도 미소금융사업 재원으로 출연받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휴면예금의 출연 관리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 ○ 아울러, 미소금융중앙재단과 공동으로 출연 금융기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추진중

작성자 : 서민금융팀 안현찬 사무관(2156-9472)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2. 4. 12.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2012.2.13	통보	○ 제목: 금융이관들의 협회비 분담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담 전가 - 금융관련 협회들의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 특히 은행연합회에는 개인연금지원금이 협회 회원사에 비해 과다함을 지적	○ 감사원 지적사항 등 연합회 운영 개선방안 관련하여 연합회와 협의(2.21) ○ 은행연합회에 경영효율화 등 연합회 운영 개선방안 마련 요구 공문발송(2012.3.19) ○ 은행연합회 경영효율화 등 연합회 운영 개선방안(초안)* 마련 * 동 개선안에는 개인연금지원금 축소방안이 포함 ○ 연합회 운영 개선방안(초안)에 대한 검토 및 협의 2회(3.30(금), 4.6(금)) ⇒ 은행연합회 경영효율화 등 개선방안 확정 후 계획대로 실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감독할 계획 ○ 기타 연합회의 업무가 공익에 반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조치할 계획(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진행중

작성자 : 은행과 고영호 사무관(인) (2156-9812)

확인자 : 은행과 배준수 과 장(인) (2156-981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 제목 : 금융기관들의 협회비 분담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담 전가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필요 이상의 분담금 등을 납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협회들의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담 전가를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감원과 협의하여 금투협회의 회비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협회에 통보할 예정 * 협회는 회비시스템개선방안 계획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검토를 통해 제출예정 - 또한, 금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금감원의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방안도 금감원과 협의	추진중

작성자 : 자본시장과 김승민 사무관(인) (2156-9876)

확인자 : 자본시장과 김학수 과 장(인) (2156-987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 제목 : 금융상품 관련 약관 심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 부적정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된 불공정 약관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불공정한 약관들을 게재하는 등의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금융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여 투자자보호를 제고 - 다만, ①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다는 점과, ②약관의 신고 및 심사업무가 위임된 점 등 행정일관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예정 * 현재 금융투자회사의 법령상 공지사항(위탁매매수수료, 투자자예탁금이용료 등) 및 주요 통계, 표준약관 등이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되고 있음 - 협회의 시스템이 정비되는대로 공시 예정('12.6월)	추진중

작성자 : 자본시장과 김승민 사무관(인) (2156-9876)

확인자 : 자본시장과 김학수 과 장(인) (2156-987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 제목 : 금융투자업자의 예탁증권 관리 부적정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①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예탁증권을 임의로 자사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② 투자자 예탁증권을 무단로 사용한 주식회사 △△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등에 따라 적정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 - 향후 본 건과 같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예탁증권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 시 중점적으로 검사토록 요구할 예정 □ 금번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제재 대상·수위 등을 검토한 후 조치할 예정	추진중

작성자 : 자본시장과 오유정 사무관(02-2156-9875)
확인자 : 자본시장과 김학수 과장(02-2156-9870)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조치결과	완결여부
1	2011. 10. 12	통보	□ 제목: 금호생명 인수 업무 부당 처리 o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장 민유성을 보좌하여 기업 인수업무와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 시 사외이사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사회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정확한 재무실사 없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기업 인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김영기의 비위행위는 공공기관의 등기임원으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성실 경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니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은행 및 산은금융지주(주)가 동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적의조치 하도록 지도('11.12.7일 공문발송)	완료

담당자 :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선욱 사무관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1	2012. 2.13	통보	제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등과 같이 안정적인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자에게 저축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부당가입자 또는 부당 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부당하게 지원된 저축장려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환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가입자의 저축장려급 지급 제한 ① 시행령(§2)개정을 통해 통해 농업외 소득이 있는자는 가입이 불가하도록 가입요건 강화 추진 - (기존) 일정토지 이하를 소유한 농민 → (개선) 다른업을 겸영함으로써 일정 소득수준을 초과한자는 제외 ② 농수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당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업무방법서 가입요건 준수여부에 대해, 농수협중앙회를 통해 단위조합 점검 실시('12년중)하고, 이후 금감원의 단위 농수협 무작위 검사 추진 - 법률개정후 금감원·중앙회 일제 점검 추진	추진중

					□ 부정가입자의 저축장려금 환수규정 마련 ○ 저축장려금을 旣수급한 부정가입자에 대한 환수규정은 농어가법률에 반영되도록 추진 - 다만, 환수를 위해서는 농어민의 소득과 다른 업을 통한 소득을 비교하여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한 타소득 확인 및 농림부 협의를 통한 농어민 소득 기준 마련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수적임 - 따라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환수규정을 법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 (세부일정) 국세청 및 농림부 협의 추진(5월~)	추진중

작성자 : 은행과 채보경사무관(인) (2156-9816)
확인자 : 은행과 배준수과 장(인) (2156-9810)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대부업)

(2011. 2.18.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3	2010.12.21	통보	○ 제목: 대부업 감독 업무 조정 및 기관 간 협조 미흡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부업 실태조사, 검사·감독 및 제재 등에 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업무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지자체의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대부업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을 작성하여 배포('09.10)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겠음 * 대부업 실태조사 기준, 검사 및 감독 매뉴얼 등 포함 2 기타 감사원 지적사항을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업무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중

작성자 : 중소금융과 이동욱 사무관(2156-9475)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2.18.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8	2010.12.21	통보	○ 제목: 대부업 동일 상호 중복 등록에 대한 제한 제도 미비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부이용자가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자의 상호가 중복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10.6.18일부터 개시된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업체명 조회시 중복상호 조회 가능 (완료)	완결

작성자 : 중소금융과 이동욱 사무관 (2156-9475)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대부업)

(2011. 2.18.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4	2010.12.21	통보	○ 제목: 대부업 등록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추진 미흡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부업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정책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대부업 등록정보 조회시스템' 및 정보공유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10.6.18일부터 금융위원회 서버에 대부업 DB를 구축하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및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완결

작성자 : 중소금융과 이동욱 사무관(2156-9475)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대부업)

(2011. 2.18.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5	2010.12.21	통보	○ 제목: 대부업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분석 방법 부적정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부업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사금융애로종합센터' 등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이자율 현황 자료를 활용하는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의 통계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조사방법과 조사범위를 개선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서민 등 대부업 이용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실태조사 범위개선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여신형태별(소비자/사업자, 신용/담보) 대출현황도 함께 분석하겠음 (11년 상반기부터) [2] 매년 금감원과 대부협회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도 정책수립시 보완적으로 활용 ○ 다만, 불법 사금융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곤란하여 공식통계로 사용은 부적절	추진중

작성자 : 중소금융과 이동욱 사무관(2156-9475)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2.18.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6	2010.12.21	통보	○ 제목: 대부업자 관리·감독권 분담 불합리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부업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 감독시스템 개편 검토 ○ 이관시 소요되는 인력과 조직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거쳐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음 * 대부업 감독권 개편 관련 법률개정안(이진복, 권택기 의원)이 국회 계류중	추진중

작성자 : 중소금융과 이동욱 사무관(2156-9475)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3. 31.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2010.12.17.	통보	○ 제목: 대출재원 부족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지원 사업 차질 우려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사업이 위축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확대 등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기금에서도 신용회복지원자 소액대출 시행('10.6월) * 신복위 신용회복지원자도 신복기금에 소액대출 신청시 지원 가능 □ '10년중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신복위에 소액금융 재원으로 132억원 무이자 대여 * (5월) 87억, (10월) 30억, (12월) 15억 □ 신용회복기금이 신복위에 소액금융 재원 200억원 무이자 대여('10.10월) □ 신복위 소액금융 재원 마련을 위한 "새출발 마중물기금" 모금 후원행사 개최('10.11월) * 6개 금융협회·중앙회 주관, 금융위원회 후원 □ 신복위 재원 소진시 신용회복기금에서 직접 소액대출 지원 예정	완료

작성자 : 서민금융팀 안현찬사무관(2156-9472)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3.31일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주의·통보	○ 제목 :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부당하게 위탁 - 조치할 사항 : ①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없이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32개 소관업무의 법령상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통보) ② 앞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금융감독원에 부당하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기준 결정 등 10개 업무의 법령상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예비인허가 심사 등 22개 업무에 대하여는 현재 법령 개정을 준비 중임 - 법률 개정 사항은 향후 법률 개정시 위탁근거를 마련 (자회사 간 신용공여 관련 적정담보 부족 발생 시 추가 담보 확보 유예기간 연장 등 4개 과제)	추진 중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경덕 사무관(인) (2156-9623)

확인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 인 과 장(인) (2156-962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6	2010.12.21	통보	□ 제목 : 부실한 상호저축은행의 제3자 인수 추진 부적정 - 조치할 사항 ① 부실저축은행의 제3자 인수 승인시 정확한 부실규모 파악,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부실책임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 ② BIS 비율 미달인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전주·토마토2·미래2·스위스삼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	1 부실책임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강화 방안 검토 중(일부 기 시행) ○ 대주주 직접검사 제도 도입 및 대주주 불법 대출시 해당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 강화('11.3/4분기내 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경영관여 대주주의 등기임원화 유도('11.3/4분기내 감독규정 개정 예정) ○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즉시 부실책임 규명 추가 검사(금감원) 및 조사(예보) 착수(시행중) ○ 향후 부실저축은행 제3자 인수 승인시 정확한 부실규모 파악 및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사 조치 실시 예정 ○ 부실저축은행의 제3자 인수과정에서 금산법상의 적시정조치 유예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 검토(총리실 금융감독 혁신 TF, '11.6월말 방안 마련 예정)	추진중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2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 실시 및 이후 경영개선명령 절차 진행 o 대주주(부산·부산2저축은행)의 941억원 출자로 BIS비율이 개선되어 경영개선요구 조치('10.12.15) o 전주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10년중 旣 검사 실시 - 전주 : 부문검사('10.6.14~6.25) - 토마토2 : 부문검사('10.3.16~3.31) - 미래2 : 부문검사('10.9.1~9.14) - 현대스위스3 : 부문검사('10.5.26~6.9)	완료

작성자 : 중소금융과 신장수 사무관(2156-9853)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1	2010.12.21	통보	○ 제목 : 비과세 예탁금 한도 상향 등에 따른 수신 증가분 활용 방안 미흡 - 상호금융회사 비과세 예탁금의 일정 비율을 보증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증가된 수신을 서민대출로 연결시키는 방안 강구 - 증가된 수신을 유가증권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	1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시행(7.26) ○ 상호금융회사의 서민금융공급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금융회사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시행 2 신협 여유자금 운용 관련 모범규준('10.2월) 시행 ○ 증가된 수신을 유가증권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도록 모범규준 마련·시행	완결

작성자 : 중소금융과 장석인 사무관(2156-9856)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2	2010.12.21	통보	○ 제목 : 상호금융회사의 휴면 예·적금 등 활용 방안 미수립 -상호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휴면 예·적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거나 서민대출 보증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	1 상호금융회사의 서민금융공급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시행(7.26) ○ 다만, 신협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휴면 예·적금에 대해 원권리자가 지급청구권을 주장할 경우 보증재원의 안정적 관리가 어렵게 되므로 휴면 예·적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보증재원으로 소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현재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상호금융회사의 휴면 예·적금 출연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다만, 필요시 상호금융회사의 휴면 예·적금 출연 권유	추진중

작성자 : 중소금융과 장석인 사무관(2156-9856)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3. 31.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 제목: 상호저축은행 계정 적자 해소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대책 미흡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의 상호저축은행 계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저축은행 계정 적자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 완료(4.1일 시행) ○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라 '11.1월부터 발생하는 저축은행 계정적자를 특별계정으로 이관하여 전 금융권이 분담하여 해소(특별계정은 '26년까지 운영) * 각 업권의 예보료 45% 및 저축은행 예보료 전액을 특별계정에 납입 □ 예금자보호한도 조정 여부는 구조조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	추진중

작성자 : 금융소비자과 김정명 사무관(2156-9772)

확인자 : 금융소비자과 김홍식 과 장(2156-977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5	2010.12.21	통보	□ 제목 :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성에 대한 검사·감독 불철저 - 조치할 사항 ① 부동산 PF대출 부실 해소 ② 감사결과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확인된 서울·창업·신라·부산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 및 여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 확인 및 증자 등 적정 조치	1 부실(우려) PF대출 3.7조원(원금기준)의 구조조정기금 매각 및 MOU체결 등을 통한 증자 등 자구노력 유도('10.6월) ○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 규제 강화('10.9월), ○ PF대출 자산건전성 분류시 사업성 평가 반영 조치('10.9월) ○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10.10월) ○ PF대출 상시감시시스템* 구축('11.1월 가동) * 저축은행측에서 PF사업장의 토지매입률, 공사진행률 등을 월단위로 입력 ○ 저축은행 PF사업장 실태 점검을 토대로 구조조정기금 및 캠코 고유계정을 통해 부실(우려) PF대출 추가 매입 추진('11.6말 예정) 2 서울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실시 및 적기시정조치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대주주 증자 또는 외부투자자 유치 ○ 여타 저축은행의 경우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검사 등을 통해 부실우려시 대주주 증자 등 자구노력 유도	추진중

작성자 : 중소금융과 신장수 사무관(2156-9853)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7	2010.12.21	통보	□ 제목 :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운용 부적정 - 조치할 사항 ①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기능 강화 ② 감사의 독립성 확보 등 내부감시기능 제고	1 저축은행 검사인력 30명(외부전문인력 20명 포함) 기 증원('10.9월) ○ 우수한 검사인력 보강 및 검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금감원 검사 역량 지속 강화 2 감사 역할 및 독립성 강화 방안 검토 중 ○ 총리실 주관 "금융감독 혁신TF"에서 감사 제도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 방안 논의 중 ○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화 ('11.3/4분기내 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부실감사 등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11.3/4분기내 금감원 제재양정기준 개정) ○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저축은행 내부 고발지침 마련 유도('11.3/4분기) 및 실태 점검('11.3/4분기 이후)	완료 추진중

작성자 : 중소금융과 신장수 사무관(2156-9853)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8	2010.12.21	통보	□ 제목 : 상호저축은행의 대형화·계열화에 따른 차등감독기준 미정비 - 조치할 사항 ○ 저축은행간 규모의 격차, 대형·계열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을 반영한 차등 감독 기준 마련	□ 대형·계열화에 따른 리스크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 기 조치 ○ 대형·계열저축은행에 대한 매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실시(중소형은 격년) 및 매년 금감원 검사 실시(중소형은 격년) ○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계열단위 여신한도 적용('10.9월) □ 계열단위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등 추가 차등감독 기준 검토 중('11.3/4분기내 법 개정안 국회 제출)	완료

작성자 : 중소금융과 신장수 사무관(2156-9853)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6. 15.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9	2010.12.21	통보	□ 제목 :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감독규정 운영 및 지도·감독 부적정 - 조치할 사항 o 저축은행의 부실 여신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심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여신담당자의 부실 심사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방안 검토 중 ('11. 3/4분기내 감독규정 개정 예정) o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의 경우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설치 o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 감리 의무화 등	추진중

작성자 : 중소금융과 신장수 사무관(2156-9853)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 제목 : 소액공모제도 편법 운용 방치로 투자자 피해 발생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① 경영부실로 퇴출위기에 처한 상장기업이 '소액공모제도'를 악용하는 점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개시하기 일정기간 이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기업의 편법 소액공모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및 담당 이사 등이 공시서류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등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적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② 소액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손실방지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부실한 상장기업(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소액공모제도'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	□ 한계기업의 소액공모 제도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중('12.6.26 국무회의 통과, '12.6.29 시행) ○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서류 공시기간 연장(§137①) * (현행) 공모개시전 지체 없이 → (개선) 공모개시 3일전까지 서류제출 ○ 소액공모한도(10억원 미만) 산정방법 개선을 통해 한도를 축소(§120①) * (현행) 증권 종류별(보통주·우선주·채무증권 등) 10억원 산정 → (개선)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발행금액을 합산 등 ○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관리업무(수납·보관·환급)를 발행기업이 아닌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증권금융)가 수행하도록 의무화(§137①)	조치완결

			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③ 소액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모의 한도를 산정할 때에 증권 종류와 상관없이 연간 최대 10억 원 내에서만 소액공모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등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방안 및 한계기업의 소액공모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막을 수 있는 등 중소기업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 소액공모 한도 축소 등을 우선 시행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대응 필요시 도입 추진	

작성자 : 공정시장과 전희규 사무관(인) (2156-9912)

확인자 : 공정시장과 김홍식 과 장(인) (2156-9910)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여전전문금융업)

(2011. 4.12.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 제목 :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 조치할 사항 ○ 선택적 사항의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원이 신청한 신용카드 발급	□ 선택적 사항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한 신용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12년 내) ○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상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변경 - 필수적 정보와 선택적 정보의 제공동의를 명확하게 구분 ○ 금감원으로 하여금 회원이 선택적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신청한 카드를 발급하도록 지도	진행중

작성자 :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156-9854)

확인자 : 중소금융과 권대영 과 장 (2156-9850)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여전전문금융업)

(2011. 4.12.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 제목 :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 조치할 사항 ① 부당한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방지를 위한 규정 보완 ② 미신고된 부가서비스 내용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심사	1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 이행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보완('12년 4/4분기) 2 부가서비스 변경시 금감원 약관심사 이전 출시 상품을 포함하여 약관심사 시행 中 ('11.7월 금감원 공문발송)	진행중 완료

작성자 :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156-9854) (인)

확인자 : 중소금융과 권대영 과 장 (2156-9850) (인)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여전전문금융업)

(2011. 4.12.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 제목 :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 조치할 사항 ○ 선택적 사항의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원이 신청한 신용카드 발급	□ 선택적 사항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한 신용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12년 내) ○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상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변경 - 필수적 정보와 선택적 정보의 제공동의를 명확하게 구분 ○ 금감원으로 하여금 회원이 선택적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신청한 카드를 발급하도록 지도	진행중

작성자 :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156-9854) (인)

확인자 : 중소금융과 권대영 과 장 (2156-9850) (인)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4.6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12	2011.3.14	통보	□ 제목: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처리 태만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OO상호저축은행의 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처리를 태만히 한 예금보험공사 이사 OO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의 처분결과를 예금보험공사로 통지(2011.3.15) □ 예금보험공사에서는 OO이사에 대하여 사장 명의로 주의촉구 완료 ○ 주의장 발부 및 수령 확인(2011.3.31) ○ 감사원으로 처분결과 통지(2011.4.6)	완료

(감사담당관실 공영도 사무관 / 2156-9553)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 제목 : 외감법 재위반에 따른 공인회계사 제재 부적정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공인회계사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은 「공인회계사법」이 아닌 위 법률에 따라 제재하고, 그 제재 사실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위 법률 재위반에 따른 가중 제재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관련 내규 정비 ○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된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감리위원회는 감사인이 「외감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치할 근거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2011. 07. 29. 금융위원회 승인) 및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2011. 07. 13. 증권선물위원회 승인)을 개정하여, 「외감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명문화하였음 ○ 이에 따라 「외감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탁감리위원회가 외감법령에 따른 제재를 의결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가중 제재조치가 일관되게 이루어질 것임 □ 징계이력 조회사이트 구축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특정 담당자가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최근 2년간	조치완결 ('11.7월) 조치완결 ('12.5~7월)

				「외감법」(증권선물위원회, 위탁감리위원회 조치내역) 및 「공인회계사법」(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 징계내역) 위반에 따른 징계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사이트 구축('12.5.17) ○ 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처분의 조회 및 기록말소에 관한 규정」 개정('12.7.11)	

작성자 : 공정시장과 구의청 사무관(인) (2156-9914)

확인자 : 공정시장과 김홍식 과 장(인) (2156-991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o 제목 : 전자금융거래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부적정 - 조치할 사항 ① 주요 금융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기초적인 보안기준의 준수와 내부 보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위탁관리 범위를 제한 ② 한편, 금융정보시스템 보안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기반시설 안전성확보 및 내부통제 강화, 외부 위탁관리 제한, IT인력 및 예산확보 등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 개정 완료('11.10월) -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매년 실시, 공개용 시스템은 반기마다 점검 실시 - 비밀번호 변경 등 전산자료보안대책 수립 □금융회사가 보안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공문 조치('12.2월)	완료

작성자 : 전자금융팀 이종림 사무관 (2156-9491)

확인자 : 전자금융팀 김진홍 팀 장 (2156-9490)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8. 10.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6	2011. 6. 8.	통보	□ 제목: 정부 미보증 단기 외화채무의 관리대책 미흡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정부 및 한국산업은행의 경영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부 미보증 단기 외화채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은행이 미보증 단기외화채무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11.8월 공문발송 계획) ○ 민영화시 충격완화를 위해 단기 외화자금 조달 수단 다변화, 민영화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의 방안 마련 지도	추진중

작성자 : 산업금융과 사무관 선욱(2156-975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8. 10.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3	2011. 6. 8	통보	□ 제목: 정책금융 영역인 기금대출 업무 미취급 o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한국산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기금대출 업무 중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기금대출업무를 이관 받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산은 민영화가 가시화될 경우 산은의 기금대출업무를 공사로 이관하도록 지도 o 정책금융공사로 하여금 기금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 ('11. 4/4분기) * ①KoFC 내부규정 및 제도정비 ② 기금대출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준비 등 ※ 다만, 기금대출업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 ① 기금 소관 부처와의 협의 필요 ② 기금대출업무는 수요자 편의성이 중요한 바, 정책금융공사의 지점 설치 및 조직 확대 등을 감안할 필요	추진중

작성자 : 산업금융과 사무관 선욱(2156-9751)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 제목 : 조건부매도증권 의무예탁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하면서 의무예탁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증권주식회사 등 9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0조 등에 따라 적정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시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감독하도록 요구할 예정 □ 또한 금번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제재 대상·수위 등을 검토한 후 조치할 예정	추진중

작성자 : 자본시장과 오유정 사무관(인) (2156-9875)

확인자 : 자본시장과 김학수 과 장(인) (2156-987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o 제목 : ELW 운영·관리 부적정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도한 ELW 발행 및 호가 제출을 제한하는 등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ELW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공급목적 이외의 호가 제출을 제한함으로써 LP의 과도한 호가제출을 제한 o 시장스프레드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제한 * 시장스프레드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8~15% 이내로만 제출 가능 □ ELW 상장종목수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상장 제한 o 개별 증권사의 발행횟수를 월 1회로 제한하였으며, LP평가 성적이 낮은 증권사의 경우 상장종목수를 제한 o 상품의 내역이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 제한 * 기초자산,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완료 ('12.3.12 시행)

작성자 : 자본시장과 이한섭 사무관(2156-9874) (한)
확인자 : 자본시장과 김학수 과 장(2156-9870) (한)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3. 31.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1	2010.12.21.	권고	○ 제목: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불합리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일정 금액 이하*의 만기연장을 위한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에서 제외(DTI 비적용)하도록 하는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를 개정하여 서민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선택폭을 확대하고 은행 간 경쟁 촉진 및 고객 간 형평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급격한 변화 시 금융당국에서 DTI 규제를 완화한다는 심리적 파급효과가 우려될 수 있고 저소득 서민층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하의 만기연장을 위한 대환대출로 제한함	□ 지난해 8.29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마련시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DTI가 면제되는 소액대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10.9.17,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 이에 따라 1억이하 대출의 경우 은행간 대환대출에 대한 차별적 규제 적용문제는 해소된 상황	완료

작성자 : 금융정책과 사무관 오유정(2156-9712)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 제목 : 증권투자자 부담 위탁수수료 인하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체계 개편의 혜택이 증권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에게 수수료 정보제공을 위한 '수수료 비교 공시 강화' 조치를 시행('11.12월)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매매수수료, 협의 수수료 등에 대해 주문방식, 주문금액 등의 조건에 따라 회사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 ○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 □ 증권사 수수료 인하 등 영업관행 개선도 지속적으로 지도 ○ 거래소, 예탁원의 수수료율 인하하고, 인하분이 증권사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 협회를 통해 독려 예정	기조치 추진중

작성자 : 자본시장과 김제등 사무관(인) (2156-9872)

확인자 : 자본시장과 김학수 과 장(인) (2156-987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 제목 : 투자자 예탁금 관리 및 이용료 지급 불합리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투자업 규정」 제4-46조를 개정하여 향후 증권회사들이 투자자 예탁금의 운용수익에서 별도 예치의무 준수를 위해 부담하는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 직접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금융투자업 규정」 제4-46조 및 관련규정 등을 개정하여 투자자예탁금관련 수익이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할 예정 - 다만, 비용산정에 있어 보험료, 분담금 이외에 투자자예탁금 관리·보관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반영하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도록 할 예정 * 감독원을 통해, 간접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게 '원가표준산정안' 연구용역을 추진('12. 3/4분기) - 원가산정이 도출된 후 검증과정과 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기간 등을 고려하여 '13회계연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	추진중

작성자 : 자본시장과 김승민 사무관(인) (2156-9876)

확인자 : 자본시장과 김학수 과 장(인) (2156-9877)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8. 10.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7	2011. 6. 8	통보	□ 제목: 한국산업은행 등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한 배당정책 수립 미흡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 당시의 취지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로 하여금 자회사들에 대한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적정한 배당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산은지주의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배당 원칙 마련('11.3월) ○ 정책금융공사의 산금채 인수에 따른 구조적 손실에 대해 산업은행이 연도별 배당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는 범위에서 손실 보전해주기로 합의('11.3월) ○ 이를 토대로 산은지주가 자회사에 대해 배당정책을 수립할 계획	완료

작성자 : 산업금융과 사무관 선욱(2156-975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8. 10.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0-1	2011. 6. 8	통보	□ 제목: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정체성 관련 대책 마련 미흡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금융'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등 민영화를 위한 기본 설계를 통해 정책금융공사의 지속적인 손실 발생 구조를 개선하고, 산업은행의 업무를 정책금융공사로 이관할 때 조직·인력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이관 계획 등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산은지주가 금융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민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1단계로 수신기반 확충, 재무구조 개선 등 산은의 체질개선 추진중 * 예수금비중('09말 13.0% → '11.3말 18.2%) 순이자마진('09말 0.7% → '11.3말 1.6%) ○ 2단계로 국내외 시장상황,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분매각 추진 ('14.5말까지 최초 지분매각 추진) □ 정책금융공사의 손실발생구조 개선 ○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어 시장매각이 가능한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의 매각 추진 * 현대건설 ('11.4, 매각이익 9,202억원) 하이닉스 ('11.8월 예비실사중) ○ 산은지주의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적정 배당 원칙을 마련('11.3월)	추진중 추진중

				○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시장상황,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은지주의 지분 매각 방안을 마련 공사의 구조적 손실 발생문제 개선 □ 정책금융공사로 업무 이관시 효율적인 조직·인력 관리계획 마련 ○ 향후 산은 민영화시 정책금융공사로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동반이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지도	추진중
10-2	2011. 6. 8.	통보	□ 제목 :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정체성 관련 대책 마련 미흡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전체적인 정책금융체계를 수립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정책금융체계 속에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가 다른 정책금융기관들과 중복되지 않고 민간금융기관들과의 시장마찰이 최소화되도록 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정책금융기관간 업무중복 해소 추진 ○ 신·기보는 창업초기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보증이용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방안 마련 추진('11.4/4분기 계획) ○ 정책금융공사-무역보험공사 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공동 지원을 위한 MOU체결('10.6월) ○ 수은·KSURE·정책금융공사·산은간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11.4분기) * '공동적용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적수출금융기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추진중

				□ 정책금융공사의 독자적 업무영역 구축 ○ 종전 산은이 하는 방식과는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은렌딩(On-lending) 도입 등 새로운 형태의 정책금융 시행('09.10) ○ 리스크가 커서 시장의 지원이 소극적인 녹색·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정책금융공사가 선도적 역할 수행 ○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금융안정기금 설치 등을 통해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한 금융시장 안정 지원('11.7월 발표)	완료
10-3	2011. 6. 8	통보	□ 제목: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정체성 관련 대책 마련 미흡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며, 한국산업은행의 시장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산은지주가 금융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민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1단계로 수신기반 확충, 재무구조 개선 등 산은의 체질개선 추진중 ○ 2단계로 국내외 시장상황,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분매각 추진 ('14.5말까지 최초 지분매각 추진)	추진중
				□ 산은금융지주내에 설치되어 있는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 등을 통해 반기별로 산은의 수신기반 확보, 산금채 중심의 조달구조 개선 등을	추진중

				추진('11.4/4분기 점검) ○ 유가증권 투자한도(은행법상) : ('09말) 2.7조 한도초과 → ('11.3말) 한도 이내 ○ 금융채 발행한도(은행법상) : ('09말) 5.3조 한도초과 → ('11.3말) 한도 이내 ○ 타법인 출자한도(은행법상) : ('09말) 718억 한도초과 → ('11.3말) 452억 한도초과 ※ 산은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를 통해 반기별로 산은의 주요 재무지표 개선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작성자 : 산업금융과 사무관 선욱(2156-975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8. 10.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4	2011. 6. 8	통보	□ 제목: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세부추진방안 미비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방법과 전략, 일정 등을 담은 민영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점포 신설 및 인력·조직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산은지주가 금융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민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1단계로 수신기반 확충, 재무구조 개선 등 산은의 체질개선 추진중 * 예수금비중('09말 13.0% → '11.3말 18.2%) 순이자마진('09말 0.7% → '11.3말 1.6%) - 특히, 산은은 '11년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점신설에 필요한 정원증원(160명) 확보 ○ 2단계로 국내의 시장상황,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 마련('14.5말까지 최초 지분매각 추진)	추진중

작성자 : 산업금융과 사무관 선욱(2156-975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3. 10.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5	2011. 6. 8	통보	□ 제목: 한국산업은행 주요 재무지표 개선노력 미흡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산은 민영화 준비 과정에서 수신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산업금융채권 중심의 조달구조를 완화하는 등으로 향후 한국산업은행에도 적용될 각종 금융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개선을 추진하여 유가증권 투자비중 및 대기업 여신 비중을 줄이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산은금융지주내에 설치되어 있는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 등을 통해 반기별로 산은의 수신기반 확보, 산금채 중심의 조달구조 개선 등을 추진중('11.4/4분기 점검) ○ 유가증권 투자한도(은행법상) : ('09말) 2.7조 한도초과 → ('11.3말) 한도 이내 ○ 금융채 발행한도(은행법상) : ('09말) 5.3조 한도초과 → ('11.3말) 한도 이내 ○ 타법인 출자한도(은행법상) : ('09말) 718억 한도초과 → ('11.3말) 452억 한도초과 ※ 대기업 여신 비중 감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급격히 감축할 경우 해당기업의 영업기반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추진중

작성자 : 산업금융과 사무관 선욱(2156-975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1. 8. 10.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1	2011. 6. 8	통보	□ 제목: 한국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On-lending) 설계 부적정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협의하여 장기로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간접대출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등 간접대출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업무와 상호 보완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금융공사 신용위험분담제도 개선를 통해 신·기보 보증졸업기업 지원 토대 마련 ○ 신용위험분담 간접대출 대상기업 선정기준 완화 - 매출액범위 확대(200억 이하 → 600억 이하) ○ 증개금융기관 평가제도 시행 및 우수증개금융기관 우대 ○ 신용위험분담부 대출의 심사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 정책금융공사와 신보, 기보간 협의 추진 ○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신·기보 보증 장기이용 기업의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로의 전환 지원 방안마련 계획('11.4분기 계획)	완료 추진중

작성자 : 산업금융과 사무관 선욱(2156-975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2012. 8.14.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집행계획	완결여부
	2011. 6. 8	통보	□ 제목 : 해외자원 개발사업 검토절차 부적정 □ 조치할 사항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과 업무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하여금 다른 정책금융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상호업무 중복을 최소화 하면서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간 MOU 체결 ○ 정책금융공사-무역보험공사 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공동 지원을 위한 MOU 체결('10.6월) ○ 수은·산은간 해외자원개발 등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공동지원을 위한 MOU 체결('10.8월) ○ 해외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MOU 체결('12.2월) ○ '해외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간 공동적용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12.6월)	완료

작성자 : 산업금융과 황기정 사무관 (2156-9753)

확인자 : 산업금융과 윤창호 과 장 (2156-975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12.2.13	통보	○ (제 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미흡 ○ (조치할 사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검증과 관련,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통보 의무나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미마련 -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보고서에 재정건전성 검증 결과를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와 공유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재정건전성 검증 절차 강화 등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 ○ 동 시행령에 마련된 금융위 감독 근거에 따라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	추진중

작성자 : 자산운용과 김태완 사무관 (2156-9899)

확인자 : 자산운용과 김정각 과 장 (2156-9890)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집행계획서

(2012.2.2. 현재)

〔기관명 : 금융위원회〕

일련번호	시행일	처분요구 종류	처분요구 제목 및 조치할 사항	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	완결여부
		통보	○ 제목 : B2B대출 등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에 대한 국내은행 간 통합 관리·공유 시스템 부재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전자방식의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정상적인 상거래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을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전산망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의 매입액과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한 여신한도 부여 및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상황)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은행의 '전자적 방식의 대출'을 취급시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을 통하여 부당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 * 「전자적 방식의 대출 제도개선 T/F」 운영('11.12.22~'12.1.31) :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 참여 ○ 은행 대출시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을 위한 "제3자 세금계산서 조회시스템" 확대 적용 방향에 대하여 국세청과 협의 완료(2012.2.1) - 다만, 기업의 매입액과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 비교를 위한 '기업의 매입신고액' 자료의 경우,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전자세원과-35)함에 따라 추가 조치가 어려운 상황 ○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시스템 구축을 지도(금감원 공문, 2012.2.2) □ (집행계획) 국세청과 금융결제원, 은행간의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시스템 구축·시행('12년 중)	추진 중

작성자 : 은행과 서나윤 사무관 (2156-9814)

확인자 : 은행과 성대규 과 장(인) (2156-9810)

자체감사(정기)
12.16 ~ 12.22

2010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1. 1.

금 융 위 원 회

(감사담당관실)

- 목 차 -

Ⅰ. 감사개요

Ⅱ.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나.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

라.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수준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Ⅰ. 감사실시 개요

〈목 적〉

◇ 예산집행·회계처리 및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이행·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

⇨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 및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 「'10년 자체감사계획」('10.2.8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1 실 시 개 요

□ 감사기간 : '10.12.16(목) ~ 12.22(수), 5일간

□ 감사대상 : '08.7 ~ '10.11 기간중 예산집행실태 등

□ 감사반원: 감사담당관실 5명(감사담당관, 5급 2, 주무관 2)

□ 감사방법: 서면점검

* 수감부서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서면위주로 실시

2 감 사 중 점

□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의 적정성

□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의 적정성

□ 외부감사(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실태

Ⅱ.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금번 감사는 '08년 자체감사('08.6.23~6.27) 이후 2년6월만에 실시

○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하는데 중점을 둠

□ 감사결과 금융위 설립('08.2.28) 초기 업무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안정성은 상당부분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

○ 다만, 회계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예산집행의 세부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완할 부분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①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

☞ 출납서류 편철·관리 및 지출증빙·집행방법 등 부적정

② 대통령 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추진·관리(행정인사과)

☞ 정상적으로 추진·관리 → 특이사항 발견되지 아니함

* 대부분 과제가 완료되었거나 종료요청중이며, 일부 미완료과제도 정상 추진중

③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 → 부패영향평가 의뢰 미흡(관련부서)

☞ '09.7 ~ '10.6 기간중 21건의 제·개정(안)중 14건 기한도과 등

④ '09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 이행(관련부서)

☞ 관련 제도 개선등 적절히 조치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①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출납 관련서류 편철·관리 부실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 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편철방법>

① 출납계산서(규칙 제7호 서식)
② 국고예금월계대사표(00년 00월분)
③ 세목별 간지(본월지출액: 00원, 건수: 00건)
④ 지급결의서
⑤ 내부결재(품의서)
⑥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등)

- 월단위로 편철
- 세목별로 구분
- 5년간 보관

○ 그러나 금융정책국 등은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관리하여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월계대사 및 지출증빙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함

< 부서별 지적사항 >

부서명	지 적 내 용
■ 금융정책국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금융서비스국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자본시장국	• '10.1~'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대변인실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사전품의 없이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경비 집행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또한,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은 예산 집행시 중요사항은 국장, 일반사항은 과장이 전결토록 규정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등을 집행하면서 사전 품의 없이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

* 예산집행시에는 집행건별로 집행사유, 집행대상, 소요예산 및 해당 예산과목 등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품의)를 득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집행 품의서에 결재권자의 서명이 아닌 도장 날인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3조제8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문서는 서명(행정전자서명 포함)에 의한 결재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서명은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부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등 품의서에 부서장 서명이 아닌 도장을 날인하여 증빙자료로 관리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 서명 및 특근매식비 현금집행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 및 101p)」에 따라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상당수 실·국에서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팀 등)으로 서명하였고, 대변인실은 특근매식비 집행시 현금으로 집행*

* '08.12.18(273,000원) 및 '08.12.23(25,000원)

②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통역비 지급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그러나 대변인실은 '09.9.29 김○○에게 통역료 80만원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기타소득세)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 단, 지급금액의 80%(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소득세법 제21조제2항, 84조제3호, 시행령 제87조제1항)
>
> • 강의료 25만원 지급시: 25만원의 80%(20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은 5만원으로 기타소득세 비과세
>
> • 강의료 30만원 지급시: 30만원이 80%(24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은 6만원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09년도 발생 에디터 비용을 '10년도 예산으로 집행

○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전년도 발생 채무확정액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됨

* 예외) 공무원보수, 군인사망급여금, 군인전상급여금, 보험료, 이자 등

○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은 '09년 12월 발생한 영문에디터(2명) 비용 2,664,690원을 '10년도 예산(수용비)에서 지급

□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지급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기획조정관실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09.3, 6, 9월에 각각 1,580,000원, 393,000원, 6,160,000원씩을 초과 지급

⇒ 첫째, 예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집행할 것

-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사전 결재로 집행
- 정부구매카드 영수증에는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 특근매식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
- 연도내 발생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법령상 예외는 제외)
- 예산과목별 교부액을 준수하여 집행

둘째, 예산집행 서류는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할 것

나.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개선 필요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부서 중 출납 관련 서류의 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부서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경력이 없는 초임자(주무관) 1인이 출납업무를 담당

- 출납업무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출납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

대변인실	금융정책국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국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반면, 출납업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부서의 경우 실무관이나 사무원이 출납업무 담당자를 보조

- 출납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

행정인사과	기획조정관실	금융정보분석원	공자위사무국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사무원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사무원 1(보조)

⇒ 출납업무 담당 1명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공무원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할 것

*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예산·회계교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교육 등

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

①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 '11.01 현재 총 38개 지시사항중 36개 완료, 2개 지시사항 추진중

< 미완료 대통령지시사항 추진현황 >

지시일	지 시 내 용	이행단계	담당과	처리기한
09.09.03	구조조정 추진 관련	추 진 중*	기재단	10.12.31
10.12.21	전국민 보안의식 강화	추 진 중**	감 사	11.12.31

* 추진계획 수정·보완하여 승인요청 중으로 승인시 처리기한 연장 예정

** 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완료

② 국정과제 추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 '11.01 현재 27개의 과제중 23개 완료, 4개 과제 추진중

< 미완료 국정과제 추진현황 >

세부실천과제	계 기	시 한	단 계
단기사채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인수위 국정과제	10.하	연장요청*
산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여건 마련	'09 8.15 경축사	12.하	추 진 중
체계적인 금융교육실시	인수위 국정과제	12.하	추 진 중
햇살론의 안정적 정착	'10 8.15 경축사	12하	추 진 중

* '11년 상반기까지 기한연장을 요청 중에 있으며 1월중 연장승인 예정

⇒ '10.3.4 ~ 4.16 기간중 우리 위원회등 29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원의 「주요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없었음

다. 법령 제·개정시 필요절차 이행수준

□ 현 황

○ 법령 제·개정시에는 부패영향평가*,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표1 참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령 입안시 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토록 규정(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0조)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09.10.1 ~ '10.9.30 기간중 총 21건의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 : 부처협의와 병행 실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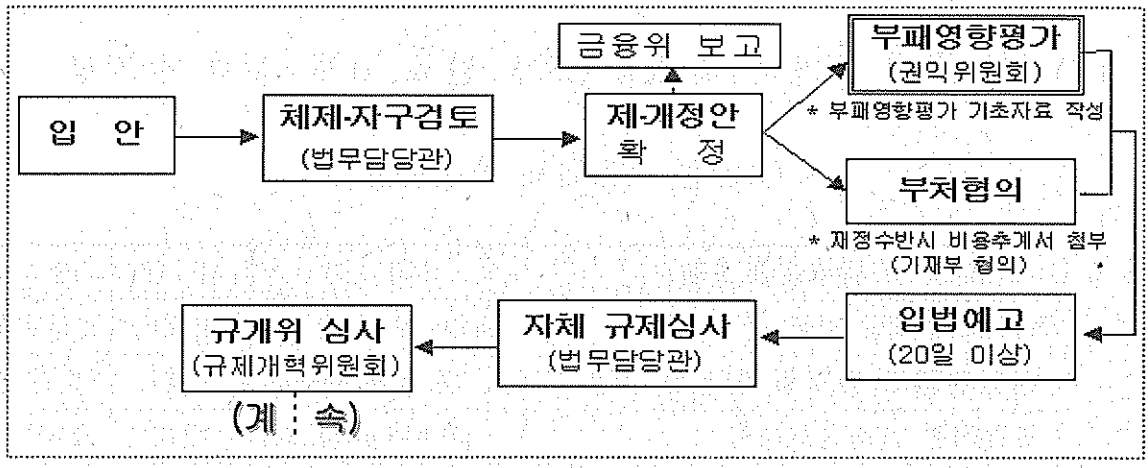

□ 점검결과

○ 법령 입안시 필요한 절차는 대체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으나, 부패영향평가 의뢰가 다소 미흡

- 총 21건 중 7건만이 기한내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12건은 입법예고 이후에 의뢰, 2건은 의뢰하지 아니함 (표2 참조)

⇒ 향후 법령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입법예고 전에 부처협의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할 것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구분
■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집행 관련 서류 편철 → 1개월 이내 감사담당관실로 그 결과 회보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 · 관서운영경비는 지급건별로 결재권자의 직접 서명에 의한 품의(또는 전자결재)를 통하여 집행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카드 영수증에 반드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할 것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기획조정관실, 행정인사과, FIU, 공자위사무국)** ·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대변인실)**	주 의
■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절 · 관서운영경비 집행시 원천징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 **(대변인실)** · 법령과 다르게 지난 연도 채무확정액을 현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FIU)** · 교부받은 과목별 자금한도를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기획조정관실)**	주 의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보조인력 지정 등 개선 필요 ·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업무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하여 출납업무가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개선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	권 고

※ 위 지적사항과는 별도로 모든 부서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국민권익위원회)를 부처협의와 병행하여 실시하시기 바람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교육 (1월중)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자체감사(정기)
2011.12.26 ~ 12.30

2011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2. 2.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목 차 -

Ⅰ. 감사개요

Ⅱ.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나. 민원업무 처리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Ⅰ. 감사실시 개요

〈목 적〉

◇ 예산집행·회계처리, 계약사무,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

⇨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및 爲民奉仕의 행정구현

* 「'11년 자체감사계획」('11.2.1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1 실 시 개 요

□ 감사기간 : '11.12.26(월) ~ 12.30(금), 5일간

□ 감사대상 : 以前 자체감사 대상 이후의 예산집행실태 등

* 예산집행실태 등은 '10.12월 이후, 민원처리실태는 '10.7월 이후

□ 감사반원: 감사담당관실 5명(감사담당관, 5급 2, 주무관 2)

□ 감사방법: 서면점검(필요시 현장실사)

2 감 사 중 점

□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 以前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의 적정성

Ⅱ.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

□ 감사결과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다만, 예산집행 서류의 관리 및 민원처리기한 준수 등 일부 보완이 필요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①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

☞ 지출증빙 관리 및 배정한도 준수 집행 등 철저 필요

② 5천만원 초과 전용건 일상감사 미이행(기획행정실)

☞ 건당 5천만원 초과 이·전용 및 이월은 일상감사 대상

<민원업무 처리 관련>

①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통보 부적정

☞ 처리기한 도과 처리(109건, 1.7%) 및 임의형식 연장통보 등

② 이첩민원 해소 필요(산금과 민원 92% 신보·기보·캠코에 이첩)

☞ 신보·기보·캠코에 국민신문고 구축하여 직접처리 필요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1 점검개요

□ 2011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중 각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서운영경비를 중심으로 점검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총액은 1조 5,530억 77백만원으로 대부분이 전출금·상환지출·이전지출* 등이며,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IBRD차관원리금상환, 모기지론이차보전, 농어가목돈마련장려기금출연 등

○ 직접 집행액은 306.8억원(2.0%)으로 이 중 인건비(144.1억원)를 제외한 집행(162.7억원)을 중점 점검

<2011년도 일반회계 집행실적 (억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자산 취득	이전 지출	상환 지출	전출금등	계
예 산 (비중)	163.2 (1.0)	155.1 (1.0)	5.0 (0.0)	707.7 (4.5)	31.8 (0.2	14,493.5 (93.2)	15,556.3 (100.0)
지 출 (비중)	157.1 (1.0)	144.1 (0.9)	4.3 (0.0)	705.0 (4.5)	26.7 (0.2)	14,493.5 (93.3)	15,530.8 (100.0)
이 월	0	0.7	0	0	0	0	0.7
불 용	6.1	10.3	0.7	2.7	5.1	0	24.9

□ 예산집행지침,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등 관련 규정 부합여부 및 집행절차, 증빙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2 점검결과 지적사항

①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집행 등

○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32조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금융정책과(업무추진비 5,095,100원, 특근매식비 2,984,780원 / 6~9월), 자본시장과(업무추진비 2,345,932원 / 4월)

○ 또한, 기획행정실은 국외출장에 따른 여비를 국외여비가 아닌 국내여비 예산에서 집행

* APG 연차총회 참석(인도)을 위한 국외여비 2,861,610원을 국내여비로 집행(7.15)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시 상대방 성명 등 기재 미비

○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지침 141p)

○ 그러나,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 미기재*

* 기획재정담당관실('11.2.28 / 970,000원), 국제협력팀('11.6.8 / 954,800원), 정책홍보팀('11.8.11 / 568,000원)

⇒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준수하고, 예산과목에 충실하여 집행하며,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주의 : 해당부서)

② 출납서류 편철·관리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출납 관련서류 편철·관리 부실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 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편철방법>

① 출납계산서(규칙 제7호 서식)
② 국고예금월계대사표(00년 00월분)
③ 세목별 간지(본월지출액: 00원, 건수: 00건)
④ 지급결의서
⑤ 내부결재(품의서)
⑥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등)

- 월단위로 편철
- 세목별로 구분
- 5년간 보관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월별 출납서류에 출납계산서 등 일부 서식을 누락하여 편철

부서명	누락서류
■ 금융정책과	• 출납계산서, 세목별 간지, 지급결의서
■ 정책홍보팀, 기획행정실	• 국고예금월계대사표
■ 기획재정담당관실	• 세목별 간지

□ 사전품의 없이 관서운영경비 집행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러나 자본시장과는 일반수용비 집행에 있어 일부 품의서 누락

부서명	품의서 누락 사례
■ 자본시장과	• '11.2.23(생수 1,101,100원), 3.16(복사기드럼 765,600원), 4,14(용지 2,127,000원), 5.19(사무용품 657,900원), 9.7(명패 283,800원), 11.30(토너 4,957,700원) 등

⇒ 예산집행 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하고, 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사례가 없도록 할 것 (주의 : 해당부서)

③ 건당 5천만원 이상 전용건에 대한 일상감사 미이행

□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은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

※ 일상감사대상(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

- 예산이 5억원 이상인 사업
- 성과관리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집행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정규모 초과 계약건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의 제조·구매: 5천만원)
-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의 이·전용 및 이월
- 주거래 은행의 선정·변경
- 실·국 단위 이상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연찬회 등 행사 및 외부 참석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과단위 행사 포함)

□ 그러나 기획행정실은 FIU 인건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본부 인건비에서 8,000만원을 전용('11.12.23)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함

<FIU 인건비 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일자	건명	세부사업명	'11예산현액	변경액	변경 후 금액
12.23	FIU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 자체전용	FIU 인건비	2,926	80	3,006
		본부 인건비	12,745	△80	12,665

⇒ 향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건에 대하여 반드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등 「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 (주의 : 기획행정실)

④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모범사례)

□ ○○국은 '10년 자체감사시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하여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월계대사 및 지출증빙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고,

○ 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사전품의 없이 집행하였으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사용영수증에 사용자의 실명이 아닌 부서명으로 서명한 사례가 빈번하여 지적(주의)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11년 1월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교체되면서 금번 감사일 현재 '10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완전히 해소하는 한편 관서운영경비 집행과정에서 '예산집행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함

소 속	성 명	직 급	담당업무	담당기간
○○과	○○○	○○	○○국 관서운영경비 출납	'11.1월 ~ 현재

⇒ 각 과장은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모범사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인사과장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상기 담당자에게 포상 등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나. 민원업무 처리 관련

1 현황분석

□ 점검대상기간('10.7.1 ~ '11.11.30)중 총 5,931건* 접수·처리

* 반복민원 433건 포함시 6,364건

구 분	건 수
신 문 고	3,238
홈페이지	2,067
방문·우편	626
합 계	5,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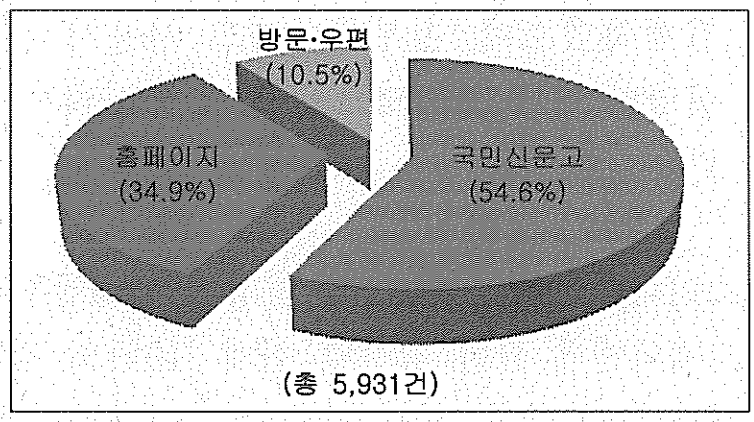

○ 통상적으로 매월 3백건 내외의 민원이 발생하며, 저축은행 등 특정 사안 발생시 일시적으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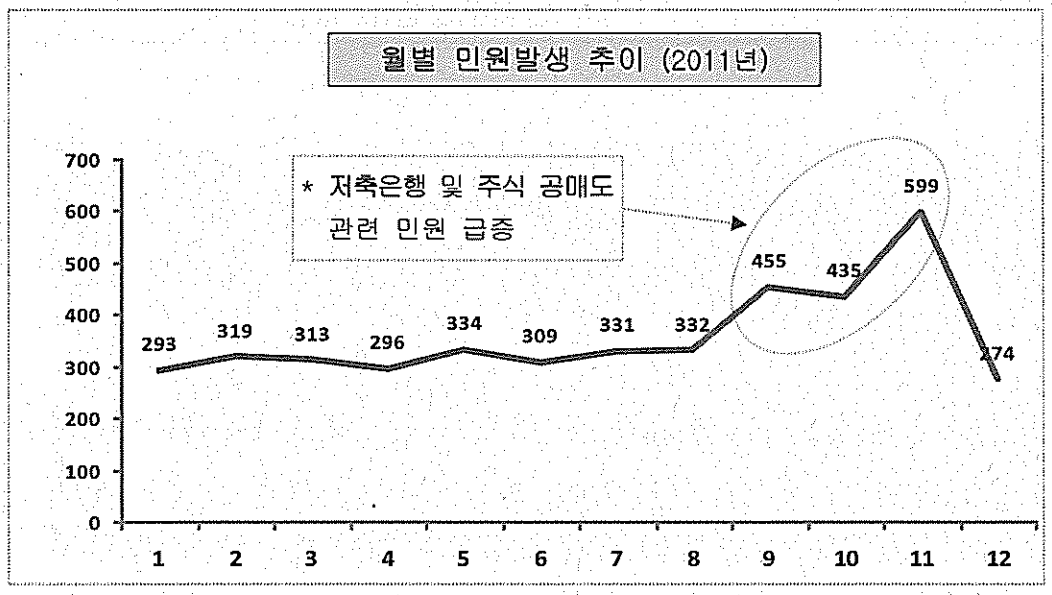

□ 부서별 : 중소금융과 → 금융소비자과 → 서민금융과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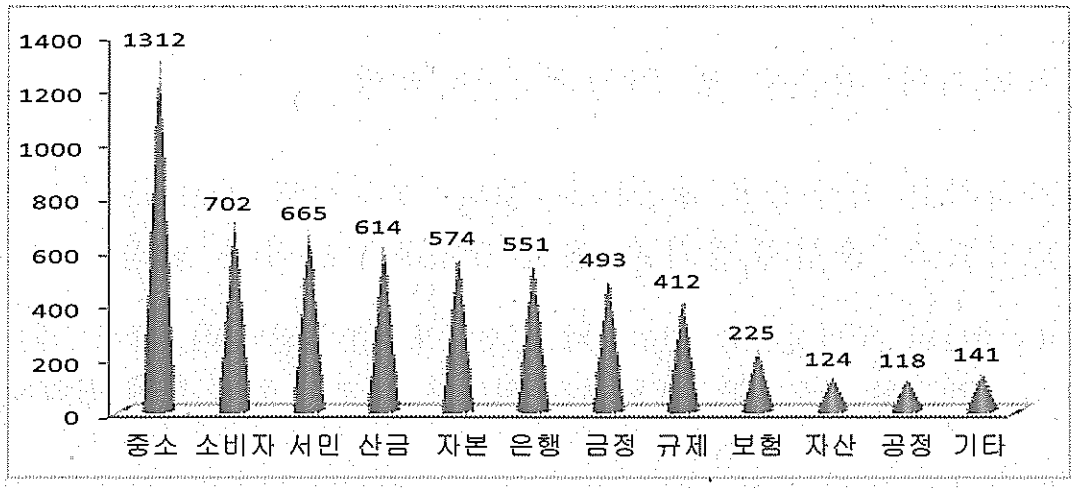

○ 중소·소비자·서민등 3개 과의 민원은 모두 서민금융 관련 민원으로 총 2,679건으로 전체 민원의 45.2% 차지

- 이들 민원의 만족도*는 44.7%로 전체 만족도 49.0% 보다 4.3%p 낮게 나옴

* 중소금융(41.7%), 금융소비자(48.5%), 서민금융(49.2%)

○ 산업금융과 민원*은 대부분(91.8%) 신보, 기보, 캠코 민원으로 해당 기관에 이첩되었으며, 만족도는 42.9%로 나타남

산금과 민원(건)	신 보	기 보	캠 코	기 타	합 계
	311	98	155	50	**614**

□ 속성별 : 일반민원*(3,544)→ 법령질의(1,160) → 제도개선(592) → 진정(493) → 기타(231)의 순

* 일반민원 대부분도 현행제도 내에서 해소가 어려운 진정성 민원

* 법령질의 만족도는 83.3%로 전체 평균(45.2%)보다 월등히 높음

2 점검결과 지적사항

①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처리 부적정

□ 처리기한 준수율은 98.3%로 '10년 점검시의 95.8%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 평균 99.5%* 보다는 낮음

* 「2011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권익위)」에서 금융위의 처리기한 준수율은 '보통'으로 외통부, 교과부 등과 함께 최하위권

○ 처리기한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는 109건(1.7%)으로 중소금융과, 금융정책과, 은행과에 집중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일반질의·상담은 7일,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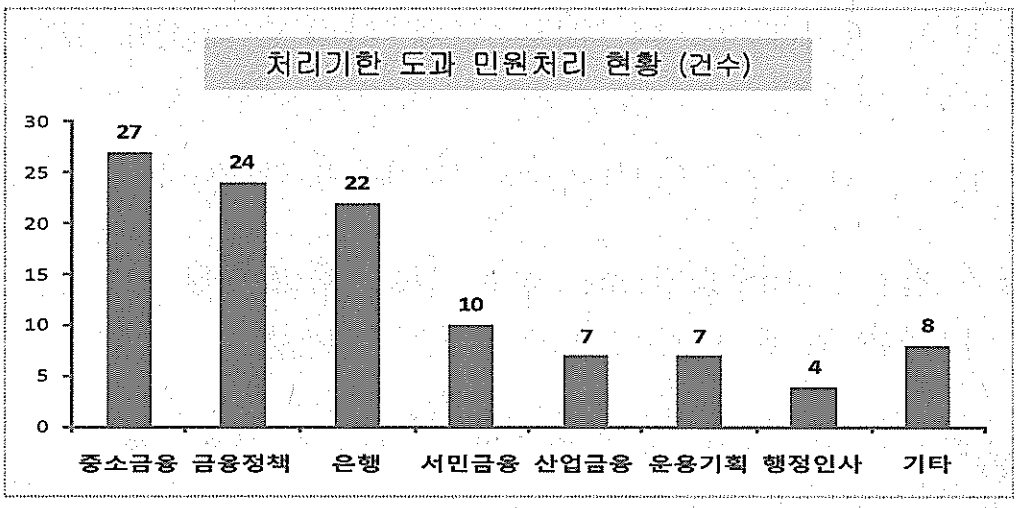

□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명확히 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시행규칙(제8조)

○ 그러나, 일부 서신민원(방문·우편)의 경우 당해 민원인에게 처리기한 연장통보 없이 국민신문고상으로만 연장처리

* 서신민원의 경우 행정편의상 국민신문고에 등재·관리하더라도 처리기한 연장은 당해 민원인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서신으로 하여야 함

<사 례>

민원인	접수일	처리일	연장횟수	처리부서
김OO	'11.01.31.	'11.03.18.	3회	금융정책과
이OO	'10.07.16.	'10.08.17.	3회	산업금융과
강OO	'10.10.29.	'10.11.26.	3회	중소금융과
황OO	'11.05.20.	'11.06.22.	3회	서민금융팀
홍OO	'10.08.11.	'10.09.10.	3회	은행과
심OO	'11.10.17.	'11.11.17.	3회	보험과
김OO	'10.07.21.	'10.08.20	3회	운용기획팀

○ 또한, 서신으로 연장통보 하는 경우 공문 또는 법정 서식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임의양식*으로 처리

* 담당자, 시행일, 기관장직인 등 없이 A4 용지에 연장사유 및 예정처리 기한만을 임의로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사 례>

관련 민원현황				처리부서
민원인	신청일	접수일	처리일	
박OO	'11.08.30	'11.08.30	'11.09.16	산업금융과

⇒ 법정 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신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통보는 반드시 공문 또는 법정서식에 의할 것 (주의 : 해당부서)

②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 산업금융과 민원 경우 대부분이 신보, 기보, 캠코 관련 민원으로 접수민원의 92% 가량을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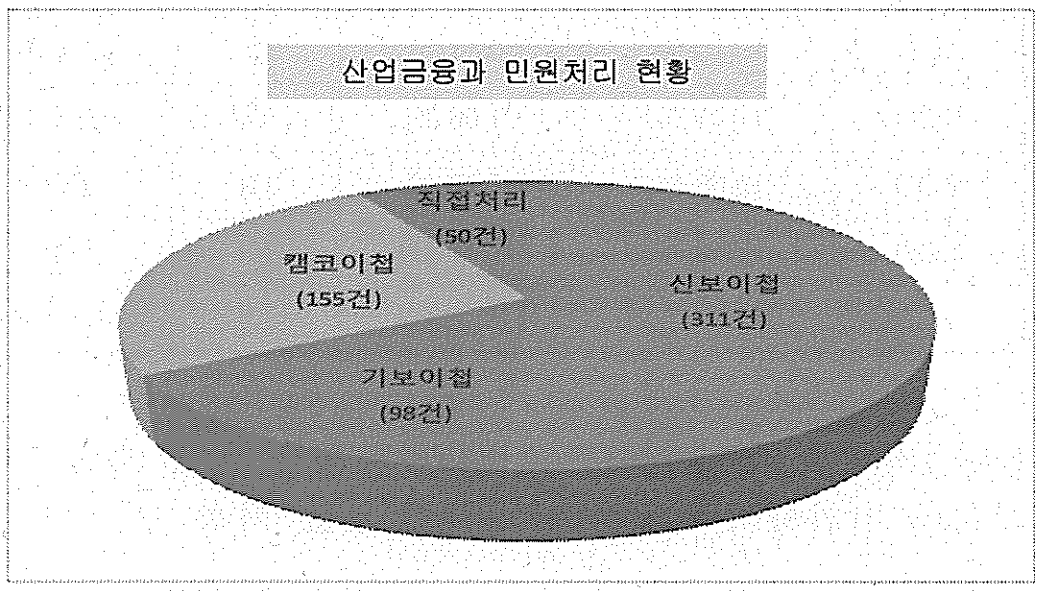

○ 이는 해당 공공기관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국민신문고 구축시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

* '10년 민원점검시 지적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됨에 따라 자본시장과 민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신문고 구축으로 금융소비자과 민원도 상당수 감소

* LH공사, 국민연금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상당수 공기업들 또한 국민신문고를 구축하여 소관 민원을 직접 처리

⇒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필요 (권고 : 산업금융과)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분야	지 적 사 항	조치 구분
예산 집행 / 회계 처리	■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출납계산서, 한국은행 월계대사, 세목별 간지,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품의서, 영수증 등) 등을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에 부합토록 철저히 관리할 것 **(금융정책과, 정책홍보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행정실)** · 일반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사례가 없도록 할 것 **(자본시장과)**	주의
	■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월별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자금한도를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 · 국외여비를 국내여비예산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기획행정실)** ·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제협력팀, 정책홍보팀)**	주의
	■ 일상감사 미이행 ·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일상감사를 이행할 것 **(기획행정실)**	주의
	■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 **(모범사례)**	모범 사례
민원 처리	■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처리 부적정 · 처리기한을 준수하며, 서신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연장은 연장사유·예정처리기한을 명확히 한 공문 또는 법정서식에 의할 것 **(행정인사과,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운용기획팀)**	주의
	■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일 필요 **(산업금융과)**	권고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10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출납관리 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 그러나 대변인실 등은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관리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집행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러나 금융정책국 등은 공공요금 납부 등 일부건 품의서 누락하거나 부서장 서명이 아닌 일반도장 날인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토록 규정 - 자본시장국 등은 일부 사용영수증에 '부서명'으로 서명 ○ [조치요구사항]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부합토록 집행관련 서류의 편철·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서운영경비는 지급건별로 결재권자의 직접 서명에 의한 품의서에 의해 집행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사용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할 것	주 의	○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 및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지적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그러나 대변인실은 '09.9.29 김○○에게 통역료 80만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전년도 발생 채무확정액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한됨 - 그러나, FIU는 '09년 12월 발생한 영문에디터 2명 비용 2,664,690원을 '10연도 예산에서 지급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여야 함 - 그러나, 기획조정관실은 '09년 3월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집행 ○ [조치요구사항] 원천징수의무를 철저히 하고, 연도 내 발생경비를 차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준수할 것	주 의	○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개선 필요	○ [지적사항] 금융정책국 등의 경우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 1명이 담당하면서 국회업무 및 민원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면서 보조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서(FIU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납업무에 소홀 ○ [조치요구사항] 출납업무 담당을 1명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서의 경우 보조인력을 지정하여 출납업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권 고	○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보조인력 지정하여 출납업무를 보조토록 조치	조치완료

< '11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출납관리 서류 편철·관리 등 미흡	○ [지적사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월별 출납서류에 출납계산서 등 일부 서식을 누락하여 편철 ○ 「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집행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러나 자본시장과는 일반수용비 집행에 있어 생수 구입건 등 일부건 품의서 누락 ○ [조치요구사항] 예산집행 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하고, 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주 의	○ 예산집행 서류의 편철·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지적사항]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32조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월별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그러나,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 미기재 ○ [조치요구사항]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준수하고,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주 의	○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일상감사 의뢰 미이행	○ [지적사항]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은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 - 그러나 기획행정실은 FIU 인건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본부 인건비에서 8,000만원을 전용('11.12.23)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함 ○ [조치요구사항] 향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건에 대하여 반드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등 「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	주 의	○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 [지적사항] 산업금융과 민원의 경우 대부분이 신보, 기보, 캠코 관련 민원으로 접수민원의 92% 가량을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 이는 해당 공공기관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국민신문고 구축시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 ○ [조치요구사항] 산업금융과장은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을 협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필요	권 고	○ 신보등 당해 기관과 협의중 (산업금융과)	추진중
민원처리기한 미준수 등	○ [지적사항] 처리기한 준수율은 98.3%로 '10년 점검시의 95.8%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 평균 99.5% 보다는 낮음. 또한 일부 서신민원(방문·우편)의 경우 당해 민원인에게 처리기한 연장통보 없이 국민신문고상으로만 연장처리 ○ [조치요구사항] 법정 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신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통보는 반드시 공문 또는 법정서식에 의할 것	주 의	○ 민원처리기한 등을 준수토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7.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원 개최 현황 및 의사록

□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연도	회의개최 회수	회의방식		상정 안건수
		참석	서면	
2010년도	24	24	-	426
2011년도	40	36	4	397
2012년도 (8월말까지)	22	17	5	266

□ 최근 3년간 위원회 의사록 사본 : 별도제출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8.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

□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

번호	제목	작성일
1	조선일보(2012.8.23) (대형 저축은행 3곳 연내 추가퇴출) (A1면1단) 제하 기사 등 관련	20120823
2	서울신문(2012.8.22)「병원 과잉진료, 보험사가 신고」제하 가판 기사 관련	20120821
3	CBS(8.20일자 인터넷판)의 '담보권 신탁제' 추진 기사 관련	20120820
4	뉴시스 및 헤럴드뉴스(8.19일자 인터넷판)의 화보협회 이사장 선임 관련	20120819
5	'12.7.26일자 연합인포맥스 「CD, 예대율에 포함·단기 코픽스 개발 검토」 제하의 기사 등 관련	20120727
6	일부 언론사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90만명 리콜 추진」기사 관련	20120724
7	매일경제 「김석동 "KB-우리 합병 전폭지원"... 어윤대 회장 막판 고심」 제하 보도 관련	20120708
8	연합뉴스(2012.7.8)「국민 절반 가입 실손의보'대수술'... 업계는 반발」등 "실손" 제하 기사 관련	20120708
9	경향신문 (2012.7.2(월)「'개인정보, 미 수사기관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기사 관련	20120702
10	머니투데이(2012.6.27(수) 「금융주 공매도 4년만에 허용」 기사 관련	20120627
11	한국경제(2012.5.31(수) 인터넷판「준비 안 된'청년창업재단' 출범」) 기사 관련	20120531
12	동아일보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융지원 0.5%도 안돼」제하 보도 관련	20120530
13	서울경제(12.5.15) 「MB 정부의 은행은 '낙하산 왕국' 이었네」 제하 보도 관련	20120515
14	머니투데이방송(12.5.11) 「정치인 테마타고 가격제한폭 급물살 제하 보도 관련	20120511
15	2012년 5월 9일자 문화일보 「저축銀, 다시 상호신용금고로」제하 기사 관련	20120509
16	2012년 5월 10일자 가판 파이낸셜뉴스 「저축銀 예금보호한도 단계적 축소」제하 기사 관련	20120509
17	서울경제가판(2012.5.8.)「퇴직연금 가입후 6개월 대출 금지...은행은 반발」제하의 기사 관련	20120508
18	조선일보(2012.5.2.)「불법 사채 신고해봤자.. 금융지원은 2.7%뿐」제하의 기사 관련	20120502

19	연합인포맥스('12.4.16) 「외은지점 업무 범위 축소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416
20	아시아경제(2012.4.4) 「'老多'보험료 뜯어고친다」 제하 기사 관련 *老多 : 노인일수록 더 많이 내는 요금체계	20120404
21	조선비즈(2012.3.26)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접속 오류..해킹 루머」 제하 기사 관련	20120326
22	한국경제(`12.3.5 인터넷판) 「헤지펀드 운용 진입장벽 낮춘다」 기사 관련	20120305
23	Wall Street Journal('12.2.10) 「Lone Star Lesson : 'More Precise Laws'」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210
24	서울경제('12.2.8) 「농협·신협 등 LTV·충당금 강화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208
25	문화일보('12.2.6) 「가계부채 900兆 돌파 제2금융 대출 억제 고강도 대책 나온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206
26	이데일리('12.1.18) 「금융위, 금감원 공무원화 검토..감독 기구 개편 군불?」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118
27	문화일보(2012.1.16.) 「저축은행 권역제한 완화···· 영업 '숨통'」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116
28	서울경제(12.1.13) 「공모주 받은 기관, 상장후 보름간못 팔아」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112
29	서울경제('12.1.11 가판) 「'농협 지원-산은 민영화' 패키지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110
30	서울경제신문('11.12.23 가판) 「체크카드 사용액 기준 낮춰 공제 늘린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222
31	서울경제신문('11.12.20) 「신용카드에 '직불기능' 추가(당정, 수수료 인하안 연내 발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220
32	연합뉴스('11.12.18) 「"불합리한 카드수수료···'정부가 직접 고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218
33	한국경제('11.12.18 인터넷판) 「카드수수료 '택시요금 방식으로 바뀐다'및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어떻게 바뀌나...	20111218
34	문화일보('11.12.1일자) ("저신용자 704만명 '카드론' 이용 못하게 되나"]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201
35	코리아헤럴드('11.11.29) 「론스타 단순명령, 금융위 내부 반발 드러나」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130
36	문화일보('11.11.25) 「저소득층 대출자 20% 돈줄 막혀」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125
37	조선일보('11.11.23) 「보험 해약 때 '쥐꼬리 환급금'개선 설계사 수당 선지급 관행 바꾸기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123
38	파이낸셜뉴스(2011.11.16일자(가판)) 「저축은행들 내년 대손충당금 비상」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115
39	한국경제(2011.11.14(월)) 「금융당국,'뻥튀기'신용평가 대수술」 인터넷 기사 관련	20111114
40	서울신문('11.11.3), 서울경제('11.10.3), 파이낸셜뉴스('11.10.3) 등의 「'중기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편」 제하의기사 관련	20111103
41	연합인포맥스(2011.11.1(화)) 「금융위, 주식 공매도 허용」 기사 관련	20111101

42	매일경제(2011.10.21(금)) 「신용카드 포인트제 단계적 폐지」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021
43	연합뉴스(2011.10.18(화)) 「현금서비스수수료, 카드대란 후 최대 전망」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018
44	서울경제(2011.10.19일자(가판)) 「소비자보호한다더니…官治로 가는 금융소보원」 기사 관련	20111018
45	이데일리(2011.10.17(월)) 「체크카드, 비밀번호 결제방식 도입.. 수수료 확 낮춘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017
46	서울신문(2011.10.18(화) 가판) 「체크카드도 1%로 내린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017
47	연합뉴스(2011.10.16일자) "은행·카드사 '사상 최대' 수수료 챙긴다" 기사 관련	20111016
48	연합뉴스 '11.10.16일「금융위, 금융권 '급여·배당 탐욕' 제동건다」 보도 관련	20111016
49	매일경제·한국경제(2011.10.12(수), 인터넷판)「금융위,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없던 일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012
50	매일경제신문 '11.10.11자 A16 「저축銀 기본자본비율 △0.97%로 급락」 보도 관련	20111011
51	매일경제(2011.10.11(화))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추진…수수료'1%'관건」 제하의 기사 관련	20111011
52	헤럴드경제(2011.10.6일)「 MB예산은'분식예산'」 기사 관련	20111006
53	이데일리('11.10.5), 서울경제('11.10.5) 「신용카드 1년 이상」	20111005
54	내일신문('11.9.30, 8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논란」 제하 기사 관련	20110930
55	동아일보('11.9.29.)"금융위원장, 론스타에 조건없이 지분매각 명령내릴 것"제하의 기사 관련	20110929
56	머니투데이(2011.9.23(금)) 「신용카드 발급에도 DTI 적용」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923
57	헤럴드경제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이르면 19일 공식 발표... 대형 저축은행 1곳 포함 6곳 영업정지 가닥」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916
58	경향신문(2011.9.16(금)) 「미소금융 대출 30% 고 신용자에게 갔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916
59	서울신문(2011.9.16(금)) 「햇살론 한도 내주부터 3,000만원까지」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915
60	한국경제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르면 주말에 나온다」 및 매일경제 「저축은행 생사 주말께 결판날듯…자구노력따라 희비」 및 머니투데이	20110914
61	한국일보('11.9.7) 「저축은행 5곳 회생불능 판정」 기사 관련	20110907
62	조선일보('11.9.6) 「영업정지 저축은행 5~6곳 압축」 및 중앙일보 「저축은행 12곳 영업정지 대상」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906
63	머니투데이의 「구조조정 저축銀 16곳 확정」 보도 ('11.9.3.) 관련	20110905
64	한국경제('11.9.1) 「새마을금고, 영업구역외 대출 줄인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901
65	조선일보('11.8.31.), 「저축은행 15곳 不實」 및 매일경제 ('11.8.31.), 「저축銀 구조조정 3가지 시나리오로 진행」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110831

66	SBS뉴스(2011.8.26(금)) 「"거꾸로 가는 보안대책…선택권·자율성이 명분"기사 관련	20110829
67	연합뉴스('11.8.18)"일부 시중은행 가계대출 전면중단"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818
68	서울경제(2011.8.12(금)) 「증안펀드, 추가 대신 기존펀드 증액으로」 인터넷 기사 관련	20110812
69	중앙일보('11.8.6), 「김석동 "9월까진 없다" 해놓고… 울산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제하 기사...	20110808
70	한국경제('11.8.8), 「9월까지 문 닫는 곳 없다는 말 믿고 예금 놔뒀는데」 제하 기사 관련	20110808
71	파이낸셜뉴스('11.8.3, 14:44),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공적자금 5000억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110803
72	한국경제('11.7.26.)"年30% 넘는 불법 사채이자 몰수 추진"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26
73	이투데이('11.7.22.)"저축은행 주범 8·8클럽 넉달만에 10·8로 부활"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22
74	연합뉴스(11.7.20) 「금융당국, 상장사 소액공모 폐지검토」, 「외국기업 상장심사 주먹구구... 소액공모 허점많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21
75	머니투데이(11.7.14) 「'고정금리 대출 30%' 없던 일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14
76	문화일보('11.7.11) 「총자산 90조 새마을금고 가계부채 대책에서 빠졌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11
77	한국경제('11.7.7) 「농·수협 예금 비과세 한도 2천만원으로축소」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07
78	중앙일보('11.7.5), 「부실저축은행 퇴출에 10조 투입」, 「20조원 쏟아부어 저축은행 불신 씻기」제하 기사 및 한겨레('11.7.5),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25조원 추가조성」제하 기사 관련	20110705
79	이데일리('11.7.5.)"지방저축銀, 수도권 대출 규제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05
80	매경('11.7.5) 「금융위 혼선…영업정지 조건 뒤늦게 수정」제하의 기사 관련	20110705
81	연합뉴스('11.6.30) 「정부, 은행 예대율 90%대로 인하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30
82	서울경제(2011.6.29 가판) 「美 경제실세 서머스 김석동 만났다는데...」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28
83	한겨레신문(11.6.21) 「DTI 규제, 지방대도시로 확대」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21
84	한국경제(2011.6.20(월) 인터넷판) 「증권사 빅5, 합병 안해도'종합 IB'할 수 있다」기사 관련	20110620
85	서울경제('11.6.17. A01, A05면)"정책은 오락가락 시장은 갈팡질팡"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17
86	연합뉴스('11.6.16)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16
87	연합뉴스('11.6.12 06:15), 「저축銀 구조조정 대비 공적자금 조성 검토」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110612

88	연합뉴스('11.6.9 06:09), 「500만원 이하 금융분쟁 소송금지 추진」 제하 기사 및 「소액금융분쟁 소송금지, 과연 가능할까」 제하 기사 관련	20110609
89	경향신문('11.6.3. 3면)"삼화저축은행 인수 때 써낸 금액 금감원서 하달"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03
90	경향신문('11.6.2)"금융당국, 또 저축은행 부실 덮나"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02
91	2011.6.1일 파이낸셜 뉴스「수출입銀·무역보험公 통합 추진」기사 관련	20110601
92	문화일보('11.6.1) 「카드대출 고삐 죈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601
93	매일경제('11.5.30)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해 은행별 대출 증가율 규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30
94	연합뉴스('11.5.26.)"저축은행 대출한도 3단계 차등화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26
95	한국경제「'산은+우리' 정부지분 50%대로 낮춘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16
96	한국경제신문「퇴직연금, 자사상품 운용 못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16
97	서울경제「우리금융 소유규제 풀어 일괄매각」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16
98	연합인포맥스(2011.5.11(수)) 「금융위, 금융주 공매도 허용 검토」 기사 관련	20110511
99	노컷뉴스('11.5.11.)"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방침'20일 전에 이미 결정됐다'"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11
100	한국경제「정부, 우리금융 민영화 포기」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11
101	헤럴드경제(2011년 5월 9일자) 「과태료 부과자 '보험료 할증' 물 건너가나」 기사 관련	20110509
102	헤럴드경제('11.5.6)의 「경제부처간 이견…외환銀 처리 장기표류?」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506
103	이데일리"우리금융소유규제완화후재매각검토,산은입찰허용될듯" 기사 관련	20110505
104	서울경제('11.4.27일자 가판) 「미소금융 "울고 싶어라"」 제하 기사 관련	20110426
105	이데일리('11.4.25.)"상장 저축銀 IFRS 고민 풀린다..당국 해법 '가닥'"제하의 기사 관련	20110425
106	'11.4.21일 연합뉴스「'악마의 유혹'ELW시장에 금융당국 수수방관」기사 관련	20110421
107	머니투데이('11.4.18) 「부실 PF채권 특화 '민간 배드뱅크' 만든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418
108	'11.4.19일자(가판) 서울경제 a01면, 파이낸셜뉴스 001면 등의 「부실PF 처리 민간 배드뱅크 추진」에 관한 기사 관련	20110418
109	매일경제('11.4.12.)"해킹방어 금융공동망 추진"제하의 기사 관련	20110412
110	머니투데이(인터넷, '11.4.7.) "저축銀 먹거리 대책, 여신전문 출장소로 가닥"제하의 기사 관련	20110407
111	한국경제 ('11.4.4일자) "불법 사채업과 전쟁 … 이자 연 6% 제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404
112	한국경제('11.3.24) 「발표 이틀만에" 강남3구 혜택 제외"시장혼선」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324

113	매일경제(2011.3.20(일), 인터넷판) 「금융위"한국 거래소 문제 많다. 확 바꿀것"」 기사 관련	20110321
114	연합뉴스('11.3.18일자) 「미소금융 대출자격 완화 추진, 다음달 서민금융활성화종합대책에 포함」 제하 기사 관련	20110318
115	머니투데이('11.3.17) 「DTI 규제완화, 이달 말 종료」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317
116	쿠키뉴스(2011.3.10(목) 인터넷판) 「또 만수야? 강만수 靑특보 산은회장,연봉최고 수준」 기사 관련	20110310
117	매일경제(2011.3.9(수) 가판) 「금융당국 숏직원 취업제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309
118	매일경제(2011.3.9(수)) 「예보법 수정안 국회통과 청신호」, 서울경제(2011.3.9(수)) 「예보법 개정안 타협점 찾나」 제하의 기사 등 관련	20110309
119	헤럴드경제('11.3.9)의 "론스타 적격성 심사 불가능… 당국 감독 행위 포기?"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309
120	서울경제(2011년 3월 8일자) "가계부채 종합대책, 어떤내용이 담기나"제하의 기사 관련	20110307
121	(서울경제,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 부활 검토 관련	20110304
122	연합인포맥스('11.3.2)의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 적격성 문제 없어" 결론」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302
123	연합뉴스('11.2.28) 「금융위, DTI 규제 원상복귀 결론」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28
124	연합뉴스('11.2.28)의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3월16일 승인될 듯」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28
125	매일경제('11.2.28) 「금융위, 풀었던 DTI 규제 원래대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28
126	이데일리(2011.2.21일자) 김석동"중장기 과제로 저축銀 예금보장 한도 축소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21
127	매일경제 "대우증권·우리투자증권 합병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21
128	서울경제(2011년 2월 17일자(가판)) 「DTI 규제완화 연장 가닥 잡았나」 제하의 기사 등 관련	20110216
129	매일경제 ('11.2.9일자 인터넷판) ("4대은행, 저축銀에 2조 긴급 지원")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10
130	매일경제(2011.2.10(목) 가판) 「옵션쇼크 도이치뱅크 제재 착수」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10
131	이데일리(2011.2.9(수) 인터넷) 「[단독] '옵션쇼크' 도이치 서울지점 '6개월 영업정지'」 제하의 기사 등 관련	20110209
132	동아일보(2011.2.7(월) A02면) 「도이체방크, 2004년 옵션거래로 200억대 이득」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07
133	연합인포맥스(2011.2.7(월) 인터넷) 「금감원,'도이치 獨본사 검찰 고발키로」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207
134	매일경제(2011년 2월 7일자(인터넷판)) 「전세난, 주택매매 활성화로 푼다, DTI규제 완화 연장될듯」 기사 관련	20110207
135	파이낸셜 뉴스('11.1.31일 1면, 3면) ("기금마련후 부실 저축銀 일괄제재")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30

136	아시아경제(2011.1.27(목) 3면) 「부실증권사 퇴출 심사」 기사 관련	20110127
137	매일경제「정부, 블록세일로 우리금융 연내 민영화」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26
138	한국경제「경남, 광주은행, 우리금융과 묶어 판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25
139	MTN 뉴스('11.1.24) 「금융당국, 저축銀 공적자금 검토 ..... 구조조정'세게'」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	20110124
140	매일경제('11.1.19일 인터넷판) ("정부, 부실 저축은행 일괄 매각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19
141	조선일보(2011.1.17(월)B01면)「금융株 공매도 다시 허용될 듯」 기사 관련	20110117
142	연합인포('11.1.17일 인터넷) ("삼화 포함 부실 위험 저축은 10곳")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17
143	뉴시스('11.1.17일 인터넷) ("대형저축은행이 더 부실... 평균 BIS 비율 9%")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17
144	머니투데이(2011년 1월 16일자(인터넷판)) 「DTI 규제유예, 3월말 종료될 듯」 기사 관련	20110116
145	서울경제(2011년 1월 13일자(가판)) 「DTI 규제완화 추가연장 검토」 기사 관련	20110112
146	조선일보(2011.1.11일자) 「차명계좌 실소유주 형사처벌」 기사 관련	20110111
147	헤럴드경제(2011년 1월 11일자) 「금융위 금감원, 자보료 인상 "담합 아니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11
148	서울경제('11.1.10일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달부터 0.3~0.4%P 인하"]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10
149	이데일리('11.1.7일자 인터넷판) (김석동式 구조조정 저축은행 6곳..상장사 없어]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07
150	문화일보('11.1.6일자 17면) ("부실 저축은행 인수시 공적자금 투입하겠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10106
151	한국경제(2011.1.5(수) A30면) 「김석동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손질"」 기사 관련	20110105
152	매일경제(2011.1.5(수) A02면) 「공모주 개인물량 25~40%까지 늘어날까」 기사 관련	20110105
153	서울경제신문('11.1.5일자 가판) 「자본시장통합법 전면 손질하겠다」 기사 관련	20110104
154	한국경제(2011년 1월 4일자(가판)) 「변동금리 장기 주택대출 소득공제 제외」 기사 관련	20110104
155	연합뉴스(2010년 12월 28일자) 「무사고 18년 이상때 차보험료 70% 할인 추진」 기사 관련	20101228
156	서울경제(2010년 12월 27일자(가판)) 「장기 무사고 차보험료 할인 5~10% 확대」 기사 관련	20101226
157	한국경제「우리금융 예비입찰 예정대로 실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215
158	매일경제「현대건설 매각 원점으로 가나」 및 MBN 「진동수 "현대그룹 인수가격 터무니 없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215

159	경향신문('10.12.10일자 17면) ('공정사회' 뜨자 '서민금융' 찬바람) 제하 기사 관련	20101210
160	매일경제(인터넷, '10.12.10. 17:28) "우량저축은행도 거액대출 못해"제하의 기사 관련	20101210
161	서울경제(인터넷 '10.12.7 17:24), 「은행·증권·보험 유사상품 비교 한눈에」 제하 기사 관련	20101208
162	파이낸셜뉴스 옵션쇼크 대책, 실시간 관리는 말뿐 재발가능성 기사 관련	20101208
163	연합뉴스(2010년 12월 8일자) 「중고 소형차 보험료 인하..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기사 관련	20101208
164	헤럴드경제('10.12.8일자 1면/6면) 부실 저축銀 8곳 파산위기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208
165	한국경제 「광주·경남銀, 우리금융서 분리매각」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206
166	파이낸셜뉴스('10.11.29일자 가판)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면 개편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128
167	서울경제('10.11.26자 가판) 「예금자 보호한도 차별화 최대 1억서 3,000만원까지」, 이데일리('10.11.25) 「예금자보호 한도 3천만원~1억원 차등화 추진」 기사관련	20101125
168	문화일보(2010년 11월 22일자) 「자기부담금 확대·법규 위반 차량 할증강화 자동차 보험요율 조정한다.」 기사 관련	20101122
169	연합뉴스('10.11.22자)의 「불법 차명계좌 개설시 금융기관 처벌 강화」 기사관련	20101122
170	매일경제(차사고 자기부담금 늘린다」,[금융위가 마련한 차보험 개선안 살펴보니] 기사 관련	20101119
171	매일경제('10.11.19,15:35 인터넷판) (진동수 위원장"옵션쇼크 금감원도 책임크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119
172	연합뉴스('10.11.18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118
173	서울경제('10.11.18자 가판)의 「상습사고 운전자 보험료 크게 오른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117
174	매일경제"시장교란하는 외국銀지점 한국서 영업 못할 각오해야"	20101107
175	서울신문 가판(2010.11.3), 「1000만원 이하 거래도 불법의심땐 보고 의무화」 제하 기사 관련	20101103
176	서울경제 가판(2010.11.1), 「은행 커버드본드 독자발행 어려워져」 제하 기사 관련	20101101
177	국민일보('10.10.29/가판) 「예보, 우리은행 지분 절반만 팔고 남을 것」 제하 기사 관련	20101029
178	서울경제('10.10.28) a10면 「금융위 상호금융사·대부업 공동검사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101028
179	연합인포맥스의 「하나금융-골드만, 풋백옵션 진실공방」 보도 관련	20101022
180	이데일리의 「국제표준에 맞나 안맞나…'랩 규제안'논란 확산」 기사 관련	20101020
181	매일경제('10.10.18자 가판) 「예대율 100%규제 폐지 검토」 및 서울경제('10.10.18자 가판) 「은행 예대율 규제 사실상 폐지」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017

182	SBS 8시뉴스('10.10.15) 「'폭발적 인기'햇살론, 3개월도 안돼 중단 위기?」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101015
183	연합뉴스 등의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추진」에 관한 기사 관련	20101014
184	머니투데이('10.10.11), 뉴시스('10.10.11), 이데일리('10.10.11), 아시아경제('10.10.11) 제하의 기사관련	20101012
185	한겨레('10.10.11) 「서민에겐 쌀쌀한'미소금융'」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011
186	내일신문('10.10.11) 제11면 「금융감독기구 재편 논란 재점화」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011
187	조선일보('10.10.11) 「미소금융·햇살론, 9~10등급엔 냉랭」, 세계일보('10.10.11) 「햇살론·미소금융 최저신용층엔' 그림의 떡'」 제하의 기사관련	20101011
188	연합인포맥스 「외국인 채권 과세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1011
189	서울경제('10.10.7), 「'우량저축은행되기' 문턱 높아진다」 제하 기사 관련	20101007
190	매일경제('10.10.5), 「키코피해 中企 2차지원대책 나온다」 제하 기사 관련	20101005
191	머니투데이·노컷뉴스('10.10.3), 「서민금융'햇살론'...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 제하 기사 관련	20101004
192	「퇴직 고위공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제하의 기사 관련(한겨레, 경향, 한국일보/10.1조간)	20101001
193	연합인포맥스 「은행 후계자 계획, 내년 4월부터 공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920
194	연합뉴스('10.9.16, 14:18분 입력)「금융위, 금융회사 CEO 연임 제한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916
195	연합뉴스('10.9.5 07:01입력)「햇살론 조기소진 우려..보증재원 확충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905
196	서울경제신문(8.27자 가판) 「캠코 '저금리로 전환대출' 대상 늘리기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827
197	연합뉴스('10.8.27 16:02 입력), 「DTI 풀 때 실수요자 연소득기준도 완화 검토	20100827
198	연합뉴스('10.8.25 15:40 입력), 「경제장관 긴급회동…DTI 부분 완화 가닥」 제하 기사 관련	20100825
199	이데일리('10.8.22), MBC('10.8.21), 조선일보('10.8.21) 등의 DTI 규제완화 기사 보도 관련	20100822
200	서울경제('10.8.22 17:40 입력), 「헌집 사는 1주택자도 DTI 규제완화하기로, 고가주택 강남권 등 제외…부동산대책 이달내 발표」 제하 기사 등 관련	20100822
201	동아일보 「최저 신용등급자에도 서민금융 지원」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820
202	한국경제('10.8.20 18:32 입력),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부동산 활성화案 월말께 나올 것"」 제하 기사 관련	20100820
203	서울신문 「이럴 바엔 만들지나 말지… 허울뿐인 中企정책 2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818

204	서울경제('10.8.11),「입장누그러진금융위...DTI완화 저울질」 제하 기사 관련	20100811
205	서울경제('10.8.12 가판), 「시장조성제도 부활한다」 제하 기사 관련	20100811
206	헤럴드경제(10.8.10),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대폭 강화」 제하의 보도 관련	20100810
207	이데일리('10.8.9 11:19), 「예금보험대상 변액포함... CMA·ELS 제외」 제하 기사 관련	20100809
208	연합뉴스('10.8.8), '연소득 5천만원 넘으면 햇살론 제한검토' 제하의 기사관련 보도해명	20100808
209	국민일보('10.8.4)「서민들 되레 사채시장 내몰린다」 관련 기사에 대한 설명	20100804
210	SBS 8시 뉴스('10.7.31)「가뭄의 단비 '햇살론'…재원마련 문제없나?」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20100731
211	연합뉴스('10.7.29)「햇살론 연체이자율 제각각 '혼선'」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100729
212	연합인포맥스, 「DTI, 서울 60%, 인천·경기 70%로 완화 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100719
213	내일신문「금융위'행복잡이 프로젝트' 혼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15
214	헤럴드경제('10.7.9) 「보험연구원 분리 논란 심화...보개원' 부글부글'」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09
215	한국경제('10.7.2) 「금감원 '펀드 시세조종 조사'」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02
216	한국경제('10.6.30)「금융위-금감원 또 충돌조짐」 제하 기사 등 관련	20100629
217	파이낸셜뉴스('10.6.30)「금융위-금감원 또 제재권 신경전」 제하 기사 관련	20100629
218	연합인포맥스 「정부, 은행세 걷어 '환율안정펀드' 조성」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23
219	서울경제('10.6.23)「금융위 '금융상품 백화점' 도입재추진」 제하 기사 관련	20100622
220	헤럴드경제('10.6.20)「대부업체 고객정보 공개 반대 여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20
221	이데일리 「은행세 요율, 금융 재정거래 억제수준 부과 검토」 제하의 보도 관련	20100617
222	헤럴드 경제「KB·우리지주 합병돼도 독과점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16
223	한겨레신문「은행세 20조원 부과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9
224	한국경제「보험사에서 증권계좌 만들면 불법?」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8
225	서울신문「은행세 내년 도입 확정」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1
226	동아일보「대부업체"고객정보 못줘"… 10조원 규모 서민대출 무산 ?」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522
227	[보도해명]서울경제「변호사·회계사도'자금세탁 보고'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제하 기사 (10.5.17 A01면, A06면) 관련	20100517
228	한국경제신문의「세계단일 회계기준 2013년 새로 도입한다」 보도 관련	20100514

229	헤럴드경제「보이스피싱 관련법 급조 … 피해자들 두 번 운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30
230	이데일리「금감원 제재권한 축소 법안 기습제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20
231	문화일보의「감사의견 거절 급증… 해당 상장폐지기업 감리 강화」 보도 관련	20100420
232	헤럴드경제「은행권 외화차입 규제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9
233	연합뉴스 등의 「지방미분양 문제 완화방안검토」에 관한 기사 관련	20100414
234	뉴스핌, 「은행 사외이사제 석달만에 또 재수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2
235	연합뉴스 「서민금융사 보증부 대출금리 11%대」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1
236	이투데이 「금융위"직접 징계의 칼을 들겠다"」 및 「금융위-금감원 제재권 놓고 '신경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8
237	헤럴드경제「미소금융 금리 두자리수로 올려 모럴해저드 막는다」 및「모럴해저드 차단불구 지나친 고금리 도마에」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7
238	헤럴드경제 「정부, 서민금융위해 저축은행에도 이익출연 강요」 및 이데일리「금융위 서민금융TF, 개인프리워크아웃制 연장」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6
239	연합뉴스 「저신용자 신용대출 받기 쉬워진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1
240	경향신문,「車요일제보험 할인 준비부족에 또 연기」 보도 관련	20100401
241	매일경제「개인신용정보 종합DB 만든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28
242	연합뉴스 「저축銀 감독강화.. 자산운용 규제도 검토」 및 「대형 저축은행 매년 종합검사 받는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14
243	한국경제 「모든 스마트폰서 인터넷뱅킹 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07
244	서울경제 「저축銀도 유동성비율 100%이상 맞춰야」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05
245	경향신문 등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에 관한 기사 관련	20100303
246	서울경제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협의체 신설 검토」 및 「금융권 충당금체계 확 바뀐다」 제하기사 관련	20100301
247	연합뉴스 「금융사별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검토」 제하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00226
248	연합인포맥스「금융당국, 외은지점 달러차입제한 강력규제 본격 검토」, 매경「국민연금과 통화스왑 늘려 제2 외환보유액 확보한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00226
249	헤럴드경제「우리지주 자사주 차입매입 허용」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23
250	이데일리,「금융당국, 증권사 신규인가 전면 재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22
251	서울경제 「예보,'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제하기사 관련	20100216
252	한국경제「우리금융 합병 쉽게'예보 MOU'푼다」 등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09

253	한국경제「우리금융, 합병통해 민영화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08
254	서울경제 인터넷판 「예금보장제 10여년만에 대수술」 제하 기사 관련	20100126
255	서울경제「2금융권 미소금융 출자'난색'」제하기사 관련	20100120
256	서울경제 "은행서도 '랩어카운트'판매한다	20100119
257	세계일보「쇼자금 상환 부진 '혈세만 줄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19
258	서울경제 「새 보험료 산출방식 의무도입 "유예"」 제하 기사 관련	20100113
259	연합뉴스「KB회장, 사외이사제 개선후 뽑아야」제하기사 관련	20100110
260	서울경제 등 「우리금융 등 은행간 M&A 빨라진다」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04
261	매일경제「우리금융 민영화 일정 내주 발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03
262	한국경제신문, 「대우건설 産銀에 넘겨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1228
263	연합뉴스, 서울신문의「기업인수목적회사제도 허점투성이」 기사에 대한 해명	20091228
264	헤럴드경제 "금융회장 선출에 주주대표 참여"관련	20091204
265	연합뉴스의 「빅4 회계법인에 외부감사 몰아주기」 보도 관련	20091203
266	매일경제"부실보험판매대리점이배상…"(금융위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관련	20091203
267	매일경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금융위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관련	20091202
268	연합뉴스 "돈세탁 의심거래 무조건 신고추진"관련	20091127
269	동아일보의 「은행장 후보, 금융당국이 사전심사」 보도 관련	20091119
270	매일경제「은행 美국채 보유 의무화 내년 7월 시행」제하의 기사 관련	20091109
271	연합뉴스「우리금융지분 7%, 11월내 매각」 제하의 기사 관련	20091027
272	10.21 연합인포맥스「증권·자산운용사 콜시장 참여제한」, 「콜시장 제한·통안증권 국채전환 등 단기자금시장 대개편」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091021
273	동아일보「경영권 무관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23% - 정부, 전량매각 미리 의결키로」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20091005
274	헤럴드경제「'미소금융' 불참…외국계銀 해도 너무하네」 관련 보도 해명	20090925
275	아시아투데이「정부, 신용평가사 자회사 보유 금지 추진」제하의 기사 관련	20090911
276	CBS 노컷뉴스「정부, 금융공기업도 임금 5% 반납」제하의 기사 관련	20090903
277	머니투데이「우리금융, 조기 민영화 금융위에 요청」제하의 기사 관련	20090813
278	연합뉴스「금융당국 주택대출 확대 은행에 불이익」제하의 기사 관련	20090811
279	위원장 기자간담회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720
280	OCI(주) 조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715
281	주택담보대출 LTV‧DTI 규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618
282	"보험사기 합동조사팀"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604
283	"정부 유동성공급 지속 곤란"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27
284	한국경제「車운행 많으면 보험료 더 낸다」기사 관련	20090527

285	공매도 냉각기간제도 시행여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24
286	매일경제 「주식 공매도 곧 재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13
287	파이낸셜뉴스,「증권사'허술한 입단속'어쩌나」기사에 대한 해명	20090511
288	서울경제,「금융당국, "저축은행 합쳐라"」기사에 대한 해명	20090417
289	이데일리 「상장중소 2011년 국제회계기준 적용 연기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20090326
290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주식 공매도 재허용 검토」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324
291	이데일리 「정부, 회사채 신속인수제 부활 검토」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320
292	연합뉴스 「금감원 "정상기업도 신용위험 재평가"」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309
293	파이낸셜뉴스 「정부, 해운사 배 100척 매입」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303
294	국내은행 외화차입금 현황(보도참고자료)	20090227
295	The Economist 「Domino theory」(09.2.26일자)기사 관련	20090227
296	연합뉴스 「BIS비율 8% 이상 은행도 공적자금 투입」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219
297	서울경제 「올해 만기 중기대출 2금융권도 전액 연장」 관련 보도 해명	20090216
298	한국경제 「기업대출보증 모두 만기연장」 및 「파격적 보증으로 中企 자금난 해소…수출보험도 무제한 지원」(09.2.12)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11
299	연합뉴스, 「정부, 구조조정 속도 낸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09
300	한국일보, 「부실징후 대기업 자구안 내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06
301	한국경제「자통법에 발목잡힌 국민연금」기사 관련	20090205
302	매일경제「은행 BIS비율 내달 완화한다」가판 기사 관련	20090130
303	머니투데이「건설·조선사 구조조정 미진 때 은행문책」및 연합뉴스「금감원, A.B등급 부도나면 은행문책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9
304	연합뉴스 「은행들 건설·조선사 퇴출 없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6
305	한국경제 「금감원 건설·조선사 옥석가리기 직접 나설 것」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5
306	이데일리「전광우"동부·두산 등 중견그룹 모니터링"」제하 기사 관련	20090113
307	이데일리,「금감원장'BIS10%'발언....금융위와 주도권선점용?」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2
308	서울경제,「부실 저축은행 내달중 솎아낸다」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09
309	문화일보 제14면「기업'자사株'담보펀드 나온다」제하 기사 관련	20090107
310	내일신문 제1면「모든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제하 기사 관련	20090106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9.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산은 민영화는 '09.5월 국회의 산은법 개정을 통해 '14.5월까지 산은지주의 최초지분을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그간 산은지주는 수신기반 확충, 수익성·건전성 제고 등 체질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IPO를 준비 중에 있음

□ 산은의 체질개선 성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외 시장여건,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은 민영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0.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상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상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은 별도 송부해드린 공적자금관리백서(p 201)를 참조하시기 바람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1.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현황
- 중복업체수 및 총액현황
- 금액별 중복 상위 10개업체 내역

1. 기보

(1) 보증잔액기준

(단위 : 개, 억원,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
업체수	6,875	6,423	5,690	5,073	5,152
잔액	16,555	18,023	16,130	14,994	16,326
비중	13.2%	10.5%	9.3%	8.8%	9.3%

(2) 금액별 중복 상위 10개 업체 내역

[단위:억원]

No.	기업체명	중복잔액
1	진풍***	55.5
2	㈜대호***	50.3
3	우리***	48.8
4	에프엔***	47.8
5	에스에이치****	47.8
6	대륙***	45.5
7	㈜티에***	43.6
8	㈜디**	40.5
9	㈜나우***	39.8
10	동환***	39.2

2. 신보

(1) 보증잔액기준

(단위 : 개, 억원,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8월
업체수	6,875	6,423	5,690	5,073	5,152
잔액	20,118	24,920	21,268	19,812	21,554
비중	(6.6)	(6.3)	(5.5)	(5.2)	(5.4)

주) 일반보증(재보증 제외) 잔액 기준

(2) 금액별 중복 상위 10개 업체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업체명	보증잔액
1	유***	69.8
2	아***	60.0
3	에***	58.2
4	화***	56.3
5	에***	56.0
6	유***	55.7
7	거***	50.8
8	씨***	50.0
9	아***	49.7
10	삼***	47.6

주) '12.8월말 기준 신·기보 중복보증 업체 중 신보 일반보증(재보증 제외)잔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2. 2008년부터 현재까지 LTV · DTI 규제 변동현황

[DTI 규제 변동 현황]

- 수도권(투기지역외)에 대하여 **DTI비율 규제**(서울 50%이내, 경기·인천 60%이내) (은행 '09.9.7.) (비은행 '09.10.12)

- 1가구 1주택, 무주택자에 대해 **DTI 자율적용**(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투기지역 제외, 11.3월까지 한시적용) ('10.8.29)

- DTI규제 자율적용 폐지('11.3.22)

- 젊은층 장래소득, 순자산 소득환산 인정 등 **DTI보완방안** 발표(은행 '12.8.17)

[LTV 규제 변동 현황]

- 수도권(투기지역 제외) **LTV 비율 규제 강화**
(은행 60%→50%, '09.7.6) (비은행 보험 60%→50% 기타 70%→60%, '09.10.12)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3. 금융위 산하 각종 위원회 및 T/F현황, 회의현황 및 회의록

□ 별첨 참조

□ 금융위 산하 위원회 및 TFT구성 내역

연번	TFT명	설치목적	구성 인원	회의현황	회의록	비고
1	금융발전 심의위원회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	62명	다음페이지 참조	-	'12년 현재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정책, 서민, 서비스, 글로벌, 자본)로 구성
2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TF	G20 서울정상회의 및 FSB 서울총회 이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함	20명	'10.11.24(1차) '10.12.3(2차) '10.12.10(3차)	-	거시건정성 정책체계·수단, 신흥국 이슈의 발굴 등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여 G20/FSB 한국의제의 모멘텀 확보
3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TF	가계부채의 종합대책 마련	11명	'11.1.12(1차) '11.1.19(2차) '11.1.26(3차) '11.2.9(4차) '11.5.23(5차)	-	'11.6.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4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관계기관 합동 TF	단기지표 금리 개선	12명	'12.7.19 (1차) '12.7.25 (2차) '12.8.1 (3차) '12.8.14 (4차) '12.8.21 (5차) `12.9.6 (6차)	-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 발표(8.22) *단기코픽스 도입, CD발행 정상화 등 현재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논의중

□ 최근 3년간 금융발전심의회 회의 개최실적

회의 / 분과명		차수
'09년 금융발전심의회	정책	1차(3.20)
	글로벌	1차(8.14)
	은행	1차(4.17)
	보험	1차(6.12)
	중소서민	1차(7.17)
	자본	1차(5.22)

회의 / 분과명		차수
'10년 금융발전심의회	정책	1차(4.8)
		2차(7.15)
		3차(11.29)
	시장	1차(4.15)
		2차(6.16)
		3차(8.27)
	글로벌	1차(4.13)
		2차(6.1)
		3차(9.16)
		4차(11.18)
	은행	1차(4.16)
		2차(7.2)
		3차(12.8)
	보험	1차(4.22)
		2차(6.30)
		3차(12.3)
	중소서민	1차(5.12)
		2차(6.25)
		3차(12.17)
	자본	1차(4.9)
		2차(5.14)
		3차(7.9)
		4차(9.10)
		5차(11.12)

회의 / 분과명		차수
'11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1차('11.7.22)
	정책	1차('11.9.22)
		2차('11.10.19)
		3차('11.12.14)
	글로벌	1차('11.10.5)
		2차('11.10.13)
		3차('11.10.19)
		4차('11.10.27)
		5차('11.12.14)
	서비스	1차('11.9.7)
		2차('11.12.6)
	중소서민	1차('11.9.29)
		2차('11.11.25)
	자본	1차('11.1.28)
		2차('11.10.14)
		3차('11.11.11)
		4차('11.11.25)

회의 / 분과명		차수
'1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1차('12.5.4)
	정책	1차('12.4.18)
		2차('12.6.13)
	서민	1차('12.6.5)
		2차('12.9.4)
		3차('12.9.19)
	서비스	1차('12.1.31)
		2차('12.4.18)
		3차('12.9.11)
	글로벌	1차('12.5.30)
		2차('12.9.11)
	자본	1차('12.2.21)
		2차('12.3.28)
		3차('12.5.31)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3-1. 금융위 TF 현황

□ TF 설치 및 활동 현황

TFT 명	설치일	설치목적	활동종료일	구성인원	회의개최회수	활동실적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 위원회	'11.2.24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11.6.21	금융위 부위원장, 최운열(서강대 교수), 박상용(연세대 교수), 박준(서울대 교수), 조재호(서울대 교수), 박경서(고려대 교수), 오규택(중앙대 교수), 김태준(금융연구원장) 등	5회	개정안 마련
전자증권법 제정 T/F	'12.1.17	전자증권법 개정안 마련	12.3.27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박준(서울대 교수), 홍정훈(국민대 교수), 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 금융투자협회 증권서비스 본부장, 예탁결제원 금융인프라 추진단장 등	8회	개정안 마련

* 각 TF별 별도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음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3-2. 금융위 산하 TF 현황

□ 소관 TFT 설치 및 활동 현황

TF 명	설치일	설치 목적	활동 종료일	구성 인원	회의 개최 회수	회의 개최일	실적	비고
헤지펀드 모범규준 TF	'11. 6월	헤지펀드의 설립·운용·환매 등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시해 제도의 조기안착 지원	'11.126	8인 (전문가, 업계, 학계 등)	5회	매월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관련 모범규준 제정	이한샘 사무관 (2156-9894)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 TF	'12 7월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펀드 제도 개선	진행중	18인 (업계, 학계 등)	6회	'12.7월 ~ 9월	현재 진행중	이한샘 사무관 (2156-9894)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3-3. 산하 각종 위원회 및 TF현황 (회의현황 및 회의록)

□ 공정시장과 소관 위원회 현황

명칭	법적근거	주요활동사항	인적구성	회의개최 실적*
감리 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3, §25)	· 회계감리·조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전 심의	당연직 4인 위촉직 5인	08년 6회 09년 9회 10년 13회 11년 11회 12년 11회
자본시장 조사 심의위원회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21, §22)	·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심의, 이의신청·직권재심 등에 관한 사전 심의	당연직 4인 위촉직 3인	08년 13회 09년 13회 10년 13회 11년 11회 12년 10회
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3, §24)	· 회계처리기준 수정요구,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승인 등 회계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전 심의	당연직 4인 위촉직 7인	08년 4회 09년 4회 10년 4회 11년 3회 12년 3회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공인 회계사법 (§48)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당연직 5인 위촉직 2인	08년 0회 09년 2회 10년 1회 11년 1회 12년 1회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공인 회계사법 (§6조의2)	·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선발인원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	당연직 3인 위촉직 4인	08년 1회 09년 1회 10년 1회 11년 0회 12년 1회

*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융위로 이관된 시점('08.2.29)부터 '12년 8월말 기준

□ 소관 TFT 설치 및 활동 현황

TFT	설치일	설치 목적	활동 종료일	구성 인원	회의 개최 회수	활동 성과
국제회계 기준 정착 추진단	'09.3.31	· 국제회계기준(IFRS)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이슈해결 및 지원방안 검토	'10.11월	17	5	· 각 분야별 IFRS 추진 상황 점검 · 교육 및 홍보 ·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방안 마련
회계산업 선진화 민관합동 위원회	'11.5.13	· 회계투명성 제고 및 회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11.10월	13	5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등을 마련
불공정 거래 조사 개선 TF	'12.3.30	· 신속한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위한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구축	'12.12월	6	5	· 불공정거래 예방 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활성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

* 각 TF별 별도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음

□ 별 첨 : 각 TF별 회의 결과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금융감독원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책 임 자	최준우 과장(2156-9910) 최금환 실장(3145-7750)	담 당 자	구의청 사무관(2156-9914) 장석일 팀 장(3145-7980)	
배 포 일	2010. 11. 30.(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1)	총 9매

제 목 : 제5차 「IFRS 정착 추진단」 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는 '10.11.30일(화), 14:00, 최규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제5차 「IFRS 정착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음

*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 공정시장과장, 금감원 회계서비스본부장 · 회계제도실장 · 기업공시제도실장, 거래소 유가시장본부장보, 상장협 조사본부장, 코스닥협 이사, 중기중앙회 본부장, 회계사회 부회장, 기준원 상임위원 · 조사연구실장, 전영순 교수, 회계법인(삼일 · 한영) 부대표 등 총 20명

※ '09.3월, IFRS 도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입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IFRS정착추진단**을 구성

- 상장, 공시, 감리, 교육 및 금융권역 등 5개 실무분과 운용

□ 2011년 IFRS 의무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금번의 추진단 회의에서는 **기업 · 회계법인 · 정보이용자 등의 IFRS 준비상황**에 대해 최종적으로 점검하였음

(1) 기업들의 준비현황('10.10월 기준)

○ **'10.10월** 현재 상장법인 등 IFRS 의무적용 기업(1,964개사) 중 거의 대부분(97.2%)인 **1,909개사가 준비 완료 또는 착실히 준비중**

○ 그간 **"IFRS 미착수기업 중점관리 방안"**(제4차 추진단 보고, '10.5)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실질적인 미착수기업은 **7개사로 대폭 감소(383 → 7개사)**

* 회계현안 간담회 개최(5~6월), 미착수기업 CEO 협조공문 발송 및 면담(5~6월), 중소기업 현장 방문교육(6~10월), 미착수기업 CEO 간담회(8~9월) 등 실시

- 이들 7개사*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면서 **2011년 1사분기부터 IFRS**를 적용해야 하는 기업(12월 결산법인)으로서 내년 첫 분기 보고서 공시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상황 점검을 강화할 계획

* 모두 코스닥법인들로써 전부 12월중 IFRS 도입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입장

○ 그리고, **34개사***는 실체가 없는 단순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사무관리회사가 기한 내 도입하겠다는 입장

* 선박투자회사 28개사, 부동산투자회사 1개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5개사

- 나머지 12개사는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회사(14개사)**들로서 실제 IFRS 적용까지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는 상황

(2) 회계법인들의 준비현황

○ 회계법인들의 **IFRS**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08회계연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09년 사업보고서 분석)

* 82개 법인에서 IFRS 전문인력에 대한 자체인증 프로그램을 운용중이며,중소형 회계법인도 공인회계사회의 IFRS 교육인증 요건(50시간) 이상을 이수토록 요구

○ 아울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중소형 회계법인을 위한 **IFRS** 관련 감사 프로그램을 변환·개발중('11.상반기 완료예정)

(3) IFRS 정보이용자들의 준비현황

○ 정보이용자들의 IFRS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 신용정보회사는 (자체 개발한) **"표준 IFRS 재무제표양식"**을 통해 기업간 비교 및 과거(K-GAAP) 정보와의 **시계열 분석** 정보를 제공중

* (예시)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LINE, 한국기업데이터의 CRETOP 등

- 금융회사들은 IFRS의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신용평가등급의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현재의 신용평가 모형을 보완

□ 또한, 추진단에서는 **IFRS** 상장, 공시, 감리, 교육 및 금융권역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한편,

○ **IFRS** 의무적용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정착추진단을 해체하기 보다는 IFRS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애로를 해결·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IFRS**의 정착을 위해 연장 운영하기로 함

□ 최규연 상임위원은 **2011년 IFRS**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하였음

○ 기업들이 남은 기간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마무리 하도록 유관기관 및 협회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

○ 그동안 모두의 각고의 노력 끝에 IFRS가 시행되는 만큼 **IFRS** 재무정보가 시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보이용자 교육·홍보에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및 회계법인 등이 긴밀한 협조와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

※ 별첨 : 2010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별첨>

2010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1. 2010년도 주요 추진실적

□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감원, 회계기준원, 거래소 등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IFRS 관련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추진업무	완료시점	비고
법규 개정	IFRS 관련 상장·공시·감독규정 및 외감규정 개정	4, 11, 12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IFRS 이용자를 위한 핵심 정보(영업이익, 지분법) 주석 기재	10~12월	금융위·금감원·기준원
도입 정착 지원	기업대상 IFRS Survey 실시	1월	금감원
	IFRS에 따른 질의회신 제도 시행	1월	금융위·금감원·기준원
	IFRS 조기도입 자문 T/F 회의 개최	3, 7월	금융위·금감원
	IFRS 전국순회 설명회(10회) 개최	3~5월	금감원·공인회계사회
	IFRS 조기적용기업 재무영향 분석 및 업종별 영향 분석	4, 6월	금융위·금감원
	제4차 IFRS 정착추진단 회의 개최	5월	금융위·금감원
	분·반기·사업보고서의 IFRS 관련 공시사항 점검	4, 6, 8월	금감원
	IFRS 도입미착수 기업 현장방문 실시	6, 8, 10월	금감원·거래소
	회계법인 대상 피감사회사별 IFRS 준비상황 점검	6, 11월	금감원
	상장 중소기업 IFRS 지원방안 발표	8월	금융위·금감원·중기중앙회·4대 회계법인
	IFRS 재무제표 주석 작성 및 공시 설명회(2회) 개최	11월	금감원
	'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홍보책자 발간	12월 예정	금감원
이해 관계자 설득 노력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회계법인 IFRS 간담회 개최	3, 7월	금융위·금감원
	증선위 상임위원 주재 IFRS 정보이용자 간담회 개최	4월	금융위·금감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중소기업 단체장 IFRS 간담회 개최	8월	금융위·거래소
	IFRS 미착수기업 CEO 간담회(5회) 실시	8~9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중소기업을 위한 IFRS 설명회 개최	10월	금감원·상장/코스닥협
	재무정보이용자를 위한 IFRS 세미나 개최	12월 예정	금감원
국제 협력 강화	IFRS 위험회피회계 개정 관련 IASB 설득(조선업관련)	1, 7월	금융위·금감원·기준원
	IFRS Foundation 서울 총회 개최	10월	금융위·금감원·기준원
	한국의 IFRS Foundation 이사회 진출노력	4~10월	금융위·기준원
	IFRS Foundation 및 금융위 등 공동 세미나 개최	10월	금융위·금감원·기준원

2. 2010년도에 추진한 IFRS 도입 및 정착 지원 실적

가. 기업들의 도입준비 지원

□ IFRS 준비상황 점검 실시

◦ 상장기업 및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IFRS 준비사항을 파악

* 기업 IFRS Survey('10.1월), 사업보고서 사전공시사항 점검(4월), 회계법인에 대한 피감사회사별 도입준비상황 점검(6·11월)

□ IFRS 도입 미진기업 현장 방문

◦ **IFRS** 도입 미진 중소기업을 회계법인, 거래소 등과 공동으로 현장방문(총 **45**개사)을 통해 도입준비에 필요한 교육 및 면담을 실시하고 애로사항 청취

□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IFRS** 지원방안 발표

◦ 금융위는 금감원, 회계법인, 중기협회 측과 함께 **2011**년 **IFRS**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도입지원 방안을 발표('10.7)

< 상장 중소기업 IFRS 지원방안 요약 >

(ⅰ) 4대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상장 중소기업의 IFRS 도입비용 완화를 위해 **IFRS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무료컨설팅 제공실적('10.10월) : 안진 12개사, 한영 20개사

(ⅱ) 4대 회계법인 중심의 **"대응 조치반"**을 상설 운영하여 중기중앙회 등 기업에서 **IFRS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 등에 대응

(ⅲ) 내년 이후 IFRS 정착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회계민원 해결**을 위한 **"Help Desk"**를 중기중앙회 내에 설치 및 운영

(ⅳ) 미착수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IFRS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장 중소기업의 차질없는 도입을 지원하고, 조속한 착수를 독려

* 8~9월중 총 5회 개최(코스닥 기업 4회, 코스피 기업 1회)

(ⅴ) 금감원, 중기중앙회, 거래소, 상장·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IFRS 홍보 및 맞춤형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

나. IFRS 실무적용상의 혼란 방지를 위한 지원

□ IFRS 질의회신 제도 운영('10.1월 시행)

◦ 일관성 있는 IFRS 적용 및 실무지침 부족 해소를 위해 '10.1월부터 IFRS 질의회신제도*를 운영

*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공동운영하고 기업,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질의회신 확대연석회의 설치

□ IFRS 재무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10.4월 및 7월)

◦ 기업 및 정보이용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IFRS 조기적용기업의 사전공시사항을 통해 재무영향 및 재무제표 표시방법 등을 분석·전파하고 대응방안* 마련

* 영업이익, 매출채권·채무 등이 구분표시되도록 기업들에 권고하고, 지분법 정보 제공 및 영업이익 구분표시를 위해 회계기준 및 외감규정을 개정('10.하반기)

◦ 아울러 금융업종(은행, 증권, 보험) 및 일반업종(건설업, 조선 등)을 대상으로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영업, 업무부담 등 비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 마련

* 건설업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운영 중이며, 건설업 및 조선업을 위한 IFRS 개정 필요사항을 IASB에 전달(조선업 7월, 건설업 11월)

□ 교육·홍보활동 강화

◦ IFRS 전국순회설명회(10회) 등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IFRS 홈페이지를 통해 IFRS 관련 중요정보 및 동향을 지속 제공

* 기타, 주석 공시실무 설명회(2회) 및 중소기업설명회 등을 개최

다. IFRS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 IFRS정보이용자 간담회 개최('10.4월)

◦ IFRS 도입에 따른 회계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사전 준비 및 IFRS 활용능력 제고방안** 등 논의

*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및 금투협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 대표 참석(증선위 상임위원 주재)

** 금감원은 재무정보이용자의 IFRS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위해 IFRS 세미나 개최(12.2) 및 IFRS 해설서인 '알기 쉬운 IFRS' 발간(12월 중) 예정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회계법인 간담회 개최('10.3월 및 7월)

◦ 중소기업의 IFRS 도입 부담완화를 위한 회계법인이 맞춤형 교육 제공, 컨설팅 비용 인하 등 지원방안을 마련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중소기업 단체장 간담회 개최('10.8월)

◦ 금융위는 당초 연기를 건의해 온 중기중앙회와 코스닥협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예정대로 '11년 시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

* 금융위 부위원장, 중소기업 중앙회장, 코스닥협회장, 거래소 코스닥본부장

□ 미착수기업 CEO 간담회 개최('10.8~9월)

◦ 총 5회에 걸쳐 미착수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IFRS 도입의 필요성과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조속한 착수를 독려

3. 향후 추진계획

가. IFRS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계획

□ 연결중심의 상장 및 공시제도 마련(자본시장 관련 법규 정비)

◦ 상장(진입·퇴출) 및 공시(수시공시 등) 제도 전반을 **2013년부터** 연결기준 전환에 필요한 법규를 **2012년** 상반기까지 정비

□ 회계감독 제도 정비(외감법령 및 외감규정 정비)

◦ 연결중심의 IFRS하에서 회계감독도 연결재무제표 위주로 전환

- 종속회사에 대한 효율적 감리방법 및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지배-종속회사간 책임과 역할을 구분하는 등 적정 조치방안 검토

◦ 원칙중심의 IFRS특성상 회사의 회계처리 선택 영역이 보다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기준 위반여부 판단에 전문가 참여 확대

◦ 기업들이 IFRS를 적용한 기말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시점('12.3월말)에 맞춰 외감법규를 **2011년말**까지 정비

나. 성공적인 IFRS 정착 도모

□ IFRS 재무정보의 충실성 확보

◦ 사전예방적 감독을 위하여 전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보고서* 기재사항의 충실성 점검

* '11.5월 제출되는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보고서부터 실시

◦ 점검결과 미흡한 기업을 중심으로 취약부분*에 대한 중점점검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도

* (예시) IFRS 최초채택·재무제표 표시·금융상품 등 조기적용기업 중 많은 기업들이 위반한 항목들 위주로 선정

□ IFRS 도입 영향 분석 및 대응

◦ 2010년 사업보고서('11.3월 제출예상)를 대상으로 IFRS 도입영향 사전공시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업종별로 주요 이슈사항에 대응

□ 금융권역별 IFRS 정착 지원

◦ 감독목적 회계 운영상의 IFRS 이슈 해결 및 금융 권역간 차이조정을 위해 금융권역별 현안회의를 지속 실시

다. IFRS 관련 국제협력 강화

□ IFRS·US-GAAP 합치에 따른 국내영향 최소화 노력 지속

◦ G20 합의사항 이행이 예정된 '11년말까지 IFRS와 FASB간 논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 브라질·캐나다 등 우리와 처한 상황이 유사한 국가* 등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IASB에 개정 IFRS기준의 시행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2015년 이후)

* (예) 도입시기가 비슷한 브라질('10), 캐나다('11), 인도('11), 멕시코('12) 등

◦ 아울러, 위험회피회계, 외화환산회계 등에 대한 개정 논의시 한국기업들의 불리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 회계기준원의 IFRS 관련 연구 및 국제활동 강화

◦ IFRS 관련 국내 기업 등의 Needs를 발굴하여 IASB의 Agenda에 포함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

◦ 아울러, IFRS 관련 국제회의·세미나의 유치 또는 참여 등 국제활동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의 회계제정기구와의 교류를 확대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브리핑시(14:30)부터 보도가능	금융감독원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책 임 자	금융위 최유삼 과장 (2156-9910) 금감원 이창수 국장 (3145-5550) 거래소 이덕윤 본부장보(3774-9002)	담 당 자	금융위 전희규 사무관 (2156-9912) 금감원 강 전 부국장 (3145-5570) 거래소 이돈규 시장감시총괄(3774-9020)	
배 포 일	6.21.(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보실(3145-5788~91)	총11매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개선 방안

1. 추진 배경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저해

○ 최근에는 신종 금융상품 증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불공정 행위 수법이 다양화·고도화

□ 금년 3월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 T/F를 구성

○ 불공정거래 예방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

⇨ 동 방안의 시행을 통해 발생단계부터 불공정거래 세력에 대한 밀착 감시를 통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적발시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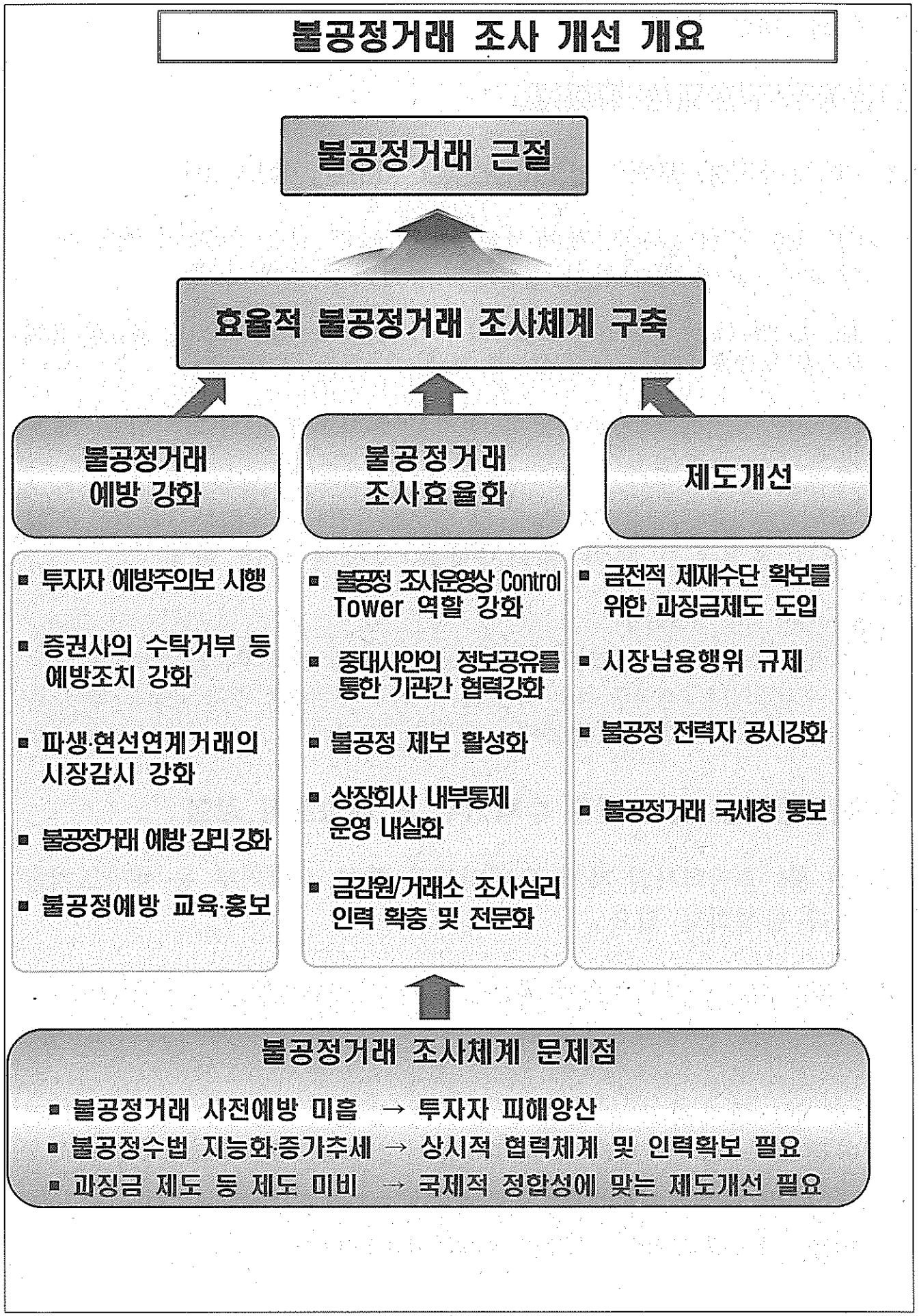

2. 주요 개선 방안

【 불공정거래 예방 강화 】

(1) 「투자자피해 예방주의보(Investor Alert)」 제도 시행

□ (현 황) 거래 以前단계에서의 미국 등과 같은 체계적 예방경고 장치*가 없어 투자자가 불측의 피해가능성에 노출

* SEC 및 FINRA(美 증권회사 자율규제기구) 등은 「Investor Alert」 공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 (개 선) 정기적 예방주의보와 수시로 투자자에게 주의사항을 제공하는 「예방주의보」 제도 시행 (Two-Track)

○ (주의보 내용)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시장에 미리 안내

※ 예방주의보 <예시>
- 정기주의보 :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 수시주의보 : 테마주 등의 이상급등 현상과 관련하여 주가 급등주 특징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2)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 강화

□ (현 황) 증권회사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

- **(예방조치)** 1단계(고객에게 유선경고) → 2단계(서면경고) → 3단계(수탁거부예고) → 4단계(수탁거부)

□ (개 선)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대해 증권회사 모니터링상 불건전 거래로 적출된 계좌에 대해 유선경고와 서면경고를 생략하고 즉시 수탁거부 예고 조치*

* (현행) 유선경고(1단계) → (개선) 수탁거부예고(3단계)

○ 아울러 투자경고·위험종목 등 고위험 종목에 대해 **예방조치대상 적출 기준을 강화***

* (현행) 일별 적출기준만 적용 → (개선) 일별 적출기준 + 기간 적출기준 적용

○ **A증권회사로부터 수탁 거부된 계좌가 B증권회사 모니터링을 통해 적출된 경우 예방조치 강화***

* (현행) 서면경고(2단계) → (개선) 수탁거부예고(3단계)

(3)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거래 시장감시체계 강화

□ (현 황)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는 발생시 시장충격이 큰 만큼 시장감시 기준 및 감시시스템 효율화 필요

■ **(현선연계 시세조종 사례)** KOSPI200옵션 만기일에 풋옵션 매수 이후 기초자산(주식)을 대량 방출하여 지수를 하락시켜 부당이득 취득

□ (개 선) 거래소는 분석·조회속도를 향상시킨 「新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 현·선연계 감시기준을 개선*하고, 감시시스템 업그레이드**

* (현행) 적출기준 파생상품별로 상이 → (개선) 적출기준 표준화

** 대용량 데이터 분석시간(40만건 기준) : (현행) 약 70초 → (개선) 약 2초

(4) 거래소의 증권회사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감리 강화

□ (현 황)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효과적인 컨설팅 성격의 감리 활동 미흡

□ (개 선) 거래소는 증권회사의 거래소 업무 관련 규정 준수 유도 등을 위한 감리 강화

(5) 불공정거래 예방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 (현 황) 투자자 및 상장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

□ (개 선) 금감원·거래소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일반 투자자의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 금감원·거래소는 상장법인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상장회사 공시책임자 의무교육 강화

○ 금감원·거래소는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건강한 투자 포털*' 구축을 추진

* 미국 SEC는 투자자보호 홈페이지(www.investor.gov)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요령, 증권사기 피해 예방 요령 등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추진 】

(1) 불공정거래 조사·운영상의 Control Tower 역할 강화

□ (현 황) 현행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가동중

*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법률자문관,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개 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 등 **Control Tower** 역할을 강화

○ 분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정책, 공동조사 과제, 제도개선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

○ 동 협의회를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용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강화 실무 기능을 수행(매월 개최)

* 구성 : 금융위(공정시장과), 금감원(조사1·2국) 및 거래소(시감총괄·심리부)

* 기능 : ① 심리 및 심층 조사가 필요한 **이상징후 및 특이사항 발생 여부 등 시장 상황 모니터링** ②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의 **거래소 심리 및 금감원 조사 진행상황** ③ 자본시장법 및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진행경과 등

(2) 주요 증권범죄 신속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개선

□ (현 황) 테마주 가격 왜곡 현상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시의성 있는 대응 필요성 제기

□ (개 선) 중대사건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적시대응 체계 구축

○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금감원·거래소는 종목명, 혐의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

○ 금감원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조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거래소와의 공동조사도 실시

*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관련 증거의 확보와 본조사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기초조사

○ 불공정거래 의심사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

※ 금융정보분석원은 소관 업무범위내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위의 조사업무를 지원

(3)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시스템 활성화

□ (현 황) 불공정거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제보의 중요성이 커짐

□ (개 선) 금감원·거래소는 제기된 제보내용을 상호공유하고 제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협조체계 강화

○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증액 및 사전에 포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요청하는 특별포상금(한도 5천만원) 제도 도입

○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을 점검하여 기준 적용을 합리화

○ 내부제보 활성화를 위해 혐의자인 내부자가 불법혐의를 제보하는 경우 조치감경 확대도 검토

(4)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운영 내실화

□ (현 황) 상장기업 스스로의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자체 Compliance가 미흡

□ (개 선) 상장협·코스닥협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상장회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

○ 상장협·코스닥협은 동 점검결과를 토대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개정 추진

(5) 금감원/거래소의 조사 및 심리인력 확충 및 전문화

□ (현 황) 불공정거래의 발생 건수 증가 및 수법 고도화 등으로 인해 조사소요 기간이 장기화되고 적체사건도 증가

□ (개 선)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금감원의 조사인력과 거래소의 심리인력 확충 및 전문화 추진

○ 인력충원 및 장기근무 허용, 조사·심리 경험자 우선 배치

【 제도개선 과제 】

(1) 금전적 제재수단 확보 : 과징금제도 도입

□ (현 황)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형사제재에만 의존할 뿐,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제도가 없음

□ (개 선)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동 법 개정이후 과징금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과징금 세부 부과기준도 마련할 계획

(2) 시장남용행위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현 황) 위법성이 형사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Front Running* 등 시장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흡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도·매수 주문을 받고 이를 체결하기 전에 자기 계산으로 그 상품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 (개 선)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자의 내부정보 이용 규제 및 현행 시세조종행위보다 구성요건 완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 대상 확대

* (현행) 유인목적 등 요구 → (개선) 유인목적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유발 등 가격 및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도 규제

(3) 불공정거래 전력 경영진 공시 강화

□ (현 황) 임원의 사업기간 以前 불공정거래 등 과거 금융범죄 전력은 공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

※ 현행 법령은 사업기간 以內에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의 경우 임원의 제재 현황 공시의무 부과, 거래소 수시공시의 경우는 횡령·배임 사실 공시의무 부과

□ (개 선) 사업보고서(분·반기 포함)를 통해 임원의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을 공시하는 방안 추진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선진 해외사례 및 기업의 공시부담 등을 감안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공시수준 검토**

(4) 불공정거래자 세금 탈루 혐의 국세청 통보 활성화

□ (현 황)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등의 과세를 통한 예방효과가 기대되나 통보 미흡

□ (개 선) 국세청과 협의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금탈루 혐의를 통지하는 방안을 모색

○ 세법위반 관련 혐의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검토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①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강화를 통해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자자 피해 방지에 기여

② 기관간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시대응 및 신속한 조치 가능

③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장남용행위 금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다변화되는 증권범죄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응

⇨ 규정개정,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추진

(붙 임)

<방안별 세부추진일정 및 필요조치>

구분	추진방안	추진일정	필요조치	주관기관
불공정거래 예방 강화	1. 투자자피해 예방주의보 제도 시행	9월	거래소 규정 개정	거래소
	2. 불공정거래 혐의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강화	10월	거래소 규정 개정	거래소증권사
	3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 시장감시체계 강화	12월	시스템 개발	거래소
	4. 증권사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감리 강화	11월	규정준수 유도	거래소
	5. 불공정거래 예방 맞춤형 교육 및 홍보	9월	프로그램 마련	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1. 불공정거래 조사운영상 Control Tower 역할 강화	6월	실무협의회 가동	합동
	2. 증권범죄 신속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개선	6월	협력체계 구축	합동
	3.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시스템 활성화	9월	제보시스템 개선	합동
	4.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	7월	운영실태 점검	상장협등
	5. 금감원/거래소의 조사 및 심리인력 확충	연중	인력확충, 전문화	금감원거래소
제도 개선	1. 금전적 제재수단 확보 : 과징금제도 도입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추진	금융위
	2. 시장남용행위 등에 대한 규제 강화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추진	금융위
	3. 불공정거래 전력 경영진 공시 강화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추진	금융위금감원
	4. 불공정거래자의 거래내역 국세청 통보 활성화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추진	금융위금감원

참고 1 FINRA의 Investor Alert 제도

□ **(개요) FINRA는 Investor alert(투자자 경보)제도를 통해 증권 사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

※ 각 이슈별로 투자 유의사항을 공표하여 불공정행위를 예방

□ SEC, CFTC 등 연방규제기구도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며, 각 기관별 또는 공동으로 Invest Alert를 공표

□ **(유형 및 제공주기) 재난, 자원주, 온라인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경보를 제공하며, 연초에는 당해 연도에 점검할 투자 유의사항을 종합 제공**

<FINRA의 사기관련 Investor Alert 유형>

- 피싱 등 온라인 아이디 도난 사기('12.2.29)
-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2012년도 12가지 팁('11.12.20)
- 금값 상승에 따른 금 투자상품이나 자원주 관련 사기('11.8.24)
- 일본 대지진('11.5.4), 중국주식 관련 투자사기('11.4.14)
- IPO 공모 관련 사기행위('11.3.15)
- 무료 점심 투자세미나 행사를 통한 사기('09.8.31)

○ 별도의 공표주기가 없으므로 필요시 경보를 공표하나, 평균 월 1~2회의 Investor Alert을 발표하고 있음

□ **(제공매체 · 방법) FINRA 홈페이지**(www.finra.org) 및 별도 홈페이지(www.saveandinvest.org)를 통해서도 제공*

* Invest Alert 공표기관 : SEC(별도 홈페이지(www.investor.gov)도 운영). CFTC, 연방거래위원회, NASAA(북미증권감독협회) 등 다수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2011. 11. 2(水) 조간부터

금융감독원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책 임 자	김 인 과장 (2156-9910) 최진영 국장 (3145-7700)	담 당 자	국주성 사무관 (2156-9923) 정용원 부국장 (3145-7702)
배 포 일	2011.11.1(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8) 총 31매

제 목: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1. 추진 배경

□ 우리 회계산업이 금융산업의 핵심인프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 금년 5월부터 학계·업계·수요자·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첨부 참조)를 발족하고 총괄 및 분과위원회 등 20여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발굴

2. 주요 내용

1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법인의 책임 강화

①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상당 수준의 품질관리능력과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에게만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허용

* 국내상장된 외국법인을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도 등록대상에 포함

○ (품질관리 평가) 현행 품질관리기준 중 핵심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구체화 및 계량화

○ (손해배상능력) 상장법인 감사인의 외감법상 손해배상 공동기금적립 한도액을 외부감사 매출액의 **20%**에서 **40%**로 **2배** 확대

2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 강화**)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관리 준수의무, 금융당국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근거를 마련

○ 품질관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품질관리실태를 외부에 공개하고, 상장법인 감사인 평가시 불이익 부여

3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의 실효성 확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부실감사 요인을 차단

○ (i)동종금융업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ii)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조치한도를 확대(감사보수의 100%→200%) (iii)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5억원→20억원)

2 규제완화 등을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

1 (**중·소형 회계법인의 실질적 법인화**) 상장법인 감사인은 자금·회계 통합관리 구축 등 실질적 법인화 강화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를 도모하고,

○ 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운영의 편리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법인형태를 허용하여 차별화된 성장을 유도

* 회사와 조합의 중간성격을 띠는 기업 형태로서 외부적으로는 유한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는 조합처럼 운영

2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지원**)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합병 이외에 분할합병 등을 허용

* (현행) 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는 「상법」 상 주식회사에만 허용되므로 회계법인의 경우 적용 불가능

3 (**연속감사 제한 규정 개선**)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3년마다

감사업무보조자*의 3분의2이상을 교체해야하는 과도한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산업별 전문화를 강화하고,

* 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로서 이사가 아닌 모든 공인회계사

○ 상장법인 감사에 참여하는 품질관리검토이사의 감사업무 참여 제한 규정을 개선(3년 참여 후 3년 제한 → 6년 참여 후 3년 제한)

3 기업의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 지원

1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지원 근절)**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제출토록 의무화

* 재무제표 제출기한(개별: 정기주총 6주전, 연결: 4주전)이 준수되지 않고 외부감사인이 감사기간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행 존재

2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이전)** 외부감사인의 선임·해임, 감사보수 결정 주체를 경영진에서 기업의 내부 감시기구(상법상의 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로 이관하여 경영진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3 **(분식회계조치 대상자 확대)** 회사의 분식회계 발생시 등기임원에게만 부과했던 증선위 조치(해임권고, 검찰통보 등)를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에게까지 확대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전무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

4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의 사용 동의 의무화)** 기업이 증권신고서류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경우,

○ 외부감사인의 동의서한(consent letter)을 받도록 하여, 기존 감사보고서일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의 추가적인 재무검토*를 의무화

* 예시 : 11년 10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첨부되는 감사보고서는 10년 감사보고서(11년 3월 발행)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과 감사보고서 발행일 사이에 중요한 재무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4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회계감독 개선

1 (**자발적 수정공시 강화**) 재무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재무심사결과 발견된 오류 사항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수정공시를 요구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증선위 보고로 종결

2 (**피조치자 권익보호 강화 등**) 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을 외감법에 명문화하고, 금감원 실무진의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적용시 전문가 패널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

3 (**금융회사에 대한 감리절차 개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회계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진행 중*이라도 회계감리를 동시에 실시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경감

* (현행) 금융관련 검사국에서 먼저 검사를 실시하고 회계분식발견시 검사종료 후 회계감독국에 통보하여 이후 회계감리를 별도로 실시함으로써 수감기업의 부담이 큼

3. 향후 계획

□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첨부 **회계산업 선진화 민관합동위원회(종괄위원회)**

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나이)	비 고
공동 위원장	성균관대 교수 (경영학)	송 인 만(62)	- 성균관대 경영학과 - 前 한국회계학회장 - 現 성대 부총장
학계 (2名)	서울대 교수 (경영학)	이 창 우(58)	- 서울대 경영학과 - 前 한국회계학회장 - 現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 문 철(53)	- 서울대 경영학과 - 前 한국경영학회 회장 - 前 증선위 위원
유관 기관 (2名)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권 오 형(65)	- 경희대 경영학과 - 現 세제발전심의위 위원 - 現 국세청 국세행정위 위원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임 석 식(59)	- 서울대 경영학과 - 前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 前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업계 (2名)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박 영 진(61)	- 연세대 경영학과 - 前 재경부 정부투자기관 결산지도 위원
	충정회계법인 (대표이사)	황 홍 주(57)	- 고려대 경영학과 - 前 세화회계법인 국제부
수요자 (2名)	삼성전자 (부사장·재경팀장)	이 선 종(54)	- 중앙대 경영학과 - 現 S-LCD(주) 감사 - 現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
	한국기업평가 (대표이사)	윤 인 섭(56)	- 연세대 응용통계, CPA - 前 하나HSBC생명보험(주) 대표이사 - 前 ING 생명보험 대표이사
금융위 (3名)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원, 자본국장		
금감원 (1名)	회계 전문심의위원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3-4. 금융위 산하 각종 위원회 및 T/F 현황, 회의현황 및 회의록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 분	성 명	현 직위
민간위원 (10인)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최석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공동대표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Patrick Mange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부사장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
	Michael Hellbeck	한국SC금융지주 부사장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혁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
	김유니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 시니어 파트너
정부위원 (5인)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유관기관 위원 (6인)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종석	한국투자공사장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현황

회차	안건	참석률
1차 (대면) ('08. 6. 30)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	21/28
2차 (서면) ('08. 7. 30)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 -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	서면
3차 (서면) ('08.12. 3)	-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단 구성·운영(안)	서면
4차 (대면) ('09. 1.20)	- 금융중심지 지정(안)	28/24
5차 (서면) ('09. 5.14)	- 금융중심지조성분과위원회 구성(안) - 금융전문인력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 실무금융전문인력 연수원 지정 및 예산배정(안)	서면
6차 (대면) ('09.12.21)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 확정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계획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추진실적(보고)	17/28
7차 (서면) ('10. 1.15)	- 녹색금융 특화MBA 선정·지원 기본계획(안)	서면
8차 (서면) ('10. 2. 2)	- 녹색금융 특화MBA 심사·선정 계획(안)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서면
9차 (서면) ('10. 3.11)	- 녹색금융 특화MBA 심사단 확정(안)	서면
10차 (대면) ('10. 3.22)	- 녹색금융 특화MBA 심사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안)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10년 교육계획	19/28
11차 (대면) ('10. 9.10)	- 금융중심지정책 경과 및 평가 -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발전계획 -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 조성현황 및 발전계획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18/21
12차 (서면) ('11. 3.18)	- 녹색금융 MBA 지원사업 '10년 결과 및 '11년 추진계획 - 2010년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 결과 보고	서면
13차 (대면) ('11. 6. 8)	-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안 -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 -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17/20
14차 (대면) ('11. 8.25)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2011~2013)	16/20
15차 (서면) ('12. 3.28)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금 교부안 - 녹색금융특화 MBA사업 2011년 실적 및 2012년 추진계획 보고	서면
16차 (서면) ('12. 7.9)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안	서면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3-5. 금융위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 회의현황 및 회의록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수		위원임기
		당연	위촉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3조	2명	6명	2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심의회	공적자금상환 기금법제10조	6명	2명	2년

□ 회의개최실적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연도	회의개최 회수	회의방식		안건수	회의결과		
		참석	서면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2009	8	8	-	44	43	1	-
2010	22	22	-	83	78	5	-
2011	17	17	-	68	66	2	-
2012.7	13	12	1	46	45	1	-

○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심의회

연도	회의개최 회수	회의방식		안건수	회의결과		
		참석	서면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2009	3		3	3	3		
2010	3		3	4	4		
2011	3		3	4	4		
2012.7	2		2	3	3		

□ 위원회 회의록

○ 별첨: 최근 3년간 위원회 의사록 사본

* '11년 9월이후 회의록과 안건은 공적자금의 지원 및 회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나 기업의 정보보호와 금융시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의결 1년 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3-6. 금융위, 증선위 회의현황 및 회의록

1 금융위원회 현황

o 설치근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o 회의개최 방식 : 매월 2회 개최(첫째, 셋째 수요일)

o 위원 구성

- 당연직 위원(6) :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금감원장, 한은 부총재, 예보 사장
- 위촉직 위원(3) :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 금융위원회 회의록은 별도제출

2 증권선물위원회 현황

o 설치근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o 회의개최 방식 : 매월 2회 개최(둘째, 넷째 수요일)

o 위원 구성

- 당연직 위원(1) :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임)
- 위촉직 위원(4) :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 2012년도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사본 : 별도제출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4. 최근 3년간 임직원 급여 현황 및 성과급 지급 현황

□ 임직원 급여 및 성과급 지급 현황

○ 연도별 기관장 등 직급별 급여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 직 급	2009	2010	2011	2012.8
장관급	113	116	119	82
차관급	112	110	113	78
고위공무원	1,181	1,363	1,366	1,049
부이사관	369	298	420	251
서기관	2,707	2,856	3,054	2,131
사무관	5,149	5,277	5,954	4,210
6급 이하	2,450	2,495	2,855	2,129
계약직	605	871	922	679
특정직(경찰)	409	367	420	316
계	13,095	13,753	15,223	10,925

<참고 : 국가공무원 보수체계(全 국가공무원 동일)>

구 분	보수체계(단위 : 천원)
정무직	고정급적 연봉제 (장관급 : 106,273, 차관급 : 103,209)
고위공무원단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기준급+직무급+성과급) (기준급 : 51,524~76,700, 직무급 : 4,800~10,800, 성과급* : 전년 업무실적 반영)
과장급	성과급적 연봉제 (3급 : 53,632~79,837, 4급 : 42,449~73,036)
4급 이하 (과장급 제외)	봉급(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4, 5, 8, 10의 봉급표) 수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성과급* : 전년 업무실적 반영 지급

○ 2009년 이후 성과급 지출현황

연 도	지급 대상	지급예산
2009	○ 성과연봉(44명) - 연봉제 공무원(과장급 이상, 계약직) ○ 성과상여금 - 4급(호봉제) 및 5급 이하 : 173명	633,642천원
2010	○ 성과연봉(50명) - 연봉제 공무원(과장급 이상, 계약직) ○ 성과상여금 - 4급(호봉제) 및 5급 이하 : 172명	677,161천원
2011	○ 성과연봉(55명) - 연봉제 공무원(과장급 이상, 계약직) ○ 성과상여금 - 4급(호봉제) 및 5급 이하 : 210명	680,607천원
2012	○ 성과연봉(54명) - 연봉제 공무원(과장급 이상, 계약직) ○ 성과상여금 - 4급(호봉제) 및 5급 이하 : 220명	795,129천원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5. 최근 3년간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소관 협회 감사현황 및 결과

□ 최근 3년간 소관 협회 감사결과는 총 3건임.

감 사 명	감사 기간	감사결과	비 고
여신금융협회 종합감사	'09.07.06 ~ 07.17	별첨1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감사	'10.11.15 ~ 11.26	별첨2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감사	'11.11.21 ~ 11.29	별첨3	

2009년 여신금융협회 감사 결과 보고서

2009. 9.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목 차 -

Ⅰ. 감사개요

Ⅱ. 여신금융협회 현황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IT 관련사업 예산 관련 부적정

나.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 부적정

다. 규정 미흡 및 인사운영 업무 부적정

라. 규정 부적정

마. 카드관련 중요정보 관리·통제 업무 부적정

3. 감사결과 처리요령

Ⅰ 감사 개요

〈 목 적〉

◇ 여신금융협회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취약부문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1. 감사 실시계획

□ 감사기간 : 7.6~7.17 (2주간) (예비조사 : '09.6.29(월)~7.3(금))

□ 감사대상업무 : 기관운영 전반 (조직, 인사, 예산, 사업 부문을 포괄)

□ 감사대상기간 : 06.7.1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

* 여신금융협회는 재경부 종합감사('99) 이후 감사 미실시

□ 감사반원 : 6명 (감사담당관 포함 5, 금융결제원 직원 1)

2. 감사 방향

□ 여신금융협회가 소규모의 장기 미수감 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자체통제 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감사 실시

o 관련 규정의 완비 및 기존 규정의 준수 여부

o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o 정부위탁 업무 및 자율규제 기구 역할 수행 실태

Ⅱ 여신금융협회 현황

□ 설립목적

o 회원 상호간 업무협조와 여신전문금융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98.3월 설립)

□ 설립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및 민법 제32조

□ 회원사 : 39개사 (카드(5), 리스금융(15), 할부금융(16), 신기술금융(3))

o '09.5월 현재 여신금융사는 총 55개사(협회 가입율 70.9%)

□ 정원 : **40인** (상근부회장, 상무이사 및 직원 38명, 회장 : 비상근)

□ 주요업무

o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법령 준수를 위한 회원지도·권고 등*

*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회원 상호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조사·연구, 이용자 민원의 처리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 재원조달 및 지출구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수입(a)	수입 총액		4,706	5,686	6,587
	회비	카드사	2,765	3,507	3,330
		리스사	732	909	1,093
		할부금융사	819	995	1,293
		신기술금융사	168	188	235
	전기잉여금		222	87	636
지출(b)	지출 총액		**4,471**	**5,328**	5,665
	인건비		1,843	2,840	2,316
	홍보비		182	473	269
	용역비		277	197	380
	업무추진비		168	246	321
	회의비		224	293	277
	카드정보관리비		507	623	707
	기타(전산비 등)		1,270	656	1,395
차이(c=a-b)			**235**	**358**	**922**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금번 감사는 금융위 감독대상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하나인 여신금융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로서

o 최근 10여년간 장기미수감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여신금융협회의 경영전반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함

□ 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탁업무(경영정보공시), 민원업무 등을 담당하며 금융위 정책집행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

o 감사결과 위탁업무 등 본연의 업무수행 중 주요한 위법·부당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함

o 다만, 경비집행, 카드관련정보 관리·통제에 일부 문제점 발견

□ 주요 발견 위규사항인 IT관련사업의 회계처리 부적정 건의 경우 협회는 금융위의 감사실시계획 통보('09.5) 이후 IT회계의 위규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서둘러 행함

* '07.10월경 現부회장이 IT사업 회계 위규사항 인지
'07.12.28 IT사업 수입·지출 중단 결정
'09.2.11 '08년도 결산 이사회에 IT사업 현황 보고
'09.6.9 〃 신용카드사장단 회의 보고
'09.6.16 〃 이사회 추가 보고 (관련 임직원 징계)
'09.6.23 〃 총회 보고('03년 이후 IT사업 수입·지출·잉여금 처분 승인)

o 장기 미수감 비영리법인이 자율적으로 위규관행을 시정하여 회원사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되어 감사의 사전 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

□ 금융위 감사로 인해 협회의 예산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업무 및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정 보완 등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 마련**

□ 감사실시 결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됨

① **IT 관련사업 예산의 경우 관련 수입·지출을 총회 승인 없이 편성·집행하고 관련 예·결산서를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② 예산편성 및 집행부문의 경우 임원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 지급한 후 지출증빙 미비, **예산서에 업무추진비 예산명세 및 산출근거 누락**, 예산 집행 후 사후전용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③ 근거규정이 없거나 미흡·불명료한 상태에서 고문·수석전문위원을 임명하고 계약조건에 없는 경비를 집행한 문제점이 있음

④ 카드관련 중요정보 관리·통제 업무의 경우 사용자 PC공유폴더 정보노출 및 DB내 중요정보 암호화 미비 등이 발견되었음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IT 관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협회가 한국신용카드결제(주)에 위탁하였던 전산업무*를 '03.8.1 협회가 직접 담당하면서 관련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 시작함

* 신용카드가맹점공동망운영사업(신용카드사 결제망 공동사용에 대한 중개수행)
국세청용역사업(신용카드영수증복권 자료처리용역 수행)
외환전산망운영사업(여신금융회사와 한국은행간 외환전산망 연결작업 대행)

□ 협회는 '03.8~'07년말까지 총 22.6억원의 수입을 총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상근 부회장의 전결로 총 19.7억원의 지출을 집행하여 왔음(잉여금 2.9억원은 차기 이월)

<지적사항>

1 총회 승인 없이 예산 편성 및 결산

o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예산총계주의)해야 하며, 예산에 계상되기 위해서는 「정관」 제36조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o '03.6.13 신용카드사장단회의에서 IT 관련사업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결정한 이후, 협회 경영진은 '07년말까지 별도의 총회 승인 없이 IT 관련사업 예산을 운영('03.8~'07년말)함에 따라 「정관」 제36조를 위반함

2 수입금 집행 시 예산전용절차 등 미준수 및 방만한 운영

o 「위임전결규정」 별표에 따르면 협회 예산은 회계간 전용 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함

o '03.8~'07년말까지 IT 관련사업 예산 수입 22.6억 중 19.7억원을 부회장 전결로 집행하였으며, 그 중 8.5억원*을 일반회계 경비로 집행함에 있어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전용함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함

<전용금액의 사용 내역>

인건비	업무추진비	고문료	사무실이전비	여비교통비	기타	총계
4.8억	1.9억	1.0억	0.4억	0.2억	0.2억	8.5억

3 금융위에 예·결산서 미보고

o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 제8조에 의하여 협회는 모든 사업의 예·결산서를 주무관청인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o 협회는 '04년부터 '07.12월까지 금융위에 IT 관련사업 관련 예·결산 보고를 누락하여 동 규칙 제8조를 위반함

<조치요구사항>

o 향후 협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으시고

o 전용시 이사회 승인 등 전용절차를 준수하시고

o 모든 사업의 예·결산서를 금융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나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 부적정

1 임원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대내·외업무 추진을 위한 판공비 및 기밀비'로서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업무추진비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통상적으로 업무용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함

<지적사항>

□ 이사회('03.12.11)에서 임원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기 전까지 임원은 주로 업무용 신용카드(기명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옴

o 이사회 의결 이후, '04년부터 매월 상근부회장에 200만원, 상무이사에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

<조치요구 사항>

o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2 업무추진비 예산명세 및 산출근거 미비

□ 「예산회계규정」 제9조에 따르면 예산편성시 팀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명세서(산출근거 명시)를 작성해야 함

<지적사항>

o 업무추진비의 팀별 세부내역(간담회, 대국회업무 등) 및 산출근거가 없이 대외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만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음

<조치요구 사항>

o 업무추진비의 자의적 편성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시 부서별로 건별 세부명세를 작성하시고 세부건별 산출근거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3 예산 집행 후 사후 전용

□ 「예산회계규정」 제13조는 예산집행시 팀별 사업계획에 따라 연간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지적사항>

o '06년~'07년 회의비, 홍보비, 여비교통비 등 일부 비목에 대해 편성된 예산을 초과집행하고 부족 금액을 3차례에 걸쳐 사후에 전용

<조치요구 사항>

o 분기나 월별 결산을 통해 향후 예산 집행 후 사후 전용의 재발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4 여비차감 지급규정 미이행

□ 협회 특성상 해외출장시 회원사 및 타기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이 경우 여비를 전액지급하는 것은 중복된 예산 집행임

o 이에 따라 여비의 과다지급을 막기 위해 「여비지급규정」 제7조는 식비 등 국외출장시 타 기관이 숙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시 체재비의 30%를 차감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

<지적사항>

o 現 부회장의 베이징올림픽 초청행사 참가 출장('08.8.7~11)시, 타 기관(OOOOOOO OOOOOOO)이 숙식 등을 포함한 초청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외출장의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함

o 따라서, 체재비의 30%인 $750($150×5일)를 차감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차감 없이 체재비 전액인 $2,500($500×5일)을 지급하여 「여비지급규정」 제7조 위반

<조치요구 사항>

o 여비차감지급 규정을 준수하시어 여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다 규정 미흡 및 인사운영 업무 부적정

1 근거규정 없이 고문, 수석전문위원 임명

□ 임명, 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 자의적인 인사운영과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에 따라야 함

<지적사항>

□ 협회의 「직제규정」 제3조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상무이사, 직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5조는 직원에는 사무직원(부장, 팀장, 선임조사역, 조사역)과 별정직원(주임, 연구위원, 연구원)이 있음을 규정

o 고문, 수석전문위원은 인사관련규정에 채용근거가 없으나, 이사회승인, 신용카드사장단회의 결의 등을 통해 임명

<조치요구 사항>

o 향후 자의적인 인사 운영 및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고문, 수석전문위원 등 채용 및 인사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2 지급근거 없이 고문에게 업무추진비, 자녀학자금 지급

□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는 정관, 예산회계규정, 「신용카드관리요령」(업무추진비), 「복리후생제도규정」(복리후생비) 등 근거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지적사항>

[1] 지급근거 없이 고문에게 법인카드 제공

□ ○○○ 前 고문은 부회장 재임시절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퇴임 후 고문에 임명('07.4)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

[2] 지급근거 없이 고문에게 자녀학비보조금 지급

□ 협회는 07.9 ○○○ 前 고문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상무이사 전결로 자녀학비보조금 지급

□ 「복리후생제도규정」은 지급대상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타 규정의 해석을 통해 지급대상자에 고문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여타 협회(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고문에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조치요구 사항>

o 고문 등에 대해 근거규정·임명계약조건 등 지급근거가 없는 예산집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o 「복리후생제도규정」를 개정하여 지급대상을 명문화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3 징계절차 위배

□ 협회는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에서 징계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를 행할 것을 규정함

<지적사항>

□ 협회는 고문에 대한 업무카드 제공을 이유로 ○○○ 前 경영지원팀장에 대해 '주의'조치('08.12.10)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조치요구 사항>

o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징계 실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통보)

라 규정 부적정

□ 「여비지급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국외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체재비, 준비금 및 기타여비(통신비, 접대비)로 구성되며, 교통비와 숙박비, 기타여비는 실비로 지급

□ 「여비지급규정」 별표2는 체재비와 준비금을 직위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해서는 체재비(일별 $500), 준비금($1200)을 지급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 체재비와 준비금 용처를 고려시 「여비지급규정」 별표2의 임원에 대한 체재비와 준비금 책정금액은 과다함

o (체재비) 체재비의 용처가 단체식사 소요비용을 제외한 개인식사 소요비용임을 감안하면 일별 $500은 과다

o (준비금) 여권 및 입국사증 등 출국수속비(여비지급규정 제16조)까지 별도로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면 준비금의 용처가 별로 없음

<조치요구 사항>

o 「여비지급규정」을 개정하시어 임원의 체재비, 준비금 금액을 여타 협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마 카드관련 중요정보 관리·통제 업무 부적정

1 중요정보 유출 관련사항 점검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1항 13호에 따르면 개인용 컴퓨터를 공유하지 아니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 책임자의 승인 요)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1항 3호에 따르면 해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화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운용하여야 함

<지적사항>

□ 일부 사용자PC에서 공유폴더에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파일이 실행되는 등 정보 노출이 있음

□ DB 저장 데이터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프로그램 등을 운용하지 않고 있음

<조치요구 사항>

o 향후 개인용 컴퓨터를 공유치 않도록 하며, 필요시 정보 공유폴더에 대해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스워드를 설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o DB 저장시 중요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적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2 정보보호 관리대책 미비

□ 휴대용저장매체에 대한 통제기준이 없어서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제받지 않고 사용 가능

□ 외주용역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 필요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외주용역보안관리 대책이 미비함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접속하는 경우 해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되어 있음에도 무선 LAN사용에 대한 대책 미비

<지적사항>

□ 휴대용 저장매체관리, 외주용역관리, 무선LAN사용 등 내부 사용자 통제 강화를 위한 적절한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조치요구 사항>

o 내부사용자 통제 강화를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관리, 외주용역관리, 무선LAN사용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3.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통보사항은 즉시조치

나. 권고사항은 2개월 이내에 개선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기 종합감사
2010.11.15~11.26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1. 1.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Ⅰ. 감사실시 개요

Ⅱ. 전국은행연합회 현황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신용정보집중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예산·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임직원 복리에 관한 사항

라. 임직원 임용·복무에 관한 사항

마. 문서보안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I. 감사실시 개요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舊재경부는 '07년 3월 은행연합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감독·검사등)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금감원에 위탁 → 2년 주기로 정기검사)

□ 감사기간 : 2010. 11. 15(월) ~ 11. 26(금)(10일간)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예산·회계, 임직원 복지, 조직·인력,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5명(서민금융팀 및 금감원 각 1명 포함)

□ 감사중점

○ 고유사업* 운영의 적정성

* 금융기관간 업무협의, 신용정보 집중업무 등

○ 의사결정기구(총회 등) 구성·운영의 적정성

○ 예산편성·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 사내복지기금 및 복리후생 운영의 적정성

○ 정관등 제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II. 은행연합회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 '28.11. 1.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 설립
○ '75. 4. 5. 사단법인 서울은행협회로 개편
○ '84. 5. 9.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

□ 소재지 : 서울 중구 명동 3길 9(명동 1가 4-1)

□ 조직 및 인원 : 8부 2실, 130명(임원 6명)

* 회장 : 신동규(59세) / 서울대(경제), 한국수출입은행장('03 ~ '06)
감사 : 전병렬(55세) / 고려대(경영대학원), FIU 제도운영과장('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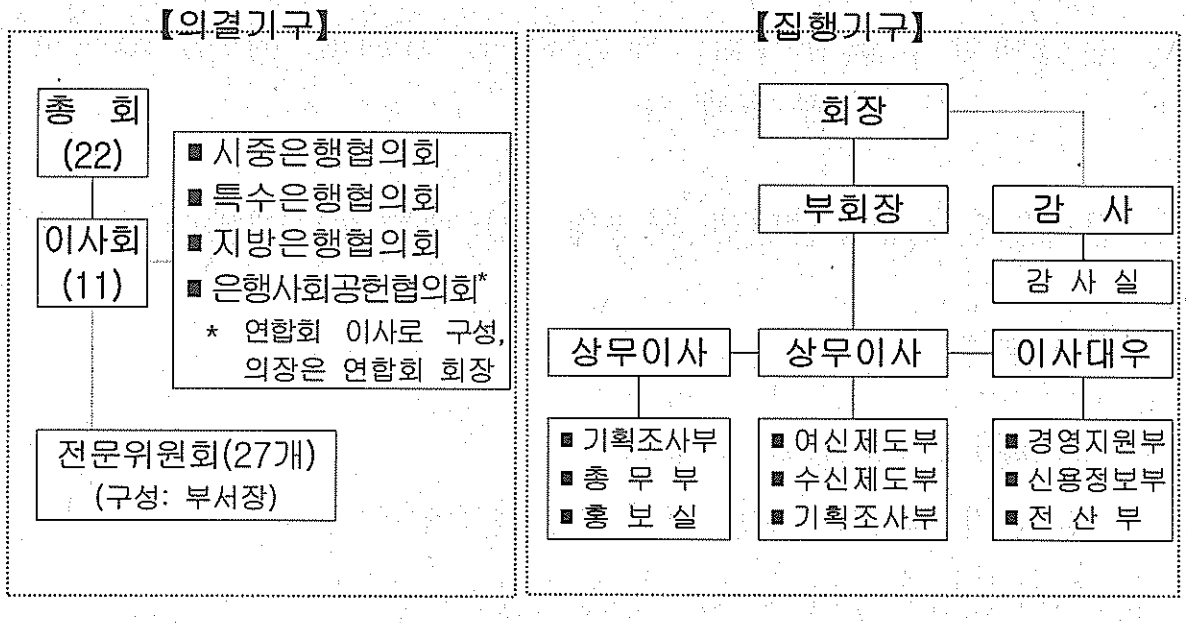

□ 주요업무

○ 금융기관간 업무협의, 정보교환
○ 금융 및 은행경영에 관한 조사연구
○ 신용정보 관리 및 이에 대한 조사연구
○ 금융기관 직원 등에 대한 연수 등

2. 예산 및 재산현황

□ 연도별 수입·지출내역

(고유목적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6월말
수입(a)	237.9	226.9	178.7
사원분담금	217.4	209.0	164.2
전기잉여금	5.7	6.0	9.3
기 타	14.8	11.9	5.2
지출(b)	209.2	205.8	109.6
인건비	101.9	96.5	51.7
업무추진비, 회의비	9.4	7.1	3.9
기타(전산비 등)	97.9	102.2	54.9
차이(c=a-b)	28.8	21.1	69.1

* '10년 예산 : 228.4억원(인건비 100.2억원)

(수익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매출액	18.2	18.5	20.1	21.3
•영업이익	-4.4	-4.3	-3.2	0.8
•당기순이익	- 0.5	0.3	2.1	3.3

* 수익사업 매출의 대부분은 건물임대 매출임

□ 순재산 현황

(단위: 백만원, '09.12말 현재)

구 분	일반사업	신용정보사업	소 계
•출 자 금*	3	-	3
•가 입 금*	3,570	-	3,570
•기금(건물)	10,134	-	10,134
•적 립 금	2,943	8,549	11,492
•기 타	2,618	1,338	3,956
합 계	19,268	9,887	29,155

* 출자금은 설립초기 8개기관이, 가입금은 이후 31개 기관이 납입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 상호협조, 금융문제 조사연구 및 신용정보집중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및 금융리스크에 대응하여 금융기관 간 정보공유, 금융제도에 대한 대정부 건의 및 국내외 금융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함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써의 업무* 등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 '09년도말 현재 127.6 백만건의 신용정보 집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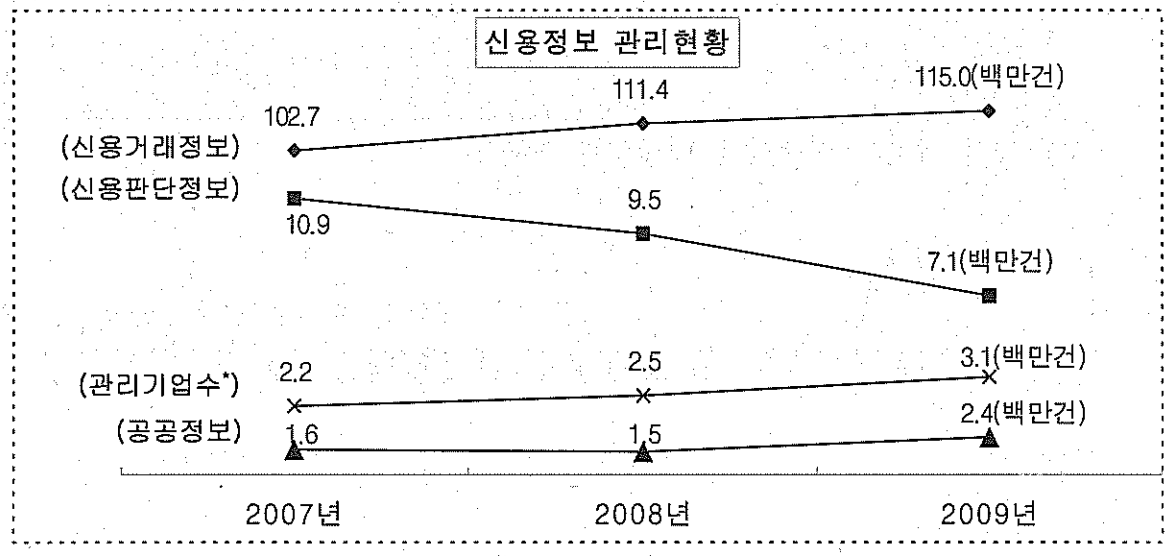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수임

□ 다만, **신용정보협의회 구성, 임직원 복리 및 자금관리** 등의 부분에 있어 **일부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신용정보집중업무 관련

① 신용정보협의회 구성·운영 부적정

○ 경비분담율이 33%를 초과하는 신용조사회사의 경우 대표회사 1사만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2조제2항)종합신용정보지부중기관의 장은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규모, 경비분담비율, 업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에서 신용정보협의회를 구성

○ 법령·규약 등에 근거가 없는 서면의결이 대부분*으로 경비분담 등 업권별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까지 서면의결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과정이 생략됨

* '07년부터 '10년까지 총 23건중 22건이 서면의결

⇒ 신용정보협의회 규약에 협의회 구성기준, 위원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개선)

② 신용정보 제공시 대상자 성명과 주민번호 일치 여부 확인절차 미비

○ 공공기관(세무서) 등의 조회요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에 확인절차가 없어 대상자가 아닌 타인의 신용정보가 제공될 소지

⇒ 신용정보 제공시 대상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업무개선 (개선)

③ 개인대출정보 집중·관리 개선 필요

○ 개인대출정보를 집중·제공함에 있어 개인별 총잔액 및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만이 관리

-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신용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담보여부 등 채무의 세부적인 조건을 감안할 필요

⇒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신용도를 정확히 보다 판단할 수 있도록 개인대출정보 집중·제공 방식 개선 (개선)

나. 예산·회계 및 자금관리 관련

① 기본자산 관리·운용 관련 규정 미비

○ 기본자산을 포함하여 연간 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매년 부회장 전결의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관리·운용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회계연도말 기준 예치금 현황(억원)>

구 분	'06말	'07말	'08말	'09말	'10(11.17 현재)
투자자금 (정기예금등)	362.5	362.5	386.0	374.0	399.0*
수시입출자금	37.1	39.1	35.1	31.6	37.2
합 계	399.6	401.6	421.1	405.6	436.2

⇒ 연합회 존립의 근간인 기본재산(출자금, 가입금, 적립금등)의 경우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방향 등을 규정화**하여 안정적이고도 투명하게 관리·운용 (개선)

② 물품(비품·소모품) 구분 모호 및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 '고정자산 및 물품관리규정' 및 '예산·회계규정' 상의 **물품·비품·소모품 구분이 서로 다르며** 이의 **재무제표(B/S) 반영기준 또한 이들 규정과 다르게 운용함**

* '물품관리규정' 제3조는 취득가액 20만원 미만을 소모품으로 분류하나, '예산·회계규정'은 100만원 미만을 '소모품비'로 규정

⇒ 물품(비품·소모품)에 대한 구분을 **일관성 있게 명확히 규정**하고 동 규정에 부합하게 회계처리 (개선)

다. 임직원 복지 관련

① 사내복지기금 출연 및 개인연금 지원 과다

○ 2010년 10월 현재 **기금잔액은 83억원**(1인당 평균 6,433만원) 수준으로 **공공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음**

* 기금 누적액이 **1인당 평균 2,000만원** 초과시 추가 출연 제한

- 이처럼 기금잔액이 상당함에도 '07~ '10.10말 기간중 매년 기금 출연액의 59.8 ~ 68.6% 정도가 적립되도록 과다 출연

○ 또한 개인연금신탁 가입직원에 대하여 매월 통상임금의 15%를 지원하는 등 **회원사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연금 지원**

* **10개 사원기관은 폐지**, 지원중인 기관중 **연합회보다 많은 경우는 2개사**

⇒ 사원기관에 비하여 과도한 개인연금 지원 및 사내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 (개선)

② 학자금 지원 및 의료보조비 지원기준 부적정

○ 사망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순직 등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지원토록 하고 있고, 배우자가 직장에서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이중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함

○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연 5백만원내에서 의료비를 보조하면서 직장 단체보험 수혜직원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규정 없음

⇒ ○사망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시 순직 등 사망원인을 구분하여 엄격히 지원토록 하고, 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시 중복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선 (개선)

라. 임직원 임용 및 복무

□ 이사대우제도운영규정 등 부적정

○ 이사대우제도운영규정(제3조)은 이사대우 임면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결격자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복무규정(제23조)은 '표창과 징계의 양정은 회장이 행한다.'고 규정할 뿐 표창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 흠결이 치유되지 아니한 자가 이사대우로 임명되거나 표창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 개선 (주의 및 개선)

마. 문서보안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중요문서 보안관리규정 미흡

○ 개인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용정보 조회회답서'를 생산·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보안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 '신용정보 조회회답서(책자)' 제작시 인쇄업무 감독확인서 징구 등 체계적인 외부유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함

⇒ **보안이 필요한 문서의 경우 생산·관리·파기에 이르기까지 보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수립·시행 (권고)**

3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용

지적분야	지 적 내 용	조치수준
신용정보 집중업무	■ 신용정보협의회 구성·운영 부적정	(개선)
	■ 신용정보 제공시 대상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미비	(개선)
	■ 개인대출정보 집중방식 개선 필요	(개선)
예산·회계 및 자금관리	■ 기본재산 관리·운용 관련 규정 미비	(개선)
	■ 물품(비품·소모품) 구분 및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개선)
	■ 예산불용 및 임의적립금 적립 과다	(현지조치)
임직원 복지	■ 사내복지기금 출연 및 개인연금 지원 과다	(개선)
	■ 복지규정(학자금 지원 및 의료비보조) 부적정	(개선)
	■ 근로자의 날 보로금 및 자기계발비 지급 관련	(현지조치)
기 타	■ 이사대우운영규정 등 부적정	(개선)
	■ 중요문서 보안관리 관련 규정 미흡	(권고)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과다	(현지조치)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권고)통보 : 2개월 이내에 개선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기 종합감사
2011.11.21~11.29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2. 1.

금융위원회

- 목 차 -

Ⅰ. 감사실시 개요

Ⅱ. 한국공인회계사회 현황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고유사업 운영 관련

나.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다.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3. 분야별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Ⅰ. 감사실시 개요

〈 목 적〉

◇ 우리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제고

□ 법적근거

○ 공인회계사법 제47조(감독)

* 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
* '01, '04, '07년 각각 舊재정경제부로부터 감사를 받음

□ 감사기간(7일간) : **2011. 11. 21(월) ~ 11. 29(화)**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예산·회계,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4명(공정시장과 1명, 외부전문가* 1명 포함)

* 회계사(회계기준원 소속)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회원의 지도·감독, 회계감사 등 직무기준 제정, 윤리기준의 제·개정 및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회원에 대한 교육방침 수립 및 이행 점검 등

○ 예산집행, 회계처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조직관리 및 임직원 보수·복리후생의 적정성 등

II. 한국공인회계사회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 ○ '45.10. 조선계리사회 설립
- ○ '54.12. 계리사법에 의한 한국계리사회 설립
- ○ '66. 9. 한국공인회계사로 재발족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 조직 및 인원 : 6팀2실1위원회, 80명(정원)

*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19명) 제외(기재부 위탁사업 수행)

* 회장: 권오형(47년생) / 경희대(경영),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위원(現), 세발심위원(現)
감사: 최종만(57년생) / 연세대(경영),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現)
감사: 최문원(58년생) / 성균관대(경제학),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조직도: 현원 7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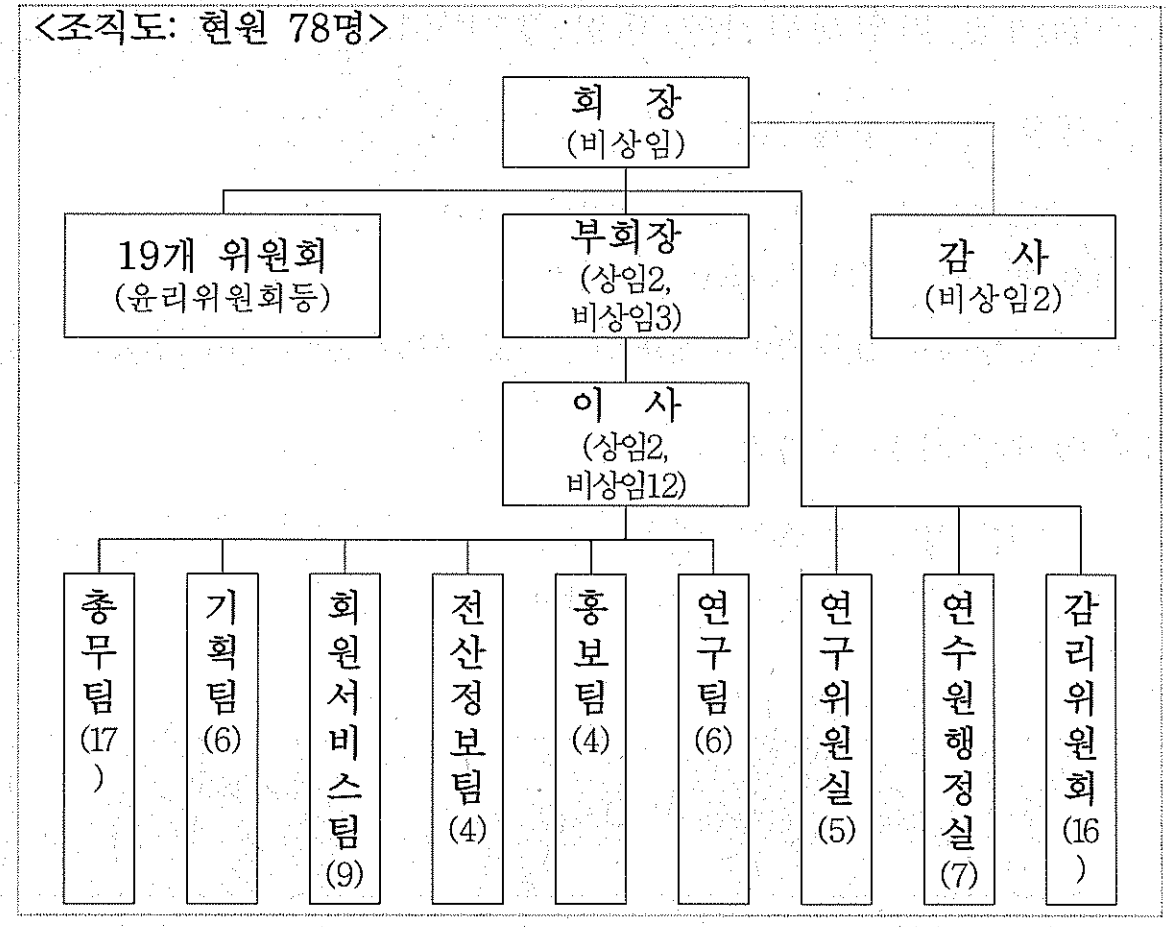

2. 2010FY 주요업무 추진실적

□ 제도개선

○금융위의 '회계감독제도 선진화' 관련 개선방안 마련·추진
○'온실가스검증기관' 지정요건에 회계법인 포함
○금융거래조회 및 회신절차 간편화 방안 추진 등

□ 업무영역 개선

○외부감사대상기준에 '매출액' 신설 추진
○비외감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증업무 확대 추진
○새마을금고 의무외부감사제 도입 추진 등

□ 회원권익 보호

○감사인 위협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신설 추진 등

□ 공적기능 수행 등

○기획재정부 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IFRS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와 '회계투명성 제고사업' 공동 추진(MOU 체결)

□ 회계감사품질관리 감리

○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및 품질관리 위탁감리 실시
○ 「감리결과 직무연수의무자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 등

※ 등록회원 현황('11.3.31 현재, 명)

개업회원			휴업회원	합 계
감사인소속	개업일반	소 계		
9,135	373	9,508	4,562	14,070

* 수습공인회계사 : 1,350명(회계법인 1,055명, 금감원 19명 등)

3. 2010FY 수입·지출 및 재무상태

□ 수입·지출('10.4.1 ~ '11.3.31)

구 분(억원)		고유사업	수익사업	기금운용	합 계
수입(A)	회원수입*	109.9	-	76.5	18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8.3	-	18.6	26.9
	연수수입	-	11.1	-	11.1
	간행물 판매	-	15.2	-	15.2
	수입이자	-	17.5	16.2	33.7
	기 타	1.1	20.8	2.4	24.3
	수입총계	**119.3**	**64.6**	**113.7**	**297.6**
지출(B)	사업비	42.4	28.0	86.6	156.9
	· 연구비(개발비)	17.8	0.3	-	18.1
	· 회의비	6.5	0.3	-	6.8
	· 자료발간비	4.5	13.8	-	18.2
	· 국가회계결산지원비	-	5.9	-	5.9
	· 손해배상공동기금반환금	-	-	58.7	58.7
	· 기 타	13.6	7.7	27.9	49.2
	일반관리비	64.0	36.5	2.7	103.2
	· 급여	39.0	12.0	-	51.0
	· 유지관리비	7.2	2.0	-	9.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	17.7	-	17.7
	· 기 타	17.8	4.8	(세금공과)2.7	25.3
	지출총계	**106.4**	**64.5**	**89.3**	**260.1**
잉여(A-B)		**12.9**	**0.1**	**24.5**	**37.5**

□ 재무상태('11.3.31 현재)

- 자 산 : 1,035억원
  - 고유사업 : 124억원
  - 수익사업 : 38억원
  - 기금사업 : 874억원*
  - * 회관(154), 공제회부조(23), 공제회 복지(333), 손해배상공동(364)

- 부 채 : 41억원
  - 고유사업 : 7억원
  - 수익사업 : 33억원
  - 기금사업 : 1억원

- 자 본 : 994억원
  - 기 금 : 851억원
  - 수지차액 : 143억원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의 사명의식·품위·자질향상, 직무의 질적 개선·확충, 회원의 지도·감독, 회원복지 및 상호간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속적인 회원 증가로 '11.10.31 현재 14,492명의 회원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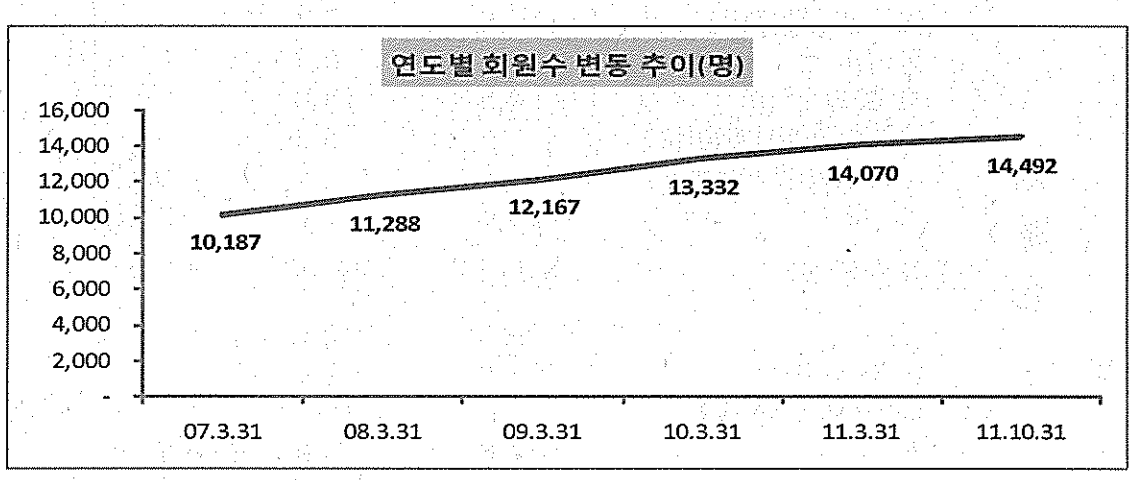

◦제도개선, 업무영역 개선, 공적기능 수행 및 회원권익 보호 등 정관상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 「외감법」에 의한 위탁감리, 직무연수의무자에 대한 연수 실시, 기재부 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운영, IFRS 순회설명회 등 공적기능 및 감사인 위협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신설 추진 등 회원권익 보호업무 등 고유업무를 원활히 수행

□ 다만, 윤리기준위원회 등 위원의 위촉,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감독·평가, 인사위원회 운영, 예산집행 관행 등에 있어 일부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고유사업 운영 관련

① 연수프로그램 감독·평가 미흡

○ 「연수규정시행세칙」 제4조제5항은 직원을 파견하여 교육위원회에 등록된 연수프로그램의 실시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0년 이후 현장 실사 미실시**

○ 「연수규정」 제12조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자는 연수 종료 후 강사와 수강자에게 평가를 받아 이를 교육위에 제출, 교육위는 프로그램의 연수목적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미실시

⇒ 연수프로그램의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현장 실사 및 프로그램 종료 후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 (주의)

② 윤리기준위 및 세무조정감리위 등 부적격자 위촉사례 발생

○ '07년 연수시간 미이수로 인해 윤리위에 회부되어 회원권리 정지중인 자를 윤리기준위 위원으로 위촉

○ 세무조정감리위는 '08년 위촉위원 중 회원권리가 정지된 자를 위원으로 계속 존치하였으며, '10년에는 증선위에서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계속 위원으로 활동

* 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7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위원회 위원 위촉시 또는 위촉후 대상자의 징계이력 등을 철저히 점검하지 아니한 관련자 인사자료 통보 (통보 : 인사자료)

③ 윤조위의 징계요구 의결건 윤리위 회부 지연 (요구기한 없음)

○ 윤조위에서 윤리위 징계요구 의결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면 회장은 이를 윤리위에 회부하여야 하나 회부기한 규정 없음

* (사례) 장시간(101시간 이상) 연수미이수자에 대해 윤리위 징계요구를 하였음에도 최장 약 10개월 경과 후 윤리위에 회부

○ 단기간 미이수자가 윤조위 의결로 바로 1년 이하 등의 회원권리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형평성에 맞지 아니함

⇒ 회장의 윤리위 징계의결 요구기한을 정함으로써 윤조위 조치로 종결되는 조치대상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 (개선)

④ 기업진단감리업무 수행 관련

○ 「기업진단 감리업무규정」에는 상근감리위원의 자격, 임기만을 규정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제한 규정이 없으며, 담당인원 또한 상근감리위원 1명으로, 유사시(업무제한 등) 대체인력 없음

⇒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유사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개선)

나.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 참석 인사위원 서명 미필 및 심의자료 미비

○ '10 ~ '11년도중 개최된 3번*의 인사위원회시 승진서열명부 등 심의자료가 없고, 인사위원 서명없이 회장의 '확인서명'만으로 의결

* '10년도 제5차 인사위원회('10.11.29, 승진 5명), '11년도 인사위원회('11.7.4, 특별승진 1명), '11년도 제2차 인사위원회('11.10.19, 승진 2명)

⇒ 승진심사에 필요한 심의자료(서열명부 등) 구비 및 참석인사위원 전원의 서명에 의한 심의의결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할 필요 (주의)

다.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① 예산집행시 사전품의 미비 및 집행증빙 부적정

○ (업무추진비) '08 ~ '10 회계연도에 연간 1.5억여원씩 현금으로 집행하면서도 품의서 및 사용영수증 등을 남기지 않음

* '04년 및 '07년 舊재정경제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개선되지 않음

○ (회의비) 비상근 임원들에게 회의 참석시 회당 15만원씩의 거마비*(회의수당)를 지급하였으나 회의일시·장소·내용 등이 반영된 품의 없음

* '08~'10년간 지출현황: 매년 최저 69,810천원 ~ 최고 81,110천원 집행

○ (접대비) 연간 8,500여만원(680여건)을 집행하면서 사용목적·집행대상 등이 반영된 사전품의 없이 집행하고 사용영수증만 첨부

○ (업무연구개발비) 업무연구개발비('10예산 6.7억원) 예산중 '제도개선업무개발비·신규업무개발비('10예산 3.5억원)'의 대부분을 접대성 경비로 집행하면서 사용목적·대상 등이 반영된 품의서 없이 집행

⇒ 예산집행은 법인카드·계좌이체 등 외부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 집행시에는 목적·대상·일시·장소 등에 대한 결재권자의 품의에 의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의), 예산집행 증빙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관련자(회계담당자 및 책임자) 인사자료 통보 (통보: 인사자료)

② 업무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 '08~'10 회계연도 기간중 **업무연구개발비로 매년 5~6.7억원을 집행**하여 왔으며, '10년 예산은 8.3억원으로 그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

* 동 예산은 '법령등 제도개선 업무개발비', '신규업무개발비', '국제관련 업무연구개발비', '유관기관 파견자 인건비', '간담회 및 홍보비'로 구성되며, 이 중 제도개선 및 신규업무개발비는 매년 3~3.5억원을 차지

○ 한편, 제도개선 및 신규업무개발비 집행내역을 보면 선물·상품권 구입, 골프장 이용, 간담회경비 등 **대부분이 접대성(섭외성)으로 집행**

⇒ 업무연구개발비는 그 명목에 맞게 업무연구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여 지출토록 하고 접대성(섭외성) 경비는 접대비 예산에서 지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주의)

③ 비상임 임원에 대한 차량유류비 지원 과다

○ 비상임 임원(회장, 부회장3, 감사2, 이사12)에게 회의참석시마다 15만원의 회의참석수당(거마비)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월 정액(회장 100, 부회장·감사 60, 이사 55만원)의 유류비를 지급**

* 총 지급액은 연간 1.3억여원으로 전체 여비교통비 집행액의 90%이상을 차지

⇒ 회의참석시마다 회의수당(거마비)을 지급받는 비상근 임원에게 별도의 차량유류비를 월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의 소지가 있고 그 내용 또한 과다함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개선)

3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용

지적분야	지적내용	조치수준
고유사업 운영	■ 연수프로그램 감독·평가 미흡	주의
	■ 윤리기준위 및 세무조정감리위 등 부적격자 위촉사례	통보(인사자료) (○○○ 외 4명)
	■ 윤조위의 징계요구 의결건 윤리위 회부 지연	개선
	■ 기업진단감리업무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제한 미비 등	개선
	■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현지조치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참석위원 서명 미필 및 심의자료 미비	주의
예산집행 / 회계처리	■ 예산집행시 사전품의 미비 및 집행증빙 부적정	주의 / 통보(인사자료) (○○○ 외 3명)
	■ 업무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주의
	■ 비상임 임원에 대한 차량유류비 지원 과다	개선
계 약 / 기 타	■ 경쟁입찰 공고방법 부적정 및 재입찰 대상 수의계약	현지조치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 통보(인사자료)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6.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현황

☐ 별첨 엑셀파일 송부

금융위원회 비영리법인 등록현황(12.6월 기준)

순번	단 체 명 칭	유형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 된 사 업	연 락 처	비고
1	금융결제원	사단법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2	송창현	65.6.2	건전한 금융거래 발전,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제고 및 금융산업발전도모	531-1141	금융정책과
2	한국FP협회	사단법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17층	윤병철	00.12.18	FP제도 도입 및 관리강화를 통해 금융산업경쟁력 제고	3276-7631	금융정책과
3	한국CFO협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1가 5-1번지 보람빌딩 7층	김상훈	02.4.3	재무관련 전문인간 정보교류 증진, 재무분야 전문인 양성 등을 통해 기업경영발전에 기여	755-8671	금융정책과
4	한국금융법학회	사단법인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연구실 509호	정찬형	03.8.25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속에 금융관계법령 개선방안 등을 연구	3290-1682	금융정책과
5	한국FPSB	사단법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538번지 성지빌딩 17층	윤병철	04.11.2	국제수준의 FP전문인력 양성, 금융문화 발전, 금융서비스 질적 향상	3276-7600	금융정책과
6	바른금융재정포럼	사단법인	서울 마포구 여현동 437-3	윤정현	06.3.17	금융 및 재정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대정부 정책제안	332-8006	금융정책과
7	한국자금결제학회	사단법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147 단국대경영대 서관519호	박승호	07.9.13	지금결제분야 학술, 공동연구 교류 등	031-[illegible]	금융정책과
8	제주금융포럼	사단법인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6번지	고희범	09.8.22	제주도의 금융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연구, 제시	010-9092-5851	금융정책과
9	한미재무학회	사단법인	서울시 동대문 회기로 87	최승목	09.10.10	국내 학자 및 실무전문가들과 국외 KAFA회원 간 연구 및 친목도모	02-958-3517	금융정책과
10	탐라금융포럼	사단법인	제주시 이도2동 1026-6	윤태현	09.2.12	제주시의 금융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금융전문인력양성	070-7931-8730	금융정책과
11	한국금융연구센터	사단법인	서울 종로구 사직동 9번지	최흥식	09.3.12	경제분야 연구 대상으로 독립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	02-732-1791	금융정책과
12	한국산업은행공제회	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업무지원부	김영기	44.5월	산업경제의 향상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조사 회원공제 및 후생도모	787-6323	산업금융과
13	아이비케이청복나눔재단	재단법인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 기업은행 18F	조준희	6.4월	국민경제 교육사업 지원과 중소기업 가족의 치료비 및 장학금 지급	3789-3984	산업금융과
14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 1가 4-1	박병원	12.6월	청년창업 기반구축 및 보증, 투자업무 수행	3705-5090	산업금융과
15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번지 (증권선물거래소 본관4층 410호)	민상기	2003.4.14	청소년에 대한 신용관리 및 금융관련 교육업무	784-3237	금융소비자과
16	대한금융공학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증권거래소 별관33층	이광상	06.4.11	금융실무자 상호간의이해증진도모및국내파생금융상품이바지	016-331-4273	국제협력팀
17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사단법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6-65	김성경	07.5.9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정보교류, 여성금융인의 건전한 발전도모	778-0809	국제협력팀
18	국제금융포럼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산학협력관 605호	이영호	10.8.11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국제화 및 국제금융중심지 발전에 관한 현안 문제에 대한 학제간 연구, 정책제언 및 산학협력	051-514-6503	국제협력팀
19	전국은행연합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1가 4-1	신동규	26.11.1	금융산업발전도모,건전한 신용거래질서확립 금융인의 복리후생증진 등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	3705-5290	은행과
20	우리은행동우회	재단법인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	이덕훈	57.8.1	회원수양 및 훈련, 회원공제 및 후생도모	2002-4634	은행과
21	한국금융연수원	사단법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1	김윤환	76.6.5	금융기관 임직원 자질향상 및 업무능력 배양을 통해 금융업무 발전에 기여	3700-1545	은행과
22	한국금융학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1가 4-1 은행회관 6층	조경욱	00.03.29	회원간 연구교류촉진,학문 및 금융산업발전기여	3705-6325	은행과
23	종합금융협회	사단법인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문현성	90.12.12	종합금융업계 건전육성방안 및 종합금융업관련 조사,연구,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720-0570	은행과
24	한국금융연구원	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 1가	김태준	91.4.9	금융전반에 관한 연구사업추진, 금융산업발전 및 금융정책수립에 기여	3705-6300	은행과
25	한국재무학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금융투자협회빌딩 8층	최혁	95.5.17	재무학이론 및 재무관련연구,조사 학보 및 연국서적간행	2003-9641	은행과
26	금융저축정보센터	사단법인	서울 중구 남동 1가 30-1 여성경제미디어센터 10층	김진숙	99.9.11	올바른 저축,투자방법 및 건전한 금융산업발전도모	2000-2765	은행과
27	금융보안연구원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김광식	06.9.1	금융부문 전자적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적합성 테스트	6919-9114	전자금융팀
28	Seoul IB Forum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민상기	07.11.23	IB산업의 육성전략과 방향에 대한 공론 형성 등을 통하여 금융산업발전에 기여	3771-0875	은행과
29	은행법학회	사단법인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성균관대 법과대학 410호	고동원	09.2.4	금융업과 관련된국내외의 규제및 거래법제연구	760-0592	은행과
30	손해보험협회	사단법인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재보험빌딩6층	문재우	46.8.1	보험사업자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보험업의 발전 도모 손해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3702-8500	보험과
31	생명보험협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충무로 3가60-1 극동빌딩 16층	이주형	50.2.20	보험사업자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보험업 발전 도모	2262-6580	보험과
32	한국보험학회	사단법인	서울 성북구 보문동 1가45 보험연수원빌딩 7층	이순재	64.5.2	보험이론 및 실무에 대한 연구,조사 보험학계의 발전도모 및 산학협력	921-5541	보험과
33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소공동 51번지 해운센터빌딩 신관 1101호	김소섭	70.9.7	보험의 보급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함으로서 보험 대리점업의 향상 발전과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3149-7149	보험과
34	한국보험계리사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35-4	박현호	05.5.24	보험수리학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합으로써 보험사업 및 기타 보험수리학에 관련되는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782-7440	보험과
35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단법인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29-15 복조빌딩 3층	김재성	87.12.30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 및 손해사정사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712-9112	보험과
36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사단법인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재보험(주) 10층	이근창	89.11.10	리스크관리이론 및 실무 연.학.공 협동으로 발전도모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2220-0364	보험과

37	보험연수원	사단법인	서울 성북구 보문동 1가 45번지 보험연수원 빌딩	조병진	94.4.13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업무	920-0800	보험과
38	한국보험중개사협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묵정동 21 해남빌딩 신관 524호	박한선	99.7	보험중개사와 보험소비 대중의 권익 보호, 보험관련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교육 등	776-5636	보험과
39	한국보험연구원	사단법인	서울 종로구 장운동 134-2	이팔규	03.5.9	금융 및 사회환경 변화속에 보험부문의 경쟁력강화방안 등을 연구	733-3659	보험과
40	보험개발원	사단법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장영구	69.11.18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보험관련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을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369-4000	보험과
41	한국손해사정사학회	사단법인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3가 23-15 덕조빌딩 303호	양희상	09.7.25	손해사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조사, 학술지 및 각종 서적의 발간, 연구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국내외관련 유관단체의 협력	712-9147	보험과
42	한국계리학회	사단법인	경기도 안산시 사3동 1271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427호	오창수	09.5.25	계리이론, 계리관련 법제 및 산업현황을 연구, 조사하여 금융 및 보험산업의 발전도모	031)400-5542	보험과
43	보험연구원	사단법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증권보험빌딩 8층	김대식	10.11.25	보험제도 및 보험정책에 관한 연구 보험산업의 경쟁촉진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3775-9000	보험과
44	한국금융서비스연구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1004호	김지홍	01.5.29	소매금융상품 처금기관 상호간 업무협조, 소매금융문제 조사, 연구	3399-1011	중소금융과
45	한국신용카드학회	사단법인	서울종로구 홍지동 7번지 성명대학교	이명식	09.10.5	신용카드 관련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연구, 조사	2287-5209	중소금융과
46	신용회복위원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4층	이종휘	03.10.1	개인의 채무조정업무 및 신용관리 관련 상담업무	1600-5500	서민금융과
47	한국금융정보학회	사단법인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 605호	이인호	10.9.28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등 다양한 금융정보의 생산 및 공유 등 학제간 연구를 통해 학문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	02-880-6366	서민금융과
48	한국신용분석사회	사단법인	서울시 중구 명동1가 4-1 은행회관 16층	조의호	88.11.1	신용분석기법향상을 통한 금융산업발전 및 회원간 친목도모	02-3705-5041	서민금융과
49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사단법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2-2 충정빌딩 11층	정의엽	09.12.7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361-6000	서민금융과
50	삼성미소금융재단	사단법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3-3번지	권재영	09.12.7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31-221-9711	서민금융과
51	열지미소금융재단	재단법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5-228번지	조명재	09.12.7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3773-2160	서민금융과
52	우리미소금융재단	사단법인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118-1번지	이순우	09.12.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2002-2000	서민금융과
53	KB미소금융재단	사단법인	대전 중구 은행동 154 4층	민병덕	09.12.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42-254-1025	서민금융과
54	신한 미소금융재단	사단법인	인천 부평구 부평동 376-4	서진원	09.12.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32-2191~ 2520	서민금융과
55	하나미소금융재단	재단법인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김정태	09.12.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2275-0248	서민금융과
56	SK미소금융재단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101-14 극동빌딩 2층	신현철	09.12.1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6332-5500	서민금융과
57	포스코미소금융재단	사단법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56-148	최종태	09.12.1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54-231-7815	서민금융과
58	롯데미소금융재단	사단법인	서울 중구 남창동 51-1 삼선빌딩 8층	박상훈	09.12.1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757-3645	서민금융과
59	IBK미소금융재단	사단법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0-3 중앙빌딩 4층	조준희	09.12.1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31-485-4690	서민금융과
60	미소금융서울서초구지점	사단법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2-1 동아하이빌 지하1층 104호	김영수	09.12.1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522-0085	서민금융과
61	미소금융서울은평구지점	사단법인	서울 은평구 녹번동 87-1 은평구청 제1별관 3층	박영제	09.12.1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352-0021	서민금융과
62	미소금융대구서구지점	사단법인	대구 서구 내당동 871-2	박성동	09.12.1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53-522-0072	서민금융과
63	미소금융광주서구지점	사단법인	광주 서구 양동 96-4	김재열	09.12.1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62-352-1551	서민금융과
64	미소금융대전동구지점	사단법인	대전 동구 중동 28-35	이홍근	09.12.1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42-242-0360	서민금융과
65	미소금융강원춘천지점	사단법인	강원 춘천시 효자1동 662-6	박희점	09.12.1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33-255-0169	서민금융과
66	미소금융충북청주지점	사단법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교동 126-158	박노성	09.12.1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43-225-0043	서민금융과
67	미소금융부산중구지점	사단법인	부산시 중구 부평동2가 2-1 부산은행 4층	정진옥	10.1.12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51-255-0005	서민금융과
68	미소금융제주지점	사단법인	제주시 이도2동 1170-17 하나은행 제주지점 3층	이봉현	10.1.12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64-722-0054	서민금융과
69	미소금융경북안동지점	사단법인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911번지	박명섭	10.4.27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54-855-3022	서민금융과
70	미소금융부산연제구지점	사단법인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351-9 한창타운 103호	이정우	10.4.27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51-710-2251	서민금융과
71	미소금융대구중구지점	사단법인	대구 중구 서문로2가 83번지	김석동	10.4.27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53-252-6409	서민금융과
72	미소금융경기화성지점	사단법인	경기 화성시 진안동 539-4	정동호	10.4.27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31-267-0691	서민금융과
73	미소금융서울관악지점	사단법인	서울 관악구 신림2동 94-225	남상만	10.4.27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884-1040	서민금융과
74	미소금융경남거제지점	사단법인	경남 거제시 고현동 469 하이츠빌라 101호	오경림	10.4.27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55-632-6164	서민금융과
75	미소금융경기성남지점	사단법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3309번지	김영준	10.4.27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61-721-2104	서민금융과
76	미소금융경기구리지점	사단법인	경기 구리시 인창동 127번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경과동 3층 53003호	이영련	10.5.19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31-552-2155	서민금융과
77	미소금융전북전주지점	사단법인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1	진대권	10.5.19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63-285-4031	서민금융과
78	미소금융충남천안지점	사단법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59-10 수입빌딩 3012호	정낙철	10.5.19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41-571-2713	서민금융과
79	미소금융 경북 경주지점	사단법인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110-1	윤주표	10.11.1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54-749-3084	서민금융과
80	미소금융 경기의정부지점	사단법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8-13	조인희	10.11.19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31-837-2194	서민금융과
81	미소금융 전북익산지점	사단법인	전북 익산시 창인동 1가 244의1	이재갑	10.11.20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63-852-4045	서민금융과
82	미소금융 경기광주지점	사단법인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337번지 로얄프라자빌딩 2층 216호	김홍규	10.11.21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31-763-2088	서민금융과
83	미소금융 노원구지점	사단법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69-369번지	김현정	10.11.22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936-1026	서민금융과
84	미소금융 인천서구지점	사단법인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	신덕균	10.11.23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31-573-5915	서민금융과
85	미소금융 서울동작구지점	사단법인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65-47	홍종석	11.1.11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592-1671	서민금융과
86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융투자협회빌딩	김형태	97.9.27	증권산업 및 시장관련 주요제도와 정책연구 증권산업 경쟁계선 및 발전전략연구	3771-0600	자본시장과

87	코스닥협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한국거래소 본관 7층	노학영	00.1.17	코스닥등록법인 건전육성과 투자자보호,코스닥법인관련 지원 및 교육등	369-4500	자본시장과
88	한국증권학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융투자협회빌딩 6층	김영직	79.8.1	회원상호간의 연구활동 및 친목도모를 통해 증권학계발전에 이바지	783-2615	자본시장과
89	한국재무관리학회	사단법인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1호관 320호	정성창	83.3.1	재무관리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 및 회원간 친목도모	062-530-1420	자본시장과
90	한국증권분석사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금융투자협회빌딩 6층	황건호	83.6.23	증권분석기술 향상 및 보급,증권분석사 자질향상 및 권익보호,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	784-1965	자본시장과
91	한국파생상품학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한국금융투자협회빌딩 11층	윤정윤	91.10.4	학술발표 및 연구회개최, 학술지 및 간행물발간,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기관간 교류활성화	910-4578	자본시장과
92	한국파생상품시장연구회	사단법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서문원	98.7.6	상품선물관련분야 조사.연구상장가능 상품선물 발굴등을 통한 선물시장 발전도모	880-4732	자본시장과
93	한국증권법학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한국거래소 본관 211호	송옥순	01.3.19	증권거래법 등 증권관련법 연구발표 및 국제학술교류 회원간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	3774-4477	자본시장과
94	한국CEO포럼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오피스텔 611호	김승유외2명	01.7.19	효율적 기업경영 관행 정착을 위한 전문경영인의 책무와 역할을 정립,건전한 CEO문화형성	780-0563	자본시장과
95	한국금융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1가 4-1 은행회관 7층	반기로	01.8.28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 연구	3705-5045	자본시장과
96	한국M&A협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진흥공단 4층	전홍렬	02.4.15	회원사 상호간 M&A에 관한 정보교류 활성화, M&A 전문가 양성 및 M&A관련 정책개발, 건의	769-6687	자본시장과
97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신관 9층	경병호	02.6.12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장에 의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촉진	3775-3339	자본시장과
98	기업가치평가협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210-1	최용근	02.11.6	글로벌시대의 새로운 기업환경에 적합한 기업가치방안 정립 및 회원간 친목도모	775-6432	자본시장과
99	한국기업법학회	사단법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번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종준	03.3.24	기업법제에 대한 조사.연구,출판 및 교육, 기업의 건전육성 및 발전과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043-261-2627	자본시장과
100	한국금융공학회	사단법인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50 부산대학교 상학관 326호	이기완	04.4.7	금융제도의 체계적 연구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051-510-3599	자본시장과
101	CFA한국협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소공동 81 소공빌딩 701	김성수	06.11.20	투자관련 컨퍼런스	782-4704	자본시장과
102	파생시장협의회	사단법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스터즈타워 2010호	박희준	07.2.7	파생시장 발전관련, 관계당국에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기업,언론인 등에 대한 파생시장 발전 필요성 인식을 위한 홍보활동	730-6987	자본시장과
103	한국소액주주연구회	사단법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607호	권성만	07.11.9	소액주주운동분야의 연구 및 기업가치향상,지배구조개선	553-1477	자본시장과
104	한국예프피에스비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2	윤병철	08.7.11	개인재무와 관련된 연구, 조사, 학술지, 회보 및 연구 업적물의 간행, 연구 및 사례 발표, 교육사업 등	786-3366	자본시장과
105	글로벌파이넌스포럼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한국거래소 본관 602호	임주재	08.12.12	금융·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및 선진화 방안 논의 및 발전방향 제시	786-7667	자본시장과
106	KSD나눔재단	재단법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2동 1328	김경동	09.4.9	금융교육, 장학사업, 해외 저개발국 지원사업	031-900-7000	자본시장과
107	한국IR협의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한국거래소 본관 2층	이창호	09.3.30	IR에 대한 인식 제고 및 IR의 확산에 관한 사업 등	6922-5000	자본시장과
108	프리보드기업협회	사단법인	서울시 양천구 목동 행복한세상백화점 1304호	송승한	10.3.25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및 관련 사업	2642-7440	자본시장과
109	KRX국민행복재단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김봉수	11.2.28	금융발전과 인재육성, 사회복지 및 해외협력 등	3774-6964	자본시장과
110	자산운용연구원	사단법인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30-130	정성원	03.06.04	금융, 회계, 세제등 각종제도 변화에 맞는 자산관리기법 연구	010-9932-[illegible]	자산운용과
111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동여의도빌딩	김병주	06.10.30	투자자교육과 투자자보호를위한 조사.연구	761-5100	자산운용과
112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단법인	서울 종로구 내수동 71 경희궁의 아침 2단지 오피스텔 1413호	김영호	07.7.30	사회책임투자의 교육 및 홍보, 정책연구	738-1142	자산운용과
113	한국회계학회	사단법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한국공인회계사회 4층	김지홍	73.10.22	회계학연구 및 교육발전과 회계학도의 건전한 연구활동 증진, 회원의 이익과 친목 도모	363-1648	공정시장과
114	한국회계기준원	사단법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세브란스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양석식	99.8.27	회계처리기준 관한 업무(위탁기준 제.개정, 해석, 질의회신 업무 등)	2259-0150	공정시장과
115	한국관리회계학회	사단법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경영관616호	고윤석	02.7.16	관리회계 및 관련분야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학계, 기업, 정부와 공 공단체 등의 발전에 기여	2220-1077	공정시장과
116	미국공인회계사 협회	사단법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7-5 카이시스템빌딩 13층	최강호	05.11.23	금융산업 및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581-4345	공정시장과
117	한국내부통제학회	사단법인	서울강남구 역삼동 738-37 여이네트빌딩 5층	이병철	09.10.7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와 관련된 연구활동 지원 및 조성, 학술지 발간, 내부통제 관 련 인력 양성 등	501-2322	공정시장과
118	세금융사회연구소	사단법인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45 미성오피스텔 1303호	정일석	2008.9.26	•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자문 및 교육	2610-8084	기획행정실
119	정경금융포럼	사단법인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김규복 작수근	2010.9.14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에 대한 학술연구 • 국민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기여	880-6949	기획행정실
120	금융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서울시 중구 다동 88번지 동여빌딩 9층	양병민	04.5.24	금융산업 및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755-2339	은행과
121	손해보험협회	사단법인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재보험빌딩6층	문재우	46.8.1	보험사업과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보험업의 발전 도모 손해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3702-8500	보험과
122	생명보험협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을무로 3가60-1 극동빌딩 16층	이주철	50.2.20	보험사업과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보험업 발전 도모	2262-6580	보험과
123	보험개발원	사단법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강영구	89.11.18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보험관련정보의 효 율적인 관리, 이용을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368-4000	보험과
124	보험연수원	사단법인	서울 성북구 보문동 1가 45번지 보험연수원 빌딩	조병진	94.4.13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업무	920-0800	보험과
125	한국화재보험협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35-4	고영선	73.5.15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안정피해에 대 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	780-8111	보험과
126	한국금융투자협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박종수	09.1.28	회원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등	2003-9000	자본시장과
127	한국공인회계사회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10	권오형	83.1.4	공인회계사의 사명의식 제고, 품위와 자질향상 및 직무의 윤적 개선과 확충, 회원 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및 국제교류의 증진 도모	3149-0252	공정시장과
128	신용정보협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4번지 알파루아빌딩 2층	김복원	00.12.20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회사들 사이의 업무질서를 유지	3775-2761	서민금융과
129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소공동 117번지 한국YMCA 전국연맹빌딩 202호	양석승	03.10.21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금규제 확립 및 제도조사, 연구와 이용자보호	3487-5900	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12.6월 기준)

순번	단 체 명 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 된 사 업	연 락 처	비고
1	신용사회구현 시민연대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97-12 중추빌딩 B101호	류창엽, 김상현	02.10.1	신용관리교육 및 계몽 ,채무 및 변제계획 상담 등을 통해 개인의 신용회복 지원	02-322-5112	서민금융과
2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11-7 (6층)	권상오, 문호준	08.5.8	각종신용회복지원안내, 직업교육, 직업알선 및 창업지원	032-361-1004	서민금융과
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33 증권거래소 별관11층	박승복	00.10.30	자본시장발전 및 제도개선, 상장회사 기업내용 공시 및 IR 에 관한 사업	02-783-6501	자본시장과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7. 최근 3년간 금융위 임직원 해외 출장 관련

□ 출장 현황 및 비용내역

○ 첨부 파일 참조

□ 내부 여비지급 규정

○ 별도로 금융위 내부 여비지급 규정은 없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인「공무원여비처리기준」에 따라 국외여비 지급

□ 출장보고서 사본

○ 국외출장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보고시스템(btis.mopas.go.kr)에서 확인 가능

김영환 의원 요구자료 18번 최근 3년간 금융위 임직원 해외 출장현황 및 비용내역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이ㅇㅇ	대변인실	주무관	10.10.25~10.10.30	홍콩,싱가포르	해외홍보 현장학습	₩ 788,500	-	-	$ 185
이ㅇㅇ	대변인실	대변인	12.06.09~12.06.13	태국, 홍콩	한-태국 금융당국 MOU 체결	₩ 2,107,700	$ 559	$ 388	$ 175
윤ㅇㅇ	대변인실	주무관	12.06.09~12.06.14	태국, 홍콩	한-태국 금융당국 MOU 체결	₩ 1,417,800	$ 386	$ 245	$ 130
김ㅇㅇ	대변인실	사무관	11.12.06~11.12.10	중국 하이난, 홍콩	제4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 및 제6차 한중일 금융감독협력 세미나	₩ 1,263,200	$ 273	$ 176	$ 120
송ㅇㅇ	기업재무 개선지원단	사무관	09.07.06~09.07.09	싱가포르	해운시장동향 파악 및 선박가치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선박매입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은행상대 홍보 및 아시아시장의 현지	₩ 625,500	$ 190	$ 236	$ 120
이ㅇㅇ	행정안사과	주무관	09.11.29~09.12.12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국가정보원 주관 중앙행정기관 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자의 국외정책연수	주최측부담	주최측부담	주최측부담	주최측부담
서ㅇㅇ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사무관	10.11.24~10.11.26	일본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구조조정 진행상황 현지 조사	₩ 1,250,400	$ 364	$ 324	$ 168
김ㅇㅇ	행정안사과	사무관	10.11.30~10.12.09	영국, 네덜란드	10년 (하반기) 해외성과관리 전문교육과정 출장	₩ 1,830,000	$ 910	$ 678	$ 300
이ㅇㅇ외1인	행정안사과	사무관 주무관	10.12.09~10.12.11	일본	일본 금융청 면담	₩ 1,254,200	$ 548	$ 444	$ 168
최 ㅇㅇ외 1인	행정안사과	주무관 주무관	10.12.15~10.12.18	홍콩	ASFM 국제컨퍼런스 참석	₩ 1,212,000	$ 774	$ 536	$ 208
송ㅇㅇ	행정안사과	사무관	11.9.10~11.9.1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기준세미나(the IMF's Data Standards Initiatives Seminar) 참석	₩ 956,700	$ 273	$ 176	$ 120
조ㅇㅇ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09.08.26~09.09.02	스페인,이탈리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 1,610,000	$ 570	$ 472	$ 331
김ㅇㅇ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무관	10.06.22~10.06.29	헝가리, 슬로바키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해외 연수	₩ 1,813,900	$ 522	$ 360	$ 328
정ㅇㅇ	기획조정관	국장	10.08.23~10.08.27	싱가포르	제3차 국장급 공무원 싱가포르 방문 프로그램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 315
이 ㅇㅇ 외 3인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10.12.20~10.12.22	런던	고객확인제도 이행실태 및 입법사례조사	₩ 6,443,500	$ 564	$ 930	$ 348
채ㅇㅇ외 1인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상임위원 팀장	11.01.26~10.02.01	호주,말레이시아	고위급 금융정책 당국자간 면담	₩ 8,211,700	$ 752	$ 696	$ 420
채ㅇㅇ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11.1.26~2.1	호주,말레이시아	고위급 금융정책 당국자간 면담	₩ 4,456,400	$ 472	$ 432	$ 240
최ㅇㅇ	의사운영정보팀	팀장	11.1.26~2.1	호주,말레이시아	고위급 금융정책 당국자간 면담	₩ 3,755,300	$ 280	$ 264	$ 180
박ㅇㅇ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11.3.13~3.20	아루바	메그룹 그룹 회의 참석	₩ 2,950,100	$ 725	$ 567	$ 210
송ㅇㅇ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11.8.31~9.7	독일, 네덜란드	2011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 1,806,600	$ 696	$ 472	$ 240
최ㅇㅇ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	11.9.25~10.1	미국	해외 국정감사 지원(미주)	₩ 2,796,200	$ 750	$ 567	$ 224
김ㅇㅇ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	11.9.25~10.1	영국,독일	해외 국정감사 지원(구주)	₩ 2,615,400	$ 682	$ 501	$ 210
주ㅇㅇ	금융정책국	국장	09.06.29~09.07.04	프랑크푸르트, 파리	선진국 주요 정책금융기관 방문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해외 대응방향 논의	₩ 5,331,600	$ 618	$ 584	$ 210
김ㅇㅇ	산업금융과	사무관				₩ 2,339,700	$ 530	$ 442	$ 18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우ㅇㅇ	신업금융과	과장	10.01.10~10.01.14	룩셈부르크, 제네바	국제적 정부주도 금융구제 현황 등 논의	₩ 2,672,900	$ 285	$ 295	$ 150
박ㅇㅇ	시장분석과	사무관	10.04.11~10.04.18	시애틀, 워싱턴, LA	미국의 금리체계·제도 운용 현황 비교 분석	₩ 4,161,710	$ 770	$ 604	$ 370
이ㅇㅇ	금융소비자과	주무관	10.09.26~10.10.02	토로토, 오타와	캐나다 차등보험료율제 운영현황 등 조사	₩ 2,426,700	$ 435	$ 343	$ 302
권ㅇㅇ외2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0.10.15~10.10.17	상하이	중국 국제금융포럼 참석	₩ 790,700	주최측부담	$ 261	$ 150
	대변인실	의신대변인				₩ 561,500	주최측부담	$ 132	$ 210
	금융정책과	사무관				₩ 561,500	주최측부담	$ 132	$ 90
김ㅇㅇ외1인	시장분석과	사무관	11.04.05~11.04.10	파리	OECD 금융시장위원회 회의 참석	₩ 2,047,600	$ 580	$ 486	ㅇ
	시장분석과	사무관	11.05.17~11.05.20	런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지원	₩ 2,253,600	$ 290	$ 324	$ 120
박ㅇㅇ	금융제도팀	사무관	11.9.6~11.9.10	프랑스 파리	WGTM 회의참석	₩ 2,446,700	$ 334	$ 405	$ 150
전ㅇㅇ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11.10.5~11.10.10	프랑스 파리	제113차 OECD 금융시장위원회 참석	₩ 2,289,900	$ 676	$ 486	$ 180
최ㅇㅇ	금융정책과	사무관	11.10.30~11.11.3	덴마크코펜하겐	덴마크 주택금융시스템 조사	₩ 2,870,200	$ 272	$ 295	$ 150
이ㅇㅇ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11.10.30~11.11.4	영국 런던	유럽단기자금시장 인프라 및 거래제도 현황 파악	₩ 2,402,200	$ 600	$ 486	$ 180
최ㅇㅇ	글로벌금융과	과장 사무관	11.11.24~11.11.29	터키, 영국	금융위원회와 터키, 영국 금융당국간 협력체계 구축	₩ 7,466,500	$ 1,439	$ 750	$ 360
송ㅇㅇ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11.12.5~11.12.16	싱가포르	IMF 금융시장 및 신금융산업 세미나	₩ 753,650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김ㅇㅇ	금융정책과	사무관	12.4.17~11.4.21	프랑스 파리	제22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	₩ 2,387,200	$ 450	$ 405	$ 150
송ㅇㅇ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12.4.25~11.4.29	프랑스 파리	제114차 OECD 금융시장위원회 참석	₩ 2,387,200	$ 669	$ 405	$ 150
윤ㅇㅇ 외 1인	산업금융과	과장 사무관	12.6.25~12.6.29	싱가포르, 태국	산업은행 민영화 및 IPO 추진	₩ 3,138,000	$ 772	$ 500	$ 300
진ㅇㅇ외5인		위원장	09.06.24~09.06.27	홍콩, 스위스 바젤	홍콩 비즈니스 강연 및 FSB 총회 참석	₩ 8,504,000	$ 614	$ 594	$ 240
		상임위원				₩ 5,227,600	$ 447	$ 396	$ 160
	위원장실	비서관				₩ 2,890,900	$ 190	$ 258	$ 120
	글로벌금융과	과장				₩ 2,890,900	$ 190	$ 258	$ 12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300,700	$ 285	$ 236	$ 12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300,700	$ 285	$ 236	$ 120
유ㅇㅇ외1인	대변인실	대변인	09.06.24~09.06.25			₩ 1,301,400	$ 166	$ 107	$ 35
	대변인실	사무관				₩ 461,100	$ 145	$ 81	$ 30
이ㅇㅇ외2인	금융연구원		09.06.30~09.07.02	중국 상하이	한중일 거시경제 워크숍 참석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431,000	$ 140	$ 132	$ 90
	은행과	사무관				₩ 431,000	$ 140	$ 132	$ 90
이ㅇㅇ		상임위원	09.08.26~09.08.29	영국 런던	FSB 운영위원회 참석	₩ 5,547,500	$ 615	$ 532	$ 160
이ㅇㅇ		국제협력관	09.09.07~09.09.09	영국 런던	FSB 상임위원회 참석	₩ 1,777,900	$ 332	$ 321	$ 105
진ㅇㅇ외4인		위원장	09.09.13~09.09.15	프랑스 파리	FSB 총회 참석	₩ 8,623,100	$ 774	$ 558	$ 180
	글로벌금융과	과장				₩ 1,872,200	$ 290	$ 243	$ 90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 1,872,200	$ 290	$ 243	$ 9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1,872,200	$ 290	$ 243	$ 90
	위원장실	사무관				₩ 1,872,200	$ 290	$ 243	$ 90
이ㅇㅇ	대변인실	의신대변인	09.09.13~09.09.16			₩ 1,872,400	$ 190	$ 177	$ 9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신ㅇㅇ외1인	글로벌금융과	과장	09.10.19~09.10.24	페루 리마	한-페루 FTA 제4차 협상 참석	₩ 4,269,000	$ 248	$ 185	$ 150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 2,358,900	$ 224	$ 150	$ 130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	09.10.24~09.10.28	이탈리아 로마	FSB 운영위원회 참석	₩ 5,329,200	$ 447	$ 396	$ 16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982,200	$ 285	$ 236	$ 120
김ㅇㅇ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09.11.04~09.11.09	영국 세인트앤드류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 2,622,800	$ 838	$ 354	$ 180
박ㅇㅇ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09.11.15~09.11.19	두바이	한-GCC FTA 협상참석	₩ 1,839,600	$ 261	$ 196	$ 104
신ㅇㅇ외2인	글로벌금융과	과장	09.12.01~09.12.06	호주 캔버라	한-호주 FTA 제3차 협상 참석	₩ 1,666,500	$ 210	$ 176	$ 240
		법률지문관				₩ 3,577,900	$ 354	$ 288	$ 280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 1,666,500	$ 192	$ 148	$ 104
이ㅇㅇ외2인		상임위원	09.12.17~09.12.18	일본 동경	한일 고위급 정례회담 참석	₩ 1,008,000	$ 205	$ 266	$ 80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 665,000	$ 145	$ 162	$ 6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665,000	$ 145	$ 162	$ 60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	09.12.03~09.12.12	말레이시아 쿠알라	제7회 동아시아컨퍼런스 참석 및 주요 아시아 금융당국 면담	₩ 2,280,200	$ 1,385	$ 1,045	$ 40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1,121,500	$ 905	$ 633	$ 300
진ㅇㅇ외4인		위원장	10.01.08~10.01.11	스위스 바젤	FSB 총회 참석	₩ 8,773,800	$ 614	$ 408	$ 180
	글로벌금융과	과장				₩ 2,599,400	$ 190	$ 177	$ 90
	위원장실	사무관				₩ 2,599,400	$ 190	$ 177	$ 9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511,800	$ 190	$ 177	$ 9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511,800	$ 190	$ 177	$ 90
이ㅇㅇ		국제협력관	10.01.16~10.01.19	영국 런던	FSB 상임위원회 참석	₩ 5,659,600	$ 332	$ 321	$ 105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	10.01.19~10.01.22	홍콩, 일본 동경	아시아 지역 금융컨퍼런스 참석	₩ 1,729,900	-	$ 532	$ 16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1,322,500	$ 435	$ 324	$ 120
이ㅇㅇ외1인		국제협력관	10.03.03~10.03.05	싱가포르	FSB 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	₩ 2,430,900	$ 240	$ 234	$ 105
	국제협력팀	사무관				₩ 816,300	$ 190	$ 177	$ 90
이ㅇㅇ외2인		상임위원	10.03.07~10.03.11	스위스, 영국	FSB 운영위원회 및 제23차 한-영 경제협의회 참석	₩ 5,882,400	$ 503	$ 464	$ 16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725,700	$ 480	$ 361	$ 150
	보험과	사무관				₩ 2,725,700	$ 480	$ 361	$ 150
이ㅇㅇ		상임위원	10.03.16~10.03.17	일본 동경	한중일 고위급 금융당국 회의 및 세미나 참석	₩ 967,000	$ 205	$ 266	$ 80
최ㅇㅇ	글로벌금융과	과장				₩ 568,200	$ 145	$ 162	$ 60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	10.05.01~10.05.07	캐나다 워털루	CIGI(국제지배구조혁신센터) 컨퍼런스 참석	주최측부담	주최측부담	$ 594	$ 24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175,300	$ 380	$ 354	$ 180
박ㅇㅇ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10.05.10~10.05.16	뉴질랜드 웰링턴	제4차 한-뉴질랜드 FTA 협상참석	₩ 2,258,100	$ 320	$ 259	$ 182
이ㅇㅇ외1인		국제협력관	10.05.11~10.05.15	스위스 바젤, 영국 런던	FSB 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 및 감독강화 워크숍 참석	₩ 5,832,700	$ 452	$ 506	$ 175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3,419,200	$ 385	$ 383	$ 150
이ㅇㅇ		상임위원	10.05.15~10.05.19	이탈리아 로마	FSB 운영위원회 및 OECD 한국경제검토회의 참석	₩ 5,351,800	$ 447	$ 495	$ 200
오ㅇㅇ외1인	금융정책과	사무관	10.05.15~10.05.22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		₩ 2,102,400	$ 720	$ 582	$ 24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102,400	$ 720	$ 582	$ 240
진ㅇㅇ외1인		위원장	2010.05.19~2010.05.21	독일 베를린	독일 재무부 주관 국제컨퍼런스 참석	₩ 8,797,200	$ 307	$ 408	$ 180
	글로벌금융과	과장				₩ 3,615,200	$ 95	$ 177	$ 90
박ㅇㅇ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10.05.23~10.05.27	호주 캔버라	제5차 한-호주 FTA 협상참석	₩ 1,610,200	$ 192	$ 185	$ 13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	10.05.25~10.05.27	중국 베이징	아시아 신흥국 은행규제 및 금융안정컨퍼런스 참석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 297	$ 12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502,800	$ 190	$ 177	$ 90
김ㅇㅇ외1인		사무처장	10.06.06~10.06.10	미국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주관 아시아컨퍼런스 및 은행감독자회의	₩ 5,111,600	주최측부담	$ 665	$ 200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 1,625,300	$ 435	$ 405	$ 150
이ㅇㅇ		국제협력관	10.06.08~10.06.13	캐나다 오타와	FSB 감독강화 워크숍 참석	₩ 6,494,500	$ 360	$ 468	$ 210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	10.06.08~10.06.12	오스트리아 비엔나	IIF(국제금융연합회) 춘계 총회 참석	₩ 5,335,700	$ 447	$ 495	$ 20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412,200	$ 285	$ 295	$ 150
진ㅇㅇ외4인		위원장	10.06.13~10.06.17	다 토론토, 미국 워싱	FSB 총회 참석 및 미국금융당국 방문	₩ 11,409,900	$ 1,001	$ 830	$ 300
	글로벌금융과	과장				₩ 5,236,300	$ 335	$ 361	$ 15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441,800	$ 430	$ 420	$ 180
	금융정책과	사무관				₩ 2,441,800	$ 430	$ 420	$ 180
	위원장실	사무관				₩ 5,236,300	$ 335	$ 361	$ 150
류ㅇㅇ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0.06.27~10.07.01	스위스 제네바	WTO DDA 서비스 협상 참석	₩ 2,593,800	$ 285	$ 295	$ 150
이ㅇㅇ외1인		국제협력관	10.07.04~10.07.08	독일 베를린	독일 경제개발협력부 주최 국제회의 참석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 312	$ 14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1,868,300	$ 285	$ 236	$ 120
이ㅇㅇ외 1인		국제협력관	10.08.29~10.09.02	프랑크푸르트, 영국	FSB 감독규제개혁 상임위 및 워크숍 참석	₩ 6,659,400	$ 406	$ 477	$ 175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892,000	$ 335	$ 361	$ 150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	10.08.29~10.09.02	르트, 이탈리아 로마	FSB 의장 등 주요 회원국과의 주요 금융과제 합의	₩ 6,598,800	$ 503	$ 563	$ 200
	글로벌금융과	과장				₩ 3,826,100	$ 335	$ 339	$ 150
진ㅇㅇ외2인		위원장	2010.9.8	일본 동경	G20 서울정상회의 금융규제개혁 분야 주요과제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업무협의	₩ 946,400	-	$ 186	$ 60
		상임위원				₩ 946,400	-	$ 133	$ 4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657,800	-	$ 81	$ 30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	10.09.12~10.09.15	스위스 바젤	FSB 운영위원회 참석	₩ 6,430,600	$ 298	$ 396	$ 16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751,400	$ 190	$ 236	$ 120
진ㅇㅇ외3인		위원장	10.09.25~10.09.28	프랑스 파리	FSB 총회 및 운영위원회 참석	₩ 9,511,800	$ 774	$ 744	$ 240
	글로벌금융과	과장				₩ 2,664,300	$ 435	$ 405	$ 15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664,300	$ 435	$ 405	$ 150
	위원장실	사무관				₩ 2,664,300	$ 290	$ 324	$ 120
이ㅇㅇ외2인		상임위원	10.11.15~10.11.17	홍콩	아시아 리스크 컨퍼런스 참석	주최측 부담	$ 205	$ 399	$ 120
	은행과	사무관				₩ 567,400	$ 290	$ 243	$ 90
	외신팀	사무관				₩ 567,400	$ 290	$ 243	$ 90
최ㅇㅇ외1인	글로벌금융과	과장	10.11.15~10.11.19	호주 캔버라	한-호주 FTA 2차 회기간 협상 참석	₩ 1,760,700	$ 210	$ 220	$ 150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 1,760,700	$ 192	$ 185	$ 130
전ㅇㅇ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0.11.30~10.12.04	중국 산동성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회의 참석	₩ 402,900	$ 280	$ 220	$ 150
서ㅇㅇ외2인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0.11.29~10.12.03	영국 런던	영국 금융청(FSA) 주관 국제연례세미나 참석	₩ 324,500	$ 435	$ 405	$ 150
	서민금융팀	사무관				₩ 1,963,900	$ 435	$ 405	$ 150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 1,963,900	$ 387	$ 335	$ 130
이ㅇㅇ		국제협력관	10.12.05~10.12.08	영국 런던	FSB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 참석	₩ 6,301,900	$ 332	$ 428	$ 140
이ㅇㅇ외2인		상임위원	10.12.06~10.12.09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카자흐스탄 금융협력 실조지엄 참석	₩ 2,693,800	$ 236	$ 288	$ 160
	글로벌금융과	과장				₩ 1,234,000	$ 140	$ 176	$ 120
	보험과	사무관				₩ 1,234,000	$ 140	$ 176	$ 12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이ㅇㅇ		국제협력관	11.01.10~11.01.13	스위스 바젤	FSB 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 참석	₩ 3,285,200	$ 240	$ 312	$ 140
이ㅇㅇ		국제협력관	11.01.15~11.01.19	인도 델리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참석	₩ 2,473,000	$ 360	$ 390	$ 175
이ㅇㅇ외2인		상임위원	11.01.16~11.01.19	홍콩	아시아 파이낸셜 포럼(AFF) 참석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 532	$ 16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118,800	$ 435	$ 324	$ 120
	금융정책과	주무관				₩ 622,600	$ 387	$ 268	$ 104
전ㅇㅇ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1.01.18~11.01.21	인도 델리	한-인도 CEPA 제1차 공동위원회 참석	₩ 1,986,000	$ 236	$ 190	$ 120
이ㅇㅇ외2인		상임위원	11.01.20~11.01.25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미재계회의 참석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 798	$ 240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 2,007,500	$ 435	$ 486	$ 180
	금융정책과	주무관				₩ 2,007,500	$ 387	$ 402	$ 156
이ㅇㅇ		국제협력관	11.02.02~11.02.03	일본 동경	일본 금융청 주관 국제 컨퍼런스 참석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 214	$ 70
한ㅇㅇ외2인	이화여대	교수	11.02.03~11.02.06	프랑스 파리	FSB Bail-in WG 회의 참석	₩ 6,145,900	$ 332	$ 428	$ 140
	글로벌금융과	과장				₩ 1,894,300	$ 290	$ 324	$ 12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1,894,300	$ 290	$ 324	$ 120
서ㅇㅇ외 1인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11.03.04~11.03.11	이 앙카라, 스위스 제네	한-터키 FTA 제3차 협상, WTO/ DDA 금융서비스 위원회 참석	₩ 3,174,100	$ 470	$ 412	$ 240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 3,174,100	$ 430	$ 344	$ 208
이ㅇㅇ외1인		국제협력관	11.03.09~11.03.15	스위스 바젤, 영국 런던	FSB 국경간위기관리그룹, FSB 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 6,764,300	$ 738	$ 691	$ 225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956,500	$ 625	$ 523	$ 210
한ㅇㅇ외1인	이화여대	교수	11.03.22~11.03.25	영국 런던	FSB Bail-in WG 회의 참석	₩ 6,401,300	$ 332	$ 428	$ 14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065,200	$ 290	$ 324	$ 120
신ㅇㅇ외2인		부위원장	11.04.03~11.04.06	이탈리아 로마	FSB 총회 참석	₩ 6,354,400	$ 440	$ 468	$ 200
	글로벌금융과	과장				₩ 2,396,300	$ 190	$ 236	$ 120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 2,396,300	$ 190	$ 236	$ 120
서ㅇㅇ외1인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11.04.12~11.04.16	스위스 제네바	WTO/DDA 금융서비스분과 협상 참석	₩ 3,741,300	$ 285	$ 295	$ 150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 2,338,300	$ 261	$ 245	$ 130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	11.04.16~11.04.19	미국 워싱턴	거시건전성 감독 관련 국제 컨퍼런스 참석	₩ 7,368,200	$ 205	$ 532	$ 16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090,000	$ 145	$ 324	$ 120
전ㅇㅇ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1.05.02~11.05.04	중국 북경	한중 FTA 대비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공동연구 참석	₩ 715,400	$ 190	$ 177	$ 90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	11.05.05~11.05.08	스위스 바젤	FSB 정리체계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 6,764,100	$ 447	$ 396	$ 160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 3,236,400	$ 285	$ 236	$ 120
김ㅇㅇ	공자위 사무국	국장	11.05.11~11.05.14	프랑스 파리	금융소외계층 포용 글로벌파트너십 회의 참석	₩ 4,619,800	$ 332	$ 428	$ 140
류ㅇㅇ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1.05.16~11.05.18	스위스 바젤	FSB Bail-in WG 회의 참석	₩ 2,771,900	$ 95	$ 177	$ 90
이ㅇㅇ		국제협력관	11.05.18~11.05.26	뉴욕, 독일 프랑크푸	FSB 국경간위기관리그룹, IAIS-FSB 합동 워크숍 참석	₩ 9,393,400	$ 904	$ 847	$ 315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	11.06.06~11.06.09	독일 프랑크푸르트	FSB 운영위원회 참석	₩ 6,889,400	$ 298	$ 396	$ 16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434,500	$ 190	$ 236	$ 120
최ㅇㅇ외1인	글로벌금융과	과장	11.06.12~11.06.16	이탈리아 로마	FSB 감독강화회의 참석	₩ 1,997,100	$ 285	$ 295	$ 15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1,861,200	$ 285	$ 295	$ 150
이ㅇㅇ		상임위원	11.06.19~11.06.25	스위스 바젤	FSB 정리체계상임위원회 및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회의 참석	₩ 5,984,200	$ 745	$ 693	$ 280
최ㅇㅇ외1인	글로벌금융과	과장	11.06.21~11.06.25			₩ 2,563,000	$ 285	$ 295	$ 150
		에디터				₩ 2,563,000	$ 261	$ 245	$ 130
이 ㅇㅇ 외1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1.7.6~11.7.9	파리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는 G-20 워크숍 참석	₩ 8,345,000	$ 780	$ 856	$ 280
신ㅇㅇ외3명	부위원장실	부위원장	11.7.17~11.7.20	파리	FSB 총회 참석	₩ 13,088,600	$ 2,150	$ 1,612	$ 560
이 ㅇㅇ외2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1.8.1~11.8.2	동경	아마장마켓 포럼 참석	₩ 2,479,000	$ 807	$ 710	$ 248
김ㅇㅇ	글로벌금융과	행정사무관	11.8.28~11.8.31	바젤	금융안정위원회(FSB) 그림자금융 TF 회의 참석	₩ 2,630,490	$ 174	$ 177	$ 90
김ㅇㅇ 외3인	위원장실	위원장	11.9.1~11.9.4	울란바토르	몽골 금융당국과의 MOU 체결	₩ 4,585,600	$ 730	$ 624	$ 465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이ㅇㅇ	금융정책국	국제협력관	11.9.18~11.9.20	런던	금융안정위원회(FSB) 감독, 규제협력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 6,485,900	$ 184	$ 321	$ 105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1.9.25~11.9.28	워싱턴	금융안정위원회(FSB) 정리체계 운영그룹(ReSG) 회의 참석	₩ 10,714,000	$ 637	$ 856	$ 280
이ㅇㅇ외1인	글로벌금융과	행정사무관	11.9.25~11.9.28	제네바	WTO/DDA 금융서비스위원회 회의 참석	₩ 4,848,600	$ 442	$ 432	$ 224
신ㅇㅇ외1인	감사담당관실	주무관	11.9.27~11.9.30	바젤	금융안정위원회(FSB) LEI 워크숍 참석	₩ 5,616,200	$ 347	$ 294	$ 156
김ㅇ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11.9.29~11.10.4	멕시코	금융소외계층 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PFI) 회의 참석	₩ 3,513,100	$ 470	$ 390	$ 175
추ㅇㅇ외3인	부위원장실	부의원장	11.10.1~11.10.4	취리히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 16,327,100	$ 1,692	$ 1,136	$ 544
최ㅇㅇ	글로벌금융과	과장	11.10.13~11.10.16	파리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 3,328,900	$ 352	$ 324	$ 120
서ㅇㅇ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11.10.16~11.10.23	뉴욕, 워싱턴	한미 양국 금융/경제 정책담당자간 협력구축을 위한 회의 참석	₩ 2,265,100	$ 1,268	$ 648	$ 240
최ㅇㅇ	글로벌금융과	과장	11.11.8~11.11.12	알마타	한-카자흐스탄 금융포럼 참석	₩ 3,328,900	$ 411	$ 236	$ 120
이ㅇㅇ외1인	금융정책국	국제협력관	11.11.16~11.11.19	런던, 프랑크프루트	영국(FSA) 및 독일(BaFin) 금융정책 담당자들과 양자 협의	₩ 9,163,400	$ 942	$ 602	$ 244
김ㅇㅇ외1인	위원장실	위원장	11.11.25~11.11.29	터키,런던	금융위원회와 터키·영국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	₩ 33,405,000	$ 5,584	$ 2,796	$ 1,266
이ㅇㅇ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1.11.30~11.12.3	뉴욕	금융안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참석	₩ 8,253,100	$ 214	$ 399	$ 120
이ㅇㅇ외3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1.12.6~11.12.10	하이난	제4차 한중일 고위급 회담 및 제6차 한중일 금융감독정책 세미나 참석	₩ 4,242,900	$ 963	$ 640	$ 400
이ㅇㅇ외2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1.12.1.7~12.1.11	바젤	FSB 총회 참석	₩ 8,963,600	$ 1,352	$ 1,094	$ 510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2.1.15~12.1.19	홍콩	아시아금융포럼(AFF) 참석	₩ 654,600	$ 523	$ 856	$ 280
이ㅇㅇ외1인	금융정책국	국제협력관	12.1.29~12.2.1	런던	FSB 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 참석	₩ 4,555,900	$ 407	$ 750	$ 330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2.2.3~12.2.6	LA	제24차 한미 재계회의 참석	₩ 1,930,400	$ 265	$ 684	$ 226
최ㅇㅇ	글로벌금융과	과장	12.2.12~12.2.15	하노이	한국-베트남 금융당국간의 MOU 체결 관련 실무협의	₩ 586,700	$ 182	$ 132	$ 135
김ㅇㅇ외4인	위원장실	위원장	12.2.28~12.3.4	베트남,인니	금융위원회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금융당국간 양자협력체계 구축 등	₩ 10,548,180	$ 3,636	$ 1,460	$ 925
나ㅇㅇ외1인	글로벌금융과	행정사무관	12.3.28~12.4.1	뉴욕	금융안정위원회(FSB) CBCM 워크숍 참석	₩ 4,509,800	$ 993	$ 740	$ 280
박ㅇㅇ	글로벌금융과	과장	12.4.11~12.4.15	워싱턴	금융안정위원회(FSB) SIE 회의 참석	₩ 2,297,600	$ 512	$ 324	$ 120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2.4.15~12.4.18	브뤼셀	"Global Financial Services Integration" 컨퍼런스 참석	₩ 3,249,700	$ 232	$ 632	$ 280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2.4.25~12.4.28	바젤	금융안정위원회(FSB) ReSG 회의 참석	₩ 10,238,800	$ 343	$ 632	$ 280
박ㅇㅇ	글로벌금융과	과장	12.5.3~12.5.8	방콕, 아부다비	제3차 한국-UAE 경제공동위원회(5.7 장관급, 5.6 실무급)에 참석	₩ 2,644,900	$ 435	$ 324	$ 180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2.5.6~12.5.10	바젤	금융안정위원회 운영위원회(FSB Steering Committee) 및 신흥국 리뷰 그룹 회의(EMDE	₩ 9,685,400	$ 974	$ 790	$ 350
박ㅇㅇ외1인	글로벌금융과	과장	12.5.13~12.5.14	베이징	한·중 FTA 제1차 협상 참석	₩ 1,486,400	$ 307	$ 216	$ 112
김ㅇㅇ	글로벌금융과	행정사무관	12.5.13~12.5.15	쿠알라룸푸르	FSB 아시아지역협의체 회의 참석	₩ 820,400	$ 137	$ 132	$ 90
이ㅇㅇ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2.5.13~12.5.18	쿠알라룸푸르, 베이징	FSB 아시아지역협의체 회의 참석 및 IFC와 중국은행감독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녹색금융 포럼 참석	₩ 2,574,200	$ 173	$ 540	$ 240
임ㅇㅇ외1인	금융정책국	국제협력관	12.5.17~12.5.20	런던	영국 런던 금융청(FSA)에서 개최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SRC) 회의 참석	₩ 9,001,300	$ 1,198	$ 752	$ 260
이ㅇㅇ외1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2.5.22~12.5.24	베이징	2012 중국금융포럼(China Financial Summit) 참석	₩ 570,700	$ 284	$ 474	$ 210
추ㅇㅇ외3명	부위원장실	부위원장	12.5.27~12.5.30	상하이,홍콩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 4,203,800	$ 3,006	$ 1,079	$ 544
김ㅇㅇ외4명	위원장실	위원장	12.6.9~12.6.13	태국,홍콩	금융위원장 태국,홍콩 출장	₩ 8,280,200	$ 2,903	$ 1,805	$ 880
엄ㅇㅇ	금융정책국	국제협력관	12.6.14~12.6.17	암스텔담	금융안정위원회(FSB) 국경간 위기관리그룹(CBCM) 회의 참석	₩ 6,664,000	$ 320	$ 312	$ 140
엄ㅇㅇ	금융정책국	국제협력관	12.6.27~12.6.30	바젤	금융안정위원회(FSB) LEI 이행그룹(Implementation Group) 회의 참석	₩ 7,009,500	$ 439	$ 312	$ 140
이ㅇㅇ	국제협력팀	사무관	09.09.20~09.09.23	상하이	중국 금융정책 및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 파악	₩ 1,332,100	$ 260	$ 221	$ 12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정ㅇㅇ	국제협력팀	사무관	10.02.07~10.02.13	덴마크,아테네	위기 이후 주요 금융중심지 현황조사 및 정책 벤치마킹	₩ 3,360,000	$ 425	$ 301	$ 310
권ㅇㅇ외4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0.05.10~10.05.12	싱가포르	한국금융 IR	-	-	$ 351	$ 150
	금융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	10.05.12~10.05.15	호주 시드니		₩ 3,763,200	$ 236	$ 216	$ 120
	국제협력팀	팀장	10.05.10~10.05.15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		₩ 1,719,000	$ 140	$ 309	$ 180
	의신대변인실	의신대변인				₩ 1,719,000	$ 140	$ 309	$ 180
	금융정책과	서기관	10.05.10~10.05.12	싱가포르		-	-	$ 177	$ 90
정ㅇㅇ외1인	국제협력팀	사무관	10.05.10~10.05.15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	한국금융 IR	₩ 1,719,000	$ 140	$ 309	$ 180
	국제협력팀	사무관				₩ 1,719,000	$ 140	$ 309	$ 180
김ㅇㅇ	국제협력팀	주무관	10.09 10~10.09.13	미국 뉴욕	2010 FSS Korean Finance Job Fair 참석	₩ 2,121,900	$ 387	$ 268	$ 224
윤ㅇㅇ	국제협력팀	팀장	10.10.24~10.10.29	취리히, 룩셈부르	금융중심지 경쟁국인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금융인력 양성 현황파악	₩ 4,298,300	$ 380	$ 295	$ 150
이ㅇㅇ	국제협력팀	사무관				₩ 4,298,300	$ 380	$ 295	$ 150
이ㅇㅇ	금융위원회	국제협력관	10.11.21~10.11.26	스페인 마드리드, 영국 런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강화 및 금융중심지 홍보	₩ 6,705,100	$ 692	$ 555	$ 210
정ㅇㅇ	국제협력팀	사무관	10.11.21~10.11.25			₩ 1,835,000	$ 285	$ 236	$ 120
정ㅇㅇ	국제협력팀	사무관	11.02.21~11.02.26	영국 런던, 독일 함부르	금융중심지정책 홍보 및 선박금융 관련 외국금융사의 국내 유치 촉진회	₩ 3,014,500	$ 575	$ 420	$ 180
김ㅇㅇ	국제협력팀	주무관	11.03.27~11.03.31	영국 런던	World Islamic Finance Conference 참석	₩ 2,388,200	$ 387	$ 268	$ 104
이ㅇㅇ	금융위원회	국제협력관	11.9.25 ~ 11.9.28	일본(동경), 홍콩	2011년 국회 정무위원회 해외국정감사 수감	₩ 2,507,700	$ 1,004	$ 428	$ 140
양ㅇㅇ	국제협력팀	사무관	12.5.15 ~ 12.5.17	중국 북경	국제 녹색금융포럼 참석	₩ 570,700	$ -	$ 177	$ 90
석ㅇㅇ	국제협력팀	사무관	12.7.1 ~ 12.7.4	호주 시드니	현지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호주 금융인력 양성 시스템 연구	₩ 1,851,300	$ 181	$ 176	$ 120
권ㅇㅇ	보험과	사무관	09.07.07~09.07.12	프랑스 파리	OECD 보험 및 사적연금 회의 참석	₩ 1,956,400	$ 580	$ 486	$ 180
성ㅇㅇ외1인	보험과 보험과	과장 사무관	09.11.01~09.11.08	태국, 베트남	태평양 보험회의 회의참석	₩ 1,529,200	$ 840	$ 704	$ 610
조ㅇㅇ	은행과	사무관	09.11.16~09.11.22	태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싱가포르,홍콩 투자자 사전 설명회	₩ 1,047,000	$ 525	$ 434	$ 210
김ㅇㅇ외1인	보험과 보험과	사무관 주무관	09.11.29~09.12.06	프랑스 파리	OECD 보험 및 사적연금 회의 참석	₩ 3,619,200	$ 1,740	$ 1,296	$ 448
신ㅇㅇ	은행과	사무관	09.11.29~09.12.05	미국 워싱턴D.C.	IMF 법무부서 세미나 참석	₩ 1,975,100	$ 725	$ 567	$ 210
마 ㅇㅇ외1인	은행과 은행과	사무관 주무관	09.12.14~09.12.19	프랑스 파리	OECD 무역위원회 회의참석	₩ 3,348,400	$ 1,096	$ 888	$ 456
성ㅇㅇ	보험과	과장	10.06.05~10.06.11	스페인 마드리드	2010 국제보험학회(IIS) 총회참석	₩ 2,632,600	$ 475	$ 413	$ 210
이ㅇㅇ	중소금융과	사무관	10.10.04~10.10.06	일본 동경	일본 대금업시장 정책연구 및 대금시장현황 조사	₩ 578,000	$ 290	$ 243	$ 60
최 ㅇㅇ외 1인	금융위 보험과	상임위원 서기관	10.10.26~10.10.29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IAIS 연차총회 참석	₩ 5,138,200	$ 488	$ 632	$ 280
김ㅇㅇ외3인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은행과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10.11.17~10.11.20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 중앙은행에 대한 한국의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설명	₩ 2,143,200	$ 708	$ 536	$ 818
김ㅇㅇ외1인	보험과 보험과	사무관 주무관	10.11.29~10.12.03	프랑스 파리	OECD 보험 및 사적연금회의 참석	₩ 4,016,000	$ 1,370	$ 1,036	$ 392
허 ㅇㅇ외2인	증선위 보험과 [illegible]	비상임위원 사무관 [illegible]	10.12.15~10.12.23	영국 런던	IFRS 보험계약 Round table 회의 참석	₩ 11,426,300	$ 2,791	$ 2,147	$ 794
안ㅇㅇ 외1인	서민금융팀 [illegible]	사무관 [illegible]	11.01.11~11.01.15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주관 미소금융 콜로퀴엄 회의 참석	₩ 3,482,600	$ 570	$ 590	$ 300
추ㅇㅇ	서민금융팀	주무관	11.05.15~11.05.19	캄보디아	CGAP Annual Meeting 참석	₩ 803,800	$ 224	$ 150	$ 130
신ㅇㅇ	보험과	과장	11.06.18~11.06.24	캐나다 토론토	2011년도 국제보험학회(IIS) 총회 참석	₩ 2,475,800	$ 475	$ 413	$ 210
배ㅇㅇ	은행과	주무관	11.7.17~11.7.23	인도 코치	제14차 APG 연차 총회 참석	₩ 4,327,600	$ 525	$ 343	$ 182
송ㅇㅇ	중소금융과	사무관	11.9.13~11.9.18	미국 샌프란시스코	2011년 APEC 여성경제회의 참석	₩ 1,877,900	$ 600	$ 486	$ 180
박ㅇㅇ	보험과	사무관	11.9.10~11.9.13	싱가포르	2011년 태평양보험학회(PIC) 총회 참석	₩ 944,200	$ 411	$ 236	$ 120
서ㅇㅇ	은행과	사무관	11.9.28~11.10.1	이탈리아 로마	FATF 전문가 회의 및 WG회의 참석	₩ 2,612,700	$ 348	$ 236	$ 120
제ㅇㅇ	보험과	사무관	11.10.9~11.10.13	말레이시아	2011년 제16회 동아시아 계리사 총회 참석	₩ 792,000	$ 364	$ 220	$ 15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카적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김ㅇㅇ외2인	금융위 은행과	과장 사무관	.11.27~12.111.11.27~12	네르담브뤼셀프랑크푸	커버드본드 해외사례 및 외은지점 해외제도 연구 등	₩ 10,940,100	$ 1,781	$ 1,121	$ 570
김ㅇㅇ외1인	금융위 은행과	사무처장 사무관	11.11.27~11.11.29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화청 설립 40주년 기념행사 및 Global Asia Dynamics 라운드테이블 참석	₩ 3,125,000	$ 688	$ 474	$ 210
이ㅇㅇ	보험과	주무관	11.11.26~11.12.3	파리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참석	₩ 2,207,100	$ 924	$ 536	$ 208
김ㅇㅇ외1인	은행과 보험과	주무관 등	11.12.5~11.12.10	워싱턴뉴욕	커버드본드 해외사례 및 외은지점 해외제도 연구 등	₩ 4,412,400	$ 1,240	$ 804	$ 312
마ㅇㅇ	보험과	사무관	12.6.3~11.6.10	파리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참석	₩ 2,471,500	$ 900	$ 648	$ 240
배ㅇㅇ	은행과	과장	12.6.9~11.6.13	태국, 홍콩	태국, 홍콩 금융당국과의 MOU 체결 등	₩ 1,417,800	$ 571	$ 294	$ 150
정ㅇㅇ	금융서비스국	국장	12.6.15~12.6.23	리우데자네이로, 미국	IIS(국제보험학회) 참석 및 사카고 한인경제인협회 세미나 참석	₩ 12,901,800	$ 960	$ 624	$ 280
제ㅇㅇ	보험과	사무관	12.6.15~12.6.24	리우데자네이로, 미국	IIS(국제보험학회) 참석 및 미국 보험시장 조사	₩ 3,588,800	$ 764	$ 619	$ 270
정ㅇㅇ	금융소비자과	사무관	12.4.9~12.4.13	러시아 모스크바	APEC 전문가 워크숍 참석	₩ 2,028,200	$ 450	$ 405	$ 150
안ㅇㅇ	금융소비자과	사무관	12.6.25~12.6.29	시아 상트페테르부르	APEC 주관 컨퍼런스 참석	₩ 2,625,900	$ 348	$ 295	$ 150
송ㅇㅇ외1인	서민금융과	사무관 주무관	12.7.1~12.7.7	뉴욕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참석	₩ 5,198,000	$ 1,572	$ 1,036	$ 392
이ㅇㅇ외1인	자본과	부위원장 사무관	09.09.07~09.09.08	일본 동경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 및 일본 금융정 방문	₩ 1,555,900	$ 435	$ 482	$ 160
김ㅇㅇ 외1인	증선위원 자본과	증선위원 서기관	09.09.07~09.09.10	중국 상해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 및 상해금융감독당국 라운드테이블 참석	₩ 1,354,000	$ 564	$ 464	$ 410
윤ㅇㅇ	공정과	주무관	09.09.13~09.09.16	싱가포르	국제회계감독기구(IFIAR) 회의참석	₩ 688,800	$ 261	$ 196	$ 224
전ㅇㅇ	자본과	사무관	09.10.04~09.10.08	스위스 제네바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 회의 참	₩ 2,569,000	$ 285	$ 295	$ 280
정ㅇㅇ	자산과	과장	09.10.13~09.10.19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제연금감독기구(IOPS) 연차총회 참석	₩ 3,022,600	$ 285	$ 413	$ 210
김ㅇㅇ	자산과	사무관	09.10.21~09.10.24	호주 멜버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참석	₩ 1,445,000	$ 140	$ 176	$ 120
이ㅇㅇ외1인	공정과 자산과	과장 주무관	09.11.17~09.11.20	중국 베이징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중국 국영 자산관리공사주관 컨퍼런스 참석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김ㅇㅇ외1인	자산과 자산과	사무관 사무관	09.12.17~09.12.22	홍콩, 베트남	아시아지역 펀드교류 협력방안 논의	₩ 1,560,400	$ 1,000	$ 713	$ 620
이ㅇㅇ외1인	자본과 자본과	과장 사무관	10.01.14~10.01.17	미국 뉴욕	장외파생상품 감독자포럼 참석	₩ 4,279,600	$ 580	$ 648	$ 24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김ㅇㅇ	공정과	사무관	10.01.16~10.01.21	영국 런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참석	₩ 1,880,500	$ 580	$ 486	$ 310
구ㅇㅇ	공정과	사무관	10.02.08~10.02.13	프랑스 파리	국제회계감독기구(IFIAR) 워크숍 참석	₩ 1,688,000	$ 580	$ 486	$ 180
이ㅇㅇ외1인	공정과 공정과	과장 주무관	10.03.20~10.03.25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회계감독기구(IFIAR) 제7차 정기회의 참석	₩ 3,157,600	$ 728	$ 540	$ 280
최 ㅇㅇ외 1인	자본과	상임위원 사무관	10.06.06~10.06.13	캐다 몬트리올, 미국 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 참석 및 미	₩ 9,712,700	$ 1,782	$ 1,014	$ 840
이ㅇㅇ	공정과	사무관	10.06.14~10.06.18	요르단 암만	시장감시교육프로그램 참가	₩ 1,927,000	$ 350	$ 264	$ 310
송ㅇㅇ	자본과	서기관	10.06.30~10.07.02	중국 제남,북경	산동기업 한국상장 설명회 참석	₩ 727,400	$ 95	$ 59	$ 90
정ㅇㅇ	자본과	과장	10.07.07~10.07.09	프랑스 파리	장외파생상품 국제 컨퍼런스 참석	₩ 1,815,200	$ 162	$ 435	$ 90
최ㅇㅇ	공정과	과장	10.07.28~10.07.29	일본 동경	국제회계기준(IFRS) 컨퍼런스 참석	₩ 624,900	$ 145	$ 162	$ 190
이ㅇㅇ	자본시장과	사무관	10.09.06~10.09.07	일본 동경	일본 금융당국 정책협의 및 일본 한국자본시장	₩ 624,700	$ 145	$ 162	$ 60
권ㅇㅇ외3인	자본시장과 대변인실	부위원장 과장 과장	10.09.08~10.09.11	중국 북경, 심천	중국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 참석 및 중국 금융당국 정책협의	₩ 4,432,000	$ 1,158	$ 876	$ 560
최ㅇㅇ	공정과	과장	10.09.26~10.09.30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회계감독기구(IFIAR) 총회	₩ 2,115,000	$ 285	$ 295	$ 150
최ㅇㅇ 외1인	자본과	상임위원 사무관	10.10.07~10.10.11	라오스, 베트남	라오스 및 베트남 출장	₩ 3,220,400	$ 564	$ 580	$ 350
신ㅇㅇ	자산과	과장	10.10.30~10.11.05	호주 시드니	IOPS 연차총회 및 OECD/IOPS 사적연금포럼 참석	₩ 1,729,000	$ 350	$ 308	$ 210
최 ㅇㅇ외 1인	자본과 자본과	사무관 주무관	10.11.15~10.11.19	프랑스 파리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참석	₩ 3,718,000	$ 822	$ 740	$ 530
김 ㅇㅇ외1인	자본과 자산과	사무관 주무관	10.11.24~10.11.27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화 관련 상가폴 거래소 방문	₩ 2,059,500	$ 451	$ 373	$ 194
조 ㅇㅇ 외2인	공정과 공정과	비상임위원 사무관 주무관	10.11.27~10.12.05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IOSCO SROCC 세미나 참석	₩ 19,782,900	$ 1,655	$ 1,863	$ 864
전ㅇㅇ	자본과	사무관	10.11.30~10.12.02	중국 상해,심천	ChiNext 및 상해 선물거래소 방문	₩ 1,138,000	$ 140	$ 132	$ 90
이ㅇㅇ	자본과	사무관	10.12.16~10.12.18	중국 상해,심천	2010 OECD ARCG 회의 참석	₩ 504,700	$ 140	$ 132	$ 90
구ㅇㅇ	공정과	사무관	11.03.21~11.03.22	말레이시아	Monitoring Board 공정회 참석	₩ 1,125,800	$ 70	$ 88	$ 60
김ㅇㅇ	공정과	과장	11.03.30~ 11.04.03	영국 런던	IFRS재단 정기이사회 참석 국외여비 지급	₩ 2,079,200	$ 435	$ 405	$ 150
전ㅇㅇ	자본과	사무관	11.04.16~ 11.04.23	남아공	IOSCO 연차총회 참석 국외여비 지급	₩ 4,362,000	$ 475	$ 236	$ 240
최ㅇㅇ	자본과	사무관	11.05.09~ 11.05.15	독셈부르크	IFSB 총회 참석 국외여비 지급	₩ 3,045,600	$ 475	$ 413	$ 210
김ㅇㅇ	자산운용과	사무관	11.08.01~11.08.04	싱가포르	APEC Fund Passport 관련 워크숍 참석	₩ 1,235,000	$ 410	$ 236	$ 120
김ㅇㅇ	공정시장과	과장	11.09.25~11.09.28	태국 방콕	IFIAR 정기총회 참석	₩ 1,311,400	$ 411	$ 176	$ 120
국ㅇㅇ		사무관				₩ 1,315,500	$ 411	$ 176	$ 120
홍ㅇㅇ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1.09.27~11.10.01	터키 이스탄불	IFS2011 총회 참석	₩ 6,396,000	$ 915	$ 288	$ 200
이ㅇㅇ	자본시장과	사무관				₩ 2,226,000		$ 176	$ 150
전ㅇㅇ	자본시장국	국장	11.10.17~11.10.18	중국 상해	한국 자본시장 설명회	₩ 977,000	-	$ 116	+₩10,000(비자
김ㅇㅇ	자본시장과	사무관				₩ 603,000		$ 88	+₩10,000(비자
최ㅇㅇ	법률자문관실	법률자문관	11.10.23~11.10.29	프랑크푸르트, 취리히	해외 헤지펀드 관련규제 조사	₩ 6,995,000	$ 1,056	$ 693	$ 280
최ㅇㅇ	자산운용과	주무관	11.10.24~11.10.30	스페인 마드리드	IOSCO 프로그램 참석	₩ 2,141,000	$ 591	$ 294	$ 182
이ㅇㅇ	공정시장과	사무관	11.11.15~11.11.18	프랑스 파리	OECD 지배구조 회의 참석	₩ 2,270,300	$ 450	$ 324	$ 120
김ㅇㅇ	자본시장과	과장	11.11.25~11.11.30	홍콩, 호주 시드니	ATS 규제조사	₩ 3,355,500	$ 604	$ 412	$ 180
이ㅇㅇ	자본시장과	사무관	11.11.30~11.12.04	미국 뉴욕, 워싱턴DC	FSB 참석	₩ 2,191,700	$ 528	$ 405	$ 383
류ㅇㅇ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11.12.11~11.12.17	홍콩, 말레이시아	펀드 패스포트 워크숍 참석	₩ 2,382,800	$ 952	$ 687	$ 280
김ㅇㅇ	자산운용과	사무관				₩ 1,446,100	$ 608	$ 419	$ 21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진ㅇㅇ	자본시장국	국장	11.12.06~11.12.07	일본 도쿄		₩ 1,062,000	$ 223	$ 214	$ 70
이ㅇㅇ	공정시장과	사무관				₩ 657,000	$ 176	$ 162	$ 60
허ㅇㅇ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11.12.14~11.12.20	뉴질랜드, 호주	해외 투자은행 등 방문	₩ 4,226,700	$ 472	$ 360	$ 280
장ㅇㅇ	자본시장과	주무관				₩ 2,026,300	$ 260	$ 185	$ 182
김ㅇㅇ	자산운용과	사무관	12.03.07~12.03.09	홍콩	국제금융정책포럼 참석	₩ 691,000	$ 300	$ 243	$ 90
윤ㅇㅇ	자본시장과	주무관	12.04.17~12.04.22	프랑스 파리	제22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참석	₩ 2,386,400	$ 528	$ 335	$ 130
유ㅇㅇ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2.04.17~12.04.19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 증권시장 출범식 참석	₩ 1,991,000	$ 85	$ 122	$ 80
이ㅇㅇ	자본시장과	사무관				₩ 927,000	$ 64	$ 74	$ 60
진ㅇㅇ	자본시장국	국장	12.05.13~12.05.17	중국 북경	2012년 IOSCO 연차총회 참석	₩ 1,319,600	$ 1,443	$ 390	+₩10,000(비자
김ㅇㅇ	자본시장과	사무관				₩ 802,300		$ 295	+₩10,000(비자
유ㅇㅇ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2.06.03~12.06.06	프랑스 파리	OECD 참석	₩ 6,623,300	$ 1,292	$ 532	$ 160
오ㅇㅇ	자본시장과	사무관				₩ 2,424,200		$ 324	$ 120
조ㅇㅇ	자산운용과	주무관	12.06.03~12.06.08	프랑스 파리	제89차 OECD IPPP, IOPS 관련 회의 참석	₩ 2,267,600	$ 422	$ 402	+₩14,920(여행자
김ㅇㅇ	자산운용과	과장	12.06.24~12.06.28	싱가포르, 태국 방콕	제5차 APEC 펀드 상호인증 워크숍 참석	₩ 951,000	$ 626	$ 206	$ 120
김ㅇㅇ		사무관				₩ 951,000		$ 206	$ 120
정 ㅇㅇ외3인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실장 사무관 사무관	09.07.05~09.07.12	호주(브리스번)	제12차 APG연차 총회 참석	₩ 7,510,000	$ 1,680	$ 1,408	$ 960
이ㅇㅇ	금융정책과	사무관	09.07.07~09.07.12			₩ 1,516,600	$ 280	$ 264	$ 180
이ㅇㅇ	기획행정실	사무관	09.08.16~09.08.23	호주(브리스번)	APG 주관 상호평가자 교육	₩ 1,400,000	$ 490	$ 352	$ 240
김ㅇㅇ외4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원장 실장 팀장 사무관	09.10.12~09.10.16	프랑스(파리)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총회 참석	₩ 10,600,000	$ 2,983	$ 2,817	$ 960
박ㅇㅇ 외2인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실장 사무관	09.10.24~09.10.30	캄보디아(씨엠립)	APG 유형론 워크숍 참석	₩ 6,810,000	$ 985	$ 812	$ 887
신ㅇㅇ	은행과	사무관				₩ 716,100	$ 310	$ 259	$ 210
유ㅇㅇ	기획행정실	실장	09.10.24~09.10.30	캐나다(와타와)	FATF 상호평가자 교육 워크샵 참여	₩ 3,400,000	$ 720	$ 702	$ 315
김ㅇㅇ	기획행정실	사무관	09.11.22~09.11.27	싱가포르	ASEAN+3 지역 범죄예방 세미나 참가				$ 180
이 ㅇㅇ외 1인	심사분석실	팀장	10.01.19~10.022	호주(시드니)	중장기 정보화계획수립	₩ 5,650,000	$ 486	$ 510	$ 325
최ㅇㅇ외3인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1과 기획행정실	원장 과장 사무관	10.02.14~10.02.20	아부다비/싱가포르	FATF 총회/실무회의	₩ 10,640,000	$ 2,170	$ 1,932	$ 910
최ㅇㅇ외1인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10.02.28~10.03.06	몽골(울란바토르)	MOU 체결을 위한 몽골 고위급 협의	₩ 2,850,000	$ 486	$ 392	$ 280
김ㅇㅇ	기획행정실	사무관	10.03.09~10.03.14	UAE(모리셔스)	에그몽 실무그룹 회의	₩ 3,130,000	$ 280	$ 308	$ 210
강 ㅇㅇ외2인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팀장 사무관	10.05.23~10.05.26	프랑스(파리)	OECD 재정위원회 소그룹 회의 참석	₩ 9,000,000	$ 1,760	$ 1,530	$ 666
박ㅇㅇ외1인	심사분석실	실장	10.05.23~10.05.26	일본(동경)	심사분석 업무 개선 회의	₩ 1,130,000	$ 885	$ 696	$ 364
송ㅇㅇ외1인	제도운영과	과장	10.05.23~10.05.31	워싱턴, 뉴욕, 라스베	카지노 검사체계 구축방안	₩ 7,560,000	$ 1,458	$ 1,740	$ 800
이 ㅇㅇ외2인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실장 사무관	10.06.210.07.04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제21기 3차 FATF 총회	₩ 8,640,000	$ 1,860	$ 1,568	$ 89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최 ○○ 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원장 팀장 사무관	10.06.26~10.07.04	콜롬비아(카르타헤나)	제18차 에그몽 그룹 연차 총회	₩ 19,980,000	$ 2,218	$ 1,788	$ 1,300
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illegible]	원장 사무관 [illegible]	10.07.11~10.07.17	싱가포르	제13차 APG총회	₩ 4,030,000	$ 1,751	$ 1,370	$ 600
차○○	기획행정실	사무관	10.08.22~10.08.27	싱가포르	APG/IMF 상호평가자 워크숍	₩ 940,000	$ 475	$ 354	$ 310
강○○	심사분석1과	사무관	10.10.03~10.10.09	홍콩	홍콩 경찰청 '2010 금융조사과정'참석	₩ 580,000	$ 870	$ 567	$ 340
최 ○○외4인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1과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원장 과장 사무관 사무관	10.10.17~10.10.22	프랑스(파리)	제22기 제1차 FATF 총회	₩ 16,780,000	$ 3,660	$ 2,557	$ 1,170
서○○	은행과	사무관	10.10.17~10.10.23			₩ 2,665,400	$ 725	$ 567	$ 340
한○○외1인	기획행정실 [illegible]	사무관 [illegible]	10.10.24~10.10.31	방글라데시	APG 유형론 워크숍 참석	₩ 5,600,000	$ 670	$ 567	$ 642
최○○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10.11.08~10.11.11	미국(워싱턴)	선진 AML/CFT 체계 구축방안 협의를 위한 FinCEN 등 방문	₩ 7,280,000	$ 410	$ 532	$ 160
최○○ 외1인	심사분석실 [illegible]	실장 사무관	10.11.14~10.11.21	프리키공화국(테이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유형론에 관한 2010 년도 FATF-에그몽그룹 전문가 회의 참석	₩ 12,400,000	$ 976	$ 1,264	$ 690
조○○ 외1인	은행과	사무관				₩ 4,796,200	$ 380	$ 472	$ 240
이 ○○외1인	기획행정실 [illegible]	실장 사무관	10.12.06~10.12.11	홍콩	FATF 전문가 회의	₩ 2,020,000	$ 1,555	$ 1,316	$ 455
변○○	행정안사과	주무관	10.12.06~10.12.08			₩ 606,000	$ 268	$ 387	$ 104
이 ○○외1인	기획행정실 [illegible]	실장 사무관	11.01.27~11.01.30	프랑스(파리)	제4차 상호평가 이행경과 보고 관련 FATF 사무국 협의 참석	₩ 8,050,000	$ 622	$ 752	$ 260
이 ○○외1인	심사분석실	팀장	11.02.19~11.02.26	호주(시드니)	선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 5,530,000	$ 936	$ 760	$ 488
김○○외3인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실장 사무관 사무관	11.02.19~11.02.26	프랑스(파리)	FATF 제22기 제2차 총회 참석	₩ 11,840,000	$ 3,190	$ 2,430	$ 900
차○○	기획행정실	사무관	11.02.28~11.03.03	미국(워싱턴)	해적 자금 차단 관련 전문가 회의 참석	₩ 2,030,000	$ 435	$ 324	$ 120
금○○	기획행정실	사무관	11.03.13~11.03.20	아로바	에그몽 그룹회의 참석	₩ 2,950,000	$ 725	$ 567	$ 210
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 2,950,100	$ 725	$ 567	$ 210
김○○	기획행정실	사무관	11.03.13~11.03.20	케이프타운	FATF 전문가 회의 참석	₩ 2,120,000	$ 475	$ 472	$ 240
최○○외2인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실장 팀장	11.04.09~11.04.17	미국(워싱턴)	FinCEN 회의 참석	₩ 18,500,000	$ 3,582	$ 2,889	$ 945
송○○	제도운영과	과장	11.04.24~11.04.29	스페인/영국	카지노·금융회사 AML/CFT 감독·검사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3,640,000	$ 480	$ 420	$ 180
김○○외1인	금융정보분석원 [illegible]	원장 사무관	11.05.05~11.05.13	홍콩/호주/피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회의개최 및 피지 네팔과의 협력 MOU 체결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	₩ 10,070,000	$ 1,450	$ 1,422	$ 630
이○○	기획행정실	팀장	11.05.11~11.05.13	홍콩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회의개최 및 피지 네팔과의 협력 MOU 체결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	₩ 610,000	$ 90	$ 243	$ 290
김○○	기획행정실	사무관	11.05.11~11.05.13	프랑스(파리)	FATF 전문가 회의 및 WGTM 회의 참석	₩ 1,900,000	$ 1,015	$ 729	$ 270
최○○외2인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illegible]	실장 사무관 [illegible]	11.06.17~11.06.27	멕시코	FATF 제22기 제3차 총회 참가	₩ 12,850,000	$ 2,414	$ 1,972	$ 920
조○○	은행과	사무관				₩ 2,438,900	$ 760	$ 590	$ 30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박ㅇㅇ	심사분석1과	과장	11.07.10~11.07.17	아르메니아	제19차 에그몽 연차총회 참석	₩ 3,680,400	$ 535	$ 352	$ 240
김ㅇㅇ	기획행정실	사무관				₩ 3,634,900	$ 348	$ 308	$ 222
권ㅇㅇ	심사분석실	팀장	11.07.17~11.07.24	인도 코치	제14차 APG 연차총회 참석	₩ 3,608,900	$ 800	$ 546	$ 245
이ㅇㅇ	기획행정실	5급				₩ 3,421,900	$ 655	$ 413	$ 247
김ㅇㅇ	기획행정실	5급				₩ 4,327,600	$ 524	$ 413	$ 249
오ㅇㅇ	심사분석실	5급				₩ 3,421,900	$ 685	$ 413	$ 243
김ㅇㅇ	기획행정실	5급	11.09.06~11.09.10	프랑스 파리	WGTM Intersessional 회의 참석	₩ 2,465,300	$ 330	$ 405	$ 168
이ㅇㅇ	심사분석실	5급	11.09.25~11.10.01	이탈리아 로마	WGEI Intersessional 회의 참석	₩ 1,986,900	$ 620	$ 413	$ 210
김ㅇㅇ	기획행정실	실장	11.10.23~11.10.29	프랑스 파리	FATF 제23기 제1차 총회 참석	₩ 6,600,100	$ 237	$ 243	$ 90
이ㅇㅇ	기획행정실	5급				₩ 2,446,000	$ 760	$ 486	$ 180
김ㅇㅇ	기획행정실	5급				₩ 2,292,400	$ 975	$ 567	$ 210
최ㅇㅇ	심사분석실	5급				₩ 2,290,000	$ 760	$ 486	$ 180
김ㅇㅇ	심사분석3과	5급	11.10.23~11.10.29	홍콩	Financial Investigation Course 참석	₩ 649,500	$ 850	$ 486	$ 214
권ㅇㅇ	심사분석3과	검감				₩ 648,800	$ 850	$ 402	$ 210
이ㅇㅇ	심사분석실	실장	12.01.08~12.01.15	프랑스 파리	FATF 제23기 특별총회 참석	₩ 6,335,700	$ 950	$ 798	$ 265
이ㅇㅇ	기획행정실	5급				₩ 2,166,300	$ 1,050	$ 729	$ 310
차ㅇㅇ	기획행정실	5급				₩ 2,881,900	$ 900	$ 648	$ 258
이ㅇㅇ	기획행정실	팀장	12.01.29~12.02.05	필리핀 마닐라	에그몽 그룹 실무회의 참가	₩ 681,600	$ 384	$ 259	$ 210
금ㅇㅇ	기획행정실	5급				₩ 681,600	$ 384	$ 259	$ 330
고ㅇㅇ	심사분석2과	5급				₩ 681,600	$ 384	$ 259	$ 210
정ㅇㅇ	심사분석1과	6급				₩ 681,600	$ 360	$ 210	$ 182
박ㅇㅇ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12.02.13~12.02.19	프랑스 파리	FATF 제23기 2차 총회 참석	₩ 6,333,500	$ 720	$ 665	$ 700
송ㅇㅇ	제도운영과	과장				₩ 2,378,100	$ 450	$ 405	$ 150
이ㅇㅇ	기획행정실	5급				₩ 2,463,900	$ 750	$ 567	$ 247
김ㅇㅇ	기획행정실	5급				₩ 2,164,700	$ 900	$ 648	$ 290
변ㅇㅇ	심사분석실	7급				₩ 2,463,900	$ 792	$ 536	$ 208
황ㅇㅇ	심사분석실	팀장	12.04.15~12.04.21	싱가포르	FATF WGEI 평가방법론 작성실무회의 참석	₩ 821,800	$ 517	$ 468	$ 251
이ㅇㅇ	기획행정실	5급				₩ 821,800	$ 647	$ 413	$ 273
신ㅇㅇ	심사분석2과	과장	12.04.24~12.04.29	말레이시아	APG 실무회의 참석	₩ 820,100	$ 308	$ 220	$ 150
남ㅇㅇ	기획행정실	5급				₩ 820,100	$ 308	$ 220	$ 150
박ㅇㅇ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12.05.27~12.06.01	미얀마,태국,베트남	동남아 후발국 기술지원 및 MOU체결	₩ 2,823,000	$ 416	$ 399	$ 240
김ㅇㅇ	기획행정실	5급				₩ 1,744,700	$ 1,805	$ 243	$ 345
금ㅇㅇ	기획행정실	5급	12.05.28~12.06.01	미얀마	동남아 후발국 기술지원	₩ 1,484,600	$ 338	$ 220	$ 301
차ㅇㅇ	기획행정실	5급				₩ 1,484,600	$ 338	$ 220	$ 150
이ㅇㅇ	기획행정실	에디터				₩ 1,484,600	$ 338	$ 220	$ 150
권ㅇㅇ	심사분석실	팀장	12.06.13~12.06.23	이탈리아 로마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제23기 3차 총회 및 OECD Tax and Crime Forum 2012 참가	₩ 1,948,700	$ 1,219	$ 858	$ 385
박ㅇㅇ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12.06.17~12.06.23	이탈리아 로마	FATF 제23기 3차 총회 참석	₩ 5,465,400	$ 608	$ 693	$ 280
김ㅇㅇ	기획행정실	실장				₩ 2,036,800	$ 675	$ 413	$ 210
이ㅇㅇ	기획행정실	5급				₩ 2,199,400	$ 944	$ 531	$ 332
이ㅇㅇ	기획행정실	에디터				₩ 2,135,700	$ 809	$ 472	$ 264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이ㅇㅇ	심사분석실	실장	12.07.07~12.07.15	시아 상트페테르부르	제20차 에그몽 연차총회 참석	₩ 5,976,500	$ 1,266	$ 891	$ 360
송ㅇㅇ	심사분석실	5급				₩ 1,979,600	$ 829	$ 531	$ 270
김ㅇㅇ	기획행정실	5급				₩ 2,128,700	$ 968	$ 531	$ 270
차ㅇㅇ	기획행정실	5급				₩ 2,128,700	$ 830	$ 531	$ 287
박ㅇㅇ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12.07.14~12.07.21	호주 브리즈번	제15차 APG 연차총회 참석	₩ 4,104,100	$ 435	$ 432	$ 240
임ㅇㅇ	심사분석1과	과장				₩ 2,332,400	$ 231	$ 352	$ 260
이ㅇㅇ	기획행정실	5급				₩ 2,279,300	$ 1,846	$ 352	$ 314
남ㅇㅇ	기획행정실	5급				₩ 2,431,000	$ 965	$ 264	$ 265
이ㅇㅇ	기획행정실	에디터				₩ 2,332,400	$ 777	$ 308	$ 265
김ㅇㅇ	공자위 사무국	사무관	10.07.18~10.07.21	몽골	몽골 금융감독기구 및 부실채권정리기구 업무협의	₩ 1,087,100	₩223,516	₩177,851	₩300,423
이ㅇㅇ	정책개발팀	서기관				₩ 1,087,100	$ 186.00	$ 148.00	$ 240.00
박ㅇㅇ	공자위 사무국	사무관	10.10.04~10.10.07	홍콩	공적자금 투입기관 민영화를 위한 해외법인 매도자 실사지원	₩ 571,100	₩494,116	₩368,032	₩283,975
유ㅇㅇ	공자위 사무국	주무관				₩ 571,100	₩439,593	₩304,422	₩254,441
김ㅇㅇ	공자위 사무국	사무관	10.12.20~10.12.25	워싱턴, 뉴욕	미국의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정책조사	₩ 2,583,300	₩500,250	₩465,750	₩172,500
남ㅇㅇ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 2,584,287	$ 435.00	$ 405.00	$ 150.00
경ㅇㅇ	공자위 사무국	사무관	10.12.20~10.12.24	영국	영국의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정책조사	₩ 1,964,500	₩500,250	₩465,750	₩172,500
박ㅇㅇ	공자위 운용기획팀	팀장(4급)	11.9.13~11.9.15	홍콩(HSBC, 로스차일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매각관련 해외 투자자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 648,800	$ 176	$ 243	$ 90
김ㅇㅇ	공자위 운용기획팀	행정사무관				₩ 648,800	$ 176	$ 243	$ 90
유ㅇㅇ	공자위 운용기획팀	행정주사	11.12.5~11.12.9	피지(APEC FRTI)	ADB와 피지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하는 세미나 참	₩ 1,649,300	$ 284	$ 150	$ 130
박ㅇㅇ	공자위 운용기획팀	팀장(4급)	11.12.18~11.12.21	독일(FMSA)	독일 금융시장안정기금 운용실태 및 현황조사	₩ 1,529,700	$ 232	$ 236	$ 120
유ㅇㅇ	공자위 운용기획팀	행정주사보				₩ 1,529,700	$ 210	$ 196	$ 104
김ㅇㅇ	공자위 회수관리팀	행정주사				₩ 1,529,700	$ 210	$ 196	$ 104
김ㅇㅇ	공자위	국장(일반고위공무원)	12.3.27~11.3.31	미국 워싱턴	미국 공적자금 투입,회수사례 및 Dodd-Frank법에 따른 금융회사 합병 관련 규제변화 조사	₩ 7,533,600	$ 669	$ 535	$ 175
송ㅇㅇ	공자위 운용기획팀	행정사무관				₩ 2,255,200	$ 528	$ 405	$ 150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8.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현황

□ 신·기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 ('11년) 17.2조원 → ('12년) 21.7조원

① (기보) 창업멘토링 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등 특화된 보증 프로그램 운영 중

② (신보) 창업기업 보증지원프로그램 및 청년창업 특례보증등을 운영 중

③ (정책금융공사) '11년 창업기업 전용펀드(397억원 규모)를 조성하여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o 창업기업 전용펀드 외 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한 중소벤처투자펀드(2조 1,406억원 규모)를 통해서도 창업기업 지원 중

④ (기업은행) 창업 후 3년이내 대출을 기준으로 IBK청년전용창업대출, IBK청년드림대출 등의 전용 대출 상품을 운영 중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19. 신용회복위원회내 '재창업지원위원회' 일반 현황, 활동 사항 및 회의록

1. 일반현황

□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설치

○ (구성)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학계, 법조계, 금융 등 관련 전문인사가 참여

-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겸직

○ (역할) 재창업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채무감면 및 신규자금 지원을 결정

○ (지원대상) 재창업을 희망하는 실패한 중소기업인*으로서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법인)의 대표이사 등

2. 활동사항

□ 12.4.2일 「재창업지원위원회」 신설 이후 '12.8월말까지 실패한 중소기업인 392명이 재창업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 이 중 42명이 자금지원을 신청, 3명에 대하여는 지원 완료

3. 회의록

□ 재창업지원위원회는 매월 1~2회 회의를 개최하여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의 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지원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그간의 회의 개최 경과는 별도 송부토록 하겠음

제2012-001차 재창업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1. 일　　시 : 2012. 5. 8(화), 16:00 ~ 16:40

2. 장　　소 : 사무국 회의실

3. 출석심의위원 : 재창업지원위원회 위원 5명
(위원장, 이은재, 박철오, 이홍우, 김현태 위원)

4. 참 석 자 : 심의지원팀장

5. 회 의 결 과

□ 재창업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정(案)

제2012-02차 재창업지원위원회 회의결과

1. 일　　시 : 2012. 5. 22(화), 14:30 ~ 15:40

2. 장　　소 : 사무국 회의실

3. 출석심의위원 : 재창업지원위원회 위원 5명
(위원장, 이은재, 박철오, 이홍우, 김현태 위원)

4. 참 석 자 : 심의지원팀장

5. 회 의 결 과

□ 신용회복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심의의결의 안

제2012-03차 재창업지원위원회 회의결과

1. 일　　시 : 2012. 6. 5 (화), 14:30 ~ 15:30

2. 장　　소 : 사무국 회의실

3. 출석심의위원 : 재창업지원위원회 위원 5명
(위원장, 이은재, 박철오, 이홍우, 김현태 위원)

4. 참 석 자 : 심의지원팀장

5. 회 의 결 과

□ 신용회복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심의의결의 안

제2012-04차 재창업지원위원회 회의결과

1. 일　　시 : 2012. 6. 19 (화), 14:30 ~ 15:30

2. 장　　소 : 사무국 회의실

3. 출석심의위원 : 재창업지원위원회 위원 4명
(이은재 부위원장, 박철오, 이홍우, 김현태 위원)

4. 참 석 자 : 심의지원팀장

5. 회 의 결 과

□ 신용회복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심의의결의 안

제2012-05차 재창업지원위원회 의사록

1. 일　　시 : 2012. 7. 3 (화), 16:00 ~ 17:35

2. 장　　소 : 사무국 회의실

3. 출석심의위원 : 재창업지원위원회 위원 4명
(이은재 부위원장, 박철오, 이홍우, 김현태
위원: 대리인 주상식)

4. 참 석 자 : 심의지원팀장

5. 회 의 경 과

□ 신용회복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심의의결의 안

제2012-06차 재창업지원위원회 의사록

1. 일　　시 : 2012. 7. 17 (화), 16:00 ~ 17:05

2. 장　　소 : 사무국 회의실

3. 출석심의위원 : 재창업지원위원회 위원 5명
(위원장, 이은재 부위원장, 박철오, 이홍우 대리인 이종원, 김현태 대리인 최덕영)

4. 참 석 자 : 심의지원팀장

5. 회 의 경 과

□ 신용회복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심의의결의 안

제2012-07차 재창업지원위원회 의사록

1. 일　　시 : 2012. 7. 31 (화), 16:00 ~ 17:25

2. 장　　소 : 사무국 회의실

3. 출석심의위원 : 재창업지원위원회 위원 4명
(이은재 부위원장, 박철오, 이종원, 최덕영 대리인 주상식)

4. 참 석 자 : 심의지원팀장

5. 회 의 경 과

□ 신용회복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심의의결의 안

제2012-08차 재창업지원위원회 의사록

1. 일　　시 : 2012. 8. 14 (화), 16:00 ~ 17:10

2. 장　　소 : 사무국 회의실

3. 출석심의위원 : 재창업지원위원회 위원 4명
(이은재 부위원장, 박철오, 이종원, 최덕영 위원)

4. 참 석 자 : 심의지원팀장

5. 회 의 경 과

□ 신용회복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심의의결의 안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20. '복합금융프로그램' 구체 설명자료 및 실적

1. 도입 배경

□ 중소기업은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취약, 투자수요 부족 등으로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의존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융자 방식의 자금조달이 균형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

2. 추진 방안

□ 정책금융기관(정금공, 산은, 기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금융 프로그램 도입('12.5월)

○ (지원 대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유망 중소기업

○ (지원 방식) 개별 기업의 자금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투자 및 대출 시행

- 기업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

○ (지원 규모) '12년중 총 **5,000**억원 규모로 지원

* 복합금융 지원실적('12.5~8월) : 2,753억원(지원계획 대비 55% 공급)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21.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KONEX)' 신설방안 설명자료

□ 별첨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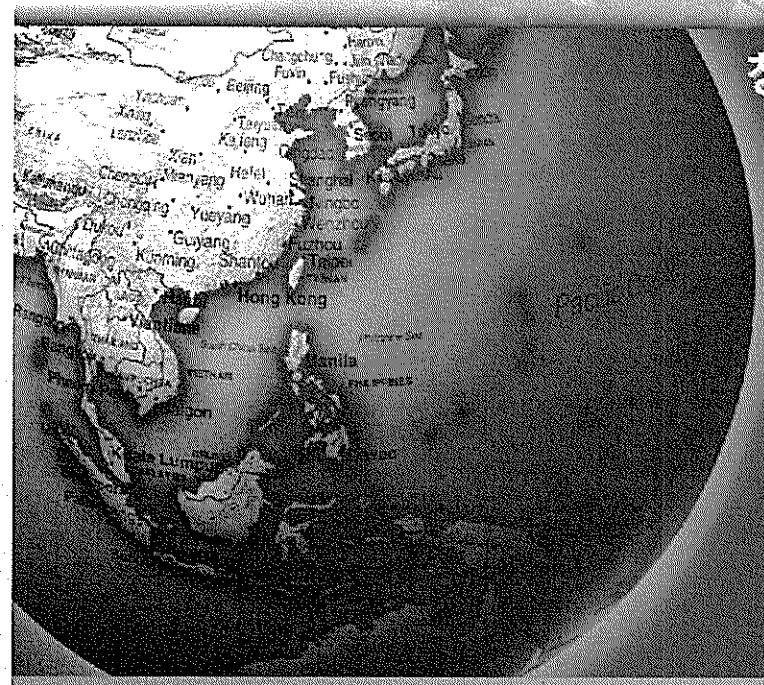

창업·초기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코넥스시장 신설방안

2012.8.2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김 학 수

목 차

1 추진 배경

2 코넥스시장의 구조에 대한 정책고민

3 코넥스시장 신설 필요성

4 진입요건으로 본 코넥스시장의 포지셔닝

5 전문투자자 참여 확대

6 지정자문인의 역할 강화

7 시장감시기능 강화

8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1. 추진 배경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은행대출에 편중 → 재무구조 악화, 자금조달이 은행의 수익성 변화 등에 민감

%	은행자금	정책자금	비은행 금융기관	주식	회사채	사채(私債)	해외자금 차입 등
'11년	83.3	10.6	0.9	1.1	3.2	0.4	0.6

- **OECD**도 **Basel III 도입 등 은행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은행대출 이외에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의 중요성**을 강조(OECD Journal, 2010-1)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활용도가 저조한 원인

①**영세한 경영규모**(25.8%), **상장요건 미달**(28.0%), **복잡한 관련 절차**(24.5%) 등이 주요 원인
('11 중소기업중앙회)

②**과중한 상장 및 상장유지비용**도 자본시장 접근의 제약 요인

상장 및 상장유지비용 ('06 코스닥협회 설문조사: 82개 기업 응답)

- **직접비용(1.3억원)** : 연부과금, 상장법인협의회비, 증권신고서 비용 등
- **간접비용(3.5억원)** : 공시전담인력 임금.교육비, 공시시스템 운영비, 사업보고서 감사비용, 사외이사 선임비, 감사위원회 운영비 등

1. 추진 배경 (계속)

③ **성장초기~상장이전**의 증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에 공백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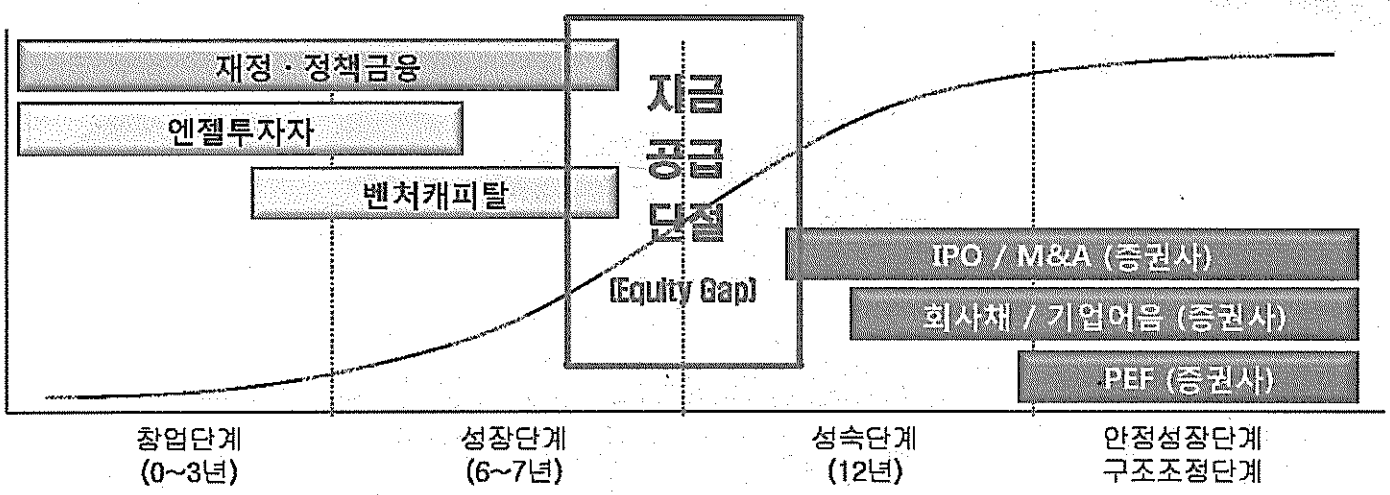

- 성장형 기업에 대한 **VC의 투자기간**(6~7년)과 **코스닥 상장까지의 소요기간**(12년) **불일치**
  * 설립 후 코스닥 상장 평균 소요기간: ('04)9.3년 → ('10)12년
- 금융투자회사의 **IB업무 활성화 미흡** 등으로 유망 증소기업 발굴 및 증권발행의 주선·중개 부진

➡ **초기단계에서 지원되는 엔젤 · 벤처캐피탈, 정책금융이 자본시장에서의 회수와 단절 →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의 환류.재투자에 장애**

[참고] 국가별 증권시장 유형 비교

(단위 : USD bil., '10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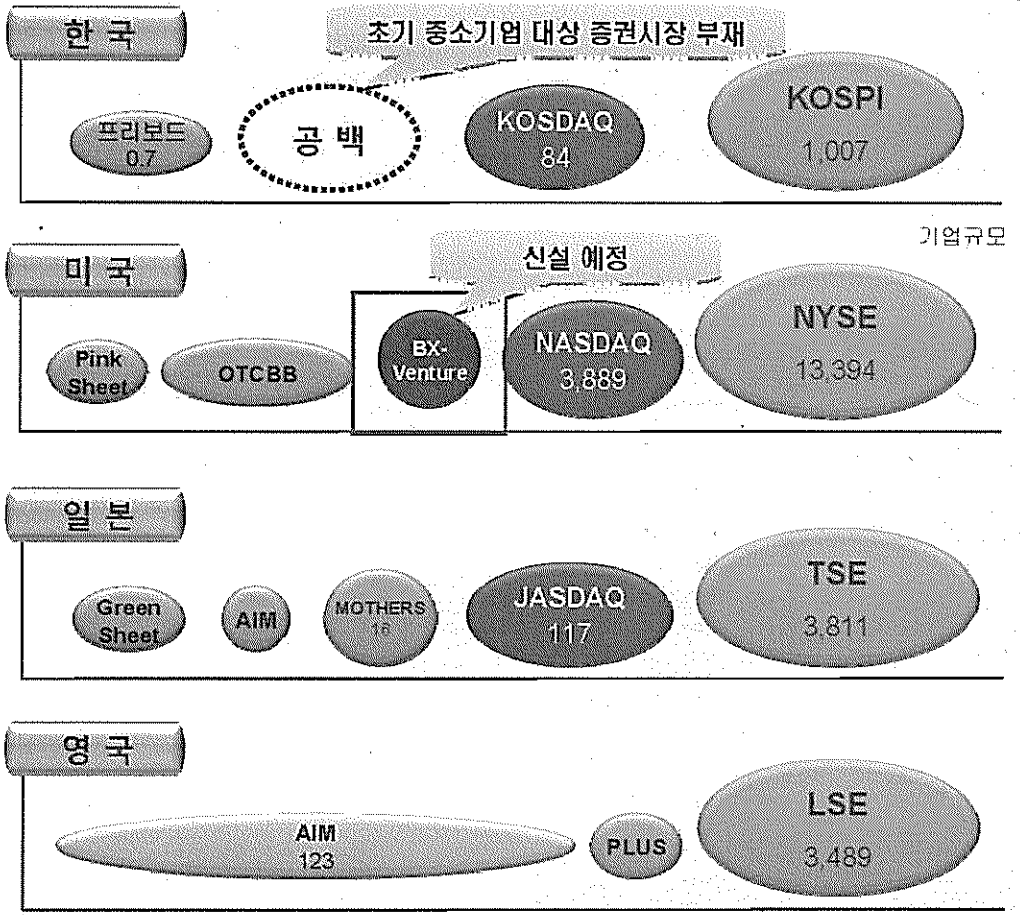

2. 코넥스시장의 구조에 대한 정책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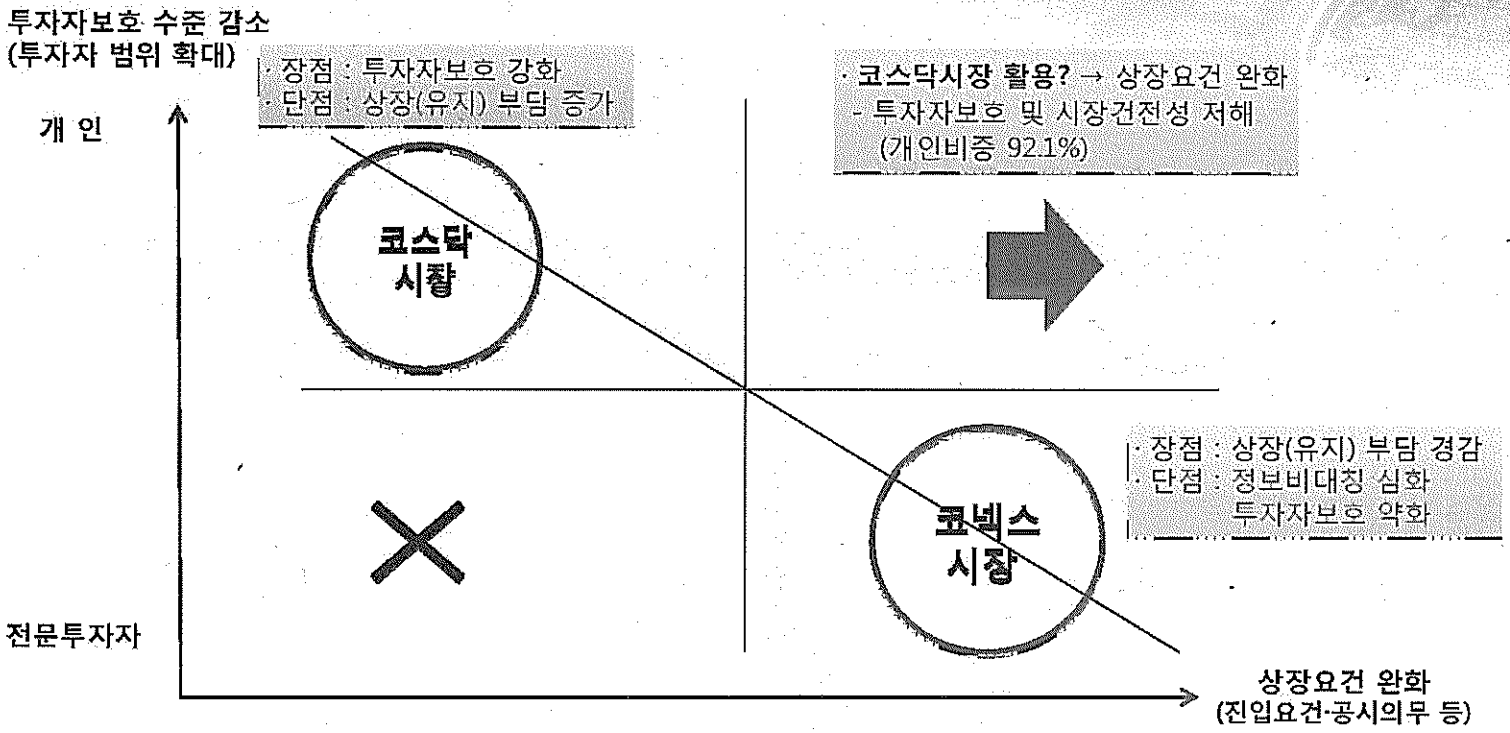

▮ 상장요건 완화정도와 투자자보호(투자자 범위) 수준의 상충관계

■ 진입요건, 공시의무 등 상장유지비용 완화 → 투자자 보호수준 감소 → 투자자범위 축소 (전문투자자)

2. 코넥스시장의 구조에 대한 정책고민 (계속)

중소기업 애로 해소

■ **상장(유지)비용 완화**

· 기업실적 급변, 취약한 재무구조 등 경영현실 감안

투자자 범위 조정

■ **전문투자자로 시장참가자 제한**

· 정보 취득·분석능력 및 투자전문성 고려

상장요건 완화에 따른 정보비대칭 심화 ➡ 지정자문인 제도를 통해 해결

지정자문인 역할

■ **신속한 상장지원 및 정보 제공**

[상장 이전] 기업 발굴→상장적격성 심사, 전문투자자에 주식 매도 주선

[상장 이후]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IR 개최, 유동성 공급업무(LP) 수행

지정자문인 자격요건

■ **증권사가 우선적인 자격부여 대상**

- 상장 핵심업무인 인수·주선업무는 **「자시법」상 투자매매·중개업자만 가능**

■ **벤처캐피탈** 등에 중소기업 발굴 역할 등 부여

3. 코넥스시장 신설 필요성 : 코스닥시장 활용가능성

■ 중견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 **높은 진입문턱***으로 인해 **초기 중소기업 진입 곤란**

* 코스닥 진입요건(벤처기업) : 매출액 50억 이상, 자기자본 15억원 이상 등

※ 신규상장 기업의 규모 (평균, 억원) : 매출액 325('07) → 594('11), 자본총계 149('07) → 259('11),

■ **신규상장** 및 **벤처기업 상장비중 감소** →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약화**

	'00~02년(합계)	'09~11년(합계)
신규상장기업수	497사	153사
벤처기업/일반기업 상장	248%(354사/143사)	206%(103사/50사)
상장폐지기업수	67사	197사

※ 코스닥과 AIM(영)의 중소기업(시가총액 200억 이하) 상장기업수 및 비중('11년말)

코스닥 154사(14.9%) < AIM(영) 396사(35.8%)

➡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중소기업 주식시장**으로 성장한 코스닥시장의 체계를 흔들기보다 **중견 중소기업시장으로의 육성이 바람직** →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 발전 방안 마련** (예: 대표성 있는 우량기술주 유치, 시장건전성 제고 등으로 코스피시장과 동등한 위상 정립)

* 시총 기준 세계 5위, 거래대금 기준 세계2위 ('10년말)

[참고] 코스닥 상장요건 변화

- 2000년과 2010년의 코스닥 벤처기업 상장요건을 비교해보면, **경영성과, 감사의견, 소유구조에 대한 요건이 새로이 추가**되었음

- 상장요건의 강화는 기술주 버블 붕괴에 따른 **상장폐지의 빈발, 지속적인 투자자보호문제 발생으로 인한 결과**

〈 코스닥 벤처기업 상장요건 비교 〉

상장요건	2000년	2010년
자본금	없음	자기자본 15억 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이익규모, 매출액, 기준시가총액	없음	[택일] ① ROE 5%, ② 당기순이익 10억, ③ 최근 매출액 50억 원 및 기준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
자본상태	없음	자본잠식이 없을 것
경영성과	없음	최근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시현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	최근 사업연도 적정
최대주주 등 지분변동 제한	예비심사청구일 전 6개월간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비율의 변동이 없을 것	심사청구일 이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 금지

3. 코넥스시장 신설 필요성 : 프리보드 활용가능성

프리보드 개선보다는 코넥스시장 신설이 효율적

- **프리보드에는 이미 개인투자자가 다수 참여(96.2%)하여 투자자 범위 제한 곤란**

- **프리보드 부진사유**(세제, 매매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장 신설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

부진사유	프리보드	코넥스시장
①세제(예: 거래세)	· 장외시장 : 0.5%	· 장내시장 : 0.3%
②매매방법	· 상대매매방식 → 가격발견기능 저하	· 경쟁매매방식 사용
③시장관리	· 불공정거래규제 미적용 등 시장관리 미흡	· 불공정거래규제 적용 · 거래소의 시장감시 노하우 활용
④성장지원	-	· 코스닥과 연계 운용 용이

➡ **프리보드는 코넥스시장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개선 · 처리방안 검토**

▪ 기업을 지원하는 **다층적인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프리보드***는 **정규시장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상장기업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 프리보드는 현재 형식적 진입요건(감사의견 적정 한정,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등)만을 유지

4. 진입요건으로 본 코넥스시장의 포지셔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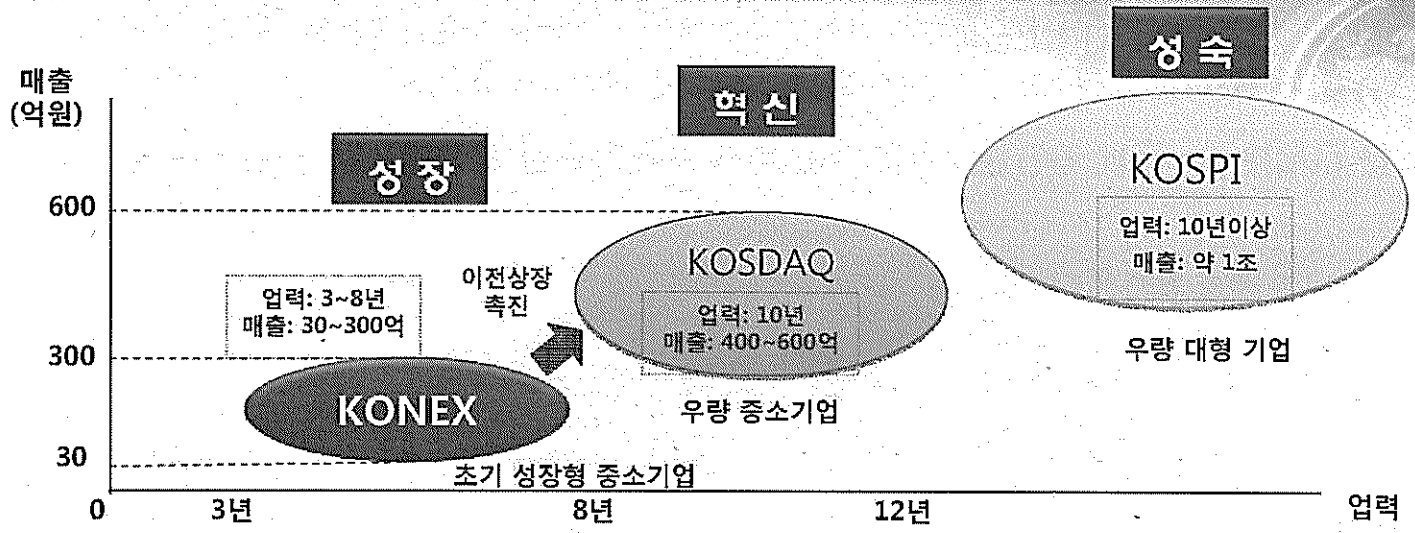

- **성장성 있는 모든 업종(Growth Enterprise)에 문호 개방** → 사회적 기업도 포용 가능
- **투자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진입요건 설정**
  - **감사의견 적정, 규모/재무/경영성과** 요건* **선택적 충족** 등

    * 예) 코스닥 진입요건의 1/10~1/3 수준의 자기자본, 매출 또는 당기순이익 실현
  - 코스닥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은 코넥스시장 상장 불허
- 성장초기기업의 불확실한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상장특례**(예: R&D 중심기업)**를 두는 방안 검토**

[참고] 코넥스 시장 상장수요

코넥스의 상장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 (업력 3~10년)

- **외부감사 대상(자산 70억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1.3만社)**

- **비상장 벤처기업(2.6만社) 및 이노비즈기업(1.7만社)**

  * 벤처·이노비즈 중복기업: 8천社

- **창업투자회사 투자기업(2.3천社, '11말) 및 신기술금융사 투자기업*(1.1천社, '10.9말)**

  * 투자잔액: 창투사 3.6조원 / 신기술금융사 1.2조원(상장사 일부 포함)

- **코스닥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8,600여개 비상장기업* 중 총자산회전율**과 ROA 모두 코스닥기업 상위 50%에 해당하는 760개사**

  → 이들 우량 비상장기업은 자기자본이 부족하고 부채비율이 높아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이 절실**한 것으로 평가

  * 재무제표가 이용가능한 비상장기업(16,653사)을 대상으로 추정(자본연, '12.4월)
  **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이 높을수록 자금수요가 큼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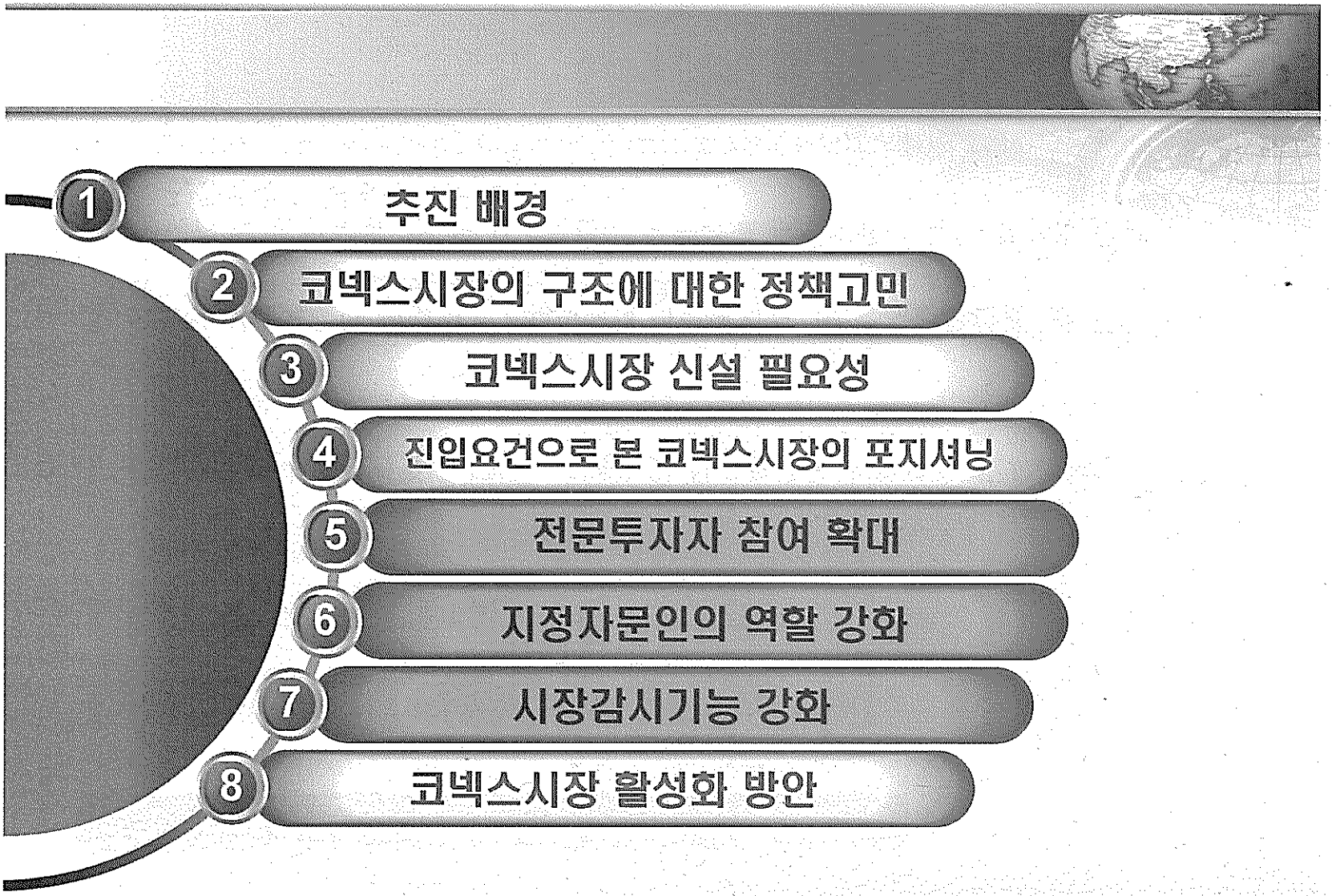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2 코넥스시장의 구조에 대한 정책고민
3 코넥스시장 신설 필요성
4 진입요건으로 본 코넥스시장의 포지셔닝
5 전문투자자 참여 확대
6 지정자문인의 역할 강화
7 시장감시기능 강화
8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5. 전문투자자 참여 확대

기관투자자의 인내하는 모험자본(Patient Capital) 공급

- 코넥스는 전문투자자 등으로 한정되는 **기관투자자**(연기금, VC, 펀드, 증권사 자기자본투자 등) 시장으로 **유동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해외 신시장도 참여자는 대부분 기관 중심의 장기투자 성향(Buy & Hold)으로 유동성이 높지 않음

* 해외 신시장 매매회전율('10년, %) : 영국AIM(11), 캐나다TSX-V(46), 싱가폴Catalist(74) < 코스닥(488)

* 영국 AIM의 투자자 비중(%) : 기관투자자(50), 개인투자자(25), 기타(25)

시장 참여 전문투자자 확대

- **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

* 금융투자회사, 정책금융기관, 은행·보험, 연기금 등

  - 개인은 원칙적으로 펀드(공모펀드 제외)를 통한 투자만 허용

- **벤처캐피탈**(108), **HF가입 개인**(50)*, **엔젤투자자**(1,500~2,000)** 등을 추가

* 헤지펀드 가입자격(5억원투자) 충족 개인: 약10만명 추정(자본연), ** 벤처캐피탈협회 추정

투자참여 유도를 통한 시장조성

- **성장가능성 높은 중소기업 상장으로 시장 조성**

※ 국내 투자조합 수익률

  - '10년말 현재 해산된 투자조합(총 337개)의 결성연도별 수익률은 평균 8.80%
    - '05년이후 결성된 투자조합의 수익률은 상승 추세 ('00 ~ '04년(IT버블기) 평균 4.51% → '05 ~ '10 평균 12.38%)

※ 영국 벤처캐피탈펀드 수익률(British VC Association)

  - 2010년 VCF 수익률(IRR)은 평균 18.6%
    (과거 3년 연평균 수익률 6.7%, 5년 16.3%, 10년 14.6%)

5. 전문투자자 참여 확대 (계속)

시장 참여 전문투자자 확대		
	시장참여자	개수(추정)
전문투자자 (기관)	국가	1
	정책금융공사 등 공기업	11
	연기금	65
	은행	16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103
	보험	38
	금융투자업자	140
	주권상장법인	1,830
전문투자자 (신청)	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이상	12
추 가	벤처캐피탈	108
	헤지펀드 가입 개인	50*
	엔젤투자자	1,500~2,000**
	총 계	3,900~4,400

* 헤지펀드 가입자격(5억원투자) 충족 개인: 약10만명 추정(자본연)

** 벤처캐피탈협회 추정

6. 지정자문인의 역할 강화

지정자문인을 통한 적극적인 상장지원

- 우리 금융투자회사의 **IB역량 강화**를 통해 **지정자문인으로서 충분한 역할** 기대
  - IPO, 증권발행주선, M&A 등 **현재도 기초역량은 확보**
- 대형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의 전문화·특화 전략**으로 활용 가능
  - 개별 증권사가 특정 소수의 업계에 특화하여 멘토로서 1:1 밀착 지원
- **지정자문인의 책임을 명확히 조정**
  - 지정자문인 제도 도입에 따른 증권사 등의 법적 책임이 **기존의 제도하 주관사의 책임과 큰 차이는 없음**

➡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장기업, 지정자문인, 거래소간 역할분담 방안 도출**

시행초기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한 Two-track Approach

- **코넥스시장 상장은 지정자문인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초기에 **거래소 등이 직접 적격성 심사를 하여 상장**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

※ NASDAQ OMX가 '12년 개설 예정인 중소기업시장 BX-venture는 상장심사를 직접 관장할 계획

[참고] 주요 신시장 현황 : 유동성과 직접금융 [illegible]

◆ 신시장의 유동성은 주시장에 비해 낮고 직접금융비율은 주시장에 비해 높은 편임

거래소		직접금융비율		유동성	
주시장	신시장	주시장	신시장	주시장	신시장
TSX Group	TSX Venture	N/A	N/A	63%	46%
Osaka Securities Exchange	JASDAQ	0%	0%	66%	46%
Shenzhen SE	ChiNext	5%	13%	272%	208%
Korea Exchange	**KOSDAQ**	**1%**	**1%**	**147%**	**488%**
Hong Kong Exchanges	GEM	4%	10%	55%	94%
Tokyo SE Group	Mothers	1%	1%	99%	260%
Singapore Exchange	SGX Catalist	N/A	5%	45%	74%
London SE Group	AIM	N/A	9%	76%	11%
Deutsche Börse	Entry Standard	0%	N/A	114%	7%
NASDAQ OMX Nordic Exchange	First North	0%	0%	72%	51%
NYSE Euronext (Europe)	Alternext	2%	3%	69%	20%

- AIM의 경우 주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매우 적으나, 신시장들 중에서는 높은 직접금융비율을 보이고 있음
- KOSDAQ의 경우는 제일 높은 유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직접금융비율은 제일 낮은 경우에 속함
- 유동성의 차이는 개인투자자의 참여율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참고] 기존시장과 코넥스시장의 상장절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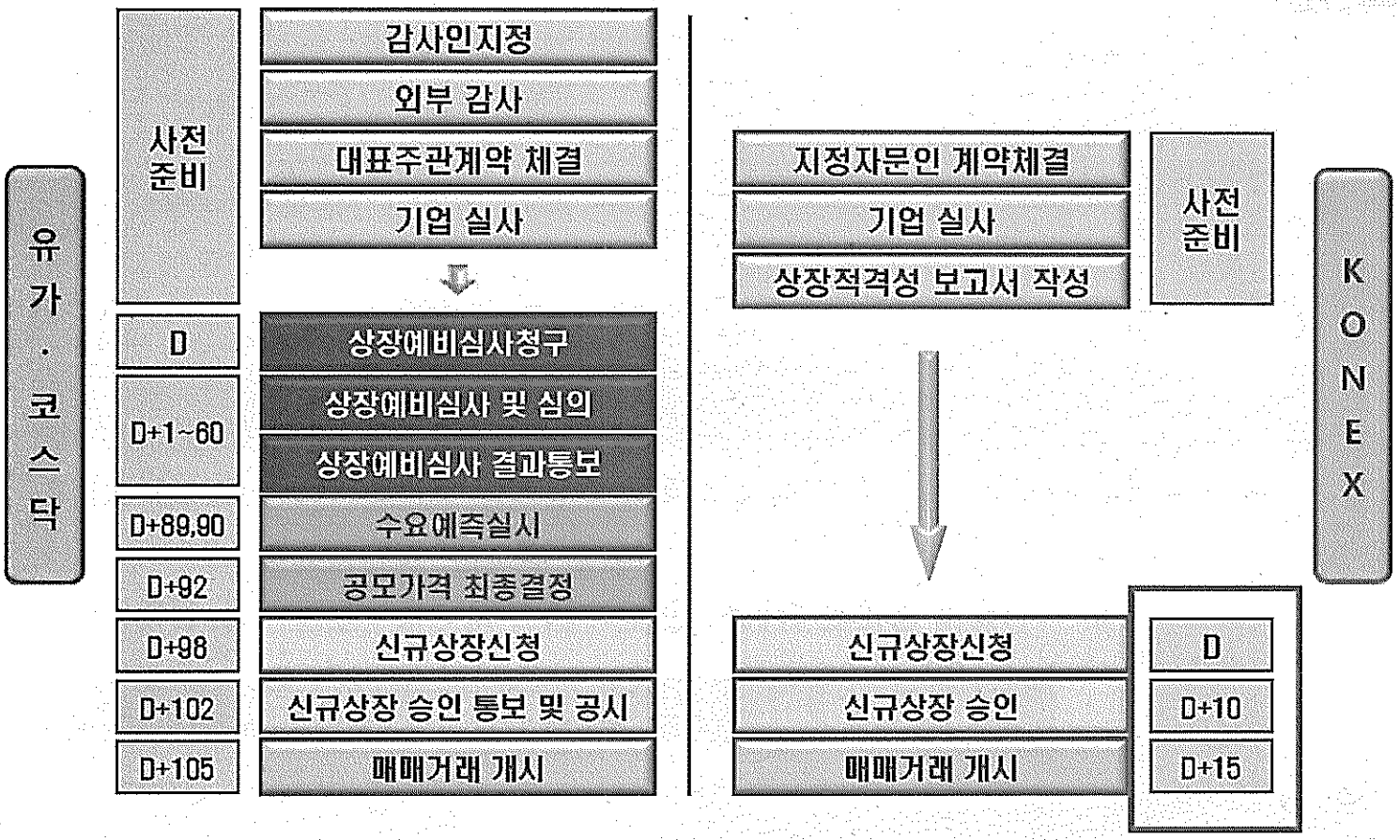

7. 시장감시기능 강화

상장유지비용 감소를 위해 공시 · 지배구조 규제 등을 완화

- **[발행공시]** 상장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 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 **[유통공시]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토록 하고 **분.반기보고서 제출은 면제**

공시사항		현행 주권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안)
발행공시	증권신고서	○	면 제*
정기공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	○	○
	분·반기보고서 (검토보고서 포함)	○	면제
수시공시	기업의 주요한 경영활동에 대한 공시 (예: 증자, 합병)	○ (약 70개 사항)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횡령·배임 등 건전성 저해행위로 축소

* 현행법 하에서도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없음

- **사외이사 설치 등 지배구조규제 완화를 검토**

7. 시장감시기능 강화 (계속)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감시활동은 강화

불공정거래 소지를 축소하기 위한 코넥스 시장 구조 설계

- **거래참가자 제한** : 거래참가자를 전문투자자로 한정
- **지정자문인의 기업보고서 제출** : 상장기업현황보고서 제출(예: 연2회)을 의무화
- **상장기업 IR의무화** : 기업내용, 사업성과 등 중요 투자판단 정보의 지속적 공시 유도

매매제도의 안정적 운영

- **코넥스 시장**은 유동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격급변을 방지할 수 있는 매매제도* 운영**

  * (원칙) 단일가 경쟁매매 → (거래 활발 종목) 연속경쟁매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 **KRX의 노하우와 시장인프라 활용**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불공정거래 소지 차단
- **횡령·배임·분식회계 기업을 조기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하여 투자자 피해 최소화

  * 반시장적 행위 기업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즉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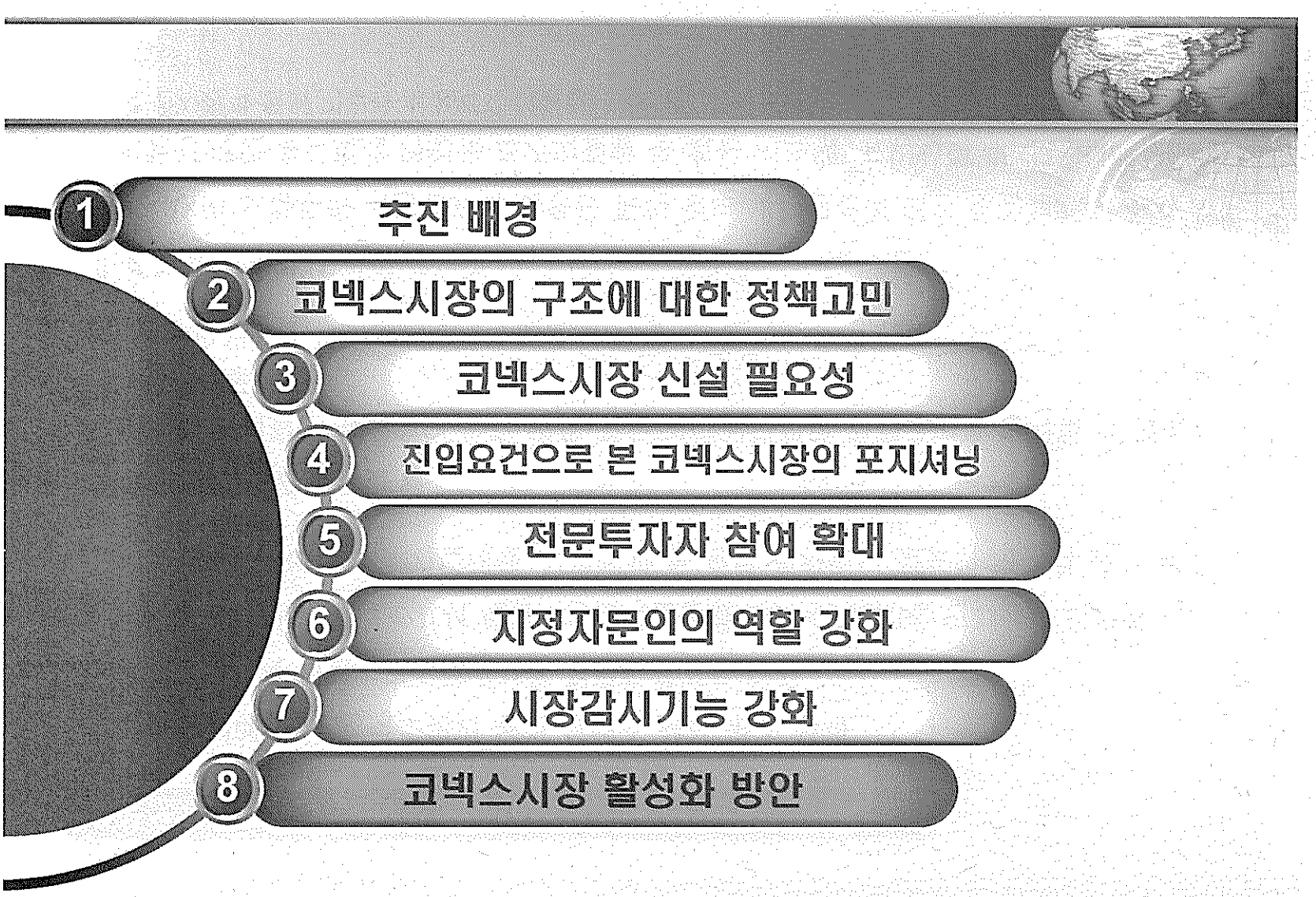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2 코넥스시장의 구조에 대한 정책고민
3 코넥스시장 신설 필요성
4 진입요건으로 본 코넥스시장의 포지셔닝
5 전문투자자 참여 확대
6 지정자문인의 역할 강화
7 시장감시기능 강화
8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8.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신속한 시장조성 추진

▮ **[정책금융기관 등의 역할] 상장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의 투자여력 적극 활용**

* 투자가능금액('11년, 천억원) : 정책금융공사 2.2, 중기청(창투조합·KVF) 31.0

▪ **국민연금**('11년 3.3천억원 벤처투자), **연기금 벤처투자 Pool*** 등의 투자참여 유도
→ 자산운용에 장애가 되는 관련 관행, 규정 등 개선 검토

* '12년 중기청에서 소규모 연기금(50개)·공제회(21개)로부터 1천억원 조성 추진중

▮ **[금융투자회사의 역할] 금융투자회사의 IB역량 강화**를 통해 **자기자본투자 확대 유도**

▮ **[협업체계 구축] 정책금융기관**(정책금융공사, 신기보 등), **증권사, 벤처캐피탈 및 거래소** 등과 TF를 구성하여 **상장기업 발굴·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 → 향후 투자 네트워크로 운영**

시장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투자자, 지정자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구조를 마련** (참고 참조)

[참고] 투자자 · 지정자문인에 대한 인센티브

- **코넥스**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특히, **코넥스시장**의 **두터운 투자층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협의

- **지정자문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지정자문인이 주관회사가 되는 경우, **주관회사의 발행회사 지분보유 제한(5%) 기준완화**
  - LP로 지정된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에 대해 **거래소 수수료 등 면제**
  - 대상기업 거래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수입을 지정자문인에 지급**(미국·유럽 사례 참조)

지정자문인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장치 (예시)
▪ 지정자문인(주주 등,임원 포함)과 특수 이해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자문행위 금지
▪ 지정자문인과 자문대상법인간 특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서를 지정자문인이 거래소에 제출
▪ 지정자문인에 자문기간 중 이해상충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신인의무를 부과하고, 주요 이해상충행위를 유형화하여 거래소규정으로 금지

8.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계속)

코스닥시장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

-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시 **완화된 상장요건을 적용**
  - 일정규모의 시가총액(예: 20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자기자본규모, 이익요건 등 **재무요건 완화**
-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시 최대주주 등 **보호예수의무 완화**(예: 1년→6개월)
- 코넥스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코스닥 상장전 유무상증자 제한요건 적용 완화**
- 그 밖에 분산요건 충족 심사시 코넥스시장에서의 분매실적 반영, 상장지원센터 교육이수의무 면제 등

➡ **거래소 상장지원센터, 코스닥협회에서 코넥스시장상장기업의 코스닥 상장 지원**
→ 상장기업으로서 알아야 할 사전정보 제공 등 코스닥시장에 성공적 진입 여건 조성

[참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선순환 체계 구축

정책자금 · VC투자 (초기성장기업) → 코넥스 상장 → 투자자금 회수(재투자) 성장자금 조달 → 코스닥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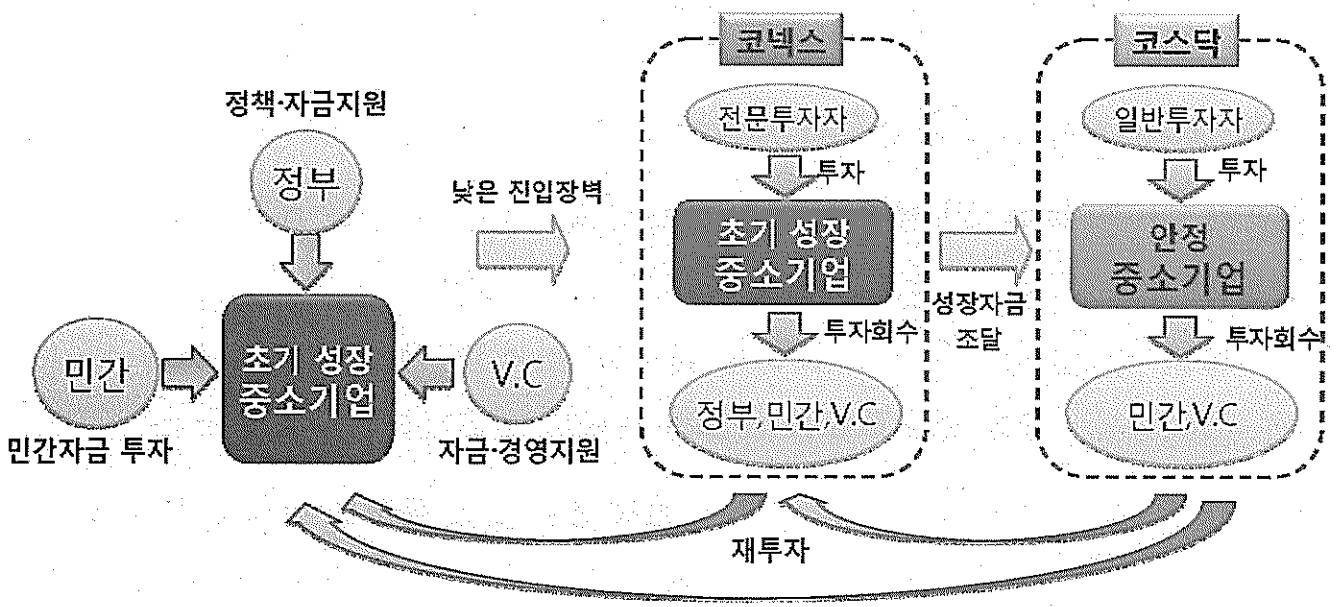

[참고] 코넥스시장 신설의 의미

초기 중소기업에 성장의 기회 제공

- 유상증자 등을 통해 신규자금 조달
- 경영역량 한 단계 Upgrade
  - 코넥스 상장을 통해 상장기업의 시장가치 등 인식 및 경영 합리화

중소기업금융 선순환체계 형성

- VC, 정책금융 등의 투자자금 회수 원활화
- 창업초기 투자,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등 전후방 효과 기대

자본시장 발전의 계기로 활용

- 금융투자회사의 IB 역량 강화
  - 비상장 중소기업 발굴, PI 투자, M&A 주선 등
- 전문투자자의 모험자본 공급 등 자본시장 저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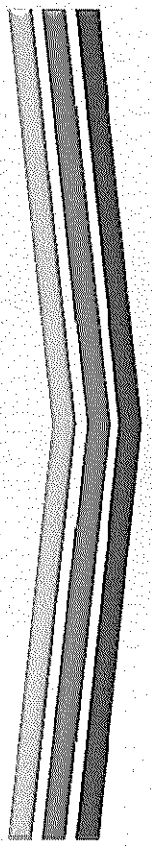

역동적인 벤처 ·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

유망한 성장초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굴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대비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22.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및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자료

※ 별첨 붙임자료 참조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2012. 3. 30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추진 배경

Ⅱ. 서민금융 지원 현황

Ⅲ. 현장으로부터의 평가

Ⅳ. 지원 확대 방안

1.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

2.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 내실화

3. 서민금융 지원기관 기능 강화

Ⅴ. 추진 일정

Ⅰ 추진 배경

□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실물경기 회복도 지연될 우려**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기에 보다 민감한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

○ 또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따른 가계신용관리 강화로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

* 차주 1인당 비주택담보대출 평균보유 금액 (만원)
1~4등급 :('07)3,213.4 ('08)3,487.5 ('09)3,503.6 ('10)3,672.1 ('12.1월)3,962.8, 23.3%↑
7~10등급:('07)2,440.5 ('08)2,554.5 ('09)2,657.4 ('10)2,574.6 ('12.1월)2,648.5, 1.1%↑

□ **20대 청년들의 경우에도**,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캐피탈** 등을 통한 **고금리 자금 조달**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 20대 차주 1인당 비주택담보대출 평균보유 금액 (만원)
은행권 : 1,361.1('09말) → 1,390.1('10말) → 1,492.8('11말), 9.7%↑
저축은행: 577.4('09말) → 645.9('10말) → 669.0('11말), 15.8%↑
캐피탈 : 851.6('09말) → 960.4('10말) → 1,022.6('11말), 20.1%↑

○ 실태조사('11.6월, 금감원) 결과, **약 16만명**의 대학생들이 대부업체, 저축은행에서 **약 4,537억원 융통**(용도는 주로 학자금(48%), 생활비(26%))

* 신복위, KAMCO 설문조사 결과('12.3월), 저신용층 대학생의 73.1%가 10%를 초과하는 금리를 부담(20%이상 고금리 비중은 34.3%)

◇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제도가,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

Ⅱ 서민금융 지원현황('12.2말 기준)

◇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음

□ **(미소금융)** '08.7월 이후 **504개의 대출채널**을 통하여 **총 63,037명에 대해 5,352억원 지원**

○ 출범 초기 대출실적이 부진하였으나, '10년 이후 전통시장 대출, 다양한 상품 개발 등으로 실적 증가

- '11년중 **총 3,131억원** 지원, **연간 목표 2천억원을 상회**

□ **(햇살론)** '10.7월 이후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에 **보증지원** 하여 **총 214,882명에게 19,197억원 대출**('11년 총 4,835억원)

○ 자금지원 초기에는 대출이 급증하였으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10.10)** 등으로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

□ **(새희망홀씨)** '10.11월 이후 **은행권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상품**으로 **총 217,299명에게 18,637억원 대출**

* '11년 한해동안 총 13,655억원을 지원

□ **(신용회복)** '08년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총 601,613명에게 채무조정 지원**

* '08년 이후 신복위 344,453명, 신복기금 257,160명
** '11년 한해동안 총 162,997명 지원(신복위 84,872명, 신복기금 78,125명)

○ **신용회복 프로그램 성실상환자**(12개월 이상) 대상 저금리(4%이내) **소액대출**(5백만원이하) 사업도 병행('06.11월~'12.2월까지 71,411건 2,259억원)

□ **(바꿔드림론)** '08.12월 이후 **신용회복기금이 보증**하여 20%이상 고금리 채무자 **총 86,266명**(8,772억원)에게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 전환대출 금리 : 8.5%~12.5%

Ⅲ 현장으로부터의 평가 [서민금융 1박2일 현장의 목소리]

◇ **서민금융 지원시책**(참고1)으로 수혜자가 늘고 성공사례가 나타나는 등 **정책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① 미소금융지원을 통한 **창업 성공사례가 다수 창출**되고, **미소금융이 지원된 전통시장**(대전 중앙시장, 경북 죽도시장 등)에서 **일수가 근절**

* (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하였으나, 미소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하루매출이 350만원에 이르는 막국수 집을 운영

② 전환대출(바꿔드림론)을 지원받아 **금융비용 경감**과 함께 **불법 추심의 부담에서 벗어나 생활의 안정**까지 가져왔음

* (예)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작년에 고금리 대출. 포스터를 보고 바꿔드림론을 신청했더니 이자부담이 상당히 감소

③ 신복위에서 **소액자금을 지원**받아 신용회복 프로그램 중 **긴급 생계비 등의 문제를 해결**

* (예) 신복위에서 자궁경부암 수술비 300만원을 대출받아 썼고, 상환후 다시 300만원을 대출받아 가게 보증금 문제를 해결

◇ 그러나, 서민들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음**

① 학자금, 창업자금 등 **청년층의 금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의 청년층 지원 기능**은 아직 **미흡**

* (예) 노점상을 영위하면서 현재 미소금융 자금 500만원을 대출받고 있으나 아이들 학자금은 지원되지 않아 고3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을지 걱정

② 미소금융 전통시장 대출의 **1인당 지원한도가 소액**(500만원)이고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지 못함**

* (예) 전통시장 1인당 지원한도 500만원은 너무 소액임. 특히 설 추석 등 대목 때는 한도를 늘려줄 필요가 있음

③ 서민들이 **서민금융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홍보가 부족한 측면**

* (예) 고금리 사채 이자 때문에 고생하던 중에 대출사기를 당했는데, 대출사기꾼에 의해 비로소 KAMCO의 바꿔드림론을 알게됨

④ 미소금융, 신용회복 등 서민금융의 **지원조건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필요한 곳에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사례**

* (예) 사업장 이전·영업종목 변경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갱신한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기간이 1년을 넘었음에도 사업자 등록요건 1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운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함

* (예) 부채비율(1천만원 이상의 경우 50% 제한) 등의 조건 때문에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⑤ 미소금융의 **운용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필요**

* 지난해 12월 복지사업자의 자금횡령사건이 발생하는 등 복지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감독상 부실이 존재

** 미소금융이 중앙재단 위주로 운영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착근이 미흡

Ⅳ 지원 확대 방안

〈 기 본 방 향 〉

◇ **서민금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

1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

○ 청년·대학생의 학자금수요 등으로 인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도전정신을 고양

2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 내실화

○ 미소금융, 햇살론,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합리화하고, 지원기준도 수혜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탄력 적용

3 서민금융 지원기관 기능 강화

○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유기적인 연계 및 홍보를 통해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

1.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

1 청년·대학생 고금리 채무에 대한 전환대출(6월중 시행)

○ **(지원규모)** 금년 상반기중 은행권 기부금을 이용 **500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 미소금융을 통해 **최대 2,500억원 규모의 전환 대출 공급**

○ **(지원대상)** ① **학자금 용도의 기존 고금리(20%↑)채무** 또는 ② **청년층 중 저소득계층 등의 기존 고금리 채무**

○ **(대출채널)** 전국 **미소지점**(151개) 및 **신복위 지점**(24개)에서 상담·접수

2 청년·대학생에 대한 긴급 미소금융자금 대출(5월중 시행)

○ **(지원규모)** 미소금융 재원으로 **매년 300억원을 청년층 긴급 소액자금용도로** 지원

* 신복위·KAMCO 설문조사('12.3월)결과 학자금외 추가적인 자금수요는 주로 생활비(57.9%)인 것으로 응답

○ **(지원대상)**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 청년·대학생**에 대해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금리 : 4.5%)

○ **(대출채널)** 전국 미소지점(151개)에서 대출 실시

3 청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기발표, 5월중 시행)

○ 금년부터 「**청년창업지원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등을 적극 지원**

- 매출액·담보 등의 외형적 요건보다는 **기술성·사업성을 중심으로 심사토록 대출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경영컨설팅도 병행**

2.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 내실화

1 미소금융 공급 확대 및 내실화

①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상인대출 취급 전통시장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금년 지원규모를 전년(356억원)대비 2배 수준(700억원)으로 확대

* (12.2말) 341개 → (12년말) 600개 → (13년말) 900~1,000개
** (현행) 최대 5백만원 → (개선) 최대 7백만원

○ 설·추석 대목 등 자영업자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설·추석 전후 1개월 한정)

② 미소금융 지원기준 탄력 적용

○ 미소금융 지원시 정량적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상환의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시)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지원기준 예외 인정 등

③ 지역 사회 유대 강화

○ 미소금융 지점(재단)별로 "미소금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장의 실정에 밝은 지역전문가를 컨설팅 인력으로 확보

* 경제·사회단체 지도자, 상공인, 언론인,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미소금융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 등 논의

④ 미소금융 중앙재단 및 복지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

○ (미소금융 중앙재단) 내부통제 강화, 차량 등 특정부문에의 집중지원 방지, 감독당국의 정기검사 등을 통해 관리·운용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복지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고, 복지사업자 자금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도 실시

2 햇살론 취급 확대 유도

①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등 서민대출 제외

○ **서민대출 중심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감안,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시 서민대출 및 정책자금을 제외**

*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4 발표)에 따라 상호금융 예대율 80% 이내로 규제

②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환대출) 지원 확대('12.2월 기시행)

○ 서민금융기관들이 **햇살론 대환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대환대출**에 한하여 **보증지원 비율 확대**(85% → 95%)

③ 햇살론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

○ **다양한 신용평가요소를 반영*,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소득·신용등급 등 획일적 기준 외에 대출보유 건수(근로자), 주택소유여부(자영업자) 등 적용

3 새희망홀씨 대출의 안정적인 확대

○ **금년중 1.5조원**('11년 1.2조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자 또는 저신용자 대출비중*도 지속 확대**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출 비중이 76.4%('11.12말)

○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활동에 대한 종합평가**(금감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적극적인 서민금융지원을 유인

4 신용회복지원 지속 강화

○ **(소액대출)** 신용회복 성실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금년중 1,000억원 이상**(신복위 600억원, 신복기금 400억원) **신규 확대**

* '11년 신규대출 실적 : 총 881억원[신복위(525억원), 신복기금(356억원)]

○ **(신용회복 탄력 적용)** 신용회복자의 **형편에 맞게 상환액·상환기간을 조정 운용**

3. 서민금융 지원기관 기능 강화

1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연계 강화

○ 지자체와 협조하여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One-Stop** 서민금융 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 금년중 16개 광역자치단체 내에 설치(미소금융, 햇살론, 신용회복, 전환대출 등 상담 지원)하고,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 확산 추진

○ **서민금융 지원기관 및 금융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서민금융 협의체 구성**

-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마련

2 서민금융정보 HUB 구축

○ "**새희망네트워크**(KAMCO 운영)"를 **확대 개편**하여 **기존 서민금융 안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종합 포털 개설**

- **개인신용등급 조회**, 소득·부채규모·신용등급 등에 따른 **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정보** 등 제공

3 서민들의 수요를 고려, 맞춤형 홍보 및 금융교육 시행

○ **(홍보)** 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은행·상호금융회사 등 **기존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

* 노숙인 센터, 고시촌, 농어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 및 홍보 실시
**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담시 대출이 어려울 경우, 서민우대금융 안내

○ **(교육)** 금융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금융소외 해소**에 노력(금감원 및 서민금융기관)

* 실업자, 대학생, 농어민, 다문화가족, 군인장병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기관(30여개)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Ⅴ 추진 일정

□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

추진 과제	필요 조치	시행 시기 (계획)
1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		
① 청년층 고금리 채무 전환	상품개발 및 전산 구축	'12.6
② 청년층 긴급 소액자금 대출	상품개발 및 전산 구축	'12.5
③ 청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보증·투자심사기준, 사후관리 기준 등 마련	'12.5
2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 내실화		
① 미소금융 공급 확대 및 내실화	전통시장 협약확대, 미소금융 운영위원회 구성 등	연 중
② 햇살론 취급확대 유도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방식 조정	'12.4
③ 새희망홀씨 대출의 안정적 확대	은행 서민금융활동 평가방안 수립	'12.6
④ 신용회복지원 지속 강화	소액대출 재원 확보 등	'12.6
3 서민금융 지원기관 기능 강화		
①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연계 강화	서민금융 협의회 구성,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확산	'12.4 '12.12
② 새희망 네트워크 개편	새희망네트워크 사이트 개편	'12.6
③ 서민들의 수요에 맞는 홍보·교육	찾아가는 홍보 추진 등	연중

참고1 현 정부 출범이후 주요 서민금융 대책 추진 현황

시기	대책의 핵심내용
1 '08. 9	○ 신용회복기금 신설 → 연체채권 매입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및 고금리 채무의 저금리 전환 지원
2 '09.12	○ 미소금융 지원 → '08.3월 설립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확대·개편, 서민의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 지원
3 '10. 7, '10.11	○ 햇살론 및 새희망홀씨 지원 →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및 은행을 통해 서민층에 저금리 생계자금 등 지원
4 '11. 4	○ 「서민금융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 서민의 금융비용부담 경감 및 금융안전망 보강 *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전환대출 활성화, 신용평가시 조회기록 미반영 등
5 '08~'11.10	○ 총 5차례에 걸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상한 ('08.10 이전) 3.3~3.6% → ('12.1) 1.8% 이하
6 '12. 3	○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예정

참고2 서민금융 지원체계

◇ 금융회사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하는 "**일반 서민금융**"과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저금리로 공급하는 "**서민 우대금융**"을 병행지원 중

○ 서민층은 담보력이 취약하고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일반금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이용하더라도 **20% 이상의 금리를 부담**

○ 20%이상의 고금리 부담을 안고서는 창업 등을 통한 서민의 자활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리의 서민우대금융을 보완적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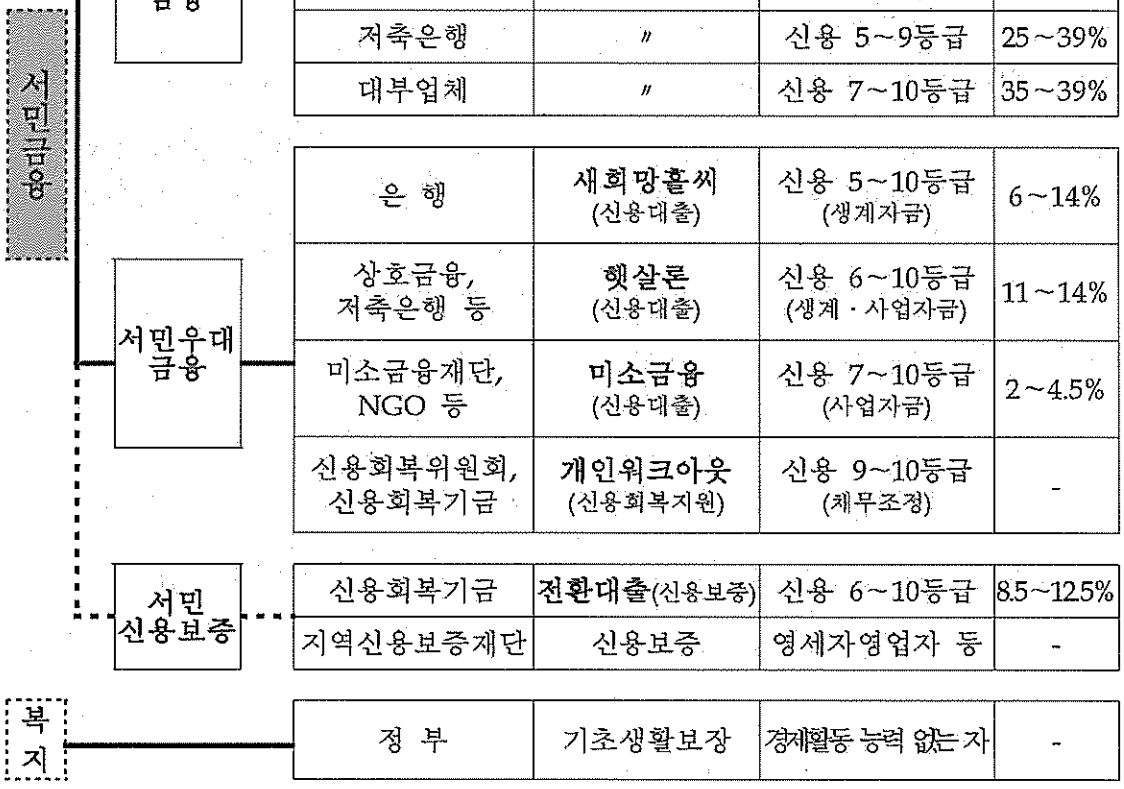

	지원 창구	지원 방식	주요 지원대상 (신용대출 기준)	금리수준
일반 금융	은 행	신용·담보 대출	신용 1~3등급	5~14%
	상호금융	〃	신용 2~6등급	10~25%
	여전회사	〃	신용 4~7등급	20~35%
	저축은행	〃	신용 5~9등급	25~39%
	대부업체	〃	신용 7~10등급	35~39%
서민우대 금융	은 행	**새희망홀씨** (신용대출)	신용 5~10등급 (생계자금)	6~14%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햇살론** (신용대출)	신용 6~10등급 (생계·사업자금)	11~14%
	미소금융재단, NGO 등	**미소금융** (신용대출)	신용 7~10등급 (사업자금)	2~4.5%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지원)	신용 9~10등급 (채무조정)	-
서민 신용보증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신용보증)	신용 6~10등급	8.5~12.5%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영세자영업자 등	-
복지	정 부	기초생활보장	경제활동 능력 없는 자	-

참고3 3대 서민우대금융 현황('12.2월말 기준)

구분		미소금융 (소액보험 제외)	햇살론	새희망홀씨
재원	조성목표	2조2천억원	2조원 ▪ 정부 1조원('11년부터) - 중앙 0.6, 지방 0.4 ▪ 서민금융회사 1조원 - 상호금융 0.8, 저축은행 0.2	은행 자체재원
	기조성액 ('12.2월말)	12,465억원 (휴면예금4,466억원 및 기부금 7,999억원)	3,792억원 (정부 1,200억원, 지자체 657억원, 금융회사 1,935억원)	
	가용잔액 ('12.2월말)	< 가용잔액 : 8,617억원 > 재원 조성액 12,465억원 (-) 지출 5,960억원 · 대출 지원액(5,078억) · 휴면예금 원권리자 지급(384억) · 운영비(498억) (+) 수입 2,112억원 · 대출회수(1,315억) · 휴면예금·기부금 예금 및 기타수익과 지역지점 대출 이자(797억원)		
대출 목표		10년간 2조2천억원 (연 1,500~2,000억원)	5년간 10조원 (연 2조원)	5년간 은행권 영업이익의 10% ('12년도 목표 약 1.5조원)
대출대상		· 7~10등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6~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2.6천만원이하	· 5~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3천만원이하
이자율		연 2~4.5%	연 10~13% (보증료 1% 별도)	연 11~14%
대출한도		▪ 운영자금 : 1천만원 ▪ 창업자금 : 5천만원 ▪ 무등록사업자 : 5백만원	▪ 긴급생계 : 1천만원 ▪ 운영자금 : 2천만원 ▪ 창업자금 : 5천만원 ▪ 대환자금 : 3천만원	▪ 2천만원
대출실적 누계		5,352억원 (63,037건) ('08.7월~'12.2.29)	19,197억원 (214,882건) ('10.7.26~'12.2.29)	18,637억원 (217,299건) ('10.11.8~'12.2.29)
(기관별)		▪ 미소금융지점 3,722억원 ▪ 기존 사업자 1,630억원	▪ 새마을금고 6,832억원 ▪ 농 협 5,832억원 ▪ 신 협 4,444억원 ▪ 저축은행 1,695억원 등	▪ 국민은행 2,883억원 ▪ 신한은행 2,841억원 ▪ 하나은행 2,315억원 ▪ 우리은행 2,662억원 등
(용도별)		▪ 창업자금 2,539억원(47.4%) ▪ 운영자금 1,795억원(33.5%) ▪ 생활자금 585억원(10.9%) ▪ 기타 433억원(8.2%)	▪ 생계자금 9,596억원(50.0%) ▪ 운영자금 9,433억원(49.1%) ▪ 창업자금 55억원 (0.3%) ▪ 대환자금 114억원 (0.6%)	▪일반자금(용도불문)
1인당 평균대출		849만원 (미소금융지점대출 1,391만원)	893만원	858만원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2012. 3. 30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추진 배경

Ⅱ. 서민금융 지원 현황

Ⅲ. 현장으로부터의 평가

Ⅳ. 지원 확대 방안

1.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

2.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 내실화

3. 서민금융 지원기관 기능 강화

Ⅴ. 추진 일정

Ⅰ 추진 배경

□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실물경기 회복도 지연될 우려**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기에 보다 민감한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

○ 또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따른 가계신용관리 강화로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

* 차주 1인당 비주택담보대출 평균보유 금액 (만원)
1~4등급 :('07)3,213.4 ('08)3,487.5 ('09)3,503.6 ('10)3,672.1 ('12.1월)3,962.8, 23.3%↑
7~10등급:('07)2,440.5 ('08)2,554.5 ('09)2,657.4 ('10)2,574.6 ('12.1월)2,648.5, 1.1%↑

□ **20대 청년들의 경우에도**,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캐피탈 등**을 통한 **고금리 자금 조달**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 20대 차주 1인당 비주택담보대출 평균보유 금액 (만원)
은행권 : 1,361.1('09말) → 1,390.1('10말) → 1,492.8('11말), 9.7%↑
저축은행: 577.4('09말) → 645.9('10말) → 669.0('11말), 15.8%↑
캐피탈 : 851.6('09말) → 960.4('10말) → 1,022.6('11말), 20.1%↑

○ 실태조사('11.6월, 금감원) 결과, **약 16만명**의 대학생들이 대부업체, 저축은행에서 **약 4,537억원 융통**(용도는 주로 학자금(48%), 생활비(26%))

* 신복위, KAMCO 설문조사 결과('12.3월), 저신용층 대학생의 73.1%가 10%를 초과하는 금리를 부담(20%이상 고금리 비중은 34.3%)

◇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제도가,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할 필요

○ 이를 위해,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

Ⅱ 서민금융 지원현황('12.2말 기준)

◇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음

□ **(미소금융)** '08.7월 이후 **504개의 대출채널**을 통하여 **총 63,037명에 대해 5,352억원 지원**

○ 출범 초기 대출실적이 부진하였으나, '10년 이후 전통시장 대출, 다양한 상품 개발 등으로 실적 증가

- '11년중 **총 3,131억원** 지원, **연간 목표 2천억원을 상회**

□ **(햇살론)** '10.7월 이후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에 **보증지원** 하여 **총 214,882명에게 19,197억원 대출**('11년 총 4,835억원)

○ 자금지원 초기에는 대출이 급증하였으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10.10)** 등으로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

□ **(새희망홀씨)** '10.11월 이후 **은행권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상품으로 총 217,299명에게 18,637억원 대출**

* '11년 한해동안 총 13,655억원을 지원

□ **(신용회복)** '08년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총 601,613명에게 채무조정 지원**

* '08년 이후 신복위 344,453명, 신복기금 257,160명
** '11년 한해동안 총 162,997명 지원(신복위 84,872명, 신복기금 78,125명)

○ **신용회복 프로그램 성실상환자**(12개월 이상) 대상 저금리(4%이내) **소액대출**(5백만원이하) 사업도 병행('06.11월~'12.2월까지 71,411건 2,259억원)

□ **(바꿔드림론)** '08.12월 이후 **신용회복기금이 보증**하여 20%이상 고금리 채무자 **총 86,266명**(8,772억원)에게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 전환대출 금리 : 8.5%~12.5%

Ⅲ 현장으로부터의 평가 (서민금융 1박2일 현장의 목소리)

◇ 서민금융 지원시책(참고1)으로 수혜자가 늘고 성공사례가 나타나는 등 정책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① 미소금융지원을 통한 **창업 성공사례가 다수 창출**되고, **미소금융이 지원된 전통시장**(대전 중앙시장, 경북 죽도시장 등)에서 **일수가 근절**

* (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하였으나, 미소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하루매출이 350만원에 이르는 막국수 집을 운영

② 전환대출(바꿔드림론)을 지원받아 **금융비용 경감**과 함께 **불법 추심의 부담에서 벗어나 생활의 안정**까지 가져왔음

* (예)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작년에 고금리 대출. 포스터를 보고 바꿔드림론을 신청했더니 이자부담이 상당히 감소

③ 신복위에서 **소액자금을 지원**받아 신용회복 프로그램 중 **긴급 생계비 등의 문제**를 **해결**

* (예) 신복위에서 자궁경부암 수술비 300만원을 대출받아 썼고, 상환후 다시 300만원을 대출받아 가게 보증금 문제를 해결

◇ 그러나, 서민들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음**

① 학자금, 창업자금 등 **청년층의 금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의 청년층 지원 기능**은 아직 **미흡**

* (예) 노점상을 영위하면서 현재 미소금융 자금 500만원을 대출받고 있으나 아이들 학자금은 지원되지 않아 고3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을지 걱정

② 미소금융 전통시장 대출의 **1인당 지원한도가 소액**(500만원)이고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지 못함**

* (예) 전통시장 1인당 지원한도 500만원은 너무 소액임. 특히 설 추석 등 대목 때는 한도를 늘려줄 필요가 있음

③ 서민들이 **서민금융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홍보가 부족한** 측면

* (예) 고금리 사채 이자 때문에 고생하던 중에 대출사기를 당했는데, 대출사기꾼에 의해 비로소 KAMCO의 바꿔드림론을 알게됨

④ 미소금융, 신용회복 등 서민금융의 **지원조건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필요한 곳에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사례**

* (예) 사업장 이전·영업종목 변경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갱신한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기간이 1년을 넘었음에도 사업자 등록요건 1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운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함

* (예) 부채비율(1천만원 이상의 경우 50% 제한) 등의 조건 때문에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⑤ 미소금융의 **운용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필요**

* 지난해 12월 복지사업자의 자금횡령사건이 발생하는 등 복지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감독상 부실이 존재

** 미소금융이 중앙재단 위주로 운영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착근이 미흡

Ⅳ 지원 확대 방안

〈 기 본 방 향 〉

◇ **서민금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

1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

○ 청년·대학생의 학자금수요 등으로 인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도전정신을 고양

2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 내실화

○ 미소금융, 햇살론,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합리화하고, 지원기준도 수혜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탄력 적용

3 서민금융 지원기관 기능 강화

○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유기적인 연계 및 홍보를 통해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

1.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

1 청년·대학생 고금리 채무에 대한 전환대출(6월중 시행)

○ **(지원규모)** 금년 상반기중 은행권 기부금을 이용 **500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 미소금융을 통해 **최대 2,500억원 규모의 전환 대출 공급**

○ **(지원대상)** ① **학자금 용도의 기존 고금리(20%↑)채무** 또는 ② **청년층 중 저소득계층 등의 기존 고금리 채무**

○ **(대출채널)** 전국 **미소지점**(151개) 및 **신복위 지점**(24개)에서 상담·접수

2 청년·대학생에 대한 긴급 미소금융자금 대출(5월중 시행)

○ **(지원규모)** 미소금융 재원으로 **매년 300억원을 청년층 긴급 소액자금용도**로 지원

* 신복위·KAMCO 설문조사('12.3월)결과 학자금외 추가적인 자금수요는 주로 생활비(57.9%)인 것으로 응답

○ **(지원대상)**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 청년·대학생**에 대해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금리 : 4.5%)

○ **(대출채널)** 전국 미소지점(151개)에서 대출 실시

3 청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기발표, 5월중 시행)

○ 금년부터 「**청년창업지원펀드**(0.5조원)」를 조성하여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등을 적극 지원**

- 매출액·담보 등의 외형적 요건보다는 **기술성·사업성을 중심으로 심사토록 대출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경영컨설팅도 병행**

2.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 내실화

1 미소금융 공급 확대 및 내실화

①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상인대출 취급 전통시장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금년 지원규모를 전년(356억원)대비 2배 수준(700억원)으로 확대**

* (12.2말) 341개 → (12년말) 600개 → (13년말) 900~1,000개
** (현행) 최대 5백만원 → (개선) 최대 7백만원

○ **설·추석 대목 등 자영업자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설·추석 전후 1개월 한정)

② 미소금융 지원기준 탄력 적용

○ 미소금융 지원시 정량적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상환의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시)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지원기준 예외 인정 등

③ 지역 사회 유대 강화

○ **미소금융 지점(재단)별로 "미소금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장의 실정에 밝은 지역전문가를 컨설팅 인력으로 확보**

* 경제·사회단체 지도자, 상공인, 언론인,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미소금융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 등 논의

④ 미소금융 중앙재단 및 복지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

○ **(미소금융 중앙재단) 내부통제 강화**, 차량 등 **특정부문에의 집중지원 방지, 감독당국의 정기검사** 등을 통해 **관리·운용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복지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고, **복지사업자 자금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도 실시

2 햇살론 취급 확대 유도

①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등 서민대출 제외

○ 서민대출 중심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감안,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시 **서민대출 및 정책자금을 제외**

*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4 발표)에 따라 상호금융 예대율 80% 이내로 규제

②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환대출) 지원 확대('12.2월 기시행)

○ 서민금융기관들이 **햇살론 대환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대환대출**에 한하여 **보증지원 비율 확대**(85% → 95%)

③ 햇살론 심사기준의 합리성 제고

○ **다양한 신용평가요소를 반영***,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소득·신용등급 등 획일적 기준 외에 대출보유 건수(근로자), 주택소유여부(자영업자) 등 적용

3 새희망홀씨 대출의 안정적인 확대

○ **금년중 1.5조원**('11년 1.2조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자** 또는 **저신용자 대출비중***도 **지속 확대**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출 비중이 76.4%('11.12말)

○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활동에 대한 종합평가**(금감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적극적인 서민금융지원을 유인

4 신용회복지원 지속 강화

○ **(소액대출)** 신용회복 성실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금년중 1,000억원 이상**(신복위 600억원, 신복기금 400억원) **신규 확대**

* '11년 신규대출 실적 : 총 881억원[신복위(525억원), 신복기금(356억원)]

○ **(신용회복 탄력 적용)** 신용회복자의 **형편에 맞게 상환액·상환기간을 조정 운용**

3. 서민금융 지원기관 기능 강화

1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연계 강화

○ 지자체와 협조하여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One-Stop** 서민금융 지원 **상담서비스 제공**

* 금년중 16개 광역자치단체 내에 설치(미소금융, 햇살론, 신용회복, 전환대출 등 상담 지원)하고,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 확산 추진

○ **서민금융 지원기관 및 금융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서민금융 협의체 구성**

-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마련

2 서민금융정보 HUB 구축

○ "**새희망네트워크**(KAMCO 운영)"를 **확대 개편**하여 **기존 서민금융 안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종합 포털 개설**

- **개인신용등급 조회**, 소득·부채규모·신용등급 등에 따른 **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정보** 등 제공

3 서민들의 수요를 고려, 맞춤형 홍보 및 금융교육 시행

○ **(홍보)** 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은행·상호금융회사 등 **기존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

* 노숙인 센터, 고시촌, 농어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 및 홍보 실시
**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담시 대출이 어려울 경우, 서민우대금융 안내

○ **(교육)** 금융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금융소외 해소**에 노력(금감원 및 서민금융기관)

* 실업자, 대학생, 농어민, 다문화가족, 군인장병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기관(30여개)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Ⅴ 추진 일정

□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

추진 과제	필요 조치	시행 시기 (계획)
1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		
1 청년층 고금리 채무 전환	상품개발 및 전산 구축	'12.6
2 청년층 긴급 소액자금 대출	상품개발 및 전산 구축	'12.5
3 청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보증·투자심사기준, 사후관리 기준 등 마련	'12.5
2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 내실화		
1 미소금융 공급 확대 및 내실화	전통시장 협약확대, 미소금융 운영위원회 구성 등	연 중
2 햇살론 취급확대 유도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방식 조정	'12.4
3 새희망홀씨 대출의 안정적 확대	은행 서민금융활동 평가방안 수립	'12.6
4 신용회복지원 지속 강화	소액대출 재원 확보 등	'12.6
3 서민금융 지원기관 기능 강화		
1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연계 강화	서민금융 협의회 구성,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확산	'12.4 '12.12
2 새희망 네트워크 개편	새희망네트워크 사이트 개편	'12.6
3 서민들의 수요에 맞는 홍보·교육	찾아가는 홍보 추진 등	연중

참고1 현 정부 출범이후 주요 서민금융 대책 추진 현황

시기	대책의 핵심내용
1 '08. 9	○ 신용회복기금 신설 → 연체채권 매입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및 고금리 채무의 저금리 전환 지원
2 '09.12	○ 미소금융 지원 → '08.3월 설립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확대·개편, 서민의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 지원
3 '10. 7, '10.11	○ 햇살론 및 새희망홀씨 지원 →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및 은행을 통해 서민층에 저금리 생계자금 등 지원
4 '11. 4	○ 「서민금융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 서민의 금융비용부담 경감 및 금융안전망 보강 *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전환대출 활성화, 신용평가시 조회기록 미반영 등
5 '08~'11.10	○ 총 5차례에 걸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상한 ('08.10 이전) 3.3~3.6% → ('12.1) 1.8% 이하
6 '12. 3	○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예정

참고2 서민금융 지원체계

◇ 금융회사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하는 "**일반 서민금융**"과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저금리로 공급하는 "**서민 우대금융**"을 병행지원 중

○ 서민층은 담보력이 취약하고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일반금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이용하더라도 **20% 이상의 금리를 부담**

○ 20%이상의 고금리 부담을 안고서는 창업 등을 통한 서민의 자활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리의 서민우대금융을 보완적으로 지원**

		지원 창구	지원 방식	주요 지원대상 (신용대출 기준)	금리수준
서민금융	일반금융	은 행	신용·담보 대출	신용 1~3등급	5~14%
		상호금융	〃	신용 2~6등급	10~25%
		여전회사	〃	신용 4~7등급	20~35%
		저축은행	〃	신용 5~9등급	25~39%
		대부업체	〃	신용 7~10등급	35~39%
	서민우대금융	은 행	**새희망홀씨** (신용대출)	신용 5~10등급 (생계자금)	6~14%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햇살론** (신용대출)	신용 6~10등급 (생계·사업자금)	11~14%
		미소금융재단, NGO 등	**미소금융** (신용대출)	신용 7~10등급 (사업자금)	2~4.5%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지원)	신용 9~10등급 (채무조정)	-
	서민신용보증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신용보증)	신용 6~10등급	8.5~12.5%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영세자영업자 등	-
복지		정 부	기초생활보장	경제활동 능력 없는 자	-

참고3 3대 서민우대금융 현황('12.2월말 기준)

구분		미소금융 (소액보험 제외)	햇살론	새희망홀씨
재원	조성목표	2조2천억원	2조원 ▪ 정부 1조원('11년부터) - 증앙 0.6, 지방 0.4 ▪ 서민금융회사 1조원 - 상호금융 0.8, 저축은행 0.2	은행 자체재원
	기조성액 ('12.2월말)	12,465억원 (휴면예금4,466억원 및 기부금 7,999억원)	3,792억원 (정부 1,200억원, 지자체 657억원, 금융회사 1,935억원)	
	가용잔액 ('12.2월말)	< 가용잔액 : 8,617억원 >		
		재원 조성액 12,465억원 (-) 지출 5,960억원 · 대출 지원액(5,078억) · 휴면예금 원권리자 지급(384억) · 운영비(498억) (+) 수입 2,112억원 · 대출회수(1,315억) · 휴면예금·기부금 예금 및 기타수익과 지역지점 대출 이자(797억원)		
대출 목표		10년간 2조2천억원 (연 1,500~2,000억원)	5년간 10조원 (연 2조원)	5년간 은행권 영업이익의 10% ('12년도 목표 약 1.5조원)
대출대상		· 7~10등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6~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2.6천만원이하	· 5~10등급(4천만원 이하) · 연소득 3천만원이하
이자율		연 2~4.5%	연 10~13% (보증료 1% 별도)	연 11~14%
대출한도		▪ 운영자금 : 1천만원 ▪ 창업자금 : 5천만원 ▪ 무등록사업자 : 5백만원	▪ 긴급생계 : 1천만원 ▪ 운영자금 : 2천만원 ▪ 창업자금 : 5천만원 ▪ 대환자금 : 3천만원	▪ 2천만원
대출실적 누계		5,352억원 (63,037건) ('08.7월~'12.2.29)	19,197억원 (214,882건) ('10.7.26~'12.2.29)	18,637억원 (217,299건) ('10.11.8~'12.2.29)
(기관별)		▪ 미소금융지점 3,722억원 ▪ 기존 사업자 1,630억원	▪ 새마을금고 6,832억원 ▪ 농 협 5,832억원 ▪ 신 협 4,444억원 ▪ 저축은행 1,695억원 등	▪ 국민은행 2,883억원 ▪ 신한은행 2,841억원 ▪ 하나은행 2,315억원 ▪ 우리은행 2,662억원 등
(용도별)		▪ 창업자금 2,539억원(47.4%) ▪ 운영자금 1,795억원(33.5%) ▪ 생활자금 585억원(10.9%) ▪ 기타 433억원(8.2%)	▪ 생계자금 9,596억원(50.0%) ▪ 운영자금 9,433억원(49.1%) ▪ 창업자금 55억원 (0.3%) ▪ 대환자금 114억원 (0.6%)	▪일반자금(용도불문)
1인당 평균대출		849만원 (미소금융지점대출 1,391만원)	893만원	858만원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23-1.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각 1부씩

□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2011. 6. 29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1. 현황

2. 가계부채 증가 추이

3. 평가

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기본방향>

<금융부문 대응방안>

1.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2. 가계대출구조 개선방안

3.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4. 서민금융기반 강화방안

Ⅲ. 추진 계획

(별첨) 금융부문대책 추진일정

I.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1 현 황

□ 11.3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4조원으로 가계대출이 752.3조원*(은행권 435.1조+비은행권 317.2조), 판매신용이 49.1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364.9조**(은행 289.9조, 비은행 75.0조)로 **전체 가계대출의 48.5%**

□ 가계부채는 99년~10년중 연평균 13.0% 증가하여 경상 GDP 증가율(7.3%)을 상회

□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경제·소득규모 대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 09년 기준으로 GDP대비 86%(12위), 가처분소득 대비 153%(9위)이며, OECD 국가 평균을 상회

	한국	미국	영국	일본	OECD평균
▪ 가계부채/GDP(%)	**85.9 (12위)**	100.2	110.0	80.4	**77.0**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152.7 (9위)**	132.0	171.5	129.5[1)]	**134.1**

주) 자금순환표상 개인금융부채(09년, 통계가 공표된 27개국 기준), 1) 08말 기준

< 가계부채 추이 >

* 한은 가계신용기준

(조원)	'99말	'02말	'05말	'07말	'09말	'10말	'11.3말
가계신용	214.0	439.1	521.5	630.7	733.7	795.4	**801.4**
가계대출	191.9	391.1	493.5	595.4	692.0	746.0	**752.3**
- 은 행	76.3	222.0	305.5	363.7	409.5	431.5	**435.1**
주담대	-	-	190.2	221.6	264.2	284.5	**289.9**
- 비은행	115.6	169.1	188.0	231.7	282.5	314.5	**317.2**
(상호금융)[1)]	37.8	45.7	77.8	101.4	132.2	154.8	**157.4**
(여전사)	16.2	57.1	23.8	30.7	31.5	36.3	**36.9**
주담대[2)]	-	-	-	46.6	64.6	73.1	**75.0**
판매신용[3)]	22.1	47.9	28.0	35.3	41.7	49.4	**49.1**

1) 단위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2) 보험사·여전사 등 제외,
3) 카드사 신용판매, 여전사 및 판매회사(백화점 등) 제공 신용

2 가계부채 증가 추이

◇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99~02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기, 05~06년 주택시장 호황기에 급증

(연평균 증가율)		'99~'02	'03~'04	'05~'06	'07~'10
▪ 가계 부채 (%)	:	**24.3**	4.0	**10.7**	8.1
▪ 경상 GDP (%)	:	9.5	7.1	4.8	6.6

□ (99~02년) 시중유동성 증가, 기업대출수요 감소, 가계수지 악화 등에 따른 저축률 하락과 함께 가계부채 급증(연평균 24%)

○ 금리급락 등으로 시중유동성은 증가하는 반면, 기업은 구조조정·재무구조 개선 추진으로 대출수요가 감소

* 유동성 증가율(L) - GDP 증가율(%) : (99년)△0.3, (00년)2.1, (01년)4.0, (02년)3.0
* 제조업 부채비율(%) : (97년) 396, (99년) 215, (01년) 182, (02년) 135

- 가계대출 수요가 기업대출수요 감소를 점진적으로 대체

* 은행대출 증가율(%) : [가계] (99년)44.2, (00년)40.5, (01년)46.1, (02년)41.7
  [기업] (99년)18.1, (00년)18.0, (01년)△1.0, (02년)24.8

○ 외환위기이후 소득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교육비·통신비 등 지출부담은 증가하면서 저축률이 급감

* 개인 저축률(%) : (99년) 21.6, (00년) 8.6, (01년) 4.8, (02년) 0.4
* 가계지출 중 교육비+통신비 비중(%) : (97년)13.6, (99년)15.6, (01년)17.2, (02)17.6

○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으로 카드사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및 판매신용도 30%대 증가세를 시현

* 여전사 가계대출 증가율(%) : (99년)35.0, (00년)107.4, (01년)30.0, (02년)30.8
* 여전사 판매신용 증가율(%) : (99년)30.9 (00년) 35.5, (01년)62.3, (02년)29.2

□ (03~04년) 카드사태 등에 따른 신용경색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연평균 4.0%)

○ 여전사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판매신용은 감소

* 03~04년중 연평균 증가율(%) : (은행대출)11.6, (비은행대출)1.2, (판매신용)△27.4

□ (05~06년) 부동산경기 과열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연평균 10.7%)

○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의 대출확대 경쟁 등 시중자금의 주택시장 쏠림현상 발생

* 수도권 아파트가격/은행 주담대 증가율(yoy, %) : (05년)7.2/12.4, (06년)24.6/14.1

□ (07년 이후) 주택대출 규제 강화, 기업 자금수요회복 등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증가세는 지속(연평균 8.1%)

○ 은행권은 경제성장률 이내로 조정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비은행권의 증가폭은 확대

*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 (07년)5.5, (08년)6.8, (09년)5.4, (10년)5.4

* 07~10년 연평균 증가율(가계대출/주담대, %) : (은행)5.7/7.0, (비은행)11.4/16.2

*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 비중(%) : 06말 37.1% → 10말 42.2%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증가세 지속(9.1%)

<시기별 가계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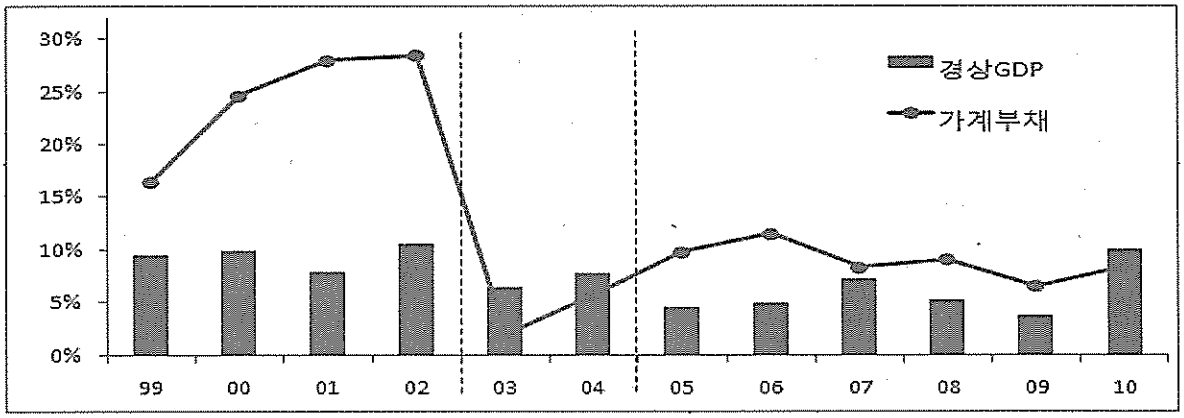

〈 참고 :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동향 〉

□ 07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연평균 **11.4%**)

(yoy, %)		'07	'08	'09	'10	('07~'10 평균)
* 은행 가계대출	:	5.0	6.8	5.4	5.4	**5.7**
* 비은행 가계대출	:	13.5	12.1	8.7	11.3	**11.4**
(주택담보대출)	:	(-)	(20.1)	(15.4)	(13.1)	**(16.2)**

○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비중도 상승(06말 **37.1%**→10말 **42.2%**)

□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10년들어** 여전사·저축은행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상호금융) 세제혜택* 등에 따른 수신 증가 등의 영향으로 **07년이후 평균 15.4%** 증가

*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09.1월부터 비과세한도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확대)

* 07~10년 연평균 상호금융 예금 증가율 : 15.9% (대출 증가율 15.4%)

○ (저축은행) 아직까지 가계대출 규모는 크지 않으나 **PF대출** 시장 위축에 따라 가계대출이 확대(10년중 11.3% 증가)

○ (여전사) **10년중** 카드론(35.2%)을 중심으로 가계대출(15.2%) 증가,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신용판매(12.3%)도 급증

< 비은행권 가계대출 추이(한은, 가계신용) >

	'06말	'07말	'08말	'09말	'10말	'11.3말
비은행권 합계	204.2	231.7	259.8	282.5	314.5	317.1
(전년동기비)	(10.7%)	(13.7%)	(15.4%)	(10.9%)	(16.4%)	(10.8%)
상호금융[1]	87.5	101.4	118.	132.2	154.8	157.4
보험	50.9	55.9	61.7	64.2	66.0	66.7
여전사	25.2	30.7	31.3	31.5	36.3	36.9
저축은행	7.7	6.8	6.9	7.3	8.2	8.4

1)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3 평 가

□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부동산가격 상승(및 추가상승 기대심리),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가계부채는 경제성장 및 금융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

> ※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속 증가추세
>
> * 한국 : (01) 61.2% → (09) 85.9% (+24.7%p)
> * OECD 평균 : (01) 51.8% → (09) 77.0% (+25.2%p)

○ 특히, 외환위기 이후 내수회복 등 위기극복·경제성장에 기여

* 99년~02년중 GDP 증가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율: **74.4%** (90년 이후 평균 48%)

○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과거 기업에 편중된 대출이 시정되면서 가계의 금융이용이 확대된 측면도 있음

- 외환위기 이전 기업부문에 집중되고 가계부문에는 위축되었던 기업과 가계간 자금배분의 불균형이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 이에 따라 기업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기업 부채비율도 크게 개선

*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 :
  (98말) 27.7 → (02말) 47.1 → (10말) 43.7 [美(04말) 45.2, 英(03말) 46.0]
* 기업부채비율(%) : (98년) 303.0, (02년) 135.4, (05년) 100.9, (09년) 109.6

□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으나,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감안시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broadly manageable) 수준으로 판단

○ 금융권 연체율 등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유지

* 가계대출 연체율(전업권, %): (06)2.44, (07)1.94, (08)1.91, (09)1.76, (10)1.68
(은 행, %): (06)0.70, (07)0.55, (08)0.60, (09)0.42, (10)0.61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전업권, %) : (10.12월) 0.87, (美, 10.4/4) 8.22

○ 그동안 가계대출의 증가는 주로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신용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과거에 비해 이들 계층의 대출비중이 증가

* 고신용등급(1~4등급) 대출 비중(%) : (06말) 62.0, (08말) 62.4, (10말) **70.2**

※ 美 **서브프라임 사태**의 경우, 비우량 대출인 **서브프라임 대출 비중이 01년 8.6%에서 06년 20%까지 확대**

○ 가계대출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담보인정비율(LTV)이 상당히 낮음

* 韓 **47%,** 美 75%, 英 61%, 佛 80%, 獨 74%, 홍콩 64% ('09말 기준)

- BIS 비율·당기순이익 등 금융회사의 충격흡수능력도 높아진 상황

* BIS 비율(은행, %) : ('06말)12.8, ('08말)12.3, ('10말)**14.6** (글로벌 20대 은행 13.6)
* 당기순이익(은행, 조원) : ('07년) 15.0, ('08년) 7.7, ('09년) 6.9, ('10년) **9.3**

○ 또한 최근 수년간 가계금융부채 증가와 동시에 금융자산은 더욱 크게 증가하여 가계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비율은 오히려 상승

* 가계금융자산 / 부채 (배) : ('08말) 2.09, ('09말) 2.28, ('10말) 2.32, ('11.3말) 2.33

※ 가계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비율은 **02년 이후 OECD 평균 △0.67배 감소**한 반면, **우리는 +0.12배 증가**

□ 다만,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 잠재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경제·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가계대출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

-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고, 금리 적용기간이 짧음

*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09말, %) : **(韓)95**, (美)10, (英)62, (佛)13, (獨)10
* 금리적용기간(변동주기)는 통상 3개월 수준(美은 통상 1년, 日은 6개월 이상)

- 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만기시 상환부담이 크고 차환위험에 노출

▪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도 거치기간 연장 관행 지속

* 일시상환 비중(은행) : **(韓) 41%**('10말), (美) 9.7%('10말), (EU) 7.5%('09말)
* 주담대 중 이자만 내는 대출(일시상환+거치기간중인 분할상환) 비중 : 80%('10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환유형별 현황('10년말)>

일시상환	분할상환		합계
	거치기간중	원금상환중	
117.4조	108.8조	58.8조	284.5조
(41.3%)	(38.2%)	(20.5%)	(100%)

: '10년말 현재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

○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고 경기·금리여건에 대한 민감도가 큰 저신용층의 어려움이 상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 금리1%p 상승시 순이자부담(만원)	16.1	13.0	9.8	9.0	17.1	12.4
(가처분소득대비)	(3.2%)	(1.0%)	(0.4%)	(0.4%)	(0.3%)	(0.4%)

주) 통계청 2010년 가계신용조사,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금리민감 자산 및 부채 기준

➡ 지금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응여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기본 방향>

◇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방안 강구

① 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 주택시장 안정기조 지속,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자금의 생산적인 흐름을 유도

②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한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

※ ①, ②과제의 세부 정책대안("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참조)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정책운용 등을 통해 지속 대응

③ 거시경제 환경조성의 지속적인 뒷받침하에 가계부채 관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부문의 정책대응을 강화

○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증가요인 차단, 신중한 가계대출 관행유도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증가 도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및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를 개선

○ 가계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

④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15일 발표)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추진

➡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계부채를 안정화

1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

□ 은행 가계대출 적정증가 유도

①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도와 무관하게 은행별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

※ 고위험 대출(例示) :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별도 마련

①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총대출금/연소득)이 500%를 넘는 경우

② 3건 이상 대출 보유자에 대한 대출

○ 특정부문(예 : 주택담보대출) 편중대출(예 : 자기자본의 2배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 영향분석 · 검증을 거쳐 세부시행방안 결정

②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개편

○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토록 지도

③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 정착

○ 현재 **DTI** 의무적용 대상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27.1%** 수준(은행기준, 10.1~6월)

*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대출의 경우, LTV 비율만 감안하고 소득 등 상환능력에 대해서는 확인업무가 소홀

○ 앞으로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을 통해 건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CAMELS 반영 등)

○ 자율정착 추이를 보면서 **DTI**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검토

* 단, 충분한 예고 및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행상의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

□ 은행 예대율 관리 강화

○ **100%** 초과 은행 : 100% 준수기한(13년말)을 **12.6**월말까지 **1년6개월** 단축 지도

○ **100%** 미달 은행 : 준수기한(12.6월말)중 다시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 11.3월말 현재 일반은행(13개) 예대율 : 97.1%

나.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되,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해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전사의 외형 확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

①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증가율 설정·관리(6.7일 既발표)

○ 회사별 목표수준에 대해 정기점검

○ 과도한 외형확장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규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

②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와 여타 여전사간 규제수준을 차등화

○ 규제 한도를 초과한 여전사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점진적인 규제준수를 유도

* 레버리지 현황(평균/최고, 11.3말, 배) :
(카드사) 4.1 / 7.7, (할부사) 8.4 / 20.1, (리스사) 7.2 / 18.0

③ 회사채 발행 특례(자기자본대비 10배) 폐지(6.7일 旣발표)

* 레버리지 규제로 대체

□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단계적으로 강화

○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6.15일 규정개정 완료, 상반기 결산부터 적용)

* 정상 여신 : 1.5% → 2.5%, 요주의 여신 : 40% → 50%

○ 여타 여전사의 경우에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

- 요주의 여신('12년) : 2%(할부대출), 8%(가계대출) → **10%**

- 정상 여신 : 1%(은행과 동일) → 적립비율 상향폭은 리스크 수준 및 레버리지 규제도입 효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 신용카드사간 건전한 영업경쟁 유도(3.30일 旣발표)

○ 카드 모집실태 및 마케팅 경쟁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모집인에 대한 제재 강화

* 모집실태 점검주기 단축(매반기→매분기), 여신금융협회 합동기동점검반 강화(20명→30명, 금감원 참여(월1회))

○ 다중채무자 발생 억제 및 카드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3장→2장이상 소지자)

* 현재 신용카드 3개 이상 소지자의 카드 사용실적, 이용한도 등에 대해 카드사간 정보공유

[상호금융]

□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확대(09.1월, 2천→3천만원) 되면서 수신이 급증하고 가계대출이 확대

* 09~10년중 예수금 증감 (증가율) : (상호금융) 57.5조(29.1%) (은행) 191.8조(21.9%)
가계대출 증감(증가율) : (상호금융) 36.8조(31.2%) (은행) 42.9조(11.0%)

※ **<참고> 상호금융회사 비과세 예금 개요**

○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예탁한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 이자소득세(15.4%)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89의3)

- 혜택 : 비과세(~'12말) → 5%과세('13) → 9%과세('14~)

⇒ 비과세 혜택은 **12년말** 예정대로 종료하여 가계대출 확대요인이 된 상호금융 수신증가를 최대한 정상화

□ 상호금융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등 타금융권 수준으로 강화

○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현 행>		<개 선(안)>
* 정상여신	:	3개월미만 연체	→	1개월미만 연체
* 요주의여신	:	3~6개월미만 연체	→	1~3개월미만 연체
* 고정이하여신	:	6개월이상 연체	→	3개월이상 연체

○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 상향조정

* 정상여신 (0.5% → 1%), 요주의여신 (1% → 10%)

⇒ **2년** 유예후 **3년**간 단계적으로 건전성 분류기준 및 비율 상향조정(유예기간 중 최소적립률 이상으로 적립토록하여 충격흡수 유도)

□ 상호금융 대출한도 강화

①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 현재는 자산총액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5억원)는 있으나 자기자본기준 한도가 없어 합리적 수준의 최고한도 설정

* 동일인 한도 :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
* 자기자본/동일인 대출한도('11.3말, 억원) : 신협 44/9, 농협 147/30, 산림조합 34/7

②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한도 도입

*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으로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현재 별도의 대출총량한도가 없음

- 간주조합원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 총한도(연간 신규대출 취급액의 1/3로 제한)에 포함해서 적용

다.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지급결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

□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우대

* 현재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중 신용카드 20%, 체크카드 25%까지 소득공제

□ 개인신용평가시 신용카드 이용실적외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

* 현재 신용카드는 장기간 연체 없이 이용한 경우 신용등급 향상요인이 되나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음

□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3월말 旣 시행)

* 2.0~2.5% → (중소가맹점) 1.0%, (일반가맹점) 1.5~1.7%

2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기타대출은 축소(신규대출부터 적용)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공제제도 개선 방안>

구 분	현 행	개선안
주택보유수	무주택자	좌 동
대상주택	3억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	좌 동
상환기간	15년 이상	좌 동
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 **1,500만원** ▪기타 대출 : **500만원**

□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차등화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

* (**현행**) 고정금리대출은 연 **0.125%**(거치식·비거치식 구분 없음)
변동금리대출은 연 **0.260%**

□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유도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유도

- 은행은 자체 정상화 연차 목표*(예 : 매년 3년주기)를 설정하고 감독당국은 이행실적을 점검

*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분리 운영도 가능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 및 혼합대출*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유도

* 대출금의 일정부분(예 : 20%~50%)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상품 (상기 목표대출 실적에 포함)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T/F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 데스크 설치 등 on-off 라인을 통한 상품 안내·홍보 강화(은행연합회)

나.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지원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매입·유동화(MBS발행) 지원

□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추진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기초자산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일정비율(예 : 20%~50%) 이상 포함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증가추이를 보아가며 편입비율 확대

□ **MBS·커버드본드 발행여력 확대를 위한 자본금 확충**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및 유동화 수요를 보면서 자본금 확충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①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시 고지의무 등 강화

- 차주에 대한 고지가 필요한 필수사항 규정

※ 고지의무사항(예시) :
(i) **금리·금리변동주기·금리변동사유** 등 기본적 사항
(ii) 금리변동상품의 **위험성 고지 및 차주 확인** (iii)
금리변동폭에 따른 **차주 부담 증가액**(월간, 연간) (iv)
최근 5년간 최대금리 변동폭 및 부담 증가액

- 금리변동시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 부여(예 : 최소 1개월전)

* 현재는 서비스를 신청한자에 한해 1~2주전 고지

②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현재 은행은 대출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상환시 약 1.5% 수수료 부과

③ 변동성이 낮은 **COFIX**(잔액기준) 연동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변동폭을 축소하는 옵션부 대출상품 개발 유도

<금리상한 옵션 대출상품 종류>

全기간한도(lifetime cap)	대출 전기간 중 인상한도 설정
기간한도(periodic cap)	금리조정시마다 1회 인상한도 설정
상환한도(payment cap)	금리조정시 월 상환금액 증가 한도를 설정

- **CD**(3개월) 등 여타 금리 연동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변동 상한을 제시(금리상한 옵션 대출 상품 판매 등)토록 유도

- 금리변동주기 확대(3개월 → 6개월 또는 1년 이상) 유도

* 통상 금리변동주기는 3개월(미국은 1년, 일본은 6개월 이상)

※ 분기별 추진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 점검(은행 등 가능한 업권부터 先시행)

□ 대출모집인의 불법·부정행위 등에 대해 수시 점검

○ 대출모집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및 필요시 법적 규제장치 마련(협회별 T/F 구성)

○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대출중개 행태 및 중개 수수료 등 실태조사 강화 등 관련 대출모집인의 불법·부당행위 엄정 제재

□ 불법·허위광고 및 과장광고 근절

○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일선점포 불법·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본점의 책임 강화

4 서민금융 기반 강화 방안 (신규과제는 밑줄)

◇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이 심화된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

◇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

※ 11.4.15일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추진

□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확대

○ (미소금융) 제도권 금융접근이 곤란한 서민들에게 대출과 더불어 자활컨설팅 지원(10.1~11.6 : 2,521억원 대출)

- 미소금융 컨설팅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직능 단체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중

* 금년중 미소아카데미를 통해 컨설팅 전문인력 4천명 교육
* 현재 세탁업중앙회, 미용사 협회 등으로부터 적격자를 추천받고 있는 것을 여타 단체로 확대

○ (햇살론) 정부 및 민간출연금으로 보증재원을 마련하여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 (10.7~11.6 : 1조6,368억원 대출)

- 서민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기준 등 개선

* (예시) 소득대비 채무상환액비율 탄력적용, 보증지원절차 간소화 등

○ (새희망홀씨) 기존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의 지원대상 확대 등 개선(10.11~11.5 : 6,867억원)

- 새희망홀씨 지원기준, 지원목표액 등을 포함한 자율규약 제정

□ 금리·수수료 인하 등 서민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상한을 대형마트·백화점 수준으로 인하

* 전통시장내 중소가맹점 : 2.0~2.2% → 1.6~1.8%
기타 중소 가맹점 : 3.3~3.6% → 2.0~2.15%

- 수수료 인하대상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10.4) 9,600만원미만 → (11.5) 1.2억원미만 → (12.1) 1.5억원미만)

○ (고금리 대부업 피해 방지) 대부업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연49%→연44%(10.7)→연39%(11.6))하였으며, 과다·허위 대부광고에 따른 서민피해 방지 방안 마련·추진

○ (금리비교공시 확대)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상호금융·대부업에도 비교공시제도 도입

○ (대출중개비용 경감) 여신금융협회의 온라인 대출중개 기능 수행, 불법 대출중개 단속강화, 다단계 대출중개 행위 금지* 등을 통해 서민층 고금리부담 완화

*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준비중

○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신용조회기록 및 10만원 미만 연체정보 미반영, 단기연체정보 반영기간 축소(5년→3년)

* 현재 금융위·금감원 공동으로 세부시행기준 마련을 위한 T/F 운영중,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 예정

- 금융회사가 보유한 차주의 우량정보를 모든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고 신용평가시 적극 반영

* 4.28일부터 정보집중 개시, 10월부터 신용평가시 반영 예정

□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만기 연장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전환대출 등 지원노력 강화

○ (신용회복)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상으로 원리금 감면 및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지원(08년 이후 47.6만건 지원)

-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2년간 연장 시행** 중(당초 11.4월 종료 예정)

- 6.1일부터 채무 상환기간(8년→10년) 및 상환 유예기간(1년→2년) 연장 시행 등 신용회복 제도 보강

- "사이버 지부" 활성화, 안내·홍보활동 강화, 신용회복지원협약 참여기관(현재 3,523개) 확대 등을 통해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추진

○ (소액대출·취업지원) 신용회복지원자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지원 및 취업지원

-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 재활자금(4%) 지원규모 확대(10년 700억원→11년 1,000~1,200억원)

* 은행 등의 추가 기부금 출연 등 재원확대방안 강구

- 신용회복기금에서 운용중인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펀드를 취업지원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500억원**까지 확대

○ (전환대출) KAMCO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해 **6등급이하** 서민층의 고금리대출을 **12%내외**의 은행대출로 전환(08년이후 4,697억원 지원)

- 지원대상 확대 및 창구 확대 등 전환대출 지원 보강

* 지원대상(6.10 시행) : (현행) 6~10등급 → (개선) **연소득 2,600만원 이하**
* 지원창구(6.30 예정) : (현행) 6개 은행 창구 → (개선) **전국 모든 은행 창구**

Ⅲ. 추진 계획

□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7월중 추진

○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등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 실무 T/F를 구성·검토후 하반기중 시행

○ 법령·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중 개정완료

- 법률 개정사항은 금년중 국회 제출 추진

□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 대책의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추가검토후 보강대책을 추진

① 가계대출 적정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예 :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예 : 10%~50%)을 준비금의 형태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

* 준비금 적립시 배당이 제한되므로 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 (당기손익 및 배당을 제한하는 현행 대손충당금과는 달리 당기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고 배당만 제한 ; 대손준비금과 유사)

⇨ 적정수준 기준, 적립률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영향분석,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② 은행 예대율 준수비율(현행 100%) 하향 조정

③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관행 개선

④ 고위험·편중대출 관리 추가강화 등

별 첨 금융부문 대응방안 추진 일정

추진 과제	필요 조치	시행시기	소관부처
1. 가계부채 적정증가 방안			
나. 은행권			
1 고위험 및 편중대출 BIS 규제 강화	시행세칙 개정	11년중	금감원
2 영업점 성과평가 개선	지도공문 발송	11.7월중	금감원
3 대출상환능력 확인 강화	지도공문 발송	11.7월중	금감원
4 예대율 관리 강화	지도공문 발송	11.7월중	금감원
가. 비은행권			
1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도입 및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 추진	여전법 등 개정	11년중 국회제출	금융위
2 여전사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감독규정 개정	11년중	금융위
3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시행령 등 개정	11년중	금융위
4 신협 간주조합원 대출총량한도 도입	시행령 개정	11년중	금융위
5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감독규정 개정	11년중	금융위
다. 체크카드 활성화			
1 체크카드 세제혜택 우대	소득세법 개정	11년중 국회제출	기재부
2 체크카드 이용실적 신용평가 반영	신평사 자율시행	11년중	
2.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가. 고정금리·분할상환 활성화			
1 소득공제 차등화	소득세법 개정	11년중 국회제출	기재부
2 주신보 출연료율 차등화	시행규칙 개정	11년중	금융위
3 은행별 목표관리 강화	지도공문 발송	11년중	금감원
나. 장기자금조달 여건 마련			
1 MBS 및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11년이후	금융위·금감원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1 변동금리대출 설명의무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11년중	금융위·금감원
2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이드라인 마련	11년중	
3 잔액기준 COFIX 유도	실적점검	11.7월중	
4 금리상한상품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11년중	
5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실태점검	11년중	
6 불법·허위 광고 억제	실태점검	11년중	
4 서민금융 기반강화 방안			
1 서민우대금융 자금지원기준 등 개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선	11.7월	금융위
2 과다 허위 대부광고 피해방지	대부업법 개정	11년중 국회제출	금융위
3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실적점검	11년중	금융위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2012. 2. 27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I. '11년중 가계대출 현황

II. 기본방향

III.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방안

1. 예대율 관리 강화
2.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3.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4.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5.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심사 관행 개선
6. 강화된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

IV. 보험사 가계대출 관리방안

1.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 상향조정
2. 가계대출 취급 및 영업활동 관리감독 강화

V. '12년도 서민금융 추진방안

1.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 강화
2. 고금리 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
3. 서민의 주택금융 이용부담 완화

VI. 향후 추진 계획

Ⅰ. '11년중 가계대출 현황

1. 일반현황

□ 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20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2010년말 대비 **7.6%** 증가한 **858.1**조원

○ 은행권에 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455.9**조원으로 **2010**년말 대비 **5.7%**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은 **402.3**조원으로 **9.9%** 증가

□ 2007년 이후 은행권에 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

< 연도별 가계대출 증가율(%) >

(괄호안은 연도별 증가액, 조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9.7 (45.5)	11.4 (58.7)	9.7 (55.6)	8.7 (54.8)	7.7 (53.0)	8.1 (59.6)	7.6 (60.6)
은행	10.6 (29.2)	13.3 (40.7)	5.0 (17.5)	6.8 (24.9)	5.4 (20.9)	5.4 (22.0)	5.7 (24.4)
제2금융권	8.4 (16.3)	8.6 (18.0)	16.7 (38.1)	11.2 (29.9)	10.8 (32.1)	11.5 (37.7)	9.9 (36.2)

○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권에 비해 수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결과 규모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

* 2011년말 가계대출 잔액(한은기준, 조원)
: (은행) '04말 276.3 → '11년말 455.9 (제2금융권) '04말 193.8 → '11년말 402.3
-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 175.0 (보험) 74.7 (저축은행) 10.2 (여전) 38.8

2. 부문별 현황

□ (보험) '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74.7**조원으로 '10년말 대비 **6.4**조원**(9.3%)**이 증가하여 빠른 증가세

○ 특히 '11년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예년 대비 빠르게 상승

*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 : ('09) 4.9% → ('10) 3.0% → ('11) 9.3%

□ (상호금융) '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0**조원으로 '10년말 대비 **20.2**조원**(13.1%)**이 증가하여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업권별 증가율 : 신협 15.1%, 농·수협·산림조합 11.5%, 새마을금고 17.5%

○ **'02**년말 **45.7**조원에 불과하던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11년말까지 불과 **9**년 사이에 네 배 가까운 규모로 급속히 증가

* 2003~2011년 상호금융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은 16.1%에 달함

□ (저축은행) '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10.2**조원으로 '10년말 대비 **2.0**조원**(24.9%)** 증가

○ 증가속도가 빠른편이나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 구조조정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좀 더 추이를 보아가며 대응방안 검토

□ (여전사) '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38.8**조원으로 '10년말 대비 **2.5**조원**(7.0%)**이 증가

○ '11년중 카드사에 대한 대책*등으로 '10년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 ('10년 15.1% → '11년 7.0%)

* 카드사 대손충당금 기준 상향('11.6월 시행), 레버리지 규제 도입방안 발표, 카드 발급 등에 대한 점검 강화 등 카드시장 건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참고 : 6.29 대책 이후 가계대출 동향 〉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발표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제2금융권은 증가세가 확대

○ (은행권)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은 **11.6조원(+2.7%)**이 증가하여 상반기 12.8조원(+3.0%)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

○ (제2금융권) 반면 제2금융권은 하반기 **20.5조원(+5.6%)**이 증가하여 상반기 15.7조원(+4.3%)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

- 특히 보험사(1.6%→7.7%), 상호금융(5.5%→7.6%)의 경우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반기에 비해 크게 높아짐

2011년 분기·반기별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

(전년말비, %)

	'11.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	하반기
가계대출	1.4%	2.2%	1.6%	2.4%	3.6%	4.0%
은행권	0.9%	2.1%	1.2%	1.5%	3.0%	2.7%
제2금융권	1.9%	2.4%	2.1%	3.5%	4.3%	5.6%
(보험)	0.8%	0.8%	4.4%	3.3%	1.6%	7.7%
(상호금융)	1.7%	3.8%	3.1%	4.5%	5.5%	7.6%

※ 증가율은 2010년말 잔액대비 기간별 증가액으로 산출

Ⅱ. 기본방향

◇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호금융과 보험사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및 건전화 방안을 추진

○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예대율 관리,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충당금 조기적립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건전화를 유도

○ 보험사는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를 억제

◇ 이와함께 가계부채 규모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도 차질 없이 추진

○ 가계부채 증가가 실물경제 성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노력 강화

○ 부문별 가계대출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가 거시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신규대출 위주로 시행

◇ 또한 서민금융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도 병행 추진

Ⅲ.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방안

1 예대율 관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상호금융 수신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최근 들어 예대율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

* 상호금융 예대율 현황 (한은 비은행기관 여수신자료 · 분기말 잔액 기준)

	2010년		2011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협	65.2%	65.8%	68.1%	68.7%	69.4%	71.1%
상호금융[1]	68.9%	68.2%	67.9%	68.7%	69.3%	69.4%
새마을금고	55.1%	56.4%	58.1%	60.5%	62.8%	66.8%

1) 단위 농 · 수협, 산림조합

⇨ 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관리를 강화할 필요

대응방안

□ 정책자금 및 서민대출(햇살론 · 희망드림론)을 제외한 일반대출의 예대율을 관리

* FTA 후속조치에 따른 정책자금 집행 필요성, 서민대출 중심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자금 및 서민대출을 제외하고 예대율 산정

① 예대율을 80%이내로 운용*토록하고, 80%초과 조합은 2년내에 80%이하로 조정하도록 이행계획 징구**

* 은행과 동일하게 예대율 규제를 법제화하여 시행
('12년 3/4분기까지 시행령 · 감독규정 개정)

** 금감원이 각 상호금융 중앙회를 통해 이행계획 징구 ('12년 1/4분기중)

② 2011년말 기준 해당 업계 예대율 평균을 초과한 조합 · 금고는 2011년말 예대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 · 감독하고 위반시 우선 검사하는 등 건전성 점검을 강화

* 단 지역 경제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예수금 절대액이 감소하여 자연스럽게 예대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일부예외 인정

2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 · 감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일시상환 · 거치식 대출, 다중채무자 대출 등은 신용위험이 일반 대출에 비해 높은 만큼 보다 강화된 건전성 관리가 필요

○ 은행권은 일시상환 ·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다중채무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35%→50%로 상향 조정

⇨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를 통해 대출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

대응방안

□ 고위험 대출 유형을 설정하고, 고위험 대출이 과다한 조합에 대해서는 충당금 추가 적립 · 중점검사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새마을금고감독기준 개정, '12년 3/4분기 중 개정)

* 사업자금 성격임이 증명된 대출은 고위험 대출 분류시 제외

* 고위험 대출에 포함되는 일시상환 · 거치식 대출 금액 · 다중채무자 대출기준은 조합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② 신규 고위험 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

(2012. 3/4분기부터 적용)

- 신규 고위험 대출부터 우선 적용하되, 기존 대출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차환시부터 고위험 대출 충당금 기준을 적용

* 세부적인 충당금 적립기준은 조합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 (예) 정상, 요주의, 고정분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에 20%를 가산

③ 고위험 대출 과다 조합에 대해서는 중점 검사 · 감독

3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현황 및 문제점

□ 상호금융 대출 증가과정에서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지속 상승

* 단위농협 비조합원 대출비중 : (08말)29%→(09말)31%→(10말)32%→(11.11월)33%
단위수협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비중은 66% 수준

⇨ 조합원간 상호부조라는 상호금융의 취지, 원격지 대출 관리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비조합원 대출은 바람직하지 않음

□ 상호금융은 비조합원 대출의 연간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단위농·수협의 경우 타 업권에 비해 높은 한도를 적용

* 상호금융 비조합원 대출한도 : (농협) 신규대출의 1/2, (수협) 대출한도 미적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규대출의 1/3

⇨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

대응방안

□ 상호금융의 비조합원에 대한 연간 신규대출 한도를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1/3**이내로 일원화

○ 단위농협은 금년부터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신규 대출의 **1/3** 이내로 축소하도록 지도·감독 (행정지도, '12년 1/4분기중)

○ 비조합원 대출한도가 없는 단위수협의 경우 법 개정을 거쳐 **2015**년부터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신규대출의 **1/3**이내로 제한 (수협법·수협법시행령 개정, '15년부터 시행)

- 다만, 비조합원 신규 대출 비중을 2011년말 기준으로 **standstill**하고, 비조합원 신규 대출 단계적 감축계획을 감독당국에 제출

□ 정관·업무방법서 등으로 규율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규제의 일관성·실효성을 확보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새마을금고법 개정, '12년중 개정안 국회제출)

* 현재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의 경우 정관(단위 농·수협, 산림조합)이나 여신업무방법서(새마을금고) 등에서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규정

4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현황 및 문제점

□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실질적으로 권역외 대출 임에도 조합원 대출로 분류되어 대출한도가 미적용

*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 조합원과 동일세대, 준조합원(농·수협),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

⇨ 권역외 대출의 확대는 대출관리의 부실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해당지역 공동유대에 기반한 상호금융 운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음

대응방안

□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 범위에서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삭제
(신협법·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 '12년중 개정안 국회제출)

○ 삭제시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되어 비조합원 대출한도의 적용을 받게 됨

- 상호금융의 사업 중 신용사업(대출업무)에 한하여 적용

*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경제사업 등 신용사업 이외의 사업 이용시에는 계속 조합원의 이용으로 간주

□ 법령 개정 전에도 상호금융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산정시 다른 조합의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지도·감독

5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심사 관행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상호금융 대출 중 담보대출(11.9월말 총 대출의 86.4%)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

□ 상호금융은 업권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

○ 상호금융의 경우 상용근로자 보다 농어업인·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분명한 고객비중이 높음

○ 한정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권역외 대출 등의 경우 원격지의 담보를 충실히 관리하는데 한계

⇨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대응방안

□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상환능력)을 서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

(금감원이 가이드라인 마련 → 업권별 여신업무방법서에 반영, '12년 2분기 시행)

○ 금감원이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하여 소득 증빙 자료의 인정범위 등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여신업무방법서에 가이드라인을 반영

○ 소득 확인방법 및 인정대상 증빙자료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준용

- 단, 소득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농림어업인 등의 경우 보유재산의 소득환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방식*도 허용

* (예) 행정안전부(재산등록 매뉴얼)의 독립생계 소득기준 및 소득계산법 등

○ 금감원·중앙회의 검사시 상환능력 확인 여부 중점 점검

6 강화된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6.29 대책에서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2015**년까지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연체기간 : (정상) 3개월 미만 → 1개월 미만
(요주의) 6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고정) 6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연체

* 대손충당금 적립율 : (정상) 0.5%→1%, (요주의) 1%→10%

○ 다만, 시행시기와 방법은 **2013.6**월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3**년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함

□ 그러나 유예기간중 상호금융 자체적인 사전준비 없이 **2013.7**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일시에 적용할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 또한 상호금융 건전성 확보차원에서도 강화된 기준을 점진적으로 조기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유예기간 중에 단계적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대응방안

□ 상호금융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유예기간(~2013.6말) 중에도 강화된 수준(2013.7월부터 적용되는 수준)까지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을 단계적 상향 적용

○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의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각 조합의 이행여부를 점검
('12년 1분기 중 이행계획 제출 → 6월 반기결산시 이행여부 점검)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조기적용 예시 (단위 :%)

구 분	현 행	'12.7	'13.1	'13.7	'14.1	'14.7	'15.1	'15.7
정 상	0.5	0.55	0.6	0.65	0.7	0.8	0.9	1.0
요 주 의	1.0	2.0	3.0	4.0	5.5	7.0	8.5	10.0

※ 굵은 테두리 부분은 강화된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

Ⅳ. 보험사 가계대출 관리방안

1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 상향 조정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중 보험사 가계대출이 예년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 시현

*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 : ('09) 4.9% → ('10) 3.0% → ('11) 9.3%

○ 특히 **2011.6**월 이후의 증가속도가 빠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증감액 (증가율)	0.6조원 (0.8%)	0.5조원 (0.8%)	3.0조원 (4.4%)	2.3조원 (3.3%)

※ 증가율은 2010년말 잔액 대비

⇨ 보험사의 경우에도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대응방안

□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12년 2분기 규정개정, 6월 보험사 결산시 적용)

* 정상 : 0.75% →1.0%, 요주의 : 5% → 10%, 회수의문 : 50% → 55%

□ 은행의 **BIS** 규제에 해당하는 보험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상향조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2년 2분기 세칙개정, 6월 보험사 결산시 적용)

○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4%** → **2.8%**로 상향조정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4%** → **4.0%**로 상향조정

* 일시상환조건 대출, 3건이상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거치식 대출
→ 은행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범주와 동일(은행의 경우 BIS위험가중치 상향)

-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조정은 신규대출에 우선적용하되, 기존대출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차환시부터 적용

2 가계대출 취급 및 영업활동 관리감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사의 경우 보험모집과정에서 대출권유·알선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전단지 배포 등 공격적인 대출영업행위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측면

⇨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공격적인 대출영업을 억제 등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대응방안

□ 보험회사 등의 대출영업 억제

○ 전단지 배포, 문자메시지 등의 발송, 보험모집·상담 과정에서의 대출권유·알선 등 보험회사나 설계사의 대출권유행위 제한
(행정지도, '12년 1분기 중 시행)

○ 보험회사의 대출모집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과도한 대출모집인 운용을 제한 (행정지도, '12년 2분기 중 시행)

○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를 선별적으로 집중검사하여 대출영업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

□ 위험평가제도(RAAS) 평가지표에 가계대출 관련 항목을 추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2년 2분기 중 시행)

○ 상환능력 확인 등 '가계대출 취급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비계량 평가 항목)하여 보험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

Ⅴ. '12년도 서민금융 추진방안

1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 강화

□ (미소금융) 쇄신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 ('12년 상반기 중)

○ 특히, 전통시장 상인 및 신용등급은 양호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에 대한 지원 강화

□ (햇살론) 대환대출 및 자영업 서민에 대한 지원 강화 ('12.2.13 旣 시행)

○ 서민금융기관이 고금리 채무상환 용도의 대환대출을 적극 취급 하도록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비율을 **95%**(현행 85%)로 확대

○ 신용 **6**등급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기청 고시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시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

○ 서민금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대출취급 前 현장실사를 신용보증지역재단에서 수행토록 개선

□ (새희망홀씨 대출) 연간 자금지원 규모를 **1조 5천억원**으로 확대('11년 공급목표 1조 2천억원)

2 고금리 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지원 강화

□ 서민의 금리부담 경감

○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1%**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의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

- '12년중 4,000억원 지원 목표 ('09~'11년중 연평균 2,623억원 지원)
- 바꿔드림론 지원 후 **3**년이 경과한 서민에 대해 총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12.2.1 旣 시행)

○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주)의 대출중개기능을 활성화하여 서민들에 대한 맞춤형 대출안내, 환승론 서비스 등을 확대

□ 신용회복 지원 강화

○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저금리(4%) 재활자금 지원규모를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09~'11년중 연평균 648억원 지원)

○ 인터넷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신청을 활성화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이용절차를 개선하고 홍보도 강화

3 서민의 주택금융 이용부담 완화

□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을 확대 ('12.1.16 旣 시행)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수당 포함) **2,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대해 공급 신설('12년 1.5조원 이내 공급)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을 신설 ('12.2.27일부터 시행)

○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중인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수당 포함) **3,000만원** 이하 전세거주 가구에 대해 공급

□ 오피스텔(주거 목적) 및 노인복지주택 전세거주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신규로 지원
('12.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의결)

○ 국민주택기금·은행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보증대상을 확대

Ⅵ. 향후 추진 계획

□ 1/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행정지도 등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1/4분기 중 추진

○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기관 협의 후 3/4분기 까지 시행

○ 법률 개정사항은 금년 중 국회 제출 추진

□ 앞으로 제2금융권 등 부문별 가계대출 동향, 대책의 시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추진

< 추가 대응방안 예시 >

○ 가계대출 적정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등

*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예: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일정부분을 적립금 형태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
(은행권 도입 여부와 연계하여 검토)

참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추진일정

추진과제	필요조치	시행시기	소관부처
1.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1 예대율 관리 강화			
▪ 예대율 규제 제도화	시행령 개정 감독규정 개정	2분기 3분기	금융위 행안부
▪ 예대율 관리 이행계획 징구	지도공문 발송 이행계획 징구	1분기	금감원 중앙회
▪ 평균 예대율 초과조합 지도·감독	지도공문 발송	1분기	금감원 중앙회
2 고위험 대출 규제·감독 강화			
▪ 고위험 대출 충당금 기준 강화	감독규정 개정	3분기	금융위 행안부
▪ 고위험 대출 과다조합 감독강화	검사·감독	3분기	금감원 중앙회
3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 농·수협 비조합원 대출한도 관리	지도공문 발송	1분기	농식품부 금감원 중앙회
▪ 수협 비조합원 대출한도 신설	수협법·시행령 개정	2015년	농식품부
▪ 비조합원 대출한도 법정화	농·수·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개정	금년 중 국회 제출	관계부처
4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농·수·신협법 산림조합법 개정	금년 중 국회 제출	관계부처
5 상환능력 확인 강화	여신업무방법서 개정	2분기	금감원 중앙회
6 강화된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 기준 적용 준비	이행계획 제출 검사·감독	1분기 2분기	금감원 중앙회
2.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1 건전성 규제기준 강화			
▪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감독규정 개정	2분기	금융위
▪ 가계대출 신용위험 계수 상향조정	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감원
2 가계대출 관리·감독 강화			
▪ 과도한 대출영업 억제	지도공문 발송 검사·감독	1분기 2분기	금감원
▪ RAAS 평가지표 개선	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감원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23-2. 카드사 외형확대 억제대책('11.6)' 1부

□ 별첨제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1. 6. 7. 14:00부터 보도 가능	금융감독원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은행과,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감독국			
책 임 자	배준수 과장(2156-9850) 성대규 과장(2156-9810) 이익중 국장(3145-8160)	담 당 자	김정주 사무관(2156-9812) 이준수 팀 장(3145-8162)	
배 포 일	2011. 6. 7.(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보실(3145-5786)	총 13매

제 목 :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의 카드남발, 카드대출 급증 등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음

<대책의 주요 내용>

① 신용카드사의 외형 확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

- 이를 위해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의 감독지표를 설정하고,
-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실시

⇒ 위규행위 적발시 영업정지, CEO문책 등 엄중 제재

② 안정된 자기자본 중심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 추진 등 자금조달 규제를 전면 정비

※ 별첨 :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http://www.fss.or.kr

별첨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

2011. 6. 7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1. 추진배경

2. 대 책

가. 외형 확대경쟁에 대한 밀착 감시

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지속시 엄중 제재 조치

다. 자금조달 규제의 전면 정비

3. 추진계획

1. 추진 배경

□ '03년 카드사태를 겪은 이후, 신용카드업은 **'06~'09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 '06~'09년 중 평균 증가율(%) : 카드자산 6.3% / ('01~'02년 중) 38.1%
카드매수 5.6% / 35.1%
마케팅비용 27.1% / -

□ 그러나, 일부 은행의 카드업 분사,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 등을 계기로 **'10년부터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리한 영업 조짐**

* '10년 중 증가율 : 카드자산 14.7% (↑ 9.7조원), 카드매수 9.0% (↑ 959만매)
마케팅비용 30.3% (↑ 1조원)

○ 특히, 과거 카드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이 **전년 대비 19%***(잔액기준) 증가하고,

*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6.3%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

○ 저신용자(KCB 7등급 이하)에 대한 **발급건수가 ('09) 64만건 → ('10) 100만건으로 급증**

□ 이에 따라, 금년들어 2차례에 걸쳐 **신용카드업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이러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 1/4분기 중에는 카드대출이 다소 감소**

*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조정, 불법 모집인 제재 강화(세부내용 : 별첨)

** '11.1/4분기 중 카드대출 신규취급액 : 26.7조원(전분기 대비 △3.5%, △0.9조원)

□ 한편, 할부금융·리스업의 경우에도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 '10년 중 자산 증가율(%) : 할부 24.0%(7.6→9.5조원), 리스 12.1%(14.8→16.6조원)

□ 현재 우리 금융시장은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대외적으로는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잠재적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상황

○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금융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

* '11.3말 현재 가계신용잔액(한국은행) : 801.4조원

□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은 대출내용과 자금조달 구조 등에서 취약성*이 있는 만큼 각별히 관리를 강화할 필요

* 1) 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은행 등에 비해 고객의 신용도가 낮음
2) 예금을 받지 않고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경색시 유동성 확보 곤란('03년 카드사태시)

○ 아울러, 과거 신용카드 사태의 경험 때문에 다른 어느 금융업종보다도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및 영업행태 등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반응이 예민한 점도 유의할 필요(예: 다수 언론의 "제2 카드대란" 경고 보도)

□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 비록 1/4분기 중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용카드업을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업이 더 이상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2. 대 책

〈기본 방향〉

◇ 카드대출 등이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

◇ 위규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장규율을 확립

◇ 신용카드업 등이 안정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 신용카드업 등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

가 외형 확대경쟁에 대한 밀착 감시

□1 신용카드 3개 부문의 적정 증가액(율) 설정

① 감독당국 내부적으로 "㉮카드 자산 증가,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율) 증가"를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을 가늠할 수 있는 3개의 핵심부문으로 선정, 관리

②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 증가액(율)을 설정, 감독 지표로 활용

- 연간 적정 증가액(율)은 경상 GDP 증가율, 가처분소득증가율*, 과거 신용카드 관련지표의 증가율**, 가계부채 억제 목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 '00~'10년 평균 증가율 : 경상 GDP 6.8%, 국민처분가능소득(명목) 7.4%

** '06년 이후 신용카드 관련지표의 평균 증가율 :
카드자산 8.0%(신용판매 11.1%, 카드대출 4.0%), 카드매수 5.6%, 마케팅비용 18.7%

2 회사별로 목표치를 제시토록하고 1주일 단위로 점검

① 카드회사 스스로 연간 및 월별 증가액(율) 목표치를 제시토록함

② 감독당국이 1주일 단위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시 즉시 경고 조치

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지속시 엄중 제재 조치

1 금감원 특별검사 실시

○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예 : 3회) 이상 초과한 회사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특별검사 실시

2 영업정지 및 담당 임원 징계

○ 금감원 검사결과, 위규행위 발견시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 CEO · 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

- "길거리 모집" 등 불법 모집행위,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카드발급 및 카드대출 행위 등을 중점 점검

※ 금감원에서 5.25~6.24간 진행 중인 "신용카드 발급실태 특별점검" 결과, 위규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에 상응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

다 자금조달 규제의 전면 정비

1 레버리지(Leverage : 총자산/자기자본) 규제 도입 추진

①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

⇒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 여전사는 자금조달을 예금이 아닌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고, 대부분 신용대출로 취급하며, 은행에 비해 고객의 신용도도 낮아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을 감안 레버리지를 엄격히 규제

- 다만, 대부분의 여전사가 자본확충 및 과도한 자산확대 자제 노력을 기울이면 준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도 설정

* '11.3월말 현재 여전사의 레버리지 현황

평균	카드	할부	리스	신기술
5.2배	4.1배	8.4배	7.2배	3.4배

②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

* 여전사에 대한 규제 및 대출 차이

	진입규제	대출('10말 잔액)
(신용카드사)	허가	가계(27.9조원)
(할부·리스·신기술사)	등록	기업(15.3조원) 및 가계(9.7조원)

③ 규제준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받아 점검함으로써 한도초과 여전사의 단계적인 자본확충 또는 자산감축 유도

2 회사채 발행 특례(여전법 §48) 폐지

○ (제도 도입배경)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 회사채 발행" 특례 조항은 과거 여전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은행의 취약한 자금중개기능을 여전사를 통해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

* 신용카드업법('87년 제정도입)·시설대여산업육성법('87년 도입) → 여전법('98) 통합

○ (폐지 필요성) 여전사의 '98년말(여전법 시행) 대비 '10년말 자산은 1.7배인 반면, 자본은 **18.3**배로 증가하여 자본이 확충되었고, 은행의 자금중개기능도 개선된 만큼 폐지 필요

* 자본('10년말, 조원) : 삼성카드 6.0, 신한카드 5.1, 현대카드 1.6

** 여전사 '98년과 '10년말 비교(단위 : 억원)

구분	'98년말(A)	'10년말(B)	배수(B/A)
자산	694,844	1,207,739	1.7배
자본	13,644	249,314	18.3배

- 현행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을 유지할 경우, 과도한 차입이 가능하여 '03년 카드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전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 내포

* 카드사의 경우 '11.3월말 자본(17.8조원) 규모로 최대 144.5조원의 회사채 추가발행 가능

<자본대비 회사채 발행 현황('11.3월말)>

(단위 : 조원, 배수)

여전사 계		계	카드	할부	리스	신기술
자본(A)		27.9	17.8	4.9	3.5	1.6
회사채 잔액(B)		66.4	33.8	20.6	11.4	0.5
회사채	**발행배수(B/A)**	**2.4**	**1.9**	**4.2**	**3.2**	**0.3**
	추가발행 가능액	212.3	144.5	28.2	24.1	15.5

3. 추진 계획

1 "외형 확대경쟁 밀착감시" 및 "위규행위 카드사 엄중 제재"는 6월중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

2 "레버리지 규제 도입" 및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를 위한 여전법 개정을 금년 중 추진

○ 아울러, 레버리지 규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여전사들이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춰 자율이행토록 유도

별첨 **旣 발표한 신용카드업 감독·검사 강화방안 추진현황**

1 旣 추진사항

1 카드대출의 충당금적립률 상향 조정(6월말 시행 예정)

○ 카드대출의 예상손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카드대출 충당금을 높여 **손실흡수 능력 강화**

자산건전성 분류별 대손충당금 적립률 조정내용

(단위: %)

구 분	연체월수	현 행		개 정 (안)	
		신용판매	카드대출	신용판매	카드대출
정 상	1개월미만	1.5		1.1	2.5
요주의	1~3개월미만	15		40	50
고 정	3개월이상(회수가능)	20		60	65
회수의문	3~6개월미만	60		75	75

2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 확대(4월 금융위 승인의결)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준으로 **'3장 이상'**에서 **'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

3 리볼빙서비스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11.3월)

○ 취급시 신용심사 강화, 신용도에 따라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복수카드 공유정보에 리볼빙 이용잔액 포함 등

4 신용카드 모집실태 점검 강화('11.3월 이후)

○ 모집실태 점검주기 단축(매반기→매분기, 3.10~3.28 실시), 여신금융협회 합동기동점검반 강화(20명→30명, 금감원 검사원 참여(월1회))

5 신용카드 마케팅 경쟁실태 점검 강화('11.1월 이후)

○ 마케팅 경쟁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단축(연1회→매반기)하여 불건전 경쟁행위*를 적극 시정 (1.14~1.31 실시)

* 마케팅행사시 수익성 분석 불철저, 카드론에 대한 리스크관리 미흡 등

6 불법 모집인에 대한 제재 강화('11.3월 이후)

○ 불법 모집인(총 13명)에 대하여 과태료(500만원 이내) 부과(6.1)

2 추진중인 사항

1 신용카드 발급실태 전수조사('11.5월~6월)

○ 최근 6개월간('10.10월~'11.3월)의 신용카드 발급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카드발급 자격기준 강화 지도

* 현재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서면점검 중이며 6월말까지 현장점검 예정

○ 전수조사 결과 위규사항이 발견된 카드사를 제재하는 한편, 카드발급 증가폭이 큰 카드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지속 실시

2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 기획점검 실시('11.6월중)

○ 계절적으로 불법 모집이 발생하기 쉬운 행락철인 점을 감안하여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에서의 모집실태 특별점검 실시

3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카드사 및 임직원 제재 강화 (6~7월)

○ 소속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 적발시 카드사 및 관련 임직원의 관리감독책임 강화방안 마련·시행

4 카드대출 리스크관리기준 마련('11.4월~6월)

○ 불건전한 카드대출 영업행위를 억제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기준 마련 및 규정화 추진

* 현재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카드대출 리스크관리 T/F' 운영 중

5 카드대출 리스크 분석 및 Stress Test 실시('11.5월~6월)

○ 카드대출 관련 리스크를 분석·평가하여 취약점을 파악·개선하는 한편, 거시경제여건 악화시의 위기상황분석 실시

* 현재 카드업계, CB사 등과 위기상황분석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자료수집·분석 진행 중

6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의무화 (6~7월)

○ 현행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분석 모범기준*(금감원장 행정지도)을 강화하여 감독규정화

* 신용판매 이익 ≥ 부가서비스 비용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24. 보이스피싱 사전방지 및 사후 피해구제 대책
- 최근 3년간 피해 건수, 금액 포함

□ '06년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초 발생한 이후 **'07년부터** 각 부처에서는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 특히, '08년 범죄가 급증*한 이후 **'09년부터** 다양한 대책들을 통해 범죄 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

*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08(8454건, 877억원) → '09(6720건, 621억원) → '10(5455건, 554억원) → '11(8244건, 1019억원) → ~'12.7(4207건, 460억원)

< 09년 이후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금융(금융위 등)	통신·치안(방통위, 경찰청 등)
2009년	□ ('09.4월) 대포통장 유통행위 처벌 강화 * 1년 이하 → 3년 이하 징역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09.6~9월) 「대포통장 근절대책」 추진 ○ 전화금융사기 혐의계좌 모니터링 실시(6.15) ○ 예금통장 양도금지 문구 기재(7.1) ○ 장기 계좌이체 실적이 없는 고객의 이체한도 축소 * 1회: 6백만원 → 70만원 1일: 3천만원 → 70만원 ○ 전화금융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보완 * 지급 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소유한 타 은행 계좌는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 ('09.5.1, 방통위) 기간통신사업자(KT 등)가 국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서비스 제공 □ ('09.9월, 방통위) 3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단말기에 "국제전화입니다" 표시

2010년	□ ('10.3월) 「예금계좌 개설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 단기간 다수계좌(1개월내 2개 이상) 개설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	□ ('10.3~5/8~10월,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기획수사 * (3.1~5.31) 전화금융사기 단속 및 홍보강화 (8.1~10.31) 서민대상 금융범죄 특별단속 (10.18~31) 친서민정책 관련 전화금융사기 상시단속
2011년	□ ('11.3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9.30일 시행) ○ 법 시행 후,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11.10.13)를 거쳐, 채권소멸 및 최초 환급금 지급('11.12.23) □ ('11.8.16, 11.30)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위한 112 신고센터 전용라인 구축 * 피해자가 112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간 전용라인 구축('11.8.16 서울지역, '11.11.30 전국확대) □ ('11.12월) 카드론 신청 절차 강화 ○ 카드론 신청시 고객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절차 의무화	□ ('11.12.12,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발신번호 조작 제한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화
2012년	□ ('12.1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 ('12.5.21) 카드론 지연입금 *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대출 신청시 2시간 후 입금 ○ ('12.5.31)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구성 * 금융위,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등으로 구성하여 기관간 공조체계 유지 ○ ('12.6.26) 지연인출제 시행 *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 금액은 10분후 인출 가능	□ ('12.1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 ('12.7.1, 방통위) 발신번호 변작 제한을 위한 사업자 자율 규제 시행 ○ (경찰청) 14개 시도 전담수사팀 구성('12.2.1) 및 기획수사 진행('12.4~5월)

김 용 태 의원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1.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5개 협회에서 약속한 계획 대비 고졸자 채용실적 (회사명, '11~'12년 계획 및 실적)

□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18개) 고졸채용 계획 및 실적

(단위 : 명)

	'11년		'12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2.8월말 기준)
산업	90	90	120	60
농협	34	38	100	-
신한	124	124	120	76
우리	112	112	200	31
SC	90	90	70	38
하나	230	230	133	89
기업	157	157	163	162
국민	8	8	20	-
외환	32	32	50	9
씨티	-	1	20	2
수출입	13	14	4	-
수협	11	11	8	13
대구	20	20	24	12
부산	47	47	50	30
광주	19	19	20	22
제주	3	3	3	-
전북	10	11	5	14
경남	51	51	20	13
계	1,051	1,058	1,130	571

생명보험회사(주요11개사) 고졸채용 계획 및 실적

(단위 : 명)

구 분	'11년		'12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2.8월말 기준)
대한생명	33	49	44	5
알리안츠생명	6	10	17	8
삼성생명	160	158	180	189
흥국생명	15	19	10	8
미래에셋생명	8	4	5	0
동양생명	0	0	0	0
메트라이프	0	4	0	0
신한생명	4	11	10	7
ING생명	1	1	0	2
농협생명	0	0	0	15
교보생명	41	41	6	59
합계	268	297	272	293

손해보험회사(주요10개사) 고졸채용 계획 및 실적

(단위 : 명)

구 분	'11년		'12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2.8월말 기준)
메리츠	85	99	100	139
롯데	241	325	251	206
그린	10	27	5	1
흥국	144	178	143	85
삼성	20	23	125	120
현대	96	101	0	66
LIG	40	5	20	10
AXA	81	171	30	101
더케이	26	38	0	7
에르고다음	113	120	108	57
합계	856	1,087	782	792

금융투자회사(160개) 고졸채용 계획 및 실적

(단위 : 명)

	'11년		'12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2.8월말 기준)
증권 (61개)	349	322	349	143
자산운용 (81개)	19	10	5	4
선물 (7개)	5	7	1	0
신탁 (11개)	8	29	7	2
합계(160개)	381	368	362	149

여신금융회사 고졸채용 계획 및 실적

(단위 : 명)

구 분	'11년		'12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12.8월말기준)
롯데카드	59	134	63	65
비씨카드	21	30	30	37
삼성카드	0	0	10	0
신한카드	125	95	125	86
하나SK카드	-	2	10	1
현대카드	-	96	100	52
KB국민카드	-	0	미정	0
현대캐피탈	0	186	90	85
기타 여전사(54)	55	110	73	117
합계	**260**	**653**	**501**	**443**

김 재 경 의원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1.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2008.1～현재)

1 대통령 지시사항

○ '12.8월 현재 '08년 이후 모든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이 완료된 상황('08년~현재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실적)

지시일	시달일	구분	지 시 내 용	추진실적
08.03.03	08.03.19	검토	신기술에 대한 담보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종료 (09.9.30승인)
08.03.11	08.03.31	검토	금년도 사업 조기발주 추진	종료 (08.12.29승인)
08.03.10	08.04.08	계획	예산 10% 절감	종료 (09.1.30승인)
08.03.10	08.04.08	계획	규제개혁의 조속한 추진	종료 (09.6.17승인)
08.03.31	08.04.10	계획	법을 바꿔야하는 개혁과제 신속 추진	종료 (09.1.30승인)
08.03.31	08.04.10	계획	산업은행 민영화	종료 (08.7.25승인)
08.09.02	08.09.09	검토	9월 위기설 신중 대응	종료 (08.10.21승인)
08.11.18	08.12.02	검토	무역금융 적극 지원	종료 (09.9.13승인)
08.11.18	08.12.02	검토	한은 금리 인하 관련 협조	종료 (09.9.13승인)
09.01.22	09.02.12	검토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사항 국내외 홍보	종료 (09.11.13승인)
09.04.14	09.04.22	검토	고리 사채 문제 대책 강구	종료 (09.9.13승인)
09.05.19	09.06.02	검토	금융기관 용어 변경 검토	종료 (09.11.25승인)
09.05.21	09.06.02	검토	시중 단기유동성자금 현황 검토	종료 (09.11.25승인)
09.09.03	09.09.14	검토	위기 탈출을 위한 구조조정 추진	종료 (11.5.6승인)
10.01.01	01.01.15	검토	금년도 예산의 적극적 집행	종료 (11.2.17승인)
10.03.25	10.04.07	검토	가계부채 모니터링 및 영향 점검	종료 (11.2.17승인)
10.04.01	10.04.07	검토	미소금융 지원 활성화	종료 (11.2.17승인)
10.11.30	10.12.06	검토	연말 친서민정책 평가 및 점검	종료 (11.11.18승인)
10.12.21	10.12.27	검토	전국민 안보의식 강화	종료 (11.12.30승인)
11.1.18	11.1.24	검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시 자료 적극 수집	종료 (11.12.20승인)

2 국무총리 지시사항

○ 총 11개의 지시사항중 8개(설 명절 민생안정 지원대책,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대비 철저)는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3개 과제는 조치계획 수립중에 있음

< 총리실 지시사항 목록 >

지시일	지 시 내 용	추진실적
12.04.24	불법 사금융 척결 관련	추진중
12.04.20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추진중
12.04.10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대비 철저	완료(4.16일)
12.03.27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처 강화	추진중
12.01.10	설 명절 민생안정 지원대책	완료(2.15일)
10.07.13	기업간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대책 마련	완료
10.06.08	국가위기 관리 및 대응매뉴얼 전면적 개선	완료
08.10.28	공공부문 고통분담 솔선	완료
08.07.30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완료
08.03.15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관련	완료
08.03.18	물가안정, 금융시장 안정화 관련	완료

i) 설 명절 민생안정 지원대책

- 정책금융기관(4.0조원), 시중은행 협조(9.3조원) 등을 통한 설 전후 자금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미소금융' 추진

ii)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처 강화

- **대부업자 광고규제**를 **강화***한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12.3월)하였고, 대부업협회 자율심의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과장·과다 광고행위**를 **제한·시정**토록 유도

* 광고시 상호·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의 글자크기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한, 과도한 차입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표시 의무화 등

iii)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대비 철저

- 비상금융합동상황대응회의 개최(4.13일), 사이버테러 대비 위기상황대응반 운영 등 추진

iv)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 현재 산하 공공기관에서 주민번호 수집실태 자체점검 중(7.16일~)이며, 향후 법령에 근거해서만 주민번호 수집·이용 예정

- 전 금융권역(은행·증권·보험 등) 개인정보 수집실태 전수조사(4~6월) 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운영중(6월~)

v) 불법 사금융 척결 관련

-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피해상담·신고**를 **접수**하고 **서민금융** 등 **지원 실시**

  * 4.17~7.12중 **43,028**건의 피해상담·신고를 접수, 이중 서민금융 희망자 2,166건 중 **642**건(29.6%) 서민금융 지원

- 불법 사금융 척결 추진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요건 등**도 **개선**(5.31)

  * 예 : 과거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도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에 포함, 대부업체의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확대 등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2-1.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2008. 1 ~ 현재)

□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11건임.

감 사 명	감사 기간	감사결과	비 고
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	'09.06.15 ~ 07.17	별첨1 별도제출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10.03.15 ~ 03.19	별첨2 별도제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10.01.28 ~ 04.02	별첨3 별도제출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10.09.06 ~ 10.13	별첨4 별도제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10.12.09 ~ 12.29.	별첨5 별도제출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11.03.17 ~ 03.25	별첨6 별도제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11.03.21 ~ 05.26	별첨7 별도제출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11.07.04 ~ 07.29	별첨8 별도제출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11.09.19 ~ 10.31	별첨9 별도제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12.01.09 ~ 02.28	별첨10 별도제출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12.03.05 ~ 03.16.	별첨11 별도제출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2-2. 처분요구사항 관련(2008. 1 ~ 현재)
(1) 변상책임 판정 현황
(2) 징계요구 현황
(3) 연도별/건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4) 연도별/건별 법·제도 등 개선요구 사항 현황
(5) 연도별/건별 권고사항 현황
(6) 연도별/건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 받은 사건 내역

□ 변상책임 판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징계요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연도별/건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연도별/건별 법·제도 등 개선요구 사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연도별/건별 권고 및 통보사항 현황 : 별첨1

□ 연도별/건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 받은 사건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1> 연도별·건별 권고 및 통보사항 현황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른 연도별·건별 권고 및 통보사항

처분요구일	대상기관	처분 요구 사항	이행일자	미이행사유
2009.11.13	금융위원회	펀드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부적정	2009.12.14	
2010.12.21	금융위원회	대부업 동일 상호 중복 등록에 대한 제한 제도 미비	2010.06.18	
2010.12.2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범위 설정 불합리	2011.11.30	
2010.12.21	금융위원회	대부업자 관리·감독권 분담 불합리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0.12.21	금융위원회	대부업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분석 방법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0.12.21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추진 미흡	2010.06.18	
2010.12.21	금융위원회	대부업 감독 업무 조정 및 기관 간 협조 미흡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0.12.21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회사의 휴면 예·적금 등 활용방안 미수립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0.12.21	금융위원회	비과세 예탁금 한도 상향 등에 따른 수신 증가분 활용 방안 미흡	2010.07.26	
2010.12.21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 계정 적자 해소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대책 미흡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0.12.21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감독규정 운영 및 지도·감독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0.12.21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 대형화·계열화에 따른 차등 감독기준 미정비	2010.09.23	
2010.12.21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운용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0.12.21	금융위원회	부실한 상호저축은행의 제3자 인수 추진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0.12.21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성에 대한 검사·감독 불철저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0.12.21	금융위원회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확대 제도 운영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0.12.21	금융위원회	대출재원 부족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지원사업 차질 우려	2010.10.08	
2010.12.21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휴면예금의 출연 관리 및 자금 운용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0.12.21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불합리 (권고사항)	2010.09.17	
2011.03.14	금융위원회	ㅇㅇ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처리 태만	2011.04.06	
2011.06.08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정체성 관련 대책 마련 미흡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1.06.08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등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한 배당정책 수립 미흡	2011.08.10	
2011.06.08	금융위원회	정부 미보증 단기 외화채무의 관리대책 미흡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1.06.08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주요 재무지표 개선노력 미흡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1.06.08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세부 추진방안 미비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1.06.08	금융위원회	정책금융 영역인 기금대출 업무 미취급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1.06.08	금융위원회	해외자원 개발사업 검토절차 부적정	2012.06.15	

처분요구일	대상기관	처분 요구 사항	이행일자	미이행사유
2011.06.08	금융위원회	한국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On-lending) 설계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1.10.10	금융위원회	금호생명 인수 업무 부당 처리	2011.12.07	
2011.12.02	금융위원회	B2B대출 등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에 대한 국내은행 간 통합 관리·공유시스템 부재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2.13	금융위원회	금융상품 관련 약관 심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2.13	금융위원회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부당하게 위탁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2.13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 수단인 제재권 분담체계 등 불합리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2.13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부적정	2012.02.28	
2012.02.13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2.13	금융위원회	투자자 예탁금 관리 및 이용료 지급 불합리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2.13	금융위원회	증권투자자 부담 위탁수수료 인하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2.13	금융위원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미흡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2.13	금융위원회	소액공모제도 편법 운용 방치로 투자자 피해 발생	2012.06.29	
2012.02.13	금융위원회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2.13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2.13	금융위원회	외감법 재위반에 따른 공인회계사 제재 부적정	2012.07.11	
2012.02.13	금융위원회	금융기관들의 협회비 분담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담 전가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2.24	금융위원회	주식워런트증권(ELW) 제도 운영 부적정	2012.03.12	
2012.02.24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의 예탁증권 관리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2.24	금융위원회	조건부매도증권 의무예탁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7.10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장기 보유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7.10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 다른 회사의 경영권 확보 등에 대한 금지 규정 마련 미흡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7.10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과 다른 금융회사 대주주 간 교차대출 금지에 대한 감독 미흡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7.10	금융위원회	출자한 상호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을 위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마련 미흡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7.10	금융위원회	공영(건강)·유사보험 관련 보험사기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7.1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기관 간 정보공유 등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7.10	금융위원회	연체정보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7.10	금융위원회	연체상환 등 신용정보 변동사항 보고지연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7.10	금융위원회	대출성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2012.07.10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추진 중	기한 미도래

처분요구일	대상기관	처분 요구 사항	이행일자	미이행사유
2012.07.10	금융위원회	협병인가 심사기준 부적정	추진 중	기한미도래
2012.07.10	금융위원회	변액보험 특별계정 보수 관련 공시기준 미비	추진 중	기한미도래
2012.07.10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보상 등 관리 부적정	추진 중	기한미도래
2012.07.10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금 부당지급 통제를 위한 시스템구축 등 미비	추진 중	기한미도래
2012.07.10	금융위원회	유상증자 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규정 불합리	추진 중	기한미도래
2012.07.10	금융위원회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실효성 확보 부적정	추진 중	기한미도래
2012.07.10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사외이사 결격요건 규정 불합리	추진 중	기한미도래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2-3.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관련 (2008. 1 ~ 현재)

(1) 처분요구유형별 이행 현황

(2) 연도별 감사원의 중요처분에 대한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

(3) 연도별 변상판정/징계요구/개선요구/권고에 대한 재심의 청구 현황 및 결과

(4) 징계처분 관련 현황

□ 처분요구유형별 이행 현황

유 형		총건수	이 행 (건)		미이행 (건)		
			계	요구기한 내 이행	계	기한초과 이행	이행기한 미도래
변상판정		해당 없음	-	-	-	-	-
징계요구		해당 없음	-	-	-	-	-
시정요구		해당 없음	-	-	-	-	-
개선요구		해당 없음	-	-	-	-	-
권고통보	권고	1	1	1	-	-	-
	통보	62	15	15	47	-	47
	계	63	16	16	47	-	47

□ 연도별 감사원의 중요처분에 대한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연도별 편상판정/징계요구/개선요구/권고에 대한 재심의 청구 현황 및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징계처분 관련 현황 : 해당사항 없음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3-1. 자체 감사 관련 (2008. 1 ~ 현재)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상세 내역

□ 2008년 이후 자체감사 현황은 총 3건임

감 사 명	감사 기간	감사결과	조치결과
2008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08.06.23 ~ 06.27	별첨1	별첨4
2010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0.12.16 ~ 12.22	별첨2	별첨5
2011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1.12.26 ~ 12.30	별첨3	별첨6

* 2009년도의 경우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09.06.15~07.17) 수감으로 자체감사 생략

<별첨 1>

2008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08. 9.

감 사 담 당 관 실

Ⅰ 감사 개요

◇ 청사 이전비용 집행, 외부기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 **감사실시 기간** : 2008.6.23(월) ~ 6.27(금) (5일간)

□ **감사대상 기간** : '07.1. ~ '08.5. (단, 예산집행은 08.1~5.)

□ **감사대상 부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금융과

□ **감사반** :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 (과장, 5급3, 6급2)

□ **감사방법** : 표본감사, 서류감사

□ **감사대상업무** : 청사이전 비용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정책연구용역, 보증제도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혁신행정과)

②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혁신행정과)

③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혁신행정과)

④ '07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정책연구과제) 처리실태 (기획재정, 혁신행정과)

⑤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보증제도) 처리실태 (산업금융과)

***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한하고, 정책내용의 판단은 제외**

Ⅱ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금번 감사는 구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과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새로이 출범한 우리 위원회가 업무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o 주요 감사대상 업무를 조직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청사이전 경비 등 각종 **예산집행실태와 물품관리 실태**, 구 재경부 및 구 금감위에서 각각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던 **비정규직 공무원의 금융위 출범 후 통합운영 실태**

o 또한, 결산국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적정성 여부, '07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태 등으로 선정하였음

□ 감사실시 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대상 업무 및 선정이유,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음

□ 감사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담당자 변경 등으로 업무처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예산집행·차량 및 물품관리, 비정규직 급여, 연구용역 현황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금번 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소홀·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 잡는 등 **금융위 업무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부문별 총평]

① 청사이전 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o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 업무를 큰 문제점 없이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 , 다만

- **일반업무용 차량의 중형위주 임차·운영**, 국외출장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숙박비 초과 수령,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의 사례가 있었음

② 물품관리 실태

o 재물조사의 부적정으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관리되고 있는 현물과 일치하지 않음**

③ 비정규직 운영실태

o 금융위 본부와 FIU 근무자간의 **보수체계가 상이하고 보수 수준도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

④ 보증제도

o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조치 계획을 회신한바,**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 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 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조직규모와 기능면에서 구 금융감독위원회보다 확대되어 구 금감위사무실(금융감독원 건물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o 따라서, 금융위 사무실을 현재 청사(서초구 반포로)로 이전하게 되었는바,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작업은 **짧은 기간내에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 반면,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였음

o 이러한 상황에서의 예산집행은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사 이전과정에서의 예산집행 실태**」를 표본 감사대상으로 선정

o 아울러, 평소 공무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국외출장 경비집행,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 대한 '08.1~5월 기간중 실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함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금번 감사는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o 짧은 감사기간(5일)에 선정된 감사대상업무(청사이전 및 국외출장 경비 등)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청**사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여부, 관련업체 선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o 업무용차량 운영의 경우 조직개편 후 신규추가 수량 및 차종·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했으며, 국외출장 경비 집행실태 및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 혁신행정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서류(청사이전계획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지출관련 영수증 등)를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o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출관(지출관 보조 포함)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III) 감사 결과

□ 금융위 '08년 총예산은 **1,037억31백만원**으로서, 금융위 본부(160억78백만원), 금융정책사업비*(792억52백만원), FIU사업비(53억60만원), IBRD차관 원리금상환금(30억41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융정책 사업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669억4백만원), 역모기지론 출연(70억원), 금융전문대학출연(20억원), 모기지론 이차보전(16억39백만원), 금융시스템 시스템선진화(10억78백만원), 정책연구개발(6억3천만원)등으로 구성

o 금번 청사이전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는 **총 14억25백만원**으로서 주로 금융위 본부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주요 지출내역은

- 이사비용 및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356백만원**, 사무실 등 임차료 **297백만원**, 집기 등 구입비 **133백만원**, 통신시설 관련 경비 **500백만원** 등임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경비 소요 부문	집행액	총집행액 대비비율	비 고
계	1,425	100	
이사비용	31	2.2	
사무실재배치공사 등	325	22.8	
사무실 임차료 등	297	20.8	사무실(281), 차량(16)
집기 등 구입비	133	9.3	책상, 의자, PC 등
통신시설 관련	500	35.1	전화시설, 전산실 이전, 전자회의시스템, 메신저 도입 등
기 타	139	9.8	인건비, 무인경비시스템 등

* 세부집행내역 : <별표 1>

□ 감사결과,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관련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업무용 차량 운영, 국외출장비(숙박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① 업무용 차량운영의 불합리

《지적사항》

o **신설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인원수가 대폭 증가하고 (80→155명, FIU제외), 업무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업무용차량 소요가 증가**

- 금감원장을 겸직했던 구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의 차량을 사용했었으나, 금융위 출범에 따라 **금감원장 직위가 분리되어 금융위원장 전용차량 소요가 신규로 발생**하였음

- 또한, 금융위는 소관법률은 많아서(45개) 관련부처 및 국회 등과의 잦은 업무협의가 발생하는데, 단독청사에 입주해 있는 관계로 차량소요가 증가

o 그러나, **구 금감위는 업무용차량을 2대(부위원장, 일반업무용)만 운영**했고, 구 재경부(금융정책국)는 업무용 차량이 없었으므로 증가된 차량 소요에 비하여 운영차량 수는 적었음

- 이런 관계로 금융위는 조직개편 직후 **업무용차량 6대**를 신규로 추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업무용차량 운영현황

(단위 : 대)

종 전(구 금감위)				변 경(금융위)			
대형	중형	소형	계	대형*	중형	소형	계
1		1	2	3	4	1	8

* 대형(3대)는 위원장·부위원장·외빈의전용

o 한편,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5조는 차종 및 차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일반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1,600cc 이하로 운영**(동규정 별표1)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전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했으나 **실제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

《조치요구 사항》

o 혁신행정과장은 **에너지 절감 및 차량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용차량을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운영하시기 바람(통보)

② 기타 예산집행의 불합리

《지적사항》

o 공무 국외출장 경비지급 부적정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16조④항은 국외 공무출장을 함에 있어서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한·캐나다 FTA 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

o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관련지침 이행 불철저

-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08년부터 시행),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영수증에 실명서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소속부서명' 또는 '금융위'** 등으로 서명을 하고 있었음

-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1.1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995,000원)함에 있어서는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있었음

o **예산 지출과목의 부적정**

- 일과 전·후 직무수행으로 인한 식사비용은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함이 타당한데도 혁신행정과는 **2.11일 아침 학습동아리**(외부강사 초빙 모닝클래스)**를 마친 후 조찬비용** (76,000원)**과 5.13일 저녁 직원친절 교육 후 석식비용**(73,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o **수당지급의 부적정**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07.10.24)하면서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 '07.12~'08.2월분은 구 재정경제부에서, '08.3~5월분은 금융위에서 지급

《조치요구 사항》

o **혁신행정과장**은 **숙박비 초과 지급분($190)**에 대하여 즉시 환수조치하시기 바람 **(현지조치)**

* '08.7.21. $190 환수하여 국고 반납

o **혁신행정과장**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서명** 및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등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집행이 되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현지조치)**

o **혁신행정과장**은 향후 일과 전후 직원교육 등을 위한 식사비 지출을 할 경우는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지출 하시기 바람 **(현지조치)**

o **혁신행정과장**은 **초과 지급된 대우수당(703,640원)**을 즉시 환수조치하시기 바람 **(현지조치)**

* '08.6월분 급여지급시 당해직원 급여에서 703,640원을 환수하여 국고반납

나. 물품 관리 실태

(1)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조직 규모가 확대되어 보유물품 수량 및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o 이에 따라 새로 보유·운용하게 되는 물품의 관리상태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으로 선정

□ 감사 범위는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물품관리 업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o 물품의 재고관리, 관리기관 설치,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법상의 **기본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범위**로 한정함

<2008년도 금융위원회 수시재물 조사 현황>

('08.5월 현재, 단위 : 원)

합계	관리대장계	실사계	활용대상	불용대상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
수량	1,482	1,482	1,218	193	71
금액	801,607,532	801,607,532	701,274,952	94,947,780	5,384,800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07년~'08년 물품수급계획서, 수시재물조사결과표, 물품관리대장을 제출받아 물품수급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 정기재물조사의 실시 및 결과 등을 **서면으로 먼저 감사**하고

□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리대장과 대조하며 실지 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음

□ 실지감사는 재물조사표상 **1,482개 물품**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시간과 감사인력 등의 여건이 충분치 않아

o 식별이 용이하고 비교적 고가의 사무기기인 복사기와 노트북을 **선별하여 시행**하였음

[III] 감사 결과

□ 서면감사 결과 **물품수립 계획 및 정기 재물조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연1회 수립·집행**되었고

o 조달청의 「**정부조직 통폐합 기관의 재물조사 실시**」요청('08.4.28)에 따라 수시재물조사를 실시, 재물조사표가 조달청에 통보('08.5.22)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지적사항》

□ 현재 금융위는 **총 28대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에는 7대만 기재**되어 있고

o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경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

<물품관리대장 미기재 노트북 현황>

구 분	대 수	실지 관리과
금융위 회의용	19	의사운영정보팀
구 재경부 이관	1	시장분석과
	1	글로벌금융과
미기재 총계	21	

《조치요구 사항》

o **혁신행정과장은** 물품이 관리대장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재물조사를 재실시 하시기 바람 **(통보)**

다. 비정규직 운영 실태

〔 I 〕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FIU)와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비정규직을 **각각 11명, 14명 등 총 25명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 바,

o 두 기관의 통폐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는 없었는지, 두 기관의 비정규직 운영(근무조건, 급여, 4대보험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o 조직개편 직후 신규채용(8명)의 필요성·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가 있었음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비정규직 운영 기본계획 수립여부, 채용절차 및 방법, 예산 현황 및 보수체계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면서,

o 특히, 비정규직(총 31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보조원(21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

□ 감사방법은 근로계약서관련 예산서 및 급여지급서4대보험료 납부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o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III) 감사 결과

□ 비정규직 관련 서류를 점검한 결과, **금융위 본부**는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07.9.27, 금감위 제정)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o **FIU는** 본부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비정규직은 **총 31명으로서**, 속기사·YP·에디터·사무보조원·운전원 등으로 구성

o 조직개편 이후 **2명*** **퇴직, 8명 신규채용으로 6명이 순증** 되었음

* 1명은 금감원 취업, 1명은 건강상 이유로 퇴직

- 이는 조직규모 및 업무범위 확대로 **사무보조원 2명,** 공용차량 증설에 따른 **운전원 4명** 등 신규 추가소요가 발생한 것에 기인

구 분	인원 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속기사	2	의사운영팀, 위원회 속기업무
YP	1	금융정책과, 규제개혁 업무
에디터	3	금융정책과, FIU(2명), 영문 교열
운전원	4	업무용차량 운전
사무보조원	21	각과 및 비서실, 사무보조
계	31명	

□ **비정규직 신규채용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는바,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4대보험**의 경우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

o 다만, **금융위 본부와 FIU와의 보수체계 상이 및 보수수준의 불균형**이 있었음

□ 본부와 FIU의 사무보조원의 **보수체계**를 비교해 보면

o **본부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금융위 훈령)에 근거하여 근속연수별 연봉표에 근거한 **기본연봉에 더하여 정근수당·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정근수당은 근무년수에 비례하여 지급비율이 상향(월봉의 100%까지)되며, 성과급은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o **FIU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하고 **매년초 연봉 재계약**을 하며, 정근수당과 성과급은 없음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소속이었다가 금융위 본부로 소속이 바뀐 직원은 본부 보수체계로 운영

□ 본부와 FIU 사무보조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해 보면**

o 본부 신규직원('08년 채용)의 경우 연봉이 **13.5백만원** 수준에 이르는데 반하여, FIU의 '05년 채용자는 **12.9백만원에 불과함**

《지적사항》

□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자의 근무환경업무량·업무난이도·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

《조치요구 사항》

o **혁신행정과장은** 본부와 FIU간의 비정규직 **보수체계 불균형 해소를 강구**하시기 바람 **(권고)**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일련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통보
2	국외출장시 숙박비 과다 수령	현지조치
3	정부구매카드 실명서명 미이행 및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초과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불철저	현지조치
4	직원교육 전·후 식비 지출과목의 부적정	현지조치
5	대우수당 지급의 부적정	현지조치
6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통보
7	본부와 FIU의 비정규직 급여체계 상이	권고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적의 조치토록 요구

5.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개선통보·시정·업무주의사항은 2월 이내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2>

자체감사(정기)
12.16 ~ 12.22

2010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1. 1.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목 차 -

Ⅰ. 감사개요

Ⅱ.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나.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

라.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수준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Ⅰ. 감사실시 개요

〈목 적〉

◇ **예산집행·회계처리** 및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이행·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

⇨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 및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 「'10년 자체감사계획」('10.2.8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1 실 시 개 요

□ **감사기간 : '10.12.16(목) ~ 12.22(수), 5일간**

□ **감사대상 : '08.7 ~ '10.11 기간중 예산집행실태 등**

□ **감사반원:** 감사담당관실 5명(감사담당관, 5급 2, 주무관 2)

□ **감사방법: 서면점검**

* 수감부서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서면위주로 실시

2 감 사 중 점

□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의 적정성

□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의 적정성

□ 외부감사(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실태**

Ⅱ.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금번 감사는 '08년 자체감사('08.6.23~6.27) 이후 **2년6월만에 실시**

○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하는데 중점을 둠

□ 감사결과 금융위 설립('08.2.28) 초기 업무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안정성은 상당부분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

○ 다만, 회계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예산집행의 **세부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완할 부분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①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

☞ **출납서류 편철·관리 및 지출증빙·집행방법 등 부적정**

② **대통령 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추진·관리**(행정인사과)

☞ **정상적으로 추진·관리** → 특이사항 발견되지 아니함

* 대부분 과제가 완료되었거나 종료요청중이며, 일부 미완료과제도 정상 추진중

③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 → 부패영향평가 의뢰 미흡**(관련부서)

☞ '09.7 ~ '10.6 기간중 21건의 제·개정(안)중 **14건 기한도과 등**

④ **'09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 이행**(관련부서)

☞ 관련 제도 개선등 **적절히 조치**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①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출납 관련서류 편철·관리 부실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 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편철방법>

① **출납계산서**(규칙 제7호 서식)
② **국고예금월계대사표**(00년 00월분)
③ **세목별 간지**(본월지출액: 00원, 건수: 00건)
④ **지급결의서**
⑤ **내부결재(품의서)**
⑥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등)

- 월단위로 편철
- 세목별로 구분
- 5년간 보관

○ 그러나 금융정책국 등은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관리**하여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월계대사 및 지출증빙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함

< 부서별 지적사항 >

부서명	지 적 내 용
■ 금융정책국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금융서비스국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자본시장국	• '10.1~'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대변인실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사전품의 없이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경비 집행**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또한,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은 예산 집행시 **중요사항은 국장, 일반사항은 과장이 전결**토록 규정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등을 집행하면서 **사전 품의 없이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

* 예산집행시에는 집행건별로 **집행사유, 집행대상, 소요예산 및 해당 예산과목 등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품의)**를 득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집행 품의서에 결재권자의 서명이 아닌 도장 날인**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3조제8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문서는 서명(행정전자서명 포함)에 의한 결재**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서명은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부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등 **품의서에 부서장 서명이 아닌 도장을 날인**하여 증빙자료로 관리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 서명 및 특근매식비 현금집행**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 및 101p)」에 따라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상당수 실·국에서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팀 등)**으로 서명**하였고, 대변인실은 특근매식비 집행시 **현금으로 집행***

* '08.12.18(273,000원) 및 '08.12.23(25,000원)

②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통역비 지급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그러나 대변인실은 '09.9.29 김○○에게 **통역료 80만원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기타소득세)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 단, 지급금액의 80%(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소득세법 제21조제2항, 84조제3호, 시행령 제87조제1항)
>
> • 강의료 25만원 지급시: 25만원의 80%(20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은 5만원으로 기타소득세 비과세**
>
> • 강의료 30만원 지급시: 30만원이 80%(24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은 6만원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09년도 발생 에디터 비용을 '10년도 예산으로 집행

○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전년도 발생 채무확정액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됨

* 예외) 공무원보수, 군인사망급여금, 군인전상급여금, 보험료, 이자 등

○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은 **'09년 12월 발생한 영문에디터(2명) 비용 2,664,690원을 '10년도 예산(수용비)에서 지급**

□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지급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기획조정관실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09.3, 6, 9월에 각각 1,580,000원, 393,000원, 6,160,000원씩을 초과 지급

⇒ 첫째, 예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집행**할 것

-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사전 결재로 집행
- 정부구매카드 영수증에는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 특근매식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
- 연도내 발생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법령상 예외는 제외)
- 예산과목별 교부액을 준수하여 집행

둘째, 예산집행 서류는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할 것

나.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개선 필요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부서 중 출납 관련 서류의 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부서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경력이 없는 초임자**(주무관) **1인이 출납업무를 담당**

- 출납업무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출납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

대변인실	금융정책국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국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반면, 출납업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부서의 경우 **실무관이나 사무원이 출납업무 담당자를 보조**

- 출납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

행정인사과	기획조정관실	금융정보분석원	공자위사무국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사무원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사무원 1(보조)

⇒ 출납업무 담당 1명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공무원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할 것

*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예산·회계교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교육 등

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

①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 '11.01 현재 총 38개 지시사항중 **36개 완료, 2개 지시사항 추진중**

< 미완료 대통령지시사항 추진현황 >

지시일	지 시 내 용	이행단계	담당과	처리기한
09.09.03	구조조정 추진 관련	추 진 중*	기재단	10.12.31
10.12.21	전국민 보안의식 강화	추 진 중**	감 사	11.12.31

* 추진계획 수정·보완하여 승인요청 중으로 승인시 처리기한 연장 예정

** 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완료

② 국정과제 추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 '11.01 현재 27개의 과제중 **23개 완료, 4개 과제 추진중**

< 미완료 국정과제 추진현황 >

세부실천과제	계 기	시 한	단 계
단기사채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인수위 국정과제	10.하	연장요청*
산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여건 마련	'09 8.15 경축사	12.하	추 진 중
체계적인 금융교육실시	인수위 국정과제	12.하	추 진 중
햇살론의 안정적 정착	'10 8.15 경축사	12하	추 진 중

* '11년 상반기까지 기한연장을 요청 중에 있으며 1월중 연장승인 예정

⇒ '10.3.4 ~ 4.16 기간중 우리 위원회등 29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원의 「주요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없었음**

다. 법령 제·개정시 필요절차 이행수준

□ 현 황

○ 법령 제·개정시에는 **부패영향평가***,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표1 참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령 입안시 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토록 규정(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0조)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09.10.1 ~ '10.9.30 기간중 총 21건의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 : 부처협의와 병행 실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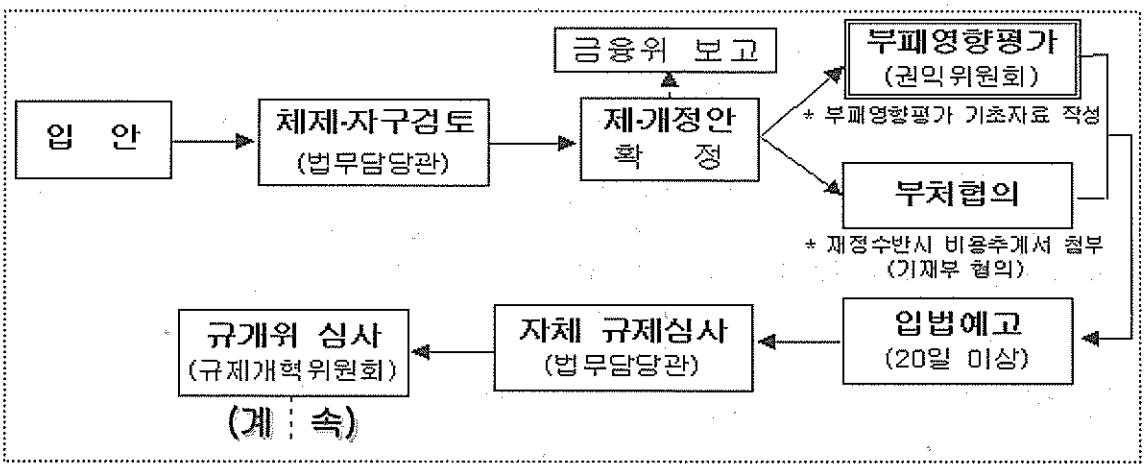

□ 점검결과

○ 법령 입안시 **필요한 절차는 대체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으나, **부패영향평가 의뢰가 다소 미흡**

- 총 21건 중 7건만이 기한내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12건은 입법예고 이후에 의뢰, 2건은 의뢰하지 아니함** (표2 참조)

⇒ 향후 법령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입법예고 전에 부처협의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할 것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구분
■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집행 관련 서류 편철 → 1개월 이내 감사담당관실로 그 결과 회보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 · 관서운영경비는 지급건별로 결재권자의 직접 서명에 의한 품의(또는 전자결재)를 통하여 집행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카드 영수증에 반드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할 것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기획조정관실, 행정인사과, FIU, 공자위사무국)** ·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대변인실)**	주 의
■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절** · 관서운영경비 집행시 원천징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 **(대변인실)** · 법령과 다르게 지난 연도 채무확정액을 현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FIU)** · 교부받은 과목별 자금한도를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기획조정관실)**	주 의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보조인력 지정 등 개선 필요** ·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업무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하여 출납업무가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개선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	권 고

※ 위 지적사항과는 별도로 모든 부서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국민권익위원회)를 부처협의와 병행하여 실시**하시기 바람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교육** (1월중)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3>

자체감사(정기)
2011.12.26 ~ 12.30

2011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2. 2.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목 차 -

Ⅰ. 감사개요

Ⅱ.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나. 민원업무 처리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Ⅰ. 감사실시 개요

〈목 적〉

◇ **예산집행·회계처리, 계약사무,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

⇨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및 **爲民奉仕의 행정구현**

* 「'11년 자체감사계획」('11.2.1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1 실 시 개 요

□ **감사기간 : '11.12.26(월) ~ 12.30(금), 5일간**

□ **감사대상 : 以前 자체감사 대상 이후의 예산집행실태 등**

* 예산집행실태 등은 '10.12월 이후, 민원처리실태는 '10.7월 이후

□ **감사반원:** 감사담당관실 5명(감사담당관, 5급 2, 주무관 2)

□ **감사방법: 서면점검**(필요시 현장실사)

2 감 사 중 점

□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 **以前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의 적정성

Ⅱ.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

□ 감사결과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다만, 예산집행 서류의 관리 및 민원처리기한 준수 등 **일부 보완이 필요**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①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

☞ **지출증빙 관리 및 배정한도 준수 집행 등 철저 필요**

② **5천만원 초과 전용건 일상감사 미이행**(기획행정실)

☞ **건당 5천만원 초과 이·전용 및 이월**은 일상감사 대상

<민원업무 처리 관련>

①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통보 부적정**

☞ **처리기한 도과 처리**(109건, 1.7%) 및 **임의형식 연장통보** 등

② **이첩민원 해소** 필요(산금과 민원 92% **신보·기보·캠코에 이첩**)

☞ **신보·기보·캠코에 국민신문고 구축**하여 직접처리 필요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1 점검개요

□ 2011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중 **각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서운영경비**를 중심으로 점검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총액은 1조 5,530억 77백만원**으로 대부분이 전출금·상환지출·이전지출* 등이며,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IBRD차관원리금상환, 모기지론이차보전, 농어가목돈마련장려기금출연 등

○ **직접 집행액은 306.8억원**(2.0%)으로 이 중 **인건비(144.1억원)를 제외한 집행(162.7억원)을 중점 점검**

<2011년도 일반회계 집행실적 (억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자산 취득	이전 지출	상환 지출	전출금등	계
예 산 (비중)	163.2 (1.0)	**155.1** **(1.0)**	**5.0** **(0.0)**	707.7 (4.5)	31.8 (0.2	14,493.5 (93.2)	15,556.3 (100.0)
지 출 (비중)	157.1 (1.0)	**144.1** **(0.9)**	**4.3** **(0.0)**	705.0 (4.5)	26.7 (0.2)	14,493.5 (93.3)	15,530.8 (100.0)
이 월	0	**0.7**	**0**	0	0	0	0.7
불 용	6.1	**10.3**	**0.7**	2.7	5.1	0	24.9

□ 예산집행지침,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등 **관련 규정 부합여부** 및 **집행절차, 증빙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2 점검결과 지적사항

①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집행 등**

○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32조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금융정책과**(업무추진비 5,095,100원, 특근매식비 2,984,780원 / 6~9월), **자본시장과**(업무추진비 2,345,932원 / 4월)

○ 또한, 기획행정실은 **국외출장에 따른 여비를 국외여비가 아닌 국내여비 예산에서 집행**

* APG 연차총회 참석(인도)을 위한 국외여비 2,861,610원을 국내여비로 집행(7.15)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시 상대방 성명 등 기재 미비**

○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지침 141p)

○ 그러나,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 미기재***

* **기획재정담당관실**('11.2.28 / 970,000원), **국제협력팀**('11.6.8 / 954,800원), **정책홍보팀**('11.8.11 / 568,000원)

⇒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준수**하고, **예산과목에 충실하여 집행**하며,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주의 : 해당부서)**

② 출납서류 편철·관리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출납 관련서류 편철·관리 부실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 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편철방법>

① **출납계산서**(규칙 제7호 서식)	• 월단위로 편철
② **국고예금월계대사표**(00년 00월분)	
③ **세목별 간지**(본월지출액: 00원, 건수: 00건)	• 세목별로 구분
④ **지급결의서**	
⑤ **내부결재(품의서)**	
⑥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등)	• 5년간 보관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월별 출납서류에 **출납계산서 등 일부 서식을 누락하여 편철**

부서명	누락서류
■ 금융정책과	• 출납계산서, 세목별 간지, 지급결의서
■ 정책홍보팀, 기획행정실	• 국고예금월계대사표
■ 기획재정담당관실	• 세목별 간지

□ 사전품의 없이 관서운영경비 집행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러나 자본시장과는 **일반수용비 집행에 있어 일부 품의서 누락**

부서명	품의서 누락 사례
■ 자본시장과	• '11.2.23(생수 1,101,100원), 3.16(복사기드럼 765,600원), 4,14(용지 2,127,000원), 5.19(사무용품 657,900원), 9.7(명패 283,800원), 11.30(토너 4,957,700원) 등

⇒ 예산집행 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하고, **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사례가 없도록** 할 것 **(주의 : 해당부서)**

③ 건당 5천만원 이상 전용건에 대한 일상감사 미이행

□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은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

> **※ 일상감사대상**(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
>
> • 예산이 5억원 이상인 사업
> • 성과관리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집행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일정규모 초과 계약건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의 제조·구매: 5천만원)
> •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의 이·전용 및 이월**
> • 주거래 은행의 선정·변경
> • 실·국 단위 이상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연찬회 등 행사 및 외부 참석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과단위 행사 포함)

□ 그러나 **기획행정실은 FIU 인건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본부 인건비에서 8,000만원을 전용**('11.12.23)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함**

<FIU 인건비 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일자	건명	세부사업명	'11예산현액	변경액	변경 후 금액
12.23	FIU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 자체전용	FIU 인건비	2,926	80	3,006
		본부 인건비	12,745	△80	12,665

⇒ 향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건에 대하여 반드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등 **「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 **(주의 : 기획행정실)**

④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모범사례)

□ ○○국은 '10년 자체감사시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하여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월계대사 및 지출증빙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고,

○ 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사전품의 없이 집행**하였으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사용영수증에 **사용자의 실명이 아닌 부서명으로 서명**한 사례가 빈번하여 **지적(주의)**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11년 1월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교체되면서 금번 감사일 현재 **'10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완전히 해소**하는 한편 관서운영경비 집행과정에서 **'예산집행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함

소 속	성 명	직 급	담당업무	담당기간
○○과	○○○	○○	○○국 관서운영경비 출납	'11.1월 ~ 현재

⇒ **각 과장**은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모범사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인사과장**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상기 담당자에게 포상 등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나. 민원업무 처리 관련

1 현황분석

□ 점검대상기간('10.7.1 ~ '11.11.30)중 총 5,931건* 접수·처리

* 반복민원 433건 포함시 6,364건

구 분	건 수
신 문 고	3,238
홈페이지	2,067
방문·우편	626
합 계	5,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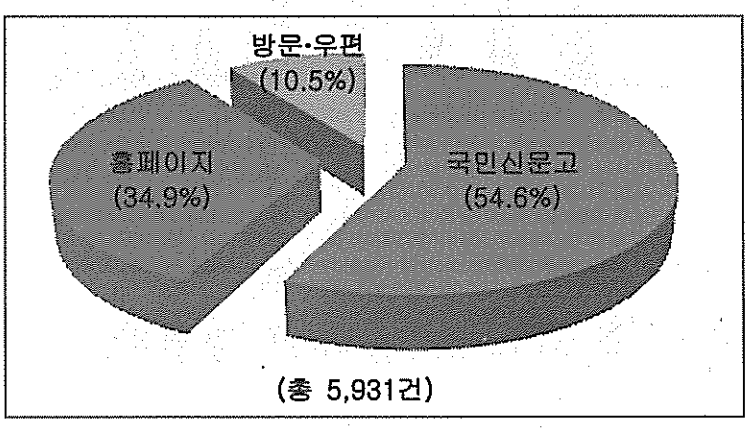

○ 통상적으로 **매월 3백건 내외의 민원이 발생**하며, 저축은행 등 **특정 사안 발생시 일시적으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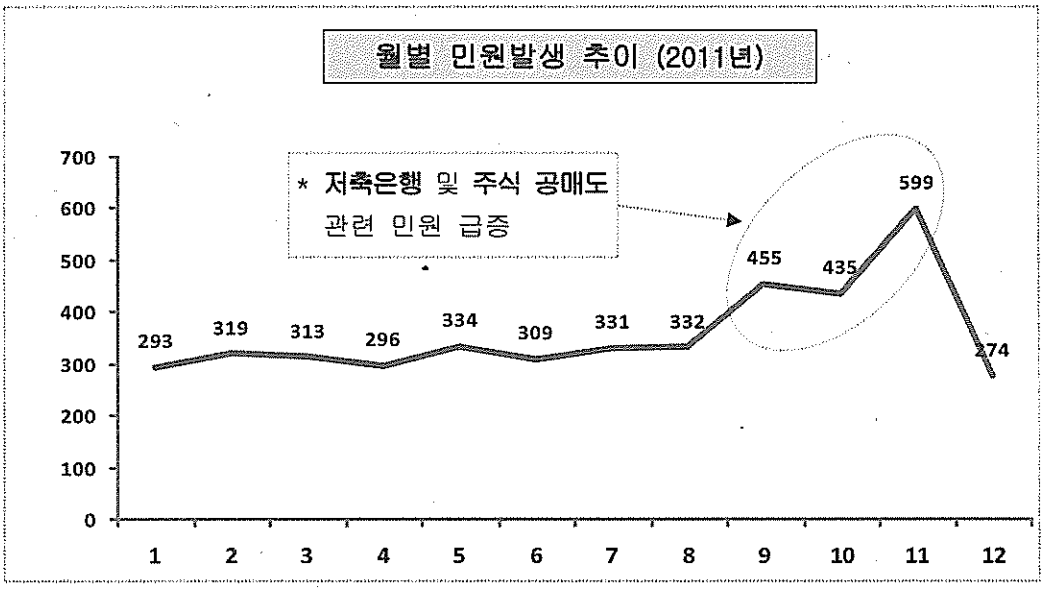

□ **부서별 : 중소금융과 → 금융소비자과 → 서민금융과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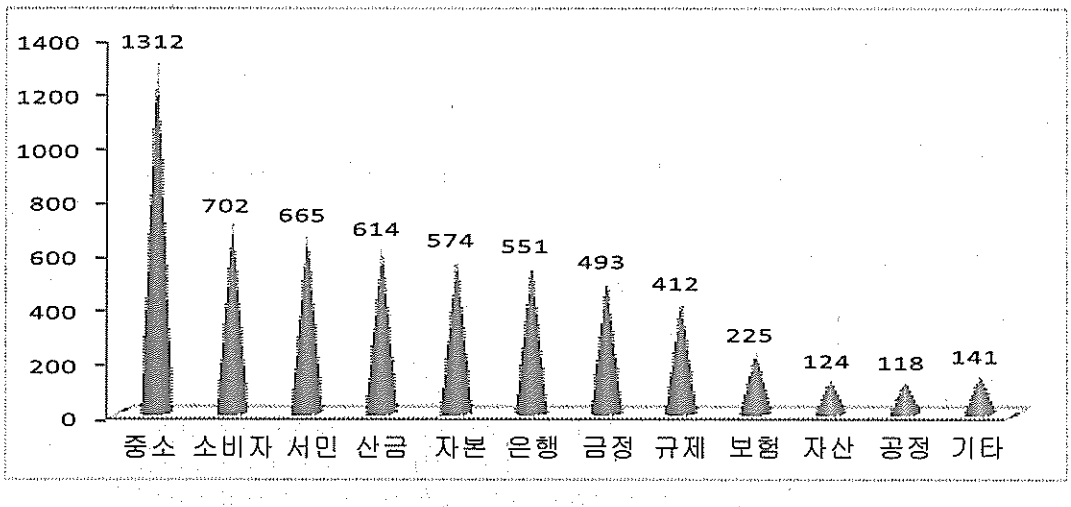

○ 중소·소비자·서민등 3개 과의 민원은 모두 **서민금융 관련 민원**으로 총 2,679건으로 **전체 민원의 45.2%** 차지

- 이들 **민원의 만족도*는 44.7%로 전체 만족도 49.0% 보다 4.3%p 낮게 나옴**

  * 중소금융(41.7%), 금융소비자(48.5%), 서민금융(49.2%)

○ **산업금융과 민원*은 대부분(91.8%) 신보, 기보, 캠코 민원**으로 해당 기관에 이첩되었으며, 만족도는 42.9%로 나타남

산금과 민원(건)	신 보	기 보	캠 코	기 타	합 계
	311	98	155	50	**614**

□ **속성별** : 일반민원*(3,544)→ 법령질의(1,160) → 제도개선(592) → 진정(493) → 기타(231)의 순

* 일반민원 대부분도 **현행제도 내에서 해소가 어려운 진정성 민원**
* **법령질의 만족도는 83.3%**로 전체 평균(45.2%)보다 월등히 높음

2 점검결과 지적사항

①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처리 부적정

□ **처리기한 준수율은 98.3%**로 '10년 점검시의 95.8%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 평균 99.5%* 보다는 낮음**

* 「2011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권익위)」에서 **금융위의 처리기한 준수율은 '보통'으로 외통부, 교과부 등과 함께 최하위권**

○ 처리기한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는 109건**(1.7%)으로 **중소금융과, 금융정책과, 은행과에 집중**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일반질의·상담은 7일,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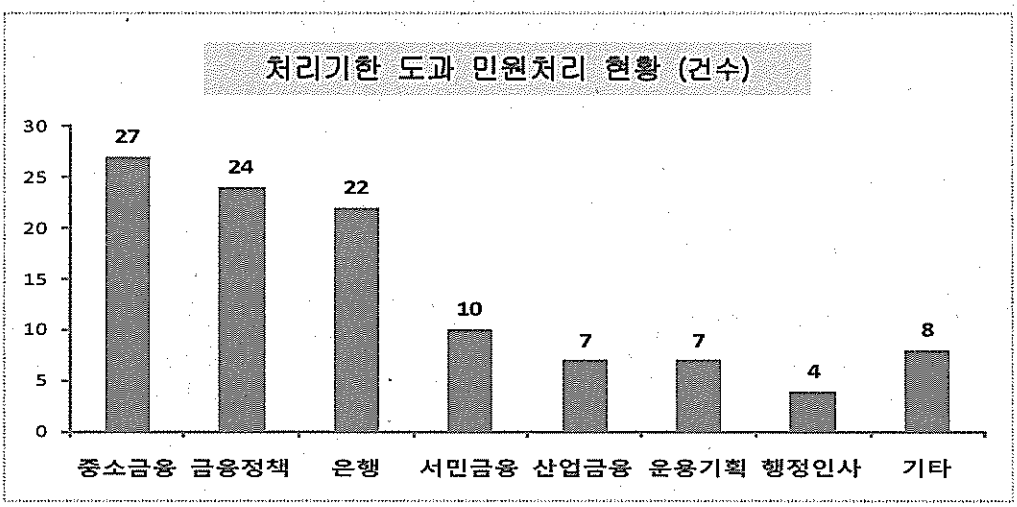

□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명확히 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시행규칙(제8조)

○ 그러나, 일부 서신민원(방문·우편)의 경우 당해 민원인에게 처리기한 **연장통보 없이 국민신문고상으로만 연장처리**

* 서신민원의 경우 행정편의상 국민신문고에 등재·관리하더라도 처리기한 연장은 **당해 민원인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서신으로 하여야 함**

<사 례>

민원인	접수일	처리일	연장횟수	처리부서
김OO	'11.01.31.	'11.03.18.	3회	금융정책과
이OO	'10.07.16.	'10.08.17.	3회	산업금융과
강OO	'10.10.29.	'10.11.26.	3회	중소금융과
황OO	'11.05.20.	'11.06.22.	3회	서민금융팀
홍OO	'10.08.11.	'10.09.10.	3회	은행과
심OO	'11.10.17.	'11.11.17.	3회	보험과
김OO	'10.07.21.	'10.08.20	3회	운용기획팀

○ 또한, 서신으로 연장통보 하는 경우 공문 또는 법정 서식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임의양식*으로 처리**

* 담당자, 시행일, 기관장직인 등 없이 A4 용지에 연장사유 및 예정처리 기한만을 임의로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사 례>

관련 민원현황				처리부서
민원인	신청일	접수일	처리일	
박OO	'11.08.30	'11.08.30	'11.09.16	산업금융과

⇒ 법정 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신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통보는 반드시 공문 또는 법정서식에 의할 것 (주의 : 해당부서)

②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 **산업금융과 민원** 경우 **대부분이 신보, 기보, 캠코 관련 민원**으로 접수민원의 **92% 가량을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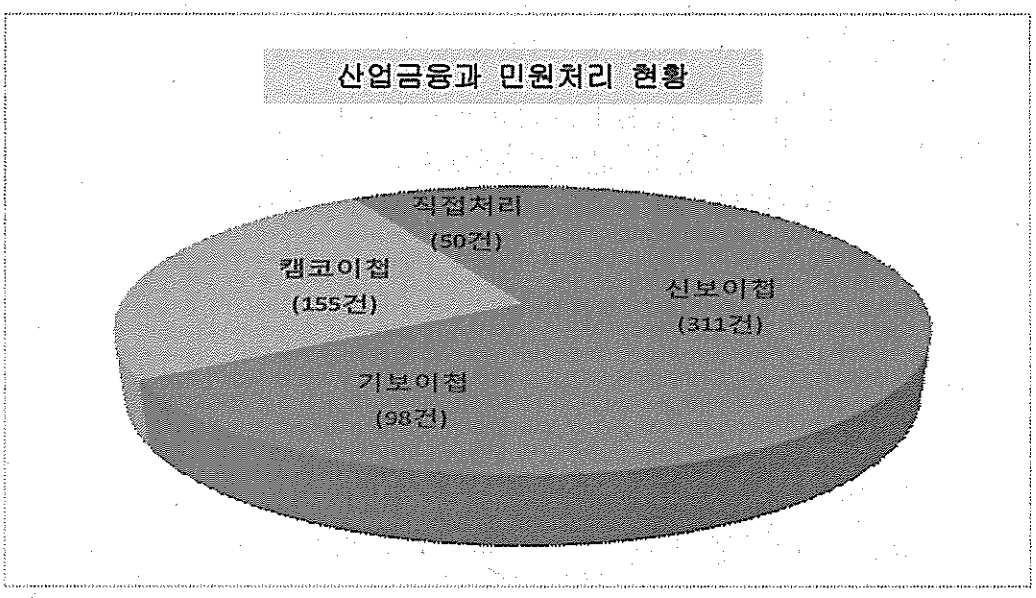

○ 이는 해당 공공기관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국민신문고 구축시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

* '10년 민원점검시 지적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됨에 따라 **자본시장과 민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신문고 구축**으로 **금융소비자과 민원도 상당수 감소**

* LH공사, 국민연금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상당수 공기업들 또한 국민신문고를 구축**하여 소관 민원을 직접 처리

⇒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필요 **(권고 : 산업금융과)**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분야	지 적 사 항	조치구분
예산집행/회계처리	■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출납계산서, 한국은행 월계대사, 세목별 간지,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품의서, 영수증 등) 등을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에 부합토록 철저히 관리할 것 **(금융정책과, 정책홍보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행정실)** · 일반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사례가 없도록 할 것 **(자본시장과)**	주의
	■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월별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자금한도를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 · 국외여비를 국내여비예산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기획행정실)** ·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제협력팀, 정책홍보팀)**	주의
	■ **일상감사 미이행** ·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일상감사를 이행할 것 **(기획행정실)**	주의
	■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 **(모범사례)**	모범사례
민원처리	■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처리 부적정** · 처리기한을 준수하며, 서신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연장은 연장사유·예정처리기한을 명확히 한 공문 또는 법정서식에 의할 것 **(행정인사과,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운용기획팀)**	주의
	■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일 필요** **(산업금융과)**	권고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4>

< '08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08.12.3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 [지적사항]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전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하였으나 실제 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 ○ [조치요구사항] 혁신행정과장은 에너지 절감 및 차량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용차량을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운영하시기 바람	통 보	○ 혁신행정과는 「초(超)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및 자체감사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 마련 · 시행(08.7.10) - 중형(SM5) 2대를 승합차와 경차로 대체 - 우리 위원회 소유 아반떼 승용차는 내구연한 만료('09.5)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 예정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08.12.31)
기타 예산 집행의 불합리	○ [지적사항] - 한·캐나다 FTA 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하였음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라고만 기재하였음 - 조찬비용 및 직원 교육 후 석식비용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있음 ○ [조치요구사항] - 혁신행정과장은 숙박비 초과 지급분($190)에 대하여 즉시 환수 조치하시기 바람 - 혁신행정과장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서명 및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등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집행이 되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 혁신행정과장은 향후 일과 전·후 직원교육 등을 위한 식사비 지출을 할 경우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시기 바람 - 혁신행정과장은 초과 지급된 대우수당(703,640원)을 즉시 환수조치 하시기 바람	현지조치	○ 혁신행정과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지조치함 - 숙박비 초과 지급분($190)에 대하여 '08.7.21환수하여 국고에 반납함 -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서명 및 50만원 이상 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전직원 공지함 - 향후 일과 전·후 직원교육 등을 위한 식사비 지출시 특근매식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토록 함 - 초과 지급된 대우수당에 대하여 '08.6월분 급여지급시 당해 직원 급여에서 703,640원을 환수하여 국고 반납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08.12.31)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 [지적사항]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경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 ○ [조치요구사항] 혁신행정과장은 물품이 관리대장에 누락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재물조사를 재실시 하시기 바람	통 보	○ 혁신행정과는 '08.12.29 기준으로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대장 미등재 물품을 등재 조치함	조치완료
본부와 FIU의 비정규직 급여체계 상이	○ [지적사항]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자의 근무환경·업무량·업무난이도·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 ○ [조치요구사항] 혁신행정과장은 본부와 FIU간의 비정규직 보수체계 불균형 해소를 강구하시기 바람	권 고	○ 혁신행정과는 FIU에 대하여 향후(2009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체결시에는 금융위원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본부와 동일하게 보수액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함('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사무보조원 보수표 등 관련자료 송부)	조치완료

<별첨5>

< '10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출납관리 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 그러나 대변인실 등은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관리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집행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러나 금융정책국 등은 공공요금 납부 등 일부건 품의서 누락하거나 부서장 서명이 아닌 일반도장 날인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토록규정 - 자본시장국 등은 일부 사용영수증에 '부서명'으로 서명 ○ [조치요구사항]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부합토록 집행관련 서류의 편철·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서운영경비는 지급건별로 결재권자의 직접 서명에 의한 품의서에 의해 집행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사용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할 것	주 의	○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 및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지적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그러나 대변인실은 '09.9.29 김○○에게 통역료 80만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전년도 발생 채무확정액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한됨 - 그러나, FIU는 '09년 12월 발생한 영문에디터 2명 비용 2,664,690원을 '10연도 예산에서 지급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여야 함 - 그러나, 기획조정관실은 '09년 3월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집행 ○ [조치요구사항] 원천징수의무를 철저히 하고, 연도내 발생경비를 차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준수할 것	주 의	○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개선 필요	○ [지적사항] 금융정책국 등의 경우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 1명이 담당하면서 국회업무 및 민원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면서 보조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서(FIU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납업무에 소홀 ○ [조치요구사항] 출납업무 담당을 1명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서의 경우 보조인력을 지정하여 출납업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권 고	○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보조인력 지정하여 출납업무를 보조토록 조치	조치완료

<별첨 6>

< '11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출납관리 서류 편철·관리 등 미흡	○ [지적사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월별 출납서류에 출납계산서 등 일부 서식을 누락하여 편철 ○ 「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집행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러나 자본시장과는 일반수용비 집행에 있어 생수 구입건 등 일부건 품의서 누락 ○ [조치요구사항] 예산집행 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하고, 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주 의	○ 예산집행 서류의 편철·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지적사항]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32조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월별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그러나,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 미기재 ○ [조치요구사항]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준수하고,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주 의	○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일상감사 의뢰 미이행	○ [지적사항]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은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 - 그러나 기획행정실은 FIU 인건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본부 인건비에서 8,000만원을 전용('11.12.23)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함 ○ [조치요구사항] 향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건에 대하여 반드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등 「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	주 의	○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 [지적사항] 산업금융과 민원의 경우 대부분이 신보, 기보, 캠코 관련 민원으로 접수민원의 92% 가량을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 이는 해당 공공기관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국민신문고 구축시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 ○ [조치요구사항] 산업금융과장은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을 협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필요	권 고	○ 신보등 당해 기관과 협의중 (산업금융과)	추진중
민원처리기한 미준수 등	○ [지적사항] 처리기한 준수율은 98.3%로 '10년 점검시의 95.8%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 평균 99.5% 보다는 낮음. 또한 일부 서신민원(방문·우편)의 경우 당해 민원인에게 처리기한 연장통보 없이 국민신문고상으로만 연장처리 ○ [조치요구사항] 법정 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신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통보는 반드시 공문 또는 법정서식에 의할 것	주 의	○ 민원처리기한 등을 준수토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3-2. 자체 감사 관련 (2008. 1 ~ 현재)
연도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 현황

□ 연도별 정기 자체감사를 3회 실시하였음.

연도	정기감사		특별감사			
	감사기간	감사방법	감사기간	감사사유	감사방법	위탁감사 여부 (기관명)
2008	'08.06.23 ~ 06.27	서면감사	-	-	-	-
2010	'10.12.16 ~ 12.22	서면감사	-	-		-
2011	'11.12.26 ~ 12.30	서면감사	-	-	-	-

* 2009년도의 경우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09.06.15~07.17) 수감으로 자체감사 생략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3-3. 자체 감사 관련 (2008. 1 ~ 현재) 감사결과 처리 현황

□ 연도별 자체 감사 결과 처리 현황

연도	요구사항	요구	이행	이행중	의견서(소명서) 제출	
					제출	수용
2008	주의	-	-	-	-	-
	통보	2	2	-	-	-
	권고	1	1	-	-	-
	기타	4	4	-	-	-
	계	7	7	-	-	-
2010	주의	2	2	-	-	-
	통보	-	-	-	-	-
	권고	1	1	-	-	-
	기타	-	-	-	-	-
	계	3	3	-	-	-
2011	주의	4	4	-	-	-
	통보	-	-	-	-	-
	권고	1	-	1	-	-
	기타	-	-	-	-	-
	계	5	4	1	-	-

* 2009년도의 경우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09.06.15~07.17) 수감으로 자체감사 생략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4. 기관장, 상임·비상임이사, 감사 사무실 운영 관련(2008.1~현재)

□ 대상자별 사무실 면적, 집기 등 물품내역, 운용 인력 현황

(단위: 천원)

성명	사무실				부속실(비서실)			
	직책	면적(평)	물품명(구매가)	구매일자	직원수	임금/년	물품명(구매가)	구매일자
김석동	위원장	35	공용 휴대폰(466)	08.3.21	5	168,805	공용 휴대폰(420)	10.2.10
			의자(721)	11.7.14			3단이동서랍(154)	10.8.20
							프린터(297)	10.11.5
							아이패드(969)	11.5.25
추경호	부위원장	28	공용 휴대폰(761)	09.5.13	2	86,552	프린터(825)	11.10.6
			스토브(84)	10.12.3				
			가습기(133)	11.4.8				
			회의용테이블 등(4,521)	11.10.6				
			프린터(704)	12.6.12				

이상제	상임위원	23	소파 (4,233)	10.7.6	2	36,823	사무비품 (300)	09.12.28
			가습기 (133)	11.4.26				
홍영만	상임위원	23	소파 (4,233)	10.7.6			식기 살균기 (158)	10.2.23
			의자 (379)	11.6.24				
유재훈	증선위원	23	TV탁자 (420)	09.12.24	1	17,837	프린터 (209)	09.12.22
			소파 (4,233)	10.7.6			식기 건조기 (198)	11.4.22
							문서 세단기 (363)	11.4.26

□ 대상자별/연도별 사무실 및 부속실 운영비용 집행 내역

위원장실	월 180만원 운영비 지급
부위원장실	월 100만원 운영비 지급
상임위원실 1	월 25만원 운영비 지급
상임위원실 2	월 25만원 운영비 지급
증선위원실	월 25만원 운영비 지급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5. 정책·사업 홍보(광고) 관련 (2008.1~현재)

1)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상세 내역

□ 금융정책알리기 (홍보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7월말기준)		
	예산	예산현액	집행	예산	예산현액	집행	예산	예산현액	집행	예산	예산현액	집행
금융정책알리기	260	245	192	330	389	386	330	330	325	314	314	110
◦ 기타직보수	70	70	36	70	70	70	70	70	70	140	140	64
◦ 일반수용비	165	150	131	247	302	299	250	250	245	164	164	46
◦ 자산취득비	25	25	25	13	17	17	10	10	10	10	10	0
사 업 내 용	금융정책 블로그 구축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위기극복포털사이트 구축 금융정책 홍보동영상 제작 서민생활대책 광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홈페이지 정보보안개선 블로그 기자단 운영 FSB, G20 광고 금융위 홍보영상 제작			블로그 기자단 운영 홈페이지 유지보수 서민금융 광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홍보컨설팅			홈페이지 웹서버 이중화 서민금융 홍보영상 제작 블로그 기자단 운영		

2) 홍보(광고) 관련 대외기관과 수발신한 문서 사본 일체

□ 첨부 문서 목록 - (별첨1) 수발신 문서

(단위 : 건, 만원)

연 도	광 고	첨 부 문 서
'09	서민생활대책 (정부부처 합동_기재부 주관)	1. '서민생활대책' 광고 집행 관련 협조 요청 2. '달라지는 서민생활' 광고계획
'10	G20정상회의 감사광고 (정부부처 합동_총리실 주관)	3. G20정상회의이후 감사광고계획(안) 4. 감사광고 메시지(안)

3) 홍보(광고) 관련 내부 운용 규정(지침, 기준 등)

□ 홍보(광고) 관련 금융위 내부 운용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o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광고 시행

4) 연도별 홍보(광고)건 중 공감코리아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연도별 배포한 보도자료 일체

□ 보도자료 리스트 별도첨부 - (별첨2) 보도자료 리스트

6) 연도별 / 언론매체별 광고 발주 현황

(단위 : 건, 만원)

연도	계 획			실 적		
	매체명	건수	금액	매체명	건수	금액
'09	-	-	-	조선일보 외 25개[1]	1	2,140 [2]
	소계	**-**	**-**	**소계**	**1**	**2,140**
'10	-	-	5,300	매일경제	1	1,247
				한국경제		1,247
				서울경제		832
				헤럴드경제		832
				파이낸셜뉴스		624
				머니투데이		624
				아시아경제		520
				..아시아투데이		416
				아주경제		416
				코리아타임스		624
				코리아헤럴드		624
				중앙데일리		624
				제작인쇄		600
	-	-	-	동아일보	1	3,053
	소계	**-**	**-**	**소계**	**2**	**12,281**
'11	-	-	6,000	중앙선데이	1	979
				동아일보	1	990
				The City(더시티)	2	880
				시장경제신문	4	3,410
	소계	**-**	**-**	**소계**	**8**	**6,259**
계			**11,300**			**20,680**

1)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조선일보 등 중앙지 11개, 매일경제 등 경제지 8개, 메트로 등 무가지 7개 매체에 정부합동광고 (첨부1-'달라지는 서민생활 광고계획 참조)

2) 총 19,256만원 가운데 금융위 부담 금액 2,142만원 (9개 부처 공동 부담)

<별첨 1> 수발신 문서

창의와 실용, 현장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선진일류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기 획 재 정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민생활대책' 광고 집행 관련 협조 요청

1.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 대국민 홍보 관련입니다.

2.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 합동 광고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는바, 관련부처 대변인실 및 소관 과에서는 광고비 정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광고 내용 : 국민들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 소개
o 광고 매체 : 종합지, 경제지, 무가지 등 26개 매체 지면 광고
o 광고 게재 : 7월3일, 7월6일
o 총 소요비용 : 192,555천원(₩192,555,000)
o 부처별 비용 분담 : 9개 관련 부처 정액 분담
  - 재정, 교육, 지경, 복지, 환경, 여성, 국토, 금융위, 중기청 등 9개 부처
  - 부처별 21,395천원 광고비 분담
o 광고 대행 : 한국언론재단

붙임 1. 달라지는 서민생활 광고계획
2. 광고시안. 끝.

기획재정부장관

수신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홍보담당관), 지식경제부장관(홍보담당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홍보기획담당관), 환경부장관(정책홍보팀장), 여성부장관(대변인), 국토해양부장관(홍보담당관), 금융위원회위원장(정책홍보팀장), 중소기업청장(대변인)

사무관 양희경 미디어기획팀장 전결 07/22 황순구

협조자

시행 정책관리담당관-453 (2009. 07. 22.) 접수 정책홍보팀-247 (2009. 07. 23.)

우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관리담당관 미디어기획팀 / http://www.mosf.go.kr

전화 02-2150-2561 전송 02-503-8653 / hkyang@mosf.go.kr / 비공개(5)

『달라지는 서민생활』 부처합동 광고계획

□ 목적

o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복지, 주거, 소상공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시행하는 6대 분야 15대 과제 홍보

⇒ 서민밀착형 정책 홍보를 통해 정책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 광고 내용

o 광고 메시지 : "서민을 따듯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o 광고 매체 : 종합지, 경제지, 무가지 등 26개 매체 지면 광고

o 총 소요비용 : 192,555천원(₩192,555,000)

광고 매체	소요 비용	광고게재일	광고 규격
종합지(11곳)	1억2922만2500원	7.3~7.6	5단*37cm
경제지(8곳)	5087만5000원	7.3~7.6	5단*37cm
무가지(7곳)	1245만7500원	7.3~7.6	3단*25cm
합 계	1억9255만5000원		

□ 광고비 분담계획

o 총 광고비용을 9개 관련 부처*가 정액 분담(21,395천원)

* 재정, 교육, 지경, 복지, 환경, 여성, 국토, 금융위, 중기청

o 정산방법 : 광고대행을 한 언론재단이 각 부처에 정산해야할 언론사 명단과 서류 전달 예정

[붙임] 광고 게재일 및 광고비 내역

(부가세 포함)

번호	매체명	규격	게재일	게재면	광고료
1	조선일보	5단	7.3	2	20,350,000
2	중앙일보	5단	7.3	2	20,350,000
3	동아일보	5단	7.3	2	20,350,000
4	한국일보	5단	7.3	3	10,175,000
5	한겨레	5단	7.3	2	10,175,000
6	경향신문	5단	7.3	5	10,175,000
7	서울신문	5단	7.6	1	8,140,000
8	국민일보	5단	7.3	2	8,140,000
9	세계일보	5단	7.3	3	8,140,000
10	문화일보	5단	7.6	2	8,140,000
11	내일신문	4단	7.3	1	5,087,500
	총계				1억2922만2500
12	매일경제신문	5단	7.3	2	10,175,000
13	한국경제신문	5단	7.3	2	9,157,500
14	서울경제	4단	7.3	1	6,105,000
15	헤럴드경제	5단	7.6	2	6,105,000
16	파이낸셜뉴스	5단	7.6	2	5,087,500
17	머니투데이	5단	7.6	2	5,087,500
18	아시아경제	5단	7.3	2	5,087,500
19	아주경제	5단	7.6	2	4,070,000
	총계				5087만5000
20	메트로	3단	7.6	2	2,062,500
21	포커스	3단	7.3	2	2,062,500
22	AM7	3단	7.3	3	1,897,500
23	노컷뉴스	3단	7.6	2	1,650,000
24	시티	3단	7.6	2	1,650,000
25	스포츠한국	3단	7.6	2	1,650,000
26	이브닝	3단	7.3	2	1,485,000
	총계				1245만7500
	총 합계 금액				1억92,55만5,000원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감사 담화문 광고 일간지 홍보 계획(안)

□ 게재 계획(안)

○ **대상 매체** : 중앙 일간지 18개사 (종합 11 + 경제 7)

(종합) : 조선, 중앙, 동아, 한국, 경향, 한겨레, 서울, 세계, 국민, 문화, 내일

(경제) : 매경, 한경, 서경, 헤경,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등

○ **일 시** : **11월 15일** 月

○ **지 면** : 3면, 5단 37cm(면 하단 통광고, 칼라)

※ 매체 지면 확보 등 언론재단에 의뢰 · 집행 (정부광고시행에 대한 규정)

○ **명 의** : 국무총리 및 기재부 등 8개 부처 장관, 공동 명의

□ 소요 예산(안)

○ **소요 예산 : 약 2억 7천만원** (*언론재단과 조율 예정)

- 총리실 · 기재부 · 행안부 · 외교부 · 문화부 · 농림부 · 지경부 · 금융위 · 경찰청 등 9개 부처 분담 예정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세계인들이 주목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정상급 인사들을 비롯하여 모두 1만 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였습니다.

정상회의의 성공은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율적인 차량 2부제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촌 경제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서울선언'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지구촌 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환율문제에 대한 국제공조와 금융안전망 구축 등 오늘날 세계 경제의 가장 첨예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통해 새로운 경제 질서의 큰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는 서울선언에 따라 더불어 성장하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국가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명실상부한 지구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농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국가브랜드가 바로 국가경쟁력입니다. 이번 회의가 우리 경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한 세계 중심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농어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고르게 발전하는 선진일류국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별첨 2> 보도자료 리스트(08.1~12.8)

제 목	담당과	담당자	배포일
수출·투자 금융애로 현장 점검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위 산업금융과	이종민서기관	20120816
[보도참고]금융위원회 승진 및 인사	금융위 행정인사과	박성진 사무관	20120816
「수출·투자 금융애로 현장 점검」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위 산업금융과	이종민 서기관, (	20120816
[보도참고]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금감	이인욱 사무관, :	20120814
[보도참고]금융위원회 승진 보도	금융위 행정인사과	박성진 사무관	20120813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	금융위 금융정책과, 산업금	이진호 사무관, (	20120813
수출·투자 금융애로 현장 점검	금융위 산업금융과	이종민 사무관	20120808
[보도참고]금융위원회 국·과장급 인사 보도	금융위 행정인사과	박성진 사무관	20120807
미소금융 2012년 상반기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 서민금융과, 미소금융	김수호 사무관, (	2012080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최치연 사무관	20120803
[보도참고] 햇살론 보증비율 상향 등 제도개선사항 8.6(월) 시행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	송희경 사무관	20120803
2012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팀	김영민 사무관	20120802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완료	금융위원회 은행과	고영호 사무관	201208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신장수 사무관	20120731
퇴직연금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이한샘 사무관	20120731
금융감독당국, 회사채 수요예측제도 개선 추진	자본시장과	오유정 사무관	20120731
헤지펀드 시장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금감	김성진 사무관, :	20120730
[보도참고]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금융시장분석과	이인욱 사무관	20120729
2012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자위 사무국 운용기획팀	김석환 사무관, :	20120727
[보도참고]우리금융지주 매각 관련 예비입찰제안서 점수 결과	금융위 공자위사무국 운용기	김원태 사무관	20120727
[보도참고]미소금융 운영 현황 (2012.7.25자 한겨레 신문 기사 관련)	금융위 서민금융과, 미소금융	김수호 사무관, (	20120726
제30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금융위 기획재정담당관실	권주성 서기관	20120726
[보도참고]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금융위 행정인사과	박성진 사무관	20120724
[보도참고]최근 중소기업 대출 동향 관련 참고자료	금융위 산업금융과	선욱 서기관	20120724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금융위 금융정책과, 서민금융	김성준 사무관, :	20120719
[보도참고]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관계기관 합동T/F」 회의 개최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이인욱 사무관	20120719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	김승민 사무관, :	20120718
[금융위]그린손해보험㈜의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손해	전치활 사무관, (	20120718
[금융위]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	20120718
볼커룰 시행에 대비한 국내 대응현황 및 계획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은행	고영호 사무관, (	20120716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펀드제도개선 추진	금융위 자산운용과	이한샘 사무관	20120716
금융위원회 승진 보도	금융위 행정인사과	박성진 사무관	20120716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	송용민 사무관, :	20120712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전자금융팀	김영민 사무관	20120712
[증선위]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 마련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	김성진 사무관, :	201207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전자금융팀	이석란 사무관	20120710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발급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금융위 국제협력팀, 금감원 :	임형준 사무관, :	20120709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 구축방안	금융위 서민금융과	김태훈 사무관	20120709
제2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	금융위 서민금융과	박주영 서기관, :	20120705

[보도참고]주택담보대출 만기관련	금융정책과	김성준 사무관	20120705
대출모집인·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등 대출 모집인 제도개선 추진현황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서민금	정종석 사무관, 김	20120705
제1차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 전자금융팀	이석란 사무관	20120704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서	김정주 사무관, 김	20120704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 자산운용과	신장수 사무관	20120704
[금융위]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손해	전치활 사무관, 이	2012070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윤현철 사무관	2012070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중소금융과	이동욱 사무관	20120703
2012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자위 운용기획팀	김석환 사무관, 김	20120629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VISION과 추진방안	기재부 국제금융과, 금융위	이차웅 서기관, 김	20120628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방안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이한샘 사무관, 최	20120627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청 사무관, 이	20120627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전희규 사무관, 김	20120627
[보도참고]금융위 간부회의시 금융위원장 말씀사항	금융위 금융정책과	김성준 사무관	20120625
전국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대부업 담당자 대상 연수 실시	행안부 지역경제과, 금융위	한용택 사무관, 김	20120622
[보도참고]커버드본드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 제1차 회의 개최	금융위 은행과	서나윤 사무관	2012062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개선 방안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전희규 사무관, 김	201206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 자본시장과, 자산운용	이한진 서기관, 이	20120621
단기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RP 및 전자단기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	금융위 자본시장과	이한샘 사무관	20120620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 보험과	제종욱 사무관, 이	20120620
[금융위]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김태완 사무관, 장	20120620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및 합병 승인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김승민 사무관, 최	201206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자본시장과	이한진 서기관	20120619
FMI 원칙 발표에 따른 대응방향	금융위 자본시장과	이한샘 사무관	20120619
[보도참고]6.18일 비상금융상황대응회의 결과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송현지 사무관	20120618
[보도참고]금융위 부위원장, 『광주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및 대	금융위 서민금융과	송희경 사무관	20120615
김석동 금융위원장, 태국 및 홍콩방문을 통해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20614
저축은행-은행간 연계대출 시행방안 및 대학생 고금리대출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 서민금융과, 기재부	김태훈 사무관, 박	20120614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	남택중 사무관	20120613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청 사무관, 이	20120613
"사외이사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법무부·금융위원회 공동으로 사외이사	금융위 금융제도팀, 법무부	김시목 사무관, 조	20120612
[보도참고]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 보도	금융위 행정인사과	박성진 사무관	20120611
김석동 금융위원장, 태국·홍콩 금융 당국과의 금융협력 강화 및 현지진출 기업	글로벌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20609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	송용민 사무관, 박	20120607
국제연금감독기구(IOPS) 전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결과	금융위 자산운용과, 고용노동	김태완 사무관, 조	2012060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금융제도팀	김시목 사무관	20120605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1차 회의 개최	금융위 전자금융팀, 법무부	김영민 사무관, 박	20120605
[보도참고]금융위 간부회의시 금융위원장 말씀사항	금융위 금융정책과	김성준 사무관	20120604
금융정책국 업무브리핑	금융위 금정과	강영수 서기관	20120601
금융안정위원회(FSB) 홍콩 총회 결과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20531

금융정보분석원, 미얀마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경험 전수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이귀웅 사무관, 김	20120530
[보도참고]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출범 및 「청년드림대출·투자」 상품 출시	금융위 산업금융과	선욱 서기관	20120530
[보도참고]금융위원회 과장급 인사 보도	금융위 행정인사과	박성진 사무관	20120529
[보도참고]증권시장 연기금 투입 관련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본시장	김제동 사무관	20120529
론스타의 대한민국 투자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금융위 은행과, 금융제도팀,	이재인 사무관, 박	20120528
추경호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및 상해진출 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글로벌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20525
2012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자위 운용기획팀, 회수관리	김석환 사무관, 김	20120525
자본시장국 업무 브리핑	금융위 자본시장과	이동엽 사무관	2012052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조	전희규 사무관,	20120523
[보도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 금융정책과	최치연 사무관	20120518
한국, IOSCO 이사회(BOARD) 진출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김	김승민 사무관, 이	20120517
삼성카드에 대한 삼성에버랜드(주) 주식처분명령	금융위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최	20120517
성인을 대상으로 한"똑똑한 금융 내비게이션"(금융교육 표준콘텐츠) 교재 개발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한국거	안유진 사무관, 최	20120517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입법 추진)	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	이종민 사무관	20120517
8개 은행의 「금융상품 구속행위」 에 대한 검사 및 조치결과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금융	이재인 사무관, 김	20120516
[금융위]그린손해보험㈜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손해	전치활 사무관, 이	20120516
[금융위]차티스손해보험(주) 보험업 허가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	전치활 사무관, 김	20120516
[보도참고]금융위 부위원장, 「부산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금융위 서민금융과	김태훈 사무관, 최	20120515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재입법 추진]	금융위 중소금융과	이동욱 사무관	20120511
[보도참고]김석동 금융위원장, 터키 자본시장위원장 및 이스탄불 거래소 이사장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20511
제17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 서민금융과, 금감원 /	김태훈 사무관, 김	20120510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전환보증 지원대상 확대	금융위 금융정책과	최치연 사무관	201205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자본시장과	이한진 서기관	20120510
대형은행의 자본확충에 대한 국제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금융위 은행과, 금융감독원	서나윤 사무관, 김	20120510
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	마 순 사무관, 곤	20120510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김원태 사무관	20120510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조	전희규 사무관, 박	20120509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회	구의정 사무관, 김	20120509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은행과	고영호 사무관	20120507
[보도참고]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대책 긴급회의	금융위 서민과, 산금과	박주영 서기관, 이	20120507
적기시정조치 유예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부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산업	서재홍팀장,김영	20120506
2012년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금융위 금융정책과	정선인 사무관	20120504
금융위 부위원장, 「경남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및 미소금융 현장	금융위 서민금융과	송희경 사무관	20120503
KONEX 신설 관련 기자단 워크숍 개최	금융위 자본시장과	이동엽 사무관	20120503
[금융위]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	김정주 사무관, 오	20120502
「녹색금융·재정지원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	금융위 금융정책과, 기재부 (	이호영 사무관, 박	20120502
[금융위]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손해	전치활 사무관, 이	20120502
[보도참고] 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금융위 산금과	김경관 사무관, 이	20120501
[보도참고]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2012.5.2일부터 전면 시행	금융위 산업금융과	김광일 사무관	20120501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방문 및 사금융 피해자 간담회 실시	금융위 서민금융과	김태훈 사무관, 최	20120430

전 금융권 개인정보 수집실태 종합 점검	금융위 은행과	채보정 사무관	20120430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공자위 운용기획팀	송병관 사무관	20120429
2012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자위 사무국 운용기획팀	김석환 사무관	20120427
[보도참고] '포괄근저당 전면금지'한다는데...개인사업자 대출 걱정 커졌다 기사	금융위 은행과	서나윤 사무관	20120427
증권 거래 관련 수수료 20% 일괄인하	금융위 자본시장과, 한국거래	김제동사무관, 오	20120426
[보도참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금융위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0120426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1)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전희규 사무관, 최	20120425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2)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전희규 사무관, 최	20120425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자본시장과	김승민 사무관	201204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금융정책과	최치연 사무관	20120423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관련 협회 부회장 등과 협의회 개최	금융위 제도운영과	김춘규 사무관	20120423
금융위원회 승진 보도	금융위 행정인사과	박성진 사무관	2012042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 중소금융과	장석인 사무관	20120419
제 11차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IFIAR) 정기총회 개최 결과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국주성 사무관, 최	20120419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의 다양화 방안」 발표	금융위 산업금융과, 공정거래	선 욱 서기관, 이	20120419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서민금	정종식 사무관, 최	20120418
[금융위]나눔투자자문㈜ 등 4개 투자자문사 등록취소 조치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	김태원 사무관, 조	20120418
[금융위]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한 공시위반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윤혜원 사무관, 최	20120418
여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조	20120418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설치·운영	금융위 서민금융과, 금감원 /	금융위원회	20120417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은행	서나윤 사무관, 이	20120416
금융정보분석원장, 국내은행 준법감시인과 협의회 개최	금융위 제도운영과	이선희 사무관	20120416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구의청 사무관,	20120416
국제회계감독기구 포럼(IFIAR) 정기총회 개최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국주성 사무관, 최	20120413
北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비상금융합동상황대응회의」 개최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금감	김정명 사무관, 최	20120413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추천	금융위 행정인사과	김성조 서기관	20120413
[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윤혜원 사무관, 최	20120413
부동산신탁회사의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장 실태 점검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신장수 사무관, 이	20120412
[보도참고]금융위 간부회의시 금융위원장 말씀사항	금융위 서민금융과	김태훈 사무관	20120409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	금융위 서민금융과	박주영 서기관	20120406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대출동향 점검회의」 결과	금융위 산업금융과	선욱 서기관	20120405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 방안」 발표	금융위 자본시장과	이동엽 사무관	20120405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	김승민 사무관, 최	20120404
금융회사의 IT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운영계획	금융위 전자금융팀	이종림 사무관	20120404
연체제도 개혁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완료 및 행정지도 추진	금융위 은행과	고영호 사무관	20120404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 강화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복합	제종욱 사무관, 최	20120404
[보도참고] 「기업금융나들목」 사이트 확대 개편	금융위 산업금융과, 정책금융	이진영 사무관, 임	20120402
[보도참고]"재창업지원위원회"출범 및 재창업 지원 개시	금융위 산업금융과 , 신용회	김광일 사무관,	20120402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자산운용과	신장수 사무관	20120330
2012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김석환 사무관	20120330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금융위 서민금융과	박주영 서기관	20120330
[보도참고]'신용카드 교체대란'의 불편한 진실(조선일보 3.29) 기사 관련	금융위 전자금융팀	이종림 사무관	20120329
금융위원회, 베트남 재무부와 보험분야 금융감독 협력을 위한 MOU 체결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금감원	류근하 사무관,	20120329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금융위 산업금융과, 신용보증	김광일 사무관,	20120328
[보도참고]유럽계 은행 디레버리징(deleveraging) 가능성 및 시사점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전은주 사무관	20120328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윤혜원 사무관,	20120328
[증선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청 사무관,	20120328
[보도참고]금융위 간부회의시 금융위원장 말씀사항	금융위 서민금융과	김태훈 사무관	20120326
김석동 금융위원장, 베트남 재무부장관 및 증권위원회 위원장 면담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203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자산운용과	신장수 사무관	20120322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 금융IT분야 상황대응반 운영	금융위 전자금융팀	김영민 사무관	20120322
[보도참고]모바일뱅킹 위·변조 애플리케이션 관련 참고자료	전자금융팀	김영민 사무관	20120321
[금융위]㈜애스크의 경기솔로몬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김연준 서기관,	20120321
[금융위]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및 경영개선명령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김태완 사무관,	20120321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김태완 사무관,	2012032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	이종민 사무관	20120320
한국 최초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진출 성공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청사무관, 장	20120319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오유정 사무관,	20120316
서민금융 1박2일	금융위 서민금융과	박주영 서기관	20120314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중소금융과	최성규 사무관	20120314
[증선위]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청 사무관,	20120314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 도입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이한샘 사무관,	20120313
[보도참고]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 축사	금융위 자본시장과	이한진 사무관	20120313
[보도참고]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금융위 행정인사과	박성진 사무관	20120312
[보도참고]금융위 간부회의시 금융위원장 말씀사항	금융위 정책홍보팀	김영대 사무관	20120312
[보도참고]중소기업 금융 통합정보시스템 「기업금융나들목」 이용현황	금융위 산업금융과, 정책금	이진영 사무관,	20120312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윤혜원 사무관,	20120309
[금융위]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손해	전치활 사무관,	20120307
[금융위]금산법상 합병인가 의결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김태완 사무관,	20120307
김석동 금융위원장, 베트남 인도네시아 출장 결과	글로벌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20304
[보도참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은행과	고영호 사무관	20120302
2012년 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자위 운용기획팀	김석환 사무관	20120302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청 사무관,	20120229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 모두말씀	금융위 금융정책과	강영수 서기관	20120228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 발표	금융위 산업금융과, 은행과,	선 욱 사무관, C	20120228
김석동 금융위원장,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금융당국과의 전략적 금융협력 파트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20228
[보도참고]통합 금융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기업 금융나들목 인포그래픽	금융위 산업금융과	이진영 사무관	20120228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금융위 금융정책과, 중소금융	김성준사무관,장	20120227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국장급 인사 보도	금융위 행정인사과	박성진 사무관	20120227
[보도참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이귀웅 사무관	201202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자본시장과, 자산운용	이한진 사무관, (	20120224
[금융위]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	김승민 사무관, :	20120222
[보도참고]금융위 간부회의시 금융위원장 말씀사항	금융위 정책홍보팀	김영대 사무관	20120220
[참고자료]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	금융위 산업금융과	김광일 사무관	20120217
FATF 권고사항(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개정	금융위 기획행정실	이귀웅 사무관, (	20120216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전희규 사무관, :	20120215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2)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전희규 사무관, :	20120215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	금융위 산업금융과, 서민금융	김광일 사무관, :	20120214
[보도참고]감축대상 연대보증인수	금융위 산업금융과, 서민금융	김광일 사무관, :	20120214
[보도참고]2.13(월) 09:00 금융위 간부회의시 금융위원장 말씀사항	금융위 정책홍보팀	김영대 사무관	20120213
[금융위]하나저축은행 영업인가 및 제일이 ·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	김연준 사무관, (	20120208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 중소금융과	장석인 사무관	20120208
[금융위]현대모비스(주) 및 현대커머셜(주)의 녹십자생명보험(주) 인수 승인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 :	마 순 사무관, 0	20120208
제30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	금융위 기획재정담당관실	남동우 서기관	20120207
제30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금융위 기획재정담당관실	남동우 서기관	20120207
[보도참고]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금융위 행정인사과	박성진 사무관	20120206
2011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자위 사무국 운용기획팀	김석환 사무관	20120203
[보도참고] 은행, 체크카드 발급 목적 계좌이용 및 수수료을 인하 협조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여신 :	김정주 사무관, (	20120202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청 사무관, :	2012020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김원대 사무관	2012013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금융위 전자금융팀·금융소비	김영민 사무관, :	20120131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	김태완 사무관 ,	20120127
[금융위]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승인	금융위 금융제도팀, 금감원 :	박정원 사무관, :	20120127
[보도참고]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은행 :	성기철 서기관, (	20120127
정례 기자 간담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	금융위 금융정책과	김성준 사무관	20120119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1)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전희규 사무관, (	20120118
[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2)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전희규 사무관, :	20120118
[증선위]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전희규 사무관, :	20120118
금융위원장, 직불형 카드 활성화 직접 챙긴다	금융위 은행과	김정주 사무관, :	20120117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소규모펀드 해소 지속 추진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	김성진 사무관, :	20120113
KB저축은행 영업인가 및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계약 이전 결정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	송병관 사무관, (	20120113
제10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결과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20111
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 :	제종옥 사무관, (	20120111
[보도참고]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 (	20120111
[보도참고] 2012년 업무계획 중 은행소유규제 개선 관련 추진현황	은행과	고영호 사무관	20120110
「중소기업 및 설명절 자금상황」 점검 회의 개최	산업금융과	선욱 사무관,황기	20120110
2011년도 소액보험 사업실적 : 보장내용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금융위 보험과, 서민금융팀,	제종옥 사무관, (	20120109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마련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전희규 사무관,김	20120108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송동식 사무관, (		20120106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구의청 사무관, :	20120106

[보도참고]2012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금융위 자문관실	조재현 선임 조사	20120104
[보도참고]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금융위 보험과	박진애 사무관	20120103
[보도참고]증권·파생시장 개장식	금융위 자본시장과	김성조 사무관	20120102
[보도참고]2012년 금융위원회 신년사	금융위 자문관실	조재현 선임 조사	20120102
201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금융위 금융정책과	강영수 서기관, 김	20111230
2011년 1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자위 운용기획팀	김춘규 사무관	20111230
[보도참고]2012년 금융위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정책홍보팀	이호진 주무관	20111230
[금융위]「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기	금융위 자본시장과, 공정시장	김성조 서기관, (	20111228
[금융위]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방안 시행	금융위 자본시장과, 한국거래	이한샘 사무관, 기	20111228
[금융위]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일부 기준서 제·개정 확정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구의청 사무관, 박	20111228
[금융위]검사 및 제재 과정에서의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 방안	금융위 금융제도팀, 금감원)	박정원 사무관, 김	20111228
[금융위]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융감독	김태완 사무관, (	20111228
[금융위]신한저축은행, 비에스저축은행 영업인가 및 토마토 저축은행, 프라임저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융감독	송병관 사무관, 박	20111228
[보도참고]중소서민금융 및 전자금융 관련 금융위원회 조직·인력 보강	금융위 행정인사과	홍성기 팀장	20111227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여신	김정주 사무관, 김	20111226
정무위원회 현안보고	금융위 은행과	성기철 서기관	20111226
[보도참고]저신용자 신용카드 발급기준 관련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여신	김정주 사무관, (	20111226
[보도참고]헤지펀드 등록현황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	김성진 사무관, (	20111223
김석동 금융위원장 대한금융공학회 기조연설	금융위 자문관실	조재현 선임조사	20111222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피해환급금 11억원 최초 지급 및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금융위 은행과, 금융소비자고	서나윤 사무관, 김	20111222
[보도참고]직원 채용시 신용정보 이용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위 서민금융팀	김보균 사무관	20111222
그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손해	전치활 사무관, (	20111222
[보도참고]19~20일 중 외국인 증권매매 및 CDS 동향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송현지 사무관	20111221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이재인 사무관, 김	20111221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구의청 사무관, 김	20111221
[보도참고]금융위 간부회의시 금융위원장 말씀사항	금융위 대변인실 정책홍보팀	김영대 사무관	20111219
[보도참고]금융시장 특별 점검회의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	금융위 대변인실 정책홍보팀	김영대 사무관	20111219
[보도참고]"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간담회" 논의결과	금융위 산업금융과	김광일 사무관	20111218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 개선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전희규 사무관, 김	201112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금융제도팀	김시목 사무관	2011121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단체와 간담회 개최	금융위 산업금융과	선 욱 사무관, 김	20111215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김승민 사무관, 김	20111214
은행의 정부지원금 조기상환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은행	서나윤 사무관, (	20111213
자금세탁방지 부산 국제회의 개최 결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이귀웅 사무관	20111210
[보도참고]금융회사·상장회사 등의 등기임원 보수 공시 관련	금융위 정시장과, 금융정책	이동엽 사무관, 김	20111208
경쟁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	김제동 사무관, 박	20111208
1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 서민금융팀, 금감원 /	이동욱 사무관, 김	20111207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 개최	금융위 자산운용과	김태완 사무관	20111207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금융	구의청 사무관,김	20111207
자금세탁방지 부산 국제회의 개최 및 개회식 연설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이귀웅 사무관	20111206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 제정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김성진 사무관,김	20111206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공청회 개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금융	국주성 사무관,김	20111206
자금세탁방지 2010년 연차보고서(FIU출범 10주년 특집) 출간	금융위 기획행정실	이귀웅 사무관	20111205
금융정보분석원, 제5회「자금세탁방지의 날」 및「금융정보분석원 설립 10주	금융위 기획행정실	한윤구 사무관	20111205
제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금융위원회 위원장 김 석 동 - 기 념 사)	금융위 기획행정실	임형준 사무관	20111205
[보도참고]금융위 간부회의시 금융위원장 강조사항	금융위 대변인실 정책홍보팀	김영대 사무관	20111205
2011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자위 사무국 운용기획팀	김춘규 사무관	20111202
장내옵션시장, ELW시장 및 FX마진시장 건전화방안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최상아 사무관,	20111201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김승민 사무관,	20111130
김석동 금융위원장, 영국 금융청(FSA) Turner 의장과 MOU 체결 및 양자면담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11129
김석동 금융위원장, 터키 금융당국과 MOU 체결 등 파트너쉽 구축 및 한국 금융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11126
부산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 및 계약이전 결정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권주성 사무관,	20111123
시장건전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IPO제도 개선방안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김성조 서기관, (	20111123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	마 순 사무관, 박	20111123
김석동 금융위원장, 터키 금융당국과의 파트너쉽 구축 및 영국 금융당국과의 고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11123
[보도참고]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 설명자료	금융위 글로벌 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11123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이재인 사무관,	20111123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서민금융팀	이동욱 사무관	20111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자본시장과, 자산운용	이한진 사무관,	2011112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위 은행과	김정주 사무관,	20111118
금융위, 론스타에 6개월내 주식 처분 명령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은행	성기철 서기관, (	20111118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금융제도팀	박정현 사무관	2011111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위 은행과	이종림 사무관	20111116
[금융위]금융투자업 및 합병 인가 의결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김태완 사무관,	20111116
[금융위](서울)대영저축은행의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 해제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송병관 사무관,	20111116
[금융위]「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 자산운용과, 자본시	김성진 사무관, (	20111116
[금융위]「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 중소금융과	신장수 사무관	20111116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금융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이종민 사무관,	2011111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중소금융과	장석인 사무관	20111115
「금융 60년 연표」 발간	금융위 행정인사과	송용민 사무관	20111110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정 사무관, (	20111109
공매도금지 조치 관련	금융위 자본시장국, 한국거	이한샘 사무관,	20111108
[금융위](서울)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송병관 사무관,	20111104
[금융위]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금융위 공정시장과	이재인 사무관	20111104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김승민 사무관,	20111104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국주성 사무관,	2011110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1개월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서민	서나윤 사무관,	20111101
제1차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개최	금융위 국제협력팀	정태호 사무관	20111031
[보도참고]론스타 관련 사전통지	금융위 은행과	성기철 서기관	20111031
[보도참고]2011년 금융발전심의회 글로벌분과회의 개최결과	금융위 글로벌금융과·국제협	김수호 사무관,	20111028

2011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11028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이재인 사무관, :	20111026
[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이재인 사무관, :	20111026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구의정 사무관	20111026
[보도참고]금융감독원의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은행	성기철 서기관, (	20111025
[보도참고] 금융위 간부회의시('11.10.24) 위원장 강조사항 - 「중소기업 금융환	금융위 산업금융과	선욱 사무관	20111024
제48회 「저축의 날」 행사	금융위 은행과	조충행 사무관	20111024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적극적 맞춤성 요건 및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	김성진 사무관, :	201110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금융정책과	최치연 사무관	20111020
제1차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결과 공시	금융위 보험과	마순 사무관	20111020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 중소금융과	신장수 사무관	20111020
「최근 보험감독분야 국제논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호	박진애 사무관, :	20111020
[금융위]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시행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	김태완 사무관, (	20111019
[금융위]경은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 계약이전 결정 및 가교금융기관인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	권주성 사무관, :	20111019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	김승민 사무관, :	20111019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	금융위 자본시장과·공정시장	이한샘 사무관, (	20111018
[보도참고]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확정에 따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도	금융위 은행과	성기철 서기관	20111017
[보도참고] 「2011 KRX 엑스포」 기조연설 글로벌 경제상황 및 우리 자본시장 전	금융위 자본시장과	이한샘 사무관	20111013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시행('11.10.10)	금융위 은행과	이종림 사무관	20111010
[보도참고]금융위 간부회의시 금융위원장 강조사항	금융위 대변인실 정책홍보팀	정종식 사무관	20111010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 자산운용과, 자본시장	김성진 사무관, (	20111010
[보도참고]'11.10.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관련 참고자료	금융위 은행과	성기철 서기관	20111006
[보도참고]신협 및 새마을금고 관련 금융위원장 발언 내용	금융위 중소금융과	장석인 사무관	20111006
[금융위]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 개정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국주성 사무관, :	20111005
[보도참고]금융위 간부회의(10.4/화, 10시) 위원장 강조사항	금융위 대변인실 정책홍보팀	정종식 사무관	20111004
[보도참고]연합뉴스 「저축銀 후순위·예금 9조1천억 만기집중」 및 동아일보 「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	송병관 사무관, :	20111004
금융위 서기관, 한국인 최초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채용	금융위 행정인사과, 글로벌금	홍성기 인사팀장	20111004
제9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결과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11004
추경호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10930
2011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10930
[보도참고]금융위원장 국내 은행장 간담회 모두말씀	금융위 금융정책과	김성준 사무관	20110929
김석동 위원장 IAIS 기조연설문	금융위 보험과	박진애 사무관	20110929
[보도참고]국내 은행장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 금융정책과	김성준 사무관	20110929
11.9.30일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시행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서민	서나윤 사무관, :	20110929
[보도참고]자본시장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	금융위 자본시장과	김성조 사무관	20110928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이재인 사무관, :	2011092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자산운용과, 자본시장	김성진 사무관, (	20110927
금융위원장, 국내은행장들과 간담회 개최	금융위 금융정책과	강영수 사무관	20110927
9.26일부터 햇살론 제도개선사항 시행	금융위 서민금융팀	송희경 사무관, :	20110926
[보도참고]금융위 간부회의시 금융위원장 강조사항	금융위 대변인실 정책홍보팀	정종식 사무관	20110926

회계산업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제4차 민관합동위원회 개최	금융위 공정시장과	국주성 사무관	20110923
[보도참고]동아일보의 「"저축銀 영업정지 더 이상은 없다"」 보도('11.9.23.) 관	금융위 중소금융과	이진수 사무관	20110923
김석동 금융위원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 기조연설	금융위 대변인실	김현현 사무관	20110922
국정감사 업무보고, 인사말씀, 저축은행보고 자료	금융위 기획재정담당관	남동우 서기관	20110920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추진계획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김정주 사무관	20110919
7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부과 등 관련 보도자료 및 정부입장	중소금융과	서재홍 팀장	20110918
[보도참고]세계일보('11.9.16) 「유로존 위기 연말쯤 터진다」 제하의 기사 등 관	금융위 대변인실 정책홍보팀	정종식 사무관	20110916
[보도참고]은행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관련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금감	이인욱 사무관,	20110916
[증선위]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융감독	구의형 사무관,	20110916
김석동 금융위원장, 이코노미스트 컨퍼런스 기조연설	대변인실	정현욱 사무관	20110915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위 은행과	이종림 사무관	20110915
「은행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은행과	고영호 사무관	20110909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연준 사무관	20110908
[보도참고] 한국경제의 「저축은행 혼란이 언론 탓?」 보도('11.9.8.) 관련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이진수 사무관,	20110908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금융위 행정인사과	홍성기 팀장	20110907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1~2013) 확정	금융위 금융정책국 국제협력	이영직 서기관,	20110907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서비스분과 회의 결과	금융위 은행과, 보험과	성기철 서기관	20110907
2012년도 공인회계사 1차시험의 정부회계 출제범위 및 출제유형 공지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국주성 사무관,	20110905
[보도참고]휴면카드 감축방안 추진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여신	김정주 사무관,	20110905
금융위, 한·중·일 금융당국간 핫라인 협의채널 구축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10905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 및 계약이전 결정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권주성 사무관,	20110905
금융위원회, 몽골 금융당국과 MOU 체결 및 해외금융협력협의회 구성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팀	류근하 사무관,	20110904
[보도참고]주간조선(8.29일자)(11.9.4. 인터넷 게재)"사라졌던 5조원의 비밀"제	중소금융과	송병관 사무관	20110904
2011년 7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10902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 개선방안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이한샘 사무관,	20110901
김석동 금융위원장, 몽골 중앙은행(BOM) 및 금융감독 위원회(FRC)와의 금융협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류근하 사무관	20110901
2011년도 제46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961명 발표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국주성 사무관,	20110901
금융위원회, 호주 APRA(건전성감독청)과 은행·보험분야 정보공유 및 협력증진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금감원	류근하 사무관,	20110831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이재인 사무관,	20110831
[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이재인 사무관,	20110831
[보도참고]정책금융공사 사장 임명 제청	금융위 행정인사과	홍성기 인사팀장	20110830
[보도참고] 「2011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금융위 공자위사무국 운용기	김춘규 사무관	20110830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박진애 사무관,	20110826
[보도참고]과태료납부자 보험요율 할증 관련 추정자료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전치활 사무관	20110826
[금융위]금융투자업 및 합병 인가 의결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김태완 사무관,	20110826
[금융위]회계산업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제3차 민관합동위원회 개최	금융위 자본시장국 공정시장	국주성 사무관	20110826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이한샘 사무관,	20110826
[보도참고]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임명 제청	금융위 행정인사과	홍성기 인사팀장	20110826
[금융위]흥국화재해상 및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금융위 제재조치 의결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손해·	마순 사무관, 박	20110826
[금융위](부산)우리저축은행의 영업권 상각기간 연장 및 감독규정 부칙에 따른	금융위 중소금융과	전수한 사무관	20110826

대신저축은행 영업인가 및 부산2·중앙부산·도민 저축은행의 계약이전 결정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권주성 사무관,	20110826
[보도참고]우리금융지주 매각 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입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연준 사무관	20110819
FSB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시사점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이호영 사무관	20110818
신용정보 관련 개정법규 시행(11.8.20) - 달라지는 사항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	금융위 서민금융팀	박주영 사무관	20110817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금융위 행정인사과	이문규 사무관	20110817
[보도참고]공적자금관리위원회·매각심사소위 합동간담회 개최 결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연준 사무관	20110817
[보도참고]금융지주회사회장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김성준 사무관	20110816
[보도참고]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김성준 사무관	20110816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112로 신청하세요!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서민	서나윤 사무관,	20110812
금융위원회,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 금융정책과	김성준 사무관	20110812
[보도참고]8.8(월) 16:00 금융위 간부회의시 금융위원장 강조사항	금융위 대변인실	김진홍 과장	20110809
금융위, 서민금융 종합안내 사이트 개설	금융위 서민금융팀	박주영 사무관	20110809
금융당국 매일 8:30분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자본	강영수 사무관,	20110809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기획재정담당관실	남동우사무관	20110809
공매도 제한조치 및 자기주식 1일 취득한도 확대 실시	금융위 자본시장국, 한국거래	김성조 사무관,	20110809
금융시장 불안 증대에 따른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금감	강영수 사무관,	20110808
(울산)경은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부과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이진수 사무관,	20110808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Global SIFI) 선정/추가자본부과방안 및 효과	금융위 금융정책과, 글로벌금	김성준 사무관,	20110808
[보도참고]위원장 말씀자료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이윤수 과장	20110808
[보도참고]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임명	행정인사과	홍성기 인사팀장	20110804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황 보고	기획재정담당관실	남동우사무관	20110803
공정한 퇴직연금시장 조성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용	하주식 서기관,0	20110803
2011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10729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금융권 지원방안	금융위 금융정책과, 산업금융	이동훈 서기관,	20110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자본시장과, 자산운용	이한진 사무관,	20110727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중소금융과, 서민금융	이동욱 사무관	20110727
[보도참고]서울보증보험 관련 금융위원장 언급내용	금융위 보험과	전치환 사무관	20110726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중소금융과	신장수사무관,전	20110725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금융과	장석인 사무관	20110725
대부업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 중소금융과, 서민금융	이동욱 사무관	20110722
[보도참고]경향신문(11.7.22)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3년간 14조원 쏟아 부어」	중소금융과	송병관 사무관	20110722
[보도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임명 제청	행정인사과	홍성기 인사팀장	20110722
2011년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금융위 금융정책과	이동훈 서기관	20110722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신장수 사무관,	20110721
[금융위]빌바오비스까야아르헨따리아은행(BBVA) 서울지점 신설 인가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은행	서나윤 사무관,	20110720
[금융위]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금융상품 : 공시'개정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청 사무관,	20110720
제8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결과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금융정	김수호 사무관,	20110719
신제윤 부위원장, 제8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110715
서민금융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송희경 사무관	20110714
유럽 재정위기 관련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금감	강영수 사무관,	20110713

[증선위]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정 사무관,	20110713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신용카드발급 관행 개선	금융위 은행과·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0110712
여전사의'원화유동도'외화차입 축소를 위한 행정지도 시행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금감	강영수 사무관,	20110707
금융당국, 보험계약관련 특별이익 제공행위 뿌리뽑는다.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손해	제종옥 사무관,	20110707
금융위, 금융동향정보 스마트폰에서 매일 보세요~	금융위 대변인실 정책홍보팀	이기찬 팀장	20110707
회계산업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위원회 개최	금융위 공정시장과	국주성 사무관	20110706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및 폐지승인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김승민 사무관,	20110706
[보도참고]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 참고자료(금융안정기금	금융위 산업금융과	선욱 사무관	20110705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서재홍 팀 장, 손	20110704
2011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10701
신용카드사 채무 연체/유예 서비스 개선방안	금융위 은행과·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0110630
[보도참고]우리금융지주 매각 관련 매각소위·공자위 합동간담회 개최	금융위 공자위 사무국 운용	김연준 사무관	20110630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	오유정 사무관,은	20110629
[보도참고]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모범규준 제정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은행	서나윤 사무관,	20110629
[보도참고]매일경제 "상호금융 서민대출 어려워진다"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중소금융과	오유정 사무관,	20110626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저축은행 PF채권 매입 추진	금융위 중소금융과, 공자위	송병관사무관, 장	20110624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마련	금융위 의사운영정보팀, 은행	오득용 사무관,	20110623
[보도참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국회 의결	자본시장과	최상아 사무관	20110623
[보도참고] 경찰청 조사 발표(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 임직원, 상장사 연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	김성조 사무관	20110623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 방안	금융위 자본시장과·금융시장	이한샘 사무관,	20110622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이재인 사무관,	20110622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본시장	김성조 사무관	201106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위 자산운용과, 자본시장	김성진 사무관,	20110616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연39%)	금융위 중소금융과, 서민금융	이동욱 사무관	20110616
[금융위]신용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조정	금융위 중소금융과, 은행과,	김정주 사무관,	20110615
제30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기획재정담당관실	남동우사무관	20110614
[위원장]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회사 및 보험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보험과	박진애 사무관	20110610
제1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금융위 국제협력팀, 자본시장	이영직 서기관,	20110608
[보도참고]그리스 등 유럽 재정위기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시장	전은주 사무관	20110607
PEF 제도도입 6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김성진 사무관,	20110607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	금융위 중소금융과, 은행과,	김정주 사무관,	20110607
2011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10603
[금융위]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	이한진 사무관	20110601
저축은행 PF사업장 실태 조사 및 PF대출 처리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	송병관 사무관,	20110601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전수한 사무관,	20110601
[보도참고]6월1일자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박지원 민주당 의원 - 정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이진수 사무관	20110601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국, 금감원	이한샘 사무관,	20110601
[금융위]태광산업(주)의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	제종옥 사무관,0	20110601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은행	김정주 사무관,5	20110601
[보도참고]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결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금융	김정주 사무관,홀	20110531

[보도참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노력 강화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금융ᄀ	서나윤 사무관,0	201105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추진	서민금융팀	마순사무관	20110526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이재인 사무관,	20110525
[증선위]2011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 등	금융위 자본시장국, 금감원	국주성 사무관,	20110525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정 사무관,	201105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	구의정 사무관	20110524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	국주성 사무관	20110523
[보도참고]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	자본시장과	김성조 사무관	20110523
한국,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산하 「신흥국 관련의 금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이호영 사무관	20110520
ELW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 마련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김성조 사무관,	2011052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서나윤 사무관	20110520
은행권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공시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은행	서나윤 사무관, (	20110518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연준 사무관	20110517
1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금융	이동욱 사무관,	20110516
회계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 위원회 개최 말씀자료	공정시장과	국주성	20110513
회계산업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	국주성 사무관	20110513
[증선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금융	구의정 사무관	20110511
[보도참고]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	신장수 사무관,	20110506
[금융위] (가칭)㈜DGB금융지주 설립 인가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금융	박정원 사무관,ᄅ	20110504
[금융위]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	이한샘 사무관,	20110504
자금세탁방지관련 부산 국제회의 준비기획단 발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김효신 사무관, (	20110503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 관련 금융당국 입장 및 향후 대책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	신장수 사무관,	20110502
"PF 정상화 Bank"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금융	김성준 사무관,ᄎ	20110501
2011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10429
부산계열 5개 상호저축은행, (전남)보해상호저축은행 및 (강원)도민상호저축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	이진수 사무관,	20110429
[금융위]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승인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기획	김광일 사무관,ᄅ	20110427
[금융위]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	이한샘 사무관,ᄇ	20110427
[증선위]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김영수 팀장, 구	20110427
[증선위]공사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이재인 사무관, (	20110427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이재인 사무관,	20110427
[보도참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이동욱 사무관	20110422
금융위,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중소	안현찬 사무관,0	20110418
[보도참고] 5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조찬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금융정책과	이동훈 서기관	20110418
금융위원회,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 조찬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이동훈 서기관	20110417
금융회사 IT 보안 강화 TF 추진계획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의	오득용 사무관,ᄀ	20110415
제29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금융위 기획재정담당관실	남동우사무관	20110415
[증선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구의정 사무관,ᄅ	20110413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에 따른 신규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실적 및 향후 계	금융위원회 보험과	권주성 사무관,	20110408
[보도참고] 매일경제(4.8, 인터넷판,16:39) 「김석동 주도 대우·우리證 합병시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윤병원 사무관	20110408
제7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결과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서재홍 서기관	20110406

[금융위]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	이한샘 사무관, 2	20110406
신재윤 부위원장, 제7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서재홍 서기관	20110401
2011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10401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결과	자본시장과	이한진 사무관	20110331
[보도참고] 황영기 前우리은행장 관련 소송 결과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독	서나운 사무관,0	20110331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금융	김정주 사무관,0	20110330
[보도참고] 체크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금융	김정주 사무관,0	20110330
최근 국내 은행권 외화자금 조달 현황 등 점검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강영수 사무관,0	20110330
[보도참고]미소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미소아카데미 개설, 전국 전역에서 교육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미소	주홍인 사무관,	20110328
[보도참고] 연합뉴스 「금융위, 6억원이하 APT만 DTI 확대적용」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오유정 사무관	20110325
[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금융	이재인 사무관,조	20110323
[보도참고] 서울행정법원의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관련 효력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금	이진수 사무관,	20110322
[보도참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금융	오유정 사무관,초	20110322
일본 대지진 관련 중소기업 애로 상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중소	송병관 사무관,권	20110321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금융	신장수 사무관,김	20110317
[보도참고] 금융감독원장 임명제청안 금융위 의결	행정인사과	홍성기 인사팀장	20110316
[보도참고]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금융위 은행과,금융감독원	신종순 사무관,구	20110316
[금융위] (가칭)㈜메리츠금융지주 설립 인가 등	금융위 금융제도팀, 보험과,	박정원 사무관,권	20110316
[금융위] 금융투자업 본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금감독원	이한샘 사무관,5	20110316
[금융위] 삼화저축은행의 계약이전 결정 및 (가칭)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인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금융	이진수 사무관,김	20110316
[금융위] 동양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	제종욱 사무관, 이종욱 부국	금융서비스국 보	20110316
분할 재상장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자본시장과, 한국거래소 유가	김성조 사무관,	20110315
일본 대지진 관련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결과	금융시장분석과	강영수	20110313
[보도참고]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김정명 사무관,0	20110311
[증선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구의청 사무관,김	20110311
일본 강진에 따른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개최	금융시장분석과	강영수사무관	20110311
[보도참고] 산은금융지주 대표이사 임명 제청	행정인사과	홍성기 인사팀장	20110310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 2건 차관회의 통과	공정시장과, 중소금융과	국주성 사무관,신	20110310
제298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기획재정담당관실	남동우 사무관	20110309
[보도참고] 정부, 리비아 수출중소기업 및 건설업체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	산업금융과	송병관 사무관	20110307
2011년 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10304
[금융위] 합병 승인 및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	이한샘 사무관,5	20110302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금융	김제동 사무관,부	20110302
[금융위] (가칭)㈜BS금융지주 설립 인가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금융	박정원 사무관,김	20110302
공시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공정시장과	이재인 사무관	20110225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이재인 사무관	20110225
[증선위]옵션만기일(2010.11.11) 주가급락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금융	이재인 사무관,부	20110223
목포·전남지역 저축은행 예금자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 관련 관계기관 합동 간담	중소금융과	신장수 사무관	20110222
(강원)도민저축은행의 자체휴업에 대한 정부 입장	중소금융과	신장수 사무관	20110222
(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부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금융	신장수 사무관,조	20110222

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 관련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금융위 중소금융과	이진수 사무관	20110221
금융위원장 부산 방문 및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이진수 사무관	20110220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전북)전주상호저축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금융	신장수 사무관,조	20110219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 및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금융	이진수 사무관,조	20110217
저축은행중앙회의 정책금융공사 및 은행을 통한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자금 확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금융	이진수 사무관,권	20110217
부산저축은행·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한 정부 입장	금융위 중소금융과	이진수사무관	20110217
[금융위]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이한샘사무관,오	20110216
[금융위] 국민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케이비국민카드 신용카드업 예	금융위 은행과, 중소금융과/금	서나윤 사무관, 권	20110216
[보도참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김정영 사무관	20110215
신용카드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금융	김정주 사무관,0	20110209
금융위, 몽골에 자금세탁방지 기술연수 실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임형준 사무관,은	20110207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계획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금융	김정주 사무관,0	20110201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민금융지원 현장 점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한국	안현찬 사무관,권	20110131
2010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10128
코스닥 시장의 건전 발전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한국	김성조 사무관,0	20110126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	이한샘 사무관,오	20110126
[금융위]국민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 케이비카드 신용카드업 예비	금융위 은행과,중소금융과/금	서나윤 사무관,권	20110126
바젤 III 국내 도입을 위한 T/F 운영	은행과	서나윤 사무관	20110119
햇살론 제도개선 방향	중소금융과	송희경 사무관	20110119
[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금융	이재인 사무관,은	20110119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구의청 사무관,권	20110119
2010년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구의청 사무관,고	20110117
[금융위] 삼화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금융위 중소금융과, 금감원	이진수 사무관,조	20110114
[보도참고] 보험업법 시행령 차관회의 의결	보험과	박진애 사무관, 기	20110113
[금융위] 뉴욕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	금융위원회 보험과, 금융감독	제종옥 사무관, (	20110112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금융위 의결	자산운용과	김종훈 사무관	20110112
옵션만기일('10.11.11일) 주가지수 급락 관련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	김성조 사무관,조	20110111
G20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금융분야 T/F」 발족	금융정책과	김성준 사무관	20110107
금융유관기관 간 정보공유MOU체결(09.9.15) 이후 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	금융정책과	정선인 사무관	20110107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금융 지원현장 점검	중소금융과, 서민금융팀	송희경 사무관, 최	20110106
[위원장] 2011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110105
[위원장]2011년도 증권시장 개장식 치사	자본시장과	김성조사무관	20110103
[위원장] 금융위원장 취임사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110103
2010년 1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01231
[금융위]광주중앙신협과 담양신협 등의 합병 인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	장석인 사무관,송	20101230
구제역 피해주민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김경관 사무관	20101230
[보도참고]자동차보험 개선대책(2010.12.29 발표) 관련	금융위원회 보험과	윤상기 서기관	20101230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담당관·	박경덕 사무관,0	20101229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금융위원회 보험과	성대규 과장, 윤	20101229
[금융위](가칭)㈜DGB금융지주 설립 예비인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	박정원 사무관, 기	20101229

[금융위]외환은행 금융사고 관련 영업점 영업정지 조치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	이종림 사무관,조	20101229
[금융위]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국주성 사무관,장	20101229
[금융위]영업손익 주석공시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	구의청 사무관,장	20101229
[보도참고]자동차보험개선 대책(2010.12.29 발표) 관련	금융위원회 정책개발팀	윤상기 서기관	201012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전수한 사무관	20101227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공정시장과	국주성 사무관	20101227
[보도참고]중소기업은행 은행장 제청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홍성기 인사팀장	20101223
금융위원회, 각 금융업권과 함께 나눔문화 적극 동참	금융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	정종식 사무관,권	20101223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금융	이재인 사무관,차	20101222
[증선위]분·반기재무제표 검토 준칙 개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국주성 사무관,부	20101222
2012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정부회계'내용 반영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기획	국주성 사무관,0	2010122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차정현 사무관	20101221
운용규제 개선 등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방안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용	윤병원 사무관,0	20101220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박 광 과장,신상	20101220
BCBS,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조문(Rules text) 확정 발표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독	신종순 사무관,권	20101217
바젤 III 규제영향평가 결과 및 파급 영향	금융위원회 은행과,금융감독	신종순 사무관,권	20101217
제3차 금융발전심의회 중소서민금융분과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	송희경 사무관	20101217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 「금융동향」 출시	금융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	이기찬 팀장	20101217
[보도참고]미소금융 추진실적(12.15일 기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미소	주홍민 사무관,윤	20101216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	김정주 사무관	20101216
미소금융 1주년 기념행사 개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미소	마순 사무관,윤지	20101216
금융위원회, 2010 정책홍보 최우수기관 선정	이기찬 팀장	금융위원회 대변	20101216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	이한샘 사무관,권	20101215
[금융위](가칭)㈜BS금융지주 설립 예비인가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금융	박정원 사무관,권	20101215
2011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금융정책과	변제호 · 이동훈	20101214
[보도참고] 금융위 부위원장, 서민금융정책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사항 점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이진수 사무관,손	20101210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금융	구의청 사무관,권	20101209
2010년 제3차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	손영채 서기관	20101208
옵션만기일(11.11일) 주가지수 급락 관련 후속대책 추진상황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자산	김성조 사무관,권	20101207
2010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01206
[보도참고] 「KIKO 계약기업 지원」 추진상황	금융위 산업금융과/금감원	선욱 사무관, 박	20101206
[위원장] 금융위원장, 세계경제연구원-IMF공동주최 컨퍼런스 오찬연설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101202
[금융위]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	이한샘 사무관,도	20101201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금융	김제동 사무관,부	20101201
[금융위] (가칭)㈜메리츠금융지주 설립 예비인가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금융	박정원 사무관,권	20101201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정시장과	구의청 사무관	20101201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과	권주성 사무관	20101130
2010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금	김동희 사무관,권	20101130
제5차 「IFRS 정착 추진단」 회의 개최	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권	구의청 사무관,장	20101130
2010년 제3차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위 개최결과	금융정책과	변제호 서기관	20101129

[위원장] 보험경영인 조찬회 축사	보험과	윤상기서기관	20101126
금융정보분석원, 제4회「자금세탁방지의 날」행사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이귀웅 사무관,한	20101126
글로벌 ETF 컨퍼런스 축사	자산운용과	김미정사무관	20101125
북한 포사격 도발 관련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신상훈사무관	20101124
[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금감원 조	이재인 사무관,	20101124
[증선위]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금융	이재인 사무관,신	20101124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보험과	박진애 사무관,	20101123
北, 연평도 공격에 따른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금융정책과・시장분	변제호서기관,신	20101123
옵션만기일(11.11일) 종가시 주가지수 급락 관련 대응방향	금융위 자본시장과, 자산운용	김성조 사무관,	20101122
[금융위]신한은행 금융실명제 위반 관련 제재조치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	서나윤 사무관,후	20101118
[금융위]국민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허가취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금융	마 순 사무관,이	20101118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	이한샘 사무관,도	20101118
2010년 제4차 금융발전심의회 글로벌분과회의 개최	글로벌금융과	김현태 사무관	20101118
[위원장]G20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브리핑	글로벌금융과	이진수 사무관	20101111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구의정 사무관,김	20101110
금융위원회, 러시아 연방금융시장청과 증권분야 정보공유 및 협력증진에 관한 I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류근하 사무관	20101110
[보도참고]「KIKO 계약기업 지원방안(10.28)」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금융	선욱 사무관,박상	20101109
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은행과	신종순 사무관	20101109
2010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01105
금융감독원·한국은행 추가 외환공동검사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신상훈 사무관,장	20101105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	이한샘 사무관,김	2010110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	오화세 사무관	20101105
'1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금융	이동욱 사무관,보	20101103
은행의 참여확대를 통한 전환대출 활성화 방안 추진- 이달(11.22일)부터 은행에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한국	안현찬 사무관,이	20101103
'10년 10월말 기준, 미소금융 추진실적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미소	주홍민 사무관,김	20101103
'10년 10월말 기준, 햇살론 추진실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종	김정주 사무관	20101103
제14차 대부업정책협의회 결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이동욱 사무관	20101103
[위원장]「새출발 마중물 기금」모금 후원행사 참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안현찬 사무관	20101102
ELW시장 건전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전수한 사무관	20101101
[위원장]정책토론회(이사철의원)_위원장축사	자문관실	엄석규 선임	20101101
"찾아가는 미소금융"전국 전통시장을 찾아간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미소	주홍민 사무관,김	20101029
[보도참고]한겨레,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등'키코 공대위의 금번지원대책의 실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선욱 사무관	20101029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	이재인 사무관,김	20101028
[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금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	이재인 사무관,신	20101028
KIKO 계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금융	선욱 사무관,박상	20101028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김시목 사무관	20101026
제47회「저축의 날」행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조충행 사무관	20101026
[위원장]ADB컨퍼런스 오찬사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1010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전수한 사무관	20101025
[보도참고]연합뉴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등 '일부 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금융	김정주 사무관,오	20101022

제6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서울 총회 결과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서재훈 사무관	20101021
[위원장] KRX 엑스포 기조연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성조 사무관	20101021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국주성 사무관	20101021
[보도참고]BCBS 발표 금융규제개혁 보고서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은행과,금융감독	신종순 사무관,곤	20101021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서울 회의 논의 결과	금융위원회 은행과,금융감독	신종순 사무관,곤	20101020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김제동 사무관,박삼철 부국장	금융위원회 자산	20101019
권혁세 부위원장, 제7차 중국국제금융포럼 참석	금융위원회 대변인실	정현욱 사무관	20101016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곤	구의청 사무관,곤	20101014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 서울 개최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금	서재훈 사무관,곤	20101014
[위원장]101012-보도자료(기조연설)IFRS Foundation Trustees 초청 만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구의청 사무관	20101013
[금융위]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박정원 사무관	20101013
[보도참고]금융위·금감원 및 IFRS Foundation 등 초청 IFRS 오픈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구의청 사무관,고	20101013
[보도참고]한국 최초 국제회계기준 재단 이사회(IFRS Foundation Trustees) 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한국	구의청 사무관,곤	20101012
2010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기획재정담당관	박민우 서기관	20101011
[금융위]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조치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독	서나윤 사무관,은	20101007
[위원장]G20 성공개최를 위한 금융규제개혁 워크샵_축사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101006
[금융위]경남은행 금융사고 관련 제재조치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독	손영채 서기관, 곤	20101006
[금융위]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험과	박진애 사무관	20101006
[보도참고]10년 9월말 기준, 미소금융 추진현황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미소	주홍민 사무관, 곤	20101006
[위원장] 저출산고령화 컨퍼런스 축사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101005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6.13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한국은행&#653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금융	이후영 과장,박곤	20101005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핫살론'취급현황 점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0101005
2010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	김춘규 사무관	20101001
제5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논의 결과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서재훈 사무관	20100929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차정현 사무관	20100924
미소금융중앙재단,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위한 소액보험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	제종옥 사무관,주	20100924
진동수 금융위원장, 제5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및 운영위원회 참석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서재훈 사무관	20100924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금융권 지원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산	변제호 서기관,곤	20100924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정책홍보팀,공보실	신종순 사무관,주	20100920
금융위 부위원장, 추석 대비 전통시장 금융애로 현장점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신장수 사무관	20100917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이재인 사무관,곤	20100917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구의청 사무관,곤	20100917
[금융위]"8.29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관련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은행	홍성기 사무관,은	20100917
[금융위]국민신용정보㈜, 허가취소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정지	금융위원회 은행과,금융감독	마 순 사무관,이	20100917
[금융위]케이디비칸서스밸류 유한회사의 케이디비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	금융위원회 보험과, 금융감독	제종옥 사무관,0	20100917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	이한샘 사무관,도	20100917
[금융위]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김건영 서기관	20100917
[금융위](대구)삼익신협과 (경북)다산신협의 합병 인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장석인 사무관,곤	20100917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금융	김제동 사무관, 곤	20100917
제25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	김춘규 사무관	20100916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 점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최치연 사무관,도	20100916
우회상장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공정	김성조 사무관,ㅎ	20100915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김종훈 사무관	20100915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국제 컨퍼런스	자본시장과	최상아 사무관	20100914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김건영 서기관	20100914
[위원장] 한국 Financial Inclusion 정책의 어제와 오늘	서민금융팀	주홍민 사무관	20100910
2010년 제4차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회의 개최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전수한 사무관, ㅎ	20100910
제11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국제협력팀	황기정 사무관	20100910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홍성기 사무관	20100910
미소금융 추진현황 등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주홍민 사무관	20100908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실태 재점검 실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금융	신장수 사무관,0	20100908
햇살론 추진현황 및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0100908
[보도참고]금융위 부위원장, 한·중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중국방문	송현도 서기관	금융위원회 자본	20100908
[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사무관금융위원회 공정시장	이재인 사무관,신	20100908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금융	이재인 사무관,부	20100908
"찾아가는 미소금융": 모바일 서비스 개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미소	안현찬 사무관,윤	20100907
[위원장] 신협 50주년 기념행사	중소금융과	김정주사무관	20100907
조기종료 워런트 개장식	자본시장과	전수한 사무관	20100906
[위원장] FSB 신흥국 국제컨퍼런스 연설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	20100903
2010년 7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용기	김춘규 사무관	20100903
[보도참고]부가가치세 연세사업자 카드수수료율 인하 관련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신장수 사무관,0	20100903
'10년 제2차 금융선진화 합동회의 개최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변제호 서기관	20100903
제45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국주성 사무관, ㅈ	20100902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	김정영 사무관	20100901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공시위반 과징금 제도 개선)	공정시장과	이재인 사무관	20100901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김제동 사무관,부	20100901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및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등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	이한샘 사무관,부	20100901
[금융위]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보	진선영 사무관,자	20100901
[금융위]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의 보험업 허가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생명	제종욱 사무관, ㅂ	20100901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산업	홍성기 사무관, ㅎ	20100830
「2010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금융위원회 공자위사무국 운	김춘규 사무관	20100830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FATF 평가단 방한(訪韓)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이귀웅 사무관	20100830
2009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금융	구의청 사무관,김	20100827
진동수 금융위원장, FSB 의장 및 주요 회원국과 G20 서울정상회의 금융규제개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서재훈 사무관	20100827
금융위원회 국·영문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금융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	이동욱 사무관,0	20100827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금융위원회 은행과·산업금융	마 순 사무관,남	20100826
"미소금융중앙재단 일수업자 사라진 대전 도마큰시장에 추가 1억원 지원"	금융위원회,미소금융중앙재	안현찬 사무관,윤	20100825
[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금융	이재인 사무관,부	20100825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중소기업단체장 조찬간담회 개최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구의청 사무관	20100819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 개최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0100818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금융	이한샘 사무관,	20100818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의 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중소금융과, 금융감독원 저축	김건영 서기관,	20100818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권주성 사무관	20100818
제2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00813
투자일임계약(랩 어카운트)의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자산운용과, 자본시장과 , 금	김종훈 사무관,	20100810
[보도참고]'햇살론' 취급현황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0100810
케이디비생명보험(주)에 대한 자본감소인가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제종욱 사무관	20100809
[보도참고]'저신용·고소득자의 햇살론 대출가능'지적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010080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김건영 서기관	20100806
[보도참고]미소금융 관련 현황 설명자료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미	주홍민 사무관,	20100805
[보도참고]'햇살론'취급기관 및 지역별 취급실적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0100805
금융위원장, 대전지역 '햇살론'판매현장 점검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0100805
금융위원장,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현장점검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0100803
[보도참고]'햇살론' 취급현황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0100802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착수	공자위 사무국	금융위원회	20100730
[보도참고]햇살론' 취급현황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0100730
[보도참고]중소기업 현장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하도급·인력·자금이 주요 애로	산업금융과	송병관 사무관	20100730
2010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김춘규 사무관	금융위원회	20100730
[보도참고] 위험회피(헷지) 회계 관련 IFRS 개정 동향 및 한국의 대응 노력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구의정 사무관	20100729
[보도참고]'햇살론' 취급현황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0100729
은행부행장 조찬간담회 개최 및 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과	신종순 사무관	20100728
[보도참고] '햇살론' 취급현황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중소	김정주 사무관	20100728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애널리스트 및 리포트 공시제도 도입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이한샘 사무관,	20100727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과, 기재부,	최상아 사무관,	20100727
금융위원장,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출시 기념식 참석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0100726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방안	금융위 자본시장과, 기재부	전수한 사무관,	20100726
금융위원장 미소금융 간담회 참석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주홍민 사무관	20100723
[보도참고]상장 중소기업들에 대해 예정대로 2011년부터 IFRS를 시행	공정시장과	구의정 사무관	20100722
은행업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신상훈 사무관,	20100721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금융	이한샘 사무관,	20100721
금융투자업 인가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금융	김제동 사무관,	20100721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김건영 서기관	20100721
[금융위](주)탑라인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대주주 변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금융	제종욱 사무관,	20100721
한도거래 대부계약에 대한 최고이자율 적용 관련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장석인 사무관	20100721
[금융위]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등 개정안 등	자본시장과	김성조 사무관	20100721
금융감독원 저축은행부문 인력 충원을 위한 특별예비비 사용 승인 등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이진영 사무관,	20100721
금융위 부위원장, 회계법인 조찬간담회 개최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	국주성 사무관,	20100720
7.26일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본격출시	중소서민금융과, 중소기업정	김정주 사무관,	20100720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마련 일정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박민영 사무관	20100716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지원 현장 점검 실시	산업금융과, 금융서비스국 중	송병관 사무관,	20100715

'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위 개최결과	금융정책과	변제호 서기관	20100715
'미래와 금융: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대책'세미나	정책개발팀, 미래기획위원회	송용민 사무관,	20100714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공정시장과	이재인 사무관	2010071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이재인 사무관	20100714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구의청 사무관	20100714
2010년 제3차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회의 개최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	이한샘 사무관,	20100709
2010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00709
[보도참고]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금융위 전직원 워크숍 개최	행정인사과	태현수 사무관	20100709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장석인 사무관	20100708
저축은행에 유동성비율 제도 도입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김건영 서기관	20100707
금융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전주지점 개소식) 기업·은행계 미소재단, 다잉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0	주홍민 사무관,	20100702
20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회의 개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손영채 서기관	20100702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펀드 공시제도 개선」 추진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금융	윤병원 사무관,	20100701
20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 개최	보험과	권주성 사무관	20100630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김시목 사무관	20100630
[보도참고]금융정보분석원, 룩셈부르크등 2개국 FIU와 양해각서 체결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김현수 사무관	2010063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자본	이재인 사무관,	20100630
「(가칭)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기본방향」 토론회 개최	한국개발연구원, 자본시장연	연태훈 박사, 신	20100629
"미소희망봉사단" 창단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0	주홍민 사무관,	20100629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의결	보험과	제종욱 사무관,	20100629
[보도참고]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중소서민금융과	김건영 서기관	20100625
[보도참고]2010년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의 영향 및 대응방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업	김성진 사무관,	20100625
「시장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워크숍	국제협력팀, 금융감독원 기획	황기정 사무관,	20100625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	중소서민금융과, 공자위 사무	김건영 서기관,	2010062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공정시장과	오화세 사무관	20100624
201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금융정책과	변제호 서기관	20100624
「시장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워크숍 개	금융위 국제협력팀, 금감원 :	금융위원회	20100624
[보도참고]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김건영 서기관	20100623
경북경산제일신협과 청도군신협의 합병 등 인가	중소서민금융과, 금융감독원	김정주 사무관,	20100623
미니금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거래소 규정개정안 승인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전수한 사무관,	20100623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금융	김제동 사무관,	20100623
금융투자업 인가 및 대주주변경 등 승인 의결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금융	이한샘 사무관,	20100623
공인인증서 사용규제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은행과	서나윤 사무관	20100623
제29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기획재정담당관실	윤상기 서기관	20100622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시장 편입 발표 관련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김성조 사무관	20100622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중소서민금융과	장석인 사무관	20100618
제20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	조문희 사무관	20100618
진동수 금융위원장, 미국 FRB 버냉키 의장, SEC 샤피로 의장 면담 및 FRB·OC	글로벌금융과	서재홍 사무관	20100617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구의청 사무관,	20100616
"글로벌 금융위기와 마이크로파이낸스 : 도전과 국제협력" 국제컨퍼런스 개최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주홍민 사무관,	20100615

진동수 금융위원장, 제4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및 미국 금융당국과의 협	글로벌금융과	서재훈 사무관	20100614
[보도참고]거시 건전성(Macro-Prudential Measures) 제고를 위한'자본유출입 변	금융시장분석과, 기획재정부	최치연 사무관,	20100614
제19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조문희 사무관	20100614
한국, IOSCO MMOU 정식회원으로 가입	자본시장과 - 공정시장과, 금	이한샘 사무관, (	20100609
국민신용정보㈜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2월) 조치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금융감	마 순 사무관, 0	2010060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서민금융과	신장수 사무관	20100608
2010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용기	김춘규 사무관	20100604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	구의형 사무관, (	20100603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기	이재인 사무관, (	2010060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이재인 사무관, 박연길 팀	장공정시장과, 금	201006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	이한진.전수한.(	20100603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형 사무관, (	20100601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자	이한진 사무관, (	20100531
제18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조문희 사무관	20100528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행복잡(Jc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7	주홍민 사무관,	20100527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국제협력팀	황기정 사무관	2010052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이재인 사무관, (	20100526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 인가 등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감	변제호 서기관,	20100526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정시장과	김선문사무관	20100526
금융투자업 인가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금융	김제동 사무관, (	20100526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및 대주주변경 등 승인 의결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금융	이한샘 사무관, (	20100526
금융위 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기업은행(IBK) 미소금융재단 부천지점 개소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주홍민 사무관	20100525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대내외 금융시장 점검을 위한 비상금융합동대책반(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	변제호 서기관, (	20100523
[위원장] 독일 재무부 주최 국제회의 Keynote Speech	글로벌금융과	이진수 사무관	20100521
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중소서민금융과	김건영 서기관	20100520
'0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장석인 사무관, (	20100520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형 사무관, (	20100520
2010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 등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	국주성 사무관, (	20100520
[위원장]2010 Korean Economic Forum	자문관실	홍성진 선임	20100519
금융위 부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신한미소금융재단 부산 해운대지점 개소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주홍민 사무관	20100519
진동수 금융위원장 국제 컨퍼런스 참석 및 독일금융청과의 금융협력/정보교환	글로벌금융과	이진수 사무관	20100519
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미	주홍민 사무관, (	20100517
제4차 「IFRS 정착 추진단」 회의 개최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금융	구의형 사무관, (	20100517
20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개최	자산운용과	윤병원 사무관	20100514
[보도참고]제17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정현직 사무관	20100514
[보도참고]권혁세 부위원장, 싱가포르에서 한국금융 IR 활동 전개	금융정책국 국제협력팀	정재식 사무관, (	20100513
[보도참고]2010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중소서민금융분과 개최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김건영 서기관	20100512
2010년도 금융선진화 합동회의 제1차회의 개최	금융정책과	변제호 서기관	20100512
(가칭) 아이비케이 연금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금융감	제종옥 사무관, (	20100512
금융투자업 폐지 및 해산 승인 의결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금융	이한샘 사무관, (	20100512

금융투자업 인가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금융	김제동 사무관,	20100512
[보도참고]경제 · 금융상황점검회의 결과	금융정책과	변제호 서기관	20100510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개시 점검	서민금융팀, 미소금융중앙재	주홍민 사무관,	20100510
금융위, 한국경제 해외설명회 개최	국제협력팀	정재식 사무관,	20100510
녹색금융특화 MBA업무협약 체결	금융정책국 국제협력팀	이종림 사무관	20100507
남유럽발 금융불안에 대응한 비상금융합동대책반회의 개최	금융시장분석과·자본시장과,	신상훈 사무관,	20100507
2010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00507
[보도참고]금융인 초청 오찬간담회의 금융위원장 발표자료	금융정책과	손주형 서기관	20100507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제도개선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계획	은행과	서나윤 사무관	20100506
금융위 부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 대전 동구지점 개소식 참석 및 KB 미소지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주홍민 사무관	20100506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중소서민금융과	김건영 서기관	20100430
행정지도 운영 투명화 방안 추진	금융제도팀, 금융감독원 감	박진애 사무관,	20100428
[보도참고] S&P의 그리스·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최치연 사무관,	20100428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자본	이재인 사무관,	20100428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중소서민금융과, 금융감독원	신장수 사무관,	20100427
IFRS 정보이용자 조찬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	구의정 사무관,	20100427
「FSB와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발간	글로벌금융과	김원태 사무관	20100426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로 경제회복 견인	금융정책과	오유정 사무관	20100423
제14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	조문희 사무관	20100423
현행 IFRS 외화환산회계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 및 향후계획	금융위 자본시장국 공정시장	구의정 사무관,	20100422
2010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 개최	보험과	권주성 사무관	20100422
[위원장] 2010 세계 경제·금융컨퍼런스	자문관실	홍성진 선임	20100421
[보도참고]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금	송병관 사무관,	20100421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	이한진 사무관,	2010042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오화세 사무관	20100421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의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김건영 서기관,	20100421
美 SEC의 골드만삭스 기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금융위 자본시장과, 시장분석	전수한 사무관,	20100420
[보도참고] 대부업법 시행령 최고이자율 인하 적용대상 관련	중소서민금융과	장석인 사무관	2010042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제협력팀	황기정 사무관	20100416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5%p	중소서민금융과	장석인 사무관	20100415
제28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기획재정담당관실	윤상기 서기관	20100414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정 사무관,	2010041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 예고	중소서민금융과	신장수 사무관	20100412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김건영 서기관,	20100409
2010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출범	금융정책과	변제호 서기관	2010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	이한진 사무관,	20100408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 개최	중소서민금융과	김건영 서기관	20100407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김제동 사무관,	20100407
금융투자회사의 외환파생상품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자본시장과	전수한 사무관	20100407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이한진 사무관,	20100407

예나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금감	김건영	서기관,	20100407
2010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	김춘규	사무관	20100402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비교공시 강화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신장수	사무관	20100330
예대율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독	신종순	사무관,	20100326
[보도참고]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참석	자본시장과	송현도	사무관	20100326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2010년 감리업무 운영방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	구의청	사무관,	20100325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안	자본시장과	최상아	사무관	20100325
[위원장] 금융선진화포럼 정책세미나	자문관실	홍성진	선임	20100324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이재인	사무관,	2010032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이재인	사무관,	20100324
㈜아호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 및 화인경영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한 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구의청	사무관,	20100324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김시목	사무관	20100323
제10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국제협력팀	이종림	사무관	20100322
제12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	조문희	사무관	20100319
한중일 고위급 금융당국 회의 및 한중일 금융협력세미나 참석 결과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금감원	류근하	사무관,	20100318
펀드업계 「기존 투자자 펀드 판매보수 단계별 인하」 추진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서종군	사무관,	20100318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이한진	사무관,	20100317
금융위 부위원장, 회계감독당국과 회계법인 조찬간담회 개최	공정시장과	구의청	사무관	2010031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용역 추진	공정시장과	이재인	사무관	20100305
2010년 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용기	김춘규	사무관	20100305
케이디비칸서스밸류 PEF의 금호생명보험(주) 대주주 승인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	제종옥	사무관,	20100303
한국신용정보(주)의 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 분할 인가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독	마순	사무관, 조	20100303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 및 합병승인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	이한진	사무관,	20100303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	김제동	사무관,	20100303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추진	금융위 금융정책과,중소서민	김정영	사무관,	2010030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	20100224
미소금융 2개월간 운영현황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미소	주흥민	사무관,	2010022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이재인	사무관,	20100224
㈜일공공일안경콘택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구의청	사무관,	20100224
제1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	박민영	사무관	20100224
2009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00219
제28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기획재정담당관실	윤상기	서기관	20100218
[보도참고] 금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이한진	사무관,	20100218
[보도참고] 서민금융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중소서민금융과	김건영	서기관	20100217
공시위반 과징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조사업무규정)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이재인	사무관,	20100211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관련 추진계획	자본시장과	전수한	사무관	20100210
금융위원장, 설 대비 미소금융 지원 현장점검	중소서민금융과	주흥민	사무관	20100210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하나카드 대주주 승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금감	신장수	사무관,	20100210
제10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	정현직	사무관	20100208
[보도참고]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적자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금융위 시장분석과, 금감원	최치연	사무관,	20100207

여신금융회사 이자율제한 위반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장석인 사무관,	20100205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미래기획위원회/기재부 국부	신진창 과장, 김	20100203
[보도참고]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체계 평가와 개선방안 용역 추진	자산운용과	서종군 사무관	20100203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청 사무관,	20100203
금융위원장, 설 대비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장방문	산업금융과	홍성기 사무관	20100202
'09.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정리 추진 실적	금융위 금융구조개선과,금감	남동우 사무관,	20100201
2009년 1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김춘규 사무관	20100129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	금융위 금융정책과, 금감원	송병관 사무관,	20100128
미소금융을 사칭하는 영업행위에 주의하세요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미소	손영채 사무관,	20100128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김시목 사무관	20100128
더케이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손해	권주성 사무관,	20100127
결합재무제표 기준서 제정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국주성 사무관,	20100127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이한진 사무관,	20100127
제9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금융위원회 공자위 사무국	조문희 사무관,	20100127
[위원장]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2010년 금융정책의 과제와 방향)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100122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 현황 및 리스크 평가	금융정책과	오유정 사무관	20100120
2010년도 미소금융 추진계획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미소	주홍민 사무관,	20100120
㈜트라이콤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감	구의청 사무관,	20100120
[보도참고] 진동수 금융위원장 취임 1주년 성과와 과제	금융정책과	변제호 서기관	20100119
미소금융 1개월간 설립·운영현황 등	중소서민금융과, 미소금융중	손영채 사무관,	20100118
[위원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세미나 기조연설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100118
[보도참고] 금융위원장, 7개 금융협회장 간담회 참석	금융정책과	변제호 서기관	20100114
외국인 금융투자자 등에 대한 출입국 편의제공 확대	금융위 국제협력팀, 법무부	정재식 사무관,	20100113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중소서민금융과	주홍민 사무관,	20100112
금융위원장, 금융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금융정책과	남성철 사무관	20100112
'미소(美少)금융'신청자격을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	금감원 서민금융총괄팀, 한	김병기 수석,양	20100111
제3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결과	글로벌금융과	서재홍 사무관	20100111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글로벌금융과	서재홍 사무관	20100108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새단장 오픈	금융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	이동욱 사무관,	2010010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정책과	변제호 서기관	20100107
FSB 보상원칙 국내 이행을 위한 업권별 모범규준 마련	금융위 금정과, 은행과, 보험	오유정·신종순·김	20100106
(주)스타맥스 등 6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청 사무관,	20100106
[위원장] 2010년 범금융기관 신년사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100105
[위원장] 2010년 금융위원회 신년사(시무식)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100104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금감	신장수 사무관,	20100104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산업금융과	홍성기 사무관	20100104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편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은행과	신상훈 사무관	20100104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국주성 사무관,	20091231
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 시행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국주성 사무관,	20091231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금감	김건영 서기관,	20091231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송현도 사무관, 김	20091230
증권유관기관 수수료체계 개편 및 수수료 인하	금융위 자본시장과, 한국거리	전요섭 서기관, 김	20091229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	김성조 사무관, 노	20091229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시장분석과, 은행과	박진애 사무관, 0	20091229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이재인 사무관, 0	2009122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공정시장과	김선문 사무관	20091224
금융위원장 및 금융유관기관장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	행정인사과	김제동 사무관	2009122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이재인 사무관, 김	20091223
㈜신명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구의청 사무관, 김	20091223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이재인 사무관, 0	20091223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과	고영호 사무관	20091222
제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국제협력팀	정재식 사무관, 0	20091221
미소금융 설립 및 운영현황 등	미소금융중앙재단 사무처, 금	양창엽 팀장, 손:	20091221
2009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용기	김춘규 사무관	20091218
제8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조문희 사무관, 김	20091218
한화손해보험㈜ 및 제일화재해상보험㈜의 합병 인가 등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손해	권주성 사무관, 0	20091218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과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간 영업양수도	금융위 은행과, 자본시장과,	신종순·이한진 사	20091218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본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	이한진 사무관, 0	20091218
바젤위원회, 금융규제 개편방안 초안 발표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독	신종순 사무관, 김	20091217
2010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금융정책과	손주형 사무관	20091216
맥쿼리은행 서울지점 신설 인가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은행	유영준 서기관, 0	2009121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	이수영·김종훈·사	20091211
[위원장] AMCHAM Luncheon Speech	자문관실	홍성진 선임조사	20091209
[위원장] UBS Korea CEO/CFO Forum 2009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091203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 본·예비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	이한진 사무관, 0	20091202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 예비인가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	송병관 사무관, 김	20091202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과, 한국거리	전수한 사무관, 김	20091130
두바이월드 채무상환유예요청 관련 비상금융합동대책반 회의 개최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금감	진선영 사무관, 5	20091129
2009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조문희 사무관	20091127
「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	한윤구 사무관	20091127
'회계감사업무시 전문가 평가의견 활용'관련 회계감독 강화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구의청 사무관, 0	20091125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이재인 사무관, 김	20091125
㈜헤쎄나 등 6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구의청 사무관, 김	20091125
제7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공자위 사무국 운용기획팀	조문희 사무관	20091125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금감	박진애 사무관, 5	20091119
Korean G-20 Leadership 연설문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091118
전남서부신협과 문장신협의 합병 등 인가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금감	김정주 사무관, 김	20091118
비씨카드(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금감	신장수 사무관, 김	20091118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과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간 영업양수도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은행	신종순 사무관, 0	20091118
미래상호저축은행 등의 한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금감	서재홍 사무관, 김	20091118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 본·예비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이한진 사무관,	20091118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김세정 사무관,	20091118
국회 경제정책포럼 세미나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091116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특수	권주성 사무관,	20091112
IGE·IMF 국제금융컨퍼런스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091111
㈜비엔디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청 사무관,	20091111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특수	권주성 사무관,	20091110
[보도참고자료] 한국 조선산업 경기회복 선제대응에 나서	기재부 산업경제과, 지경부	송준상·김성칠·남	20091109
[보도참고자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해운산업 자생력 확보 계기 마련	국토부 해운정책과, 기재부	정도안·고경모·김	20091109
2009 서울국제금융 축사	자문관실	홍성진 선임조사	20091106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위 금융정책과	변제호 서기관	20091105
「2009 KRX 상장기업 IR 엑스포」 기조연설	금융위 자본시장과	최상아 사무관	20091105
신용정보 협회 출범식 격려사	금융위 은행과	마순 사무관	20091105
2009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조문희 사무관	20091102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금융위 보험과	고영호 사무관	20091029
한국정책금융공사 창립 기념식 축사		금융위원회	20091028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세미나 연설문	자문관실	홍성진 선임조사	20091028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이재인 사무관,	20091028
제46회 「저축의 날」 행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조충행 사무관	20091027
[보도참고자료]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사 설립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김기한 서기관,	20091027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이한진 사무관,	200910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위 공정시장과	김선문 사무관,	20091014
㈜네오리소스 등 8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구의청 사무관,김	20091014
한국,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	FIU 기획행정실	이귀웅 사무관	20091014
09년도 국정감사 관련 업무현황	기획재정담당관실	윤상기 서기관	20091012
'녹색금융이 이끄는 녹색성장' 컨퍼런스 축사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091009
(가칭)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설립 인가	금융위 산업금융과·금융정책	정선인·송병관 사	20091007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오화세 사무관,	20091007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김세정 사무관,	20091007
채권 유통시장 개선 방안 마련	자본시장과	전수한 사무관,	20091005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 금융정책과, 은행과	변제호 사무관,	20091001
ADB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문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090930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이재인 사무관,	20090930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이재인 사무관,	20090930
2009년 7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자위사무국 운용기획팀	조문희 사무관	20090930
파이낸셜뉴스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축사	금융위 보험과	권주성 사무관	20090929
ADB, 금융위, 재정부 공동 국제컨퍼런스 개최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기재부	류근하·이준범 사	200909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은행과	마순 사무관	2009092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과, 자산운	이수영·김종훈·서	20090928
[보도참고자료] 금융위원장 및 금융유관기관 협회장 「추석 맞이 재래시장 방문	금융위 행정인사과	김제동 사무관	20090928

[보도참고자료] 금융위원장 정례기자간담회	금융정책과, 금융시장분석과	안창국 서기관,부	20090925
제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	조문희 사무관,부	20090925
KOSPI200선물 야간거래 개설을 위한 거래소 규정개정안 승인	금융위 자본시장과	오화세 사무관	20090924
자본시장연구원 국제컨퍼런스	자문관실	홍성진 선임조사	20090923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김세정 사무관,	20090923
(서울)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및 에이치에스에이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금감	서재홍사무관, 김	20090923
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하나카드 신용카드업 인허가 의결	금융위 은행과, 중소서민금융	신상훈·신장수·A	20090923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예비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오화세 사무관, 조	20090923
생활공감 국민행복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사업 대		금융위원회	20090921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사업 대폭 확대		1600-5500	20090917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결과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김건영 서기관	20090916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 (MOU) 체결	기재부 자금시장과, 금융위	김현익·이동훈 A	20090915
[보도참고]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 과반수 미달인데, 안건 의결」, 매일경제	의사운영정보팀	김보경 서기관	20090914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김건영 서기관	20090914
ELS 발행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윤병원 사무관, 김	20090911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정 사무관,김	20090909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손해	유재훈 서기관,조	20090909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김세정 사무관,부	20090909
우리은행 및 황영기(前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조치 의결 결과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일반	신종순 사무관, 김	20090909
외신기자 간담회 연설문	금융위원회 외신팀	김지원 사무관	20090907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금융위·금감원 기업재무개선	송현도 사무관,후	20090903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윤종오 주무관,손	20090903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장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산업금융과	홍성기 사무관	20090902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이재인 사무관,김	20090902
㈜케이디세코·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정 사무관,김	20090902
「2009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금융위 금융구조개선과	정현직 사무관	20090831
금융위원회, 외부전문가 채용 비율 10% 초과	금융위 행정인사과	나형호 사무관	2009083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회의 개최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구조	전태원 사무관	20090831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신상훈·이한진 A	200908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마순 사무관	20090827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본시장	오화세 사무관,조	20090826
아시아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허가취소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일반	마순 사무관, 조/	20090826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산운용	김세정 사무관,	20090826
서민금융 관련 반복적 민원 해소방안 추진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은행	신장수 사무관, 조	20090825
일본(동경) 및 중국(상해) 현지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 개최	금융위 자본시장과	오화세 사무관	20090824
제 2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금융정책과	김정명 사무관	20090820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 최초로 영문 블로그 개설	금융위 대변인실 외신팀	김지원 사무관	20090818
산은·기은을 중심으로 2조원의 특별 설비투자펀드 조성·운용할 계획	금융위 금융정책국 산업금융	김기한 서기관	20090817
2009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위 금융구조개선과	정현직 사무관	20090817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금감원	이종림 사무관,안	20090813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	서재훈 사무관, 3	20090811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중소서	장석인 사무관	20090806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우리나라 상호평가 보고서 출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이귀응·김효신·김	20090805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금융위 금융구조개선과,금융	남동우·송현도 사	20090730
2단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본시장	변제호·김성조 사	20090730
금융투자업 인가 및 국제신탁(주)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금융위 자본시장과, 자산운용	오화세·김성조 사	20090729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일반	마순 사무관,조성	20090729
국제회계기준(IFRS) 기조연설문	금융위 공정시장과	구의청 사무관	20090729
한국산업은행 분할 방안 확정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준비	김기한 서기관	2009072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중소서민금융과	신장수 사무관	20090723
국회 예산정책처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보고서에	은행과	유영준 서기관	20090722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이재인 사무관,신	20090722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이재인 사무관,곤	20090722
㈜㈜중부상호저축은행[㈜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	구의청 사무관,곤	20090722
금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이한진 사무관	20090722
09년 상반기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	금융위 산업금융과, 금감원	홍성기 사무관,윤	20090717
2009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위 금융구조개선과	정현직 사무관	20090716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이수영 사무관,곤	20090716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보험과	제종욱 사무관	20090716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예비인가 의결	금융위 자본시장과,금감원	오화세 사무관,조	20090716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금곤	이경하 사무관,윤	20090716
제28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주요업무보고	기획재정담당관실	윤상기 서기관	200907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마순 사무관	20090714
금융위원장, 은행장과 간담회 개최 예정(7.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	이동훈 사무관	20090713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 선진화 방안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산운용	서종군 사무관,부	20090710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와 한국 금융의 과제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090710
금융위원회 외부 금융전문인력 채용 확대	금융위 행정인사과	나형호 사무관	20090710
디도스 공격 관련 금융권 비상 대응체제 가동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득용 사무관,초	20090709
CMA 시장 동향 및 감독 강화 방안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본시장	이수영 사무관,조	20090709
㈜윈드스카이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융감	구의청 사무관,곤	20090708
전통시장 소액대출 및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 전국 확대 시행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중소서	주홍민 사무관,은	20090707
생활공감 국민행복 전통시장 소액대출 및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 전국 확대 시	중소서민금융과	주홍민 사무관	20090707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발표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김건영 서기관	20090706
위원장,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강연	글로벌금융과, 자문관실	오화세 사무관,	20090703
금융위원장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중소서민금융과	중소서민금융과	20090703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 및 허가취소 절차 개시	금융위 은행과, 금감원 일반	마 순 사무관,조	20090701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금융위 공정시장과	김선문 사무관	2009070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보험과	제종욱 사무관	20090701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 제정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중소서	서재훈 사무관	20090701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중소서민금융과	주홍민 사무관	20090630

생활공감 국민행복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630
「범금융권 고객정보보호 캠페인」 추진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왕섭 주무관,차	20090629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진출 및 FSB 창립총회 주요 결과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오화세 사무관	20090629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금융위 금융정책국	안창국 서기관	20090625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매일경제신문 주최 HongKong Business Forum)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090624
㈜씨모텍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구의정 사무관,0	20090624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이재인 사무관,정	20090624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금융위/금감원 기업재무개선	송현도 사무관,홍	20090623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안정화위원회(FSB) 창립총회 및 홍콩 국제비즈니스포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김건영 서기관	20090623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제종욱 사무관	20090622
한국의 금융정책(2009 중앙데일리-SERI 공동 주최 Korean Economic Forum 초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090619
보험범죄 근절대책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고영호 사무관	20090619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본시장	변제호·이수영·권	20090618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등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신상훈 사무관	20090617
(가칭)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설립 인가 등	금융위 금융정책과, 중소서민	이한진·서재홍 사	20090617
(주)골든브릿지의 (전남)상업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금감	서재홍 사무관, 권	20090617
SH&C생명보험(주) 및 KB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생명보	제종욱 사무관, 부	20090617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산운용	김세정 사무관,부	20090617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중소서	이경하 사무관	20090617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금감	이경하 사무관, 권	20090617
생활공감 국민행복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617
2009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위 금융구조개선과	정현직 사무관	20090616
'09.5월 중기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금융위 산업금융과, 금감원 :	권유이 사무관,홍	20090612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업	송현도 사무관, 홍	20090611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정부안 국회제출	금융위 금융정책과	이한진 사무관	2009060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중소서	신장수 사무관	20090608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이한진 사무관	20090605
축사(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국제 컨퍼런스)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090603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산운용	김세정 사무관,부	2009060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매경 이코노미스트콜럼 강연)	자문관실	황준하 선임조사	20090529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의 과제(한국금융학회 창립 20주년 정기 학술대회	자문관실	홍성진 선임조사	20090529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이재인 사무관,손	20090527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	이재인 사무관,권	20090527
2009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 등	금융위 자본시장국 공정시장	구의정 사무관,정	20090527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결과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기자	안창국 서기관,부	20090526
신성장동력 녹색금융 분야 세부추진계획 발표	글로벌금융과	김건영 서기관	20090526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독려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보험 :	제종욱 사무관, (	20090520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해지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김연준 사무관	20090520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안) 주요내용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구조	남동우·이성원·조	20090518
低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환승론) 확대 시행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중소서	금융위 주홍민 사	20090518

생활공감 국민행복 低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환승론) 확대 시행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518
부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개소	금융위 글로벌금융과, 금감원	신재형 사무관,전	20090515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자문관실	홍성진 선임조사	20090515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등 규정 변경예고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신상훈 사무관	20090514
금융 공공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금융위 기획조정관 의사운영	남성철 사무관	20090514
2009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위 금융구조개선과	정현직 사무관	20090513
금융위원회,'금융위기 극복'관련 포털사이트 구축·개설	금융위 대변인실 정책홍보팀	윤병원 사무관	20090513
㈜미디어코프 등 5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구의형 사무관,곤	20090513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금융정책과	이동훈 사무관	20090513
'09.4월 중소기업대출 및 신용보증지원 실적	금융위 산업금융과, 금감원	권유이 사무관,홍	20090512
금융위 부위원장, 중기 금융지원 현장점검회의 개최	산업금융과	김태훈 사무관	20090508
제2차 금융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	금융위 감사담당관실	박정원 사무관	20090506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본)허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윤상기 서기관,정	20090506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및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임명	금융위 혁신행정과	이경하 주무관	20090506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김선문 사무관,설	2009050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구조	남동우 사무관	20090504
한국금융 바로알리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금융위원회	20090501
기업구조조정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금감원 기업재무개선	송현도 사무관,류	20090430
대부업법 시행 관련 연체이자율 기준 변경	중소서민금융과	김정주 사무관	20090429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국무회의 보고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중소서	김정주 사무관	20090428
위기를 기회로 활용,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	국해부 해운정책과,기재부 정	이상길,이병원,설	20090423
쌍용차 및 GM대우 협력업체 2,400억원 자원 - 지자체·은행·보증기관 참여 『자	금융위 산업금융과, 지경부	권유이,류재열 사	200904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정선인 사무관	20090422
자산운용보고서 관련 제도합리화	금융위 자산운용과	김종훈 사무관	20090421
대한생명보험(주)의 한화투자신탁운용(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ㅂ	20090415
리먼증권 서울지점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감원	김연준 사무관,조	20090415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자산운	김세정 사무관,부	20090415
정무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09041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확대 추진현황	금융위 산업금융과, 중소기업	김수호·권유이·유	20090409
2009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위 금융구조개선과	정현직 사무관	20090409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차관회의 통과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중소서	김정주 사무관	20090409
事前 채무조정(Pre-Workout) 시행 개시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중소서	금융위 주홍민 사	20090408
「국고채 ETF」 등 신종 ETF 활성화 추진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전수한 사무관, /	20090408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김선문 사무관,부	20090408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 판매중단 위기」 보도내용 관련	금융위 자산운용과	김종훈 사무관	20090408
생활공감 국민행복 事前 채무조정(Pre-Workout) 시행 개시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408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금융구조개선과	조문희 사무관	20090407
생활공감 국민행복 재래시장 상인, 현명하게 빚 지는 방법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407
북한 로켓발사관련 비상금융합동대책반 회의 개최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금감	하주식 사무관,	20090406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금융위 산업금융과	권유이 사무관	20090406

금융위원장, 중기 금융지원 현장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산업금융과	김수호, 권유이	20090403
09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개시	창업지원팀	조은목	20090402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사외이사 간담회 개최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	안창국 서기관,신	20090401
예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중소서	서재홍 사무관,권	2009040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자본시장과, 자산운용	변제호·이수영·권	20090331
은행 자본확충 펀드 제1차 매입 완료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사맹도제 팀장	20090331
금융권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	김정명 사무관,	20090330
건설 및 조선사 2차 신용위험평가의 영향 및 대응방안	금융위/금감원 기업재무개선	송현도 사무관,최	20090327
"금융위기 극복 워크숍"개최	금융위 기획재정담당관실	전요섭 사무관	20090327
주택연금 활성화 등 추진 현황(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등)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신상훈 사무관	200903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및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	금융위 금융정책과·금융구조	이한진·남동우 사	20090326
글로벌파이낸스포럼 창립기념세미나	정책홍보팀	금융위원회	2009032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과	권주성 사무관	20090324
금융위기극복 관련 추경 편성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현욱 사무관	20090324
「한국경제바로알리기」 미국 설명회 개최 결과	글로벌금융과	신재형 사무관	20090324
금융위·금감원 비상금융통합상황실 확대·개편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금감	하주식 사무관,도	20090323
한국금융 바로알리기 한국 경제·금융 주요현안 문답_한글 QA 홍콩		금융위원회	20090323
은행자본확충펀드 제3차 운영위원회 결과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사맹도제 팀장	20090320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산 초청 강연과 부산지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산업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김수호·손성은 사	20090318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생명보	제종욱 사무관,	200903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정책과	이한진 사무관	20090317
2009년 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구조개선과	정현직 사무관	20090317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자산운용과	서종군 사무관	2009031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등	금융구조개선과	남동우 사무관	20090316
금융위원회 영국 런던 현지 금융·경제 설명회 개최 결과	글로벌금융과	오화세 사무관	20090316
Fitch社의 국내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관련(보도참고자료)	금융위 은행과/금감원 일반은	유영준 서기관, (	20090313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금융위 금융정책과, 금융구조	이동훈·이한진·남	20090313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이종구 상임위원 영국 및 미국 출장	금융시장분석과, 글로벌금융	박진애·신재형·권	20090311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혁신행정과	김동희 사무관	20090311
㈜아이씨엠 등 2개사 및 대주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금융위 공정시장과/금감원 회	구의정 사무관, 권	20090311
한국금융 바로알리기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이종구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20090311
서민 고통분담에 금융위 공무원 동참	혁신행정과	김제동 사무관	20090310
事前 채무조정 제도(Pre-Workout) 시행	중소서민금융과	주홍민 사무관	20090310
한국금융 바로알리기 한국 경제·금융 주요현안 문답_한글 QA 미국		금융위원회	20090310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김연준 사무관, /	20090309
09.2월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금융위 산업금융과/금감원 기	김수호 사무관, 권	20090309
Wall Street Journal(Asia版)(3.6,金, 11면)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기고문 보도	정책홍보팀	윤병원 사무관	20090306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금융위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송현도 사무관, 권	20090305
금융위원장, 금융소외자 지원 현장 점검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 주홍민 사	20090304
(경기)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금감	서재홍 사무관, 권	20090304

생활공감 국민행복 금융위원장, 금융소외자 지원 현장 점검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304
부도율·회수율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자본시장과	전수한 사무관	20090227
「은행 자본확충 펀드」 신청 현황	은행과	유영준 서기관	20090227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기재부 국제금융국/금융위	서기관 유병희,사	20090226
「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은행과	유영준 서기관	20090225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홍명종 서기관,	20090225
㈜대전상호저축은행 등 2개사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융감독	구의청 사무관,	20090225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홍명종서기관, 부	20090225
생활공감 국민행복 신용회복기금 UCC(신용회복배 허들경기)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225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중소서민금융과	정선인 사무관	20090224
수출입 기업 환해지 지원을 위한 장내 통화선물 리모델링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과, 한국거래	이수영 금융위 사	20090224
제28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기획재정담당관실	전요섭사무관	20090223
생활공감 국민행복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223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기업재무	안창국서기관, 설	20090219
금융위원회, "금산분리 규제 개혁"관련 UCC 제작	정책홍보팀	윤병원 사무관	20090219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등	은행과	신상훈 사무관	20090218
「신용보증 확대방안」 후속조치	금융위 산업금융과, 기재부	김수호,권유이사	20090218
흥국생명보험(주)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금융위 보험과, 금감원 생명보	제종욱 사무관, (	20090218
(가칭)㈜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	금융위 금융정책과, 금감원	신장수 사무관, 금	20090218
에스신용정보(주)에 대한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금감	마 순 사무관, 조	20090218
은행 및 금융당국 합동 워크숍 논의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국	이동훈 사무관	20090216
은행 및 금융당국 합동워크샵 개최 계획	금융위 금융정책과/ 전국은행	이동훈 사무관	20090213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	금융위 산업금융과, 기재부	김수호, 권유이사	20090212
「투자권유」 관련 업무처리 해설지침 마련 안내	금융위 자본시장과, 자산운용	이수영사무관,서	200902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통일 등	자본시장과	변제호 사무관	20090212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임명	혁신행정과	이경하 주무관	20090212
권혁세 증선위원, 부산 금융중심지 토론회 기조연설	글로벌금융과	손성은 사무관	20090209
Moody's, 국내은행 장기외화부채 신용등급 변경의 의미	금융시장분석과	박진애 사무관	20090209
금융공공기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감사 실시	감사담당관실	박정원 사무관	20090205
09.1월 중기지원 실적	금융위산업금융과 금감원기	김수호, 권유이 /	20090205
2008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구조개선과	정현직 사무관	20090205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워크아웃 추진기업 애로 해소방안 강구	금감원기업재무개선지원단/	유재훈사무관, 권	20090204
한국금융 바로알리기 090204 한국 경제·금융 주요현안 문답_한...		금융위원회	20090204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 확대 시행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 신진창 사	20090202
자본시장 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	금융위자본시장과, 자산운용	변제호 사무관, 금	20090202
금융투자회사 재인가. 재등록 완료	금융위 자본시장과, 자산운용	변제호사무관, 권	20090202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유재훈 사무관,초	20090130
한맥선물(주) 및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자	변제호사무관,김	200901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등	은행과	신상훈 사무관	20090129
2008년 12월중 유가증권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	기업공시제도실	신용제 선임조사	20090129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 공시규정 제·개정	공정시장과	김성조사무관	20090128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	변제호 · 이수영	20090128
생활공감 국민행복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범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128
생활공감 국민행복 탤런트 유동근, 전인화씨 부부 소액서민금융재단 (휴면예금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128
생활공감 국민행복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 개시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128
생활공감 국민행복 "신용회복지원중"기록 삭제 추진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128
생활공감 국민행복 신용회복 지원 기록 삭제 관련 추가조치 시행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128
생활공감 국민행복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 교부행사 개최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128
생활공감 국민행복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128
생활공감 국민행복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콜센터 운영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128
생활공감 국민행복 신용회복기금 출범식 개최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128
생활공감 국민행복 시장상인들을 위한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 추진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128
생활공감 국민행복 신용회복기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채무재조정 신청·접수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128
생활공감 국민행복 금융위-서울시, 전통시장 소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프로그램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128
생활공감 국민행복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128
생활공감 국민행복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 확대 시행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20090128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 추진 계획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마 순 사무관	20090122
09년도 금융위원회 규제개혁계획 수립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	전태원 사무관	20090122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마 순 사무관, 김	20090121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자본	홍명종 사무관, 4	20090121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 추진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신상훈 사무관	20090121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 결과	글로벌금융과	김건영 사무관, 4	20090121
권혁세 증선위원, 자본시장통합법 국제세미나 축사	자본시장과	변제호 사무관	20090120
건설사 및 중소조선사 구조조정의 영향 및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기업재무개선지	유재훈 사무관, 김	20090120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및 시행 관련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정선인 사무관	20090120
설 대비, 「현스톱 현장 중기 금융지원반」 운영	산업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090119
中小협력업체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 협약식 개최	산업금융과, 지식경제부 기업	권유이 사무관, 고	20090119
금융위원회 청사 이전	혁신행정과	김제동 사무관	20090116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	20090115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동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이귀웅 사무관	20090115
매경 증권인상 축사	자본시장과	전수한사무관	20090114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의	금융위 자본시장과 / 금감원	변제호 사무관, 5	20090114
외화환산 등 관련 회계기준 확정	금융위 공정시장과 / 금감원	구의청 사무관, 5	20090114
「이슬람금융 세미나」 대통령 축사(금융위원장 대독)	글로벌금융과	신재형 사무관	20090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	변제호 · 이수영	20090113
금융위, 금감원 공동 「IFSB 이슬람금융 세미나」 개최	글로벌금융과, 금융감독원 국	신재형 사무관, 5	20090112
제28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기획재정담당관	전요섭사무관	20090112
국내은행, 기업 설자금으로 9조 1천억원 지원예정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금융감	박재훈 사무관, 5	20090109
08년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09년 지원계획	산업금융과, 금융감독원 기업	김수호, 권유이 사	20090108
2008년 1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구조개선과	정현직 사무관	20090107

09년 금융권 인턴사원 채용 계획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보험고	권주성 사무관, 윤	20090105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신년사	자문관실	이후록 선임조사	20090105
2009년 증권선물시장 개장식 치사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전수한 사무관	20090102
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지연에 따른 당부사항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정선인 사무관	20081231
금융 공공기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	금융정책과, 산업은행, 기업은	금융위원회 송병	20081230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금융 감독 대상」 시상식 축사	중소서민금융과	정선인 사무관	20081230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연책제도 운영 방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제1	송병관 사무관, 김	20081230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 자산운용과 / 공	변제호 · 김연준,	20081226
(전북)전북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중소서민금융과, 금융감독원	서재홍 사무관, 남	20081226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등 개정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	구의청 사무관, 부	20081226
「실물금융종합지원단」 (가칭) 구성을 위한 지경부 · 금융위간 협의	금융시장분석과, 지식경제부	안창국 서기관, 조	20081224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 금감원	홍명종 사무관, 조	20081224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금융위 공정시장과 / 금감원	홍명종사무관, 이	20081224
부실 외부평가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및 감독강화	금융위 공정시장과 / 금감원	홍명종 사무관, 조	20081224
신종자본증권 BIS기본자본 인정한도 확대	은행과,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권주성 사무관, 윤	20081223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 자본시장과 / 금감원	이수영 사무관, 김	20081222
'0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서민금융과	정선인 사무관	2008122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은행과	신상훈 사무관	2008122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중소서민금융과	정선인 사무관	2008122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중소서민금융과	서재홍 사무관	20081222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실 / 금	구의청 사무관, 부	20081222
제8차 한·일 금융당국 고위급 연례회담, 서울에서 개최	글로벌금융과	신재형 사무관	20081219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금융정책과	이형주 서기관	20081218
신용회복기금 채무재조정·환승론 본격 시행 및 '금융소외자 종합자활 지원 네트	중소서민금융과	신진창 서기관	20081218
추가 출자·재원 확보 현황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현욱 사무관	20081215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 영업 일부정지 조치 연장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 금감원	박재훈 사무관, 이	20081212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 인정	금융위 은행과 / 금감원 건전	박재훈 사무관, 장	20081212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긴급조치 연장	금융위 자본시장과 / 금감원	변제호 사무관, 장	20081212
'08년 2차 P-CBO 2,500억원 발행	산업금융과	권유이 사무관	20081210
외부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공정시장과 / 회계제도실	김선문 사무관, 부	20081210
㈜파로스이앤아이 등 3개사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 회계서비스1국	강호산 사무관, 조	20081210
금융위-서울시, 전통시장 소상인을 위한 소액대출 프로그램 본격 시행	중소서민금융과 / 경쟁력강화	금융위 서기관 손	20081209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과	이종인 사무관	20081209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081209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금융위/금감원 기업재무개선	유재훈 사무관, 조	20081209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혁신행정과	나형호 사무관	2008120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은행과	변혜중 사무관	20081205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UBS Korea Conference 오찬 기조 연설	자문관실	이후록 선임	20081204
08.11월 중기지원 실적 및 추가지원 방안	산업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081204
2008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구조개선과	정현직 사무관(2	20081203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해외 금융전문인력 채용·취업 지원 개시	글로벌금융과	김건영 사무관	20081203
저축은행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중소서민금융과	서재홍 사무관	20081203
미국투자자 코스피200선물 투자 가능	자본시장과	이수영사무관	20081201
2008. 12. 1. 헤럴드보험대상 축사	보험과	주홍민 사무관	20081201
「제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기획행정실	한윤구 사무관	20081128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액보험 지원금 교부 및 보험증권 전달식 축사	보험과	유재훈 사무관	20081127
기업재무개선 지원단 설립	혁신행정과	나형호 사무관	200811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서민금융과	박주영 사무관	20081125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정책과	신장수 사무관	20081125
세계경제연구원 국제 컨퍼런스 오찬 연설자료(국문)	자문관실	자문관실	20081125
한국은행의 「유동성지원」 관련 결정에 대한 입장	금융정책과	이형주 서기관	200811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차관회의 통과	산업금융과	김진홍 사무관	20081124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 개정	공정시장과	홍명종 사무관	20081121
하나대투증권(주)과 하나IB증권(주)의 합병 인가	자본시장과	변제호 사무관	20081121
도이치증권(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자본시장과	변제호 사무관	20081121
금융위, 런던·뉴욕 국가 IR (Korea Investors	글로벌금융과	신재형사무관	20081119
김용환 금융위원 「채권시장 정책 심포지엄」 축사	자본시장과	김연준 사무관	20081119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홍명종 사무관	20081119
권혁세 증선위원 「아시아 채권 시장 전망」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	자본시장과	변제호 사무관	20081118
한국시장 홍보를 위한 민·관합동 '글로벌 IR' 개최	글로벌금융과	신재형 사무관	20081117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밀집지역 은행 현장 방문	산업금융과	김수호, 권유이 /	20081117
업무현안 및 2009년도 예산안 보고	기획재정 담당관실	전요섭 사무관	20081114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외화유동성 공급 방안	은행과	이해선 과장	20081113
위원장님 기자간담회 말씀자료	금융정책과	이형주 서기관	2008111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2008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축사	글로벌금융과	김건영 사무관	20081112
신성건설 관련 대응방안(보도 참고자료)	금융정책과	송현도	20081112
11.12(水) 증권 · 자산운용 CEO 조찬 간담회 결과	자본시장과	박민우	20081112
Financial Times(11.11,火, 04면) 전광우 금융위원장 인터뷰 기사 보도	정책홍보팀	윤병원 사무관	20081111
「중기 유동성 지원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산업금융과	김수호, 권유이 /	20081110
신용회복기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채무재조정 신청·접수 개시	중소서민금융과	신진창 서기관	20081110
자본시장 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변제호 사무관	20081110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취득 승인	중소서민금융과	서재홍 사무관	20081107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개정 공개초안 발표	자본시장정책관실	김선문 사무관	20081106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중소서민금융과	정선인 사무관	20081106
2008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구조개선과	고철수 사무관	2008110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구조개선과	하주식 사무관	20081105
2008.11.5 연합뉴스 '내달부터 금융소외자 빚부담 덜어준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신용지원기획실	공가현 팀장	20081105
㈜포이보스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강호산 사무관	20081105
오바마 후보 당선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081105
11.5(水) 주요 은행장 조찬 간담회 결과 보도참고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081105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과	유재훈 사무관	20081104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기획행정실	윤성호 사무관	20081104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심사 실시	기획행정실	이귀웅 사무관	20081103
10조원 규모의 수정예산안 편성 -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	예산실 예산총괄과	박창환 서기관	20081103
제21차 한미재계회의 위원장님 기조연설	자문관실	금융위원회	20081031
24개 KIKO 등 거래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개시	산업금융과	성기철 서기관	20081030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아태지역위원회(APRC)회의결과	IOSCO APRC 운영지원반	최유삼 서기관	20081030
금융권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은행과	박재훈 사무관	20081029
전광우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회의 주	IOSCO APRC 운영지원반	최유삼 서기관	20081029
증권시장 악성루머에 대한 단속 강화	공정시장과	홍영종·김성조사	20081029
제45회 「저축의 날」 행사	은행과	변혜중 사무관	20081028
외신기자 간담회	정책홍보팀	윤병원 사무관	2008102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중소서민금융과	서재홍 사무관	20081024
국회 정무위 현안보고자료	기획재정담당관실	전요섭 사무관	20081024
파생상품 평가 관련 회계처리 개선	자본시장정책관실	강호산 사무관	20081022
한국 투자시장 홍보 및 한·중 협력 관계 강화	글로벌금융과	신재형사무관	20081022
네스테크㈜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강호산 사무관	20081022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홍영종 사무관	20081022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공정시장과	홍영종 사무관	2008102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은행과	이재홍·신상훈 사	20081021
'신용카드업 제도개선 방안'공청회 개최	중소서민금융과	이석란 사무관	200810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추진	금융정책과	송현도 사무관	20081021
국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	금융정책과	금융위원회	20081019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추진	자산운용과	서종군 사무관	20081019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기획재정과	전요섭 사무관	20081016
KIKO 등 파생상품 손실 거래소 상장기업 지원 방안	자본시장과	박해정 사무관	20081015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관련 후속조치(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 지침	산업금융과	성기철서기관	20081014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자료	금융정책과	이한진 · 신장수	2008101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제금융중심지 서울세미나」 개회식 축사	글로벌금융과	김건영 사무관	20081013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 임명	혁신행정과	나형호 사무관	20081010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	중소서민금융과	박주영 사무관	200810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과	변혜중 사무관	2008100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중소서민금융과	정선인 사무관	20081008
애널리스트 간담회 주요 현안 설명자료	금융정책과	송현도	20081007
금융투자회사 재인가·재등록 신청 결과	자본시장과	변제호, 김세정	20081007
서울경제(08.10.2 인터넷판), 「연기금·PEF가 은행 M&A 주도할 듯」 제하의 기	금융정책과	신장수 사무관	20081006
은행장 간담회 말씀자료 송부	금융정책과	이형주 서기관	20081006
[금융위]은행장 간담회 개최 결과	금융정책과	이형주	20081006
2008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금융정책과	이형주 서기관	20081006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관련 당정협의 개최	산업금융과	권유이사무관	20081001

2008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구조개선과	고철수 사무관	20081001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	자본시장과	정규윤 서기관	20080930
공매도 및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김연준 사무관	20080930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방안」 추진	자산운용과	서종군 사무관	20080929
(가칭)㈜KB금융지주회사 및 (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 설립 인가 등	금융정책과	신장수 사무관	20080926
(가칭)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	보험과	윤상기 사무관	20080926
이트레이드증권(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자본시장과	변제호 사무관	20080926
상호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	중소서민금융과	서재홍 사무관	20080926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자본시장과	김연준 사무관	20080924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홍영종 사무관	20080924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강연	은행과	유영준 서기관	20080922
금융공기업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2차)	기획재정담당관실	신종순 사무관	20080922
HSBC, 론스타와의 계약 파기 관련	은행과	신상훈 사무관	20080919
한국 증시 FTSE 선진국 시장 편입	자본시장과	이수영 사무관	20080918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 및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금	박재훈 사무관	20080916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금감원 합동 대책팀 구성·운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	이형주 서기관	20080916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	금융정책과	이형주 서기관	2008091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시 규정 등 규정개정 승인	자본시장과	박해정사무관	20080912
CJ투자증권(주) 및 CJ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자본시장과	변제호 사무관	20080912
금융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자료 송부	자문관실	자문관	20080911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개소 및 은행별 금융애로 상담반 가동	금융서비스국	박현철 서기관	20080911
메디에스앤피㈜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강호산 사무관	20080910
한국개발펀드법안 입법예고	산업금융과	권유이 사무관	2008090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산업금융과	이기헌 사무관	2008090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	산업금융과	김수호 사무관	2008090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진홍 사무관	산업금융과	20080909
금융중심지지원센터(Fn Hub Korea) 개소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국	김건영 사무관,조	20080909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 자료 제출	은행과	신상훈 사무관	20080909
정기국회 업무보고자료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영직서기관	20080908
시장상인들을 위한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 추진	중소서민금융과	유영준 서기관	20080905
2008년 7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구조개선과	고철수 사무관	20080904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공정시장과	강호산사무관	20080904
美 CME 그룹과의 연계를 통한 선물시장 글로벌화 추진	자본시장과	이수영 사무관	20080904
신용회복기금 출범식 개최	중소서민금융과	유영준 서기관	20080902
「2008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금융구조개선과	이태훈 서기관	2008090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공정시장과	강호산사무관	20080901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140회 경총포럼」 강연	금융정책과	강영수 사무관	20080828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서민금융과	이석란 사무관	20080826
중국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한국자본시장 IR 개최	자본시장과, 한국증권업협회	이수영 사무관,	20080826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재계산 결과	금융구조개선과	이태훈 서기관	20080826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중소서민금융과	정선인 사무관	2008082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경제 참보험인 대상 축사	보험과	유재훈 사무관	20080826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노력과 향후과제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영직	20080825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임명 제청 및 신용보증기금 전무 임명	혁신행정과	나형호 사무관	20080822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주요 추진과제	공정시장과	홍명종·김성조사	20080821
상호저축은행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소서민금융과	서재홍 사무관	20080820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홍명종사무관 박	20080820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자본시장과	박해정사무관	200808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	김기한 · 변제호	20080818
금융공기업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보도자료	기획재정담당관실	신종순 사무관	20080814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금융정책과	송병관 사무관	20080813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개정	은행과	권주성 사무관	20080813
HSBC,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 관련 보완자료 제출	은행과	신상훈	20080812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임명	혁신행정과	나형호 사무관	20080807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자본시장과	정규윤	20080806
2008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구조개선과	고철수 사무관	20080804
KIKO 거래현황 및 대책	자본시장과	이수영 사무관	20080801
금융위의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안에	보험과	이종민 사무관	20080731
공기업 특위 업무보고 관련 자료	기획재정담당관실	전요섭	2008072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입법예고	공정시장과	강호산	20080728
(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 설립 예비인가	금융위 정책홍보팀	신장수	20080725
자산운용업 및 신탁업 인허가	자산운용과	김세정	20080725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김기한	20080725
증권업 및 선물업 겸영허가안 의결	자본시장과	이수영	20080725
비엔지증권중개(주)의 대주주 승인	자본시장과	김기한	20080725
하나대투증권(주)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	자본시장과	이수영	20080725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보험업 허가	보험과	윤상기	20080725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유영준 서기관	20080724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은행	금융정책과 이형	20080724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콜센터 운영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유영준 서기관	200807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중소서민금융과	박주영 사무관	20080723
아이에키㈜ 등 2개사 및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강호산 사무관	2008072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하신욱 사무관	2008072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금융안	박재훈 사무관	20080718
은행장간담회 개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박현철 서기관	200807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회의 의결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	변제호사무관	20080717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참석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김연준 사무관	20080715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산업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워크	금융정책과, 금융시장분석과	송현도 사무관	20080715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구조개선과	고철수 사무관	20080714
금융위 제1차 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자본시장정책관실	김경률 주무관	20080711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등	혁신행정과	나형호 사무관	20080711
동부화재의 동부증권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윤상기 사무관	20080711
메리츠자산운용(주) 등 3개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금융서비스국 자산운용과	김세정 사무관	20080711
2008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구조개선과	고철수 사무관	20080702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예고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윤성호 사무관	20080702
2007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발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이귀웅 사무관	20080701
금융민원센터 개소 및 온라인 원스톱 민원시스템 개통	금융서비스국	금융서비스국	20080701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10차) -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사항	금융정책과, 보험과, 중소서[	강영수 사무관	20080630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 교부행사 개최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유영준 서기관	20080630
제1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손성은 사무관	20080630
기업은행 감사 임명	혁신행정과	나형호 사무관	20080627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공정시장과	하신욱 사무관	20080627
(주)한화건설 등 5개사의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제종욱, 이종민 /	20080627
㈜KB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신장수 사무관	20080627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	금융정책과	이형주 서기관	2008062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은행과	변혜종 사무관	2008062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Korean Economic Forum 기조 연설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박현철 서기관	20080626
「금융투자업규정」 제정 예고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김기한 사무관	20080625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이갑주 팀장	20080625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공정시장과	하신욱 사무관	20080625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 폐지 등을 위한 「은행업 부수업무지침」 개정	은행과	이재홍·신상훈 사	20080625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9차) 및 추가 금융규제 개선사항 - 자본시장 규제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 공[	강영수 사무관	20080625
금융투자회사 재인가·재등록 처리 방안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자	김기한, 김세정 /	20080624
외환카드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 판결 관련	대변인실	변영한 팀장	20080624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8차) -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사항(1)	금융정책과, 자산운용과	강영수 사무관	2008062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2008 ICGN 서울 연차총회 만찬사 연설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이수영 사무관	20080620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정책홍보팀	김태훈 사무관	20080620
「IAIS 정례회의 및 글로벌 세미나」 결과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윤상기 사무관	20080620
금융위원회, 캄보디아 재경부와 정보공유 및 고위급회담에 관한 MOU 체결	글로벌금융과	장인선 사무관	20080619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개최	자본시장정책관실 자본시장	정규윤 서기관	20080618
제18차 조선경제포럼 위원장님 강연	정책홍보팀	김태훈 사무관	20080618
대부업자 등록 갱신 관련 안내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정선인 사무관	20080617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7차 보도자료-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사항1)	금융정책과, 은행과, 보험과	강영수 사무관	20080617
전광우 금융위원장 IAIS Triannual Meeting 환영 만찬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윤상기 사무관	20080617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에 대한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윤상기 사무관	20080616
흥국생명보험(주)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제종욱 사무관	20080616
엠플러스자산운용㈜ 등 4개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금융서비스국 자산운용과	김세정 사무관	20080616
(서울)HK상호저축은행의 (부산)동광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서재홍 사무관	20080616
전광우 금융위원장 한·중 양국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투자를 확대키로 중국 금융	글로벌금융과	오화세 사무관	20080613
국내 금융회사 중국진출 지원방안	글로벌금융과	오화세 사무관	20080613

영진약품공업㈜ 등 11개사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강호산 사무관	20080612
중국 은행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투자 가능토록 협의 추진 계획	자본시장과	이수영 사무관	20080612
전광우 금융위원장,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방문하여 한·중 양국 우량기업의 상대	글로벌금융과	오회세 사무관	20080612
은행권 휴면예금 출연금 확정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유영준 서기관	20080612
신용회복 지원 기록·삭제 관련 추가조치 시행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박주영 사무관	20080612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간담회 발표자료	은행과	박재훈 사무관	20080612
「IAIS 정례회의 및 글로벌 세미나」 개최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윤상기 사무관	20080612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ICSA(세계증권업협회 협의회) 국제세미나 기조연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박해정 사무관	20080611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발표	산업금융과	권유이 사무관	20080611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IPS (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	금융서비스국 자산운용과	홍성기 사무관	20080611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6차 보도자료-공시, 신용정보 관련 규제 등)	금융정책과,보험과,중소서민	강영수 사무관	20080611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4회 정기총회 축사	금융서비스국 공정시장과	강호산 사무관	20080610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ICSA(국제증권업협회 협의회) 제21차 연차총회 기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박해정 사무관	20080609
은행의 자회사 대출상품 판매 대행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신상훈 사무관	20080609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4차) - 서민금융(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관	금융정책과, 중소서민금융과	강영수 사무관	20080605
단위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 추진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박주영 사무관	20080605
여전업 발전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면개정 검토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정선인 사무관	20080605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5차) -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	금융정책과, 중소서민금융과	강영수 사무관	20080605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34차 한국언론재단 포럼」 강연	금융정책과	강영수 사무관	20080605
제5회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사금융 실태조사)	중소서민금융과	이석란 사무관	20080604
'회계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공청회 개최	공정시장과	강호산 사무관	200806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	변제호 사무관	20080604
2008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구조개선과	고철수 사무관	20080603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3차) -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 관련	금융정책과, 은행과, 보험과	강영수 사무관	20080602
전광우 금융위원장 Chatham House 강연 및 유럽계 IB초청 런던라운드테이블	글로벌금융과	빈현준 사무관	20080602
산업은행 수장, 26년여 만에 민간 전문가 임명으로 성공적인 산은 민영화 ("공공	혁신행정과	나형호 사무관	20080602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방안	산업금융과	김진홍·이동엽·권	20080602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장 수여식 개최	혁신행정과	나형호 사무관	20080602
"신용회복지원중"기록 삭제 추진	중소서민금융과	박주영 사무관	2008060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행실태 점검 결과	중소서민금융과	정선인 사무관	20080530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서울 개최 결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김현수 사무관	20080530
교차모집 시행 준비현황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	20080530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 개시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유영준 서기관	20080529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TV 주최"헤지펀드 컨퍼런스"기조연설	금융서비스국 자산운용과	홍성기 사무관	20080529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제16차 에그몽 총회 만찬 환영사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이귀웅 사무관	20080529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2차) 보도자료	금융정책과,은행과,보험과,자	강영수 사무관	20080529
전광우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의장 선	글로벌금융과	빈현준 사무관	20080527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구조개선과	조문희 사무관	20080527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혁신행정과	나형호 사무관	20080526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개막, 국무총리 개막연설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이귀웅 사무관	20080526

KITA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	정책홍보팀	정책홍보팀	20080523
밸류에프원유한회사의 (서울)영풍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서재홍 사무관	20080523
대한생명보험㈜ 및 흥국생명보험㈜의 신탁업 겸영 인가	금융서비스국 자산운용과	김세정 사무관	2008052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산 초청 강연 말씀자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글로	이형주 서기관	20080523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1) - ① 업무영역 관련 규제개선 사항	금융정책과, 은행과, 보험과,	강영수 사무관	20080523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1) - ② 진입관련 규제개선 사항	금융정책과, 은행과, 보험과,	강영수 사무관	2008052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WSBI(세계저축은행협회) 제14회 아·태지역총회 개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서재홍 사무관	20080522
신용카드 가맹점의 고객정보 보안관리 강화 지도 및 향후 추진 계획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정선인 사무관	2008052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머니투데이 주최"대한민국 IB 대상"축사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변제호 사무관	20080521
2008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선정 등	금융서비스국 공정시장과	김경률 주무관	20080521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공정시장과	황동욱 팀장	20080521
공시·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T/F 구성 및 향후 추진계획	공정시장과	홍명종·김성조·ㅎ	20080520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서울 개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김현수 사무관	20080519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안전성 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정책과 의사운영정보팀	송현도 사무관	20080519
금융위원회 「스승의 날」 맞이 장애인 학교 방문	기획조정관실 의사운영정보	김동현 주무관	20080515
증권업 예비허가 심사 결과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이수영 사무관	20080509
새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방향	정책홍보팀	김수호 사무관	20080509
금융위 소관 산하기관 재신임 심사 결과	혁신행정과	나형호 사무관	20080507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대폭 인하 추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증권선	최병철 팀장	20080506
2008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구조개선과	고철수 사무관	2008050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과	이종민 사무관	20080501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손성은 사무관	20080430
지역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추진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이수영 금융위 ㅅ	20080429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말씀자료	정책홍보팀/자문관실	김수호 사무관	20080429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기대효과	중소서민금융과	이석란 사무관	20080428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	금융정책과	강영수 사무관	20080425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미 성과 관련 기자간담회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빈현준 사무관	20080424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경련 강연 말씀자료	자문관실	이후록	20080424
제1차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 개최	금융정책과	강영수 사무관	20080424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 모두말씀	금융정책과	강영수 사무관	20080423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파이낸셜뉴스 주최"제9회 서울국제금융포럼"축사	글로벌금융과	손성은 사무관	20080417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 T/F 구성 및 추진방안	공정시장과	강호산 사무관	20080417
[금융위 의결안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처리안 의결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금	이수영 사무관	20080411
08.1/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절반이상이 금융분야	자본시장과	정규윤 서기관	2008041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서민금융과	박주영 사무관	20080410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	강호산 사무관	2008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	변제호 사무관	20080407
금융위원장과 중소서민 금융회사 대표 상견례	중소서민금융과	서재홍 사무관	20080404
매일경제 제1면 「산은지분 5% 외국계에 먼저 매각」 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김진홍 사무관	20080403
금융산업에 거는 세정부의 기대와 우리의 다짐	감사담당관실	나성대 사무관	2008040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70차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	금융정책과	강영수 사무관	2008040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회사 CEO와 상견례 개최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최유삼 서기관	20080402
2008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금융구조개선과	고철수 사무관	20080402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금융정책과	이형주 서기관	20080331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김연준 사무관	20080331
[금융위 의결안건] 증권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이수영 사무관	20080328
[금융위 의결안건]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김연준 사무관	20080328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계 CEO와 상견례 개최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과	정규윤 서기관	20080327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범	중소서민금융과	유영준 서기관	20080327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매일경제 주최 "국제 금융 컨퍼런스" 강연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이한진 사무관	20080326
탤런트 유동근, 전인화씨 부부 소액서민금융재단 홍보대사로 위촉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	유영준 서기관	2008032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장과의 상견례 개최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박현철 서기관	20080325
금융위원회 워크숍 개최결과	혁신행정과	김선문 사무관	20080324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중소서민금융과	서재홍 사무관	20080324
금융위원회 워크숍 개최	혁신행정과	김선문 사무관	20080321
[참고자료]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자료	금융정책과	강영수	20080320
위원장 기자 간담회 개최	금융정책과	이형주 서기관	20080320
베어스턴스 관련 국내 금융회사 익스포져 평가 및 대응	금융위원회 시장분석과, 금융	안창국 서기관	20080318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대부이자 부담 완화 및 대형 대부업체 금감원 직권검사 근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이석란 사무관	20080318
금융위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금융정책과	신장수 사무관	200803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윤상기 사무관	200803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변혜중 사무관	20080311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서종군 사무관	20080306
보험상품 심사제도 개선 추진	정책홍보팀	정책홍보팀	20080305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28일)	보험제도과	이종민	20080228
무허가 증권업 영위 등 불법금융행위 업체 42개사 적발	총괄조정국	사이버감시단	20080225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등 제재조치	은행검사1국	검사기획팀	20080222
루보 등 주식 시세조종 거점으로 이용된 증권사 점포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	증권검사1국	증권검사1국	20080222
롯데그룹의 대한화재해상보험㈜ 대주주 승인	보험감독과/보험감독국	보험감독과/보험	20080222
(영국)스탠다드차타드 엔이에이 리미티드의 (경기)에이블상호저축은행 주식취	비은행감독과/비은행감독국	비은행감독과/비	20080222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비은행감독과/비은행감독국	비은행감독과/비	20080222
개인신용등급 관리 관련 유의할 점	감독정책과/은행감독과	감독정책과/은행	20080221
㈜캐드콤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회계감독2국	심사감리2팀	20080221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제도 개선	비은행감독과/비은행감독국	비은행감독과/비	20080220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보험감독과/보험계리실	보험감독과/보험	20080219
2007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실적 분석	공시감독국	자산유동화업무	20080219
2007년도 공개매수 · 위임장권유 현황분석	공시감독국	지분공시팀	20080218
김용덕 금감위원장,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면담	증권감독과/증권감독국	증권감독과/증권	20080218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용자 편의제고	공시심사실	공시심사실	20080218
증권회사의 2007회계년도 3/4분기 영업실적(잠정)	증권감독국	경영지도팀	20080215

자산운용회사의 2007회계년도 3/4분기 영업실적(잠정)	자산운용감독국	경영지도팀	20080214
2008년 기업공시심사 중점추진방향	공시심사실	공시심사실	20080214
펀드상품의 약관심사업무 개선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20080213
'07년 중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실적	신용감독국	신용지도팀	20080212
07년중 중소기업대출 동향 및 08년도 감독방향	신용감독국	신용기획팀	20080212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을 가장한 인터넷 대출사기 등 주의	비은행검사1국	검사기획팀	20080211
국내은행의'07년중 영업실적(잠정)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	20080211
07년 12월말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잠정)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	20080211
하나은행 및 농협중앙회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협의 실시	국제업무국	국제감독팀	20080205
2007년도 감사인지정 결과	회계제도실	기업회계1팀	20080205
증권회사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	증권감독과/증권감독국	증권감독과/증권	20080204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상담사 조회시스템 구축·운영	여전감독실/여신금융협회	여전감독2팀/여(	20080204
2008년도 보험관련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보험감독국	조직영업감독팀	20080201
2008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출원자 6,234명	회계제도실	회계제도실	20080201
세계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동향 및 시사점	보험감독과	보험감독과	2008020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투자자문회사 등록메뉴얼 게재	자산운용감독국	경영지도팀	20080130
증시「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시장감독과	시장감독과	20080130
[보도자료]2007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운용현황		의사총괄과	20080130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와 관련한 계약자의 권리	보험계리실	생명보험팀/손해	20080129
5%보고 등의 매매증빙자료 전산파일 첨부 허용	공시감독국	지분공시팀	20080129
금융회사에 대한「검사 사전예고제」확대 시행	총괄조정국	검사총괄팀	20080129
증권·자산운용업 관련「인허가 브리핑제」시행	증권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	증권총괄팀/경영	20080128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100일간의 추진실적 및 08년 1/4분기중 추진계획	기획조정국	기획혁신팀	20080128
2007년「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운영실적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20080124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애견보험 판매 활성화 기대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	20080123
금융회사 아웃소싱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총괄조정국	감독총괄팀	20080123
소형 금융회사를 위한 '알기 쉬운 법규 핸드북' 제공	총괄조정국	총괄조정팀	20080123
손해보험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비한 정책성보험 개발·판매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	20080122
'07년 3/4분기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 현황	복합금융감독과/복합금융감	복합금융감독과/	20080121
HSBC Insurance (Asia-Pacific) Holdings Limited의 하나생명보험㈜ 지배주주 순	보험감독과/보험감독국	보험감독과/보험	20080121
외부이용자를 위한「금감원 전자도서관」구축 추진	조사연구실	연구지원팀	20080121
07년중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	감독정책1국	감독정책과	20080118
무등록 투자자문회사 등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영위 업체 112개사 적발	총괄조정국	사이버금융감시	20080116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감독기준 개선 계획	비은행감독과/여전감독실	비은행감독과/여	20080116
금융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제한 관련 7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증권제도과	변제호	20080115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자문단'구성 및 운영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T/f	20080114
2007년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조사1국	조사총괄팀	20080114
외국기업에 대한 국제공시기준(IDS) 도입 추진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20080111
횡령관련 법인에 대한 공시 및 제재 강화 추진	공시심사실	공시조사팀	20080111
2008년부터 달라지는 발행·공시제도	공시감독국	기업공시총괄팀	20080109

증권업계에 「CMA서비스 모범규준」 마련 권고	증권감독국	증권업무팀	20080109
채권형펀드 현황과 발전방향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20080109
2008년도 전국 교사 금융연수 실시	홍보관리관실/소비자보호센	정책홍보팀/소비	20080109
2008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확정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	20080108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중소서민금융과	중소서민금융과	20080107
07년 3/4분기 전자금융 취급실적	복합금융감독실	IT감독팀	20080104
2007년 1~9월중 국내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복합금융감독실	지주회사팀	20080104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신년사	금융정책과	강영수 사무관	20080104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Basel II 시행	신BIS1팀	신BIS실	20080102
금감원, 신한은행에 소비자보호 우수마크 부여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보호기획	20080102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6. 연구용역 관련(2008. 1월~현재)
1)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 운용 현황

□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용역건수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집행액 (%)	이·전용액 (%)	불용액 (%)	이월액 (%)
2008	12	630	-	358(56.8)	-	272(43.2)	-
2009	17	500	△20.7	499(99.9)	-	1(0.2)	-
2010	20	600	20.0	574(95.6)	-	26(4.3)	-
2011	18	650	8.3	502(77.2)	-	83(12.8)	65(10)
2012	22	640	△1.5	470(73.4)*	-	-	-

* 2012. 9월말 현재 계약 체결 기준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7. 인사 관리 관련(2008.1 ~ 현재)
1) 현 기관장 이력서 사본
2) 연도별 정원 대비 현원
3)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운용 조정 계획
4) 자격증 소지자 성명, 자격사항, 現 보직 부서명
5)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6) 소속 직원 등의 범죄기록
7) 비정규직 고용관련
8) 정규직 신규 인력 채용 및 임금 관련
9) 장애인 고용 관련

행정인사과 1) ~ 5)

1) 현 기관장 이력서 사본

○ 별도제출

2) 연도별 정원 대비 현원

연 도	정원 (단위: 명)	현원 (단위: 명)	초과 인원	비고
2008년 말	205	210	5	조직개편('08.3) 시의 초과현원
2009년 말	226	220	△6	파견, 유학 및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2010년 말	231	230	△1	파견, 유학 및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2011년 말	246	234	△12	직제개편('11.12.30일, 13명 증원)으로 인한 결원
2012년 7월말	246	241	△5	파견, 유학 및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3)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운용 조정 계획

○ 해당사항 없음

4) 자격증 소지자 성명, 자격사항, 現 보직 부서명

성명	자격증명	부서명
박○○	변호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	변호사	은행과
마○○	변호사	보험과
이○○	변호사	자본시장과
윤○○	변호사	공정시장과
차○○	변호사	기획행정실
남○○	변호사	기획행정실
홍○○	변호사	회수관리팀
이○○	공인회계사	행정인사과
최○○	공인회계사	금융정책과
구○○	공인회계사	공정시장과
국○○	공인회계사	공정시장과
제○○	보험계리사	보험과
권○○	보험계리사	보험과

5)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1)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징계일	피 징계자	징계종류	피징계 사실개요	징계시 직위·직급	현직위·직급
'09. 1.16	○○○	견책	음주운전	서기관	퇴직
'09. 2.27	○○○	감봉	금품수수	서기관	서기관
'09. 2.27	○○○	감봉	금품수수	서기관	서기관
'09. 2.27	○○○	견책	음주운전	행정 사무관	행정 사무관
'11. 12.16	○○○	파면	금품수수	일반직 고위공무원	퇴직

※ 피 징계자 전원 일반직공무원

※ 징계의 효력

종 류	신분상 효력	금전적 효력
파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퇴직급여의 50% 감액(5년 미만 재직자는 25%)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금전적비리 해임자 퇴직급여 25% 감액(5년 미만 재직자는 12.5%)
강등	-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18월+처분기간은 승진제한·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	- 18월+처분기간 승급제한 - 보수 2/3 감 - 각종 수당지급 제한
정직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18월+처분기간은 승진제한·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	- 18월+처분기간 승급제한 - 보수 2/3 감 - 각종 수당지급 제한
감봉	- 12월+처분기간은 승진제한·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	- 12월+처분기간 승급제한 - 보수 1/3 감 - 각종 수당지급 제한
견책	- 6월간 승진제한·승진소요최저연수 제외	- 6월간 승급제한 - 정근수당 미지급

(2) 연도별 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 의결 건수

연 도	징계요구 건수	의결 건수
2009	4	4
2011	1	1

감사담당관실

6) 소속 직원 등의 범죄기록

☐ 별도첨부

금융위원회 직원 범죄 현황

□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직원 등의 인원현황

연도	구분	확정	계류중
2008	4급이상	1	
	5급이하	1	
2009	4급이상	-	
	5급이하	1	
2010	4급이상	-	
	5급이하	-	
2011	4급이상	1	
	5급이하	-	
2012년 현재	4급이상	-	
	5급이하	-	

□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직원 등의 구체적 내역(개인별 구분)

성명	부서명 (직급/직책)	죄목 (선고일)	선고형량	사면 여부	재직 여부
남○○	서울시 파견 서기관	음주운전 (08.4.14)	벌금150만원	-	×
이★★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음주운전 (08.7.23)	벌금110만원	-	○
이●●	중소서민금융과 주무관	음주운전 (09.11.6)	벌금150만원	-	○
김◆◆	고위공무원 가급 금융정보분석원장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11.11.25)	(1심) 징역 1년6월 벌금 1천만원 (2심) 진행중	-	×

행정인사과 7) ~ 9)

7) 비정규직 고용관련

□ 연도별 공무원 대비 비공무원 인원 및 비율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말 기준)
공무원(명)	205	226	231	246	246
비공무원 (비율, %)	12 (5.7)	21 (9.3)	32 (13.9)	36 (14.6)	40 (16.3)
무기계약직	7	7	12	21	27
기간제	5	14	30	15	13

□ 부서별 비공무원 고용현황

본부	대변인실	기획조정관실	금융정책국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국	금융정보분석원	공적자금관리위	합계
12	1	7	4	6	3	5	3	40

□ 연도별 지급된 평균 임금, 임금산정 기준, 근거 규정

○ 월평균 급여 : 약 130만원 내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준용

□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2008년 (3~12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말 기준)
집행액	265,166	410,664	603,165	687,784	451,367

8) 정규직 신규 인력 채용 및 임금 관련

(1) 연도별 신규인력 채용 현황*

연도	학력	총원	성 별		지역별 현황											
			남	여	서울	인천	경기	소계	대구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소계	기타
2008	대학원															
	대학교	9	5	4	7			7						1	1	1
	계	9	5	4	7			7						1	1	1
2009	대학원	8	6	2	3			3								5
	대학교	13	8	5	11			11	1						1	1
	계	21	14	7	14			14	1						1	6
2010	대학원	2	2													2
	대학교	13	8	5	7	1	1	9		1	1	1	1		4	
	계	15	10	5	7	1	1	9		1	1	1	1		4	2
2011	대학원	2	2		1			1		1					1	
	대학교	8	6	2	7		1	8								
	계	10	8	2	8		1	9		1					1	
2012.8	대학원	2	1	1	1			1								1
	대학교	5	2	3	5			5								
	계	7	3	4	6			6								1
계	명	62	40	22	42	1	2	45	1	2	1	1	1	1	7	10
	%	100	64.5	35.5	67.7	1.6	3.3	72.6	1.6	3.3	1.6	1.6	1.6	1.6	11.3	16.1

* 공채(행정안전부 배정 및 임용) 및 계약직 채용 현황

(2) 연도별 신입 직원 초임 현황

○ 국가공무원 보수체계

구 분	보수체계(단위 : 천원)
정무직	고정급적 연봉제 (장관급 : 106,273, 차관급 : 103,209)
고위공무원단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기준급+직무급+성과급) (기준급 : 51,524~76,700, 직무급 : 4,800~10,800, 성과급* : 전년 업무실적 반영)
과장급	성과급적 연봉제 (3급 : 53,632~79,837, 4급 : 42,449~73,036)
4급 이하 (과장급 제외)	봉급(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4, 5, 8, 10의 봉급표) 수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성과급* : 전년 업무실적 반영 지급

9) 장애인 고용 관련

(1)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및 비율

연도	기준정원*	장애인 현황(비율)	의무고용비율
2008년	193	6명(3.1%)	3%
2009년	214	6명(2.8%)	3%
2010년	219	6명(2.7%)	3%
2011년	233	9명(3.9%)	3%
2012.7월말	233	8명(3.4%)	3%

* 총 정원에서 검찰사무직 및 경찰 제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8. 기관장, 이사, 감사 인사추천위원회 관련 (2008. 1 ~ 현재)

□ 해당사항 없음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9.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관련

☐ 별도제출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10. 직원 및 협력 기관 직원 해외파견 관련 (2008. 1 ~ 현재)

1) 연도별 국가별 직원 해외 파견 및 현지시설물 현황

○ 엑셀자료 참고

2) 연도별 파견 직원 및 현지 시설물 관련 각종 사건·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직원 해외 파견 및 관리 등 관련 내부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규정, 지침

○ 직무파견 및 국외훈련(교육)중인 자에 대한 금융위 자체 운용 규정은 없음

- 직무파견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과 공무원임용령(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운영
- 국외훈련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적용

4) 파견 직원 및 현지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한 대응 매뉴얼

○ 해당사항 없음

5) 유사시 대응 체계 구축 여부 및 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산하기관 직원의 해외파견 현황 또는 실태 등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김재경의원 요구자료(10-1. 연도별, 국가별 직원 해외파견 및 현지 시설물 현황)

파견기관명	파견인원	파견국가	파견목적	파견기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1명	미국	직무파견근무	12.02.10~13.02.09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명	미국	직무파견근무	12.05.01~13.04.30
파리1대학	1명	프랑스	교육훈련	07.12.27~10.06.26
시카고선물거래소	1명	미국	교육훈련	07.06.18~08.12.17
콜로라도 덴버대학	1명	미국	교육훈련	07.06.26~09.06.25
레딩대학	1명	영국	교육훈련	07.07.19~09.07.18
듀크대학	1명	미국	교육훈련	08.01.03~08.12.31
미국 보스톤대학	1명	미국	교육훈련	08.06.18~10.06.17
조지워싱턴대학	1명	미국	교육훈련	08.06.23~10.06.22
시카고 상업거래소	1명	미국	교육훈련	08.06.25~09.12.24
싱가폴 경영대학	1명	싱가포르	교육훈련	08.06.30~09.06.29
샌트 갈란대학	1명	스위스	교육훈련	08.07.03~10.05.03
연방예금보험공사	1명	미국	교육훈련	08.09.01~10.02.28
미시간 주립대	1명	미국	교육훈련	09.01.03~09.12.31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	1명	홍콩	교육훈련	09.03.18~10.09.17
칸사스대학	1명	미국	교육훈련	09.06.27~11.06.24
싱가폴 경영대학	1명	싱가포르	교육훈련	09.07.06~10.07.05
Univ. of Washington	1명	미국	교육훈련	09.07.13~11.07.12
Univ. of California, Santa Barbara	1명	미국	교육훈련	09.08.02~11.07.25
일본국립정책연구대학원	1명	일본	교육훈련	09.10.01~10.09.30
Ernst&Young China	1명	중국	교육훈련	09.11.17~10.11.16
메릴랜드 대학	1명	미국	교육훈련	10.01.03~10.12.31
Univ. of California, Irvine	1명	미국	교육훈련	10.01.03~10.12.31
Michigan State University	1명	미국	교육훈련	10.01.05~11.12.31
미국 보스톤대학	1명	미국	교육훈련	10.06.16~11.06.17
univ. of southern califonia	1명	미국	교육훈련	10.06.28~12.06.27
싱가폴 경영대학	1명	싱가포르	교육훈련	10.06.30~11.06.29
University of Texas	1명	미국	교육훈련	10.07.21~12.06.20
연방예금보험공사	1명	미국	교육훈련	10.07.22~12.01.21
상하이 로펌	1명	중국	교육훈련	10.09.29~현재
일본국립정책연구대학원	1명	일본	교육훈련	10.09.30 - 현재

맥쿼리금융그룹	1명	호주	교육훈련	10.12.13-12.06.12
미 워싱턴대학	1명	미국	교육훈련	11.01.05-현재
Price Waterhouse Coopers LLP	1명	네델란드	교육훈련	11.06.20-현재
싱가폴 경영대학	1명	싱가포르	교육훈련	11.06.22 -현재
말레이시아대학	1명	말레이시아	교육훈련	11.07.05-현재
Texas A&M Univ	1명	미국	교육훈련	11.07.17-현재
KPMG LLP	1명	캐나다	교육훈련	11.07.25-현재
Univ. of California, Irvine	1명	미국	교육훈련	11.08.17-현재
카타르대학	1명	카타르	교육훈련	11.09.09-현재
미국 보스톤대학	1명	미국	교육훈련	11.09.16 - 현재
일본국립정책연구대학원	1명	일본	교육훈련	11.09.26 - 현재
RMIT Univ.	1명	베트남	교육훈련	12.02.06-현재
QALAM WA LAWH	1명	모로코	교육훈련	12.04.02-현재
인디애나대학	1명	미국	교육훈련	12.06.06-현재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1명	싱가포르	교육훈련	12.06.24-현재
Univ of California LA	1명	미국	교육훈련	12.07.22-현재
브리스톨 대학	1명	영국	교육훈련	12.07.23-현재
세인트 루이스대학	1명	미국	교육훈련	12.07.25-현재
요크대학	1명	영국	교육훈련	12.07.29-현재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11-1. 연도별 벌금 부과 및 납부실적

□ 해당사항 없음

11-2. 연도별 과태료 부과 및 납부실적

□ 연도별 과태료 부과 및 납부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위반행위	대상 기관	부과건수 (금액)	수납건수 (금액)	미납건수 (금액)
2008	금융실명법 위반	법인	9(48)	9(48)	2(10)
		개인	98(246)	88(215)	309(1,186)
	보험업법 위반	법인	26(111)	14(67)	15(59)
	증권거래법 위반	법인	5(35)	3(20)	6(45)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위반	법인	5(27)	5(27)	-
	기타 금융법 위반	법인	6(86)	6(86)	-
		개인	1(2)	1(2)	-
소계			150(554)	126(465)	332(1,300)
2009	금융실명법 위반	법인	23(96)	23(96)	2(10)
		개인	650(838)	611(763)	288(1,055)
	외국환거래법 위반	법인	7(10)	7(10)	-
		개인	18(61)	18(61)	-
	보험업법 위반	법인	9(34)	6(24)	18(69)
	증권거래법 위반	법인	9(52)	5(28)	10(69)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위반	법인	6(1,056)	6(1,056)	-
	기타 금융법 위반	법인	7(92)	7(92)	-
소계			729(2,238)	683(2,130)	318(1,203)
2010	금융실명법 위반	법인	1(4)	1(4)	2(10)
		개인	105(110)	106(125)	216(791)
	외국환거래법 위반	법인	54(436)	54(436)	-
		개인	51(75)	50(71)	1(3)
	보험업법 위반	법인	12(63)	15(73)	14(55)
	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 위반	법인	11(184)	9(159)	11(84)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위반	법인	1(87)	1(87)	-
	기타 금융법 위반	법인	16(74)	14(72)	2(3)
소계			251(1,033)	250(1,027)	246(946)
2011	금융실명법 위반	법인	4(16)	4(16)	2(10)

		개인	182(242)	171(226)	136(496)
	외국환거래법 위반	법인	64(177)	54(127)	10(50)
		개인	68(101)	56(77)	13(28)
	보험업법 위반	법인	29(176)	30(182)	11(39)
		개인	1(3)	1(3)	-
	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 위반	법인	7(143)	6(96)	13(130)
	기타 금융법 위반	법인	13(148)	15(151)	-
		개인	62(108)	50(91)	12(18)
소계			430(1,113)	387(969)	197(769)
2012. 07	금융실명법 위반	법인	20(82)	20(82)	2(10)
		개인	528(786)	457(627)	201(638)
	외국환거래법 위반	법인	34(486)	44(536)	-
		개인	18(66)	29(75)	2(18)
	보험업법 위반	법인	20(167)	17(157)	14(49)
		개인	5(38)	5(38)	-
	자본시장법 위반	법인	11(414)	8(299)	15(208)
		개인	3(90)	3(90)	-
	기타 금융법 위반	법인	24(333)	23(329)	1(4)
		개인	26(30)	10(16)	21(20)
소계			689(2,492)	616(2,249)	256(947)

※ 부과건수 및 금액은 당해연도 기준임

※ 체납처분에 의한 징수금액의 경우, 수납금액과의 구분이 곤란하여 별도 표시하지 않음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11-3. 연도별 과징금 부과 및 납부실적

□ 연도별 과징금 부과 및 납부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위반행위	대상 기관	부과건수 (금액)	수납건수 (금액)	미납건수 (금액)
2008	증권거래법 위반	법인	48(8,554)	26(4,351)	65(12,624)
		개인	7(174)	1(11)	19(2,428)
	보험업법 위반	법인	1(6)	1(6)	-
	은행법 위반	법인	1(2992)	1(2,992)	-
소계			57(11,726)	29(7,360)	84(15,052)
2009	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 위반	법인	75(10,412)	43(4,106)	96(18,291)
		개인	12(282)	1(16)	30(2,694)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법인	5(384)	5(384)	-
	보험업법 위반	법인	1(22)	1(22)	-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법인	1(594)	1(594)	-
소계			94(11,694)	51(5,122)	126(20,985)
2010	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 위반	법인	75(7,859)	41(4,257)	137(21,893)
		개인	8(140)	5(90)	33(2,744)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법인	7(3,235)	6(2,936)	1(299)
	보험업법 위반	법인	3(2,311)	3(2,311)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법인	1(123)	1(123)	-
소계			94(13,668)	56(9,717)	171(24,937)
2011	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 위반	법인	55(10,120)	63(8,171)	138(23,633)
		개인	16(324)	12(130)	34(2,827)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법인	2(2,097)	3(2,266)	-
	보험업법 위반	법인	2(2,583)	2(2,583)	-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법인	1(3)	1(3)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법인	1(80)	1(80)	-
	은행법 위반	법인	1(99)	1(99)	-
소계			78(15,306)	83(13,332)	172(26,459)
2012. 07	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 위반	법인	29(8,588)	36(7,067)	137(25,153)
		개인	8(232)	3(50)	39(3,009)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법인	4(1,159)	3(706)	1(453)
	보험업법 위반	법인	10(1,170)	5(854)	5(316)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법인	1(100)	1(100)	-
소계			52(11,249)	48(8,777)	182(28,931)

※ 부과건수 및 금액은 당해연도 기준임

※ 체납처분에 의한 징수금액의 경우, 수납금액과의 구분이 곤란하여 별도 표시하지 않음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11-4.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 관련('08.1월~현재) 연도별 과태료, 과징금 관련 진정, 비위사항 청원 등 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내역

□ 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내역

민원기관(인)명	접수일자	민원내용	조치내역	완료일자	비고
이○호	'09.7.2.	사전통지 미접수	관할법원앞 통보	'09.7.2.	이의제기
신○정	'12.4.24.	사전통지 미접수	검토결과 회신	'12.5.3.	의견진술
박○순	'12.6.8.	사전통지 미접수	검토결과 회신	'12.6.8.	의견진술
이○해	'12.6.27.	납부자력 없음	검토결과 회신	'12.7.4.	의견진술
강○영	'12.8.6.	실명법 미위반	관할법원앞 통보	'12.8.8.	이의제기
설○수	'12.8.6.	실명법 미위반	관할법원앞 통보	'12.8.8.	이의제기
최○연	'12.8.9.	납부자력 없음	관할법원앞 통보	'12.8.9.	이의제기
김○자	'10.10.19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관할법원 통보	'10.10.19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12. 정보통신 보안 관련
 1) 정보통신 보안 담당 조직 및 인력 구성 현황
 2) 정보통신보안업무지침 또는 규정 제정 및 개정 현황
 3) 정보통신 보안감사 관련
  (1) 연도별 정보통신 보안감사 실시 현황
  (2) 연도별 국가정보원에 제출한 감사 결과 보고서
 4) 보안사고 관련
  (1) 연도별/사고유형별 보안사고 발생 현황
  (2) 연도별「보안업무규정」제62조 제①항에 의거 국가정보원 등 보안기관에 통보한 보안사고 내역
 5) 연도별 허가되지 아니한 자의 무단 침입시도 현황
 6) 연도별 정보통신 보안교육 시행 실적

1) 정보통신 보안 담당 조직 및 인력 구성 현황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2명(6급 1명, 7급1명)이 금융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

2) 정보통신보안업무지침 또는 규정 제정 및 개정 현황

기관명	제정		개정	
	제정일자	보안성 검토의뢰일자	개정일자	보안성 검토의뢰일자
금융위원회	2008.5.30	2008.4.14	2011.1.20	2010.12.1

* "금융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장 정보보안"에 관련 내용 규정

3) 정보통신 보안감사 관련

(1) 연도별 정보통신 보안감사 실시 현황

연도	정기감사		수시감사		
	감사기간	감사방법	감사기간	감사사유	감사방법
2008	7/14~7/15	현장실사			
	7/21~7/22	현장실사			
	9/1~9/2	현장실사			
	9/19	현장실사			
	9/25	현장실사			
	9/4~9/5	현장실사			
	9/8~9/9	현장실사			
	10/1	현장실사			
	10/11	현장실사			
	10/21	현장실사			
	10/28	현장실사			
	10/30	현장실사			
	11/12	현장실사			
	11/13	현장실사			
	11/16	현장실사			
	11/18	현장실사			
	11/20	현장실사			
	11/25	현장실사			
	11/27	현장실사			
2009	4/29~4/30	현장실사			
	5/6~5/7	현장실사			
	9/10~9/11	현장실사			
	9/9~9/10	현장실사			
	10/28~10/29	현장실사			
	11/10~11/11	현장실사			
	11/14~11/15	현장실사			
	11/3~11/4	현장실사			

연도	정기감사		수시감사		
	감사기간	감사방법	감사기간	감사사유	감사방법
	12/8~12/10	현장실사			
2010	5/10~5/11	현장실사			
	6/15~6/15	현장실사			
	6/8~6/9	현장실사			
	9/28~9/29	현장실사			
	9/30~10/1	현장실사			
	9/8~9/9	현장실사			
	10/13~10/14	현장실사			
	10/26~10/27	현장실사			
	10/5~10/6	현장실사			
	10/7~10/8	현장실사			
2011	4/20~4/21	현장실사			
	6/8~6/9	현장실사			
	9/21~9/22	현장실사			
	10/12~10/13	현장실사			
	10/18~10/19	현장실사			
	11/17~11/18	현장실사			
	11/2~11/3	현장실사			
	11/29~11/30	현장실사			
	11/7~11/8	현장실사			
	12/5~12/6	현장실사			
	12/8~12/9	현장실사			
2012	3/29~3/30	현장실사			
	4/12~4/13	현장실사			
	4/18~4/19	현장실사			
	5/10~5/11	현장실사			
	5/3~5/4	현장실사			
	6/14~6/15	현장실사			
계	**55건**		**0건**		

(2) 연도별 국가정보원에 제출한 감사 결과 보고서 : 붙임 참조

4) 보안사고 관련

(1) 연도별/사고유형별 보안사고 발생현황 : 해당사항없음

(2) 연도별 「보안업무규정」 제62조 제①항에 의거 국가정보원 등 보안기관에 통보한 보안사고 내역 : 해당사항없음

5) 연도별 허가되지 아니한 자의 무단 침입시도 현황 : 해당사항없음

6) 연도별 정보통신 보안교육 시행 실적

연도	교육일자	교육내용
2009	8.27	금융위원회 보안교육
2010	1.21	공직자 사이버보안의식제고 보안교육
	11.15	금융위원회 보안교육
2011	4.1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2012	3.27~4.6	정보보호 교육

2009년도 보안업무 심사분석

2008년 4/4분기 ~ 2009년 3/4분기

2009. 10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보안조직·인원 변동사항 2

Ⅲ. 주요성과 및 부진사업 분석 2

1 주요성과 2

2 부진사업 분석 6

Ⅳ. 세부 사업별 실적분석 7

1 국가보안 분야 7

2 정보통신보안 분야 16

Ⅴ. 건의사항 및 기타 19

Ⅳ. 세부 사업별 실적분석

2 정보통신보안 분야

가. 사이버안전 대응체계 구축

추 진 실 적	문제점	개선책
□ 사이버테러 대응능력 강화 ○ 금융전산 부문의 위기대응훈련을 통해 비상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개선('09.8월) ○ 금융전산부문 위기대응 매뉴얼 및 실무매뉴얼 개선 추진 ○ 금융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계획 수립(은행 15개, 증권 15개, 유관기관 3개 기관) ○ DDos 사이버공격을 계기로 금융위 정보보안 체계 강화 -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예산 증액 -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 반영 - 금융분야 정보보호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고위급 협의체 구성 추진 - 증권분야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 추진 등 ○ 사이버테러·해킹 방지훈련 실시 - 을지훈련 기간중 국정원의 모의해킹 대응반 구성 및 대응훈련 실시(09.8월) ○ 인터넷 침해사고 관련 정보수집 강화 및 유관기관 보안교육 참가	DDos등 사이버테러 대비 위기대응 체계 강화필요	금융전산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추진
□ 사이버테러 위협정보 수집 및 협조체계 구축 ○ 국정원, 행안부,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및 사이버테러 정보 수집 (수시) ○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신고체계 확립 (수시) ○ 국정원 및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보안취약점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시행 (수시)	계획대로 추진	

나.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정보통신 관리체계 확립

추 진 실 적	문제점	개선책
□ 정보통신망 운용 관련 안전성 강화 o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 KT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통신망 상시 모니터링 실시 o 정보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패치 및 보안장비 교체 추진	계획대로 추진	
□ 정보보안 교육 실시 o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 실시('09.8월)	계획대로 추진	
□ 업무용 PC 보안관리 철저 o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PC 보안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자가진단 및 점검 실시 o 상용메일 차단 실시 등 업무용 PC보안 강화 - 업무 관련 자료 송수신 금지 및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금지 -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PC의 P2P 서비스 사용 금지	계획대로 추진	
□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강화 o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은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을 도입('09.3월)하여 보조기억매체를 통한 정보유출 차단	일부 산하기관 보안관리 미흡	보안지도 점검을 통해 개선 지도
□ 정보통신보안 관련 법령 정비 o 정보보안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위원회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개정 추진	계획대로 추진	

다. 보안시스템 사용 활성화 및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관리 강화

추 진 실 적	문제점	개선책
□ 최신의 보안시스템 도입 ○ 해킹 및 바이러스 침입에 대비하여 최신의 보안S/W 도입('07.12월)하였으며 및 문서보안(DRM) 솔루션 확대 적용하였음 ('09.10월) ○ 또한,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키보드보안솔루션 도입을 추진 ('09.10월)	일부 산하기관 보안관리 미도입	보안지도 점검 을 통해 개선 지도
□ 보안취약점의 상시 점검 ○ 취약점 스캐너를 이용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의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 -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 실시 (정부통합전산센터, '09.6월, '09.8월) ○ 국무총리실 불시보안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방안 각과 통보 및 교육 실시('09.8월)	계획대로 추진	
□ 정보화사업 시행시 보안성 검토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추진시 국정원과 협의하여 보안성검토 실시 -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안성 검토 및 대책 마련	일부 산하기관 보안관리 미흡	보안지도 점검 을 통해 개선 지도
□ 외주용역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 용역업체 직원의 운영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 (수시) - 외부용역 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수시) - 작업 종료후 제공자료 및 산출물 등 회수 (수시) -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 (수시) ○ 전산실 출입통제 및 관리 철저 (수시)	일부 산하기관 보안관리 미흡	보안지도 점검 을 통해 개선 지도

2010년도 보안업무 심사분석

2009년 4/4분기 ~ 2010년 2/4분기

2010. 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보안조직·인원 변동사항 2

Ⅲ. 주요성과 및 부진사업 분석 2

1 주요성과 2

2 부진사업 분석 5

Ⅳ. 세부 사업별 실적분석 7

1 국가보안 분야 7

2 정보통신보안 분야 16

Ⅴ. 건의사항 및 기타 19

Ⅳ. 세부 사업별 실적분석

2 정보통신보안 분야

가. 사이버안전 대응체계 구축

추 진 실 적	문제점	개선책
□ 사이버테러 대응능력 강화 ◦ 금융전산 부문의 위기대응훈련을 통해 비상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개선('09.11월) ◦ 금융전산부문 위기대관리 표준매뉴얼 및 실무메뉴얼 개선 추진('09.12월) - 위기상황시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의·조정기능 강화 ◦ 금융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계획 수립 (은행 15개, 증권 15개, 유관기관 3개 기관) ◦ DDos 사이버공격 대비 금융위 정보보안 체계 강화 - 금융권 디도스 대응체계 점검 실시('09.12~'10.3월) -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등 금융권 디도스 대응 훈련 실시('10.1~2월) - 증권분야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 추진 등 ◦ 인터넷 침해사고 관련 정보수집 강화 및 유관기관 보안교육 참가 □ 사이버테러 위협정보 수집 및 협조체계 구축 ◦ 보안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및 사이버테러 정보수집(수시) ◦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신고체계 확립(수시) ◦ 국정원 및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보안취약점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시행(수시)	DDos 등 사이버테러 대비 위기대응 체계 강화필요	금융전산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추진

나.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정보통신 관리체제 확립

추 진 실 적	문제점	개선책
□ 정보통신망 운용 관련 안전성 강화 ◦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통신망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정보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패치 및 보안장비 교체 추진 □ 정보보안 교육 실시 ◦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전문가를 초빙하여 과장급이상 간부를 대상으로정보보안 교육 실시('10.1월) - G20개최 대비 정보보안 의식 강화 - 정보유출 사례, 최근의 해킹유형 등 교육실시 □ 업무용 PC 보안관리 철저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PC 보안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자가진단 및 점검 실시 ◦ 상용메일 차단 실시 등 업무용 PC보안 강화 - 업무 관련 자료 송수신 금지 및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금지 -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PC의 P2P 서비스 사용 금지 □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강화 ◦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은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조기억매체를 통한 정보유출 차단		

다. 보안시스템 사용 활성화 및 정보화사업 외주대책 보안관리 강화

추 진 실 적	문제점	개선책
□ 최신의 보안시스템 도입 ◦ 해킹 및 바이러스 침입에 대비하여 최신의 보안S/W도입 하였으며 및 문서보안(DRM) 솔루션 확대 적용 ◦ 또한,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키보드보안솔루션 도입 추진('09.10월) □ 보안취약점의 상시 점검 ◦ 취약점 스캐너를 이용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의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 -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 실시 ◦ 분기별 또는 불시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방안 각과 통보 및 교육 실시(수시) □ 정보화사업 시행시 보안성 검토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추진시 국정원과 협의하여 보안성검토 실시 -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안성 검토 및 대책 마련 □ 외주 용역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 용역업체 직원의 운영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수시) - 외부용역 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수시) - 작업 종료후 제공자료 및 산출물 등 회수(수시) -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수시) ◦ 전산실 출입통제 및 관리 철저(수시)		

2011년도 보안업무 심사분석

2010년 3/4분기 ~ 2011년 2/4분기

2011. 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총 평 1

Ⅱ. 보안조직·인원 변동사항 2

Ⅲ. 주요성과 및 부진사업 분석 2

1 주요성과 2

2 부진사업 분석 6

Ⅳ. 세부 사업별 실적분석 7

1 국가보안 분야 7

2 정보통신보안 분야 16

Ⅴ. 건의사항 및 기타 19

2 정보통신보안 분야

가. 사이버안전 대응체계 구축

추 진 실 적	문제점	개선책
□ 사이버테러 대응능력 강화 ◦ 금융전산 부문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점검 실시('10.9월) ◦ 금융전산부문 위기대응 매뉴얼 및 실무매뉴얼 개선 추진 ('10.11월, 11.5월) ◦ 금융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계획 수립 ('10.12월, 은행 15개, 증권 15개, 유관기관 3개 기관) ◦ 금융권 디도스 공격('11.3월) 대응 - 국민은행 등 금융회사(8개) 디도스 공격에 대응하여 비상상황대응반 운영, "주의" 경보 전파, 모니터링 강화 등 조치 - 디도스 공격 대비 비상대응센터 구축 추진('11.3월) ◦ 농협 등 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IT 보안 강화 종합대책 마련 ('11.5월~) -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예산증액 및 인력확충 - 전자금융 관련 법·규정 개정 추진 - 금융분야 정보보호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추진 - 금융분야 통합보안관제 확대 추진 등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인터넷 침해사고 관련 정보수집 강화 및 유관기관 보안교육 참가(수시)	금융분야 사이버테러 대비 위기대응 체계 강화필요	금융전산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추진
□ 사이버테러 위협정보 수집 및 협조체계 구축 ◦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신고체계 확립 (수시) ◦ 국정원 및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보안취약점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시행 (수시)	계획대로 추진	

나.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정보통신 관리체계 확립

추 진 실 적	문제점	개선책
□ 정보통신망 운용 관련 안전성 강화 ◦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 KT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통신망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정보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패치(매월) 및 보안장비 교체 예산 확보 추진('10.9월)	계획대로 추진	
□ 정보보안 교육 실시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정보보안 전문교육을 산하기관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10.11월)	계획대로 추진	
□ 인터넷망 PC 보안관리 철저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PC 보안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자가진단 및 점검 실시(매월) - 업무 관련 자료 송수신 금지 및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금지 -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PC의 P2P 서비스 사용 금지	일부 산하기관 보안관리 미흡	보안지도 점검을 통해 개선 지도
□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강화 ◦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은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유출 차단 ◦ 보안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도입 권고	계획대로 추진	
□ 정보통신보안 관련 법령 정비 ◦ 정보보안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위원회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개정 추진('11.6월)	계획대로 추진	

다. 보안시스템 사용 활성화 및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관리 강화

추 진 실 적	문제점	개선책
□ G20대비 금융권 보안취약점 점검 등 대응체계 강화 ◦ G20대비 금융분야 사이버테러 대비 40여개 기관 점검 실시('10.9월~10월) ◦ G20대비 금융분야 사이버테러 관계자 회의 개최('10.11월) ◦ G20대비 금융분야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10.11월) - 비상근무체계 유지, 업무망 및 인터넷PC 보안관리 강화 - 디도스 공격 대비 대응체계 점검 - 주요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계획대로 추진	
□ 보안취약점의 상시 점검 ◦ 취약점 스캐너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의 보안패치를 즉시 적용(매월)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실시(매년)	계획대로 추진	
□ 정보화사업 시행시 보안성 검토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추진시 국정원과 협의하여 보안성검토 실시(수시) -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안성 검토 및 대책 마련	계획대로 추진	
□ 외주용역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 용역업체 직원의 운영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 (수시) - 외부용역 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수시) - 작업 종료후 제공자료 및 산출물 등 회수 (수시) -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 (수시) ◦ 전산실 출입통제 및 관리 철저 (수시)	일부 산하기관 보안관리 미흡	보안지도 점검을 통해 개선 지도

2012년도 보안업무 심사분석

2011년 3/4분기 ~ 2012년 2/4분기

2012. 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총 평 2

Ⅱ. 보안조직·인원 변동사항 3

Ⅲ. 주요성과 및 부진사업 분석 3

1 주요성과 3

2 부진사업 분석 7

Ⅳ. 보안업무 세부 추진 실적 8

1 국가보안 분야 8

2 정보통신보안 분야 16

Ⅴ. 건의사항 및 기타 20

2 정보통신보안 분야

가.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구축

추 진 실 적	문제점	개선책
□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 ○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세부과제 이행 - 9개 과제 중 법률개정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한 6개 과제 정상추진('12.6월 현재) ○ 금융회사 등 IT보안 인력 및 예산 투자 확대 유도 - IT인력/전체인력 5% 이상, IT보안인력/IT인력 5% 이상, IT보안예산/IT예산 7% 이상('11.11월) ○ 금융회사 IT보안에 CEO의 역할 및 책임 부여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임명 의무화 - 매년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수립하여 CEO 승인 후 운용('11.10월)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CEO에 보고 후 금융위원회에 결과 제출 의무화('11.10월)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을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임원급으로 선임('12.5월) ○ 금융회사 IT보안사고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및 업무정지 근거 마련, 경영진 등의 책임 명확화 - IT부문 실태평가 결과를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	계획대로 추 진	

추 진 실 적	문제점	개선책
□ 사이버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확립 ○ 금융전산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배포 - 위기경보 판단기준 변경 및 IT업무지속성 계획 수립 - 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정비	계획대로 추 진	
□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 금융IT분야 상황대응반 운영 ○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융IT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비 상황대응반* 운영 * 금융위, 금감원, 금융ISAC 인원으로 대응반 구성 - '12.1.30~3.2(5주) 기간에 금융권역의 사이버테러 대응 현황을 사전 점검하여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도모 ○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24시간 대응체계 구성을 통해 안정적 개최 지원	계획대로 추 진	
□ 보안취약점의 상시 점검 ○ 취약점 스캐너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의 보안패치를 즉시 적용(매월)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점검 실시(매년)	계획대로 추 진	

나.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정보통신 관리체제 확립

추 진 실 적	문제점	개선책
□ IT 보안기술 인프라 개선 ○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유도('11.10월) - 안전한 내부망 구간에만 고객DB를 설치·운영토록 유도 ○ 망분리 등 접속경로 통제 강화 ('11.10월) - 업무 특성별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IP주소를 운용하도록 하고, 내부통신망은 다른 기관의 내부통신망과 분리 - 공개용 웹서버는 DMZ구간에만 설치하도록 규정('11.10월) ○ 무선통신망 통제대책 강화 - 전산실에 무선통신망 설치 금지('11.10월) ○ 중요단말기 보호대책 강화 ('11.10월) - 업무담당자 외에 단말기 무단조작 금지, 접근통제 강화 - 노트북 등 휴대용 전산장비 사용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 수립 의무화 - 주요업무 관련 행위에 로그기록, 접근제어 무선통신망 접속차단 대책 마련 의무화	계획대로 추 진	
□ 인터넷망 PC 보안관리 철저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PC 보안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자가진단 및 점검 실시(매월) - 업무 관련 자료 송수신 금지 및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금지 -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PC의 P2P 서비스 사용 금지	일 부 산하기관 보안관리 미 흡	보안지도 점검시 개선 지도

다.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관리 강화

추 진 실 적	문제점	개선책
□ 금융회사의 외부주문 통제 강화('11.10월)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 간 통신망 접속은 전용회선 사용 의무화 ○ 금융회사 외부주문과의 계약서 등에 보안규정 준수, 비밀유지의무, 정보기술부문의 안전대책 등 규정 의무화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재무건전성 및 서비스품질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 외부주문 등은 자체 보안성 검토 및 정기 보안점검 실시 의무화 ○ 업무위수탁운영기준을 준수를 의무화하고, 핵심업무에 대하여는 내부인력으로 처리하도록 유도 ○ 외부주문에 대한 감리지침을 수립·운용을 의무화 ○ 외부주문업자를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유도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과실은 금융회사의 책임으로 규정	계획대로 추 진	
□ 정보화사업 시행시 보안성 검토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추진시 국정원과 협의하여 보안성검토 실시(수시) -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안성 검토 및 대책 마련	계획대로 추 진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13. 금융위, 증선위 관련(2008.1~현재)

1) 위원 현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직책, 선임일자, 임기)

2) 연도별 회의 개최 실적
(상정안건, 논의·의결내역, 참석위원 명단, 회의록 사본)

3) 위원회 수당 산정 기준 및 지급 내역

□ 금융위원회 관련

o 위원 현황(2008.3~현재)*

* 금융위 출범이후(2008.3~)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당연직 위원	위 원 장	전 광 우	2008. 3 ~ 2009. 1
	〃	진 동 수	2009. 1 ~ 2010.12
	〃	김 석 동	2011. 1 ~ 현재
	부 위 원 장	이 창 용	2008. 3 ~ 2009.11
	〃	권 혁 세	2009.11 ~ 2011. 3
	〃	신 제 윤	2011. 3 ~ 2011. 9
	〃	추 경 호	2011. 9 ~ 현재
	기획재정부차관	최 중 경	2008. 3 ~ 2008. 7
	〃	김 동 수	2008. 7 ~ 2009. 1
	〃	허 경 욱	2009. 1 ~ 2010. 4
	〃	임 종 룡	2010. 4 ~ 2011. 9

	〃	신 제 윤	2011. 9 ~ 현재
	금융감독원원장	김 종 창	2008. 3 ~ 2011. 3
	〃	권 혁 세	2011. 3 ~ 현재
	예금보험공사사장	박 대 동	2008. 1 ~ 2009. 4
	〃	이 승 우	2009. 5 ~ 2012. 5
	〃	김 주 현	2012. 5 ~ 현재
	한국은행부총재	이 승 일	2006. 4 ~ 2009. 4
	〃	이 주 열	2009. 4 ~ 2012. 4
	〃	박 원 식	2012. 4 ~ 현재
위촉직 위원*	상임위원	김 용 환	2008. 1 ~ 2008.12
	〃	임 승 태	2009. 2 ~ 2010. 4
	〃	최 종 구	2010. 5 ~ 2011. 4
	〃	이 상 제	2011. 4 ~ 현재
	〃	이 종 구	2008. 3 ~ 2011. 3
	〃	이 석 준	2011. 3 ~ 2012. 1
	〃	홍 영 만	2012. 3 ~ 현재
	비상임위원	채 희 율	2008. 3 ~ 2011. 3
	〃	심 인 숙	2011. 3 ~ 현재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o 연도별 회의 개최 실적

- **상정안건 및 논의·의결내역**은 「(붙임1) 금융위 안건목록」 : 별도제출

- **참석위원 명단**은 「(붙임2) 금융위 회의록 사본」 : 별도제출

□ 증권선물위원회 관련

o 위원 현황(2008.3~현재)*

* 금융위 출범이후(2008.3~)

	직 위	성 명	재 임 기 간
당연직 위원	위 원 장	이 창 용	2008. 3 ~ 2009.11
	〃	권 혁 세	2009.11 ~ 2011. 3
	〃	신 제 윤	2011. 3 ~ 2011. 9
	〃	추 경 호	2011. 9 ~ 현재
위촉직 위원*	상임위원	권 혁 세	2008. 1 ~ 2009. 2
	〃	김 주 현	2009. 2 ~ 2009.12
	〃	최 규 연	2009.12 ~ 2011. 3
	〃	홍 영 만	2011. 4 ~ 2012. 3
	〃	유 재 훈	2012. 3 ~ 현재
	비상임위원	최 혁	2007. 4 ~ 2010. 4
	〃	허 창 수	2010. 4 ~ 현재
	〃	김 문 철	2007. 4 ~ 2010. 4
	〃	손 성 규	2010. 4 ~ 현재
	〃	조 인 호	2008. 3 ~ 2011. 3
	〃	류 시 관	2011. 3 ~ 현재

o 연도별 회의 개최 실적

- **상정안건 및 논의·의결내역**은 「(붙임3) 증선위 안건목록」 : 별도제출

- **참석위원 명단**은 「(붙임4) 증선위 회의록 사본」 : 별도제출

□ 위원회 수당 산정 기준 및 지급 내역

o 위원회 수당 산정 기준(금융위 · 증선위 동일)

구 분	지 급 액
회의 참석 수당	(기본 2시간) 회당 10만원 (2시간 초과시) 회당 15만원
안건 검토 사례금	회당 30만원
조사 활동비	월 100만원

* 위원회 수당은 비상임위원에게만 지급

o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

<2008년도*>

* 금융위 출범이후(2008.3~)

(단위 : 만원)

위원회	성 명	회의참석수	안건검토사례금	회의참석수당	조사활동비
금융위	채희율	23회	345 (15만원×23회)	161 (7만원×23회)	1,000 (100만원×10월)
증선위	최 혁	16회	240 (15만원×16회)	112 (7만원×16회)	1,000 (100만원×10월)
	김문철	18회	270 (15만원×18회)	126 (7만원×18회)	1,000 (100만원×10월)
	조인호	18회	270 (15만원×18회)	126 (7만원×18회)	1,000 (100만원×10월)

<2009년도>

(단위 : 만원)

위원회	성 명	회의참석수	안건검토사례금	회의참석수당	조사활동비
금융위	채희율	25회	375 (15만원×25회)	175 (7만원×25회)	1,200 (100만원×12월)
증선위	최 혁	20회	300 (15만원×20회)	140 (7만원×20회)	1,200 (100만원×12월)
	김문철	21회	315 (15만원×21회)	147 (7만원×21회)	1,200 (100만원×12월)
	조인호	21회	315 (15만원×21회)	147 (7만원×21회)	1,200 (100만원×12월)

<2010년도>

(단위 : 만원)

위원회	성 명	회의참석수	안건검토사례금*	회의참석수당*	조사활동비
금융위	채희율	24회	720 (30만원×24회)	198 (7만원×14회)+ (10만원×10회)	1,200 (100만원×12월)
증선위	조인호	23회	690 (30만원×23회)	590 (7만원×6회)+ (10만원×17회)	1,200 (100만원×12월)
	최 혁 (~3월)	6회	180 (30만원×6회)	54 (7만원×2회)+ (10만원×4회)	300 (100만원×3월)
	김문철 (~3월)	6회	180 (30만원×6회)	54 (7만원×2회)+ (10만원×4회)	300 (100만원×3월)
	허창수 (4월~)	16회	480 (30만원×16회)	151 (7만원×3회)+ (10만원×13회)	900 (100만원×9월)
	손성규 (4월~)	16회	450 (30만원×15회)	154 (7만원×2회)+ (10만원×14회)	900 (100만원×9월)

* 2010년도부터 안건 검토사례비는 30만원으로 인상 지급(기존 지급액 15만원) 하였고, 회의 참석 수당은 기본 7만원에서 2시간 초과시 10만원을 지급

<2011년도>

(단위 : 만원)

위원회	성 명	회의참석수	안건검토사례금	회의참석수당*	조사활동비
금융위	채희율 (~3월)	9회 (서면1회)**	300 (30만원×10회)	76 (7만원×3회)+ (10만원×5회)+ (15만원×1회)	300 (100만원×3월)
	심인숙 (4월~)	25회 (서면3회)	840 (30만원×28회)	265 (10만원×22회)+ (15만원×3회)	900 (100만원×9월)
증선위	허창수	24회	720 (30만원×24회)	312 (7만원×1회)+ (10만원×8회)+ (15만원×15회)	1,200 (100만원×12월)
	손성규	24회	720 (30만원×24회)	312 (7만원×1회)+ (10만원×8회)+ (15만원×15회)	1,200 (100만원×12월)
	조인호 (~3월)	5회	150 (30만원×5회)	52 (7만원×1회)+ (10만원×3회)+ (15만원×1회)	300 (100만원×3월)
	류시관 (4월~)	17회	510 (30만원×17회)	235 (10만원×4회) + (15만원×13회)	900 (100만원×9월)

* 회의참석수당은 2월부터 '11년도 예산처리지침의 인상기준(기본 10만원, 2시간 초과시 15만원)에 따라 지급

** 서면회의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2012년도(8월말까지)>

(단위 : 만원)

위원회	성 명	회의참석수	안건검토사례금	회의참석수당	조사활동비
금융위	심인숙	17 (서면5회)	660 (30만원×22회)	180 (10만원×15회)+ (15만원×2회)	800 (100만원×8월)
증선위	허창수	19회	570 (30만원×19회)	240 (10만원×9회)+ (15만원×10회)	800 (100만원×8월)
	손성규	19회	570 (30만원×19회)	240 (10만원×9회)+ (15만원×10회)	800 (100만원×8월)
	류시관	19회	570 (30만원×19회)	240 (10만원×9회)+ (15만원×10회)	800 (100만원×8월)

- 위원회별 위원 및 소속 직원 구성 현황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구 분	성 명	임기	소속 및 직위
당연직	김석동	-	금융위원장
〃	신제윤	-	기획재정부 차관
은행연합회추천 금융전문가	남상구	'11.9.8~'13.9.7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국회추천 경제전문가	이재술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국회추천 경제전문가	박영석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법원추천 법률전문가	민병훈	〃	공감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상의추천 경제전문가	오규택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공인회계사회장추천 회계전문가	이기화	〃	다산회계법인 대표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 1국 2팀 (운용기획팀, 회수관리팀)

	국장	팀장	사무관	주무관	계
정 원	1	2	4	5	12
현 원	1	2	4	5	12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심의회

구분	성명	임기	소 속
당연직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성대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장
〃	노형욱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	조현철		예금보험공사 이사
〃	강명석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위촉직 (금융위)	여은정	'12.8~ '14.8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홍명종	'11.2~ '13.2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위원회별/연도별 회의 개최 실적

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차수	일시	종류	안 건 명	결과
1	09.8.31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의결
2	09.9.11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	의결
		보고	소위원회 구성 보고	접수
3	09.9.25	의결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기준	의결
		보고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기준"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의결
		보고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대우조선해양 주식매각 및 매각주간사 선정 방안	의결

차수	일시	종류	안 건 명	결과
		보고	"㈜대우조선해양 주식매각 및 매각주간사 선정 방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실적보고	접수
		보고	2009년 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보고	접수
4	09.10.16	의결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방안	의결
		보고	"우리금융지주 지분매각방안" 심사결과보고	접수
		의결	신한금융지주 주식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수정
		보고	"신한금융지주 주식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5	09.11.11	의결	선박 매입기준	의결
		보고	"선박 매입기준"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1차 매입대상 중 추가매입(2척) 및 2차 선박매입 추진계획	의결
		보고	"1차 매입대상 중 추가매입(2척) 및 2차 선박매입 추진계획"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금융회사 일반담보부 부실채권 인수현황 보고	접수
		보고	"금융회사 일반담보부 부실채권 인수현황 보고"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선박매입 운영 개선 방안	의결
6	09.11.20	의결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방안	의결
		보고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7	09.11.25	의결	선박인수를 위한 캠코 글로벌 18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의결
		보고	"선박인수를 위한 캠코 글로벌 18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제2금융권(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출채권인수의 건(안)	의결
		보고	"제2금융권(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출채권인수의 건(안)"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제2금융권(보험,금융투자,수협) PF대출채권 인수의 건(안)	의결
		보고	"제2금융권(보험,금융투자,수협) PF대출채권 인수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계획(안)	의결
		보고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현황 및 매각 계획	접수
		보고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 현황 및 정리 계획	접수

차수	일시	종류	안 건 명	결과
8	09.12.18	의결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안)	의결
		보고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의 건(안)	의결
		보고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2010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 매각 계획(안)	의결
		보고	"2010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 매각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2010년도 예보채상환기금 보유자산 매각 계획(안)	의결
		보고	"2010년도 예보채상환기금 보유자산 매각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2009년 3/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접수
9	10.1.27	의결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의결
		보고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주)대우인터내셔널 주식 매각방안	접수
		보고	"(주)대우인터내셔널 주식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제2금융권 등의 PF대출채권 유동화계획의 건(안)	의결
		보고	"제2금융권 등의 PF대출채권 유동화계획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09.12월중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해운사 보유 선박 인수현황 보고	접수
		보고	"'09.12월중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해운사 보유 선박 인수현황 보고" 심사결과 보고	접수
10	10.2.8	의결	대한생명 지분매각방안	수정
		보고	"대한생명 지분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11	10.2.24	의결	제주은행 주식 매각주관사 선정방안 및 장중매각(안)	의결
		보고	"제주은행 주식 매각주관사 선정방안 및 장중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12	10.3.19	의결	선박인수를 위한 캠코 글로벌 19호부터 23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의결
		보고	"선박인수를 위한 캠코 글로벌 19호부터 23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2009년 4/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접수

차수	일시	종류	안 건 명	결과
		보고	공적자금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 보고	접수
13	10.4.2	의결	우리금융지주 지분 세부매각(안)	수정
		보고	"우리금융지주 지분 세부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14	10.4.23	의결	제2금융권 PF대출채권 유동화계획의 건(안)	의결
		보고	"제2금융권 PF대출채권 유동화계획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 및 의사록의 공개 시기 연기(안)	의결
15	10.4.30	의결	하이닉스 주식 매각방안	의결
		보고	"하이닉스 주식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2010년 1/4분기 케이알앤씨 보유자산 매각추진 현황	의결
16	10.5.7	의결	(주)대우인터내셔널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의결
		보고	(주)대우인터내셔널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17	10.5.14	의결	(주)대우인터내셔널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의결
		보고	"(주)대우인터내셔널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18	10.5.28	의결	주택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리츠·펀드 출·투자기준 및 계획	의결
		보고	'주택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리츠·펀드 출·투자기준 및 계획'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09년 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점검결과	접수
19	10.6.14	의결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의 건(안)	의결
		보고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의건(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20	10.6.18	의결	선박인수를 위한 캠코글로벌 제24호부터 25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의결
		보고	"선박인수를 위한 캠코글로벌 제24호부터 25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의결
		보고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심사결과 보고	접수

차수	일시	종류	안 건 명	결과
21	10.6.25	의결	주택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유진미분양아파트사모펀드1호' 및 '우투하우징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투자	의결
		보고	"주택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유진미분양아파트사모펀드1호' 및 우투하우징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투자"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저축은행 PF 대출채권 인수계획 및 인수의 건(안)	의결
		보고	"저축은행 PF 대출채권 인수계획 및 인수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2010년 1/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접수
22	10.07.30	의결	우리금융지주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의결
		보고	"우리금융지주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23	10.08.13	의결	선박인수를 위한 캠코 글로벌 26호부터 27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의결
		보고	"선박인수를 위한 캠코 글로벌 26호부터 27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2010년 중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해운사 보유 선박인수, 미분양펀드 투자 현황보고	접수
24	10.08.23	의결	(주)대우인터내셔널 주식 매매계약 체결	의결
		보고	'(주)대우인터내셔널주식 매매계약 체결'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2010년 공적자금관리 백서(안)	의결
		보고	2010년 1/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접수
25	10.09.15	의결	일반담보부 채권인수의 건	의결
		보고	"일반담보부 채권인수의 건" 심사결과보고	접수
		보고	2010.8월중 해운사 보유 선박 인수현황 보고	접수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 및 의사록의 공개시기 연기(안)	의결
		보고	2010.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접수
		보고	2010년 상반기 케이알앤씨 보유자산 매각 추진현황 보고	수정
26	10.10.29	의결	우리금융지주 세부 매각방안	수정
		보고	"우리금융지주 세부 매각방안" 심사결과보고	접수

차수	일시	종류	안 건 명	결과
27	10.11.19	의결	저축은행 PF 대출채권 유동화계획의 건	의결
		보고	"저축은행 PF 대출채권 유동화계획의 건" 심사결과보고	접수
		의결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의결
		보고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심사결과보고	접수
		보고	10.9~10월중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보유자산 인수현황 보고	접수
		보고	"10.9~10월중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보유자산 인수현황 보고" 심사결과보고	접수
		보고	대우일렉트로닉스 M&A 본계약 체결결과 보고	접수
28	10.11.26	보고	2010년도 3/4분기 KR&C 보유자산 매각 추진현황 보고	접수
		보고	2010년도 2/4분기 MOU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접수
		보고	2010년도 3/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접수
29	10.12.17	의결	JV방식 부실채권 인수의 건	의결
		보고	"JV방식 부실채권 인수의 건" 심사결과보고	접수
		의결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의결
		보고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심사결과보고	접수
		의결	우리금융지주 매각방안 재검토	수정
		보고	"우리금융지주 매각방안 재검토" 심사결과보고	접수
30	10.12.29	의결	11년도 예보채상환기금 보유자산 매각계획안	수정
		보고	"11년도 예보채상환기금 보유자산 매각계획안" 심사결과보고	접수
		의결	11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 매각계획안	의결
		보고	"11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 매각계획안" 심사결과보고	접수
		의결	11년 구조조정기금 지원계획	의결
		보고	"11년 구조조정기금 지원계획" 심사결과보고	접수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 및 의사록의 공개시기 연기(안)	의결
31	11.02.25	보고	2010년 11~12월중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현황	접수
		보고	10.3/4분기 MOU 이행실적 점검 및 조치결과	접수

차수	일시	종류	안 건 명	결과
		보고	10.4/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접수
32	11.03.25	의결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의결
		보고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심사결과보고	접수
		의결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의 건	의결
		보고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의 건" 심사결과보고	접수
		보고	MOU 관리제도 개선(안)	접수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 및 의사록의 일부공개(안)	의결
		보고	공적자금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 보고	접수
33	11.04.29	보고	11.1/4분기 중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보유자산 인수현황	접수
		보고	10.4/4분기 MOU 이행실적 점검 및 조치결과	의결
34	11.05.17	의결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	의결
		보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35	11.06.16	의결	한국전력 주식 매각방안	의결
		보고	한국전력 주식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방안 및 추진계획(안)	의결
		보고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방안 및 추진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부실채권정리기금 주요 보유주식 정리계획(안)	의결
		보고	부실채권정리기금 주요 보유주식 정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의결
		보고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심사결과 보고	접수
36	11.06.24	의결	쌍용건설 주식매각 및 자문사 선정방안	의결
		보고	쌍용건설 주식매각 및 자문사 선정방안 심사결과보고	접수
		의결	저축은행 PF대출채권 인수계획 및 인수의 건	의결
		보고	저축은행 PF대출채권 인수계획 및 인수의 건 심사결과	접수
		의결	저축은행 PF대출채권 정산기한 연장의 건	의결

차수	일시	종류	안 건 명	결과
		보고	저축은행 PF대출채권 정산기한 연장의 건 심사결과	접수
		의결	'11.3/4분기 중 공자위 안건 및 의사록 공개시기 연기(안)	의결
		보고	'11.1/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접수
37	11.07.29	보고	'11.1/4분기 MOU 이행실적 점검 및 조치결과	접수
38	11.08.17	의결	우리금융지주 매각 관련 최종입찰대상자(Short List) 선정기준(안)	의결
		보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관련 최종입찰대상자(Short List)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접수
39	11.08.19	의결	우리금융지주 매각 관련 예비입찰제안서 접수결과 및 향후 처리 방향(안)	수정
		보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관련 예비입찰제안서 접수결과 및 향후 처리 방향(안) 심사결과	접수
40	11.08.24	의결	저축은행 PF채권 인수계획 및 인수의 건 수정(안)	의결
		보고	11.2/4분기 중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현황 보고	접수
		의결	11년 공적자금관리 백서(안)	의결
41	11.09.08	보고	소위원회 구성 보고	접수
42	11.09.19	의결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상호저축은행 지원기준(안)	수정
		보고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상호저축은행 지원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보고	11년 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접수
43	11.09.28	보고	PF채권매각 저축은행 경영개선협약 이행실적 및 신규체결 방안	접수
		의결	일반담보부 채권 인수의 건(안)	의결
		보고	일반담보부 채권 인수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 및 의사록의 공개시기 연기(안)	의결
44	11.10.28	의결	선박인수를 위한 캠코 글로벌 28호부터 33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의결
		보고	선박인수를 위한 캠코 글로벌 28호부터 33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11.2/4분기MOU이행실적점검결과 보고	접수
45	11.11.25	의결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안)	의결
		보고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차수	일시	종류	안 건 명	결과
		보고	저축은행 PF사업장 정상화 추진계획	접수
		의결	교보생명 주식매각 및 매각주간사 선정방안	의결
		보고	교보생명 주식매각 및 매각주간사 선정방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대우조선 주식매각 및 매각주간사 선정방안	의결
		보고	대우조선 주식매각 및 매각주간사 선정방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46	11.12.16	의결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안)	의결
		보고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11년 7~11월 중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현황 보고	접수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 및 의사록 공개(안)	의결
		보고	11년 3/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접수
47	11.12.22	의결	12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보유자산 정리계획(안)	의결
		보고	"12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보유자산 정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쌍용건설(주) 주식매각 방안	의결
		보고	"쌍용건설(주) 주식매각 방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12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 정리계획(안)	의결
		보고	"12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 정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48	12.01.27	보고	11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접수
49	12.02.27	보고	PF채권 매각 저축은행 경영개선협약(MOU) 이행실적 보고('11. 4/4분기중)	접수
		보고	구조조정기금 인수 및 정리 실적보고	접수
		의결	쌍용건설(주) 주식 매각관련 예비입찰 제안서 접수결과 및 향후 처리방향(안)	의결
		보고	쌍용건설(주) 주식 매각관련 예비입찰 제안서 접수결과 및 향후 처리방향(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쌍용양회(주) 주식매각 및 매각주간사 선정방안	의결
		보고	쌍용양회(주) 주식매각 및 매각주간사 선정방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11년 4/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접수

차수	일시	종류	안 건 명	결과
50	12.03.15	의결	쌍용건설(주) 주식 매각방안	의결
		보고	쌍용건설(주) 주식 매각방안 심사결과보고	접수
		보고	공적자금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 보고	접수
51	12.03.30	의결	교보생명(주) 주식 매각방안	의결
		보고	교보생명(주) 주식 매각방안 심사결과보고	접수
		의결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을 위한 주간사 선정(안)	의결
		보고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을 위한 주간사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 및 의사록 공개(안)	의결
52	12.04.27	의결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	의결
		보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53	12.05.24	의결	쌍용양회(주) 주식 매각방안	의결
		보고	쌍용양회(주) 주식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11년도 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접수
54	12.05.29	의결	교보생명(주)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의결
		보고	교보생명(주)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55	12.06.08	의결	교보생명(주)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의결
		보고	교보생명(주)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부실채권정리기금 기타자산 매각 방안	의결
		보고	부실채권정리기금 기타자산 매각 방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PF채권 매각 저축은행 경영개선협약(MOU) 이행실적 보고('12. 1/4분기중)	접수
56	12.06.15	의결	쌍용건설(주)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의결
		보고	쌍용건설(주)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12년 1/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접수
57	12.06.19	의결	교보생명(주) 주식 매매계약체결(안)	의결
		보고	교보생명(주) 주식 매매계약체결(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차수	일시	종류	안 건 명	결과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 및 의사록 공개(안)	의결
58	12.07.10	의결	GM대우 수익증권 매각방안	수정
		보고	GM대우 수익증권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59	12.07.19	의결	쌍용양회(주)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의결
		보고	"쌍용양회(주)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2단계 유동화계획 만기 연장 방안	추후논의
		보고	"2단계 유동화계획 만기 연장 방안" 심사결과 보고	추후논의
		보고	12년도 1/4분기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 결과 보고	접수
60	12.07.27	의결	우리금융지주 매각 관련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기준(안)	의결
		보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관련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쌍용건설(주)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매매계약 체결(안)	의결
		보고	"쌍용건설(주)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매매계약 체결(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61	12.08.02	의결	우리금융지주 매각 관련 예비입찰제안서 접수결과 및 향후 처리방향(안)	의결
		보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관련 예비입찰제안서 접수결과 및 향후 처리방향(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쌍용건설(주)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의결
		보고	"쌍용건설(주)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2단계 유동화계획 만기 연장 방안	의결
		보고	"2단계 유동화계획 만기 연장 방안"심사결과보고	접수
62	12.08.20	의결	기타자산 1차 및 2차 매각분 매각기준(안)	의결
		보고	기타자산 1차 및 2차 매각분 매각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의결	12년 공적자금관리 백서(안)	의결
63	12.08.31	의결	GM대우 수익증권 매각기준(안)	의결
		보고	GM대우 수익증권 매각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접수
		보고	기타자산 1차 및 2차 매각분 입찰 및 계약체결 결과	접수
		보고	12년 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접수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심의위원회

차수	일시	종류	안건명
9	08.2.15	의결	2007 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결산보고서
10	08.6.30	의결	2009 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11	08.7.5	의결	2009 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12	08.9.29	의결	2008 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
13	09.2.13	의결	2008 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결산보고서
14	09.3.17	의결	2009 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
15	09.6.23	의결	2010 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
16	10.2.23	의결	2009 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결산보고서
		의결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산운용지침개정
17	10.6.21	의결	2011 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18	10.9.01	의결	2010 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
19	11.02.23	의결	2010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결산보고서
		보고	2010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산운용 성과평가
20	11.06.24	의결	2012회계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
21	11.12.15	의결	2011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
22	12.02.24	의결	2011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결산보고서
		보고	2011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산운용 성과평가
23	12.06.25	의결	2013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

□ 참석자

일자	참석위원								출석 위원수
	민상기	박경서	서지회	안종범	윤용만	임치용	금융 위원장	기재부 차관	
09.08.31	○	○	○	○	○	○	○	△	8
09.09.11	○	○	○	○	○	○	△	○	8
09.09.25	○	○	○	○	○	○	x	x	6
09.10.16	○	○	○	○	○	○	△	△	8
09.11.11	○	○	○	○	○	○	x	x	6
09.11.20	○	○	○	○	○	○	x	x	6
09.11.25	○	○	○	○	○	○	x	△	7
09.12.18	○	○	○	○	○	○	x	△	7
10.01.27	○	○	○	x	○	○	△	△	7
10.02.08	○	○	○	○	○	○	x	△	7
10.02.24	○	○	○	○	○	○	x	△	7
10.03.19	○	○	○	○	○	○	x	x	6
10.04.02	○	○	○	×	○	○	△	△	7
10.04.23	○	○	○	○	○	○	×	×	6
10.04.30	○	○	○	○	○	○	△	×	7
10.05.07	○	○	○	○	○	×	×	×	5
10.05.14	○	○	○	○	○	×	△	○	7
10.05.28	○	○	○	○	○	○	×	△	7
10.06.14	○	○	○	○	○	○	×	×	6
10.06.18	○	○	○	○	○	○	×	△	7
10.06.25	○	○	○	○	○	○	△	△	8
10.07.30	○	○	○	○	○	○	△	○	8
10.08.13	○	○	○	○	○	○	×	△	7
10.08.23	○	○	○	×	○	○	△	△	7
10.09.15	○	○	○	×	○	○	×	△	6
10.10.29	○	○	○	○	○	○	△	x	7
10.11.19	○	○	○	○	○	○	△	△	8
10.11.26	○	○	○	○	○	○	×	×	6
10.12.17	○	○	○	○	○	○	△	×	7
10.12.29	○	○	○	○	○	○	×	△	7
11.02.25	○	○	○	○	○	○	×	○	7
11.03.25	○	×	○	○	○	○	×	×	5
11.04.29	○	○	○	×	○	○	×	×	5
11.05.17	○	○	○	○	○	○	△	○	8
11.06.16	○	○	○	×	○	○	△	△	7
11.06.24	○	○	○	○	○	○	×	△	7
11.07.29	○	○	○	×	○	○	×	△	6
11.08.17	○	○	×	○	○	×	△	△	6
11.08.19	○	○	×	○	○	×	△	△	6
11.08.24	○	○	○	○	○	○	×	×	6

일자	남상구	오규택	민병훈	이재술	이기화	박영석	금융위원장	기재부 차관	출석 위원수
11.09.08	○	○	○	×	○	○	×	×	5
11.09.19	○	○	○	○	○	○	×	×	6
11.09.28	○	○	×	○	○	○	×	△	6
11.10.28	○	○	○	×	○	○	×	×	5
11.11.25	○	○	○	○	○	○	×	△	7
11.12.16	○	○	○	○	○	○	×	×	6
11.12.22	○	○	×	○	○	○	×	△	6
12.01.27	○	○	○	○	○	×	×	△	6
12.02.27	○	○	×	○	○	○	×	×	5
12.03.15	○	○	×	○	○	○	×	×	5
12.03.30	○	○	○	○	○	×	×	×	5
12.04.27	○	○	○	○	○	○	△	○	8
12.05.24	○	○	○	○	○	×	×	×	5
12.06.08	○	○	○	×	○	○	×	×	5
12.06.15	○	○	○	×	○	○	×	×	5
12.06.19	○	○	○	×	○	○	×	×	5
12.07.10	○	○	○	×	○	○	×	×	5
12.07.19	○	○	○	×	○	○	×	×	5
12.07.27	○	○	○	×	○	○	×	×	5
12.08.02	○	○	○	○	○	○	×	×	6
12.08.20	○	○	○	○	○	×	×	×	5
12.08.31	○	○	○	×	○	○	×	×	5
12.09.17	○	×	○	○	○	○	×	×	5

※ △표시는 대리출석을 의미함

□ 위원회 회의록 사본: 별첨 첨부

* '11년 9월이후 회의록과 안건은 공적자금의 지원 및 회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나 기업의 정보보호와 금융시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의결 1년 후에**(매각이 진행중인 안건은 매각이 종료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적자금상환기금 심의위원회는 **서면회의로 운영**하여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음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14. 업무용 차량 관련(2008.1~현재)

14-1 현재 보유·운영중인 관용 및 업무용 차량현황 및 보험가입 현황

기관명	보유차량 현황	용도	구입/임차 가격 (만원)	구입 (임차) 년도	보험가입 현황			
					보험사	가입일시	보험가 (원)	가입방법
금융위원회	아반떼 (01모7285)	업무용	1,277	2004	더케이 손해보험	'12.4.30 (1년)	233,840	수의계약
	에쿠스 (62허3770)	전용	월 200	2011	임차(3년) 차량이므로 해당없음			
	체어맨 (62허3508)	〃	월 110	〃				
	그랜저 (50허6171)	업무용	월 82	〃				
	아반떼 (62허3902)	〃	월 55	〃				
	아반떼 (62허3352)	〃	월 62	〃				
	뉴모닝 (06허7917)	〃	월 39	〃				
	스타렉스 (74허6597)	〃	월 66	〃				

14-2 현재 보유·운용중인 관용 및 업무용 차량의 차량별 구입 시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교통법규 위반 내역 및 범칙금 납부·미납부 내역

o 해당없음

14-3 각 기관별 보유차량 중 경차 보유 현황

기관명	보유차량 현황 (차량명 차량번호)	경차 보유 현황		
		임차가격(만원)	임차년도	비율(%)
금융위원회	뉴모닝 (06허7917)	월 39	2011	12.5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15. 기관별 에너지절감대책 관련(2008.1~현재)

15-1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혹은 상위기관으로부터 하달받은 에너지절감대책 : <별첨1> 참조

15-2 자체 수립한 에너지절감대책 : <별첨2> 참조

<별첨 1> 상위기관 에너지절감대책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환 경 부

녹색은 생활이다!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에 따른 2011년도 이행계획 제출 안내

1.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141호(2011.1.12) 및 기후대기정책과-560호(2011.2.15)와 관련입니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공공부문 기관들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행계획 작성 및 제출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http://gov.gir.go.kr/index.html)이 2011.3.10(목) 개통됨을 알려드리오니 모든 공공부문 기관들은 2011년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2011.3.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대상기관은 소속기관별로 시스템 접속 일정을 분산시켜 주시고, 대상기관의 총괄 담당자 이외의 소속기관 담당자는 3.25일까지만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며, 3.26~3.31일까지는 대상기관 총괄 담당자 1인만 접속하여 최종 입력 작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등에도 시스템 개통 및 2011년도 이행계획 제출 일정 등을 반드시 안내하여 산하 공공기관 등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및 FAQ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에 게재되었고, 헬프데스크 운영 전까지 시스템 사용 및 제도운영 등과 관련된 질문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헬프데스크 및 Q&A 운영은 시스템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가. 시스템 관련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02-6943-1329, 02-730-6393)

나. 제도운영 관련 :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02-509-7912) 및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목표팀(032-590-3454)

붙임 : 대상기관 현황 1부. 끝.

환 경 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강원대학교총장, 경북대학교총장, 경상대학교총장, 부산대학교총장, 서울대학교총장, 전남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총장, 제주대학교총장, 충남대학교총장, 충북대학교총장,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장,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강원대학교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 경상대학교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전남대학교병원장, 전북대학교병원장, 제주대학교병원장, 충남대학교병원장, 충북대학교병원장, 경인교육대학교총장, 광주교육대학교총장, 공주대학교총장, 광주교육대학교총장, 군산대학교총장, 금오공과대학교총장, 대구교육대학교총장, 목포대학교총장,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부산교육대학교총장, 서울교육대학교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순천대학교총장, 안동대학교총장,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인천대학교총장, 전주교육대학교총장, 진주교육대학교총장, 창원대학교총장, 청주교육대학교총장, 춘천교육대학교총장, 충주대학교총장, 한경대학교총장, 한국교원대학교총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한국철도대학총장, 한국체육대학교총장, 한국해양대학교총장, 한밭대학교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경북도립대학총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남도립대학총장, 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충북도립대학총장, 강릉원주대학교총장, 부경대학교총장, 한국재활복지대학총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 감사원장(행정지원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운영지원과장),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행정관리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 금융위원회위원장(행정인사과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부장관(운영지원과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운영지원과장), 외교통상부장관(운영지원담당관), 통일부장관(운영지원과장), 법무부장관(운영지원과장),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운영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운영지원과장), 고용노동부장관(운영지원과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운영지원과장), 지식경제부장관(운영지원과장), 보건복지부장관(운영지원과장), 환경부장관(운영지원과장), 여성가족부장관(운영지원과장), 국토해양부장관(운영지원과장), 국세청장(운영지원과장), 관세청장(운영지원과장), 조달청장(운영지원과장), 통계청장(운영지원과장), 검찰총장(관리과장), 병무청장(운영지원과장), 방위사업청장(운영지원과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운영지원과장), 문화재청장(운영지원과장), 농촌진흥청장(운영지원과장), 산림청장(운영지원과장), 중소기업청장(운영지원과장), 특허청장(운영지원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기상청장(운영지원과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운영지원과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주무관	정석목	행정사무관	신태섭	팀장	김정환

전결 03/09

협조자 환경연구관 최형욱

시행 기후대기정책과-903 (2011. 03. 09.) 접수 행정인사과-1320 (2011. 03. 10.)

우 427-800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6 교보빌딩 703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온실가스관리TF / http://www.me.go.kr

전화 02-3679-5080 전송 02-3679-0333 / jsm3407@me.go.kr / 대국민공개

Me First, 녹색은 생활이다 !

지 식 경 제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사용 제한 통보

1. 최근 리비아 사태 악화 등으로 급격한 유가상승 및 에너지 수급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는 위기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27(화)부로 에너지 위기 단계를 '주의 경보' 로 격상하였습니다.

* <경보단계>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주의단계는 국제유가(두바이 현물가격기준)가 5일 연속 100불/B 이상의 가격 유지시 발령

2. 이에 따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의 제한 사항' 을 별첨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별첨 1)

* <시행일시> 공공기관 : '11.3.2(수) 00:00시, 민간부문 : ' 11.3.8(화) 00:00시

3. 각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소속 · 산하기관 및 민간부문에 신속한 전파 등 조치하여 주시고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별첨3 양식에 따라 3.10(목)까지 제출(소속,산하기관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조로, 동 공고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2항 및 제78조 4항에 의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조치 사항>

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별첨1, 별첨2 신속전파 및 이행 감독

나. 광역자치단체는 소관 기초지자체를 통하여 민간부문에 별첨1을 신속히 전파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감독 강화

* 기초지자체에서 민간부문 전파 대상: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골프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주유소, LPG충전소, 아파트, 오피스텔 등 소관내 제한 대상 건물

<제출 사항(별첨 3 양식)>

가. 공고 1조(경관조명 제한) 관련, 경관조명 현황 및 소등 제외시 점등 사유
나. 공고 2조(승용차5부제) 관련 승용차5부제 담당자지정 및 자체 점검 계획

※ 자료 제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녹색협력실(031-260-4418)
(메일 : thyeom@kemco.or.kr)

별첨 1.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17호)
2. 에너지사용의 제한 공고 세부운용 요령
3. 자료 제출 양식

지식경제부장관

수신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검찰총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협경사무관 송병철 과장 이승렬 전결 02/28

협조자 주무관 민경미

시행 에너지절약협력과-252 (2011. 02. 28.) 접수 행정인사과-1145 (2011. 02. 28.)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지식경제부 / www.mke.go.kr
전화 02-2110-3937 전송 02-503-9439 / pinesong@mke.go.kr / 대국민공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공공기관 2012년 하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

- 2012.5.16(수) 국무총리 발표 -

□ **(5% 절전의무화)** 공공기관 19,000개소 5% 전기 절약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지방)공기업 등

○ 전년대비(6.1~9.21) **5% 절전을 의무화**하고, 각 부처별로 소속기관 등에 대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종합 점검

* 숨은 낭비전력 찾기운동(예시 : 공공기관내 화장실의 손말리는 온풍기 제거, 화장실 '비데'에 대기전력차단장치 부착, 조명 자동소등 시스템 설치 등)

** 각 부처(소속·산하기관), 행안부(지자체), 교육부(교육청·학교) 등이 이행실적 점검

○ 이행실적은 공공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평가에 반영

□ **(피크시 냉방 순차운휴) 냉방온도는 28℃로 제한**하고 피크시간대(14~17시) **지역별로 공공기관의 에어콘 순차운휴 ⇨ 최대 42만kW 절감**

<공공기관 지역별 피크시간 냉방기 가동중지 시간>

구분	14:00~14:30	14:30~15:00	15:00~15:30	15:30~16:00	16:00~16:30	16:30~17:00
A지역	14:00	14:45				
B지역	14:15					

* A지역(14:00~14:45, 15:00~15:30, 16:00~16:30) :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전남, 대구, 대전, 제주

* B지역(14:15~15:00, 15:30~16:00, 16:30~17:00) ; 경기, 인천, 광주, 부산, 울산, 전북, 충북, 강원

* 다만, **최대피크 발생 14:15~14:45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냉방기 가동정지**

□ **(지하철 운영간격 조정)** 전력피크 기간중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을 연장(국토부) ⇨ **4만kW 절감**

* 피크시간대(14~17시) 1~9호선 및 경인·분당선 등 13개 노선의 운행간격을 1~3분 연장

□ **(에너지절약형 근무복)** 에너지절약형 의류 입기(예시, 휘들옷*, 쿨맵시 등), 넥타이 착용 안하기 운동도 추진 **→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

* 산·들바람처럼 시원하고 가벼운 옷을 의미하며, 패션디자이너 TF에서 개발

□ **(이행체제 구축)** 지자체·시민단체 등으로 『에너지절약 대책본부』(16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 대책반)를 구성하여 절전 확산

* 시도지사 부단체장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이행실적 점검

2011년도 공공기관 동절기 에너지절약대책

1. 연간 10% 절전(특히, 동절기 피크기간중에는 전년 동월대비 10% 절전 엄격 준수)

2. 동절기 피크기간('11.12.5~'12.2.29)중 오전 11시~12시 및 오후 5시~6시 2차례 난방기 가동 중지

3. 적정 실내온도 유지(난방시 18℃ 이하)
   * 학교(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에 한함), 도서관, 병원, 민원실, 전산실, 미술품 전시실 등은 탄력 적용(지식경제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단서 참조)

4. 일과시간(오전9시~오후6시)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용 난방기기 사용 금지
   * 임산부, 장애우, 환자는 기관장 승인하에 예외적 허용

5. 복도, 화장실 조명기기 1/2 소등

6. 절전관련 안내방송 실시

   ○ 점심시간 또는 퇴근시 사무실 소등, PC끄기, 플러그뽑기 등 절전 관련 안내방송 2회/일 이상 실시

7. 내복입기 운동 확산

8.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준수

   ○ 옥외광고물 심야(23:00~익일 일출시) 소등
   ○ 엘리베이트 합리적 운행(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운행 제한 등)
   ○ 승용차 요일제 실시 등

2008. 7. 7(월) 16:00
중앙청사 CS룸(1217호)

초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2008. 7. 7(월)

행 정 안 전 부

초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08.7.6 발표된 「정부의 초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과 관련한 공용차량 및 정부청사 관리·운영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임

Ⅰ 추진방향

○ 초 고유가 시대에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분위기 조성 및 성과제고를 위해 정부부터 솔선수범

○ 수송·건물·조명에 소요되는 에너지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Ⅱ 분야별 추진방안

1. 수송부문

가. 공공기관 차량운행 억제

□ 차량 2부제 실시

○ **대상** : 장·차관 전용차량, 일반업무용 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량 단, 7인승 이상 승용차량, 수사 등 특수업무 차량 제외

* 장애인 및 어린이집 이용 직원 등은 제외 (별도 비표 등 조치)

○ **방법** : 차량끝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

* 일반인 차량은 요일제에 따라 정부청사 출입 통제

□ **공용차량 30% 운행 감축**

○ 각 기관별로 30% 운행 감축

나. 공용차량 운행 억제에 따른 보완

□ **공무원 통근버스 이용 확대**(7.14부터 시행)

○ **과천청사** : 셔틀버스 신설 및 대형버스로 교체

- 셔틀버스 신설 : 강남역, 분당, 영등포역 등
- 통근버스 교체 : 25인승 버스 6대 → 45인승으로 교체

○ **대전청사**

- 중구, 서구, 유성구, 동구 등 신설

□ **업무택시제 운영 확대**

○ **방법** : 시내 공무 출장시 공용차량 대신 영업용 택시 활용

-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조기 출근 및 심야 퇴근 시에도 활용 (일상적 출퇴근은 이용 대상이 아님)

○ **시행** : '08년 7월 15일 이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 행정기관의 운전원 신규채용 금지

다. 공용차량 유류비용 절감 대책

□ **일반업무용 차량의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확대** *'08.5.30 각부처로 기 시행

○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 교체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로 우선 전환

○ 2012년까지 50%수준이상으로 경차비율 확대(현행 19.8%)

□ **LPG차량 확대**

○ 신규구입시 LPG경차 및 LPG하이브리드차 권장('09년부터 생산 예정)

○ 운행 중인 공용차량도 LPG차량으로 구조 변경 권장

* 운행기간 4년이상, 연간 6,000km 주행수준에서 LPG로 개조시 연 35만원 유류비 절감(아반떼 기준)

○ 경제속도 준수, 주유시 가급적 70% 이하로 주유
(국민제안 채택, 연비향상)

2. 건물 및 조명부문

가. 사무실 냉·난방온도 조정 운영

○ 현재 적정 실내온도를 여름철 평균 26℃이상에서 1℃ 조정된 27℃ 이상 유지(겨울철 20℃ 이하 → 19℃이하로 조정)

나. 전등, 승강기 등 운영 감축

○ 사무실, 복도 등 공용공간 전등 추가 소등 (제거)

- 기준조도 : 300 ~ 500 룩스 → 최소기준 300 룩스 권장
- 중식시간 및 퇴근이후 사무실 일괄소등 지속 실시

○ 경관조명 및 가로등 절전

- 경관조명 금지, 가로등은 50%~70% 소등

○ 전자홍보 게시판 운영시간 단축 : 10시간(현재)→5시간

○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 4층이하 금지, 5층이상 격층 운행

※ 야간근무시 탁상스탠드 사용 권장
(부처별 구입, 실·국·과별 야근자 활용)

Ⅲ 행정 사항

○ 각 부처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절감 실천

- 구체적 절감방안이 7.15일 이전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적극 동참토록 조치

○ 소속 직원들의 이해와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개진 요망

- 문제점 및 특수 사정 등 애로 및 건의사항 적극 반영 예정

초고유가 에너지절약대책 세부 시행방안

- 초고유가 대응 국무총리 특별지시 관련 -

(지식경제부, '08. 7.11)

□ 수립목적

○ 「정부의 초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대책('08.7.6)」 및 국무총리 특별지시(2008-5호, '08.7.7)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마련

□ 분야별 세부시행방안

가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홀짝제로 전환

○ 적용일시

- '08. 7.15부터 별도지시가 있을 때 까지

○ 적용대상기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제1항(舊 제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지방공사, 동법 제76조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 적용대상 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 일반인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에 따라 공공기관 출입 통제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용주차장(환승주차장 등)은 승용차요일제를 적용하고, 랜트카 및 리스카는 홀짝제 및 승용차요일제 적용대상

○ 적용방법

- 홀수날은 홀수번호 차량, 짝수날은 짝수번호 차량 운행
- 31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홀짝제 전면해제

○ 기관의 시행의무

- 해당공공기관은 홀짝제 운행을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맞는 페널티 부과방안 마련

○ 제외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2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차량 및 7인승 이상 관용승용차량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국무총리지시 제2008-3호(2008.6.12)]

제29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 단, **경차·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 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긴급 자동차·보도용 자동차·외교용 자동차·군용 자동차·경호용 자동차·화물 자동차·특수 자동차·승합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나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50%이상 우선구매 및 2012년까지 완료

○ 승용차의 내구년한이 도래한 경우 점진적으로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로 교체

- 기관보유 승용차가 2대 이하인 경우 자율적으로 선정 가능

다 업무용차량의 운행을 30%까지 줄일 것

○ 기관실정에 맞게 운행감축방안 마련 시행

* 2부제 시행으로 50% 감축운행되나 7인승 이상 승용차량 등 예외사항을 감안하면 30%이상 감축효과 예상

라 공공건물의 실내온도를 여름철 27℃, 겨울철 19℃

○ 여름철 27℃는 최저유지기준, 겨울철 19℃는 최고유지 기준이므로 동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마 엘리베이터 4층이하 운행금지, 5층이상 격층운행

○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 지시대로 운영

- 다만, 공공기관이 일반인과 같이 사용하는 건물 등은 기관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 가능

* 환자, 장애자, 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용 가능

바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에 대한 경관조명시설의 사용제한

○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에 대한 경관조명 사용제한(금지) 적용시간은 일몰후부터 일출시까지이며,

- 유형문화재 및 사적지 등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제외 가능
-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경관조명이라도 지나칠 정도의 과다조명일 경우 기초지자체에서 사용자제 권고

사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조명구간의 가로등 부분소등

○ 적용시간 : 23:00부터 자동차 운행이 적은 익일 일출시까지
○ 적용대상 : 노폭 12미터 이상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의 가로등
○ 적용방법 : 설치된 전체 가로등에 대한 격등제 실시
○ 적용제외 : 횡단보도 주변, 안전 및 방범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아 야간 근무자가 국소조명(스텐드)을 활용할 수 있게 조치

○ 야간의 경우 근무인원의 1/3이하만 근무할 경우 사무실 조명은 소등하고 국소조명 권장

○ 각 기관별 운영지원과(회계·경리)에서는 각사무실별 국소조명수요를 파악하여 필요수량 공급.

□ 기타 및 행정사항

가 통근버스·셔틀버스 확충 및 업무용 택시제 운행확대

○ 시내 공무 출장시 공용차량 대신 영업용 택시 활용

- 조기 출근 및 심야 퇴근 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각기관별 운영지원과에서 세부시행방안 마련 시행

- 기본원칙은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사용"에 한함

○ 운영지원과(총무부서)는 통근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행정안전부는 통근버스 및 셔틀버스 운용계획에 반영

나 각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홍보강화

○ 각부처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절감을 실천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

○ 소속직원들의 이해와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끝.

초(超)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2008. 7. 6

지 식 경 제 부

◈ 정부는 4.24일 "**신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하였고, 6.7일에는 금년도 **평균 국제유가 120불**(두바이산 기준)을 상정하여 **하반기 중 경제안정기조 전환**을 골자로 한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제시

○ 아울러 **국제유가(두바이산 기준) 150불 이상을 상회**할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 중

◈ 대책발표 이후에도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은 지속**되고 있는 반면,

○ 우리의 **에너지 총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 이에 정부는 **초(超) 고유가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한 **단계별 위기관리계획 중 공공부문의 조치들을 앞당겨 시행**할 계획

○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릴 계획

순 서

Ⅰ. 최근 유가 및 에너지소비 동향

Ⅱ. 추 진 방 향

Ⅲ.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 강제

Ⅳ.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 권장

Ⅴ.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Ⅰ. 최근 유가 및 에너지 소비동향

1. 유가

□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전년평균대비 100%이상 상승**하였으며, **지난 1주간 9.3%나 상승**하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음

○ 7.4일 두바이 유가는 140불을 상회($140.70/b)함에 따라 **2차 석유위기시의 실질실효유가 수준**인 **150불***에 바짝 다가선 상태

* 2차 석유위기시의 유가('80년 평균 $36/b)를 물가상승률 및 석유의존도 등을 반영하여 환산하면 **$152/b 수준**

○ 향후 유가 전망도 **지속 상승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만이 하반기 안정세를 전망하고 있음

*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향후 6~24개월내에 배럴당 150~200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금년내 200달러 상승가능성 제기

	'07	'08.1~3	'08.4	'08.5	'08.6	08.7.1	08.7.2	08.7.3
Dubai油	68.43	91.30	102.54	119.50	129.90	136.56	136.73	140.31
WTI油	72.21	97.87	111.69	125.42	133.91	140.99	143.59	145.31

□ 현재의 **유가 수준 및 상승 속도**만으로도 국민과 언론*은 "제3차 오일쇼크"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불안 고조**

* 최근 주요언론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 강도가 약하다**는 자성론 대두

☞ 당초 **150불 초과시 발동예정이었던 1단계 위기관리조치를 앞당겨 시행**

☞ 향후 **유가동향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 조치발동 검토

2. 에너지 소비

□ 우리나라는 '04년 新고유가 이후 OECD 평균보다 **높은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 기록

○ '08년 1~5월중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

*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5.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예년보다 추운 동절기의 영향으로 난방용 에너지소비가 크게 증가

< 총에너지 소비 및 석유 소비 증가율(%) 비교 >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			석유 소비 증가율(%)**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OECD	0.7	-0.1	0.3	0.6	-0.7	-0.5
非OECD	6.1	6.3	5.5	3.0	4.1	3.8
중 국	9.2	10.8	7.7	4.2	7.8	4.6
한 국	**3.5**	**1.0**	**3.0**	**1.4**	**-0.9**	**1.8**
전세계	2.6	2.7	2.4	1.6	1.3	1.3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8

** IEA, Oil Market Report('08.6)

□ 석유 소비 역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율 유지**

○ 다만, '08.1~5월 석유제품 소비 감소(3.5%)는 초고유가로 **LNG, 전기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천연가스 및 전력 소비가 대폭 증가**

* '08.1~5월 LNG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 전력 소비는 7.3% 증가

* 휘발유(1.2%↑), 경유(2.8%↓) 등 수송용 수요감소는 미미한 반면, 납사(1.6%↓), 벙커C유 (26.3%↓) 등 산업용 수요 크게 감소

* 산업용 LNG 수요는 벙커C유 등 타 경쟁연료 수요대체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

* 화훼, 축산농가 등의 경유 대체 전기난방 등으로 농업용 전력이 전년동기대비 9.3% 증가

II. 추 진 방 향

□ 공공부문은 **사회전체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 10%감축**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강제적 조치를 통해 솔선수범**

○ 전체 에너지소비의 3.7%에 불과하지만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는 효과

○ **수송(공공부문 전체 소비의 40%), 건물(37%), 조명(23%) 등 에너지 이용 전 분야**에 대해 **핵심대책 위주**의 고강도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

□ 민간부문은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절약조치를 권장

※ 민간에 대한 강제적 절약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행 가능

○ **석유수요**와 직결된 **수송분야(전체소비의 20%)**와 **불요불급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상업분야**를 주대상으로 하여 고통분담을 호소

* 산업계는 8대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12년까지 '07년대비 **에너지원단위를 15%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도 7.5%를 절감**하는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선언할 계획 ('08.7.7, 지경부장관 참석 예정)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비중 ('06년기준)>

공공 (총소비의 3.7%, 6.4백만toe)			민간 (총소비의 96.3%, 167.1백만toe)			
수송 (40.1%)	**건물** (37.2%)	**조명** (22.7%)	**산업** (58.2%)	**수송** (20.3%)	**상업** (8.7%)	**주거** (12.8%)

Ⅲ.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 강제조치

1. 세부대책

□ 수송

○ 현재의 **승용차 요일제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승용차 홀짝제(2부제)로 전환**하여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7인승 이상 관용 승합차 제외)

○ 현 **관용차량**(15,300대)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하이브리드차로 전환** 추진

○ **관용차량의 운행 30% 감축**

□ 건물

○ 현재 **적정 실내온도**를 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여름철 27℃, 겨울철 19℃로 각각 1℃씩 조정**

○ 엘리베이터 사용제한을 현재 **3층이하 금지, 4층이상 격층운행**에서 **4층이하 금지, 5층이상 격층운행**으로 강화

□ 조명

○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

○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의 심야시간대(23:00~익일 일출시) 부분 소등**(가로등 격등제)

* 노폭 12미터 이상 구간은 1/2 감축하되, 횡단보도 주변 및 방범상 필요한 구간은 제외

○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국소조명**(스탠드 등) **활용**토록 조치

2.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 시행시기

○ 즉시 시행가능한 조치는 바로 시행하고, **승용차 홀짝제는 출·퇴근 보완대책 등을 마련후 7월15일**부터 시행

□ 시행방법

○ **국무총리 특별지시**(「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강화」)로 시달('08.7.7)

공공기관의 범위

◈ 중앙정부 43개, 지자체 272개, 교육청 199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5개 기관 등 **총819개 기관이 해당**

*다만, 국회, 법원, 청와대는 제외되나, 청와대는 자체 지시로 시행할 계획

IV.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 권장

□ 수송

○ 승용차 자율 요일제는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

○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

○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의 **통근버스** 사용, **카풀제** 확대

□ 건물

○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여름철 26℃ 이상, 겨울철 20℃이하)**를 권고하고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통해 자율적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

* 대규모 업무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법적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검토

○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영업시간 단축**

- 대중 목욕탕 등의 격주 휴무, 유흥음식점 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

□ 조명

○ 자동차 연료 소매업소(주유소, LPG 충전소 등)의 **옥외간판 및 조명사용 자제**

*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는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의 1/2만 사용

○ 대형점포(3,000㎡이상)의 **외부전시용 조명과 자동차 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 진열장 조명**의 **영업시간외 사용 자제**

○ **네온싸인 등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전기사용과 사치성 체육시설**(골프장 등)의 **조명사용** 자제

◈ 현재는 **권고사항**이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의 전환**도 검토
- 에너지 절약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세제 감면 확대 등도 병행

※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 공제** 확대(10% → 15%) 등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

○ **총리, 민간 유력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학계, 정계, 재계 등의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구성

○ 에너지절약 **이행조치사항 점검, 수급동향** 분석점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 및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강제조치 도입 검토** 등 역할 수행

Ⅴ.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 **4대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원협력 전개**

○ 총리 중앙아 순방에 이어 하반기에는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정상급 에너지외교** 전개

- 산업·인프라 협력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

* 투르크 3개 해상광구 공동개발 등 총리 중앙아 순방성과 후속조치에도 만전

○ **이라크** 등 전략 협력국가의 **최고위 인사를 초청**하고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여타 자원부국에 대해서도 **고위급 자원협력** 추진

○ 이와는 별도로 자원보유국과의 상시적 협력채널인 **자원협력위를 개최**('08년 19개국)하고 **베네수엘라, 남아공** 등에 **신규 설치**

* 카자흐스탄(8월), 페루 · 칠레(9월), 나이지리아(10월) 등

□ **석유공사 대형화방안('08.6)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산규모를 2012년까지 30만b/d**('07 5만b/d)**로 확대**

* 석유공사 대형화방안 실현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약 7%p제고('12년 18.1% → 약 25%)

<별첨 2> 자체 에너지절감대책

2011년도 공공기관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

행정인사과('11.12.5)

1 **연간 10% 절전**(특히, 동절기 피크기간(12.5~2.29)중에는 전년 동월대비 10% 절전 엄격 준수)

2 피크기간중 오전 11~12시 및 오후 5~6시 **2차례 난방기 가동 중지**

3 **적정 실내온도 유지(난방시 18℃ 이하)**

* 학교·도서관·병원·민원실·전산실·미술품전시실 등은 탄력 적용(지식경제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단서 참조)

4 **일과시간**(오전9시~오후6시)중 **개인용 난방기기 사용 금지**

* 임산부, 장애우, 환자는 기관장 승인하에 예외적 허용

5 **복도, 화장실 조명기기 1/2 소등**

6 **절전관련 안내방송 실시**

○ 점심시간 또는 퇴근시 사무실 소등, PC끄기, 플러그뽑기 등 절전 관련 **안내방송 2회/일 이상 실시**

7 **내복 입기 운동 확산**

8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준수**

○ 옥외광고물 심야(23:00~익일 일출시) 소등

○ **엘리베이트 합리적 운행(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운행 제한 등)**

○ 승용차 요일제 실시 등

공공기관 동절기 에너지절약 체크리스트

(점검대상기관명: , 점검자 :)

1 연간 10% 절전(특히, 동절기 피크기간(12.5~2.29)중에는 **전년 동월대비 10% 절전 엄격 준수**) **준수 여부 ?**

10%이상( ) 7~10%이하( ) 5~7%( ) 5%이하( )

2 피크기간중 오전 10~12시 및 오후 5~7시 **2차례 난방기 가동 중지 여부 ?**

2차례( ) 1차례( ) 실시하지 않음( )

3 적정 실내온도 유지(난방시 18℃ 이하) **준수 여부 ?**

준수( ) 탄력적 운용( ) 준수하지 않음( )

4 일과시간(오전9시~오후6시)중 **개인용 난방기기 사용 금지 여부 ?**

* 임산부, 장애우, 환자는 기관장 승인 하에 예외적 허용

준수( ) 탄력적 운용( ) 준수하지 않음( )

5 복도, 화장실 조명기기 1/2 소등 여부 ?

준수( ) 탄력적 운용( ) 준수하지 않음( )

6 절전관련 안내방송 실시 여부 ?

○ 점심시간 또는 퇴근시 사무실 소등, PC끄기, 플러그뽑기 등 절전 관련 **안내방송 2회/일 이상 실시**

실시( ) 가끔 실시( ) 실시하지 않음( )

7 내복 입기 운동 확산 여부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

8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준수

○ 옥외광고물 심야(23:00~익일 일출시) 소등 여부?

실시( ) 가끔 실시( ) 실시하지 않음( )

○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운행 제한 등) 준수 여부 ?**

준수( ) 탄력적 운용( ) 준수하지 않음( )

○ 승용차 요일제 실시 여부 ?

준수( ) 탄력적 운용( ) 준수하지 않음( )

※ 점검대상기관 관련업무담당

- 이 사 :
- 부 장 :
- 팀 장 :
- 담당자 :

공공기관 2012년 하계 에너지절약 이행 계획

(2012.6.12 행정인사과)

1. 공공기관 이행 사항

1 전년대비(6.1~9.21) 5% 절전 의무화

2 냉방온도는 28℃로 제한

3 피크시간대(14~17시) 지역별로 에어콘 순차 가동

<공공기관 지역별 피크시간 냉방기 가동중지 시간>

구 분	14:00~14:30	14:30~15:00	15:00~15:30	15:30~16:00	16:00~16:30	16:30~17:00
A지역	14:00	14:45				
B지역	14:15					

* A지역(14:00~14:45, 15:00~15:30, 16:00~16:30) :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전남, 대구, 대전, 제주
* B지역(14:15~15:00, 15:30~16:00, 16:30~17:00) ; 경기, 인천, 광주, 부산, 울산, 전북, 충북, 강원
* 다만, **최대피크 발생 14:15~14:45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냉방기 가동정지**

4 에너지절약형 의류 입기(쿨맵시 등), 넥타이 착용 안하기 운동 추진

2. 이행사항 점검

□ **(공공기관)** 자체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 **(금 융 위) 이행 점검반 운영**하여 이행사항 수시 점검

*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준수토록 유도

< 이행 점검반 운영 개요 >

○ 점검대상 : 9개 산하 공공기관*

* 금감원, 정금공, 예보, 캠코, 신보, 기보, 주금공, 거래소, 예탁원

○ 점검기간 : '12. 6 ~ 9월 (월 2회 점검)

○ 점검반 : 행정인사과, 감사담당관 각 2명

○ 점검내용 : 체크리스트*에 의한 에너지절약대책 시행 점검 (*붙임 참조)

< 붙 임 >

공공기관 하계 에너지절약 체크리스트

(점검대상 기관명 : , 점검자 :)

1 전년대비(6.1~9.21) **5% 절전 준수 여부 ?**

5%이상( ) 3~5%( ) 3%이하( )

2 최대 피크기간(14:15~14:45)중 **냉방기 가동 중지 및 순차 가동 여부 ?**

준수( ) 준수하지 않음( )

3 **적정 실내온도 유지(냉방시 28℃ 제한) 준수 여부 ?**

준수( ) 준수하지 않음( )

4 **에너지절약형 근무복 착용** 여부 및 운동 확산 실적 여부 ?

준수( ) 준수하지 않음( )

5 **숨은 낭비전력 찾기운동** 확산 여부 ?

○ 화장실 손말리는 온풍기 제거 : 준수( ), 탄력운영( ), 미준수( )
○ 조명 자동소등 시스템 설치 : 준수( ), 탄력운영( ), 미준수( )
○ 화장실 비데 대기전력차단장치 부착 : 준수( ), 탄력운영( ), 미준수( )
○ 기타 숨은 낭비전력 찾기운동 ( )

※ 점검대상기관 관련업무 담당자 확인

- 부 장 :
- 팀 장 :
- 담당자 :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관련 보고

1. 추진배경

□ 중동지역 소요사태 악화 등으로 국제유가 급등

□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2.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시행**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17호, 3.2)

< 주의단계 주요 조치내용 중 금융위 관련 부분 >

구 분	내 용
공 공 (강제)	○ 승용차 **5부제 준수** ○ 외부 **경관조명 소등**
민 간	○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 광고물** 등 : **24:00 이후 소등(강제), 23:00 이후 자발적 소등**
과태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4항 1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자치단체장에게 위임)

2. 금융위 조치계획

□ **전 직원 승용차 홀짝제 및 5부제* 철저 시행**

* 대상 : 5부제 등록 1600cc 미만 차량 및 금융위 국장급 이상, 금감원 부원장급 이상

□ 금융위·금감원 청사 **외부 경관조명 소등** 실시

□ **각 업권 별 협회에 금융기관 준수사항 협조요청**

□ **공공기관 자체 이행 점검 실적** 취합 후 지식경제부 **제출**
: 3.11 ~ 경보해제 시까지 (매주 금요일)

○ **감사담당관실과 연계**하여 직접 산하 **공공기관 실태 점검** 예정

□ 총리실 주관(관련부처 및 에너지관리공단) **특별점검반 지원예정 : 2명**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배 경〉

◇ 조달청사 입주기관(금융위, 공정위, 조달청)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공동이행 협약 체결(08.6.30)에 따라 세부 추진전략 마련 필요

◇ 고유가 극복을 위한「에너지절약 실천 국민행동」의 "10리터 석유모으기 천만인 실천운동" 에너지 캠페인에 적극 참여

1. 에너지 절약 실천계획 주요 내용(공동이행 협력 약정서)

□ 냉·난방기 가동시 적정 실내온도보다 1℃ 절감 운영

※ 냉방시 : 26℃~28℃ → 27℃~29℃, 난방시 : 17℃~19℃ → 16℃~18℃

□ 승강기·홀짝수층 운행

□ 승용차요일제 의무화 및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하기

□ 점심시간 등 비근무시간 사무실 완전 소등, 컴퓨터 끄기 및 소수인력 근무시 불필요한 지역·소등

□ 근무시간외 사무기기 및 전기제품 전원 차단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에너지 절약 3·3·3 따라잡기 캠페인*** 적극 동참

* i) 가정 :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등 끄기, 적정실내온도 지키기
ii) 사무실 : 점심시간 조명등 끄기, 미사용 컴퓨터 끄기, 엘리베이터 운행 줄이기
iii) 자동차 : 승용차요일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경제속도·경제운전 실천하기

2. 추진 전략

1 각 과별로 에너지 전도사 1인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참여 유도

o 점심시간 등 비근무시간 사무실 완전 소등, 컴퓨터 끄기 및 소수인력 근무시 불필요한 지역 소등 여부

o 근무시간외 사무기기 및 전기제품 전원 차단 여부

o **에너지 절약 3·3·3 따라잡기 캠페인** 동참 유도

→ 각 과별 **에너지 전도사**는 **주별, 월별, 분기별로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혁신행정과에 보고**(세부점검 사항 : 별첨)

→ 연말 **"우수 에너지 절약 전도사"를 선발** 포상

2 승용차 카풀제 활성화

o 거주지역 및 출·퇴근 시간 등을 중계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에 카풀 중계방 신설·운영**

3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억제하여 에너지 소비 감축

o 가정의날(매주 수요일)을 이용 정시 퇴근 유도

o 엄격한 초과근무 승인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억제

◇ 금융위 직원들이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실천 국민행동"의 "10리터 석유모으기 천만인 실천운동" 에너지 캠페인 사이트(http://oil.100.or.kr)에 가입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 실적을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독려할 예정

【별 첨】

과별 에너지 전도사 점검 사항

과 명 :　　담당자(에너지 전도사) :

분 야	점검내용	이행여부(분기)		
		주별	월별	분기별
① 청사(사무실) 에너지 절약	점심시간 사무실 소등			
	점심시간 선풍기 작동 중지			
	점심시간 컴퓨터 전원 끄기			
	퇴근시 사무실 소등			
	퇴근시 전열기 코드 뽑기			
② 승용차 카풀	승용차 카풀 직원 유무			
③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요일제 준수 여부			
	자전거 출·퇴근 직원 유무			
④ 불필요한 초과 근무 억제	가정의날 준수 여부			
	불필요한 초과근무 유무			

이행여부 : 양호(○), 보통(△), 미흡(×)　또는 유, 무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설정에 따른 2011년도 금융위원회 절감 계획

2011. 3

금 융 위 원 회
행 정 인 사 과

Ⅰ 검토 배경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10-185호(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 공공부문의 장은 **2015년까지 청사 및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량**(2007년~2009년 사용치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의 20%를 절감**하도록 목표를 설정 및 이행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FIU포함)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문별 에너지 절약을 통한 **목표 달성** 필요

Ⅱ 금융위원회 에너지 절감 목표

□ **에너지 절감 목표 대상 : 금융위원회 청사 및 업무용 차량**

< 금융위원회 청사 >

○ 현재 **민간 건물**(금융감독원)에 **임차**하고 있어, 환경부 고시 제7조5항(민간건물 임차한 경우)에 의거하여 **목표설정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전체 건물 면적 대비 임대부분 사용량을 기준으로 관리

- 단, 추후 임차청사의 경우도 **개별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별도로 **목표치를 설정 및 실적관리*** **제출 예정**

* 임차청사의 경우도 2015년까지 20%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시

⇒ 목표설정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임차청사 **실적관리 제출에 대비**하고 산하공공기관의 **에너지 절감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 **전기 사용량 절감 실시**

< 금융위원회 업무용 차량 >

○ 기준 사용 연료의 '11년도에는 12%를 절감하고, 매년 2%씩 절감하여 '15년도에 20% 절감 목표 달성

⇒ **고효율 차량 교체, 업무용 배차 조정** 등을 통해 **유류사용 절감 실시**

□ 금융위원회 에너지 절감 목표(차량)

(단위 : L)

구 분		본 부	FIU
에너지 사용량 기준*		16,117	2,600
2010년도 사용량 (기준대비 절감율)		14,374 (11%절감)	3,091 (18%초과)
2011년도	절감율	12%	12%
	사용량	14,183	2,288
2012년도	절감율	14%	14%
	사용량	13,860	2,236
2013년도	절감율	16%	16%
	사용량	13,538	2,184
2014년도	절감율	18%	18%
	사용량	13,216	2,132
2015년도	절감율	20%	20%
	사용량	12,893	2,080

* 기준양은 '07년~'09년 사용 에너지양의 평균값임

** 위 목표는 최소한의 목표치이고, 그 이상 달성되도록 독려

Ⅲ 금융위원회 에너지 절감 계획

□ 청사 전기에너지 절감

○ 에너지 절감 운동 실시

- **개인용 냉·난방기 사용 금지**, 점심시간 소등, 불필요한 야근 금지, 야근 시 개인 스탠드 사용 권장, 청사 사무실 온도 조절, 계절별 이벤트(쿨비즈, 내복입기 운동) 실시 등

□ 업무용 차량 유류에너지 절감

○ 일부 차량을 **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 및 소형차량으로 교체**

○ 회의 참석 등 **근무지내 출장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용차량 대신 반드시 대중교통(업무용택시, 지하철) 이용**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화물 적재 등 업무용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업무용 차량 불필요한 운행 금지**

○ 에코드라이브 운동 실천

- 불필요한 짐 줄이기 등 차량 다이어트 실시, 경제속도 준수 등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용차량 관리·운영 개선 방안

2008. 7. 10

금 융 위 원 회
혁 신 행 정 과

순 서

Ⅰ. 추진 배경

Ⅱ. 공용차량 운용 현황

Ⅲ. 관리·운영 개선 방안

1.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등 확대
2. 업무택시제 도입
3. 카풀 중계방 신설·운용

※ 붙임

업무용 택시제 운용세부지침

〔참고〕 업무택시 이용 관리대장

고유가 시대에 정부가 앞장서서 에너지 절감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초(超)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 및 자체감사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 마련·시행

Ⅰ 추진 배경

□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공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

□ 범국가적으로 전개되는 **에너지 절감 노력에 정부가 적극 동참**해야 할 필요성 대두

〈공용차량 제도 연혁〉

○ '73. 2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정(대통령령) (*정수·차종·차형 **승인**)

○ '03.11 관리규정 개정 (*정수·차종·차형 각 **부처 자율화**)
- 정수·운영현황을 행자부에 통보/당해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06. 3 관리규정 개정 (*제명 변경 : 「관용」→「공용」)

○ '06. 6 에너지절약 추진시책에 의거 **배기량 권고기준** 마련(지침)
-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수준**으로 자율조정

<배기량 기준 변천>

구 분	1976년	1992년	1995년	2003년	2006년(권고)
장관급	1,800cc 이상	2,000cc 이상	2,400cc 이상	부처자율	3,300cc 수준
차관급	〃	〃	2,400cc 미만	〃	2,800cc 수준

※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별로 자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제정·시행중

Ⅱ 공용차량 운용 현황

□ **보유 현황 :** 총 **8대** ('08.3~4. 7대 신규임차, '04년 1대 구입)

○ **대형 3** (에쿠스1,체어맨1,그랜저1), **중형 4** (SM5), **소형 1** (아반테)

□ **운용 현황**

○ **대형(3대) :** 위원장·부위원장 전용, 외빈의전용

○ **중형(4대) :** 특수업무용(비상임위원 업무수행 등)으로 임차

- 실제 운영은 상임위원이 주로 사용하되, 유휴시간 등에는 직원이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 (외빈의전 활용은 저조)

○ **소형(1대) :** 문서사송 및 직원 등이 사용

○ 운전기사 : 7명 (기능직3, 비정규직4('08.4~5. 신규채용))

※ 구 금감위는 **총 2대**(부위원장, 일반업무용)만 운영
* 위원장(에쿠스), 상임위원 차량(그랜저 2대)을 금감원 지원

□ **차량별 운용 현황 (FIU 포함)**

(단위 : 천원)

차종(차량번호)	임대 (구입)일	임대료 (월)	연료	유류비(월)				용 도	월평균 주행(km)
				3월	4월	5월	월평균		
에쿠스(35허7871)	08.03.06	1,485	휘발유	843	776	778	799	위원장	2,324
체어맨(47허2026)	08.04.04	1,058	휘발유	642	900	658	733	부위원장	1,885
그랜져(35허7929)	08.03.11	677	LPG	161	139	68	123	외빈 의전용	845
SM5(35허7972)	08.03.19	580	LPG	116	195	200	170	업무용(처장)	1,062
SM5(35허7959)	08.03.14	580	LPG	115	196	200	170	업무용(금융위1)	1,257
SM5(35허5560)	08.03.14	580	LPG	10	194	230	145	업무용(금융위2)	1,112
SM5(35허7958)	08.03.14	580	LPG	199	202	235	212	업무용(증선위)	1,385
아반떼(01모7285)	04.04.20	자체구입	휘발유	192	163	277	211	업무용(사송)	1,013
소나타(34허4178)	06.04.25	670	휘발유	422	463	398	428	업무용(사송)	1,200
계				2,700	3,228	3,044	2,991		

Ⅲ 관리·운영 개선 방안

-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량 등으로 대체
- 공용차량 운행을 30%감축하고 업무택시제 도입
- 홀짝제(2부제) 시행에 따라 카풀 중계방 신설·운영

《주요내용》

□ 중형(SM5) 2대를 승합차 및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

○ (필요성) 현 중형 위주의 승용차량을 7인승 이상의 승합차 및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하여 연료절감

○ (추진방법) 임대기한(2001.2)이 미경과 되었으나 계약을 해지하고 7인승 이상의 승합차 및 경차로 교체, 하이브리드차량은 자체 구입한 아반떼 승용차의 내구연한 만료(09.5)시 구입 예정

□ 업무택시제 도입

○ (제도개념) 공무수행시 업무용차량 대신 택시를 이용

○ (도입방법) 자체 업무용 택시제 도입 방안을 마련·시행

□ 홀짝제(2부제) 시행에 따라 카풀 중계방 신설·운용

○ (필요성) 홀짝제(2부제) 시행 및 공용차량 운행 30% 감축에 따라 직원들의 원활한 출·퇴근 및 업무수행시 편의성 제공

○ (추진방법) 인트라넷에 카풀중계방을 신설하여 출근·퇴근·업무시간 중 효율적인 중계 네트워크 제공

1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등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조직규모에 비해 차량보유수(8대)는 다소 많은 편으로 **추가로 소형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는 곤란**

* 행안부 및 자체감사시 차량보유가 다소 많다는 의견이 있었음

부처별 차량 운영 현황 (소속기관 제외)

부처 명	총인원	차량수	1급이상		차량 대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차량/총인원	중·대형/1급이상	중형/1급
금융위원회	**155명**	**8**	**6명**	**3.87**	**5.16**	**116.7**	**100**
기획재정부	909명	18	10명	1.10	1.98	120.0	114.3
공정위	354명	5	6명	1.69	1.41	50.0	25.0
지식경제부	742명	11	8명	1.08	1.48	87.5	60.0

○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 업무용 승용차량(그랜저 XG, SM5 4대, 아반떼 총 6대) 중 경차는 없으며 소형차(아반떼) 1대임

* 우리나라 경차 보급률 6.4%, 일본 경차 보급률 26.3%

○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일반 소형, 중형차에 비해 연료비 절감 효과가 뛰어나, 이를 적극 도입할 필요

* 경차는 소형차 대비 31%, 중형차 대비 42% 가량 연료비 절감

□ 추진 방법

○ 현재 임차기간이 만료(2011.2)되지 않았으나 보유하고 있는 중형 업무용 승용차(SM5) 4대 중 우선 **2대는 계약을 해지**하고, **7인승 이상 승합차 1대 및 경차 1대로 임차계약을 우선 전환**

○ 소유하고 있는 **소형 승용차 아반떼** 1대의 경우, **최단운행기준연한(2009.5)이 경과되면 하이브리드차로 교체 구입**

○ **중형 승용차 2대**의 경우, 임차계약이 만료(2011.2)되면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로 전환**(2012년까지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 50% 확보 준수)

2 업무택시제 도입

□ 도입 필요성

○ 에너지·예산 절감을 위해 일반업무용 승용차량의 증가 억제

○ 일반업무용 승용차량의 대체수단으로 택시 등 활용 필요성 대두

○ 홀짝제(2부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 통근버스 이용 확대방안에서 독립청사는 제외**됨에 따라 별도 대책 필요

□ 업무택시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출장 등 공무수행시 공용차량 대신 택시를 이용
- 이용요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사후 정산

○ **운영 체계**

- 이용자가 콜센터를 통해 택시를 요청·이용
- 영수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사후 결제하는 시스템

〈운영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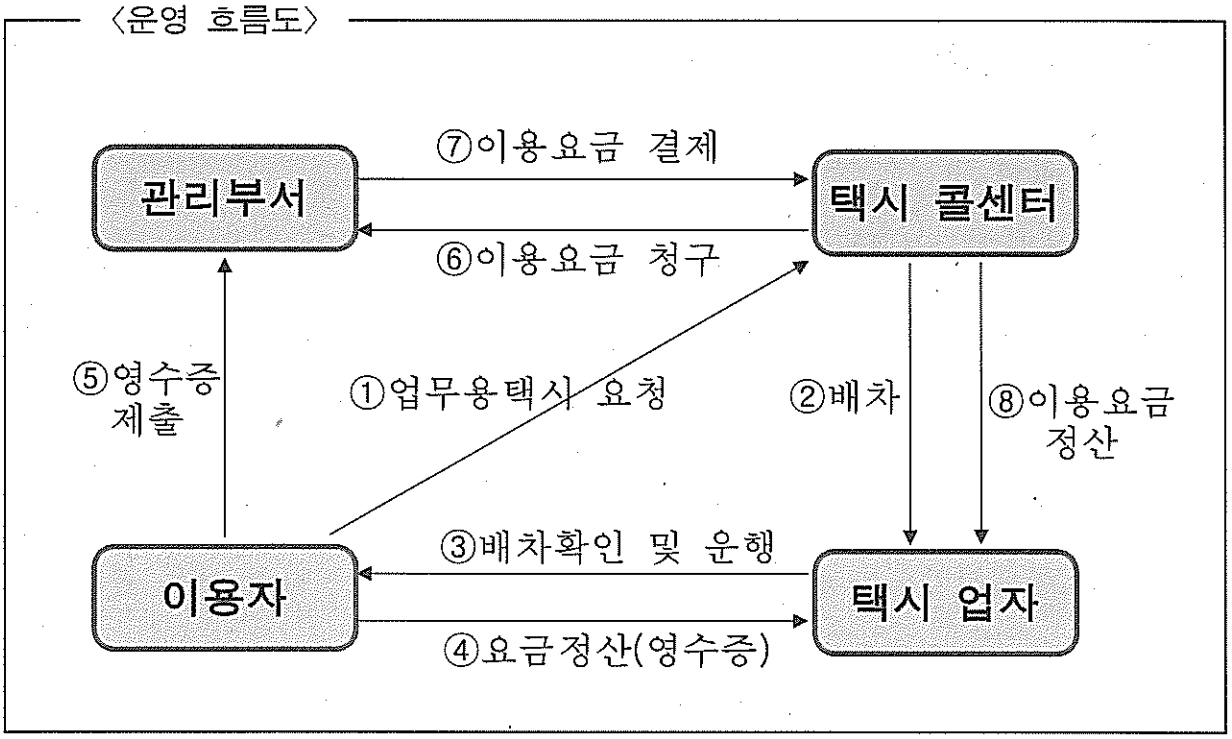

○ 이용요금 현황

(일반택시기준, '08.6월 현재)

지역구분	기본요금	주행요금	시간요금
서 울	1,900원 (최초2km)	100원 (144m당)	100원 (35초당)
경기도	1,900원 (〃)	100원 (164m당)	100원 (39초당)
대 전	1,800원 (〃)	100원 (174m당)	100원 (42초당)

* 할증요금 : 운행요금의 20%(심야할증 00:00~04:00, 사업구역외 할증)

* 콜비 : 1,000원 (일부 택시회사는 콜비 받지 않음)

○ 기대효과

- 차량유지·관리 비용 절감(차량구입비, 보험료, 유지관리비 등)

* 예) 서울특별시 본청 차량 10대 감축('06~), 도시철도공사 79% 비용 절감('05~)

- 10부제, 수리기간 등 업무용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도 이용 가능

- 교통혼잡, 주차공간 부족 해소, 택시업계 수익성 제고 등 효과

<구체적 운영 방안>

① 운용 계획

○ 차량배차 : GPS를 통한 첨단 IT방식, 최단거리에 있는 택시 지정

○ 요금정산 : 후불제(T-MONEY)카드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 콜택시 업체와 KSCC(한국스마트카드)간 요금정산 계약 체결

○ 카드발급 : 콜택시 업체에 요청하여 KSCC에서 발급

☞ 업무택시카드는 충전된 카드가 아니므로 버스, 지하철 사용 불가

< 콜택시 업체 현황 >

구분	SK나비콜	동부익스프레스		KT로지스
		엔콜	친절콜	S택시
보유차량	6,442 (법인중형 837, 개인중형 5,605)	6,205 (개인중형 5,519, 개인모범 686)	4,187 (법인중형)	4,185 (법인중형 3,957, 개인중형 228)
콜 센 터	1599-8255	1688-8181		1577-0115
브랜드 지정일	07.12.5	07.12.5	07.12.7	07.12.11

② **제도 시행일 : 08. 7. 15부터**

③ **이용요금 지급일 :** 매월 발생한 이용요금은 **다음 달 10일까지**(또는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각 **업무용 택시업체에 지급**

④ **이용대상 및 범위**

○ 원칙적으로 **공무상 근무지내 출장**에 한하여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이용이 어렵거나 신속·긴박한 업무**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용(공무상 시내출장 이용원칙)

- 의전 등 필요한 공식적 행사 참석 시에는 업무용 차량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 외 일상적인 업무협의, 회의참석 등의 경우
- 긴급 상황 발생으로 배차신청 등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 공무수행 시 무거운 짐 운반 등으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출근 전 또는 퇴근 후라도 긴급업무, 중요행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할 경우
- 관용차량 배차 및 운행 시 목적지에 주차가 어렵거나 주차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 긴급한 공무수행으로 불가피한 경우, 새벽(조기)출근 또는 심야 퇴근 시에도 활용 가능

⑤ 이용철차 및 방법

○ 이용자는 e-사람(인사관리) - 출장 - 근무지내 출장에 출장내용 입력

○ 업무용 택시업체로 전화하여 배차 요청(이용시간 예약 가능)

○ 업무용 택시업체에서는 이용자 인근의 빈차를 확인 배차(5~10분 대기)

○ 택시 이용 후 영수요금 내역서 2장 중 1장은 이용자 실명으로 서명 후 운전자에게 주고, 나머지 1장은 소관부서에 제출

○ 1개월 주기로 사용내역과 금액확인 후 업무용 택시업체로 이용요금 지급

○ 업무용 택시업체에서는 지불받은 요금을 가입 택시에 배분

※ 각 운용부서에서는 이용이유, 이용자, 이용시간, 승하차지점, 택시요금 등 관련자료를 엄격하게 확인 후 이용요금 지급

○ 각 과에서는 택시 이용시마다 관리대장 정리

※ 업무용택시제 시행에 따른 필요 재원은 **08년도**의 경우, 기존 **국내여비에서 절감**하여 충당하고, **09년도**에는 **국내여비 내에 별도 재원 확보**

⑥ 이용요금 결제방식

업무용 택시업체에서 매 익월 초 이용내역 통보

↓↑

각 운용부서에서 이용내역 확인

☞ 이용이유, 이용자, 이용시간, 승·하차지점, 운행요금 등 이용내역 확인

↓↑

각 과 및 운용부서에서는 이용내역 확인 후 업무용택시 이용관리대장 기록 및 영수증 별도 편철(감사 시 증빙자료 활용)

↓↑

해당 운용부서에서 각 업무용 택시업체에 일괄 결제 (월별 일괄 지급)

※ 업무용 택시제 운용세부지침 : "붙임" 참조

⑦ **향후 추진일정**

○ '08.7.15(화)부터 시행

○ 시행 후 나타나는 부작용 등은 시행과정에서 지속적 보완

3 카풀 증계방 신설운용

□ 도입 필요성

○ 홀짝제(2부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 **통근버스 이용 확대방안에서 독립청사는 제외**됨에 따라 별도 대책 필요

○ 홀짝제(2부제) 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출·퇴근 및 업무용 승용차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할 필요

□ 카풀 중계방 개념

○ 사내 인트라넷에 카풀 중계방 신설

- 우선 **출근, 퇴근, 업무** 등으로 구분하고,
- 출근, 퇴근, 업무 각각에 대해 지역별(강동, 분당, 평촌 여의도, 강북, 상계동 등)로 구분
- 출근은 전날 오후 3시까지, 퇴근은 퇴근 1시간 전, 업무관련은 당일 아침에 소정의 양식(차량번호,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탑승가능 인원)으로 게시

□ 향후 계획

○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08.7월말 시행 목표)

○ 시행 후 나타나는 부작용 등은 시행과정에서 지속적 보완

<붙임>

업무용 택시제 운용세부지침

1. 목적

○ 전 직원이 대외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용 택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 "업무용 택시제"라 함은 직원이 공용차량을 대신하여 우리 위원회와 업무용 택시업체 간에 택시 이용대상·절차·방법 및 이용대금 결제방식 등에 관하여 상호약정한 후 이용하고 후불로 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이용대상 및 범위

가. 원칙적으로 공무상 근무지내 출장에 한하여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이용이 어렵거나 신속·긴박한 업무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용한다.(공무상 시내출장 이용원칙)

(1) 의전 등 필요한 공식적 행사 참석 시에는 업무용 차량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 외 일상적인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 등의 경우
(2) 긴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배차신청 등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공무수행 시 무거운 짐 운반 등으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출근 전 또는 퇴근 후라도 긴급업무, 중요행사 등 공적업무를 수행할 경우
(5) 관용차량 배차 및 운행시 목적지에 주차가 어렵거나 주차비용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6) 긴급한 공무수행으로 불가피한 경우, 새벽(조기)출근 또는 심야 퇴근 시에도 활용 가능(일상적인 출·퇴근용으로 이용 불가)

4. 이용절차 및 방법

가. 이용자는 e-사람 - 출장 - 근무지내 출장에 출장내용을 입력한다.

나. 업무용 택시업체로 전화하여 배차를 요청한다.

※ 업무용 택시업체는 이용자 인근의 빈차를 확인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배차

다. 업무용 택시 이용자는 이용 후에 영수요금 내역서 2장 중 1장은 이용자 실명으로 서명한 후에 운전자에게 주고, 나머지 1장은 소관부서로 제출한다.

라. 소관 국(실) 및 과는 당월 발생한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에 대한 사용내역과 금액을 확인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또는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업무용 택시업체에 지급한다. 이 경우에 각 운용부서는 이용이유, 이용자, 이용시간 승하차 지점, 택시요금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업무용 택시업체는 지불받은 요금을 가입한 택시에 배분

5. 이용요금 지급

○ 각 운용부서(국,실)는 소관 직원이 이용한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의 지출은 소관 예산 중 국내여비과목(220-01)에서 지급한다.

6. 행정사항

○ 각 운용부서는 업무용 택시 이용 시마다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용 택시 이용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영수증은 별도로 편철한다.

○ 업무용택시 후불제카드를 분실한 경우, 소관 과에서는 업무용 택시 업체에 반드시 신고하고 혁신행정과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직원이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여 근무지내 출장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공용차량 이용자로 간주하여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7. 시행일

○ 이 지침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업무택시 이용 관리대장)

국(실) 과

월일	사용 시간	출발지-행선지	용 무	사 용 자		ID 번호	회수여부		결재	
				직급	성명		ID카드	영수증	담당자	과장

※ 출장명령부와 대조, 업무택시 이용 관리대장 기재 사항 철저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16. 중소기업지원사업 관련(2008.1~현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연도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단위: 백만원,%)

사업단	연도	총구매제품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	
		구매계획액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액	구매비율
금융위원회	10	1,707	853	50.0
	11	1,757	878	50.0
	12	1,847	924	50.0

□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단	연도	총구매제품	공공구매		
		구매액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액
금융위원회	10	5,734	2,948	-	-
	11	6,308	2,480	-	-
	12	2,524	891	14	-
	계	14,566	6,319	14	-

* 12년은 7월말 현재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17. 투자 및 출자회사 관련(2008.1~현재)

1) 가장 최근에 수립-운영한 회사 설립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2) 회사 설립-운영 현황

- 현재까지 설립되거나 설립을 추진했던 회사 현황
- 건별 당시 사업 추진 경위 및 사업계획서
- 회사별/연도별 예산 지원(출자, 대여 등) 계획 및 실적

* 총액 및 세부 지원 사항별 지원액 구분 적시

3) 연도별/회사별 감사 실적

4) 회사별 청 소속 임직원 파견 및 겸직 현황

5) 파견 및 겸직 대상 임직원의 파견 및 겸직 전후 직책 현황

6)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서

☐ 해당없음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18. 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의 주식투자현황

□ 해당자료는 산하 금융공기업에서 제출하였음

- 금융위원회 직원들의 주식투자 현황

□ 금융위원회 직원들의 주식등 금융투자상품 거래계좌 개설 및 거래 현황

연 도	현원 (명)	주식등 거래계좌 보유인원 (명)	총 계좌수	총 주문횟수	총 거래금액(원)
2010	230	34	34	396	1,497,789,120
2011	234	31	31	334	1,769,913,857
2012 (1~6월)	242	29	29	105	923,304,660

*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주식등 거래에 관한 기준」 제정·시행(2010.1.1)으로 2010년도부터 분기별로 소속 공무원의 주식등 금융투자상품 거래계좌 개설 내역 및 거래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음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19. 햇살론 실적 (2012년 8월 1일 기준)

1) 대출기준 및 징구서류

2) 대출기준 변경 연혁

3) 신용등급별 실적 (신용등급은 외부 CB(10등급))

	1등급	2등급	· · ·	· · ·	9등급	10등급	총계
대출금액							
평균금리							
연체율							
대손율							

4) 최근 5년간 분기말 실적 (2012년은 월말 실적)

	2009.1/4	2009.2/4	· · ·	· · ·	2012.6	2012.7	총계
대출금액							
평균금리							
연체율							
대손율							

5) 자산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 3), 4)항목에 대해 저축은행별 실적 제출

1 대출기준 및 징구서류

□ 대출기준 (지원대상)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 40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연소득 26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일용직·임시직포함)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자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미신고자 포함)

- 신청일 현재 창업 준비 중이거나 영업 중인 자(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으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무등록·무점포자 포함)

□ 징구서류

○ 본인확인서류, 근로 및 영업사실 확인서류 등

(표1) 근로자 구비서류

구 분			서류명칭
공·통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신 고 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제외)	직전년도 이전 입사자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당해년도 입사자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근무처 자격득실 이력 포함) 3.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일용근로자		1. 근로(고용) 계약서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3.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근로소득 미신고자			1. 근로(고용) 확인서 2.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표2)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 구비서류

접수서류 목록		비고
공통	주민등록등본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
	사업사실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무등록 자영업자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중기청 고시)」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 인적용역제공자는 소득세납부 증빙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등)
		◦ 농림어업 종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확인서 또는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 등
	연간소득 증빙서류	▪ 연간소득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3개월 이상),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3개월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창업자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 정부, 공공기관 등 창업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이수 확인서류 *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과정, 창업진흥원 '기술창업학교', 소상공인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별로 소재), 근로복지공단 창업교육
	창업준비 소요자금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공사(인테리어 등)계약서, 납품계약서(냉동기·쇼케이스·진열대 등의 설비 및 상품) 등 ◦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원본

2 대출기준(지원대상) 변경 연혁

시기	지원대상	비고
'10.7.~ '10.9.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	
'10.9	○ 신용 6등급 이하라도 연소득 4천만원이하만 대출 가능하도록 제한	
'10.11	○ 근로자 지원요건 중 '3개월이상 계속근로'를 '최근 3개월간 매달 10일 이상 근로'인 경우로 명확화 하여 이직 등 단기간 근로 공백자 지원, 90일 이내의 출산 휴가는 근로기간으로 인정	
'11.2	○ 저소득자 범위를 '연소득 2천6백만원'으로 상향조정	
'11.9~현재	○ 대환대출 실시 - 추진내용 :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한 연이율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저금리의 햇살론으로 전환 - 대출대상 : 고금리 채무를 6개월이상 정상상환 중인 자 - 대출한도 : 3,000만원 이내에서 고금리채무 해당액	

3 신용등급별 실적 (신용등급은 외부 CB(10등급))

(단위 : 억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총계
대출금액	122	334	561	1,462	3,482	6,071	5,864	2,152	390	78	4	20,520
평균금리	10%~13%											

※ 연체율 및 대손율을 알 수 없음

4 최근 5년간 분기말 실적(2012년은 월말 실적)

(단위 : 억원)

	'10. 3/4	'10. 4/4	'11. 1/4	'11. 2/4	'11. 3/4	'11. 4/4	'12. 1	'12. 2	'12. 3	'12. 4	'12. 5	'12. 6	총계
대출금액	9,755	4,104	1,402	1,247	1,233	953	227	276	316	296	350	361	20,520
평균금리	10%~13%												

※ 연체율 및 대손율을 알 수 없음

5 자산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 3, 4항목에 대해 저축은행별 실적 제출

(1)신용등급별 실적

① 현대스위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총계
대출금액	9	41	125	52	117	116	195	32	-	-	687
평균금리	13.00	13.20	13.10	13.30	13.20	13.40	13.20	13.30	-	-	-

② HK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총계
대출금액	-	8	44	142	222	1,174	824	159	-	-	2,573
평균금리	-	13.50	13.00	13.10	13.10	13.00	13.10	13.10	-	-	-

③ 경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총계
대출금액	-	-	-	43	107	426	390	128	22	-	1,116
평균금리	-	-	-	12.49	12.36	12.28	12.63	12.72	12.74	-	-

④ 동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총계
대출금액	-	57	349	559	1,222	1,352	1,710	543	36	8	5,836
평균금리	-	11.60	11.90	12.10	12.00	12.20	12.20	12.20	12.90	12.40	-

⑤ 현대스위스2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총계
대출금액	10	-	174	87	108	255	312	179	4	-	1,129
평균금리	12.90	-	13.20	13.40	13.30	13.30	13.20	13.80	14.10	-	-

⑥ 서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총계
대출금액	-	10	-	-	4	25	31	3	-	-	73
평균금리	-	13.35	-	-	13.29	13.30	13.59	13.55	-	-	-

⑦ 진흥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총계
대출금액	-	-	7	7	43	60	51	83	25	23	299
평균금리	-	-	11.93	11.93	12.00	12.06	12.06	12.12	12.23	12.71	-

⑧ 신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총계
대출금액	-	-	-	-	24	49	87	42	4	-	206
평균금리	-	-	-	-	14.00	14.00	13.90	14.00	13.20	-	-

⑨ 모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총계
대출금액	-	14	24	42	205	266	282	70	8	4	915
평균금리	-	10.00	9.20	11.13	11.02	10.23	10.91	11.74	13.68	14.15	-

⑩ 푸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총계
대출금액	-	-	18	74	48	528	309	122	35	-	1,134
평균금리	-	-	13.18	1.28	13.33	13.23	13.26	13.22	13.24	-	-

(2)최근 5년간 분기말 실적

① 현대스위스

구분	10년 3/4	10년 4/4	11년 1/4	11년 2/4	11년 3/4	11년 4/4	12년 1월	12년 2월	12년 3월	12년 4월	12년 5월	12년 6월	12년 7월	총 계
대출금액	165	173	105	80	70	30	-	5	3	-	33	4	19	687
평균금리	13.20	13.30	13.20	13.20	13.10	13.30	-	13.50	13.30	-	13.10	13.20	13.00	-

② HK

구분	10년 3/4	10년 4/4	11년 1/4	11년 2/4	11년 3/4	11년 4/4	12년 1월	12년 2월	12년 3월	12년 4월	12년 5월	12년 6월	12년 7월	총 계
대출금액	456	549	187	123	131	59	12	10	25	5	7	3	6	2,573
평균금리	12.90	13.00	13.10	13.70	13.70	13.70	13.40	13.40	13.40	13.40	13.10	13.10	13.00	-

③ 경기

구분	10년 3/4	10년 4/4	11년 1/4	11년 2/4	11년 3/4	11년 4/4	12년 1월	12년 2월	12년 3월	12년 4월	12년 5월	12년 6월	12년 7월	총 계
대출금액	891	177	-	8	32	-	-	-	8	-	-	-	-	1,116
평균금리	12.00	12.19	-	12.72	11.91	-	-	-	11.63	-	-	-	-	-

④ 동부

구분	10년 3/4	10년 4/4	11년 1/4	11년 2/4	11년 3/4	11년 4/4	12년 1월	12년 2월	12년 3월	12년 4월	12년 5월	12년 6월	12년 7월	총 계
대출금액	274	80	223	985	739	685	122	174	221	483	589	862	399	5,836
평균금리	13.30	13.60	12.00	11.40	11.50	12.60	12.90	12.20	12.30	12.20	12.30	12.20	12.10	-

⑤ 현대스위스2

구분	10년 3/4	10년 4/4	11년 1/4	11년 2/4	11년 3/4	11년 4/4	12년 1월	12년 2월	12년 3월	12년 4월	12년 5월	12년 6월	12년 7월	총 계
대출금액	224	136	136	177	133	18	-	-	9	-	7	-	289	1,129
평균금리	13.30	13.50	13.30	13.30	13.80	13.10	-	-	13.30	-	13.20	-	13.10	-

⑥ 서울

구분	10년 3/4	10년 4/4	11년 1/4	11년 2/4	11년 3/4	11년 4/4	12년 1월	12년 2월	12년 3월	12년 4월	12년 5월	12년 6월	12년 7월	총 계
대출금액	52	21	-	-	-	-	-	-	-	-	-	-	-	73
평균금리	12.94	12.98	-	-	-	-	-	-	-	-	-	-	-	-

⑦ 진흥

구분	10년 3/4	10년 4/4	11년 1/4	11년 2/4	11년 3/4	11년 4/4	12년 1월	12년 2월	12년 3월	12년 4월	12년 5월	12년 6월	12년 7월	총 계
대출금액	227	56	-	16	-	-	-	-	-	-	-	-	-	299
평균금리	11.92	12.18	-	12.82	-	-	-	-	-	-	-	-	-	-

⑧ 신라

구분	10년 3/4	10년 4/4	11년 1/4	11년 2/4	11년 3/4	11년 4/4	12년 1월	12년 2월	12년 3월	12년 4월	12년 5월	12년 6월	12년 7월	총 계
대출금액	27	-	-	27	121	31	-	-	-	-	-	-	-	206
평균금리	13.60	-	-	13.80	13.80	14.20	-	-	-	-	-	-	-	-

⑨ 모아

구분	10년 3/4	10년 4/4	11년 1/4	11년 2/4	11년 3/4	11년 4/4	12년 1월	12년 2월	12년 3월	12년 4월	12년 5월	12년 6월	12년 7월	총 계
대출금액	151	106	20	54	427	143	-	-	6	-	8	-	-	915
평균금리	12.90	13.09	13.17	10.65	9.50	10.20	-	-	10.00	-	10.40	-	-	-

⑩ 푸른

구분	10년 3/4	10년 4/4	11년 1/4	11년 2/4	11년 3/4	11년 4/4	12년 1월	12년 2월	12년 3월	12년 4월	12년 5월	12년 6월	12년 7월	총 계
대출금액	890	69	10	-	14	-	-	-	-	39	32	32	48	1,134
평균금리	13.24	13.42	13.56	-	13.90	-	-	-	-	13.31	13.20	13.13	13.02	-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20. 미소금융 실적 (2012년 8월 1일 기준)

1) 대출기준 및 징구서류

2) 대출기준 변경 연혁

3) 신용등급별 실적 (신용등급은 외부 CB(10등급))

	1등급	2등급	· · ·	· · ·	9등급	10등급	총계
대출금액							
평균금리							
연체율							
대손율							

4) 최근 5년간 분기말 실적 (2012년은 월말 실적)

	2009.1/4	2009.2/4	· · ·	· · ·	2012.6	2012.7	총계
대출금액							
평균금리							
연체율							
대손율							

1 대출기준 및 징구서류

□ 대출기준 (지원대상)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계층

- 다만,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되더라도 재평가하여 7등급 이하면 지원대상에 포함

○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자

□ 징구서류

※ 전체 징구 서류 중 **대출 종류 및 신청인 상황**에 맞는 **서류만 징구**

구분		구비서류
기본서류		□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재산관련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ㅇ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ㅇ 상가·주택 임대차계약서 ㅇ 자동차등록증 등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보고서(필요시) □ 금융거래확인서(필요시)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필요시) □ 기타 필요서류
추가서류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및 창업임차자금	□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 창업교육수료증(최근 3월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재계약) □ 사업장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종 1년간/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재계약) □ 자금용도 및 활용 계획서(필요시)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 무등록사업자확인(진술)서

2 대출기준(지원대상) 변경 연혁

○ 미소금융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

시기	지원대상*	비고
'09.12.~ '10.6.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소득·저신용계층	
'10.7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계층 ○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자	
'10.8 ~ 현재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계층 - 다만,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되더라도 재평가하여 7등급 이하면 지원대상에 포함 ○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자	

* 확대 내용은 밑줄로 표시

3 신용등급별 실적 (신용등급은 외부 CB(10등급))

('12.7.31.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대출금액(억원)	14	157	289	411	352	375
평균금리	4.5% 내외 (무등록사업자금은 1~2%)					
연체율*	0.0	0.0	0.0	0.1	0.1	0.2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무등급	총계
대출금액(억원)	1,569	1,200	183	80	17	4,647
평균금리	4.5% 내외 (무등록사업자금은 1~2%)					
연체율*	3.2	4.6	16.9	19.1	11.7	3.2

※ 신용등급 1~6등급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계층

* 3개월 이상, 납입대상대출액 기준(=연체자채권잔액/납입대상자채권잔액)

* 현재 대손처리한 실적은 없음

4 최근 5년간 분기말 실적 (2012년은 월말 실적)

('11.7.31. 기준)

	2010.1/4	2010.2/4	2010.3/4	2010.4/4	2011.1/4	2011.2/4	2011.3/4	2011.4/4
대출금액 (억원)	47	62	211	475	490	763	626	670
평균금리	4.5% 내외 (무등록사업자금은 1~2%)							
연체율	-	-	0.2	0.3	0.8	1.1	1.7	2.0

('11.7.31. 기준)

	2012.1월	2012.2월	2012.3월	2012.4월	2012.5월	2012.6월	2012.7월	총계
대출금액 (억원)	165	213	202	172	182	172	197	4,647
평균금리	4.5% 내외 (무등록사업자금은 1~2%)							
연체율	2.1	2.3	2.5	2.8	3.0	3.1	3.2	-

※ 미소금융은 '09.12월부터 시작하여 2010. 1/4분기 이후 대출실적 산정

※ 연체율은 3개월 이상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21.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졸채용계획'

□ 은행, 금투회사, 보험사, 여전사 등의 고졸채용계획은 다음과 같이 파악됨

< 2012년 금융권 고졸채용 계획 (단위 : 명) **>**

구분	'12년 계획
은행(18개)	1,130
금투(160개)	362
보험(21개)	1,054
여전(62개)	501
합계	3,047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22.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 확대 스케줄" 및 실적

※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아 집계한 자료입니다.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 확대 계획

(단위 : %)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16말
고정금리*	2.1	6.2	11.1	17.0	23.5	30.0
비거치식	7.3	10.4	14.2	19.0	24.5	30.0

- 이행 현황

(단위 : %)

	'11말
고정금리*	3.1
비거치식	7.7

* 고정금리 비중은 단기(만기 3년 미만) 고정금리 대출은 제외되는 등 엄격한 인정기준에 따라 산출

** 은행별 이행실적은 연도별로 점검하며, 참고로 '12.6월말 고정금리 비중은 6.5%,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10.0%임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23.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의 외형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발송한 공문사본

☐ 해당없음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24. 최근5년간(2012년 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신용카드 불법 모집인에 대해 부과한 벌금·과태료 현황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일	모집인명	소속 카드사명	조치 내용
2011.6.1	이OO	신한카드㈜	과태료 3.7백만원
〃	정OO	삼성카드㈜	과태료 1.2백만원
〃	김OO	삼성카드㈜	과태료 3.7백만원
〃	이OO	삼성카드㈜	과태료 3.7백만원
〃	김OO	현대카드㈜	과태료 1.2백만원
〃	박OO	롯데카드㈜	과태료 2.5백만원
〃	임OO	롯데카드㈜	과태료 1.2백만원
〃	임OO	롯데카드㈜	과태료 2.5백만원
〃	박OO	롯데카드㈜	과태료 1.2백만원
2012.5.2	정OO	삼성카드㈜	과태료 1.2백만원
〃	김OO	삼성카드㈜	과태료 3.7백만원
〃	이OO	신한카드㈜	과태료 3.7백만원
〃	김OO	현대카드㈜	과태료 1.2백만원
〃	박OO	롯데카드㈜	과태료 2.5백만원

※ '10.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0.6.13일 시행)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동법 제72조)이 신설됨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25. 저축은행이 발급하는 대출카드(마이너스 카드)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 저축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취급 근거

○ **마이너스 통장**도 자금 **대출의 한 유형**으로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급 가능

□ 저축은행의 '마이너스 카드' 발급 근거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은 **해당 계좌에 대한 직불카드 발행** 가능

<참고> : 관련 조문

제11조(업무)①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4. 자금의 대출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26.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

□ 2008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계약방식
1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08.07.04~ 08.10.03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30	경쟁→수의
2	외환시장 발전방향	08.07.11~ 08.08.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19	수의계약
3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08.07.22~ 08.12.21	아주대 산학협력단 (이진국)	40	경쟁→수의
4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08.07.28~ 08.10.26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30	경쟁→수의
5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08.07.28~ 08.11.20	연세대 산학협력단 (연강흠)	22	경쟁→수의
6	FTA,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08.08.01~ 08.12.24	법무법인 태평양 (정의종)	40	수의계약
7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08.08.06~ 08.11.04	(사)국제금융센터 (오창석)	46	경쟁→수의
8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 효율화 방안	08.08.13~ 08.12.12	언스트앤영 어드바이저리㈜ (정태수)	37	경쟁계약
9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 영향 분석	08.08.18~ 08.10.17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20	수의계약
10	홈페이지 개편 연구개발	08.11.05~ 08.12.26	(주)사이버 이메지네이션	30	수의계약
11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08.11.27~ 08.12.26	동국대 산학협력단 (이관제)	25	경쟁→수의
12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 전문가 의견조사	08.12.12~ 08.12.29	KDI경제정보센터 (이용수)	19	수의계약

※ 계약방식 "경쟁→수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2호에 따라 2회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 2009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계약방식
1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09.04.13~ 09.08.14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30	수의계약
2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09.03.16~ 09.12.16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45	경쟁→수의
3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09.06.01~ 09.08.31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20.5	수의계약
4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09.06.10~ 09.08.15	연세대 산학협력단 (최흥식)	40	수의계약
5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09.05.13~ 09.11.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용협)	30	수의계약
6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09.05.28~ 09.11.11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28.8	경쟁→수의
7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09.04.21~ 09.08.28	서울대 산학협력단 (김대일)	30	경쟁→수의
8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09.07.09~ 09.11.30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35	수의계약
9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09.08.05~ 09.12.02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32	경쟁→수의
10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09.08.28~ 09.12.28	아주대 산학협력단 (이윤제)	35	경쟁→수의
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09.10.07~ 09.12.06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30	수의계약
12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사례 연구	09.10.15~ 09.12.17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40	수의계약
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수취 비은행금융 회사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09.09.30~ 09.12.05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20	수의계약
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09.09.18~ 09.12.17	(사)한국보험연구원 (유경원)	20	수의계약
15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방안 연구	09.10.08~ 09.12.23	한국금융학회 (이인호)	20	수의계약
16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방안 연구	09.11.11~ 09.12.10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23	수의계약
17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09.09.16~ 09.11.16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20	수의계약

□ 2010년

연번	과 제 명	계약 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계약 방식
1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10.03.26~ 10.07.25	한국개발연구원 (손욱)	30	수의계약
2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10.04.01~ 10.07.31	서울대 산학협력단 (정순섭)	30	수의계약
3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10.04.19~ 10.08.31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40	수의계약
4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10.05.28~ 10.07.31	법무법인 율촌 (김정수)	30	경쟁→수의
5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10.04.13~ 10.07.12	한국개발연구원 (연태훈)	45.5	경쟁→수의
6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	10.06.09~ 10.7.30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30	수의계약
7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10.04.09~ 10.09.03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칠)	30	수의계약
8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10.05.01~ 10.10.31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20	수의계약
9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10.08.30~ 10.12.20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30	수의계약
10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와 평가	10.09.16~ 10.12.15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30	수의계약
11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10.09.20~ 10.12.20	한국금융연구원 (김정한)	25	수의계약
12	신용정보 유통체계 개선방안	10.10.11~ 10.12.11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30	수의계약
13	국내은행 해외 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 감독 방안	10.10.11~ 10.12.11	한국금융연구원 (서근우)	25	수의계약
14	기업경영 안정 등을 위한 상품파생시장 제도 개선방안	10.10.15~ 10.12.14	서울대 산학협력단 (안동현)	30	수의계약
15	회계감독제도 개편 등에 대응한 감리조치기준 개선안 연구	10.10.15~ 10.12.14	한국법제연구원 (이준호)	30	수의계약
16	우리나라 특정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10.04.20~ 10.11.30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30	경쟁→수의
17	금융회사 자금세탁 판단지표(Rule)의 유용성 연구	10.10.27~ 10.12.27	(주)데이타메이션 (한미혜)	27.7	경쟁→수의
18	한국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10.10.25~ 10.12.20	KAIST, 삼성경제연구원 (이병태)	47.5	수의계약
19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중 자본시장 관련 규제내용 및 시사점	10.11.03~ 10.12.20	자본시장연구원 (정찬우)	10	수의계약
20	미국 금융개혁과 보험규제에 대한 시사점 연구	10.11.03~ 10.12.20	보험연구원	3	수의계약

□ 2011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계약방식
1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	11.01.27~ 11.06.02	금융연구원 (이명활)	40	수의계약
2	금감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개선방안	11.04.06~ 11.05.30	금융연구원 (이병윤)	20	수의계약
3	회계산업 중장기발전 방안	11.05.02~ 11.06.30	한국회계학회 (이창우)	30	수의계약
4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백서	11.06.27~ 11.09.26	KDI (정찬우)	15	수의계약
5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백서	11.07.01~ 11.12.30	KDI (고영선)	50	수의계약
6	대형 IB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연구	11.07.11~ 11.11.04	자본시장연구원 (장정모)	30	수의계약
7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11.07.26~ 11.11.30	KDI (천규승)	25	경쟁→수의
8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11.08.19~ 11.10.31	법무법인 태평양 (정의종)	29	경쟁→수의
9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계약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11.09.23~ 11.12.15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30	수의계약
10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이 자금세탁 등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위험과 그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11.10.04~ 11.12.20	김&장법률사무소 (서문식)	39	경쟁→수의
11	비금융전문직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구	11.10.12~ 11.12.20	금융연구원 (이윤석)	44	경쟁→수의
12	금융회사간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관리감독 개선 방안	11.10.19~ 11.12.16	금융연구원 (이규복)	30	수의계약
1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 도입방안	11.10.19~ 11.12.20	금융연구원 (김동환)	30	경쟁→수의
14	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11.10.25~ 11.12.15	금융연구원 (연태훈)	30	수의계약
15	부동산개발금융 제도개선방안 연구	11.10.26~ 11.12.25	건국대산학협력단 (고성수)	30	경쟁→수의
16	외은지점 규율체계 정비관련 주요 검토사항	11.10.27.~ 11.12.27.	금융연구원 (서병호)	30	수의계약
17	외환, 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11.07.15~ 12.02.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용)	35	경쟁→수의
18	청년·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	11.12.22~ 12.04.21	금융연구원 (구본성)	30	수의계약

☐ 2012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계약방식
1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2.04.06~ 12.06.03	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20	수의계약
2	ELS 및 DLS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12.04.24~ 12.09.23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26	경쟁→수의
3	고령화 대비 공·사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12.04.30~ 12.08.31	보험연구원 (김대환)	30	수의계약
4	금융세제 현황 및 발전 방향	12.05.04~ 12.08.31	금융연구원 (연태훈)	30	경쟁→수의
5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12.05.18~ 12.10.31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39	경쟁→수의
6	기업공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2.05.25~ 12.08.23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35	경쟁→수의
7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 실태조사	12.06.08~ 12.07.07	한국갤럽연구소 (박병일)	10	수의계약
8	주요 신흥국과의 전략적 금융 협력 강화 방안	12.06.25~ 12.10.31	대외경제연구원 (강대창)	26	경쟁→수의
9	금융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12.07.06~ 12.10.05	한국재정학회 연세대 산학협력단 서강대 산학협력단 (원윤희 외 3명)	20	경쟁→수의
10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12.07.17~ 12.11.20	금융보안연구원 (김영태)	40	경쟁→수의
1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 체계 개편방향	12.07.26~ 12.11.26	한국연금학회 (신성환)	30	경쟁→수의
12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 방안	12.07.30~ 12.10.29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20	수의계약
13	가계부채 미시분석	12.08.16~ 12.11.15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40	경쟁→수의
14	핵·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금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12.08.20~ 12.12.20	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35	경쟁→수의
15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상품정보 제공 방안	12.09.10~ 12.11.30	서울대 산학협력단 (나종연)	34	경쟁입찰
16	新 FATF 국제규범 주요 내용과 대응전략(금융부문 중심)	12.09.13~ 12.12.30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35	경쟁입찰

<별첨 > 2008~2012 연구용역

□ 별도제출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27. 최근 5년간 개최한 대부업정책협의회 의사록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 대부업정책협의회

회 차	일 시	회의안건	출석위원
제1차	'06.12.27	ㅇ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 운영방안 ㅇ부처별 추진과제	경제부총리, 금감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제2차	'07.6.5	ㅇ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ㅇ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제정추진 ㅇ대형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 ㅇ실태조사 정례화 ㅇ허위·과장광고 규제	경제부총리, 금감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자부 제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국조실 기획차장
제3차	'07.11.5	ㅇ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제정 ㅇ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제 구축 ㅇ대부업법·이자제한법 홍보 강화 ㅇ서민금융 공급 확대	재경부장관, 금감위 부위원장, 법무부 장관, 행자부 제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제4차	'08.1.29	ㅇ대부업 관리감독상 지자체와 협력 강화 ㅇ사금융이용자 실태조사 ㅇ대부업법령 개정	재경부장관, 금감위 부위원장, 법무부 차관, 행자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 공정위 사무처장
제5차	'08.6.3	ㅇ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ㅇ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ㅇ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ㅇ금융소외자 지원방안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담당과장, 행안부 담당과장, 공정위 담당과장
제6차	'08.9.9	ㅇ대부업법 개정 추진 ㅇ제4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 ㅇ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ㅇ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회 차	일 시	회의안건	출석위원
제7차	'08.12.15	ㅇ대부업 관리·감독 우수 지자체 포상 ㅇ'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ㅇ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ㅇ제4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차관보, 행안부 지역경제발전과장
제8차	'09.3.30	ㅇ'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ㅇ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계획 ㅇ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ㅇ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ㅇ제5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 ㅇ사이버금융감시반 운영 현황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공정위 약관제도과장
제9차	'09.4.24	ㅇ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금융위원장, 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행안부 지역경제과장, 공정위 사무처장
제10차	'09.10.15	ㅇ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추진실적 ㅇ대부업 관련제도 개선 추진동향 ㅇ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실적 ㅇ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ㅇ대부업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서면 회의
제11차	'09.12.30	ㅇ서민금융감독대상 포상계획(안) ㅇ대부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ㅇ사금융 종합애로지원센터 개소	서면 회의
제12차	'10.4.28	ㅇ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ㅇ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인하 방안	서면 회의
제13차	'10.7.23	ㅇ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및 계획 ㅇ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현황 ㅇ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행위 근절방안 ㅇ제7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면 회의

회 차	일 시	회의안건	출석위원
제14차	'10.11.03	ㅇ '1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ㅇ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ㅇ 불법 사금융 단속실적 및 향후계획 ㅇ 대부업체 대출금리 및 불법광고 점검 결과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제15차	'11.5.13	ㅇ '1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ㅇ 불법 사금융 단속실적 및 향후계획 ㅇ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서면 회의
제16차	'11.11.29	ㅇ '1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ㅇ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ㅇ 불법 사금융 단속실적 및 향후계획 ㅇ 대부시장 최근 동향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서면 회의
제17차	'12.5.10	ㅇ '1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ㅇ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ㅇ 불법 사금융 척결 관련 지자체 추진 상황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보, 법무부 검찰국장, 행안부 차관보, 공정위 사무처장, 금감원 부원장보

□ 회의 결과

※ 별첨 자료 참조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28. 최근 5년간 대부광고 규제 강화 연혁

1 '09. 1. 21, 대부업법 개정

① 대부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규제 신설**

- 대부업자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도록 함

②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 대부업자등이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

2 '11. 11. 30,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①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대부업자등이 방송 및 지면을 통하여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토록 함

- 또한,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방송·인터넷·옥외간판 등 광고매체별 광고의 표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② 대부업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업무수행

- 대부업계 스스로 과다·과장 광고를 자제함으로써 건전한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업협회의 업무에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관련 사항을 추가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29. 최근 5년간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교육 관련 예산/결산 현황 및 금융교육 실적

1. 금융교육 관련 예산/결산 현황

□ 2011년도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신규사업으로 최초 편성

(단위 : 백만원, %)

11년도 추진 사업	예산	집행	집행률
금융소비자 관련 현황조사	40	40	100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70	60	85.7
금융교육 협의회 운영 등	18	12	66.6
계	128	112	87.5

2. 금융교육 실적 및 향후 계획

□ **금융교육의 기본방향 수립** 및 **금융교육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금융교육협의회**」를 구성*(09.12)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개별협회 등 13개 기관

○ 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10.1)하여 금융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10년도 금융교육 추진방안 마련*

*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 운영활성화,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은퇴설계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10.11)하여 10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11년도 추진방향 마련*

* 금융소비자 관련 현황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금융교육 중장기 비전 마련 및 소비자편에선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 등

○ 제3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11.9)하여 「금융교육 중장기 비전」 등 관련 연구용역 과제 반영*

* 금융이용능력 및 이해도 조사결과 보고, 금융교육 중장기 비전 및 금융교육 콘텐츠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등

○ 제4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11.11)하여 11년도 금융교육 추진현황 및 12년도 추진방향 마련*

* 기관별 금융교육 추진실적 공유 및 내년도 업무계획 마련

○ 제5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11.12)하여 중장기 금융교육 비전 및 로드맵 실행방안 논의*

* 단체별 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단기 과제에 대한 분담방안 논의 및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개발 완료 보고

○ 제6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12.7)하여 성인대상 표준콘텐츠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 금융교육 표준콘텐츠 활용방안(e-book 및 웹페이지 구축 관련) 및 금융교육 성과진단과 평가체계 구축 필요성 등

□ **금융능력 및 금융이해도 조사(KDI, 11.8 완료) 등** 금융교육 관련 연구용역 등 수행

○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및 콘텐츠개발 사업** 실시완료(KDI, 11.12)

□ 생활금융 내용을 **일반 성인의 눈높이에 맞춰 온라인 교재(e_book)**로 제작하여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12.5)

*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총 6개 분야(금융회사 이용 및 저축하기, 알면 유익한 금융제도, 신용관리 및 대출과 상환, 금융투자 및 연금, 보험, 재무설계)로 구성

□ 표준교육 콘텐츠를 **웹페이지 형태로 개발 예정**('12년말)

□ **금융교육의 기본방향 수립** 및 **금융교육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금융교육 국가전략 수립 추진**('12년말)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30.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부실금융기관 리스트

중소금융과

□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부실금융기관 리스트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 부실금융기관 지정리스트

순번	의결일자	제 목
1	2012.05.06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2	2012.05.06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3	2012.05.06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4	2012.05.06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5	2011.11.04	제일이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6	2011.09.18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7	2011.09.18	제일이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8	2011.09.18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9	2011.09.18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10	2011.09.18	파랑새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11	2011.09.18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12	2011.09.18	대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13	2011.08.05	(울산)경은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14	2011.04.29	(전북)전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15	2011.04.29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16	2011.04.29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 등 조치 통보
17	2011.04.29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18	2011.04.29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19	2011.04.29	(전남)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20	2011.04.29	(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통보
21	2011.02.22	(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등 조치 통보
22	2011.02.19	(전북)전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등 조치 통보
23	2011.02.19	(전남)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등 조치 통보
24	2011.02.19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등 조치 통보
25	2011.02.19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등 조치 통보
26	2011.02.17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등 조치 통보
27	2011.02.17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등 조치 통보
28	2011.01.14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통보
29	2009.12.31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통보
30	2009.08.11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통보
31	2008.12.26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통보

보험과

□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부실금융기관(보험회사)은 아래와 같습니다.

권 역	기 관 명	지 정 일	금융위 차수
보 험	그린손보(주)	2012.05.16	10차

제1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2. 5. 1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2년 5월 16일(수) 14:00~15:5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원장

추　경　호　부위원장

홍　영　만　위　　원

박　원　식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심　인　숙　위　　원

※ 최수현 부원장 대리참석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12년도 제9차 금융위 및 제2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 보고

□ 2012년도 제9차 금융위 및 제2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33호 **『그린손해보험㈜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법규상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해주기 바라며, 추가 부실방지를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기 바람

특히, 적기시정 조치기간 중 대주주나 임원 등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파견감독관 등이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해주기 바라며,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처리방안별 장단점과 예상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 면밀하게 준비해줄 것을 요청함

⇒ 원안 의결함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31.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당시 의사록

□ 금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지정 당시 의사록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지정 당시 의사록

위 원 장

기획조정관

의사운영정보팀장

제1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8. 12. 2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12월 26일(금) 14:20~17:1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전 광 우	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이 승 일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281호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8. 1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8월 11일(화) 07:30~07:4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창　용　　부위원장

김　종　창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채　희　율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나. 의결안건 심의

□ 의안 제191호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사후 어떤 대책이 마련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거나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부하여 타 금융기관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여신거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 대출 취급은 제한되지만 기존 대출금의 기일 연장은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답변)

○ 향후 예금보험공사의 처리방안에 대해 질의함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원칙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며 계약이전 결정시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저축은행에 계약이전 후 으뜸저축은행의 순자산 부족분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존하고 향후 동 가교저축은행은 매각할 예정이라고 답변)

○ 제주도의 2개 저축은행 중 1곳이 적기시정조치 되는 것이므로 관련 유관 기관이 함께 이에 대한 파장이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원안 의결함**

5. 폐회선언

위원장이 2009년도 금융위원회 제2차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제3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12. 3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12월 31일(목) 15:30~16:0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원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임 승 태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376호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부실규모가 증가된 이유에 대해 질의함

(지역 경제 악화, 기존에 취급되었던 여신 건전성의 악화 등으로 부실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

○ 적기시정조치 유예는 자율적인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줄여 줄 수 있지만 구조조정 실패시 부실규모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간 사례를 통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관련 기관과 함께 건전성 상시감독 등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감독제도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원안 의결함

제1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1. 14.)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1월 14일(금) 07:30~07:4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원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의결안건 심의

□ 의안 제10호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가지급금 지급 등 향후 절차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신속한 검사 실시 및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청함

⇒ 원안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11년도 금융위원회 제1차 임시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2. 1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2월 17일(목) 07:30~08:0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원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35호『**(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안**』, 제36호『**(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조치로 자회사들의 예금인출 사태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질의함

(각 자회사의 유동성 상황이 다르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긴급 자금지원 등 유동성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답변함)

○ 다른 일반 저축은행으로 동 조치의 영향이 파급되지 않도록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각각 원안 의결함

제3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2. 19.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2월 19일(토) 07:30~08:1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원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임 종 룡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의결안건 심의

□ 의안 제39호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안』**, 제40호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안』**, 제41호 **『(전북)전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안』**, 제42호 **『(전남)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저축은행들이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각하므로 영업정지 조치안에 이견은 없으나, 유동성 부족 문제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질의함

(표면상으로는 유동성 부족으로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재무상태에 있어서 순자산 부족의 문제가 그 근원에 깔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

○ 지난 브리핑 내용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면 좋으나, 어떤 불안요인이 나타날 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대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저축은행중앙회 등의 지원을 통해 저축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건전한 저축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함)

⇒ 각각 원안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11년도 금융위원회 제3차 임시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제4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2. 22.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2월 22일(화) 17:45~21:0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원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의결안건 심의

□ 의안 제43호 **『(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저축은행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질의함

(영업의 정상적인 재개를 위한 시정명령 또는 예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변함)

○ 동 저축은행의 상황이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유동성 보유 현황, 예금인출 동향, 휴업의 사유 등을 감안하면 동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동 저축은행의 유동성이 예금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 경영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예금인출이 있어 온 점, 비정상적인 휴업을 통해 예금자들의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시정명령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예금인출 쇄도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 수정 의결함*

* 강원 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의 전부 재개명령"에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 부과"로 수정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11년도 금융위원회 제4차 임시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제6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4. 29.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4월 29일(금) 11:20~12:0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원장
이 석 준	위 원
이 상 제	위 원
권 혁 세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심 인 숙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의결안건 심의

□ 의안 제92호 『**(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제93호 『**(전남)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제94호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제95호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제96호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제97호 『**(전북)전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제98호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동 저축은행들의 BIS비율이 전 분기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질의함

(영업정지 후 실시한 검사 과정 등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BIS비율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

○ 상호저축은행법상 영업정지 조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분이 아닌지 질의함

(과거 영업정지 처분시 상호저축은행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모두 근거로 든 사례가 있으며, 기존의 판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중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

○ 자구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매각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매각조치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질의함

(충분한 기간동안 자구 노력 등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화 됐다는 점, 검사결과 확인된 부실규모가 매우 커서 자체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증자명령 이행기간 중에 매각절차를 병행하고자 함.

다만, 증자명령 이행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각작업은 중단될 것이라고 답변함)

○ 7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조치가 지난 조치와 무엇이 다른지, 저축은행들의 BIS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오해 및 혼란이 없도록 적극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함

⇒ 각각 원안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11년도 금융위원회 제6차 임시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제7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8. 5.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8월 5일(금) 18:10~18:3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원장
신　제　윤	부위원장
이　석　준	위　원
이　상　제	위　원
권　혁　세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심　인　숙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의결안건 심의

□ 의안 제173호 **『(울산)경은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지난 저축은행 영업정지시 대주주, 임직원 등의 부당인출 문제가 있었는데 재발할 위험은 없는지 질의함

(동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어 중앙회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하며, 금감원 및 예보직원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부당지급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함)

○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부당인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에도 적기시정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함

○ 지난 번에 발표한 저축은행 관련 하반기 대책에서,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시점까지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

"다만, 이미 상반기중 검사가 종료되어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로서 충실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이거나 과도한 예금인출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관련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이라고 발표한 바,

시장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조치가 발표 내용 중 단서에 따라 부과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원안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11년도 금융위원회 제7차 임시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제10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9. 18.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9월 18일(일) 10:30~11:10

2. 장　　소　：　KDB 동관 7층 대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원장

추　경　호　부위원장

이　석　준　위　　원

이　상　제　위　　원

신　제　윤　위　　원

권　혁　세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심　인　숙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의결안건 심의

□ 의안 제206호『**(서울)대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의안 제207호『**(인천)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의안 제208호『**(경기)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의안 제209호『**(부산)파랑새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의안 제210호『**(서울)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의안 제211호『**(서울)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의안 제212호『**(서울)제일이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의안 제213호『**(충남)한주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 의안 제214호『**(서울)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의안 제215호『**(서울)한국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의안 제216호『**(서울)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의안 제217호『**(제주)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의안 제218호『**(전북)미래2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동 조치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예금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함

⇒ 원안 의결함

제1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11. 4.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11월 4일(금) 14:00~15:5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원장

추　경　호　부위원장

이　석　준　위　원

이　상　제　위　원

권　혁　세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심　인　숙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11년도 제17차 금융위 및 제11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 보고

□ 2011년도 제17차 금융위 및 제11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안 제258호 **『제일이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2. 5. 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2년 5월 6일(일) 3:40~4:0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원장

추　경　호　부위원장

홍　영　만　위　원

이　상　제　위　원

신　제　윤　위　원

권　혁　세　위　원

박　원　식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심　인　숙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14호『**(서울)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제115호『**(제주)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제116호『**(충남)한주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제117호『**(서울)한국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제118호『**(서울)진흥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안**』, 제119호『**(서울)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 의결함**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32. 대부업 관리

1) 불법 광고 근절 대책

□ 금융위원회는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12. 3. 1부터 시행중

① 대부광고시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시행령 §6)

② 대부광고시 이용자가 해당 대부업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최상단에 배치**토록 함 (시행령 §6의2)

③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 금지** (시행령 §6의3)

④ 대부업협회내 **"대부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대부광고 자제 유도 (시행령 §11의2) 등

2) 대부업체 광고 규제 관련 규정

□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광고 규제는 ①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금지, ② 대부광고 표시규제, ③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음

※ 별첨 자료 참조

#별첨자료 <현행 대부업법 광고관련 규제>

【法律】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施行令】

제3조의2(상호 등)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부업 등록번호
2. <삭 제>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

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이 설치된 시·도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 전화번호(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이 설치된 시·도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4.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제4호의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3.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별표 1]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제6조의2제3호 관련)

1. 광고 표시 등의 방법

가. 상호 및 등록번호는 광고 왼쪽상단에 표시한다.

나. 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등의 경우에는 본점의 등록번호만 기재할 수 있다.

다.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

로 한다.

라.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에 관한 내용이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자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마. 고객모집 또는 대부상품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표기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2호에 따른 경고문구 등 필수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한다. 다만, 간판 등 단순히 영업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 또는 음악, 체육행사 등의 후원 목적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호 또는 상표만 표시할 수 있다.

2. 경고문구 표기기준

가.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1)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2)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나. 경고문구는 광고에 사용된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 경고문구는 지면 및 방송 광고의 경우에 표기한다. 다만, 광고면적이 150 제곱센티미터 미만인 지면광고에 대해서는 경고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33. 최근 5년간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정책

1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10.3월) 및 의무대출비율 완화('11.11월)

○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기존 11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여 서민금융 공급확대 유도

2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기준 완화 ('11.11월)

○ 서민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사전신고 만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인가 기준 완화

3 소액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완화 ('10.9월)

○ 소액신용대출 연체율 등이 일반신용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일반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부 완화*

* (기존) 정상 1%, 요주의 7% → (완화) 정상 0.5%, 요주의 2%

4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 유도 (상시)

○ 저축은행의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대출채권의 質的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을 지속 유도

*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 관련 협조 요청 ('10.11.4, 중앙회)

5 저축은행 햇살론 취급 ('10.7~현재)

○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저금리(연10~13%) 자금지원을 위해 '10.7월부터 햇살론을 취급하여 약 2,058억원 지원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34. 미소금융 목표대비 실적, 지점별 실적 (지역지점, 기업계지점, 은행계지점 구분)

□ 목표 대비 실적

○ **(목표)** 사업 개시 후 10년간('10년~'19년) **기존 제도금융권 밖 약 20만~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 금융위,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확대방안 ('09.9.17.)」

○ **(지원실적)** '12.7.31. 현재 **지원건수는 61,966건***으로, **전망치 대비 약 30.9% 수준**을 달성하여 당초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

* '10.1월~'11.7월 : 미소금융 34,038건, 소액금융 24,928건
→ 소액보험 28,862건은 계산에서 제외
→ 소액금융 '08.7월~'09.12월 소액금융 15,810건 제외

□ 지점별 실적

('12.7.31.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대출건수	대출금액
기업재단	19,609	2,711.8
은행재단	10,754	1,591.8
지역지점	3,675	343.7
계	**34,038**	**4,647.3**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35. 금융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실적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민간 마이크로크레딧(창업, 신용회복, 사회적기업)을 **'08.7월부터 지원**

□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원을 받아 실행된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대출실적** ('12.7.31. 현재)

○ 창업지원 분야 : 903건, 19,899백만원 대출

○ 신용회복지원 분야 : 21,227건, 61,689백만원 대출

○ 사회적기업지원 분야 : 152건, 15,133백만원 대출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36. 미소금융 실무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및 실적

□ 2011년 **한국금융연수원과** 「미소금융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 중

□ **교육방향**

○ 미소금융 이용자들의 **실질적 자활·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내용의 제공**

○ 미소금융 **RM 양성을 위한 단계별, 체계화된 교육** 실시

□ **교육실적**

○ **2011년**

- **8개월여의 기간**('11.3.29~12.14) 동안 총 **55회, 13개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 및 은행재단·지역지점 실무자, 자원봉사자, 미소금융 이용자 등 **2,140명이 수료**

○ **2012년**

- '12.7.31. 현재, 총 **25회**의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 및 은행재단·지역지점 실무자, 자원봉사자, 미소금융 이용자 등 **950명이 수료**

<2012년 교육운영 실적 및 계획>

구분	실시횟수		수료인원		비고
	1~7월 (실적)	8~12월 (계획)	1~7월 (실적)	8~12월 (계획)	
모두가 행복한 미소금융	1회	1회	53명	30명	
고객소통 상담	2회	-	53명	-	
미소금융실무	1회	1회	30명	30명	
창업컨설팅 기본	2회	1회	76명	30명	
경영컨설팅 기본	1회	2회	45명	60명	
창업컨설팅 전문	1회	1회	28명	30명	
경영컨설팅 전문	1회	1회	30명	30명	
봉사자 교육	3회	1회	154명	30명	
신규입사자 교육	1회	1회	28명	30명	
미소금융 이용자 교육	12회	30회	453명	1,280명	
계	**25회**	**39회**	**950명**	**1,550명**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37. 미소금융 지역지점 예산 / 결산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자산취득비	2.8	2.8	0.0	0.0
인건비	5.3	5.3	9.9	9.2
기타운영비**	4.2	4.2	7.5	6.4
계	12.3	12.3	17.4	15.6
지점수(연말기준)	26개 지점		1개 지점	

* '10년도 지역지점은 신규 설립되는 특성상, 예산금액과 결산금액이 일치

**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비용(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은 계산에서 제외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38. 최근 5년간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단체와 복지사업 지원 계약을 작성한 현황 및 계약서 사본

□ 복지사업 지원 계약 현황

○ 재단은 아래표와 같이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단체**를 **복지사업자로 선정**하고 **지원계약을 체결**

구분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단체	복지사업자 선정연도
창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09년
	해피월드복지재단	2009년
	소상공인진흥원	2009년
	사회연대은행	2008년
	신나는조합	2008년
	나눔과기쁨	2010년
	함께일하는사람들	2010년
	부산복지개발원	2010년
사회적 기업	열매나눔재단	2009년
	민생포럼대부	2009년
	민생경제정책연구소	2009년
	함께일하는재단	2008년
	사람사랑	2010년
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2008년
	한마음금융	2008년

□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 사본 : 첨부자료 참조(분야별)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함께일하는재단(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복지사업 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을"의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지원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지원금"은 "을"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대출하는 금전을 말한다.

②"대출사업"은 "을"이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금전대출 방식의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③"복지사업 이용자"는 "을"로부터 대출사업을 통하여 금전을 대출받는 자를 말한다.

④"대출약정"은 대출사업을 위하여 "을"이 복지사업 이용자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⑤"대출금"은 대출약정에 따라 "을"이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대출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계약관계) ①"갑"은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을"이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을"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을"은 "갑"이 선정한 복지사업자로서 "갑"의 지원 및 관리·감독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교부) ①"갑"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된 지원금 배정 내용에 따라 "을"에게 지원금을 교부한다.

②"갑"은 지원금 교부 시, 배정된 금액을 한도로 2회 분할 교부하며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차 교부금은 "을"이 1회차 교부금의 100분의 80이상을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을"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교부한다.

제5조(지원조건 및 지원금 상환의무) ①"갑"이 "을"에게 지원금을 대출해 주는 조건은 <별지1>과 같다.

②"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의 성격은 대출로서 "을"은 "갑"에게 지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지원금의 상환은 <별지1>의 상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을"은 <별지1>의 지원금 교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출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에 대하여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갑"은 "을"이 지원금 상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을"에게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지사업 이용자의 채무이행 지체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율은 "갑"의 주거래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하며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복지사업 수행에 따른 대손 관련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을"은 지원금을 대출금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대출에 수반되는 비용 등의 충당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구분계리 등) ①"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계장부를 <별지1>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의 입출금 거래를 다른 자금과 구분이 되도록 자신 명의의 지원금 전용 예금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이 제2항의 계좌 및 그 거래내역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대출조건 설정) "갑"은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대출조건을 <별지2>와 같이 설정하며, "을"은 복지사업 이용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사업 이용자의 신용정보 관련 자료제출) ①"을"은 복지사업 이용자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복지사업 이용자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실행 익영업일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을"은 복지사업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갑"이 정하는 양식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그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출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출방법 등은 "갑"이 정한다.

제10조(복지사업 이용자와의 대출약정서류 제출 협조 의무)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과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 간에 체결한 대출약정서류 원본을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에게 이를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제11조(통합정보시스템 사용 의무) ①"을"은 "갑"의 지원금으로 수행된 대출 및 상환 등의 지원정보 공유를 위해 "갑"의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을" 및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 지원 정보가 "갑"의 통합정보시템에 통합 또는 연계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속 절차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원금 사용내역의 관리) "을"은 저소득층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유지 관리하고, "갑"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현황 및 지원내역
2. 복지사업 이용자의 상환내역
3.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중복 지원내역
4. 그 밖에 지원금 사용내역 관리에 필요하여 "갑"이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①"을"은 매년도 대출사업 등에 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해당 연도 종료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30일 이전에 "을"에게 통보한다.

제14조("을"에 대한 평가) ①"갑"은 "갑"이 정하는 평가지표에 따라 "을"의 매연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을"의 차기 사업연도 지원내용에 반영한다.

②"갑"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 ①"갑"은 "을"이 사업계획의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거나 거짓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이 지원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지 및 허위의 신청에 의해 지원금의 교부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을"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의 반환) ①제15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을"은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환계획서상의 최종 반

환일은 반환계획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지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 또는 그 대표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갑"은 "을"이 반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반환계획을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④기타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절차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파산·회생절차 개시·체무불이행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을"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개시 등이 있는 경우
3. "을"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영업정지·주무관청으로 부터의 인·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4. "을"의 업무와 관련하여 "을" 또는 "을"의 대표자가 사기·횡령·배임·조세범처벌법 등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5.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복지사업자로서의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1호 내지 4호의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을"에 대한 감독) ①"갑"은 대출사업과 관련 있는 "을"의 업무에 대해 감독한다.
②"을"에 대한 감독의 범위는 "을"이 "갑"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전반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수행한다.
1.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2.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하고 있는지 여부
3. 지원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

고 있는지 여부
4. 지원금을 사업목적에 맞춰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지원금 상환 등 복지사업자의 지원조건 이행능력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6.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연체 관리 여부 등
③"갑"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확인서 제출 등에 대하여 "을" 및 그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 및 그 복지사업 이용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하여 "갑"이 직접 현장 방문 및 사업현황 자료요청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와의 대출약정서에 반영하고,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갑"의 감독은 현장감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이 현장감독을 하지 아니하여도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갑"은 정기감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 5일전까지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나 효율적인 감독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⑦"갑"은 "을"에 대한 감독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갑"의 규정 및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3. "갑"의 감독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갑"의 시정개선 등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⑧"을"에 대한 감독 결과, 제2항 1호 내지 5호와 관련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갑"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의 유보 : 사안이 경미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지원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

2. 지원의 중단 : 사안이 위중하여 해당 사업을 중도 마무리하고 향후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3. 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 제2항 1호 내지 2호의 사항이 발견되거나, 을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금 교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원금 회수절차에 착수하여야 하는 경우

4. 복지사업자 선정의 취소 및 계약 해지 : 복지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법하거나 불미스러운 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⑨"을"은 "갑"으로부터 제7항에 의한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을" 또는 "을"의 해당 임직원은 제7항에 의한 "갑"의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⑪"을"은 제10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⑫"갑"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채권양도에 관한 계약 체결) ①"을"은 지원금과 관련하여 <별지3>의 채권양도계약을 "갑"과 체결한다.

②"을"은 제1항의 내용을 대출약정 체결과 동시에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승낙 확인서를 받아 "갑"에게 제출한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①"갑"은 대출사업의 부진·연체 및 상환의 문제 등으로 계속적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 대한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교부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②"을"이 지원금 배정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경우 "갑"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갑"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③그 밖의 계약 내용은 "갑"과 "을"의 합의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2 년 8 월 13 일

(갑)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김 승 

(을)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번지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송 현 

(별지 1)

지 원 조 건

지원금 배정금액(한도)		금 구억원(₩ 900,000,000)
지원금	교부기간	2012 . 8 . 13 ~ 2012 . 12. 31
	분할교부	2회 분할 (1차 사억오천만원, 2차 사억오천만원)
	교부방법	◦ 1회 교부 : 2012 년 8 월 13 일 ◦ 2회 교부 : 1회 교부금의 80% 이상 사용시점에서 을의 서면 청구에 의해 교부 ※ "을"의 청구 시, "갑"은 사전·사후관리 관련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서류검토 후 교부
지원기간		◦ 지원금을 최초로 교부한 날부터 복지사업 이용자별 대출약정의 최종 만료일까지
상환방법		◦ 대출약정에 따른 복지사업 이용자별 상환방식 및 상환 일정과 연동하며, ◦ "을"은 복지사업 이용자가 실제로 상환한 금액 중 원금 상환 상당금액을 지원기간 중 월 1회 "갑"에게 상환하되, ◦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상환 받은 금액은 매월 말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상환

(별지 2)

대출조건의 설정

대출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중 투자를 통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서울·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만 해당됨
자금용도	○ 사업비(임차보증금/시설장비비), 관리운영비, 재무구조 개선자금(대환대부 및 긴급자금) 등
대출금액	○ 기업당 최대 1억원 * 운영자금 중 3천만원까지는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무담보·무보증
대출기간	○ 총 5년
적용이자율	○ 연 3% 고정금리 * 성실 상환 기업의 경우, -0.5% 우대금리 적용 *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체한 개월수에 대해 2% 가산금 부여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상환 * 거치기간 1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

(별지 3)

채 권 양 도 계 약 서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 제17조에 의해 계약의 해지」 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자(양도인)함께일하는재단 과 채권자(양수인)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원금 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2012년 8월 13일자 일금 구억원(₩ 900,000,000)의 금전 대차 계약에 의거 제3채무자(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대출금 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 【채권양도 통지의무】
채무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담보책임】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채무자는 제1조에 의한 통지 및 승낙의 효력발생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통지의무】
채무자는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금전 대차 계약에 의한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부담】
상기 통지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012 년 8 월 13 일

양도인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번지
함께일하는재단
성 명 : 이사장 송 현 섭

양수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휴면예금관리재단
성 명 : 이사장 김 승 유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복지사업 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을"의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지원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지원금"은 "을"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대출하는 금전을 말한다.

②"대출사업"은 "을"이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금전대출 방식의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③"복지사업 이용자"는 "을"로부터 대출사업을 통하여 금전을 대출받는 자를 말한다.

④"대출약정"은 대출사업을 위하여 "을"이 복지사업 이용자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⑤"대출금"은 대출약정에 따라 "을"이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대출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계약관계) ①"갑"은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을"이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을"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을"은 "갑"이 선정한 복지사업자로서 "갑"의 지원 및 관리·감독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교부) ①"갑"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된 지원금 배정 내용에 따라 "을"에게 지원금을 교부한다.

②"갑"은 지원금 교부 시, 배정된 금액을 한도로 2회 분할 교부하며 이자

192.168.4.162 / 2012-05-12 09:34:53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차 교부금은 "을"이 1회차 교부금의 100분의 80이상을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을"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교부한다.

제5조(지원조건 및 지원금 상환의무) ①"갑"이 "을"에게 지원금을 대출해 주는 조건은 <별지1>과 같다.

②"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의 성격은 대출로서 "을"은 "갑"에게 지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지원금의 상환은 <별지1>의 상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을"은 <별지1>의 지원금 교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출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에 대하여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갑"은 "을"이 지원금 상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을"에게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지사업 이용자의 채무이행 지체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율은 "갑"의 주거래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하며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복지사업 수행에 따른 대손 관련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을"은 지원금을 대출금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대출에 수반되는 비용 등의 충당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구분계리 등) ①"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계장부를 <별지1>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의 입출금 거래를 다른 자금과 구분이 되도록 자신 명의의 지원금 전용 예금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이 제2항의 계좌 및 그 거래내역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192.168.4.162 / 2012-05-12 09:34:59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대출조건 설정) "갑"은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대출조건을 <별지2>와 같이 설정하며, "을"은 복지사업 이용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사업 이용자의 신용정보 관련 자료제출) ①"을"은 복지사업 이용자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복지사업 이용자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실행 익영업일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을"은 복지사업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갑"이 정하는 양식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그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출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출방법 등은 "갑"이 정한다.

제10조(복지사업 이용자와의 대출약정서류 제출 협조 의무)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과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 간에 체결한 대출약정서류 원본을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에게 이를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제11조(통합정보시스템 사용 의무) ①"을"은 "갑"의 지원금으로 수행된 대출 및 상환 등의 지원정보 공유를 위해 "갑"의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을" 및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 지원 정보가 "갑"의 통합정보시템에 통합 또는 연계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속 절차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원금 사용내역의 관리) "을"은 저소득층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

192.168.4.162 / 2012-06-12 09:34:53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유지 관리하고, "갑"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현황 및 지원내역
2. 복지사업 이용자의 상환내역
3.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중복 지원내역
4. 그 밖에 지원금 사용내역 관리에 필요하여 "갑"이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①"을"은 매년도 대출사업 등에 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해당 연도 종료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30일 이전에 "을"에게 통보한다.

제14조("을"에 대한 평가) ①"갑"은 "갑"이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을"의 매연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을"의 차기 사업연도 지원내용에 반영한다.

②"갑"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 ①"갑"은 "을"이 사업계획의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거나 거짓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이 지원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지 및 허위의 신청에 의해 지원금의 교부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을"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의 반환) ①제15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을"은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환계획서상의 최종 반환일은 반환계획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192.168.4.162 / 2012-06-12 09:34:55

③지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의 재산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갑"은 "을"이 반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반환계획을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⑤기타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절차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파산·회생절차 개시·채무불이행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을"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개시 등이 있는 경우
3. "을"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영업정지·주무관청으로 부터의 인·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4. "을"의 업무와 관련하여 "을" 또는 "을"의 대표자가 사기·횡령·배임·조세범처벌법 등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5.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복지사업자로서의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1호 내지 4호의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을"에 대한 감독) ①"갑"은 대출사업과 관련 있는 "을"의 업무에 대해 감독한다.
②"을"에 대한 감독의 범위는 "을"이 "갑"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전반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수행한다.
1.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2.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하고 있는지 여부
3. 지원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192.168.4.162 / 2012-06-12 14:46:53

4. 지원금을 사업목적에 맞춰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지원금 상환 등 복지사업자의 지원조건 이행능력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6.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연체 관리 여부 등

③"갑"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확인서 제출 등에 대하여 "을" 및 그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 및 그 복지사업 이용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하여 "갑"이 직접 현장 방문 및 사업현황 자료요청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와의 대출약정서에 반영하고,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갑"의 감독은 현장감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이 현장감독을 하지 아니하여도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 또는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갑"은 정기감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 5일전까지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나 효율적인 감독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⑦"갑"은 "을"에 대한 감독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갑"의 규정 및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3. "갑"의 감독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갑"의 시정개선 등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⑧"을"에 대한 감독 결과, 제2항 1호 내지 5호와 관련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갑"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의 유보 : 사안이 경미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지원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

192.168.4.162 / 2012-06-12 09:34:59

2. 지원의 중단 : 사안이 위중하여 해당 사업을 중도 마무리하고 향후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3. 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 제2항 1호 내지 2호의 사항이 발견되거나, 을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금 교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원금 회수절차에 착수하여야 하는 경우

4. 복지사업자 선정의 취소 및 계약 해지 : 복지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법하거나 불미스러운 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⑨"을"은 "갑"으로부터 제7항에 의한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을" 또는 "을"의 해당 임직원은 제7항에 의한 "갑"의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⑪"을"은 제10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⑫"갑"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채권양도에 관한 계약 체결) ①"을"은 지원금과 관련하여 <별지3>의 채권양도계약을 "갑"과 체결한다.

②"을"은 제1항의 내용을 대출약정 체결과 동시에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승낙 확인서를 받아 "갑"에게 제출한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①"갑"은 대출사업의 부진·연체 및 상환의 문제 등으로 계속적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 대한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교부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②"을"이 지원금 배정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경우 "갑"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갑"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192.168.4.162 / 2012-06-12 09:34:53

③그 밖의 계약 내용은 "갑"과 "을"의 합의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6월 13 일

(갑)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김 승 유

(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번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 종 휘

192.168.4.162 / 2012-06-12 09:34:53

(별지 1)

지 원 조 건

지원금 배정금액(한도)		금일백억원(₩10,000,000,000)
지원금	교부기간	2012. 6.13 ~ 2012. 12. 31
	분할교부	2회 분할 (1차 오십억원, 2차 오십억원)
	교부방법	◦ 1회 교부 : 2012년 6월 일 ◦ 2회 교부 : 1회 교부금의 80% 이상 사용시점에서 을의 서면 청구에 의해 교부 ※ "을"의 청구 시 "갑"은 사전·사후관리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검토 후 교부
지원기간		◦ 지원금을 최초로 교부한 날부터 복지사업 이용자별 대출약정의 최종 만료일까지
상환방법		◦ 대출약정에 따른 복지사업 이용자별 상환방식 및 상환 일정과 연동하며, ◦ "을"은 복지사업 이용자가 실제로 상환한 금액 중 원금 상환 상당금액을 지원기간 중 월 1회 "갑"에게 상환하되, ◦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상환 받은 금액은 매월 말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상환

192.168.4.162 / 2012-06-12 09:34:53

(별지 2)

대출조건의 설정

대출자격	☐ 신용회복위원회 및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 또는 완제한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 하는 자
자금용도	☐ 사고, 질병, 재난, 결혼, 임차보증금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 ☐ 채무조정 당시에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고금리차환자금 ☐ 영세자영업자로서 긴급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대출금액	☐ 생활안정자금 : 5,000,000원 ☐ 학자금 : 5,000,000원 ☐ 시설개선자금 : 5,000,000원 ☐ 운영자금 : 5,000,000원 ☐ 고금리차환자금 : 5,000,000원
대출기간	☐ 생활안정자금 : 5년 이내 ☐ 학자금 : 5년 이내 ☐ 시설개선자금 : 5년 이내 ☐ 운영자금 : 3년 이내 ☐ 고금리차환자금 : 5년 이내
적용이자율	☐ 생활안정자금 : 연이율 4% ☐ 학자금 : 연이율 2% ☐ 시설개선자금 : 연이율 4% ☐ 운영자금 : 연이율 4% ☐ 고금리차환자금 : 연이율 4%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식 ☐ 만기일시상환식
기타	☐ 서울보증보험 가입 필수

192.168.4.102 / 2012-06-12 09:34:53

채 권 양 도 계 약 서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 제17조에 의해 계약의 해지」 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자(양도인)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자(양수인)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원금 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2012년 6월 13일자 일금 일백억원(₩10,000,000,000)의 금전 대차 계약에 의거 제3채무자(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대출금 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 【채권양도 통지의무】
채무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담보책임】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채무자는 제1조에 의한 통지 및 승낙의 효력발생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통지의무】
채무자는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금전대차 계약에 의한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부담】
상기 통지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012년 6월 13일

양도인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6-1번지
신용회복위원회
성 명 : 위원장 이 종 휘 (인)

양수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휴면예금관리재단
성 명 : 이사장 김 승 유

192.168.4.162 / 2012-06-12 09:34:53

(붙임 2)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복지사업 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을"의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지원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지원금"은 "을"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대출하는 금전을 말한다.

②"대출사업"은 "을"이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금전대출 방식의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③"복지사업 이용자"는 "을"로부터 대출사업을 통하여 금전을 대출받는 자를 말한다.

④"대출약정"은 대출사업을 위하여 "을"이 복지사업 이용자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⑤"대출금"은 대출약정에 따라 "을"이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대출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계약관계) ①"갑"은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을"이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을"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을"은 "갑"이 선정한 복지사업자로서 "갑"의 지원 및 관리·감독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교부) ①"갑"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된 지원금 배정 내용

(붙임 2)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복지사업 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을"의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지원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지원금"은 "을"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대출하는 금전을 말한다.

②"대출사업"은 "을"이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금전대출 방식의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③"복지사업 이용자"는 "을"로부터 대출사업을 통하여 금전을 대출받는 자를 말한다.

④"대출약정"은 대출사업을 위하여 "을"이 복지사업 이용자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⑤"대출금"은 대출약정에 따라 "을"이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대출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계약관계) ①"갑"은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을"이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을"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을"은 "갑"이 선정한 복지사업자로서 "갑"의 지원 및 관리·감독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교부) ①"갑"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된 지원금 배정 내용

에 따라 "을"에게 지원금을 교부한다.

②"갑"은 지원금 교부 시, 배정된 금액을 한도로 2회 분할 교부하며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차 교부금은 "을"이 1회차 교부금의 100분의 80이상을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을"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교부한다.

제5조(지원조건 및 지원금 상환의무) ①"갑"이 "을"에게 지원금을 대출해 주는 조건은 <별지1>과 같다.

②"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의 성격은 대출로서 "을"은 "갑"에게 지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지원금의 상환은 <별지1>의 상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을"은 <별지1>의 지원금 교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출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에 대하여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갑"은 "을"이 지원금 상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을"에게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지사업 이용자의 채무이행 지체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율은 "갑"의 주거래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하며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복지사업 수행에 따른 대손 관련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을"은 지원금을 대출금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대출에 수반되는 비용 등의 충당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구분계리 등) ①"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계장부를 <별지1>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의 입출금 거래를 다른 자금과

구분이 되도록 자신 명의의 지원금 전용 예금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이 제2항의 계좌 및 그 거래내역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대출조건 설정) "갑"은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대출조건을 <별지2>와 같이 설정하며, "을"은 복지사업 이용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사업 이용자의 신용정보 관련 자료제출) ①"을"은 복지사업 이용자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복지사업 이용자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실행 익영업일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을"은 복지사업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갑"이 정하는 양식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그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출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은 "갑"이 정한다.

제10조(복지사업 이용자와의 대출약정서류 제출 협조 의무)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과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 간에 체결한 대출약정서류 원본을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에게 이를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제11조(통합정보시스템 사용 의무) ①"을"은 "갑"의 지원금으로 수행된 대출 및 상환 등의 지원정보 공유를 위해 "갑"의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을" 및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 지원 정보가 "갑"의 통합정보시템에 통합 또는 연계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속 절차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원금 사용내역의 관리) "을"은 저소득층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유지 관리하고, "갑"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현황 및 지원내역
2. 복지사업 이용자의 상환내역
3.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중복 지원내역
4. 그 밖에 지원금 사용내역 관리에 필요하여 "갑"이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①"을"은 매년도 대출사업 등에 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해당 연도 종료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30일 이전에 "을"에게 통보한다.

제14조("을"에 대한 평가) ①"갑"은 "갑"이 정하는 평가지표에 따라 "을"의 매연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illegible] 사업연도 지원내용에 반영한다.

②"갑"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 ①"갑"은 "을"이 사업계획의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거나 거짓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이 지원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지 및 허위의 신청에 의해 지원금의 교부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을"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의 반환) ①제15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을"은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한 지

원금에 대하여는 반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환계획서상의 최종 반환일은 반환계획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지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 또는 그 대표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갑"은 "을"이 반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반환계획을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④기타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절차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파산·회생절차 개시·채무불이행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을"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개시 등이 있는 경우
3. "을"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영업정지·주무관청으로 부터의 인·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4. "을"의 업무와 관련하여 "을" 또는 "을"의 대표자가 사기·횡령·배임·조세범처벌법 등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5.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복지사업자로서의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1호 내지 4호의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을"에 대한 감독) ①"갑"은 대출사업과 관련 있는 "을"의 업무에 대해 감독한다.

②"을"에 대한 감독의 범위는 "을"이 "갑"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전반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수행한다.

1.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2.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하고 있는지 여부

3. 지원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4. 지원금을 사업목적에 맞춰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지원금 상환 등 복지사업자의 지원조건 이행능력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6.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한 연체 관리 여부 등

③"갑"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확인서 제출 등에 대하여 "을" 및 그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 및 그 복지사업 이용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하여 "갑"이 직접 현장 방문 및 사업현황 자료요청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와의 대출약정서에 반영하고, "을"의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갑"의 감독은 현장감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이 현장감독을 하지 아니하여도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 또는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갑"은 정기감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 5일전까지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나 효율적인 감독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⑦"갑"은 "을"에 대한 감독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갑"의 규정 및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3. "갑"의 감독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갑"의 시정개선 등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⑧"을"에 대한 감독 결과, 제2항 1호 내지 5호와 관련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갑"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의 유보 : 사안이 경미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지원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

2. 지원의 중단 : 사안이 위중하여 해당 사업을 중도 마무리하고 향후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3. 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 제2항 1호 내지 2호의 사항이 발견되거나, 을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금 교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원금 회수절차에 착수하여야 하는 경우

4. 복지사업자 선정의 취소 및 계약 해지 : 복지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법하거나 불미스러운 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⑨"을"은 "갑"으로부터 제7항에 의한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을" 또는 "을"의 해당 임직원은 제7항에 의한 "갑"의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⑪"을"은 제10항에 [illegible] 청을 제기하는 [illegible] 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⑫"갑"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채권양도에 관한 계약 체결) ①"을"은 지원금과 관련하여 <별지3>의 채권양도계약을 "갑"과 체결한다.

②"을"은 제1항의 내용을 대출약정 체결과 동시에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승낙 확인서를 받아 "갑"에게 제출한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①"갑"은 대출사업의 부진·연체 및 상환의 문제 등으로 계속적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 대한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교부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②"을"이 지원금 배정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경우 "갑"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갑"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③그 밖의 계약 내용은 "갑"과 "을"의 합의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2 년 6 월 8 일

(갑)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illegible]리재단
이사장 김 승 유

(을)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번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이사장 정 명 기

(별지 1)

지 원 조 건

지원금 배정금액(한도)		금 삼억 원(₩ 300,000,000)
지원금	교부기간	2012 . 6. 8 ~ 201ㅗ . 12. 31
	분할교부	2회 분할 (1차 일억오천만원, 2차 일억오천만원)
	교부방법	◦ 1회 교부 : 2012 년 6 월 8 일 ◦ 2회 교부 : 1회 교부금의 80% 이상 사용시점에서 을의 서면 청구에 의해 교부 ※ "을"의 청구 시, "갑"은 사전·사후관리 관련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서류검토 후 교부
지원기간		◦ 지원금을 최초로 교부한 날부터 복지사업 이용자별 대출약정의 최종 만료일까지
상환방법		◦ 대출약정에 따른 복지사업 이용자별 상환방식 및 상환 일정과 연동하며, ◦ "을"은 복지사업 이용자가 실제로 상환한 금액 중 원금 상환 상당금액을 지원기간 중 월 1회 "갑"에게 상환하되, ◦ 복지사업 이용자에게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상환 받은 금액은 매월 말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상환

(별지 2)

대출조건의 설정

(※각 복지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table>
<tr><td>대출자격</td><td>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2.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td></tr>
<tr><td>자금용도</td><td><table>
<tr><td>프랜차이즈 창업자금</td><td>소규모 ·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프렌차이즈 업체와 연계하여 사업장임차자금, 권리금 및 기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td></tr>
<tr><td>임차자금</td><td>창업자 및 기존사업자에게 필요한 사업장 임차자금 지원</td></tr>
<tr><td>운영자금</td><td>창업 및 기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 및 시설개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자금 지원</td></tr>
</table></td></tr>
<tr><td>대출금액</td><td><table>
<tr><td rowspan="3">신규 창업자</td><td>프랜차이즈</td><td>5,000만원 이내</td></tr>
<tr><td>임차자금</td><td>5,000만원 이내</td></tr>
<tr><td>운영자금</td><td>2,000만원 이내</td></tr>
<tr><td>기존 사업자</td><td>임차자금 및 운영자금</td><td>2,000만원 이내</td></tr>
</table>*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상자도 동일 조건 적용</td></tr>
<tr><td>대출기간</td><td><table>
<tr><td rowspan="3">신규 창업자</td><td>프랜차이즈</td><td>5년이내 균등상환</td></tr>
<tr><td>임차자금</td><td>5년이내 균등상환</td></tr>
<tr><td>운영자금</td><td>5년이내 균등상환</td></tr>
<tr><td>기존 사업자</td><td>임차자금 및 운영자금</td><td>5년이내 균등상환</td></tr>
</table>*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상자도 동일 조건 적용</td></tr>
<tr><td>적용이자율</td><td><table>
<tr><td>대상1</td><td>대상2</td><td>대출이자</td><td>연체이자</td></tr>
<tr><td rowspan="3">신규 창업자</td><td>프랜차이즈</td><td>7% 이내</td><td>3% 이내</td></tr>
<tr><td>임차자금</td><td>7% 이내</td><td>3% 이내</td></tr>
<tr><td>운영자금</td><td>7% 이내</td><td>3% 이내</td></tr>
<tr><td>기존 사업자</td><td>임차자금 및 운영자금</td><td>7% 이내</td><td>3% 이내</td></tr>
<tr><td>신규 창업자</td><td rowspan="2">북한 이탈주민</td><td>2% 이내</td><td>9% 이내</td></tr>
<tr><td>기존 사업자</td><td>4.5% 이내</td><td>6.5% 이내</td></tr>
</table></td></tr>
<tr><td>상환방법</td><td>원리금 균등분할 상환(60개월 이내)

* 3개월 이내에서 거치기간 조정 가능</td></tr>
</table>

(별지 3)

채 권 양 도 계 약 서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 제17조에 의해 계약의 해지」 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자(양도인)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채권자(양수인)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원금 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2012년 6월 8일자 일금 삼 억 원(₩300,000,000)의 금전 대차 계약에 의거 제3채무자(복지사업 이용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대출금 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 【채권양도 통지의무】
채무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담보책임】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채무자는 제1조에 의한 통지 및 승낙의 효력발생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통지
채무자는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금전 대차 계약에 의한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부담】
상기 통지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012 년 6 월 8 일

양도인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illegible]정로2가 15[illegible]번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성 명 : 이사장 정 명 기 (인)

양수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휴면예금관리재[illegible]
성 명 : 이사장 김 승 유

- 11 -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39. 최근5년간 TF구성 내역
(TF별/목적/위원 구성/위원별 프로필/회의개최 현황/회의자료/회의록/실적)

☐ 다음 페이지 참조

□ 최근 5년간 TFT구성 내역

연번	TFT명	설치목적	구성인원	회의개최현황	회의자료	회의록	실적
1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TF	G20 서울정상회의 및 FSB 서울총회 이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함	20명	'10.11.24(1차) '10.12.3(2차) '10.12.10(3차)	-	-	거시건정성 정책체계·수단, 신흥국 이슈의 발굴 등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여 G20/FSB 한국의제의 모멘텀 확보
2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TF	가계부채의 종합대책 마련	11명	'11.1.12(1차) '11.1.19(2차) '11.1.26(3차) '11.2.9(4차) '11.5.23(5차)	-	-	'11.6.29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3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관계기관 합동 TF	단기지표 금리 개선	12명	'12.7.19 (1차) '12.7.25 (2차) '12.8.1 (3차) '12.8.14 (4차) '12.8.21 (5차) `12.9.6 (6차)	-	-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 발표(8.22) *단기코픽스 도입, CD발행 정상화 등 현재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논의중

금융정책과

□ 소관 TFT 설치 및 활동 현황

TF명	설치일	설치 목적	활동 종료일	구성	개최 회수 등	활동 성과
바젤3 제도화 및 대응을 위한 T/F	'11.1.20	▪ 바젤3 국내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등 대응 체제 마련	계속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실무 관리자 등	상시개최 (금감원에서 운영)	▪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2011.9월) 작성에 참고 ▪ BCBS(바젤 은행감독위원회) 논의 동향 파악
볼커룰	'12.6.5	▪ 볼커룰의 국내 적용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12.8월말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국내은행 실무 관리자 등 13명	총3회 '12.6.5 '12.6.13 '12.7.18	▪ ①볼커룰 규제의 세부내용, ②볼커룰이 국내 은행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③은행권 및 감독당국의 조치 필요사항 등을 상세히 점검·파악 중
커버드본드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	'12.6.21	▪ 커버드 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	'12.7월말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요시중은행,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 법률전문가 등 11명	총3회 '12.6..21 '12.7.4 '12.7.23	▪ 현재 법제화의 효과, 발행 세부 절차사항, 해외사례 등에 대한 검토 중임

은행과

□ 소관 TFT 설치 및 활동 현황

TFT명	설치일	설치 목적	활동 종료일	구성 인원	성명 및 프로필	회의 개최 회수	회의 개최일	활동 성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T/F	'11.12.20	·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종합대책 마련	'12.1월	13명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방통위 통신정책국 경찰청 수사국 금감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 협회	5	'11.12.20 '11.12.27 '12.1.3 '12.1.10 '12.1.17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마련
한EU FTA 관련 정보보호TF	'12.6.1	· 정보처리업무의 해외이전허용에 따른 정보보호방안 검토	활동중	12명	(금융위) 김진홍 이석란 백형기 김보균	2	'12.6.1 '12.6.19	· 금융정보 이전에 따른 정보보호 방안 논의

TFT명	설치일	설치 목적	활동 종료일	구성 인원	성명 및 프로필	회의 개최 회수	회의 개최일	활동 성과
					(행안부) 서상우 (금감원) 차재성 (KB은행) 유석홍 (대우증권) 배영철 (동부화재) 이근교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김종구 (김&장 변호사) 성해경 (고려대교수) 이동훈			

전자금융팀

□ TF 설치 및 활동 현황

TFT 명	설치일	설치목적	활동 종료일	구성인원	회의 개최 회수	활동 실적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 위원회	'11.2.24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11.6.21	금융위 부위원장, 최운열(서강대 교수), 박상용(연세대 교수), 박준(서울대 교수), 조재호(서울대 교수), 박경서(고려대 교수), 오규택(중앙대 교수), 김태준(금융연구원장) 등	5회	개정안 마련
전자증권법 제정 T/F	'12.1.17	전자증권법 개정안 마련	12.3.27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박준(서울대 교수), 홍정훈(국민대 교수), 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 금융투자협회 증권서비스 본부장, 예탁결제원 금융 인프라 추진단장 등	8회	개정안 마련

* 각 TF별 별도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음

자본시장과

□ 소관 TFT 설치 및 활동 현황

TF 명	설치일	설치 목적	활동 종료일	구성 인원	회의 개최 회수	회의 개최일	실적	비고
헤지펀드 모범규준 TF	'11. 6월	헤지펀드의 설립·운용·환매 등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시해 제도의 조기안착 지원	'11.12.6	8인 (전문가,업계, 학계 등)	5회	매월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 제정	이한샘 사무관 (2156-9894)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 TF	'12 7월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펀드 제도 개선	진행중	18인 (업계, 학계 등)	5회	'12.7월 ~ 8월	현재 진행중	이한샘 사무관 (2156-9894)

□ 소관 TFT 설치 및 활동 현황

TFT 명	설치일	설치 목적	활동 종료일	구성 인원	회의 개최 회수	회의 개최일	활동 성과
국제회계기준 정착 추진단	'09.3.31	· 국제회계기준(IFRS)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이슈해결 및 지원방안 검토	'10.11월	17	5	'09.3.18 '09.7.10 '09.12.28 '10.5.17 '10.11.30	· 각 분야별 IFRS 추진 상황 점검 · 교육 및 홍보 ·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방안 마련
회계산업선진화 민관합동위원회	'11.5.13	· 회계투명성 제고 및 회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11.10월	13	5	'11.5.13 '11.7.6 '11.8.26 '11.9.23 '11.10.28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등을 마련
불공정 거래 조사 개선 TF	'12.3.30	· 신속한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위한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구축	'12.12월	6	5	'12.3.30 '12.4.4 '12.4.10 '12.4.16 '12.5.17	· 불공정거래 예방홍보, 불공정거래 조사 활성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

* 각 TF별 별도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음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40. 2012년 비상금융상황대응회의 개최실적 (참석자 현황/개최일시/안건/회의자료/회의록)

□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운영중

* '09.2.4일 출범(최초 명칭은 비상금융합동대책반이었으나 이후 몇차례 명칭변경을 거쳐 현재는 비상금융상황대응팀임)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및 국장, 금감원 부원장 및 각 시장담당 국장

○ 하부지원 조직으로 **비상금융통합상황실 및 총괄분석팀, 정보집중상황팀, 국제대응팀**이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

<※비상금융상황대응팀 조직도 별참>

□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은 **유럽 재정위기, 美 신용등급 강등,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주요국 양적완화 등** 주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20회 회의를 개최**

□ 회의내용 일체는 **공개시 금융시장에 오해 및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기록물로 남기지 않고 있는 바, 제출하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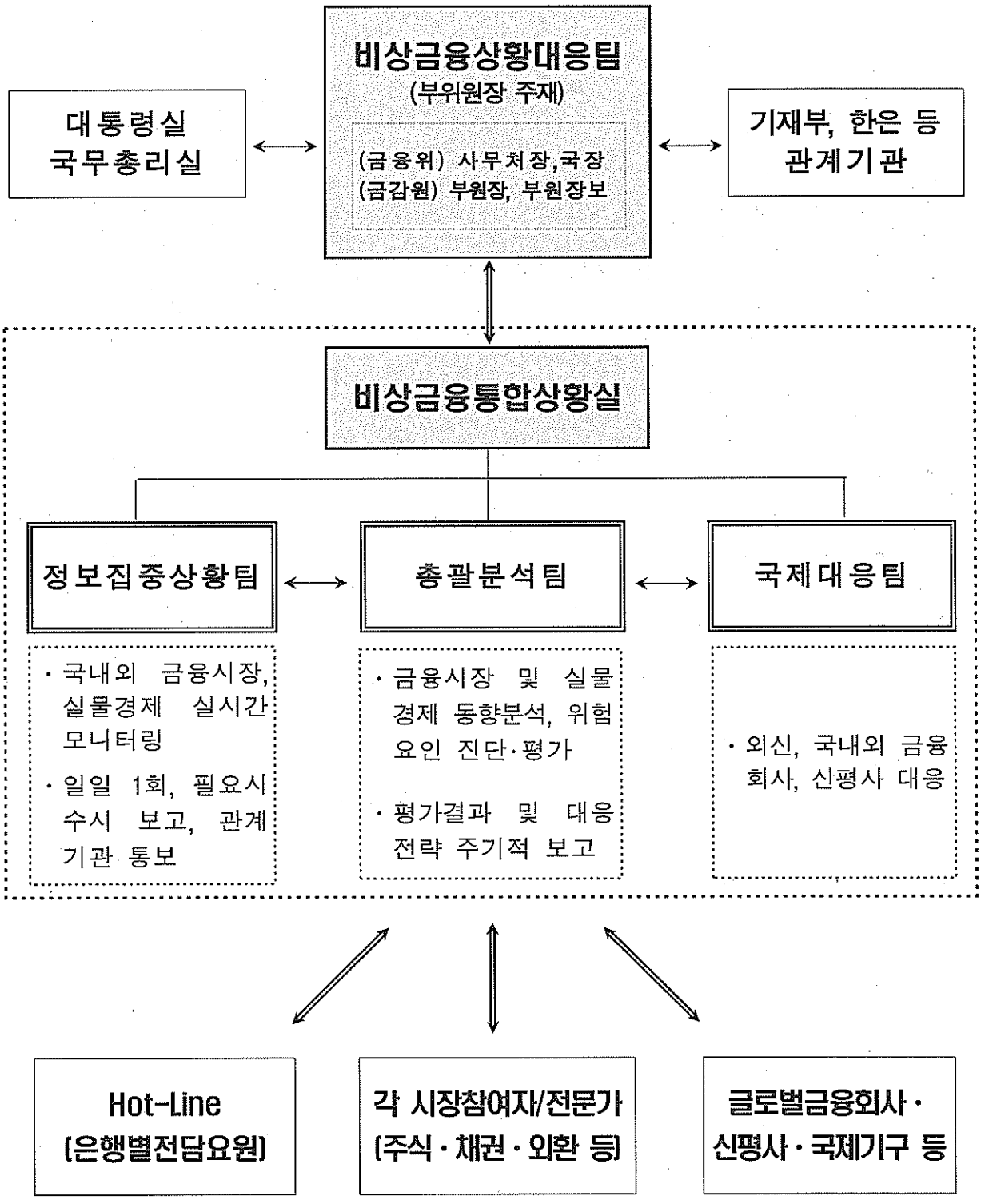
〈별첨〉 비상금융상황대응팀 조직도